

한국
수출입은행

1976 - 2016

40

Years



한국
수출입은행
1976 - 2016

40
Years

지난 4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100년의 성장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신시장 개척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올해는 저희 한국수출입은행이 창립된 지 4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1976년 '중화학공업 진흥을 통한 수출입국(輸出立國)'의 기치를 내걸고 설립된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조선, 플랜트, 자동차 등 주력 수출산업의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 발전의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우리 경제의 국제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1990년대 이후부터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해외플랜트 및 건설공사 수주를 적극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영체제 구축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의 금융위기 과정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외거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대규모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국내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수출확대를 통한 금융위기 조기 극복에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금융자문 및 주선 등 새로운 금융기법에 기반한 적극적인 수출금융 제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규모 해외사업 수주확대에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 규모로는 세계 11위, 수출액은 연간 5,000억 달러가 넘는 세계 6대 수출강국으로 도약하였으며, 한국수출입은행도 여신잔액 100조 원이 넘는 아시아의 대표적 수출 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수출입은행은 1987년 정부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를 위탁받아 개도국에 대한 경제개발 차관지원을 통하여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선도하여 왔으며, 1991년에는 남북협력기금 업무를 수탁하여 남북한 교류 협력의 촉매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로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명실공히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의 국격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한국경제는 또 다른 과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반면, 우리 경제는 성장동인(動因)의 둔화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선진국 함정'에 빠지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새로운 시대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존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 문화콘텐츠 등 일자리 창출효과와 부가가치가 큰 지식집약산업의 육성과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신시장 개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한국수출입은행 40년사>를 발간하는 것은 지난 4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향후 100년의 성장을 준비하는 밑거름으로 삼고자 함입니다. 40년사 발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편찬위원, 감수위원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수출입은행의 역사와 함께 해온 고객기업들과 유관기관,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굵은 일도 마다하지 않은 수은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6년 7월 1일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이 덕 훈

우리 기업의 수출입과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공적수출신용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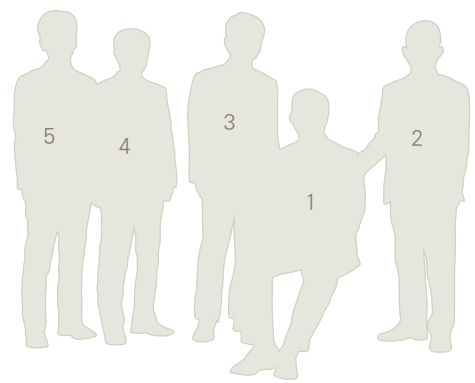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을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탁기관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IKCF) 수탁기관





- 1 은행장 이덕훈
- 2 전무이사 홍영표
- 3 감사 공명재
- 4 상임이사 최성환
- 5 상임이사 김성택





은행장 이덕훈

전무이사 홍영표

감사 공명재

상임이사 최성환

상임이사 김성택

사외이사 안영률

사외이사 오성익



부행장 최성영



부행장 문준식



부행장 강승중



부행장 신덕용



부행장 김영수



부행장 조규열



부행장 장영훈



초대 송인상



2대 양윤세



3대 이태호



10대 문현상



11대 양만기



12대 이영희



4대 박성상



5대 류돈우



6대 황창기



13대 신동규



14대 양천식



15대 진동수



7대 홍재형



8대 이광수



9대 김영빈



16대 김동수



17대 김용환

한국수출입은행 40년사

일러두기

- 1. <한국수출입은행 40년사>는 화보, 본문,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은행 명칭은 한국수출입은행, 수은으로 표기하였다.
- 3. 모든 표기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의미의 전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및 한자를 사용하였다.
- 4. 외국어 및 외래어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우리말로 바꾸어 표기하였다.
- 5. 숫자의 단위는 만, 백만, 억, 조 등의 보조단위를 사용하였다.
- 6. 행내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표는 자료출처를 생략하였다.

제1부 한국수출입은행 40년의 발자취

제1편 수출입은행의 설립과 수출금융체제 구축(1976~1985)	24
제1장 경제개발과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	25
1절 수출정책의 전개와 수출지원체제의 가동	25
2절 중화학공업을 통한 수출산업화	26
3절 산업구조 변화와 안정적 성장	29
제2장 수출입은행의 설립과 수출금융 기반 구축	32
1절 「한국수출입은행법」의 제정	32
2절 한국수출입은행의 출범	36
3절 수출금융 지원 본격화	39
제2편 대외거래 정책금융기관으로 위상 변화(1986~1996)	42
제1장 한국경제의 고도 성장과 개방화	43
1절 산업구조 개편과 개방화 추구	43
2절 세계화와 국제경제 환경 변화	46
제2장 국제화 시대에서 공적수출신용 기관의 역할	52
1절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기능 확대	52
2절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의 위상 제고	54
제3편 국제거래 지원 핵심은행으로 도약(1997~2007)	60
제1장 IMF 외환위기 극복	61
1절 한국경제 최악의 IMF 외환위기	61
2절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63
제2장 국제거래 지원 역량 강화	65
1절 IMF 위기극복과 수출입은행의 역할	65
2절 국제거래 핵심은행을 향한 도전	67
제4편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2008~2016)	78
제1장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79
1절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	79
2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적 대응	82
제2장 세계 최고의 대외정책금융기관을 향하여	87
1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수은의 자세	87
2절 세계로 가는 수은의 영역 확장	91
3절 최고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의 발돋움	96

제2부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

제1편 수출입 금융 업무 114

제1장 수출금융 115

1절 수출촉진자금 115

2절 수출성장자금 117

3절 수출이행자금 119

4절 수출기반자금 126

5절 수출금융보증 139

6절 수출이행성보증 142

7절 수출 관련 외국환 147

제2장 수입금융 155

1절 수입자금 155

2절 수입기반자금 158

3절 수입금융보증 159

4절 수입이행성보증 159

5절 수입 관련 외국환 160

제3장 해외사업금융 162

1절 해외투자자금 162

2절 해외사업자금 166

3절 현지법인사업자금 170

4절 해외사업활성화자금 176

5절 해외사업금융보증 178

6절 해외사업이행성보증 178

제4장 투자 업무 179

1절 투자업무의 도입 배경 179

2절 직접투자 180

3절 간접투자 182

제5장 고객서비스 185

1절 해외경제정보 제공 185

2절 해외진출 자문서비스 189

제2편 자금조달 업무 192

제1장 개관 193

1절 개요 193

2절 변천 194

제2장 국외 자금조달 195

1절 조달방식의 발전 195

2절 외화채권 발행의 종류 197

3절 신디케이트론 205

4절 ABS채권 및 정부·한은 외화유동성 도입 207

5절 파생상품 209

제3장 국내 자금조달 211

1절 자본금 및 적립금 211

2절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213

3절 기타 국내자금조달 214

제3편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 216

제1장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설립 217

1절 기금 설립 배경 217

2절 수탁기관 지정 및 법령 제정 218

제2장 기금운용 체계 및 변천 220

1절 운용조직과 지원제도 220

2절 변천 과정 223

제3장 지원실적과 발전방향 모색 235

1절 기금의 확충 및 지원실적 235

2절 향후 발전 방향 및 전망 237

제4편 남북협력기금 업무 240

제1장 남북협력기금의 설립 241

1절 기금 설립 배경 241

2절 지원제도의 내용 242

3절 제도의 개정과 변천 250

제2장 지원실적과 발전방향 모색 253

1절 기금의 확충 및 지원실적 253

2절 향후 발전 방향 및 전망 255

제3부 한국수출입은행의 조직과 경영

제1편 조직 운용과 변천 262

제1장 개요 263

1절 성장과 확장의 연대기 263

2절 2000년 이후의 조직 변화 264

제2장 정책결정기구 266

1절 운영위원회 266

2절 이사회 및 경영위원회 267

3절 주요 자문회의 268

제3장 본점 270

1절 본점 조직 변천 270

2절 금융 부문 조직 변천 272

3절 자문 및 투자 부문 276

4절 경험 및 남북 기금 조직 277

5절 자금관리 및 경영기획·지원 조직 280

제4장 국내지점, 국외사무소, 현지법인 286

1절 국내지점 286

2절 국외사무소 290

3절 현지법인 293

제5장 임직원 및 직제 296

1절 임직원 296

2절 직제의 변천 297

제6장 노동조합 300

1절 노동조합 출범과 구성 300

2절 노동조합의 활동 302

제2편 경영관리 306

제1장 경영전략 307

1절 경영혁신 307

2절 경영계획의 수립 308

제2장 리스크관리 313

1절 리스크 분석 및 관리 313

2절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318

3절 기술 및 환경심사 322

4절 여신감리 324

5절 여신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325

제3장 인사관리 328

1절 인사관리 328

2절 연수관리 331

제4장 국제협력 335

1절 업무 개요 335

2절 국제협력 업무 335

제5장 사회공헌활동 342

1절 사회공헌사업 개요 및 조직 342

2절 주요 사회공헌활동 344

제6장 정보기술(IT) 부문 발전 및 정보화 346

1절 정보기술 조직 및 시설 확충 346

2절 업무전산화 347

제7장 자산관리 350

1절 본점 건물 신축 351

2절 본점 증축 351

3절 인재개발원 352

제4부 한국수출입은행의 비전

제1장 개관 359

제2장 비전 2020 360

제3장 전략목표와 전략과제 361

부록

I. 법규 366

II. 자료 412

III. 통계 448

한
국
수
출
입
은
행
40
년
의
발
자
취





제1부

제1편
수출입은행의 설립과 수출금융체제 구축
(1976~1985)

제2편
대외거래 정책금융기관으로 위상 변화
(1986~1996)

제3편
국제거래 지원 핵심은행으로 도약
(1997~2007)

제4편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2008~2016)



제1편

수출입은행의 설립과
수출금융체제 구축

1976-1985

제1장

경제개발과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

1절 수출정책의 전개와 수출지원체제의 가동

1.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시대 개막

우리나라가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한 것은 1960년대였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기폭제가 되었다. 정부는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추진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공업화 기틀을 마련하고 낙후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전력, 석탄, 시멘트, 비료, 철강, 정유 등 기간산업 전반에 총량지표를 책정하고 육성했다. 특히 1966년에는 선박 건조목표를 34만 톤으로 책정하고 조선업 육성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는 계획 초기부터 정부가 중화학공업 육성을 염두에 두었음을 짐작케 한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산업구조 근대화와 자립경제 확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화학, 철강, 기계공업을 수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군사정부(1962. 1.)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관련 기사(1962. 1.)

주요경제지표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경제성장률(%)	2.1	9.1	9.7	5.7	12.2	5.9	11.3	13.8	8.8	8.2
수출(백만 달러)	55	87	119	175	250	320	455	623	835	1,068
수입(백만 달러)	422	560	404	463	716	996	1,463	1,824	1,984	2,394

입대체산업으로 육성하면서 기존의 경공업은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는 공업고도화 및 수출지향적 산업화가 중심 정책이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1차 때보다 더욱 높은 연평균 9.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전체 산업 가운데 제조업 비중도 22.2%까지 높아졌다. 고무적인 것은 제조업 비중에서도 화학비료, 금속공업, 시멘트 등 후방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화학공업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2. 수출위주의 경제개발정책의 시행

제1, 2차 경제개발의 특징은 공업화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과 더불어 수출 장려를 통한 성장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 수출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기본 조건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1962년 3월 「수출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이를 기반으로 수출품 제조용 원자재 수입에 대한 특혜 조치와 해외활동 보장 및 수출실적 링크제를 채택했으며, 무역금융을 우대하고 경제 외교를 강화했다.

1963년에 들어서며 수출정책은 보다 구체화되어 수입상대지역별 수출액에 비례한 수입의 제한, 수출자동승인품목의 확대, 수출보조금의 지급, 구상무역 확대 시책을 폈다. 아울러 12월에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법을 개정하고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보복관세, 탄력관세 제도로 도입했다.

1964년 시장자유화조치가 시행되고 수입 대체산업 보호를 위해 낮게 유지했던 환율과 금리를 대폭 올렸으며, 무역·외환 거래를 제한하던 정책을 과감히 폐지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정책 시행의 결과 사상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올렸다.

1968년에는 중장기 연불수출로 인한 손실 위험을 대비한 「수출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1969년에는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 증대를 위해 연불수출을 지원 하는 「수출입은행법」이 제정되었다.



「수출입은행법」 제정에 관한 보도자료
(1969. 5. 22.)



수은 창립을 기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

업발전, 수출 진흥, 사회간접자본 확충 기반을 구축했으나, 1970년대 초 석유파동 이후 각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후발 개도국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경공업 제품 위주의 수출에 한계를 드러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국제수지 적자도 심화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중화학공업의 육성이었다.

중화학공업 제품은 수출규모가 크고 부가가치 및 외화가득률이 높을 뿐 아니라, 수입규제 장벽도 낮아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숙제와 함께 닌슨 독트린으로 인해 방위산업 육성도 절실해지면서 중화학공업육성은 우리 경제의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년)의 주요 정책과제를 중화학공업 육성에 두고 1972년 ‘공업구조개편론’이라는 중화학공업정책의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는 한편, 상공부 주도로 조선공업 육성방안과 중화학공업의 업종별 육성계획을 마련했다. 이어 1973년 1월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통해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했다.

2.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금융 정책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국산 원자재 사용 촉진, 품질 향상을 통한 외화가득률 제고 등 수출의 질적 향상에 역점을 두는 한편, 1972년 D/A 및 D/P 방식의 단기 연불수출 금융지원을 강화해 중장기 연불수출금융 금리를 인하했다. 또한 외화가득액을 높이고 국산 원자재 사용 장려를 위해 외화가득액 제고형 대출제도를 실시했으며, 신용대출 기반 조성을 위해 「수출산업 신용보증법」도 제정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석유파동으로 인한 국제무역 환경의 악화에 대처하고 국내 경기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출지원금융과 내수용 수입원자재 비축금융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수출산업 시설 근대화를 위해 수출산업 설비금융 200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정부는 철강, 비철금속, 조선, 전자, 디젤엔진 등 30개 중화학 업종을 합리화 산업으로 지정하며, 합리화 기준을 제정하고 세제지원과 병행해 국민투자기금과 수출산업확충자금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 1976년 1,018억 원의 국민투자기금이 중화학공업 분야에 지원되었다.

한편 1981년까지 플랜트 건설 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시멘트, 비료, 정유, 제철, 합성고무, 플랜트 등 11개 품목의 표준국산화율을 책정 고시하고, 시설재와 원자재의 국산화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국산기계 구입, 계획조선 등에 국민투자기금과 외화대출로 665억 원을 지원했다. 세계 지원을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시



중화학공업 육성 발표 기사(1973. 1. 12.)

행령도 개정했으며, 특별상각인정업종에 기계공업과 전자공업을 추가했다.

정부의 강력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중화학공업 부문은 연평균 2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1976년 중화학공업화 비중이 48.6%에 이르렀다. 중화학공업 제품 수출 비중도 1971년 15.6%에서 1976년 29.3%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조선업은 철강업과 함께 중화학공업화의 선도 역할을 했다.

3. 중화학공업 기반 안정화

중화학공업 생산 기반 확충에 따라 정부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년)부터 산업연관도가 높고 수출전략품목에 속하는 일반기계, 전자, 자동차, 제철 등 13개 중점 지원업종을 선정해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합병 및 계열화를 추진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한편, 시설 현대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이었다.

이밖에 기계, 금속, 조선, 화학, 전자 등 7개 전략부문의 기술도입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기술개발을 위해 대덕 연구단지와 창원 및 구미 공업단지에 전문 기술연구소 설립을 추진했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소형 자본재의 중장기 연불수출을 위해 수출입은행에 중장기 연불수출 금융지원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중화학공업 제품 및 플랜트의 연불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대출비율을 75~80%에서 90%로 높였다.

이 같은 중화학공업 분야 투자 확대와 수출 진흥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중화학공업화 선언’이 있었던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연평균 8.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했다. 제1차 석유파동으로 다소 저조한 양상을 보였던 1974년과 1975년을 제외하면 10%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1973년과 1976년에는 각각 12.0%, 10.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전후로 생겨난 주요 중화학 단지를 보면 울산 석유화학단지(1972년), 창원 기계공업단지(1978년), 여천 석유화학단지(1979년)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으로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1974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1975년), LG화학 여수공장(1976년), 호남석유 여수공장(1979년), 대우조선 옥

주요경제지표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인당 국민소득(달러)	320	401	554	602	818	1,034	1,431	1,676
경제성장률(%)	4.5	12	7.2	5.9	10.6	10.0	9.3	6.8
소비자물가 상승률(%)	11.7	3.2	24.3	25.2	15.3	10.1	14.5	18.3
수출(백만 달러)	1,624	3,225	4,460	5,081	7,715	10,046	12,711	15,055
수입(백만 달러)	2,522	4,240	6,852	7,274	8,774	10,811	14,972	20,339
경상수지(백만 달러)	-898	-1,015	-2,391	-2,193	-1,058	-764	-2,261	-5,283



울산 석유화학단지 전경

포조선소(1981년) 등이 설립되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이에 힘입어 1970년대 중반부터 식료품, 의복, 가구 등 소비재산업과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에너지 다소비형 소재산업(素材産業)의 생산액 비중이 낮아진 반면, 기계류, 전기기기, 수송기계, 정밀기기 등 에너지 저소비, 기술집약적 조립가공산업의 비중은 1973년의 13.8%에서 1978년 20.3%로 크게 높아졌다.

한편 수출은 정부의 지속적인 수출지원 및 중화학공업의 수출산업화 정책에 힘입어 1973~1979년 기간 중 연평균 39.6%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1977년에는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수출상품의 구성도 경공업 제품의 수출에서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로 고도화되었으며, 기계류 및 운반용 기기 제품의 비중이 높아졌다.

3절 산업구조 변화와 안정적 성장

1. 산업구조 고도화와 시장 안정화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으로 세계적 경기침체,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 고금리, 주요 선진공업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1980년대의 시작은 암울했다. 국내에서도 정부의 중화학공업 위주의 정책으로 경제력 편중, 중화학공업 중심의 대기업과 경공업 중심의 중소기업의 성장 불균형, 중복투자로 인한 과당 경쟁 문제가 불거지며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81년 4월 산업합리화 조치를 발표했다. 중화학공업 부문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전문화된 생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복수 기업으로 다원화된 자동차 및 발전설비 부문을 통합해 단일기업화하고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은 신규투자를 가급적 억제시켰다.

중화학공업의 합리적 구조조정 과정에도 정부는 조선업과 플랜트 산업을 수출



현대자동차 엔진공장

주력산업으로 육성했다. 1980년대 초부터 4개 조선소를 증설하고, 조선기술 용역 회사의 설립 및 선박설계의 집중화를 내용으로 하는 ‘조선부문 장기수출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자동차부품 산업에 230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플랜트산업의 수출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산업설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외건설 면허를 가진 기업만이 산업설비 설치공사를 하던 것에서 벗어나 산업설비 수출기업이나 수출용 기자재를 설계·제작하는 기업도 자체 제작한 기계 및 장치에 한해 해외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전략산업인 기계공업에 대해서는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했으며, 해외건설기업의 국산 건설장비 사용을 의무화했다.

1982년 들어 정부는 사업구조의 고도화와 합리화를 위해 핵심전략 산업을 중점 개발하고 전문화와 설비개선에 주력했다. 우선 정부는 중화학공업 부문 산업구조 고도화 대책으로 전자공업 고도화 장기계획(1982~1991년)을 수립해 반도체, 컴퓨터의 개발을 촉진하고 전자교환기 양산화를 추진했으며, 자동차 부문에서는 차종별로 전문 생산기업을 지정하고, 자동차 수요 촉진을 위해 소비자 금융을 확대했다.

2. 조선 수출 확대와 중화학공업의 성장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도 1980년 한국 경제는 뒷걸음질 쳤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후 경제성장률이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



대우조선해양

(-1.5%)을 보였다. 제조업 부문도 유가의 대폭 인상과 국내의 경기의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전년대비 -1.6%를 기록했다. 이는 일반기계(-23.7%), 전기기기(-13.3%), 수송기계(-16.4%) 등 주요 중화학공업의 동반부진에 따른 결과로 중화학공업 생산은 전년보다 9.2% 감소했다.

물가는 석유파동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도매물가 상승률이 38.9%에 이르는 등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다. 또한 높은 국내물가에 따른 수출가격 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수입단가가 높아져 국제수지 적자는 47억 8,700만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다행히 1981년부터 경제는 회복 기미를 보였고, 그 중심에는 중화학공업이 있었다. 1981년에는 경공업이 전년대비 5.3% 신장한 데 비해 중화학공업은 국내의 수요 증가와 철강 등 일부 업종의 생산 능력 확대로 9.8% 증가했으며, 1982년에는 선박 수출이 236.9% 증가하고, 자동차의 국내외 수요증가에 힘입어 수송기계 부문이 14.5%나 신장되었다.

1983년에 들어서도 중화학공업 제품 수출 및 내수의 호조가 지속되었는데, 특히 건설 중장비, 광산용 기계 등의 국산화 촉진과 수출 증가로 일반기계 부문이 전년대비 21.8% 증가했으며, 수송기계도 신차 개발과 선박의 수출 신장으로 14.7% 확대되는 등 중화학공업은 전체적으로 15.0% 신장되었다. 1984년에는 더욱 큰 폭의 성장을 보이면서 수송기계 60.1%, 전기기기 27.8%, 일반기계 16.8%가 성장하며 19.8%의 성장을 보였다.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중화학공업의 비중도 1979년 45.1%에서 1984년 58.1%로 높아졌다.

국제수지도 크게 개선되어 1980년 47억 8,700만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에서 1982년 23억 9,700만 달러, 1983년 17억 4,700만 달러로 그 적자폭이 점차 줄어들었다. 특히 1985년 선진국의 수입·수요 저조에 따른 수출 감소와 투자 및 생산 활동 위축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8억 5,300만 달러로 크게 감소하며 1986년 국제수지 흑자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 국제수지 개선에는 원유를 비롯한 수입 원자재 가격의 안정세와 수출 증가가 큰 힘이 되었다.

■ 주요경제지표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인당 국민소득(달러)	1,645	1,800	1,893	2,076	2,257	2,309
경제성장률(%)	-1.5	6.2	7.3	10.8	8.1	6.8
소비자물가 상승률(%)	28.7	21.4	7.2	3.4	2.3	2.5
수출(백만 달러)	17,505	21,254	21,853	24,445	29,245	30,283
수입(백만 달러)	22,292	26,131	24,251	26,192	30,631	31,136
경상수지(백만 달러)	-4,787	-4,878	-2,397	-1,747	-1,387	-853

제2장

수출입은행의 설립과 수출금융 기반 구축

1절 「한국수출입은행법」의 제정

1. 제정 배경 및 과정

1960년대 후반 세계 자본재시장은 공급자시장(Seller's Market)에서 구매자시장(Buyer's Market)으로 생태계가 변하면서 수주경쟁이 격화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수출대금을 장기에 걸쳐 지불하는 연불수출이 대세로 자리 잡았고, 제품의 질과 함께 연불조건이 구매의 중요한 결정요소가 되었다. 수출산업화를 목표로 하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서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불수출 도입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수출신용경쟁은 선진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선진 각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국의 자본재 수출 지원을 위해 중장기 연불수출금융을 지원하는 공적수출신용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1919년 영국이 최초로 수출신용보증국(ECGD: 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을 설립한 이후 1934년 미국이 수출입은행을, 1945년에는 프랑스가 무역은행(BFCE)을, 1948년 독일이 부흥금융금고(KfW)와 수출금융회사(AKA)를, 1950년 일본이 수출입은행을, 1952년에는 이탈리아가 중기신용중앙금고(Mediocredito Centrale)를 잇달아 설립하며 자본재 수출 지원을 강화했다.

우리 정부도 1964년 수출진흥정책을 수립하면서 수출금융 전담은행의 설립을 최초로 검토했다. 그러나 당시는 재정 문제로 유보되었다가, 1968년 상공부가 연불수출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면서 수출입은행 설립의 단초가 마련됐다.

1968년 열린 제1차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상공부가 우리나라 최초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7개국에 소형선박, 기계류, 직물 플



신문에 보도된 「수출입은행법」 전문
(1969. 7. 15.)

랜트 등 1,900만 달러 규모의 연불수출 계획을 밝혔다. 이에 재무부는 '중장기 수출지원금융제도 확립방안', 상공부는 '중장기 연불수출 진흥방안'을 마련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불수출 지원 전담금융기관의 설립이 논의되었다.

각계의 논의 과정에서 전담금융기관을 한국은행이나 외환은행이 담당하는 방법과 별도의 독립기관을 신설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정부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수출 지원을 위해 전담금융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특수하고 전문적인 연불수출금융 업무 내용을 감안해 전담기관으로 수출입은행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법안을 마련하고, 1969년 7월 10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7월 28일 「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이 공포되었다.

「수은법」의 제정으로 연불수출금융 전담기관의 설립근거가 마련된 것은 수출 신용경쟁이 격화되던 세계 자본재 수출시장의 여건을 생각할 때 시기적절한 선택이었다.

2. 제정 「한국수출입은행법」 주요 내용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중장기 연불수출금융을 담당함으로써 외국시장 개척과 무역증진을 통한 대외경제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수은은 전액 정부출자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한국은행법」이나 「은행법」과는 별개로 특수법인 「수은법」이 적용된다.

제정된 「수은법」의 주요 골자는 자본금납입 및 수은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써, 수은은 자본금 300억 원, 총재 1인, 부총재 1인, 이사 5인 이내, 감사 1인으로 구성토록 했다.

수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 및 기타 제품 수출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기술제공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 대한 수입자금, 기술도입자금의 대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불수출에 필요한 중요 물자 수입자금의 국내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해외사업자금 및 해외투자자금의 대출과 상기 업무의 보증 그리고 기타 부대업무로 정했다.

수은의 재원은 정부가 출자하는 자본금과 정부, 외국금융기관 및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그리고 외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규정했다.

3. 수은 업무 개시(업무대행시기 포함)

업무는 당초 정부 방침대로 「수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 대행했다. 법 제정 이전인 1969년 5월 중장기신용부를 신설해 업무대행을 준비한 외환은행은 정부로부터 1억 원의 재정자금을 지원받아 같은 해 10월 29일부터 수은 업무를 개시했다.



한국외환은행의 수은 업무 대행 시업식(1969. 10. 29.)

수은의 자금 지원은 업무대행 3년째인 1971년 인도네시아의 산림자원 개발 사업에 3억 8,800만 원의 해외투자자금을 승인함으로써 첫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 이후로 서, 1973~1975년 사이 대형 조선소들이 들어선 이후였다. 선박 수주가 시작된 1975년 후반부터 연불수출금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시기였다.

외환은행의 수은 업무대행기간 동안 지원한 자금의 종류는 수출자금과 해외 투자자금 두 가지였다. 이 중 수출자금은 우리나라 최초의 플랜트 수출인 1972년 승리기계제작소의 아프가니스탄 직기(織機) 155대의 연불수출 거래에 3억 3,500만 원을 지원한 것이 최초였다. 이후 수출자금은 선박, 섬유기계, 목재기계, 철도차량 및 화차와 전화교환 시설 등에 지원되었는데, 선박수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행기간 지원한 수출 선박은 유조선 2척, 화물선 28척, 어선 15척 등 총 45척이었다.

해외투자자금은 1971년 첫 대출이 성사된 후 규모는 작지만 꾸준히 지원되었다. 인도네시아 산림개발 투자를 시작으로 모로코와의 원양어업 합작투자, 대한 조선공사의 노르웨이 선박용선 사업 등이 있다. 또한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와 대외경제협력 증진 차원에서 수은의 연불수출 지원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타이어류, 어망류, 면혼방직물이 한시적으로 연불수출 지원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었다.

업무대행 당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자금 확보였다. 대출승인 시마다 자금조달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지원실적이 미약했던 1974년까지 수은 자금은 정부의 지원금이 주요 재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5년부터 지원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국민투자기금을 차입



인도네시아 원목개발사업 현장

수은 업무 대행기간 중 자금지원 실적						(단위 : 억원)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6
수출자금	-	12	16	16	271	136
선박	-	8	16	13	215	100
해외투자자금	4	-	-	8	0.3	24
합계	4	12	16	23	271	160

했고, 1975년 6월 한국은행이 외환은행에 출자한 500억 원 중 일부가 수은 대행업무의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수은의 지원기능과 자금조달 기반이 크게 확충되면서 자금지원 실적도 크게 증가했다. 1969~1974년 중 54억 원에 불과했던 지원실적은 1975년 271억 원, 1976년 상반기 중에는 160억 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 대행기간 지원실적은 총 485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다양한 재원의 차입을 통해 지원 규모를 늘렸음에도 연불수출금융 수요를 따라 잡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선박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76년 3월 경제장관간담회의를 통해 1976년도 연불수출지원금융기준을 수립했다. 이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품목은 선박, 철도차량, 플랜트, 산업기계로 한정했고, 보다 유리한 연불조건을 유도하기 위해 선수금률, 연불금리, 연불기간, 외자재의존율 등 지원 대상 거래요건을 강화했으며, 수출계약 체결 30일 전까지 대출신청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4. 제1차 「수은법」 개정, 기능과 역할 확대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수은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이 처음으로 추진돼 제정 5년 만인 1974년 12월 26일과 1975년 2월 28일 각각 법률 제2736호와 대통령령 제7561호로 개정, 공포되었다.

개정된 「수은법」은 자본재의 연불수출과 해외투자 및 주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은의 지원기능은 크게 확대되었고, 수은의 설립목적도 폭넓게 규정되었으며, 특히 정부의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여의치 않았던 자금조달 기반도 확대되었다.

제1차 개정에서는 우선 주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해외시장 개척 촉진을 위해 주요자원개발자금이 신설되고, 수입자금과 해외투자자금 및 해외사업자금의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대외경제협력자금’과 ‘외국정부에 대한(對韓)결제자금’이 신설되었다. 수입자금의 경우 연불수출에 필요한 원재료로 국한했던 지원 대상 범위가 해외 수출입시장의 확보 및 개척에 필요한 중요 물자로 확대되었고, 지원 가능한 중요 물자의 종류도 구체적으로 지정되었다.

해외투자자금의 지원대상도 종전의 수출용 원자재 및 필수적인 기초 기자재의 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에 더해, 외국과 경제협력을 촉진하거나 해외교민의 경

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및 해외수출입시장의 확보와 개척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해외에 제공하는 기술의 범위에 해외건설공사를 포함시킴으로써 해외건설 수주의 길도 열었다. 또한 중장기 연불수출금융을 포함한 자금의 상환기간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에서 6개월 이상 10년 이하로 늘렸으며, 신설된 주요자원개발자금과 대외경제협력자금의 대출기간은 20년으로 확정했다.

법정자본금은 3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정부로 국한되었던 출자자 범위는 정부 외에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등 금융기관과 수출업자 단체 및 국제금융기구로 확대했다. 개정 당시 1,500억 원의 법정자본금은 국내 금융기관 중 한국산업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소요자금의 국내차입선도 출자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확대하고, 해외차입의 경우 외국의 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외에 외국정부로부터 차입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원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을 국내에서 발행하는 길도 열어두었다.

업무의 운영 및 의사결정과 책임소재도 명확히 했다. 재무부, 상공부, 경제기획원 등 정부부처와 한국은행, 한국외환은행 및 수출업자 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수은 업무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게 했으며, 개정법 부칙에 따라 임시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는 지원여부가 개별거래의 채산성보다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수은 여신의 특성상 이사회외 권한과 기능의 범주를 넘어서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었다.

2절 한국수출입은행의 출범

1. 독립 금융기관으로의 출발

연불수출이 본격화되자 외환은행의 대행체제로는 효과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연불수출금융 전담기관인 수은의 독립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제1차 「수은법」 개정으로 신설된 임시운영위원회는 1975년 2월 20일 개최된 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업무대행준칙’을 제정해 외환은행이 수은의 설립에 대비한 제반 준비를 하고 수은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이후 정부는 1975년 7월 외환은행의 중장기신용부를 기획부와



수은설립위원회 발족(1976. 4. 10.)



여의도 본점 신축 전까지 수은이 소재했던 대우센터빌딩

업무부로 확대·개편하는 한편, 수은의 설립준비에 착수해 1976년 4월 10일 수은설립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수은설립위원회는 1976년 4월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설립사무국장을 임명하고, 외환은행 직원 12명을 4개 반으로 편성한 설립위원회 사무국을 발족시켰다. 이어 1976년 6월 1일 제2차 회의에서는 수은 설립 예산안과 수은의 정관을 의결하고, 6월 10일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아울러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중구 양동 286번지(대우센터빌딩 16층)로 결정했다.

정부는 1976년 5월 12일 초대 은행장에 송인상 씨를 임명하고, 6월 1일 이사 2인과 감사 1인을 각각 임명해 초대 임원진을 구성했다. 1976년 6월 17일에는 수은 자본금이 최초로 납입되었다. 한국은행이 200억 원을 출자하고 외환은행이 수은 계정에 올라 있던 재정자금 대출금 53억 원을 6월 21일 수은 자본금으로 전환시켜 총 253억 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했다.

수은 설립에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은설립위원회는 1976년 6월 21일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수은 설립등기를 마치고 6월 22일 서울신문에 공고했다. 6월 23일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을 통해 수은 설립에 관한 경과보고서를 확정해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했다.

이어 재무부장관이 수은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해 수은의 업무개시일을 1976년 7월 1일로 지정함에 따라 수은은 이날 정식 발족되어 업무를 개시했다. 출범 당시 수은은 3부 1실의 조직에 전체 임직원은 80명이었다.



설립등기 공고(1976. 6. 21.)

2. 「수은법」 2차 개정과 업무기반 조성

1976년 수은 설립 이후 연불수출과 해외투자 지원에 필요한 자금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적정성의 확보가 요구되면서 1977년 12월 19일 제2차 「수은법」 개정이 이루어져 법률 제3022호로 공포되었다. 수은은 1977년 제2차 「수은법」 개정을 통해 경영체제의 변화를 꾀했다. 이를 위해 각종 지원제도의 정비와 새로운 금융기법의 도입, 해외 자금조달 활동을 강화해 업무기반을 공고히 했다.

법 개정으로 법정자본금은 1,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수은 업무의 경제·외교적 중요성을 감안해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외무부장관이 지정하는 1인이 추가되었다. 또한 업무대행기였던 1974년의 제1차 법 개정시 운영위원회의 신설과 함께 폐지되었던 이사회가 다시 부활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과 독립적인 책임 경영체제를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 수은의 설립목적 중 수은 자금의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중장기신용에 의한’이라는 제한 문구가 삭제되었는데, 이는 연불조건이 아닌 일람불거래의 경우에도 거래의 이행 또는 대출금의 상환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거래는 수은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3. 지원체제 정비

업무대행기에는 수출자금과 해외투자자금 지원에 국한되었던 수은의 업무 범위가 제2차 「수은법」 개정을 통해 확대되었다.

1977년에는 중동 건설 붐 고조에 따른 해외 건설공사 지원을 위해 기술제공자금이 처음 지원되었고, 1979년에는 구매자신용 방식에 의한 직접대출과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전대자금의 공여가 시작되었다. 그 후 제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1981년에는 주요자원개발자금도 도입했다.

수은이 우리나라 최초로 구매자신용 방식을 도입한 것은 금융 국제화 측면에서 선진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위상에 근접했음과 동시에 외국의 구매자가 직접 차주가 됨으로써 국내 수출자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다. 또한 전대자금은 주로 중소 기계류의 해외시장 개척에 지원됨으로써 우리나라 제품의 잠재수요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했다.

한편 수은은 급증하는 연불수출 금융수요에 대응해 1980년 초부터 국내 금융기관과 협조대출제도를 시행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된 협조대출제도는 시행 이후 지원 대상 사업 및 자금과 협조대출 대상기관이 점차 확대되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자본재 수출기업의 자금수요를 해소하는데 큰 몫을 담당했다.

1985년에는 국제 고금리 추세 지속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개도국의 외채위기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되었다. 이에 저금리통화에 의한 대



수출보험부 업무인수(1977. 1.)

출로 자본재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이중통화 대출제도를 도입했다.

대출업무의 다양화와 함께 보증 및 외환 업무도 개시해 1977년 선수금환급보증 업무와 계약이행보증 업무를, 1980년에는 협조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보증 업무를 신설했다.

1976년 10월 갑류 외국환은행 인가를 받아 수은 업무와 관련된 외국환 및 수출입 업무를 취급한 이후 1978년에는 수은내국신용장 업무를, 1979년에는 「산업설비수출촉진법」 및 시행령에 의거해 위임된 국내 산업기자재의 반출확인 및 외국 기자재의 수입승인 업무를 취급했다. 또한 1982년부터는 상공부에서 전담하던 산업설비 수출허가 업무 중 일부도 취급하게 되었다. 한편 수은은 1977년 1월 대한재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험 업무를 인계받아 수출보험 업무도 수행했다.



갑류 외국환은행 인가 공문(1976. 10.)

3절 수출금융 지원 본격화

1. 선박과 플랜트 수출의 강력한 조력자

수은 설립을 계기로 선박과 플랜트, 기계류 등 자본재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이 급속히 확대되어, 설립 이듬해인 1977년 한 해에만 1,152억 원이 승인됨으로써 본격적인 연불수출시대가 열렸다. 이후에도 수출금융 지원은 계속 확대되어, 기술제공자금과 전대자금을 포함한 수출금융 총 승인액은 1976년의 818억 원에서 1979년에 4,162억 원, 1982년 5,742억 원, 1984년 1조 847억 원으로 급증했다.



인도네시아 마두라유전(1984.)

연불수출금융은 선박과 플랜트 수출의 비약적 성장을 도모해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 발전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였다. 수은 설립 이후 전체 공업생산 중 중화학공업의 비율은 1972년 37.0%에서 1977년에는 51.5%, 1980년에는 53.6%로 크게 높아졌으며, 총수출에서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72년의 21.3%에서 1980년에는 41.6%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수은과 우리나라 수출정책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1977~1985년 사이 승인된 수출금융 중 76.5%는 선박수출에 집중되었다. 수은의 선박수출 지원은 우리나라 조선업이 1975년 이후 불어 닥친 세계 조선시장의 장기 불황 속에서도 세계 2위의 조선대국으로 부상하는 엔진역할을 했다. 선박의 수출규모는 1975년 이후 급격히 성장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선박수출 비중이 1977년의 4.7%에서 1984년에는 6.5%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단기간에 성장한 배경은 1970년대 후반 일본과 유럽의 선진 조선국들이 조선불황으로 조선소 연쇄도산 사태가 벌어지자, 조선소 통합 및 폐쇄조치를 취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역으로 수은의 연불수출금융을 적극 활용해 조선업의 수출전략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였다.

한편 '기계공업의 꽃'이라 불리는 플랜트산업도 비교적 유리한 수출시장 여건을 조성해 세계무대 진출의 전기를 마련했다. 세계 플랜트 수출시장은 1970년대 내내 안정된 신장세를 유지해 197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17.3%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또한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해상 유전 개발이 활기를 띠면서 1980년대 전반기에는 해양 석유·가스 시추 및 생산설비의 수요 급증으로 한 단계 더 성장했다. 수은의 플랜트 수출 지원실적도 가파르게 늘어나 1978년 1,600만 달러, 1984년 1억 달러, 1985년 2억 900만 달러로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지원 대상 품목도 화력발전설비, 해수담수화설비, 해상 석유시추 및 생산설비, 시멘트 플랜트, 타이어 플랜트 등으로 다양화 되었으며, 설비 규모도 대형화 되었다.

2. 해외투자금융 지원 확대

두 차례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확산된 자원민족주의에 대응해 1980년대 전반에는 해외자원개발 투자도 활발했다. 수은의 주요자원개발지원자금을 포함한 해외투자금융 지원은 1971~1976년 99억 원에 불과했으나, 1977년 156억 원, 1979년 110억 원, 1982년 646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후, 자원개발 투자가 부진했던 1984년부터 감소해 1985년에는 87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이 기간 수은이 지원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동남아 국가 원목개발사업과 포항제철(현 포스코)이 추진한 유연탄개발사업, 코데코에너지가 주요자원개발자금을 지원받아 시행한 인도네시아 마두라 유전 개발사업 등이 있다.

제조업 투자는 초기에는 실적이 거의 없었으나, 1980년대 들어 플랜트 수출에 수반되는 해외투자자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시장지향형 또는 생산요소지향형의 투자진출이 늘어나면서 점차 증가했다.



제2편
대외거래 정책금융기관으로
위상 변화
1986-1996

제1장
한국경제의 고도 성장과 개방화

1절 산업구조 개편과 개방화 추구

1. 국제수지 흑자 전환

1986~1989년 우리 경제는 달러가치 하락(엔화강세), 유가 하락, 국제금리 하락 등 이른바 3저 현상에 힘입어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수출과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고, 만성적인 적자였던 국제수지도 큰 폭의 흑자로 전환했다.

총저축률도 국내 총투자율을 처음으로 상회하며 투자재원의 완전자립이 가능해졌고, 외채도 1986년을 고비로 감소했다. 경제성장률은 1986년 10.6%에 이어 1987년과 1988년에도 각각 11.1%, 10.6%를 기록하여 3년 연속 10%를 넘는 활황이 지속됐다. 경상수지는 1986년 47억 1,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매년 확대되어 1988년 145억 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도 1986년의 4.2%에서 1988년에는 7.7%로 높아졌다.



1986년 경상수지 흑자 실현 기사

주요경제지표				
	1986	1987	1988	1989
1인당 국민소득(달러)	2,643	3,321	4,435	5,418
경제성장률(%)	10.6	11.1	10.6	6.7
수출(백만 달러)	34,714	47,281	60,696	62,377
수입(백만 달러)	31,584	41,020	51,811	61,465
경상수지(백만 달러)	4,710	10,058	14,506	5,344
외화보유고(백만 달러)	7,905	9,144	12,340	14,978

수출 증가율은 1986~1988년 26.7%를 기록했는데, 품목별로는 자동차가 82.5%, 일반기계 54.1%, 전자제품 43.2%로 수출을 주도했고, 철강제품과 화학제품도 26.1%로 평균 증가율에 근접했다. 신개발품인 반도체, VTR, PC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앞서 생산기반을 갖춘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증가율이 대폭 확대되었다. 선박은 1986년과 1987년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으로 각각 -64.0%, -37.3%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1988년 회복세로 돌아서며 50%를 상회하는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2.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정부의 대처

1980년대 후반 우리 경제는 경제호황과 경상수지 흑자전환을 계기로 산업구조 조정을 단행할 적기를 맞았다. 비약적 성장의 이면에는 급속한 원화절상, 노사 분규 및 임금의 급상승에 따른 우리 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시장개방 압력이 뒤따랐다. 이에 정부는 금융자유화의 단계적 추진, 공정거래제도 도입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을 유도하고, 수입자유화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해외 기업과 경쟁을 통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착수했다.

1986년에는 「공업발전법」을 제정해 자동차, 발전설비, 전자교환기, 동 제련, 디젤엔진, 중전기, 건설 중장비 등 7개 업종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했다. 중전의 선별적 산업육성법을 대체한 것으로, 합리화기간(1986~1989년) 동안 협소한 국내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국산화율의 제고 및 수출 증대를 유도했다.

한편 조선업을 1989년 8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하고 ‘공동 기술개발의 확대 및 생산성 향상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 ‘조선 시설의 신증설 억제와 저가수주 및 과당경쟁의 방지에 의한 경영합리화 추진’, ‘계열기업의 처분, 자산의 매각, 계열사의 출자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1983년 이후 세계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선박수주량 감소, 선가 하락 영향을 받은 국내 조선업계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일부 조선사는 재무구조 악화로 도산이 우려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3. 개방화·자유화 통한 경쟁체제 선언

1980년대 국가 간 통상마찰이 잦아지면서 세계 각국은 개별상품 수입규제보다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했다. 특히 미국은 대규모의 무역수지 적자해소 차원에서 경상수지 흑자 국가의 상품시장은 물론 서비스 및 자본시장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했다. 1986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선 우리나라는 국가 간 통상마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해 수입자유화 확대, 관세 인하 등을 추진했다.

우선 1986년 7월 1일 국제경쟁력을 갖춘 과보호 품목, 시장지배적 사업자 품목으로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품목, 또는 향후 추가투자가 바람직하지 않은 품목으로서 국제적 비교우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수입 원자재로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수입자유화했다.

외환거래 규제도 점진적으로 완화해 1986년부터 그 속도가 빨라졌다. 정부는 1988년 11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이하 IMF) 8조국에 가입했으며, 또한 GATT 제18조 B항에 의거해 이뤄지던 수량적 수입제한 특혜를 1990년 1월부터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부문 규제도 1986년을 기점으로 크게 완화했다. 1988년 12월 금리자유화 조치를 먼저 시행했다. 무역금융에 적용되던 연 10%의 우대금리제 적용, 대출금리의 연 1% 포인트 가산제 및 연체대출에 대한 연 19%의 최고금리 적용을 모두 폐지했다.



금리자유화 시행 기사(1988. 12. 1.)

4. 개도국 경제협력 창구의 확대

1980년대 후반 개도국은 우리나라의 무역과 해외투자 그리고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프로젝트 등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잡았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개도국의 경제협력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이 설립되면서 對 개도국 경제협력은 가속화되었다.

이전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이하 ODA)는 다자개발은행(Multinational Development Bank: MDB, 이하 MDB)에 대한 출자, 개도국 훈련생의 초청 및 전문가 파견, 무상 기술용역 제공 등 소극적 활동에 그쳤으나,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설립으로 금융협력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개도국들이 산업개발을 위한 산업설비 및 기자재를 우리나라로부터 공급받는 데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제공해 줌으로써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며,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맺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전자제품 생산공장

2절 세계화와 국제경제 환경 변화

1. 경제개혁 추진과 고부가가치 제품의 약진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초에 걸쳐 정치적 민주화가 실현되면서 저임금 노동시장에 변화가 일어났고, 설상가상으로 원화절상 및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145억 6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1988년을 정점으로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1년에는 84억 1,700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경상수지의 적자전환에도 불구하고 1990년과 1991년에는 소비 및 건설투자 등 내수 호조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9%대의 건실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1992년 설비투자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1980년 이래 가장 낮은 5.9%의 성장률에 그쳤다.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는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안정기조 하의 경제활성화’라는 정책목표 아래 신경제 5개년계획(1993~1997년)을 수립했다.

국민의 참여와 창의가 진작될 수 있도록 대내외 규제를 완화하고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기반을 확립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공정한 경쟁과 자율성 보장 및 경제 정의 구현을 위한 재정, 금융, 행정 등 각 제도의 과감한 개혁에 착수했다.

주요경제지표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인당 국민소득(달러)	6,147	7,105	7,527	8,177	9,459	11,432	12,197
경제성장률(%)	9.2	9.4	5.9	6.1	8.5	9.2	7.0
소비자물가 상승률(%)	8.6	9.3	6.2	4.8	6.3	4.5	4.9
수출(백만 달러)	65,016	71,870	76,632	82,236	96,013	125,058	129,715
수입(백만 달러)	69,844	81,525	81,775	83,800	102,348	135,119	150,339
경상수지(백만 달러)	-2,015	-8,417	-4,095	821	-4,024	-8,665	-23,220

수출은 1990년 4.2% 증가하여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1991년부터 차츰 회복돼 1991~1993년에 연평균 8.1%의 증가율을 보였다. 신경제계획 추진 이후 우리 경제는 다시 활기를 띠면서 세계경기의 부진 속에서도 1993년 경제성장률이 6.1%로 회복세를 보인 이후 1994년 8.5%, 1995년 9.2%, 1996년 7.0%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1995년과 1996년에는 그간의 지속적인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이 결실을 보이면서, 선박, 반도체, 전자제품 총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 1995년 1,251억 달러 1996년 1,297억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994년 130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해 단일 품목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업을 토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일본의 엔화 강세도 수출 증가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 그러나 경상수지는 원화절상과 시장개방의 확대로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악화되었다. 특히 1995년 86억 6,000만 달러, 1996년 231억 1,000만 달러로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2. 제조업의 해외투자 확대

1990년대를 전후해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수출입 규모 확대와 정부의 세계화 추진 전략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진출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상품교역과 생산을 포함한 기업활동 전반에서 국경이 사라지는 세계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나라도 외국환관리법 등 해외투자 관련 법규를 개정해 자유화·개방화 기조를 천명했다.

특히 1994년 외환제도 개혁의 하나로 단행된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 확대 조치로 투자액이 급증해 1994년의 총 해외투자액은 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82%가 늘어났으며, 1996년에는 44억 4,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처럼 해외투자가 급증한 것은 민간기업 스스로 해외진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과 정부의 해외투자 지원이 상승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체결(1991. 2. 13.)

3. 남북교류 확대와 경제협력 증가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정세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는 탈냉전으로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가속화되고,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해체와 사회주의 몰락으로 사상의 대립과 갈등이 악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1988년 7월 정부는 전 세계적인 탈냉전 기류와 통일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 7선언)을 발표했다. 7. 7선언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남북한 대결구조를 화해와 협력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는 문호개방을 선언함으로써 남북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남북교역은 연간 승인기준으로 1989년과 1990년 1,000만 달러 수준에서 1991년 1억 1,000만 달러로 급증한 이후 1996년 2억 5,000만 달러까지 증가했다.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에 이어 우리나라가 네 번째를 차지했다.

교역방식은 제3국을 경유한 간접교역이 주류였으나, 1991년 이후에는 직접교역, 임가공교역으로 확장되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을 중심으로 남북한 경제인사 접촉과 상담, 북한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물자교역이 늘어나면서 (주)대우의 도자기 최초 반입승인, 효성물산의 북한산 전기동 최초 반입통관으로 1991년 7월에는 북한산 물품의 반입 승인이 1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1993년 3월 북한의 NPT탈퇴 선언으로 남북경제협력은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미·북 및 남북한 간에 심각한 갈등으로 경제협력은 좌초되는 듯했다. 다행히 1994년 6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해 김일성 북한 주석과 회담에서 핵문제의 해법과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하면서 최악의 경우는 피했다. 이어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로 북미 핵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정부는 그해 11월 남북 경제활성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남북경협을



제네바 합의(1994. 10. 21.)

단계적·신축적으로 확대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기업인의 북한 방문, 시범적 경협사업 및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시설제 반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한정된 범위지만 대북투자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북한과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논의된 기저에는 저임금 노동력, 지리적 인접성, 동일 언어 사용에 따른 원활한 의사소통 등 경제적 장점과 북한의 개혁·개방이 외국경제가 아닌 민족의 경제적 교류·협력이 되어야 한다는 민족적 동질 의식이 깔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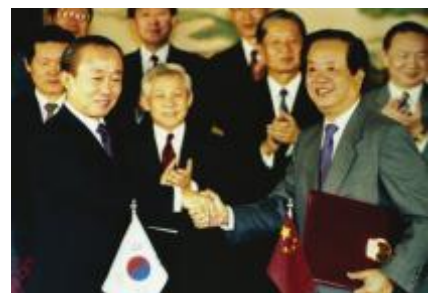
4. 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통한 신 시장 개척

1991년 말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고,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탄력을 받으며 1992년 이후 사회주의 국가의 시장경제 시스템 도입이 빠르게 추진되었다. 사회주의 국가의 맹주를 자처하던 소련과 중국의 시장경제 도입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에게는 새로운 기회였다. 이들 국가와의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북방 시장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 관계는 1990년 양국에 무역대표부가 설치된 이래 교역을 중심으로 경제교류가 크게 늘어났으며, 1992년 8월에는 정식으로 수교가 이루어졌다. 베트남과는 1991년



한·소 수교(1990. 9. 30.)



한·중 수교(1992. 8. 24.)

12월 수교 교섭단이 베트남을 방문한 뒤 1992년 12월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정식으로 수립하고,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구소연방인 독립국가연합(CIS)과는 1991년 12월 러시아와의 수교를 필두로 각 공화국과 외교관계를 개설했으며, 구소련과 체결된 모든 협정은 러시아가 승계했다. 이들 국가와 외교수립 이후 무역 및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경제 관련 일반협정도 잇따라 체결하고, 정상회담 또는 각료회담을 통해 상호 교류기반을 넓혔다.

경제협력 기반의 꾸준한 확충으로 중국, 러시아, 베트남과 교역은 1992년 77억 3,000만 달러에서 1993년 114억 7,000만 달러, 1994년에는 150억 달러로 연간 30.8%의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은 1994년 116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3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했다. 또한 수출입 형태도 전자·섬유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농수산물, 자원 등 1차 상품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무역구조가 정착되며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효과도 컸다.

5. WTO체제 출범과 OECD 가입

1990년대 들어 세계경제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범 등 국제 교역환경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찾아야 했다.

국제교역의 전면적 자유화를 기치로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발족 이래 8차례의 대규모 다자간 협상을 이끌어 온 세계 각국은 1994년 4월 마침내 우루과이라운드 최종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WTO협정에 합의했다. 이 협정은 상품 이외에 국제 무역에서 비중이 높아진 농산물, 서비스, 지적 재산권 분야를 포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는 물론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 수입제한 조치 등 보호주



OECD 가입(1996. 10. 25.)



WTO체제 합의(1994. 4. 15.)

의 수단의 남용을 억제하는 분쟁해결 절차 도입까지 명시했다.

우리나라는 WTO 체제의 일원으로서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에서 손해를 감수하게 되었지만, 주요 교역국의 대폭적인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로 세계시장에 폭넓게 진출할 기회도 얻었다.

WTO 가입과 더불어 정부는 1996년 선진국 정책협조기구인 OECD 가입을 추진했다. 선진화된 경제정책 제도 및 관행을 확립한 주요 선진국과의 상설 대화채널을 확보해 분야별 정책 권고를 듣고, 이를 잘 활용해 우리 경제사회의 세계화 및 선진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였다.

1996년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은 우리 경제의 규모 확대 및 구조의 고도화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개발도상국에서 본격적인 선진화의 궤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OECD 제반 규정의 수락 및 회원국과의 정책협의 등으로 인한 점진적 제도 개편의 부담, 경제운영의 자율성 감소, 개도국 탈피에 따른 국제사회의 각종 혜택 축소 및 폐지의 부담도 떠안아야 했다.

제2장 국제화 시대에서 공적수출신용 기관의 역할

1절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기능 확대

1. 경제성장과 제3차 「수은법」 개정

우리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산업구조 재편, 기술개발과 해외투자 확대 등 경제 환경이 변화하며 수은의 역할도 더욱 확대되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1986년 12월 31일 세 번째로 「수은법」을 개정했다. 주요 골자는 법정자본금의 증액, 수입자금의 지원대상 확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해외투자자금 지원 업무, 국내외 법인에 대한 출자 근거 신설, 자율기능의 제고 등이었다.

법정자본금은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 법정자본금의 확대는 납입자본금 규모가 1985년 4,279억 원, 1986년 4,579억 원에 달해 법정자본금 규모에 육박한다. 해외차입 의존도가 높은 수은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는 자본금 증액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해 현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길도 열렸다. 이는 우리 기업이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하여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지급이자 원천세 면제 혜택을 부여해 해외투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 수은의 업무 관련 조사·연구 업무와 해외차입 및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 등 자금조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내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또한 국채의 보유, 한국은행에의 예입, 기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정되었던 여유자금 운용 방법도 수은의 자금지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하도록 해 여유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으로 하부 위임되었다. 또한 수출경쟁력 유지나 해외투자 촉진을 위해 사무취급 비용과 자산의 감가상각을 충당하는 수준 이상으로 규정된 대출이율이나 어음할인을 및 채무보증료율을 부득이한 경우 예외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업무방법서에 규정된 대출비율, 이자율, 원리금 회수방법 등 여신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수은의 이사회에 위임하고, 업무방법서는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명시해 국내외 금융여건의 변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도록 법을 정비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 수탁 현판식(1987. 6. 1.)

2. 지원기능 다양화와 역할의 확대

1980년대 후반 수은의 수출금융 지원은 주요 지원 대상 품목인 선박 및 플랜트의 수출 부진과 연불금융 수요 감소로 실적 부진에 시달리며 설립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았다. 하지만 1986년 12월 제3차 「수은법」 개정과 두 차례의 수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해외투자에 대한 금융 및 정보의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한편, 1988년에는 수입금융 업무를 개시했다. 앞서 1987년에는 정부의 위탁에 따라 신설된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86~1989년 기간 중 수은의 지원실적은 수출금융에 1조 9,947억 원, 해외투자금융과 수입금융 지원에 각각 1,297억 원과 902억 원에 달했다. 특히 해외투자금융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커지면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뒷받침했다. 수출자금의 지원 대상 품목도 확대하고, 단기 수출거래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해 중소 자본재 및 기계류의 수출을 촉진할 기반을 구축했다.

수은의 ‘지원기능 다양화’는 일반적인 세계화 과정이 수출입 등 무역에서 출발해 해외투자와 대외경제협력의 단계로 고도화되어 간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였다.

3.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책 마련

세계 조선시장은 1970년대 중반 이후 1988년까지 장기 불황이 이어지다, 1989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섰다. 1989년의 시황 회복은 해운업의 호전과 선박수급이 균형을 이루면서 초대형 유조선(VLCC)을 중심으로 노후선박 교체 수요가 많아지고, 선가 급등에 대비한 해운사의 조기 발주가 늘어난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선박 수출은 1980년대 후반 세계 시장점유율과 수주실적에서 심한 기복을 보였다. 수주실적은 1983년의 374만 톤(G/T)에서 1985년에는 134만 G/

T로 반감되었다가, 1986년 이후 엔고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며 1987년에는 사상 최고수준인 416만 G/T를 기록해 세계시장 점유율도 일본의 34.7%에 근접한 30.2%로 급증했다. 그러나 1988년 중 원화가치 급등과 노사분규 및 임금상승으로 278만 G/T로 감소했다가, 1989년 시장점유율이 16.7%로 크게 낮아진 가운데 세계 조선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322만 G/T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연불수출 및 해외투자촉진 간담회(1987. 11. 25.)

한편 플랜트 수출시장은 1980년대 후반 유가급락에 따른 중동 산유국의 개발수요 감소와 해양유전개발사업의 철회, 외채위기를 맞은 개도국의 개발계획 축소로 크게 위축되었다. 선박과 플랜트 수출 부진으로 수은의 수출금융 승인액은 1986년 3,028억 원으로 급감했고, 1987년 중 9,489억 원으로 잠시 회복되었으나, 1988년 2,324억 원, 1989년에는 4,838억 원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1988년 이후 승인실적이 크게 줄어든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저금리 추세로 연불수출거래의 비중이 감소한 데에도 영향이 있었다. 선박의 연불수출의 경우 1980년대 전반 60~80% 비중을 차지했지만, 1988년과 1989년에는 40%대로 급격히 떨어졌다.

선박과 플랜트 등 주요 지원 대상 품목의 수출이 부진을 보이자 수은은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가정용·사무용·오락용 기계류와 전기기기,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류, 광학기기와 정밀기기, 의료용기기를 새로운 지원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수출저변을 넓혔다. 또한 중소 자본재 및 기계류의 수출에 필요한 단기 수출거래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수은이 지원하는 선박 및 플랜트의 제작에 필요한 기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직접대출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 기자재 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산화율 제고를 도모했다.

2절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의 위상 제고

1. 금융환경 변화와 지원 규모 확대

국제화 시대 수은의 역할 증대

1995년 1월 WTO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수출금융 지원은 제약을 받았다. 특히 수출금융 지원을 규정한 'WTO보조금 상계조치협정'으로 우리나라 주요 수출 지원제도였던 무역금융, 수출산업 설비금융과 직접세 감면을 비롯한 수출보조금 지원이 전면 규제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자본재 연불수출을 지원하는 공적



사우디아라비아 Shuaibah 담수설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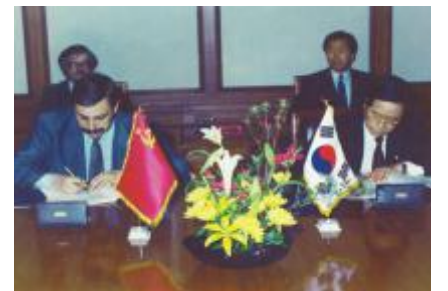
수출신용은 보조금 요소가 있음에도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세계무역 확대에 기여한다는 특성으로 예외 인정을 받았고, OECD수출신용협약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우리나라 경제 환경도 변화가 있었다. 실물경제의 성장에 따라 시장경제원리 도입이 촉진되었고,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과 자유화가 추진되었다.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은 정책금융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술수준 및 생산성 열위, 중간재 국산화 부진으로 국제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현실에서 금융지원 부재 상황은 국내 기업 수출에 적신호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외거래에서 유일하게 허용된 수출지원 방식인 수은의 공적수출신용지원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었다.

실제 1990~1996년 사이 수은의 대출승인 실적 증가율은 연평균 39.7%를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1990년 9,029억 원에서 1994년 3조 8,725억 원, 1996년 5조 2,074억 원으로 대출승인 누계액이 19조 7,090억 원에 달했다.

지원금의 종류는 수출자금 대출 15조 6,023억 원, 기술제공자금 대출 172억 원, 전대자금 대출 4,508억 원, 중소자본재수출자금 대출 6,260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수출자금 대출은 84.8%를 점유하면서 1990년대에도 중화학공업 분야 수출의 명맥을 이어갔다. 그러나 선박금융 비중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산업설비 부문의 수출자금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원인이었다. 1990년 산업설비 부문은 78억 원에 불과했으나, 1996년 2조 1,013억 원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수은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4억 달러가 한국중공업(현 대우중공업)의 사우



소련 VEB와 원료 및 소비재차관 공여계약 체결(1991. 4. 16.)

디아라비아 해수담수화설비 수출에 지원되는 등 규모도 대형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전대자금은 1991년 북방외교라는 명분으로 러시아에 3,597억 원의 소비재차관이 승인됨에 따라 대출승인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소기업 지원에도 역량을 쏟아 1995년 '자본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제도'를 도입했다. 해외투자금융도 늘어나 1990~1996년 사이 1조 6,199억 원의 대출승인을 기록했으며, 전체 비중의 8.2%였다.

2. 중점 지원 분야의 변화와 해외투자 활성화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1990년대 초반 수은의 금융지원은 정책적·제도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1991년까지 수출자금 대출의 주류를 이루던 선박 지원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산업설비와 기계류의 비중이 대폭 늘어난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국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선박수출 결제방식 상당수가 연불에서 일람불로 전환되었으며, 플랜트와 반도체·컴퓨터 등의 수출자금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이었다.

1992년부터 시작된 반도체 수출 지원은 단기수출거래 지원이라는 점에서 수은의 역할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대외거래 관련 정책금융으로서 산업정책의 하나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아 지원이 가능했다. 실제로 미국은 항공, 우주산업, 원자력산업, 일본은 전자, 자동차, 반도체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왔으며, 수출보조금 등 각종 지원으로 독점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1990년 이후 기계류 및 플랜트, 반도체, 신소재 등 첨단기술 산업을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연구개발에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고, 대규모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산업 특성상 수은의 자금지원은 시대적 필연이었다.

반도체의 경우 1990년대 들어 수출증가가 두드러져 1995년에는 최대 수출품목으로 성장했는데, 반도체 수출에 대한 수은의 지원 비율은 1992년 1% 수준



삼성기흥반도체 공장

에서 1996년에는 5% 가까이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선두주자인 삼성전자는 1990년대 초 반도체 불황기에 공격적인 투자로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 반도체를 개발했는데, 수은의 자금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반도체를 통해 축적한 기술은 휴대폰과 LCD TV 등 다른 IT 분야에서 기술 주도권을 쥐는 데 크게 기여했다. 실제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은 199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반도체와 컴퓨터·휴대폰·LCD·자동차 등 첨단 제품 중심으로 재편됐다.

해외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1990년 초중반에 걸쳐 해외투자 관련 자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원규모도 크게 확대되었다. 당시 세계경제의 상호 의존성 증대, 블록화 경향의 가속화를 감안할 때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시장 선점 및 개척 필요성이 높아졌다. 또한 고임금, 높은 토지가격 및 고금리의 영향으로 생산 비용이 높아진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관련 업종의 해외 이전이 새로운 돌파구로 인식되었다.

더불어 금융환경도 해외투자 증가의 요인이었다. 자본자유화에 따른 대규모 외자 유입으로 원화절상이 초래되며 거시경제 운용에 부담이 되었고,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권장하며 자본의 해외진출을 유도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1980년대 후반 이후 해외투자가 크게 증가했고, 1990년 초반에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986년 1억 8,266만 달러에서 1989년 5억 7,080만 달러, 1993년 14억 4,964만 달러, 1996년에는 45억 5,337만 달러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수은도 정부의 해외투자자금 확대 정책에 부응해 지원 대상 기준을 종래 열거주의(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전환해 사실상 일부 금지대상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해외투자를 지원했다. 수은의 해외투자 지원실적은 1986년의 325만 달러에서 1989년에는 1억 8,983만 달러, 1993년 2억 9,602만 달러를 기록했다. 1994년 우리나라 해외투자 총액은 전년대비 82%



수은 본점에서 개최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1987. 5. 20.)

나 늘어난 23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 중 16%에 해당하는 3억 7,200만 달러를 수은이 지원했으며, 1996년에는 3억 8,700만 달러를 지원했다.

특히 이 시기 제조업 분야의 해외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진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시설을 인건비가 낮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그런데 해외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자금력이나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었다. 이때 중소기업들의 돌파구가 된 것이 다른 상업금융기관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수은의 자금지원이었다.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금리, 대출비용, 지원절차 등 금융조건을 우대했다. 중소기업 지원비중은 계속 확대되어 1996년 36%에 달했다.

3. 정부수탁 업무 수행

대외경제협력기금 수탁

주로 對 개도국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수출과 해외투자 및 중장기 연불수출금융(특히 플랜트 수출) 등 국외를 무대로 일하는 수출입은행의 업무 성격상 일맥상통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를 수은에 위탁한 것이며, 수은은 노하우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 경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수은은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설립 이래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한 1996년까지 수원국의 경제개발계획 조사, 경제현황 분석, 사업타당성 조사, 사업심사 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했다. 그 결과 23개국의 58개 사업에 총 7,113억 원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다.

또한 적은 자금으로 높은 지원 효과를 얻기 위해 경제협력 가능성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중점지원국을 선정했으며, 개발수요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해 수원국들과 정책협의를 적극 추진했다.

남북협력기금 수탁

7·7선언에 따른 대북경제개방조치가 시행되면서 정부는 남북교류를 촉진할 법적 제도 마련에 들어갔다. 그 첫 걸음으로 남북교류협력을 규정할 법률과 이를 지원할 기금설치에 대한 법률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1990년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법(안)을 의결하고, 3월 5일 제148회 임시국회에 남북협력기금법(안)을 제출했으며, 같은 해 7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8월 1일 「남북협력기금법」(법률 제4240호)을 공포했다.

이후 1990년 12월 31일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237호)을 제정하고, 1991년 3월 27일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총리령 384호), 4월 17일 남북



대북 쌀 지원(2007. 12. 10.)

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통일원고시 1991-1호) 등 하위법령을 제정해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 규정이 완비되었다.

수은은 1991년 1월 4일자로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1991년 2월 1일 남북기금부를 정식 발족시키고 1991년 3월 20일 최초의 정부출연금을 납입 받아 수탁업무를 개시했다.

1991년 3월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위한 사업에 1억 6,400만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사업 지원, 10월에는 천지무역의 대북한 쌀 반출과 관련한 손실보조, 1992년 9월에는 8·15 기념 이산가족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을 지원하면서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했다.

그 후 북한 핵문제로 지원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국제사회에서 북한 핵문제가 타결된 후에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1995년 쌀 15만 톤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대북경제협력 사업을 재개했다.



제3편

국제거래 지원
핵심은행으로 도약

1997-2007

제1장

IMF 외환위기 극복

1절 한국경제 최악의 IMF 외환위기

1. 경상수지 적자와 대외채무 급증

우리 경제는 1990년대 들어 연 5~9%의 안정적인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물가도 안정되어 물가상승률은 연 4~6%대를 유지했으며 이에 따라 금리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회사채수익률이 1993년 이후 연 12% 내외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1994년부터 경상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1996년에는 교역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인 230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이는 GDP의 4.9%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상수지 악화는 대외채무 급증으로 이어져 1996년 우리나라 외채규모는 GDP의 30%가 넘는 1,600억 달러 수준까지 늘어났다. 1993년까지는 장기외채의 비중이 높았으나 1994년부터 단기채무 비중이 급증해 금융부문의 총외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서며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2. 대기업 연쇄 부도로 금융기관 부실 도미노

대외 악재로 인해 1996년 이후 경기가 둔화되며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들은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한 전략으로 신규 사업 진출을 시도했는데, 독자적인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한 진출이 아니라 이미 타 기업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산업으로의 진출을 시도한 과정에서 대규모의 중복과잉투자가 발생했고, 결국 기업들의 유동성 악화 및 수익성 저하로 이어졌다.

금융부문 대외채무 추이		(단위 : 억 달러, %)									
		1994	1995	1996				1997			
				1/4	2/4	3/4	4/4	1/4	2/4	3/4	4/4
대외채무		650.9	896.4	927.1	988.4	1,042.3	1,165.3	1,262.2	1,293.7	1,270.9	899.0
	단기채무	446.4	586.6	600.1	632.2	650.1	730.1	802.1	812.9	754.2	423.7
	(비중)	(68.6)	(65.4)	(64.7)	(64.0)	(62.4)	(62.7)	(63.5)	(62.8)	(59.3)	(47.1)

(자료: 한국은행, ECOS)

1997년 1월 한보그룹을 신호탄으로 삼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 등 대기업이 부도처리 되었으며, 7월에는 국내 3대 자동차기업인 기아그룹의 부도가 발생했다. 전국 어음부도율은 1996년 0.14%에서 1997년 1/4분기에는 0.23%, 10월에는 0.43%로 증가했다.

기업의 연쇄부도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되어 일반은행의 무수익여신(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이 1996년 말 12조 2,000억 원에서 1997년 9월 말에는 21조 9,0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금융기관의 대기업 위주의 불합리한 여신관행이 바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진 것이다.

3. 바닥난 외환보유고, IMF 구제금융 요청

외환시장도 1997년 들어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 지속과 외자유입 부진 등으로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등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기아 사태 처리지연, 금융기관 부실채권 급증, 동남아시아 외환위기가 겹치면서 우리나라 경제 및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불신이 높아져 8월부터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도 순유출로 돌아섰다.

1997년 10월에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홍콩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이에 더하여 외국 금융기관이 단기외채의 연장을 거부하면서 외환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해 원/달러환율이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5% 이상 상승하며 달러 당 965원까지 치솟았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도 무위로 돌아가면서 원화의 평가절하는 11월 들어 더욱 가속화 되어 원/달러환율 1,000원이라는 심리적 저지선까지 무너졌다. 환율 급등에 따라 정부는 일일 환율 변동폭을 10%로 확대해 외환시장의 수급기능을 살리려 했으나 이미 터진 붓물은 되돌릴 수 없었고, 정부는 결국 1997년 11월 21일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IMF의 자금지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은



IMF 구제금융요청 발표 기자회견(1997. 11. 21.)

해결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었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국내 주요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대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원화가치는 1년 전에 비해 60%, 주가는 50% 하락했다. 금리도 급등해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이 17년 만에 최고 수준인 30%에 육박했다.

국가부도까지 거론되던 엄중한 상황은 12월 24일 IMF와 8개 선진국으로부터 100억 달러의 조기자금지원 약속을 받고, 1998년 1월 채권은행단과 단기외채의 중장기 전환협정이 타결되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2절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금융기관과 대기업 구조개혁 단행

IMF는 자금지원 조건으로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거시경제 목표의 설정과 긴축적 통화정책, 신축적 환율정책의 시행, 금융부문과 관련하여 개혁법안의 제정, 개혁조치 시행 등 구조조정 추진, 자본시장 및 기업 환경 관련해서는 무역 및 자본자유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동시장 개혁, 정보공개 확대를 요구했다.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금융구조조정은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금융산업의 대외신인도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부실채권 누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금융기관을 정리하고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합병, 경영진 교체, 조직 및 인력구조조정 조치가 뒤따랐다.

제1단계 구조조정(1997년 11월~2000년 8월)으로 1997년 12월에 14개 종합금융회사와 2개 증권회사, 1개 투자신탁회사의 영업이 정지되었고, 1998년에는 7개 은행, 3개 증권사(기존 영업정지 2개사 포함), 6개 보험사 및 14개 중금사(기존 영업정지 11개사 포함)가 인가 취소, 합병 등의 형태로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이후에도 2000년 8월까지 3개 은행, 3개 증권사, 7개 보험사, 7개 중금사 등이 추가로 정리되었다.

주요 시장지표 추이(1996~1997)

(단위 : 포인트, 원, 억 달러, %)

		1996	1997					
			3월	6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본시장	종합주가지수	651.2	677.3	745.4	647.1	470.8	407.9	376.3
	상승/하락률	-	4.0	10.0	-13.2	-27.2	-13.4	-7.7
	회사채수익률(AA-)	12.6	12.5	11.8	12.6	12.6	15.1	29.0
	상승/하락폭	-	-0.1	-0.75	-0.85	-	2.5	13.9
외환시장	원/달러환율	844.2	897.1	888.1	914.8	965.1	1,163.8	1,415.2
	절상/절하율	-	-5.9	1.0	-2.9	-5.2	-17.1	-17.8
	외환보유액	332.4	291.5	333.2	304.3	305.1	244.0	204.1



자산관리공사(당시 성업공사)와 한국산업은행 등 30개 기관의 부실채권양도양수 계약 체결(1997. 12. 15.)

공적자금 조성 및 지원을 통한 금융기관 재무구조 개선도 추진됐다. 공적자금은 1997년 말 이후 2000년 8월까지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과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의 64조 원 규모의 채권발행,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을 통한 27조 원 규모의 공공자금 조성, 기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금액 25조 3,000억 원 등 총 116조 3,000억 원이 조성되었다. 조성된 공적자금은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 출자, 예금대지급 등으로 2000년 8월까지 총 109조 6,000억 원이 사용되었다.

2차 구조조정은 2000년 들어 금융부실이 다시 증가하면서 2차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건전성이 떨어지는 은행들을 금융지주회사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두 차례의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은행은 4개 선은행과 2개 외국계 은행으로 재편되었다.

금융기관 개혁과 함께 기업의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했다. 1998년 1월 정부는 재계와 대기업 구조개혁 5대 원칙에 합의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했다. 5대 원칙의 내용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 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사업 부문 선정,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이었다. 이것을 근거로 2~4월 중 64개 기업집단은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했고, 5월에는 각 은행에 기업부실 판정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리고 동 위원회에서 기업집단 소속 부실징후기업 등 총 313개 기업을 대상으로 부실정도를 평가한 후 이중 55개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판정해 청산, 매각, 합병 절차를 밟았다. 1998년 6월에는 회생 가능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자산매각, 외자유치 등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추진했다.

1999년 8월에는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억제,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지배 차단, 변칙상속 및 증여 방지라는 3대 보완과제가 추가되었으며, 5대 그룹의 9개 중복투자업종을 대상으로 정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한 대규모 사업교환(빅딜)은 1999년을 정점으로 통합 및 구조개선 작업이 일단락되었다.

제2장 국제거래 지원 역량 강화

1절 IMF 위기극복과 수출입은행의 역할

1. IMF 외환위기를 넘는 수은의 대처

적극적인 제도발굴로 지원 범위 확대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는 가장 적절한 대처는 수출 활성화였다. 이와 관련, 수은은 정부의 수출 진흥정책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상업금융의 시장실패를 적극 보완함으로써 국제거래 지원 전문 금융기관의 역할에 더욱 충실했다.

1998년 11월 중소·중견기업 지원 종합대책의 하나로 1조 원 규모의 회전환도 방식 수출자금을 신규 대출했다.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내 해운사의 외항선박 구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지원상의 역차별을 해소하였고, 수출기업의 다양한 금융지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채무보증을 활성화했다.

상업금융을 보완하는 ‘은행의 은행’

국내 상업금융시장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경색이 심화됨에 따라, 공적수출 신용기관인 수은의 ‘상업금융 보완 역할’을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일본으로부터 차관도입 계약(1,300억 엔) 체결(1998. 5. 27.)

먼저 무역어음재할인 업무를 1998년 신규로 시행했다. 무역어음재할인은 민간상업금융시장의 단기 외화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국내 상업금융기관이 우리나라 기업에 무역금융 지원과 관련해 발행한 무역어음을 다시 할인하는 업무로서, 수은은 상업금융기관 앞으로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수은은 ‘특별수입신용’을 신규로 취급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로 해외자금시장을 통한 정상적인 외화자금조달이 어렵게 됨에 따라, 수은이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일본국제협력은행으로부터 특별자금을 조달해 수출용원자재 수입거래를 대상으로 외화수입자금을 지원하는 특별제도였다.

2. 맞춤형 금융상품 지원확대

신규 금융지원 도입과 신용여신 확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금융위기를 맞고 있던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맞춤형 금융상품 수요가 크게 늘어났으며, 수은도 프로젝트 파이낸스 및 스트럭처드 파이낸스 방식의 금융을 도입했다.

2000년 상반기에는 수출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금융우선을 수주조건으로 제시하는 대형 자본재수출거래를 국제 상업금융기관과 공동 지원하는 대외채무보증 및 이자율지지(Interest Rate Support) 업무를 본격 취급했으며, 기본대출약정(Framework Agreement)을 통한 직접대출도 이 시기에 도입했다.

외환위기로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고 우리 기업의 신용도 또한 전반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기존의 대출금리 체계로는 대출금리가 높아 신용대출 취급 확대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용여신 취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먼저, 2000년대 초에는 기업신용등급의 단계를 세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여신 취급대상 기업신용등급을 확대했으며, 각 신용등급별로 신용대출 취급 가능기간을 여신내규에 명문화함으로써 신용대출 취급을 제도화했다.

금융지원 조건 개선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우리 기업의 대외수주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극대화를 위해 수은은 2000년대 들어 금리 및 수수료율 산정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금리 및 수수료율 산정 방식을 시장친화적으로 변경해 금융지원 조건을 개선했다.

또한 연체기간과 무관하게 높은 이자율로 추가 부과되던 지연배상금률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며, 지연배상금률 자체도 종전에 시중은행이 부과하던 20% 상당의 높은 요율에서 연체기간별로 정상 대출이율의 3~9%를 추가 부과하도록 대폭 인하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수은이 마련한 이러한 일련의 개혁적 조치는 우리 기업은 물론 국내 상업금융기관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수은의 여신 업

무 실적은 이 시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대폭적인 신장세를 기록했다. 수은의 수출금융 지원실적 증가와 맞물려 침체에 빠졌던 우리나라 수출실적도 회복세로 돌아섰고, 2002년 말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수은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2절 국제거래 핵심은행을 향한 도전

1. 수출지원 역량 강화

중기경영 로드맵과 제10차 「수은법」 개정

2004년 1월 수은은 ‘국제거래 지원 핵심은행’을 목표로 ‘2004~2006 수은 중기경영 로드맵’을 확정했다. 그리고 목표 구현을 위해 ‘법규의 선진화’ 추진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세부과제로는 지원대상거래의 확대, 지분 참여방식의 지원 및 최단 대출기간 제한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

때마침 2004년 12월 대통령의 러시아, 인도, 동남아, 남미 순방외교 과정에서 수은을 통한 지원 확대 방안이 논의되었고, 자기자본 확충, 여신한도 확대, 프로젝트 회사 앞 출자 허용에 필요한 법 개정 당위성이 표출되면서 2005년 5월 31일 「수은법」 10차 개정이 이뤄졌다.

10차 법 개정으로 수은은 중전의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의 범주를 벗어나 지적자산이 결합된 대외거래, 대외경제협력기금과 혼합된 대외거래와 지분참여방식의 해외프로젝트 출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6개월 미만의 거래가 주종을 이루는 정보기술 및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의 단기수출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6개월 미만 업무제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수출거래 지원 강화

수은은 중장기 수출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변동금리부 직접대출 취급 확대’, ‘스트럭처드 파이낸스 방식의 선박 직접대출 확대’, ‘외항선박 구매자금 지원제도의 정착’을 추진했다.

외환위기 이후 수은은 플랜트 수출거래를 중심으로 변동금리부 직접대출을 본격적으로 취급하였고, 고정금리부 대출만을 취급하던 수은으로서는 획기적인 변화였다. 수은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지면서 여신제도가 더욱 다양화된 것이다. 또한 스트럭처드 파이낸스 방식의 직접대출 제도가 정착되고, 2002년 4월 개정된 OECD 선박수출신용양해에 따른 실질적인 대출이자율 인하효과로 수출금융 지원실적도 대폭 증가했다.

단기수출 거래지원에도 수은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03년 사후송금방식의 수출거래에 따른 외화매출채권을 비소구조건으로 매입해 주는 수출팩토링

업무가 도입되었고, 포괄수출금융 지원제도의 개선과 함께 미래성장형 수출중소기업 무담보소액 대출 제도를 도입했다.

포괄수출금융(현 수출성장자금) 제도는 수출제품 제작금융을 차주의 수출실적에 근거해 실적기준 대출하는 것이고, 2005년 3월 도입된 미래성장형 수출중소기업 무담보소액 대출은 과거의 특례수출신용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제작능력은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상업금융기관의 수출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제작기술과 수출거래의 안정성을 담보로 대출하는 제도이다.



수출실행지원금 홍보(2005. 12. 20.)

2. 수출금융 실적 증가

대출 지원실적 증가

IMF 외환위기는 여설적이게도 우리나라 경제구조와 수은의 업무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한국경제가 해외수출시장 활성화를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만큼, 수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수은이 설립된 1976년에 수은의 연간 지원실적은 923억 원(수출관련 대출 866억 원, 해외투자관련 대출 57억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10여 년이 흐른 1985년 연간 대출 지원실적은 8,605억 원으로 약 9.3배 증가했다. 그리고 1995년에는 4조 1,780억 원으로 1985년 대비 약 4.9배의 기록적인 신장세를 나타냈다.

비약적인 성장은 계속되어 10년 후인 2005년 대출 지원실적은 15조 711억 원으로 1995년 대비 3.6배 증가하였다. 물론 1997년부터 2001년까지 IMF 외환위기 기간에는 대출 지원실적은 7조 원 내외로 정체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IMF 외환위기의 공식적인 극복을 선언한 2002년 이후부터 지원실적은 두드러지게 증가하여 2002년 한 해 동안 8조 3,754억 원을 기록했으며, 2005년에는 15조 711억 원으로 다시 두 배 가까운 신장세를 보였다.

수출관련대출

2001~2005년 기간 중 수출자금 대출의 증가내역을 수출자금별로 보면, 외국환 업무와 전대자금대출 및 포괄수출금융 업무가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외국환업무는 설립 이래 수은의 부대업무로 취급해 오다가 2002년 3월에 「수은법」 개정을 통해서 본업무화(「수은법」 제18조 제1항 제10호) 됨에 따라 비약적인 업무신장을 보였으며, 2001년에 629억 원이었던 외국환업무는 2005년에는 2조 983억 원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전대자금 대출도 2001년에 340억 원이었던 지원실적이 2005년에는 2,472억 원으로 약 7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거래로 선정된 사우디아라비아 슈아이바(Shuaibah) 사업이 게재된 PFI 표지(2005. 12.)



인도네시아 앞 CDMA수출을 위한 직접대출 계약체결(2003. 08. 27.)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제작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 9월 ‘자본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란 이름으로 도입된 포괄수출금융 지원제도는 IMF 외환위기 기간 중 포괄수출금융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통화전환옵션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등 지원제도를 개선한 데 힘입어, 2001년 8,945억 원에서 2005년에는 3조 6,852억 원으로 실적이 4배 이상 급증했다.

이 기간 선박 및 산업설비 등 대규모 자본재에 대한 중장기 수출금융 지원실적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프로젝트 파이낸스 및 스트럭처드 파이낸스 거래 등 새로운 금융지원기법이 기존의 연불금융 및 정보보증부 단순 직접대출을 대체함으로써, 질적인 면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해외투자관련 대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2002년부터 해외투자관련 대출(해외투자자금 대출, 해외사업자금 대출 및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이 2003년에는 외환위기 이전 최고 수준이었던 1997년의 6,519억 원을 초과해 7,882억 원에 달했다.

해외투자자금 대출의 지원내역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해외투자자금 대출(현지법인 앞 지분투자 및 대부투자)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국법인의 사업자금 대출이 해외투자자금 대출을 크게 추월해 해외투자관련 대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세계 각국이 자원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자원개발 사업 자금 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

수입관련 대출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수은의 3가지 대출 중에서 가장 큰 업무 신장세를 보인 부문은 수입자금 대출이다. 외환위기 이전 전체 대출의 1~2% 수준에 불과했지만, 외환위기 중 수출제품 제조용 원부자재 수급 애로에 따라 수출제품 원재료 조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적기 수입지원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면서 수입자금

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수출품목이 정보기술(IT) 제품을 중심으로 소형·경량화되며 수출운송수단도 선박이 아닌 화물기를 이용한 수출이 늘어나 국적항공사의 화물기 도입 대출이 증가한 것도 한 요인이다.

외환위기 이전 2,500억 원을 넘지 못했던 수은의 수입자금은 2002년부터 매년 실적을 경신하며 2005년 1조 6,612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보증 지원실적

보증업무도 IMF 외환위기로 인해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용도가 하락함에 따라, 정부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보유한 수은에 해외 발주자의 이행정보증수요가 집중된 결과였다. IMF 외환위기 발생 이전인 1996년 4,230억 원에 불과하던 보증실적은 1997년 3조 3,440억 원으로 1년 만에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05년 12조 7,755억 원의 지원실적을 냈다.

보증지원내역을 보면 채무보증보다는 이행성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행성보증 중에서도 선박건조계약의 선수금환급보증이 전체 이행성보증지원의 약 85%를 차지했다. 한편 채무보증 업무 중에서 국내차주를 위한 대내채무보증은 설립 당시부터 수은의 본업무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단기 대내채무보증 업무는 유명무실했고, 중장기 대내채무보증과 대외채무보증 업무는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를 위해 제한적으로 취급했다. 특히 1981년 2월 업무방법서 개정에 따라 부대업무로 도입된 후 2002년 3월 「수은법」 8차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확충한 대외채무보증 업무는 해외발주사업의 재정자문(Financial Advisor)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상업금융기관과 협조금융을 취급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자율지지 업무와 함께 취급했다.

3. 세계 속의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 성장

국제금융시장에서 최우수 차입기관으로 선정

IMF 극복에 큰 힘을 보탠 수은은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졌고, 이는 세계 권위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평가를 통해 확인되었다. 특히 2004년 12월 3대 금융전문지인 IFR(International Financing Review), Finance Asia, The Asset에서 2004년 최우수 차입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최우수 차입기관 선정은 매년 각국 정부, 은행, 기업 등을 포함한 모든 차입기관을 대상으로 1년 동안의 차입실적을 토대로 시장상황에 따른 차입전략, 차입조건, 투자자 반응 및 주간사기관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200개 이상의 기관투자자와 은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참고로 최종 선정한다.

수은은 2004년 한 해에만 34억 4,000만 달러를 해외에서 차입했고, 2월 10억 달러 글로벌본드, 10월 3억 달러의 유로화본드 등 4회에 걸친 공모 및 30여



IFR아태지역 최우수 차입기관 시상식(2005. 2. 1.)



Finance Asia 최우수 차입기관 시상식(2005. 1. 15)

건의 사모채권 발행과정에서 적절한 차입시기의 선택, 다양한 발행통화 및 만기구조 등 다양한 차입전략을 선택한 것이 시장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IMF 외환위기 발생 이래 중단한 채권발행을 2002년 재개한 이후 단기간에 국제 채권 발행 시장에서 이 같은 성공을 거둔 것은 각국 대상 투자설명회는 물론, ADB, IMF 총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은을 적극 홍보한 것이 적중했다.

또한, 한국 금융기관 최초로 유로머니(Euromoney)로부터 정책금융기관 부문 최우수차입자로 선정되며 국제금융시장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국제금융시장의 4대상을 수상한 수은은 해외투자자로부터 더욱 좋은 반응을 얻는 결과로 이어졌다.

2006년 10월에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로부터 Aa3 신용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당시 우리 정부보다 높은 수준의 신용등급이었다. 과거 개별기업의 신용등급은 국가신용등급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유지되었지만, 2000년대 초반 개별기업이 자국 국가신용등급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수은도 국가신용도를 뛰어 넘는 신용등급을 받게 되었다.

수은이 AA 신용등급을 획득하면서 반사이익도 적지 않았다. 각국의 중앙은행을 비롯한 전 세계 최상위 기관투자자 가운데 AA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만 투자하도록 규정된 곳이 많았는데, 신용등급의 상향조정으로 새로운 대형 기관투자자들을 유치할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실제로 높은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2007년 10월에는 아시아 지역 최우량 차입기관 가운데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최초의 미 달러 표시 채권발행인 1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 발행에 성공했다.

국제금융기관과 공조 체제 구축

국제금융기관과의 협력 체제도 더욱 강화했다. 2005년 2월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과 협조용자 확대 및 상호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이 대표적이었다. IDB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 전제되어야 했는데,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IDB 가입을 추진해 25년 만인 2004년 11월 가입 승인을 받았으며,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였다.

2005년 9월에는 미국수출입은행과 대한항공의 항공화물기 도입지원을 위한 공동보증계약을 체결했다. 2004년 10월 양 기관이 체결한 기



미주개발은행(IDB)과 협조용자 확대 및 상호협력증진 업무협약 서명식(2005. 2. 10.)



미국수출입은행과 항공화물기 도입지원을 위한 공동보증계약 체결 (2005. 9. 23.)

본협약이 토대가 되었으며, 실제거래에 적용한 최초의 공동보증거래이다. 수은은 이 계약을 통해 화물항공기 지원 국제관행 파악과 금융기반을 넓히는 한편, 항공기 부문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었다.

2005년 말 기준 IBRD, IDB, ADB, AfDB, EBRD 등 국제개발금융기구와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 수출신용기관을 포함해 총 35개 기관과 36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 세계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기반이 되었고, 대외거래 전문은행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4.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본격화

1995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승인규모는 4,086억 원에 그쳤다. 그러나 지속적인 업무 확대로 1999년 기금 설립 12년 만에 누적 지원 1조 원을 돌파했으며, 2005년에는 다시 2조 원을 돌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우리의 수출 유망사업을 발굴해 기금 주도의 적극적인 사업발굴체제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중점지원국가 및 지역별 거점국가를 대상으로 이국간 정책협의(Policy Dialogue)를 적극 활용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책방향과 개도국의 개발계획을 충족하는 사업발굴에 착수했다.

2005년에는 베트남, 필리핀 등 경험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국별프로그램(Country Program)을 도입하는 한편, 기금 주도의 능동적 사업발굴과 체계적인 사업관리 지원을 위해 2006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주재원을 파견함으로써 해외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기울였다.

또한 사업 준비가 미비한 유망사업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 조사, 사업설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개발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차관지원이 예상되는 중점지원국을 중심으로 다년간의 차관공여한도 및 지원조건을 규정한 '정부 간 기본약정(Framework Arrangement: F/A)'을 체결하는 대신 시행약정(Arrangement: A/R)은 체결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지원방식도 다양화해 지원 초기인 1990년대 중반에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다자개발은행(MDB)과 공동 지원하며 MDB가 보유한 원조시장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쳤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는 MDB가 시행하는 개도국 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마련했다. 나아가 MDB 사업시행 경험과 국제경쟁력을 토대로 개도국 해외사업을 발굴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아울러 우리가 중점 지원하는 신흥경제권인 아시아 지역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개도국의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지원조건인 '선택지원제도'를 2006년 새로 도입했다. 이는 최우선 지원사업에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동일한 양허성 수준 내에서 차주국의 편의에 따라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탄력적으로 선택하도록 조건을 개선해 수은의 지원 경쟁력을 높였다.



대북 식량 목록 지원

5. 남북교류 확대와 남북협력기금 활성화

기금조성과 경제협력 여건의 변화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정부출연으로 250억 원을 조성한 이래 2007년까지 정부출연금 3조 7,464억 원, 민간출연금 23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4조 3,373억 원, 운용수익 등 기타 수입금 4,370억 원 등 총 8조 5,230억 원이 조성되었다.

정부출연금은 1991~1996년 기간 중에는 총 4,850억 원이었으며, IMF 외환위기 시기인 1998~1999년에는 정부출연이 잠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0년 6월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화해무드에 접어들며 기금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었고, 정부출연금 규모도 대폭 늘어나 2001년 5,000억 원, 2002년 4,900억 원, 2003년 3,000억 원, 2004년 1,714억 원, 2005년 5,000억 원, 2006년 6,500억 원, 2007년 5,000억 원 등 2000~2007년 중 총 3조 2,114억 원을 출연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원규모와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2000년 이전 지원 분야는 비료·쌀 지원 등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대부분이었고, 경수로 건설사업 등 일부 경제 분야에서 산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수준이었으나, 2000년 이후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인적왕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졌다. 규모도 1999년까지 총 3,400억 원에 불과했지만, 2000~2007년에는 총 4조 8,400억 원을 지원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 정부출연금 현황								(단위 : 억 원)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99
금액	250	400	400	400	2,400	1,000	500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	1,000	5,000	4,900	3,000	1,714	5,000	6,500	5,000

남북경제교류 확산은 인적교류로 이어져 1999년 330명이었던 연간 방북인원은 2000년 1,000명을 넘어섰고, 2005년 1만 명을 돌파했다. 1990년대 연간 5건 이하이던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건수는 200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해 연간 10여 건에서 많게는 47건에 이르렀다.

양적 성장 못지않게 사업의 질적 향상도 이루어졌다. 특히 거래말큰사전 편찬사업 추진으로 남북 편찬위원들 간의 정례적인 만남과 교류가 이루어졌고, 남북공동편찬요강 등을 공동으로 마련함으로써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를 극복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체육교류도 활발해 국제대회 남북공동입장은 물론 단일팀을 구성해 대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종교 교류도 종교인 간 단순 만남으로부터 북한 종교시설 복원 등 인적·물적 교류 사업으로 연결되었다. 아울러 민족문화유산 복원 사업처럼 그 의의가 높고 남북 합의가 이루어진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사회문화 분야 지원은 2000년 9억 원에서 2007년 86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인도적 지원은 1995년부터 당국, 민간단체, 국제기구를 통해 추진되었다. 북한 주민의 식량난 완화 차원에서 2000년 이후 차관방식으로 식량을 지원했고, 비료도 매년 20~30만 톤씩 무상으로 지원되었다. 또한 북한 지역 자연재해나 재난 발생에 따른 이재민 구호, 피해복구 물자 지원 등 긴급 구호 지원도 활발했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0년부터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했다. 대북지원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저변을 확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미치기 어려운 분야와 지역으로 다양화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WFP, WHO, UNICEF 등 국제기구도 인도적 지원 행렬에 동참했다.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바탕으로 주요 국제기구의 대북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확산되었고, 폐쇄적인 북한이 국제사회와 접촉하는 기회도 확대되었다.

2000년 이후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정비되면서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대출도 꾸준히 증가해 2000년 5억 원에 불과하던 지원규모는 2007년 2,727억 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남북한 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 상당수가 자금이 풍부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의 실효성은 더욱 높았다. 또한 교역·경협보험 제도 도입으로 국제교역과 비교해 위험이 높은 대북거래의 안전판을 마련해 남북경협 추진을 활성화시켰다.

개성공단 조성과 경수로사업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협사업의 영역은 2000년대 초반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조성사업, 금강산 관광사업의 소위 3대 경협사업에서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 농수산 협력사업 등으로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대표적인 남북 상생 사업인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2004년 가동 이후 남북 경

제협력의 상징이 되었다. 개성공단은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하나로 2000년 8월 개성공업지구 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면서 단초를 놓았고, 2002년 11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개성공단 근로자

남북협력기금은 생산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용수시설,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내부 기반시설 건설비용과 외부 기반시설인 전력·통신 사업비를 지원했다. 기반시설이 확충되면서 2004년 6월 15개사에 불과했던 입주기업은 2007년 말 65개사로 꾸준히 늘어났다. 또한 2004년 12월에 첫 제품을 생산한 이래, 연간 생산액도 꾸준히 증가해 2007년 1억 8,478만 달러에 달했고,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는 만 명을 넘어섰다.

개성공단 사업에 앞서 시작된 경수로사업은 1994년 북미 간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간 협력으로 추진되었다. 1995년 3월 한·미·일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를 설립하고 대북 경수로발전소 공급에 착수했다. 이어 1995년 12월 KEDO와 북한이 경수로발전소 공급협정을 맺고, 1998년 11월 사업비 분담안을 의결했다. 예상사업비 46억 달러 중 실제 공사비의 70%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한편, 남북협력기금에서 경수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1999년 12월 수은과 KEDO는 3조 5,420억 원의 용자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1999년 12월 KEDO와 한국전력은 100만kw 경수로발전소 2기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9월 본 공사 주요 공정인 본관 기초 굴착공사를 개시했다.

남북협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1998년 초기공사비로 675억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총 1조 3,744억 원을 집행했다. 또한 공정별 사업추진 계획의 수립과 사업비 산정, 제반 협정 및 계약 문안 작성, 소요재원의 조달 및 상환계획 수립, 공정 점검 및 공사비 집행 등 경수로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경수로 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경수로 사업은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의혹이 제기되면서, 2003년 12월 1일 이후 공사가 잠정 중단되었다. 이후 북한 핵문제가 첨예한 대립으로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KEDO는 2006년 5월 31일 경수로 사업의 종료를 선언했다.

기금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대북교역 및 투자기업 대출은 기금 설립 당시부터 취급근거가 있었으나, 시행은 1999년 관련 세부지침이 제정된 이후 시작되었다. 이후 2000년 6.15 정상회담, 2003년 8월 4대 남북경협합의서 발효로 남북한 경제교류 여건이 크게 호전되면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설명회(2006. 5. 12.)

서 확대되었고, 지원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했다.

2000년 11월에는 대출비율을 소요자금의 50%에서 80%까지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신용대출제도를 도입했고, 2001년 12월에는 대출 금리를 연 6%에서 국고채 유통수익률(3년)을 적용한 금리체계로 변경했으며, 신용대출한도도 확대했다. 2003년 2월에는 소액 대출(30억 원 미만 교역자금 대출, 50억 원 미만 경협자금 대출)에 대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절차를 생략했고, 운전자금 형식의 실적한도 대출과 중소기업신용 대출 특례제도를 도입했으며, 대출이자율도 인하했다.

2004년 1월에는 대출비율을 소요자금의 70~80%에서 80~90%로 확대하고, 신용대출 대상 기업신용등급을 5등급에서 6등급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신용대출 비율을 종전보다 10% 상향 조정하고, 신용보증서 제출 시 미보증금액에 대한 신용대출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또한 북한에 소재한 자산을 첨담보로 한 신용대출도 실시했다.

남북한 교역 안정성 제고와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2004년 5월부터 교역분야 손실보조제도를, 9월에는 경협분야 손실보조제도를 본격 실시했다. 이는 일종의 대북무역 및 투자 보험제도로 대북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대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거래위험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였다.

2005년 1월에는 개성공단 개발사업 등 경협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투자기업들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맞추어 기존의 경제협력자금 대출을 투자자금, 산업용지분양자금, 운전자금,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 대출 등으로 세분화했으며, 한정된 기금재원 확충을 위해 타 금융기관과 협조대출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대북투자기업들 대부분이 한계기업으로서 담보여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 개성공단 내 투자자산을 정규담보로 인정함으로써 대북투자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했고, '북한 소재 자산의 담보취득 및 관리기준'도 마련했다.

2006년 1월에는 손실보조 약정한도를 경협손실보조는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교역손실보조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경협손실보조



남북장관급 회담

신청요건도 업력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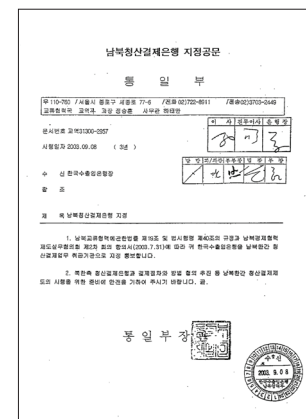
2007년 2월에는 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 해제요건을 명문화하고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서식을 표준화하는 한편, 주요 항목의 전용한도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민간단체에 대한 선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지원 한도액도 50%에서 70%로 상향 했다. 2007년 7월에는 개성공단 투자자산 담보인정비율을 44%에서 54~59%로 확대했고, 개성공단 투자자산 후취담보 대출취급요건을 개선해 취득대상기업 및 대출한도금액을 확대했다. 또한 발급기관의 신용도 및 대출기간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하고, 예금 및 부동산 담보제공 시 가산율을 추가 인하하는 등 채권보전방법에 따라 신용위험가산율을 현실화 했다.

남북 청산결제은행 지정

정부는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 후속 조치로 2000년 12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를 포함한 4대 경협합의서에 서명하고, 2003년 8월 발효통지문을 교환함으로써 마침내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를 부활시켰다. 남북한 간 경제활동에 최초로 국제관행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2003년 7월 29일 제2차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에서는 '청산결제합의서' 이행을 위해 남한의 수은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이 양측 청산결제은행으로 공식 선정되었고, 이후 3차례의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회의를 거쳐 2004년 4월 남북 당국 간 청산결제합의서가 가서명되었다.

이후 4차례에 걸친 남북 청산결제은행간 접촉을 통해 청산결제대상, 결제기간, 결제통화, 대금지급절차 등이 합의에 이르렀고, 2004년 6월 25일 수은과 조선무역은행은 '청산결제 업무에 관한 합의서'에 가서명 했다. 이로써 남북 간 직접결제 체계가 확립될 기반이 조성되었다. 수은이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된 데는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으로 업무경험과 사회주의 국가와의 다양한 거래 경험이 감안된 결정이었다.



남북청산결제은행 지정공문(2003. 9. 8.)



제4편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2008-2016

제1장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1절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

1.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경제 침체

미국의 안정적 경제 성장, 중국 등 브릭스(BRICs) 국가의 급성장으로 호황 국면을 지속하던 세계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부실이 발단이 되었다. 2006년 하반기 드러난 부실 대출의 실체로 인해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 회사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생상품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들어갔다. 이후 2007년 2월 106억 달러의 HSBC 모기지 관련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미국의 2위 모기지업체인 New Century Financial 신규 대출 및 판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모기지 금융의 부실 여파는 다시 국제금융기관의 전반적인 부실로 이어지며, 2007년 8월 BNP Paribas가 자사의 자산유동화증권(ABS) 펀드에 대한 판매를 중단한 데 이어, 10월에는 씨티그룹 등 대형금융기관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투자 손실을 발표하며 단기금융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그리고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보호 및 AIG(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의 구제금융 신청을 기점으로 미국의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2008년 10월 미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7,000억 달러의 긴급구제금융법안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 TARP)을 통과시켰지만 금융시장 불안은 진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실물경제 악화로 연결되었다. 국제금융시장이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리며 투자자들이 신흥국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대부분의 신흥국은 유동성 부족 문제에 직면했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헝가리 등 일부 국가는 금융위기로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리먼 브라더스 영업정지에 관한 긴급조치 공고문(2008. 9. 15.)

선진국 경제도 타격을 받아 평균 경제성장률이 2008년 2/4분기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4/4분기에는 1974년 오일쇼크 이후 최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세계 교역규모도 2008년 4/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9.5% 감소했고, 2009년 1/4분기에는 29.1%까지 떨어졌다. BRICs,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개도국의 수출도 30% 이상 급감하고 성장률도 하락하며 전 세계 경제는 동반 침체의 늪에 빨려들었다.

2. 금융위기 극복과 새로운 위기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리인하와 함께 기업어음(CP), 주택저당증권(MBS),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직접 매입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각국 정부는 금융기관에 자본 투입, 채무지급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을 방지하는 한편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에 착수했다. 또한 국제무역의 위축방지를 위해 G20회의를 중심으로 내수부양 정책 확대, 보호주의 지양을 합의하고 다자협력을 강화했다.

그 결과 2009년 중반부터 주요 금융지표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고 세계경제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0년 상반기까지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던 세계경제는 하반기 들어 유럽 재정위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다시 둔화되었다. 재정지출 확대로 많은 국가들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는데, 특히 취약한 세수기반, 재정관리 한계에 봉착한 남유럽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지역의 경우 회원국이 통화·환율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없어 역내 불균형을 해소할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었으며, 위기 대응시 재정정책을 과도하게 사용함에 따라 그리스를 중심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하여 세계경제는 새로운 위기에 봉착했다.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2009. 9.)

3. 유럽 재정위기와 저성장 세계경제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유럽 재정위기는 2010년 5월 그리스에 대한 1,100억 유로 구제 금융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에는 아일랜드에 대해서도 85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이 지원되었다. 이후 구제금융까지는 아니지만 위기는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확산되었다.

유럽 재정위기로 투자손실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유럽계 은행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하향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유럽 금융기관들은 자금난과 신용경색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확대되어 채권시장의 양극화 현상 및 달러화 가치 상승이 지속되었으며, 주요국 증시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에 주요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양적완화정책을 확대해 경기부양에 나섰다.

그러나 각국의 경기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위기는 장기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는 2012년에도 전반적으로 더딘 양상을 보였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구가해 온 신흥국 경제도 선진국 수요부진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신정부는 경기회복 및 경제체질 개선 등을 목표로 신경재정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제조업 강화, 재정건전성 개선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을, 장기적으로는 성장기반 구축을 도모했다.

이후 선진국 경제는 미국의 부동산경기 회복, 유럽의 국가부채 위기 진정, 일본의 양적완화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로 진입했다. 반면 신흥국은 금융 불안,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라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었다.

■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2008~2015)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a	2015 ^a
세계경제	2.7	△0.4	5.2	3.9	3.1	3.0	3.4	3.1
선진국	0.1	△3.4	3.0	1.7	1.4	1.3	1.8	1.9
미국	△0.3	△2.8	2.5	1.8	2.8	1.9	2.4	2.5
EU	0.4	△4.4	2.0	1.5	△0.7	△0.4	0.9	1.5
일본	△1.0	△5.5	4.7	△0.6	1.4	1.7	0.0	0.6
개발도상국	5.8	3.1	7.5	6.2	4.9	4.7	4.6	4.0
중국	9.6	9.2	10.4	9.3	7.7	7.7	7.3	6.9

자료 : IMF

2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적 대응

1. 글로벌 금융위기의 국내경제 파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외의존도가 높고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은 국내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후 외국인 투자가 순매도로 돌아서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외국인 주식순매도 규모는 2007년 30조 6,000억 원에서 2008년 43조 4,000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외국인 유가증권 보유액도 216조 원에서 168조 원으로 감소했다.

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외화유동성도 급속히 악화되었다. 2008년 9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2,397억 달러에 달했지만, 단기채무의 비중이 51.9%로 높아 외화유동성 부족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10월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한편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등의 후속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급등세를 보인 시장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빠르게 하락했으며, 코스피도 경기회복 기대감 및 국제금융시장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2008년 말 1,124포인트에서 2009년 말 1,683포인트까지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2008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는데, 이처럼 실질국내총생산이 감소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수출과 소비도 악화되었다. 환율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4%대로 급등했으며 경기침체로 고용도 부진했다.

■ 주요 국내 금융지표(2008~2010)

	2008				2009				2010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국고채수익률(3년, %)	5.22	5.32	5.85	4.68	3.64	3.89	4.30	4.34	4.14	3.74	3.70	3.30
회사채수익률(3년, AA-, %)	6.35	6.27	7.19	8.29	6.85	5.35	5.59	5.46	5.25	4.61	4.63	4.16
회사채프리미엄(%p)	1.13	0.95	1.34	3.61	3.21	1.46	1.29	1.12	1.11	0.87	0.93	0.86
종합주가지수(pt)	1,704	1,675	1,448	1,124	1,206	1,390	1,673	1,683	1,693	1,698	1,873	2,051
원/달러 환율(원)	956	1,017	1,063	1,363	1,415	1,289	1,241	1,169	1,144	1,163	1,186	1,133
환율 일중변동폭(원)	6.0	8.2	13.1	45.2	16.6	10.1	6.3	4.9	7.1	12.8	8.3	9.7
외환보유고(억 달러)	2,643	2,581	2,397	2,012	2,063	2,317	2,543	2,670	2,723	2,742	2,898	2,916
단기외화채무비중(%)	48.6	48.2	51.9	47.2	47.6	45.7	43.0	43.2	43.8	43.4	41.1	38.8
CDS프리미엄(bp)	97	103	180	316	333	184	101	86	81	133	101	95

주 : 1) 기말기준인 종합주가지수, 외환보유고, 단기외화채무비중, CDS 프리미엄을 제외한 모든 지표는 기간 중 평균기준
2) 회사채프리미엄 = 회사채수익률(3년, AA-) - 국고채수익률(3년)
자료 : 한국은행



긴급대책회의(2008. 10. 23.)

대내외 수요위축으로 2009년 상반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국내 경제는 하반기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글로벌 경기의 점진적인 회복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다. 수출도 전 세계 교역량 축소로 2001년 이후 8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나 수출보다 수입이 더 빠르게 감소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났다.

2.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처방전

정부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며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완화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해 달러를 공급했으며, 정부도 외환평형기금과 수은을 통해 150억 달러 이상의 외화유동성을 지원했다. 한은은 2008년 10월 말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성공적으로 체결해 외환보유고 외에 제2선의 외화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외환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한은은 통화스왑 확대, 외환보유고 확충 등을 통해 대외충격 완화와 환율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RP매입, 국채 직매입, 통안증권 중도환매를 통해 원화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유동성을 지원해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했다.

이외에도 금융기관의 대외채무 국가보증 후속조치(총 보증규모 1,000억 달러, 국내 은행이 2009년 6월 말까지 도입하는 대외채무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증)와 외화예금 보장 등도 추진했다.

또한 금융위기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금융기관과 관련 공기업에 대한 자본확충을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중소기업 대출 및 수출기업 지원 자금으로 2008년 12월 수는 6,500억 원, 산업은행 5,000억 원, 기업은행 5,000억 원 등 총 1조 6,500억 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실시했으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1조 1,000억 원을 추가로 출

연해 총 보증공급규모를 확대했다. 2009년 1월에도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해 수은 3,000억 원, 산업은행 9,000억 원, 기업은행 5,000억 원, 자산관리공사 4,000억 원, 주택금융공사 2,000억 원 등 5개 기관에 총 2조 3,000억 원의 현금을 출자했다. 3월에는 수은에 5,000억 원의 현물출자에 이어 5월에는 수은, 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4개 기관에 총 1조 4,500억 원의 현금을 출자했다.

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

정부는 2008년 8월 향후 60년의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이후 체계적인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녹색성장 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녹색산업 투자에 대해 맞춤형 자금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2010년 1월에는 녹색성장 추진의 근간이 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2009년 1월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수립해 3대 분야 17대 신성장동력을 확정했다. 5월에는 구체적 실천계획인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0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후에도 '신성장분야 중소기업 지원방안', '신성장동력 장비산업 육성전략',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연이어 내놓으며 신성장동력 육성에 국가역량을 집중했다.

또한, 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했다. 2008년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후 4월부터 2009년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수립·시행해 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했다. 이어 2010년에도 '유망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방향', '콘텐츠·미디어·3D산업 분야 발전전략',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 '관광·레저사업 육성방안',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중견기업 육성 및 동반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는 2010년 3월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수립했다. 중견기업을 경제도약의 핵심주체로 인정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금융프로그램(수은)'과 '중견기업 특별시설자금제도(정책금융공사)'를 신설해 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했다.



신성장산업 육성 회의(2010. 12. 8.)

이에 정부의 다각적인 위기극복 노력으로 2010년 들어 국내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동반 호조를 보이며 6.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수출의 경우 중국과 아세안 등 신흥국의 높은 성장세 및 국내 제품의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28.3%의 높은 신장세를 나타냈으며, 외환보유고도 2,916억 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622억 달러를 웃돌아 '제2 외환위기설'을 잠재웠다.

3. 저성장 시대와 정부의 대응

빠르게 회복되던 우리 경제는 2011년 들어 물가불안 지속, 부동산 경기 악화로 성장세가 약화되었으며, 하반기에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유럽 재정위기 심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수출도 2011년 하반기부터 둔화되고 잠재성장률 이하의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저성장·저금리 시대가 현실화되었다.

수출과 밀접한 설비투자도 위축되었다. 설비투자는 2012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는데,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확대, 내수부진에 따른 유휴설비 존재, 투자심리 저하가 원인이었다. 국내총생산의 50% 수준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도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며 저성장 요인이 되었다.

소비자물가도 경기부진과 물가상승압력 완화로 하향 안정화되었으며, 2013년에는 1998년 이래 최저 수준인 1.3% 상승에 그쳤다. 실업률은 3%대로 양호했으나 높은 청년실업률, 비정규직 확대, 자영업자 비중 증가 등 고용의 질은 더욱 악화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는 양상이었다. 조선, 반도체 등 그동안 성장을 견인했던 제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약화되면서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도모하면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자 투자활성화, 신성장동력 확충, 동반성장기반 구축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을 전개했다. 2012년 5월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외자유치와 국내투자 연계, 공공부문의 민간투자 견인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했다.

주요 국내 거시경제 지표						(단위 : %, 억 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경제성장률	2.3	0.3	6.3	3.7	2.0	2.8
민간소비 증가율	1.3	0.0	4.4	2.4	1.7	1.9
건설투자 증가율	△2.8	3.4	△3.7	△4.7	△2.2	6.9
설비투자 증가율	△1.0	△9.8	△25.7	3.6	△1.9	△1.5
수출 증가율(통관기준)	13.6	△13.9	28.3	19.0	△1.3	2.1
수입 증가율(통관기준)	22.0	△25.8	31.6	23.3	△0.9	△0.8
경상수지	32.0	327.9	293.9	260.7	480.8	707.3
소비자물가 상승률	4.7	2.8	3.0	4.0	2.2	1.3
실업률	3.2	3.6	3.7	3.4	3.2	3.1

자료 : 한국은행

2013년 5월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7월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9월 ‘3차 투자활성화 대책’,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연달아 쏟아내며 경기회복 노력을 지속했다. 정책의 주요 골자는 투자 애로요인인 입지규제, 업종별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자금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금융·재정을 기반으로 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또한, 정부는 공공경쟁질서 강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협동조합제도 정착 등을 통해 동반성장 기반도 확립했다. 2010년에 마련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도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 문제점 등이 동반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2011년 6월 ‘일감 몰아주기 및 MRO* 대응방안’, 2012년 5월 ‘성과 공유제확산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발명진흥법」,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새로 제정했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모색했는데, 2013년 5월 ‘창조금융 방향과 성장사다리펀드 활용방안’, 7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 8월에는 창조경제 지원과 2014년 1월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해 시행했다.



대·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 지원 간담회(2012. 8. 9.)

MRO* : 유지(Maintenance), 보수(Repair) 및 운영(Operation)의 약자

제2장

세계 최고의 대외정책금융기관을 향하여

1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수은의 자세

1. 「수은법」 개정과 지원기반 강화

정부는 2007년 1월 15일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수출입금융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다양화해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새로운 성장 화두로 떠오른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도 담고 있었다.

기존 「수은법」은 ‘상품의 수출입 또는 기술의 제공’만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08년 1월 제12차 「수은법」을 개정해, 지원대상을 ‘물품,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물품 등)’로 확대하면서 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 지원 기반이 강화되었다.

또한, 국내 기업에 대한 최장 신용공여 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고, 2008년 6월 20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직접 자본 참여를 하지 않는 자원개발 사업도 구매계약자로 참여하면, 외국 해외자원개발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플랜트 수출 및 주요 자원 개발사업 등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의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수은법」은 대외채무보증에 대한 법적 근거도 담았다. 대외채무보증 제도는 2008년 이전까지 ‘외국환업무’ 조항을 근거로 운영했지만 2006년 9월 감사원 감사에서 법상 명시를 주문함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

당시 법 개정 협의 과정에서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업무가 위축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시행령 개정 시 대외채무보증 지원대상 거래를 수은의 지원규모(대출+보증)가 미화 1억 달러 이상인 거래 중 대출 비중이 55%이상인 것으로 제한했다.

2007년 9월 정부가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한 이후, 수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2007년 말부터 국제금융시장에서 시작된 신용경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면서 국내외 민간금융기관들의 지원여력이 크게 위축되자, 수은 금융수요가 증가해 2008년 지원액이 전년 대비 16조 원 증가한 56조 원으로 급증했다.

여신규모 급증으로 수은의 BIS비율도 급격히 떨어졌다. 2005년 13.9%였으나, 2006년, 2007년 11%대로 내려앉았고, 2008년에는 8%대로 급감했다. 적정 수준의 BIS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 출자가 시급했다. 그러나 2008년 말 수은의 자본금은 3조 3,000억 원으로 당시 정부가 추진한 6,500억 원 현물 출자에도 법정자본금 한도 4조 원을 대부분 소진할 뿐, BIS비율은 8%대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09년 1월 30일 제14차 「수은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을 4조 원에서 8조 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수은법」 공포 직후 2,600억 원을 신속히 출자했으며,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2008년 말 8.8%에서 2009년 1월 말 9.3%까지 상승했다.

당시 개정안은 기업이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수은이 해당 채권에 대하여 인수 또는 보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규 업무를 추가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대규모 해외사업 추진 시 금융권 차입 이외에 회사채 등 유가증권 발행으로 자금을 충당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 미국 등 주요 경쟁국 수출신용기관의 경우, 채권 매입 및 보증을 통해 자국기업의 현지 자금 조달을 적극 지원한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또한, 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펀드를 위한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근거를 신설해, 대출과 보증이 연계되지 않은 사업에도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 지분출자제도는 대상과 절차가 까다로워 기업 지원실적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2.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수출지원 강화

수은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 수출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산업연관효과와 외화가득효과가 높은 발전, 정유, 석유화학, 담수 등 플랜트 분야 지원을 늘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상업금융기관들의 자금지원이 위축되었고, 금융을 먼저 확정짓고 사업을 발주하는 이른바 '선(先)금융 후(後)발주' 사업이 증가하면서 공적수출신용기관인 수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수은은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건설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금융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사업단계별 금융수요를 파악해 이행성보증, 제작금융, 직접대출, 채무보증 등 다양한 맞춤형 금융패키지를 제공했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PF) 방식의 여신 수요 증가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여신 집행액은 2008년 1조 7,025억 원에서 2014년 3조 4,089억 원으로 6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선박 수출금융 지원도 대폭 늘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고가로 선박을 발주한 선주들이 선수금 납입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상당수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사의 수출도 차질을 빚게 되자 수은은 기 수주 선박의 원활한 수출이행을 위해 조선업 유동성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드릴십,



현대제철 일관제철설비 도입을 위한 채무보증 지원(2009. 6. 3.)

FPSO(부유식 생산저장설비)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지원도 강화했다.

석유, 가스, 광물 등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되었으며, 2007년에는 국내 최초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의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2008년에는 자원금융 전담 조직을 신설해 탐사자금, 광구 인수자금, 개발자금, 생산·운영 자금 등 자원개발 전 단계에 걸쳐 One-stop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개발금융 전담지원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분참여 없이 장기구매계약자(Off-taker)로만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외국법인 앞으로 금융을 지원하는 상품을 도입하는 등 해외자원개발 지원 체계를 재정비했다.

3. 신 시장 개척자 역할

수주산업 금융지원

세계 인프라 시장은 원전·고속철·대수로 등 프로젝트가 대형화되고, 발주국도 중남미와 아프리카 신흥개도국으로 확대되면서 사업성격이 고부가가치·고위험화 되는 경향을 띠었다. 국가간 경쟁도 치열해 대출규모, 금리 등 금융경쟁력이 수주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은 곧 금융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건설·플랜트 분야는 기존 단순 도급사업에서 벗어나, 시공자의 금융주선 및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수은은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해외건설 사업의 유형을 단순도급형, 시공사 금융주선형, 투자개발형, 패키지형 등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해외건설·플랜트 신 시장 개척자로 거듭났다.

금융지원 협조체제 구축

수은은 국내 민간금융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 촉진을 위해 국내 8개 시중은행



8개 시중은행과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2011. 4. 28.)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외환, SC제일, 씨티)과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수은의 해외 대형 프로젝트 지원 경험을 시중은행에 전수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수은은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금융기관 앞 금융주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2012~2013년 사이에 6억 5,000만 달러의 국내 상업금융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주요 발주처와 선제적으로 금융협력계약(Framework Agreement: FA)을 체결해 우리 기업의 수주에 우호적인 여건 조성에도 앞장섰다. 현지 통합마케팅 실시, 주요국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해외 발주처, 타국 공적수출신용기관, 국제투자은행과의 금융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 기업의 수주기반을 공고히 했다.

수은은 다자개발은행·국제기구와의 협조용자 규모를 확대하고, 외국계 설비 비중이 높거나 공동 수주한 경우 해당국 자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외 공적 수출신용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왔다. JBIC(일본 국제협력은행), Hermes(독일), SACE(이태리) 등 선진국 공적수출신용기관과 협조용자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슬람개발은행(ISDB) 등 중동계 금융기관 협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및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의 출범에 대비해 중국수출입은행 등 중국계 금융기관과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시아 인프라 사업에 대한 공동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4. 히든챔피언 육성과 수출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수은은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수출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위해 2009년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을 시작했다.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은 유망 수출중소·중견기업에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일괄제공(One-



히든챔피언 인증식(2012. 7. 20.)

stop)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표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은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금융서비스 뿐 아니라, 개별 기업의 니즈에 맞는 성장전략 코칭 및 해외진출 자문 등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히든챔피언 지원 대상기업으로 2009년 12개사를 선정한 이래, 2010년 100개, 2011년 81개, 2012년 70개, 2013년 55개, 2014년 33개 등 매년 유망 수출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2015년 현재 287개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21개사가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인증되었다. 사업 기간 중 지원 대상기업에는 약 33조 원의 금융 및 4,000여 건의 맞춤형 경영정보 서비스를 집중 지원했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자금부족에 처한 중소기업이 급증하면서 수은은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2008년 채권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신규자금 지원 또는 대출기간 연장 등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2008년 7개 업체에 175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60개사 5,418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였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다소 벗어난 2010년에는 34개사에 1,63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해 조기 경영정상화에 일조했다.

2절 세계로 가는 수은의 영역 확장

1. 사업지원 가치사슬 완성

금융주선과 자문 업무 도입

해외 대형 PF 시장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 각국의 수출신용기관(ECA)과 국제상업은행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국내 민간금융기관은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대규모 플랜트 수주 실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조하다.

이는 국내 민간금융기관의 해외 PF에 대한 위험분석 및 관리능력이 축적되지 못한 게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수은은 우리 기업의 대형 플랜트 수주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PF시장에 뛰어들어 주요 국제금융기구·ECA·국제상업은행과 협력과 경쟁을 통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또한 축적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제금융기구, ECA, 상업 금융기관의 참여를 주선하는 한편, 사업타당성 검토 및 사업위험 경감을 위한 금융구조 설계 등 자문활동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진하던 우리 기업의 PF 사업 수주경쟁력을 제고시켰다.

또한, 해외사업에 대한 금융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플랜트사업 금융주선과 자문업무 확대에 나서 2011년 금융자문 전담부서를 정식 발족했으며, 금융자문 전담부서는 사업구조 설계, 금융자문, 금융주선 등의 기능을 수행했다.

우리 기업이 입찰제안서를 작성하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구체적인 금융조달 방안을 제시해 금융조달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해외사업 경험이 부족한 국내 상업금융기관이 해외 PF 사업에 참여하도록 선도해왔다. 그 결과, 2011년 업무 도입 이후 2015년까지 금융자문 실적은 12건 281억 달러, 금융주선 실적은 32건 426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사업개발 업무 개시

2015년에는 해외사업 수주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금융자문과 금융주선에 이어 사업개발 업무를 추가로 도입했다. 주요 산유국의 투자수요 감소, 우리 기업의 EPC 가격경쟁력 하락, 투자개발형 사업의 증대로 우리 기업의 수주환경은 날로 척박해진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적절한 선택이었다.

사업개발의 첫 번째 단계로 우선 국가별 경제발전단계 및 개발수요, 투자환경,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 등을 고려해 국가별 종합 진출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수은이 보유한 대정부채널, 발주처 및 금융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기업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이를 기업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초기 사업개발 단계에서 우리 기업에 사업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조달 가능성을 높이고 선제적인 프로젝트 위험 관리에도 대응했다. 이로써 수은은 사업발굴부터 사업자문, 금융자문, 금융주선, 여신지원을 연결하는 전후방 가치사슬 체계를 갖췄다.



1차 금융협력기관 협의회(2012. 2. 9.)



수은-IB-국내금융기관 세미나(2013. 12. 12.)

또한, 국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민간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확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국내 민간금융기관을 적극 참여 시키고 있으며,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력관계 구축·유지를 위해 금융기관협력협의회, 수은-IB-국내금융기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 동반성장과 수출초보기업 지원

수은은 정부의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목적으로, 중소·중견협력사를 위한 '상생발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상생발전 프로그램은 크게 '해외 동반진출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상생자금 대출 프로그램'으로 구분된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2012. 3. 30.)

다. 수은은 '해외 동반진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진출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동반 진출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현지법인 설립자금,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상생자금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수출상품 제조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수출물품 제작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우수한 제품경쟁력을 지닌 중소기업 가운데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정보가 부족해 내수시장에 머물거나, 수출 이후에도 수출 비중이 미미한 '수출초보기업'을 수출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인큐베이터(Incubator)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해외직수출 규모 100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대상 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대출한도 확대 등 금융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해외 구매자 소개, 수출입계약서 작성, 환위험 관리 컨설팅 등 수출초보기업에 필수적인 비금융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수출초보기업을 수출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 궁극적으로는 히든챔피언 기업으로까지 육성하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본격 가동된 것이다.

3. 외화조달시장 선도자

수은의 연간 대출규모는 2004년 10조 원을 돌파한 이후 2005년 15조 원, 2007년에는 20조 원 규모로 매년 빠르게 늘어났다. 특히, 선박과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외화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미국이나 일본 등 타국 수



우리다시 본드 발행(2011. 1. 28.)

출신용기관에 비해 재정자금 지원비중이 현저히 낮은 수은의 재원조달 특성상 외화조달 규모 또한 늘어났다. 블룸버그(Bloomberg) 통계에 따르면 수은의 2006년 연간 외화조달 규모는 국내 기관 중 1위였으며, 이후 10년간 계속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2008년 금융기관 연쇄 도산으로 세계적인 신용경색이 빚어지자, IMF 외환위기 당시처럼 수은은 국내 시장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창구 역할을 맡았다. 2008년 하반기에 정부로부터 250억 달러 규모의 외평기금을 수탁 받아 무역어음재할인 등의 방식으로 국내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담당했다.

자체 외화조달도 활발했다. 더 낮은 금리로 외화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틈새시장을 발굴해 2007년 아시아 최초의 멕시코 페소화 채권, 2008년 한국계 최초의 태국 바트화 및 말레이시아 링깃화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2008년 5월에는 만기 5년, 7억 5,000만 유로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발행했는데, 이는 2008년 발행된 한국물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세계적인 권위의 국제금융 전문지인 International Financial Review(IFR)는 이 조달거래를 두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아시아 차입자의 채권 발행에 물꼬를 댔다'라고 평가했다.

2009년 1월에는 정부의 지급보증 없이 단독 신용으로 20억 달러의 대규모 글로벌본드를 발행했는데, 리먼 사태 이후 아시아 금융기관으로는 최초의 공모 발행으로 이후 한국계 기관이 연이어 외화채권 발행에 성공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2010년에는 대만 금융시장에서 아시아 최초로 미 달러화 표시 포모사본드를 발행했으며, 이외에도 위안화, 인도 루피화,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필리핀 페소화, 페루솔 등 총 5개 통화를 시장에서 조달했다. 2011년 8월 한국 금융기관 최초로 홍콩 시장에서 덤섬본드를 발행한 수은은 같은 해 12월 사우디 리얄화 표시 공모채권을 발행했는데, 이는 유동성이 풍부한 중동 산유국의 오일머니를 활용하는 모범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4년 12월에는 국내 금융기관 최초

로 캐나다 시장에서 메이플본드를 발행하기도 했다.

수은은 차입시장 뿐만 아니라 차입수단도 다변화해 2011년 한국계 최초로 일본의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우리다시본드를 발행했고, 2013년에 정책·민간금융기관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수은은 2006년부터 매년 한국계 외화조달 물량의 20~30%를 담당하면서 국내 최대의 외화차입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은의 외화조달 성과는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2015년 말까지 수은은 각국별 29개에 달하는 차입시장을 발굴해 국내 기관 중에서 가장 다변화된 외화차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양질의 외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은의 끊임없는 노력은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2007년부터 매년 IFR이나 The Asset과 같은 유수의 국제금융전문지에서 '아시아 최우수 차입자', '한국 최우수 차입자', '올해의 최우수 채권' 등을 수상하며 우리나라 외화차입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The Asset지 수상(2014. 1. 13.)

4. 투자업무 도입

펀드 투자업무 도입

수은의 지분출자는 수은 대출 또는 보증과 연계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간접투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취급할 수 없었는데, 수은의 정책적 지원역량 제고를 위해 펀드 투자업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녹색산업 자원개발 투자수요 증가와 탄소배출권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수은의 관련 펀드 참여를 통한 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 「수은법」 및 2009년 4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조성된 펀드에 수은이 투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2009년 9월 탄소펀드, 2009년 12월, 2010년 8월 각각 자원개발펀드 1호, 2호에 투자하며 펀드 투자의 길을 열었다.

투자업무의 본격화

2014년 1월, 「수은법」은 업무규정 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포함해 제정 이래 최대 폭으로 개정되었다. 그 일환으로 출자업무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건별 승인 폐지, 펀드 투자업무에 대한 투자 대상 분야 및 지분율 한도 확대 등 투자업무에 대한 제한도 일부 완화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투자업무가 가능해졌다.

이후 여신규정 개정 및 투자세칙 제정 등 관련 내규 정비를 거쳐 2014년 6월 투자업무 전담조직인 투자금융실을 신설했다. 이어 2014년 10월 수은 최초

의 직접투자 건인 인도네시아 수력발전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스 방식 대출·보증과의 연계 투자 승인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723억 원의 직접투자 및 2,633억 원의 간접투자 승인이 이루어졌다.

3절 최고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의 발돋움

1. 19차 「수은법」 개정, 대외정책금융 기능 강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수주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금조달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기존 「수은법」은 지원 대상 거래·수단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금융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런 배경에 따라 2014년 1월 21일 「수은법」이 개정되었다. 핵심은 금융지원 대상과 방식을 14개호에 달하는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로써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대외 금융수요에 대응할 법체계가 마련되었다.

또한, 출자 및 펀드 업무에 대한 제한도 대폭 완화했다. 펀드투자 대상 분야를 현행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서 여신지원이 가능한 전 분야로 확대해, 지식서비스 등 신성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펀드투자가 가능해졌다. 다만, 증권에 대한 투자 및 보증 업무는 채무증권(채권)에 대한 투자 또는 보증 업무, 지분·수익증권(주식)에 대한 투자 업무로만 한정했다. 그리고, 2014년 4월 21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도를 종전 펀드 재산의 15%에서 25%로 확대했다.

법정자본금도 8조 원에서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등 타 정책금융기관 수준인 15조 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에 대한 원활한 현물출자를 위해, 정부보유 공기업 주식에 대한 현물출자 특례조항을 신설해,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의 수은 앞 현물출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 하나 두드러진 특징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상에 명문화했다는 것이다. 업무분야에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수출초보기업 지원, 상생프로그램, 히든챔피언 사업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대외채무보증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지원규모와 상관없이 대출과 보증을 합한 금액 중 대출 비중이 50%를 넘으면 보증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1억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도 해외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를 업무분야에 명시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과의 연계지원을 위한 개발금융 취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업무 기반 마련 및 개선이 이루어졌다.

2. 해외온렌딩 도입

수은은 2015년 4월 ‘해외온렌딩 취급지침’을 제정하고 해외온렌딩 제도를 도입했다. 해외온렌딩이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사업에 대한 자금소요 관련 중개 금융기관을 활용한 간접대출상품으로서 중개 금융기관의 영업망을 활용해 정책자금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제도이다. 이는 수은의 제한된 인력과 조직을 감안한 매우 유용한 방안이었다. 온렌딩은 무역금융실이 담당하게 되었고, 2015년 5월 29일 우리은행과 온렌딩 약정을 체결하고 3,000억 원을 배정했다. 연말까지 추가로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부산은행, 신한베트남법인에 한도배정을 완료했으며, 2015년 온렌딩 취급액은 1,000억 원 가량이다.

3. 서비스산업 지원 활성화

수은은 2010년 10월 콘텐츠 산업을 새로운 미래수출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지식·문화콘텐츠 전담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펴왔다.

2013년 2월 출범한 새 정부의 ‘창조경제’ 국정기조에 맞추어 수은도 2013년 5월 고용창출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보건의료 산업을 창조산업으로 선정하고, 금리인하 등 우대지원정책을 확대했다. 국내 창조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산업 성숙도가 낮고 리스크가 높아 해외진출 및 금융지원 노하우를 보유한 수은 정책금융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에 따라 수은은 2014년 하반기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5년 1월 서비스산업 지원을 전담하는 서비스산업금융부(3개 팀)를 신설했다.

신설된 조직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보건의료, 콘텐츠, 관광, SW·ICT, 물류, 금융 등 유망서비스산업을 선정하고, 제조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서비스산업 분야별 특성에 맞게 개선했으며, 단기적으로 역량 확보가 어려운 콘텐츠 분야에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지원기반 체비를 갖추었다. 또한, 사업 공동 발굴을 위해 다수의 선도 기업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을 체결했다.

전행 차원의 핵심역량 집중으로 수은은 2013~2014년 2조 원 규모이던 서비스산업 지원이 2015년 3조 5,092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그 결과 신약개발 지원, 해외호텔 M&A 지원, 해외 복합관광단지 개발 지원, 순수지식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등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금



지식문화콘텐츠팀(2011. 12. 8.)

■ 유망서비스산업^{주)}

보건의료	제약, 병원, 의료기기 등
콘텐츠	게임, 영상, 한류(한식 등), 음악·공연, 출판 등
관광	여행, 호텔·리조트, MICE 등
SW·ICT	정보통신(서비스·인프라), 소프트웨어, IT융합시스템, 그린IT 등
기타	육상·해상·항공 물류, 금융, 엔지니어링 등

주) 2015년 1월 수은 자체 선정

용지원 사례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수은은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대출·보증 뿐만 아니라 지분투자, 채권보증, 펀드출자 등 다양한 금융지원 수단을 통해 사업기획 발굴부터 유무형 인프라 구축, 수출계약 이행, 현지화·운영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전 단계에 걸쳐 최적의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건설·플랜트, 조선해양 등 과거 우리 제조업의 수출을 통한 비약적 성장에 수은이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처럼,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발판이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자원개발 금융 지원 강화

수은은 1970년대 초반부터 자원금융을 지원해 왔으나 원자재 가격 하락기와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자원개발 금융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다시 확대되었다.

특히, 2006년 국제 원유 및 비철금속 가격 상승으로 촉발된 일본, 중국 등 자원소비국의 자원 확보 경쟁, 우리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참여 확대로 수은의 자원금융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수은은 2007년 자원금융팀을 발족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했으며, 점차 대형화 되고 복잡해지는 거래별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방



한국가스공사 예멘 LNG 사업 지원(2007. 11.)

■ 수은의 전체여신 대비 해외자원개발 지원실적 (단위: 조 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여신	39.9	56.3	55.8	64.3	67.3	71.6	75.8	79.7	81.9
자원금융	0.3	1.7	1.4	3.4	1.9	2.2	1.5	2.7	2.1
비중	0.7	3.1	2.5	5.2	2.9	3.1	2.0	3.4	2.6

식의 금융지원을 확대해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이후 2008년 자원개발부로 조직을 확대해 탐사자금, 광구 인수자금, 개발자금 및 생산·운영자금 등 자원개발 전 단계에 걸쳐 One-stop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금융 전담지원 체제를 구축했다.

수은은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해외자원개발 사업 지원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을 활용하였고, 그 첫 사례는 2007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 사업이었다. 이후 2008년까지 예멘 LNG 및 페루 LNG 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을 지원했고, 신규 지분참여 사업에도 참여했다.

2010년에는 한국석유공사의 영국 ‘다나’에 대한 아시아 국가 최초의 적대적 M&A에 금융을 지원했으나, 2011년부터 2013년에는 자원개발 사업을 주도한 자원공기업이 자체 신용을 활용한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면서 수은의 자원금융 지원 규모가 다소 감소했다.

그리고, 2012~2013년 사이 수은은 매장량기초금융, Off-take Financing 등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다양한 선진 금융을 도입했다. 2010년 수은은 관련 국내 기업들 및 유수의 해외 IB들과 함께 매장량기초금융 연구회를 발족하면서 매장량기초금융 지원의 기반을 다졌고, 2012년 미국 트로이카와 미국 패러렐 사업에 매장량기초금융을 지원했다. 또한 지분 참여 없이 장기구매계약자(Off-taker)로 참여하는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관련 외국법인 앞으로 금융을 지원하는 상품도 도입했다.

2013년에는 미국 최초로 수출허가를 받은 LNG 수출터미널인 사빈패스 프로



보령 LNG 수입터미널 건설 지원(2014. 12.)

젝트에 4개 국책금융기관 및 7개 국내 상업은행과 함께 PF금융을 최초로 공동 제공 했다. 보수적인 미국 에너지 허브에 진출했다는 의미와 함께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참여를 희망하던 7개 국내 상업은행에 ‘채무보증’과 ‘우선상환권’을 제공하면서 협조금융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2014년에는 4년간 진행되던 인도네시아 동기-세노로 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수은 최초로 PF 방식으로 국내 보령 LNG 터미널 사업을 지원 했다. 또한, 이라크 등 여러 국가에 자원금융을 지원해 2010년 이후 최대인 3조 4,000억 원의 성과를 올렸다. 수은은 꾸준히 보완된 다양한 제도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상류부터 중류, 나아가 국내 LNG 수입터미널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5. 대외 경제원조 체계의 발전적 변화

국제 경제원조 환경의 변화

2010년 1월 25일,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정책 일관성 및 원조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어 2010년 7월 26일 발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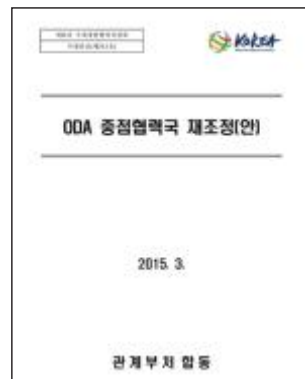
이 법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삶의 질 향상,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 개선,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통합적 정책추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법 제정을 통해 대내적으로 보다 체계적인 ODA 정책과 시스템을 갖추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해 2006년 설치된 국무총리 주재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우리나라 대외원조를 총괄하는 기구로 역할이 확대되며,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정부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ODA 집행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ODA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수원국별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원조역량을 감안한 맞춤형 ODA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작성하고, 시행기관별로 CPS에 부합하는 ‘국별지원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기획재정부-외교부간 유무상 집행비용을 고려해 중점협력국별로 CPS 작성 주관기관을 지정함으로써 CPS 수립 조직체계를 마련했고, 산관학 연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해 지역전문성을 보완토록 했다.



ODA 중점협력국 재조정(안)(2015. 3.)

경제원조 대표기관 위상 확보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25일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심사특별회의에서 회원국 전원 합의를 통해 2010년 1월 OECD 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됐다. 우리나라의 OECD DAC 가입은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이고, OECD 설립 이후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순수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였으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킨 상징적인 이정표였다.

수은은 DAC 가입을 계기로 한국의 ODA 통계 담당기관으로 지정되어 한국 ODA의 통계정보를 취합, 관리하고 있다. 또한 1년에 한번씩 OECD DAC에 한국의 ODA 통계를 보고하고, 개발재원 통계작업반 회의에 참석해 DAC 내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에 따라 구축된 ODA 모니터링 시스템 역시 수은이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ODA 관계 부처의 원조활동 정보를 분기별로 취합 및 관리하고 있다.

2008년 아크라에서 개최된 OECD DAC 제3차 고위급회담에서 원조투명성 논의를 본격화 한 것을 계기로 일부 공여국과 국제기구들이 중심이 되어 2009년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ra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를 출범시켰다. 이후, 원조투명성은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4차 고위급회담인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국제원조규범으로 발전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대통령 기조연설을 통해 IATI 가입계획을 발표하며, 원조투명성 강화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우리나라의 IATI 가입은 2015년 12월 IATI 운영위원회에서 공표되었으며, 이는 OECD DAC 29개 회원국 가운데 14번째였다. 수은은 우리나라의 OECD DAC 통계 보고기관으로 통계 관리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5년 11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한국 IATI 보고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 상반기부터 IATI 에 원조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IATI에 공개되는 원조정보는 기관정보와 사업정보 등 총 38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필수항목 13개를 시작으로 향후 정보공개 범위와 주기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규모의 비약적 성장

정부의 대외원조 확대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승인 규모는 1987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2006년까지 4,000억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실적					(단위: 억 원)
	2007	2009	2011	2013	2015
승인건수	19	30	25	21	19
승인액	6,403	11,669	10,623	13,590	15,357
누적승인액	32,513	53,857	76,720	102,659	136,795

원 이하로 운영되던 연간 승인 규모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앞두고 큰 폭으로 증가해 최근 5년간 승인실적이 기금설립 이래 누적금액의 약 53%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집행규모도 매년 증가해 2008년 2,371억 원에서 2014년에는 6,308억 원까지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대부분 5,000만 달러 이하 규모의 사업을 위주로 지원했으나, 수원국의 대규모 인프라 수요, 지원효과를 감안해 대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으며, 2010년에는 2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사업도 승인했다.

국별 프로그래밍 도입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개별사업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국가별 전략적 자원배분 및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수은은 2013년 프로그램팀을 신설해 CPS 수립 및 모니터링에 대한 통합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2014년 프로그램팀을 ‘국별전략실’로 확대 개편해 국별 중기 자원배분 및 지원계획 수립, 국별 프로그램 미션 실시 등 중기 포트폴리오 구성·관리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지원 제도 다양화

개도국 개발에 필요한 자원,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민간협력차관 및 민간협력전대차관’을 도입했다. 개도국의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하고,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민간협력차관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개도국 법인이 공적개발원조(ODA) 적격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인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시설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차관이며, 민간협력전대차관은 개도국 금융기관을 통해 민간협력차관 지원대상인 개도국 법인에게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차관이다. 새롭게 도입한 개도국 민간부문 지원제도는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과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상생의 ODA로 그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새로운 Post-2015 개발협력 체제 도래에 맞추어 국제개발금융기구와의 국제연대를 위해 2014년 국제개발금융기구 앞 차관을 신설했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 공여국은 일찍부터 양자원조 외에도 국제개발금융기구를 통한 개도국 지원활동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국제개발금융기구의 분야별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개발수요에 공동대응하고, 국제규범에 맞는 원조를 이행함으로써 원조의 질도 높이기 위해서였다.

대외경제협력기금도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양자 중심 개발사업에서 탈피해 농업, 환경, 인프라 개발 등 전 지구적 공공재(Public Goods) 구축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게 되었다. 아울러 수은이 선진 공여기관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1회 글로벌 인프라 개발협력 포럼(2012. 10. 9.)

민관협력사업(PPP) 지원 개시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민간 투자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사업 전담팀을 신설하고, 제도를 개선해 민자사업차관에 대한 비구속성 금리를 인하했다.

아울러 PPP 사업 발굴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해 2012년 협력대상국(베트남, 필리핀)과 EDCF-수은-개도국 정부의 협의 채널인 ‘SOC 협의체’를 구성했고, 대내외 PPP 전문가와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글로벌인프라 개발협력포럼(Glob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Forum: GIDF)을 개최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하반기 베트남 민간발전사업의 부대 인프라인 톤롱교량 건설 사업에 대외경제협력기금 최초의 PPP 사업을 승인했으며, 이어 2015년에는 라오스 수력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라오스 정부 출자지분을 지원하는 방식과 베트남 도로사업의 구간을 EDCF 구간과 민자사업 구간으로 분할해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을 연달아 승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한 PPP 사업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개도국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고부가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외경제협력기금 재원을 집중해 제한된 원조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여국과 수원국이 상호 Win-Win 효과가 큰 사업이다.

개도국 인프라 투자는 2012년 1,81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6년 이후에는 연간 9,000억 달러 이상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다양한 지원 방식을 활용한 PPP 사업의 사례가 만들어짐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한 개도국 PPP 사업은 더욱 활발해 질 예정이다.

평가체제의 선진화

우리나라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에 앞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은 평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8년에는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기존 사후평가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2010년 국별 평가, 2011년 분야별 평가, 2012년 주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에는 평가방법론, 평가기준 등 평가업무와 관련된 세부 절차를 정리한 '평가 매뉴얼'을 발간하였고, 수원국의 주인의식 및 관리능력을 고취하기 위해 수원국 사업관계자와 공동평가워크숍을 개최했다. 또한 2014년에는 매년 평가결과 반영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토록 함으로써 평가결과로부터 도출된 제언사항이 향후 유사사업에 반영되도록 했다.



EDCF 국제 평가세미나(2013. 11. 7.)

한국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지원

수은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개발경험을 수원국과 공유하기 위해 2004년 한국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도입했다. 기존의 개발협력 사업이 금융지원, 물적 공여, 기술지원을 통해 수원국의 절대빈곤 완화에 치중했다면, KSP는 수원국이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정책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은은 국제기구 공동컨설팅 사업 총괄기관으로서,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과 국제기구의 지역 전문성을 접목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011년 국제기구 공동컨설팅 사업이 도입된 이래 2014년까지 총 7개 국제기구와 53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재원의 공동분담과 역할분담이라는 공동컨설팅 사업모형이 자리 잡았다.

또한, 수은은 2013년 시스템컨설팅을 도입한 이래 2014년까지 총 12개국, 14개 사업을 총괄 수행했다. 시스템컨설팅은 수원국의 지식기반 인프라(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는데, 금융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KSP 컨설팅의 전문성을 확보한 것은 물론, 컨설팅 결과를 대외경제협력기금, 수은



KSP 전파세미나(2013. 7. 10.)

금융지원과 연계해 후속사업으로 이행되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2014년에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해외 건설인프라 분야 KSP 사업 총괄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해외 건설인프라 부문은 수은의 업무노하우가 집적된 전문 분야인 만큼 향후 KSP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후속사업을 전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개발금융 체제로 전환 준비

세계은행에 따르면 개도국 인프라 개발수요는 매년 9,000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직접대출을 통한 전통적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개발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렵다. 2011년 개최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2015년 7월 개최된 제3차 UN개발재원총회, 2015년 9월 열린 UN개발정상회의에서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의 근본적 해소'가 개발의제의 중심으로 부상되면서, 민간금융수단을 활용해 민간재원의 유입을 촉진하는 개발금융(Financing for Development)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진국의 원조기관은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해 민간부문과 협력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원조기관들이 과거에는 개도국 정부 앞 차관을 통해 개발을 직접 주도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촉매(Catalyst) 역할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도 민관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2년 EDCF 보증제도를 도입했다. EDCF 보증제도는 지원대상국 중 수은 수출금융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국가를 중심으로 개도국 경제·사회 개발에 기여하는 사업의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즉, 정치적 위험 경감(risk mitigation)을 통해 민간금융 조달을 주선해 개도국의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개발수요를 촉진하는 것이다.

2013년 11월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개도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위탁관리기관이자 대외협력 전문기관인 수은을 개발금융 운용 및 관리 주체로 확립하고, 시장재원을 활용한 개발금융 토대를 구축하도록 한 것이다.

법적 토대도 마련해 2013년 12월 26일 「수은법」을 개정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안도 2015년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2016년에는 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의 개정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존 대외경제협력기금 후보 사업을 중심으로 이를 활용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6. 남북관계의 변화와 경험지원

남북관계의 경색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추진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그에 상응해 북한의 경제발전을 돕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원하겠

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남북관계는 긴장상태에 접어들었고,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우리 관광객이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얼어붙었다. 이후 2009년 11월 대청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었다.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발표한 5.24조치는 우리 국민 방북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포함되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북한 천안함 폭침(2010. 3. 26.)

2011년 7월 정부는 5.24조치 틀 내에서 인도적 지원 재개, 비정치적인 민간교류 허용 등의 유연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제3차 핵실험 강행,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의 도발을 계속하며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

마침내 2013년 4월 3일에는 북한이 개성공단 관계자의 출입 차단을 통보하고, 우리 정부는 4월 26일 개성공단 내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잔류 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며 남북교류의 상징적 사업이었던 개성공단 사업마저 가동을 멈췄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인해 입주기업들은 완제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생산을 위해 구입했던 원부자재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은 계속되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9,683억 원이 집행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교류협력 증진

2008년 이후 정부는 대규모의 식량 및 비료 지원을 중단했으나, 수해복구 지원 등 긴급구호는 계속했다.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인도적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계속 이뤄졌다. 그러나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에는 UNICEF, 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남북기금이 지원되다가, 2014년 이후 민간단체 정책사업, 농업·산림 분야 협력사업 등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일부 재개되었다. 2008~2015년 중 인도적 지원사업에 1,609억 원이 지원되



평양소재 어린이 육아원에 이류식 지원(2009. 4. 21.)



남북 화물열차 운행 재개(2009. 9. 2.)

었으며, 보건·의료, 어린이 영양 개선, 산림 병해충 방제에도 자금이 지원되었다.

경의선·동해선 등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제한적이나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인원과 물자의 육로 수송을 가능하게 해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가교 구실을 했다. 그러나 동해선 도로는 2008년 7월 우리 측 금강산 관광객의 피습 사망 사건에 따른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통행량이 급격히 감소해, 2011년 8월 금강산 내 우리 측 인원의 전원 철수 이후 사실상 통행이 중단된 상태이며, 기념행사 등에만 부정기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경의선 화물열차는 차량보다 경제성이 떨어져 화물열차 이용이 저조했으며, 북한의 일방적인 육로통행 제한조치로 운행이 중단되었다. 2015년 8월 정부는 남북간 철도운행 재개를 위한 사전준비 목적으로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공사를 시작했으며, 추후 남북철도 구간을 하나씩 복구하고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북측 구간 철도·도로 공사를 위한 자재장비차관은 공사가 완료되지 못해, 차관금액, 상환 일정 등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로 공사 완공 및 차관조건 확정을 위한 남북 당국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8년 12월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 조치, 2009년 3월 우리 측 근로자 억류 및 개성공단 육로통행 차단 등이 이어지면서, 입주기업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남북협력기금은 2009년 1월 및 11월 대출원리금 6개월 상환 유예조치를 취하는 한편, 2008년 하반기 이후 입주한 후발 진출기업에 한해 운영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2010년 6월 말까지 10개사에 약 18억 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생산 차질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에서는 2010년 6월 대출원리금 상환을 1년 유예하고, 2011년 2월에는 2009년 11월 시행했던 긴급운영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1년 연장했다.

2013년 4월 북한은 공단 폐쇄를 발표하고 북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철수시킴에 따라 우리 측 인원도 전원 철수하면서 개성공단은 가동이 중단되었고, 입주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 이에 남북협력기금은 27개사에 146억 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105개사에 특별대출 556억 원을 지원했다.

수은은 개성공단 T/F 운영 및 개성공단 긴급지원센터를 통해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후 남북 당국은 7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끝에 2013년 8월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고, 9월 16일 생산재개로 개성공단이 정상 가동되었다.

대북 교역·경제협력 기업들은 2010년 5.24 대북조치로 경영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했다. 자금난 경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은 2010년 7월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제도를 신설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47개사에 1,300억 원을 지원했으며, 2012년 9월에는 교역·경제협력 및 금강산 기업 중 457개사에 52억 원의 운영경비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가중된 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교역·경제협력보험제도를 보완했다.

2009년 7월 경제협력보험의 기업 당 보상한도를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사업정지에 따른 보험금 지급요건을 사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했다. 또한 2009년 8월에는 개성공업지구 교역보험제도를 신설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가공을 위탁한 자가 통행 제한 등으로 완성제품을 납기 내에 받지 못할 위험을 담보함으로써, 위탁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안전장치를 제공했다.

2013년 4월에는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및 근로자 철수 조치로 보험사고가 발생해 2013년 8월 59개사에 1,761억 원이 지급되었고, 이후 2015년 1월 보험금 지급전 사업 재개 시 손실액 평가기준 명확화, 보험금 반납 절차 등 대위권 행사방법 구체화, 연체금 부과 근거 명시 등을 골자로 하는 경험보험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북한은 2016년 1월 4차 핵실험,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였고, 이에 우리 정부는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준비

정부는 통일과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통일

의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등 남북한과 주변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 수출입은행이 참여하는 동북아 수출입은행 협의체 및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은 북한 개발에 주변국을 참여시키는 역내 협의체로 자리 잡고 있다.

수은은 2014년 4월 정부의 통일 구상을 뒷받침하고 북한개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북한·동북아연구센터를 출범시켰다. 센터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와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지원, 남북한 경제통합 등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통일 단계별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마련하고 북한개발을 통한 통일비용 감축방안을 제시하는 핵심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다.



북한개발연구센터 개소(2014. 4. 15.)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





제2부

제1편
수출입 금융 업무

제2편
자금조달 업무

제3편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

제4편
남북협력기금 업무



제1편

수출입 금융 업무

제1장

수출금융

1절 수출촉진자금

1. 개요

수출촉진자금 대출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활동 및 수출기업 인수 등을 지원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수출증진은 신규 수출 및 수출규모 확대, 수출 중단 또는 축소를 방지하는 활동까지 모두 포함한다.

2. 제도의 운용 및 변천

제도 시행

수출촉진자금 대출은 기존의 시설 확장·증설용 수출자금, 기술개발용 수출자금 및 해외시장개척자금을 통합해 2014년 4월 「수은법」 개정 이후 신설된 지원제도이다.

2014년 12월 수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우대지원산업(서비스산업, 친환경에너지신산업)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대기업, 수출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활동, 수출기업 인수(M&A)를 지원했으며, 2015년 2월에는 제작자금 용도 및 그밖에 수출증진이 기대되는 부문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 가운데 해외시장개척활동은 해외시장조사, 해외진출컨설팅, 해외바이어 발굴, 박람회 등 참가, 해외홍보 활동, 해외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활성화

수출촉진자금은 특히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물품 개발 또는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초보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 기조에 따라 2014년 7월 도입한 기술금융을 활용해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담보 없이도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2010년 9월에는 2001년 8월 단기포괄수출금융내 기타 수출자금 대출의 일종으로 도입한 '해외시장개척자금'을 별도 대출과목으로 확대해 해외시장개척활동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상품도 제공했다. 현재는 수출촉진자금에서 같은 용도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조사·해외 전시회 참가·해외네트워크 운영 등 해외시장개척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지속적인 매출 확대를 위해 해외 시장조사 및 해외 구매자 발굴이 중요하나 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감당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수출촉진자금은 그 특성상 자금집행 전 차주로부터 구매계약서, 선적서류(상업송장 등), 세금계산서 등 자금소요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그 적정성을 확인한 후 집행할 수 있다.

대출금액은 실 소요자금의 90%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하나, 자금용도가 수출기업 인수인 경우 실 소요자금의 50% 이내(협조대출인 경우 40% 이내)까지 지원한다. 해외시장개척활동의 경우 기업

별 대출한도 이내로 제한되며, 중소기업은 최고 30억 원, 그 외 기업은 50억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수은은 2014년 4월 규정을 개정하며, 수출초보 중소기업(승인신청 직전년도 연간 직수출 규모가 100만 달러 초과 1,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우대지원의 일환으로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지원 대상 여신에 수출촉진자금 대출을 포함했으며, 수출유망 내수기업은 일정기간 소요 범위 내에서 금융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때 자금을 선 집행하고 있다.

수은은 중소·중견기업의 대외 수출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지침을 수차례 개정하고, 일률적인 조건 적용이 아닌,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조건을 제시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3. 지원실적 및 사례

지원실적

기존의 수출자금인 시설확장·증설용 수출자금, 기술개발용 수출자금, 해외시장개척자금을 포함해 본격적으로 지원이 시작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액은 시설투자 7,425억 원, 기술개발 438억 원, 해외시장개척 147억 원, 수출기업인수 4,000억 원, 기타 544억 원이다.

수출촉진자금 지원실적								(단위 : 억 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시설투자	2,987	2,071	1,497	275	195	-	400	7,425
기술개발	-	60	178	200	-	-	-	438
해외시장개척	-	25	84	6	32	-	-	147
수출기업인수	-	-	-	-	-	-	4,000	4,000
제작자금	-	-	-	-	-	-	-	-
기타	-	-	-	-	-	500	44	544
합계	2,987	2,156	1,759	481	227	500	4,444	12,544

수출촉진자금 지원 분야	
자금용도	내 용
해외시장개척	해외시장조사, 해외바이어 발굴, 전시회 참가, 해외네트워크 구축 등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시장개척에 필요한 자금 지원
기술개발	연구 설비의 설치, 연구개발용 기구 및 기자재 구입비, 시험생산시설 운전자금 등 수출물품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R&D)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시설투자	수출기업의 수출물품 생산을 위한 시설 확장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다각화

수출촉진자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2013년 10월 패밀리 애니메이션 <넛잡(The Nut Job)>의 제작사 레드로버에 해외 홍보활동(Print & Advertisement: P&A)자금 명목으로 대출한 20억 원은 다양성 사례의 결정판이었다.

미국 3,000여 개 극장에서 상영을 목표로 하는 우리 애니메이션 제작사에 수은이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해외 홍보활동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2013년 11월에는 국내 토종 캐릭터 ‘라바(Larva)’의 제작사 투바엔에 해외 상표권 출원·등록비를 지원함으로써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애니메이션기업이 안정적으로 글로벌 상품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2절 수출성장자금

1. 개요

수출성장자금 대출은 수출실적을 보유한 국내 기업 앞 수출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4년 4월 「수은법」 개정 시행에 따른 여신제도 개편에 따라 종전의 단기포괄수출금융, 중기포괄수출금융 및 지식재산권 수출자금대출 등을 통합해 시행하고 있다.

2. 제도의 운용 및 변천

포괄수출금융의 운용

2014년 4월 「수은법」 개정 이전에는 단기포괄수출금융, 중기포괄수출금융, 상생자금대출(포괄), 지식재산권 수출자금대출이 수출성장자금의 역할을 대신했다.

포괄수출금융제도는 1995년 ‘자본재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라는 명칭으로 도입된 제도로 수출계약건별이 아닌 과거 6개월 내지 1년 동안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향후 같은 기간 동안 수출이행(내국수출 포함)에 필요한 자금을 포괄금융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제도 도입 이전에는 대출승인 및 집행을 수출계약건별로 취급함으로써 기계류 등 자본재 및 첨단제품을 소규모로 자주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했다. 이에 수출금융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포괄수출금융 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초기에는 중소기업만을 지원했으나, 2001년 3월 명칭을 ‘포괄수출금융’으로 변경하면서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고, 2002년 10월에는 5대 계열기업군에 속하지 않는 기업까지 범위를 넓혔다. 또한 2004년 3월에는 정부의 지방경제 활성화정책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에 부응해 5대 계열기업 중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한해 포괄수출금융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후 2011년 9월 15일 중소·중견기업에 지원을 집중하

기 위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소속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 품목은 도입 초기에는 통상산업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본재산업 육성 전략 품목(105개)과 수은은행장이 지정하는 품목(HS Code 72~90류 중 가정용제품 제외)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자금수요가 커짐에 따라 자본재 산업 육성전략품목 개발완료 기업과 EM마크 획득 기업, 국산화대상 자본재품목 개발완료 기업 및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 완료 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분류하고 산업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금리 등 대출조건을 우대했다. 그러나 산업의 성장과 함께 업종 간 영역구분이 모호해지고 여타 품목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원 금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으로 변경했다.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이며, 보증서 담보부로 취급 시에는 보증서 보증기간을 대출기간으로 할 수 있다. 차주별 대출한도는 초기에는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별로 30억 원 범위로 한정했으나, 이후 지원대상기업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되고 기업의 수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대출한도를 최대 600억 원까지 확대했다. 대출금액은 대출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과거 6개월 간 수출실적의 80% 범위 이내(중소기업·우대중견기업은 90% 범위 이내,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수출실적은 100%까지)이며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과거 1년 간 수출실적의 50% 범위 이내(중소기업·우대중견기업은 70% 범위 이내,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수출실적은 100% 범위까지)이다.

지식재산권 및 해운사 성장자금 대출 운용

2013년 5월에는 IP수출자금 대출을 신설했다. 이는 해외기업에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양도 등을 통해 라이선스나 사용료 수익이 있는 국내 기업에게 기존 IP 유지·관리 및 신규 IP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제도였으나,



한국차량공업(주) 앞 수출성장자금 대출(2003. 10. 27.)



조선해운사 CEO 간담회(2012. 7. 16)

현재 수출성장자금대출(지식재산권)로 운용되고 있다.

2012년에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 지속에 따른 해상물동량 감소와 운임하락으로 해운사의 경영은 악화되었다. 더욱이 고유가까지 겹쳐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이는 선박 발주 감소로 이어져 조선업까지 침체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국내 중소·중견 해운사의 자금난은 더욱 심각했으며, 유동성 확보가 시급했다.

이에 수은은 포괄수출금융 제도를 이용, 2012년 한국선주협회가 발행하는 수출실적 확인서에 근거해 해운사에 대한 수출성장자금을 지원했다. 국내 해운사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국내 해운사의 외항선박 운항업을 외화 가득효과가 높은 서비스 수출거래로 인정토록 여신 지원체제를 개편한 것이다.

3. 지원실적 및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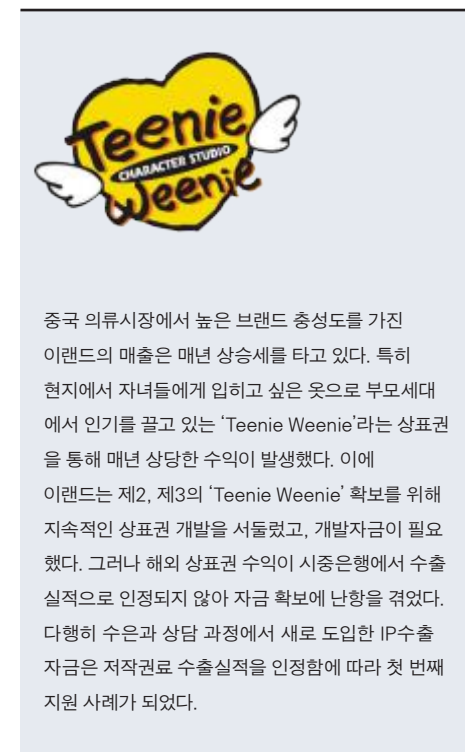
중소·중견기업 지원

수출성장자금은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품으로, 2015년 말 기준 수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실적 총 26조 6,865억 원 중 비중이 37.1%이다. 수출성장자금은 수출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매우 간편하고 안정적으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2005년 857개사, 2015년 907개사로 이용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과 협력해 중소·중견 협력사 지원을 위한 '상생발전 프로그램'을 2011년 12월 도입했다.

수은은 협약을 맺은 상생 대기업의 현지법인에 지원 대상 물품을 수출하거나 상생 대기업 앞 수출물자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수출거래에 대해 수출성장자금을 지원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직접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상생 대기업은 해외 판로개척, 기술지원 등

IP수출자금대출 지원 사례



비 금융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IP수출자금 대출 지속 확대

2013년 5월 IP수출자금대출 도입 이후 이랜드월드의 의류 브랜드 상표권에 대한 지원 250억 원을 비롯해 팬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저작권 60억 원, 엠게임 게임 판권에 80억 원 등을 지원했다. 이를 필두로 2013년 570억 원을 지원한 이후 IP수출자금 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4년 1,08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5년말 기준 801억 원을 대출했다. 수은의 IP수출자금 대출은 IP확보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것으로 민간금융기관에

서 취급이 어려운 용역수출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해운사 수출성장자금 대출 성과

수은의 국내 해운사 수출성장자금 대출 지원은 2012년부터 시작해 지원 대상 해운사와 지원 금액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특히, 국내 선박금융 시장에서 수출성장자금 인지도 상승 및 해운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유동성 확보 수요가 높아지면서, 2015년에는 자금 지원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절 수출이행자금

1. 개요

수출이행자금 대출은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회수 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이다. 대출대상자는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 또는 생산(해외건설공사 제외)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이다. 대출금액은 수출계약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의 90% 이내에서 생산 또는 수출에 필요한 금액이다.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 취급일로부터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내에서 자금이 실제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며, 수출계약이행(수출목적물 제작 등)에 필요한 향후 6개월 소요자금 이내에서 선 집행할 수 있다.

수출이행자금은 2014년 4월 「수은법」 개정 시행에 따른 여신제도 개편에 따라 신설됐다. 종전에는 제작금융, 단기수출자금대출 및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등이 이를 대신했다.

해운사 앞 수출성장자금 대출 (단위 : 개, 억 원)					
	2012	2013	2014	2015	합계
대상 해운사	3	8	10	11	32
집행액	146	2,964	2,810	3,565	9,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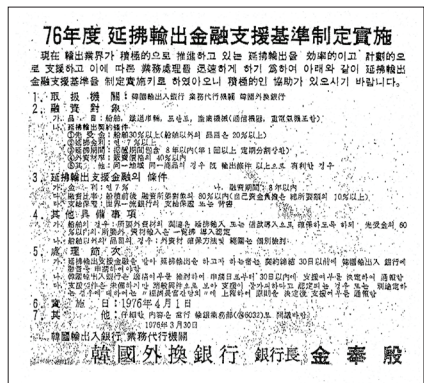
2. 제도의 운용과 변천

해외건설·플랜트 연불금융의 운용

플랜트 수출금융은 선박금융과 더불어 ‘자본재 수출 지원’이라는 수은 설립목적의 근간으로 국내 기업의 원활한 플랜트와 기계류 수출을 지원하는 전형적인 수출금융이다. 지원방식은 차주 구분에 따라 공급자신용(Supplier's Credit)방식의 연불금융과 구매자신용(Buyer's Credit)방식의 직접대출로 구분된다.

수은 설립 첫 해인 1976년에는 선박수출 지원이 대부분이었고, 자금 수요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77년부터 연불금융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며, 수은은 주요 지원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법서를 1977년에만 무려 8차례나 개정하는 등 연불수출 지원 체제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1980년에는 지원 자금 종류를 다양화하는 한편, 자금수요 급증에 대처해 국내 금융기관과의 협조대출제도와 플랜트 수출에 대한 자금지원지침 및 선별지원방침을 수립했다. 또한 1982년에는 국내 기계공업 육성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산 기자재 사용거래를 우선 지원하는 ‘국산기자재 사용거래에 대한 우선지원지침’도 제정했다.



1976년도 연불수출금융 지원기준

1985년에는 해외 건설수주 부진을 타개하기 위하여 해외 건설공사에 대한 자금지원제도를 별도로 마련했으며, 시설 과잉인 섬유산업 설비와 건설 기업이 보유한 해외건설 중장비 수출 지원을 위해 ‘유휴산업설비 수출에 대한 자금지원지침’도 함께 마련했다.

1987년에는 수출용 원자재를 제작·공급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은내국신용장의 수혜자에 대한 대출취급 규정을 마련해 시행했으며, 1990년에는 차주의 신용과 지원대상사업의 성격 및 대출금 회수전망 등을 고려해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세부지침도 만들었다.

1991년에는 선수금률, 연불기간, 대출비율 등 연불금융의 대출조건을 OECD 수출신용협약에 맞추어 조정했는데, 대출기간이 2년 미만인 거래는 OECD 수출신용협약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업무방법서에 규정한 대출대상 및 대출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얻어 예외 취급토록 했다.

1992년에는 여신관련 제반 규정의 정비작업으로 여신규정 체제가 여신규정과 여신요강으로 간소화되었으며, 여신규정 및 여신요강에 포함되지 않은 수은 대출 우선지원지침 등 제반 지침에 규정된 내용은 새로이 정한 여신운용지침에 포함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한 제도가 다수 시행되었다. 1994년 ‘수출용 원자재 공급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세부처리지침’을 만들고, 1995년에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수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본재 수출 중소기업 대출제도를 제정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공급자신용 방식의 연불금융지원이 감소하고 직접대출 지원이 증가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수은은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출거래에 대한 금융지원 방식을 구매자 신용방식의 직접대출 방식(현행 수출기반자금)으로 전환했다.

해양플랜트, 선박의 연불금융, 제작금융 운용

수은의 국내 조선사에 대한 연불금융, 제작금융 집중지원은 우리나라 조선업이 1975년 이후 세계적인 조선시장의 장기불황 속에서도 1970년대 후반 세계 2위의 조선대국으로 부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조선소의 통폐합 및 폐쇄조치 등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조선경기 불황에 대처했으나, 조선 후발국인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 시기를 조선업 육성의 호기로 보고 금융지원을 통해 수출산업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국내 조선업이 신생산업 단계였던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수은의 수출이행자금대출(제작금융) 및 연불금융 지원은 우리나라가 곧바로 불어 닥친 세계 조선시장의 장기불황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조선강국으로 부상하는 초석이 되었다. 중화학공업화가 시작되기 직전인 1972년 우리나라의 선박수출비중이 0.1%에 불과했으나, 수은 설립 이듬해인 1977년에는 4.7%, 1984년에는 16%로 급증하게 된 배경에 수은의 금융지원의 힘이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석유과동으로 인한 조선, 해운경기 불황으로 신조선 수주물량이 급감하고, 정부의 중화학공업 과잉투자에 대한 산업합리화 조치 등으로 조선업 또한 침체기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선소 증설정책과 수은의 금융지원에 힘입어 우리나라 조선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다만, 국내 조선업이 세계 최강자의 위상을 확보한 2000년대 이후에는 선박연불금융이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국내 조선사들이 장기간의 채무부담, 연불채권 회수위험, 재무구조 악화 우려 등으로 공급자신용을 기피함으로써 수입자인 해외선주가 직접 차주가 되는 구매자신용을 선호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연불금융 수요는 점차 감소하고 수출기반자금 대출(직접대출) 및 선박 스트럭처드 파인랜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수출이행자금대출(제작금융) 또한 수주 확대와 더불어 증가

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제품 인도 후에 대금을 지불하는 헤비 테일(Heavy Tail) 결제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이는 조선사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는데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상생(제작)자금, 상생협력, 특례신용(개별, 제작) 운용

상생(제작)자금은 2011년 12월 1일 수출 대기업 등에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제작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출중소기업 상생자금대출’이라는 명칭으로 신설되었다.

지원대상은 제도 도입 초기 수은과 기술보증기금이 공동 운영하는 공동심사위원회 또는 수은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수출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여신지원에 동의하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2012년 2월 신용도가 양호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공동심사위원회의 동의,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제출, 수출대금의 수은계좌 입금 등에 대한 예외취급을 허용해 대상자를 확대했고, 같은 해 3월에는 중소기업 졸업 후 5년 이내인 우대중견기업까지 포함했다. 이후 2013년 5월에는 상생프로그램의 채권보전이 일반여신에 적용되는 담보 취득 및 신용여신 조건으로 완화됨에 따라, 공동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상생대기업이 추천하는 수출중소기업 및 우대중견기업으로 단순화했다.

지원대상거래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중소기업이 수은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수출기업 또는 그 수출기업의 현지법인에 대해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와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수출거래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수출물자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로 지정했다. 이후 중소기업 및 우대중견기업이 상생대기업의 해외수주사업과 관련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로 확대했다.

상생협력 대출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수출 중소기업 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3년 6월 도입

했다. 당초 이 제도는 세계 금융위기 당시 ‘수출중소기업 네트워크 대출’이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었다가, 세계 금융위기가 완화되고 납품대금의 어음 결제 관행이 개선되면서 2011년 3월 폐지되었으나, 폐지 2년 만에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재도입했다.

지식재산권 대출 우대지원 운용

수은은 문화콘텐츠 제작자금 지원을 위해 ‘문화콘텐츠 완성보증부 대출’ 및 ‘콘텐츠수출 특례금융’을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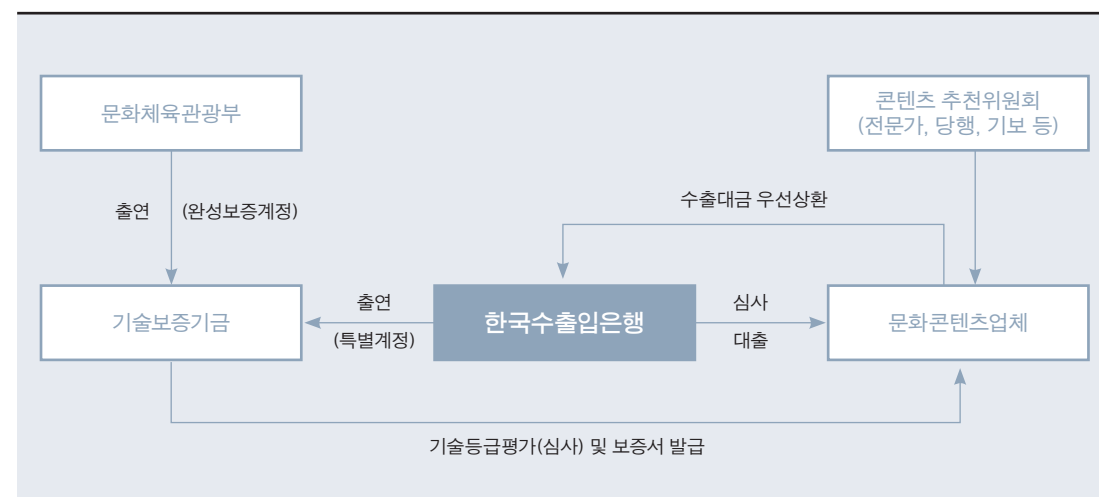
문화콘텐츠 완성보증부 대출제도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을 대상으로 수은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술보증기금 앞으로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이 이를 재원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수은이 대출하는 제도이다. 콘텐츠 제작사의 신용도가 다소 낮더라도 제작능력, 작품성, 수출거래의 안정성 등을 심사해 향후 프로젝트 수익금으로 대출금 상황이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콘텐츠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제작자금을 저리로 융자한다.

수은, 문화체육관광부, 기술보증기금, 한국콘텐츠진흥원 4개 기관은 2009년 9월 완성보증부 대출제도 및 콘텐츠 가치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2011. 12. 1.)

문화콘텐츠 완성보증부 대출제도 지원 절차



결하였고, 2009년과 2011년 12억 5,000만 원씩 출연한 바 있다. 보증한도는 출연금액의 10배수 범위 이내이다.

수은은 지적재산권 대출 연장선상에서 2015년 4월 신용·담보여력이 부족하나 사업성이 양호한 콘텐츠 제작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수출 특례금융’ 제도를 도입했다. 콘텐츠 기업의 영세성, 열악한 재무구조, 제작·홍행리스크 등을 감안해 수출계약 체결 이전이라도 수출을 목적으로 기획되었거나, 수출계약 상담이 진행 중인 사업은 지원 가능하다는 점이 문화콘텐츠 완성보증부 대출과 가장 큰 차이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콘텐츠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안건 승인 이전에 제작·홍행리스크 등 콘텐츠의 사업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3. 지원실적 및 사례

해외건설·플랜트 지원

수출대금의 지불을 연기하는 연불수출을 지원하는 연불금융은 수은 설립 이후 큰 업무비중을 차지했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직접대출 방식과 대외채무보증 방식의 수출금융 지원이 활성화되면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의 부실화로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은이 지원한 수출거래의 연불대금채권 우선변제권 논란이 커지면서 설 자리가 좁아졌다.

국내 기업의 플랜트 수출은 선박 수출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 않아 1980년대까지는 금융의 규모도 선박금융에 비하여 작았으나, 1990년대 이후 플랜트 수출증가와 함께 금융 지원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수은 업무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2005년까지 플랜트 수출금융 지원실적은 총 243건 78억 달러였고 대부분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집중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 들어 국내 기업의 플랜트 수출 규모가 대형화되고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의 수출금융, 대외채무보증과 이자율지지(상업은

행에 대한 금리 해지) 등 지원방식이 다양해지면서 플랜트 수출금융의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

지원방식은 연불금융이 185건 43억 달러, 직접대출 방식이 58건 35억 달러로 전체 누계에서는 연불금융의 비중이 크지만, 1998년 7월 구매자금 융부 신설 이후 직접대출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연불금융 비중은 크게 낮아졌다.

2005년까지 연불거래에 대한 플랜트 수출금융 지원실적을 품목별로 보면 석유화학설비가 36%로 가장 높고, 해양설비와 발전설비가 뒤를 따르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의 업종별 플랜트 수출 경쟁력과 일치한다. 지역별 지원규모는 아시아, 중동 지역이 각각 53%, 25%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지리적 인접성과 더불어 개발도상국의 국가위험을 담보한다는 수출금융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2005년 이후 연불금융은 중단되고, 제작자금 방식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대폭 강화된 자기자본 규제는 그때까지 해외 프로젝트의 절대적인 강자였던 유럽계 은행의 입지를 약화시켰고, 이러한 유동성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수은을 비롯한 ECA의 역할이 다시금 강력하게 부상했다. 또한 금융조달 확실성이 발주처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고, 그 결과 소위 ‘선금융 후발주’라는 새로운 트렌드도 해외건설·플랜트 시장에 등장했다. 또한 많은 경우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은 입찰서류 제출시 금융조달 가능액을 적어내는 등 ‘시공자 금융주선형 발주’도 빠르게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듯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플랜트 지원액은 2007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2012년 UAE 원자력발전설비 수출 지원을 계기로 2014년 최대 실적인 약 27조 원을 시현하였다가 2014년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 상황 등에 따라 산유국 재정악화 등으로 인해 발주 축소 등의 여파로 2015년 지원실적은 2014년 대비 약 14.8% 감소한 약 23조 원을 기록했다.

이에 수은은 2016년부터 기존 중동·플랜트 시

장보다는 아시아·CIS·아프리카 등 신시장 개척과 AIIB 출범 등에 따라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인프라 시장 지원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우리 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해양플랜트 및 선박수출 지원
선박은 제작기간이나 거래비용 규모가 커 연불수출거래의 대표적인 품목이다. 수은은 국내 수출자

의 제작자금 조달부담과 수출대금 회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금을 대출함으로써 원활한 계약을 유도하고 있는데, 수출자를 차주로 해 결제대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공급자신용(연불금융), 해외선주를 차주로 해 결제대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구매자신용(직접대출, 선박 스트럭처드 파이낸스 등)이라 한다.

수은은 지원자금 효율적 배분과 해외수입자의 계약이행 보장을 위해 일정률 이상 선수금을 수령하는 거래만을 지원하고 있다. 수은 설립 당시에는 수출가액의 20% 이상 인도 완료 전에 결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이후 수차례의 업무방법서 개정으로 인상, 인하를 반복했다. 현재는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한 선수금률에 맞추어 20%로 정해졌다.

연불수출거래에서 수출자가 금리상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때 적용하는 연불이율은 수은으로부터 차입한 연불금융 대출이율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 거래요건의 연불금융 대출이율은 수은 설립 당시 6% 이상, 1980년대 국제금리 인상 추세를 반영해 8~9% 이상 단일이율로 명시됐다. 그러나 2002년 4월 OECD 선박수출신용양해가 개정되면서 현재까지 연불금융의 대출이율로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하는 최저금리인 CIRR(고정금리)에 신용위험가산율을 더한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간은 수은 설립 당시 선박의 경우 8년으로 규정했다가 1985년 12월, 업무방법서를 개정하며 OECD 선박수출신용양해상의 기간과 같은 8년 6개월로 연장되었다. 이후 2002년 4월 OECD 선박수출신용양해가 개정되면서 그 변경내용에 따라 12년으로 연장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상환방법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선박의 경우 연 1회 이상 원금을 정기 분할해 상환하도록 했다.

대출한도는 대출금액 산정 기준(수출계약금액에서 선수금을 공제한 잔액)의 100%로 시작해, 1977년 1월 80%로 개정했고, 상업금융기관과의 협조대출이 활발해지면서 1980년 7월 70%로 하

**공정경쟁 정착을 통한 수주질서 확립 노력
(사업평가팀 출범의 의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가 침체되자 우리 건설기업들은 진출기반이 확고한 중동지역 플랜트 시장 공략에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10개 내외의 우리 건설기업 간 수주 경쟁이 격화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규모 및 세계시장 점유율 순위는 급격히 상승했으나, 제값 받아먹기식의 무리한 수주는 결과적으로 대규모 영업손실을 야기하게 되었다. 2013년 8월 정부는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대책을 주문했다. 수출입은행은 이에 따라 저가수주가 우려되는 해외건설·플랜트 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금융지원 방침 수립을 위해 2014년 10월 수주가치심의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이후 수주가치심의위원회 도입 및 관련 규정 제정 등 제도 도입 노력을 기울이던 중 S사의 대규모 영업손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이슈화되었다. 그 결과 2015년 11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 ‘해외건설·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수출입은행 뿐 아니라 정책금융기관 모두가 참여하는 사업수익성 심사 강화 방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정책금융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 개편해 2016년 1월 해외건설·플랜트 사업의 수익성 평가를 전담할 ‘사업평가팀’이 새로 발족했다.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은 동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 간 공정경쟁, 해외건설·플랜트 산업의 수익성 악화 방지 및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선박 연불금융 승인실적 (단위 : 척, 백만 달러)

	1976~1980	1981~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합계
승인척수	56	201	71	17	6	0	351
승인금액	208	519	325	294	51	0	1,397

선박 수출이행자금대출(제작금융) 승인실적 (단위 : 척, 억 원)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합계
승인척수	107	230	251	269	266	1,123
승인금액	23,064	76,875	79,422	64,246	88,929	332,536

향 조정했다. 이후 1985년 6월 다시 85%로 상향 조정한 이후, 1991년 6월, OECD 수출신용협약 체계에 맞추면서 100%로 조정했다.

수은이 2005년까지 선박수출거래를 지원한 연불금융 취급액은 모두 351척, 총 13억 9,700만 달러에 달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지원실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선박 스트럭처드 파이낸스의 실적 증가로 연불금융을 점차 대체하게 되었다.

수은의 수출이행자금 대출(제작금융)은 국내외 경제 여건과 그에 따른 세계 조선시장 동향에 매우 민감해 수출이행자금 대출 지원도 세계경제 흐름에 따라 변화가 심했다.

1990년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국내 조선사의 시설 증설, 해운경기의 호황과 국내의 풍부한 저임 숙련 노동력 등에 힘입어 발주가 크게 늘어났고 수은의 자금지원 실적도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기조는 2015년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2000년대 후반부터는 선박금융시장 경색으로 선박 건조 대금을 인도 이후에 지급받는 헤비 테일(Heavy Tail) 계약조건이 일반화되고, 세계 조선시장이 심각한 불황을 겪음에 따라 국내 조선사의 유동성 지원 요청이 증가해 수은의 수출이행자금대출(제작금융) 지원 수요도 늘어났다.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수은은 2010년 3월 최초로 수출 중소·중견기업 상생자금 대출제도를 활용해 케이씨코트렐에 수출 이행자금(당시 상품명은 상생자금대출)을 지원했

다. 케이씨코트렐이 수은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두산중공업(주)로부터 수주한 전기집진설비 제작 자금 30억 원이었다.

이후 중소·중견기업 상생자금 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말 기준 894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2조 2,00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대기업과 중견기업과의 협력, 중소·중견 협력사의 수출이행과 해외직접진출에 힘을 보탰다. 수은은 2015년 말 현재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 등 47개 국내 주요 수출산업의 대표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중견기업(대기업의 1차 협력사)과의 MOU 체결로 2, 3차 협력사까지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수출 지원

수은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하여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총 31건 332억 원의 문화콘텐츠 완성보증부 대출을 지원했다. 최초 지원은 순수 국내 창작 3D 애니메이션인 〈다이노타임〉의 제작자금 지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35억 원을 대출했다. 애니메이션 제작사 토이온은 수은의 완성보증부 대출 제작지원을 통해 총제작비 160억 원 중 약 20%를 조달했으며, 장기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2015년 5월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개봉했다.

2015년 4월 도입한 콘텐츠수출 특례금융도 지원을 개시해 2015년 11월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 이트가 제작하는 TV드라마에 제작자금 10억 원을 처음 지원했다. 지원 드라마로 선정된 〈사임당 the

Herstory)는 드라마 <대장금>의 주연을 맡아 한류의 문을 연 이영애가 출연을 확정하면서 향후 해외 수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참작되었다. 2015년 11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콘텐츠산업 금융생태계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수은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으로 지원한 사업의 첫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4절 수출기반자금

1. 개요

수출기반자금 대출은 국내 기업으로부터 지원대상 물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인 등 수출 관련 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2014년 4월 「수은법」 개정 시행에 따른 여신제도를 개편하면서 종전의 직접대출 및 전대자금 대출을 통합해 도입되었다. 자금용도도 기존 수입결제자금 뿐만 아니라, 수출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되었다.

대출대상자는 수출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국내 기업,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며, 수출자는 대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여기서 수출기반 마련은 신규 수출 및 수출규모 확대, 수출중단 또는 축소를 방지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2. 제도의 운용과 변천

해외진설·플랜트 수입결제자금

1978년 8월 해외경제기술협력위원회가 한국산 자본재 구매자인 외국기업에 대하여 수은이 직접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결정하면서 직접대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수은은 선진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유사제도를 조사·연구하는 한편 직원 파견 교육을 실시하고, 1979년 8월 제도운영의 골격이 되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 대한 직접대출 기본

운영규정'을 제정한 데 이어 그 해 9월에는 취급규정을, 11월에는 표준대출계약서 양식을 제정해 지원제도를 구축했다.

직접대출 이율은 기본운영규정 제정 이후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연불금융 대출이율과 국제금리 수준을 감안해 이사회에서 결정했는데, 통상 연불금융 대출이율보다 0.5% 높게 책정되어 차주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어 1985년 9월 9차 개정을 통해 수출자금 대출이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1991년 6월에는 선수금률, 대출비율, 상환기간 등 수출자금 대출조건이 OECD 수출신용협약의 규정에 맞추어 개정됨에 따라, 직접대출도 같은 해 7월 12차 기본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대출조건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선수금률이 선박의 경우 20%, 선박을 제외한 여타 품목의 경우 15%로 각각 변경되었고, 상환기간도 10년 이내에서 OECD 수출신용협약을 준용한 '적정한 기간 이내'로 변경했다.

이어 제13차 개정에서는 기본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선수금, 대출비율,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조건을 업무방법서의 수출자금 지원조건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업무방법서가 개정되는 경우 기본운영규정 개정 없이 업무방법서의 변경내용을 적용하게 되었다.

1993년 9월 제14차 개정에서는 기술용역 수출을 지원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당시 산업설비 수출과 함께 증가하던 기술용역 수출에도 힘을 실어주었다. 채권보전 요건 역시 완화해 직접대출 차주가 수은이 인정하는 지급보증기관 수준의 신용도를 확보한 경우 별도의 지급보증 없이도 직접대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원이 필요한 거래에 대한 우리 기업의 주주경쟁력을 높였다.

특히 1998년 7월 구매자금융부 신설은 직접대출 부문의 성장 계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수출금융은 원칙적으로 구매자신용으로 지원해 연불금융 차입에 따른 국내 기업의 재무비율이 악화되는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고, 수은 업무의 질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또한 1999년 4월 현지비용과 건설기간 중 이자 등도 지원하도록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효과도 거뒀다.

직접대출 규모가 더욱 커진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스 업무의 도입도 한몫했다. 이와 더불어 대외채무보증과 이자율지지 업무 도입은 연불수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플랜트 수출거래 지원에 획기적인 변화였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업무가 국제적 추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면, 대외채무보증과 이자율지지 업무는 OECD 수출신용협약에 따라 수출계약 금액의 일정 부분만을 지원하는 직접대출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도입 배경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를 차주로 함으로써 사업주 또는 지분출자자에게 상환소구권이 없거나(Non-recourse Finance) 제한된(Limited Recourse Finance) 금융기법으로 기업금융과 대비된다. 수출금융에 이를 적용할 경우, 수입국 정부나 금융기관의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전통적인 수출금융과 달리, 수입국 정부나 금융기관에 원리금 상환의무를 강제하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 사업성을 주된 채권보전수단으로 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개발도상국의 인프라사업 민영화 추세에 따라 발전했으며, 수은은 1994년 직접대출의 한 방식으로 도입했다. 공적수출신용기관은 전통적으로 개발도상국 정부나 공공기업이 수행하는 사회간접자본 중심의 공공부문 프로젝트를 주로 지원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개발도상국의 인프라사업 민영화 추세에 따라 개발도상국 민간부문에 수출지원을 늘리게 되었다. 개도국에서 진행되는 인프라사업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상환기간이 장기인데다 정치적 혼란, 대외지급능력 부족 등 예기치 못한 정치적 위험이 커 상업금융은 독자적 지원을 기피한다. 공적수출신용기관 역시 1980년대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의 외채위기 이후 개발도상국 지원에 신중을 기하게 되었으며, 정부의 지급보증 이외에도 프로젝트의 현금흐름(Cash-Flow) 등 새로운 채권보전장치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각 공적수출신용기관은 프로젝트 파이낸스 담당조직을 신설해 시장변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채권보전의 주된 기반을 지원 사업 자체의 운영 수익에 두면서 관련 자산을 담보로 취득하는 금융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직접대출 지원방식이 활성화되면서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주요 담보로 하는 고도의 금융기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도입은 필연적이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원유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개발도상국의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민간부문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

화에 대응했으며, 수은도 1994년 초 해외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스 업무연수를 통해 전담인력을 양성하고, 9월에 산업설비금융1부에 배치해 업무를 시작했다. 1999년에는 구매자금융부 내에 프로젝트 파이낸스 전담팀을 설치했으며, 2002년 2개 팀, 2006년 초에는 3개 팀으로 조직을 확장했다. 한편 프로젝트 파이낸스 업무 초기에는 여신규정상 예외조항을 적용했으나, 2000년 4월부터는 별도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업무 취급규정'과 '프로젝트 파이낸스 업무 취급요강'을 제정해 업무취급 근거와 방법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후 5차례 규정 개정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업무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해당 규정 제정 시에는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의한 '프로젝트 회사를 차주로 하는 비소구 금융'이라는 협의의 정의를 따랐으나, 이후 프로젝트 회사를 차주로 하지 않더라도 차주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에서 활용되는 채권보전방법을 활용하는 금융, 즉 스트럭처드 파이낸스를 포괄하게 되었다.

또한 수은은 프로젝트 파이낸스 도입 초기에는 수출금융 지원대상거래에 한정했으나, OECD 수출신용협약에 의한 수출금융의 금리경쟁력 저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자금 대출(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이나 역외금융까지 적용범위를 크게 넓혔다. 이를 통해 수은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국내 기업의 해외플랜트 주주에 기여하고 해외투자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었다. 최근에는 원유 및 가스개발, 정유, 석유화학, 제조업 및 부동산 개발 등 다양한 산업에서 주요 금융조달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세계 자본재시장 환경은 기업의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발주되며, 특히 원유, 가스 등 자원개발 관련 대규모 사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자본재 수출시장의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구매자 중심으로 전개되고, 발주처가 프로젝트 입찰참가자에게 수출신용기관의 금융주선을 전제하면서 기술능력은 물론, 금융조달 능력도 수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세계 플랜트시장에서 금융조달 방식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통한 사업 참여가 이루어짐에 따라, 수은도 1990년대부터 이에 대응하고자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담당하는 조직과 제도를 갖추어 본격적으로 취급했다.

선박금융 직접대출과 스트럭처드 파이낸스 도입

우리나라 조선업 발전사는 수은 성장사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1970년대 유치산업에 불과했던 조선업이 오늘날 명실상부한 세계 1위의 산업으로 부상하는 데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기업의 기술개발 및 적극적 마케팅 등과 함께 수은 선박금융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며 동반 추진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수은 선박금융의 핵심은 '수출기반자금 대출(구 직접대출)' 제도였다. 조선업에 대한 수은의 금융지원은 제작금융과 연불금융에서 출발했으나, 1978년 정부가 국외 한국산 자본재 구매자, 즉 해외 선주에 대해 수은의 수출기반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박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해외 선주 앞으로 직접 여신을 제공하는 직접대출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1990년대 초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로 인해 수은 선박금융 지원실적이 급감하였다. 신용이 양호한 해외 선주들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장기저리자



한전의 필리핀 Ilijan 복합화력발전 사업(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2000. 6. 27.)



캐나다 Seaspan 앞 컨테이너선 2척 직접대출(先 금융 後 발주 SF금융)(2007. 12. 21.)

금을 차입해 선박인도 시까지 선박 구매대금을 모두 지불하는 일람불 결제조건 발주가 일반화 된 것이다. 수은을 비롯한 각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선박 수출입거래에 대한 지원 금리는 OECD의 기준 금리인 연 8%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상업금융기관과 경쟁이 되지 않았다. 1992년부터 2002년 사이 수은의 선박 수출기반자금 대출은 1994년 단 1척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선박금융시장 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OECD 선박수출신용양해 개정작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변화를 예고했다. 한국, 일본 등 주요 선박수출국이 각국의 공정한 수출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변화를 촉구하였던 덕분이었다. 2000년 시작된 개정 논의는 2002년 4월 개정내용 발표로 개정작업을 완료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환기간이 8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연장되고, 최저이자율도 연 8%에서 통화별 CIRR(표시통화 국가의 국채 수익률에 1% 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로 변경되는 등 지원조건이 대폭 개선됐다.

금리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수출기반자금 대출 활성화 계기가 마련되자 수은도 선박금융 시장 수요에 맞춘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에 눈을 돌렸다. 먼저 OECD 선박수출신용양해를 준용한 프로젝트파이낸스업무 취급규정을 개정하고, 2002년에는 선진화된 금융기법의 하나인 선박 스트럭처드 파이낸스를 본격 도입했다. 스트럭처드 파이낸스(SF)란 선박 운용을 통한 용선수입을 대출상환의 주요 재원으로 하되 선박 담보, 용선수익 등으로 채권보전을 다양화하는 금융방식이다.

스트럭처드 파이낸스 도입을 계기로 수은은 유럽계 상업금융기관이 주도해 온 선박금융 시장에서 입지를 조금씩 넓혀 나갔다. 수은이 제공하는 스트럭처드 파이낸스가 해외 선주의 국내 조선사 선박 발주를 촉진한 것이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세계 1위로 발돋움한 국내 조선업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2007년에는 OECD 선박수출신용양해가 2005년 7월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해 소폭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이자지급 방식의 명문화,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 조항 신설 등이었다.

선박 수출기반자금 대출의 채권보전 방식도 변화가 있었다. 과거 해외선주들은 발주 선박에 대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제상업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제공했으나, 스트럭처드 파이낸스 등 새로운 금융방식이 활성화되면서 선박 본선 담보 또는 선박 운용수익을 채권보전장치로 활용하게 되었다. 시장상황 및 프로젝트의 개별적인 특수성에 보충이 다양화하여 자금조달이 한결 수월해졌다.

기존의 수출기반자금 대출 제도가 담보 및 지급보증을 근거로 한 금융지원 방식이라고 한다면 선박 스트럭처드 파이낸스는 차주의 신용도, 중고선가 수준, 운임 수준, 사업성을 분석하여 개별 프로젝트마다 맞춤형 채권보전 장치를 구성해 금융을 제공하는 기법이다. 이는 항공기 구매금융과 마찬가지로 대상 자산을 담보로 하는 자산담보부금융(Asset Based Finance)의 유형이다. 항공기나 선박, 해양플랜트는 중고선 시장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담보권 행사를 통한 채권회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선박 스트럭처드 파이낸스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를 운용해 얻은 수익에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과 달리 LNG선처럼 중고선 시장이 발달되지 않은 선박의 경우 선박의 자산가치보다 선박의 운항수익이 중요한 채권보전 방법이 되기 때문에 LNG선에 대한 선박 스트럭처드 파이낸스는 프로젝트 파이낸스로 분류된다.

이후에도 수은은 선박 스트럭처드 파이낸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OECD 수출신용협약 및 OECD 선박수출신용양해를 준수하는 틀 안에서 선주앞 비소구(Non-recourse) 방식의 프로젝트 파이낸스(PF)형 선박금융, UK Tax Lease 방식의 선박금융 등을 통해 국내 조선소의 수주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3년 1월 수은은 선박 리스거래에 대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에 대해 정기용선, 나용선, 장기운송계약 등 용선계약 형태별로 리스거래 여부를 판단,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OECD 선박수출신용양해에서 허용되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을 프로젝트별로 탄력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수은의 선박금융 지원경쟁력을 제고한 것이다.

또한, 2013년 10월에는 용선계약 미확정, 선주 신용부족으로 스트럭처드 파이낸스 방식 여신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본선담보를 주된 채권보전 수단으로 취급하는 '선박담보부 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자사선대 또는 Spot 시장 운영 등으로 금융조달에 곤란을 겪는 해외선주가 국내 조선사에 발주하도록 문을 열어 주었다. 아울러 중고선 시장이 발달한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등을 중심으로 선박담보부 대출 지원을 본격적으로 개시해 업무효율성도 높였다.

해외 ECA와의 협조융자 체제도 강화했다. 2013년 6월에는 노르웨이 수출보험공사(GIEK)와 조선 및 해양플랜트 부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조선,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정보교환, 공동금융지원 확대, 리스크관리 노하우 공유, 상호인력 교류를 추진하게 되었다. 수은은 GIEK와 2005년 최초로 드릴십(Drillship) 수출을 공동 지원한 이래 최근까지 국내 조선사의 10개 해양플랜트 수출거래에 공동으로 금융지원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해외 선사인 러시아 Sovcomflot(2006년), 영국 Seadrill(2013년)과 선박금융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013년 한국선급, 2015년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양보증보험 등 국내 해양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해양금융의 업무영역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수은은 비록 짧은 제도운용 기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해외마케팅과 경쟁력 있는 금융 제공으로 국내 조선사의 선박 수주에 일익을 담당했



영국 Seadrill과 업무협약 체결(2013. 11. 5.)



Trade Finance 시상식(2013. 7. 4.)

고, 동시에 세계 해양금융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이는 세계 최고 권위의 선박금융 월간지인 'Marine Money'가 수은을 2003년, 2004년, 2011년, 2013년, 2014년 최우수거래 수상자로 선정했으며, 2007년 'Trade Finance', 2012년 'Project Finance'도 수은의 선박금융 프로젝트를 최우수거래로 선정한 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수은은 세계 유수의 선박금융 취급 상업금융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해양금융 지원의 입지를 더욱 넓혀가고 있다.

전대자금의 운용과 변천

수출기반자금(간접대출)은 해외 금융기관에 일정 규모의 대출 한도(Credit Line)를 설정하고, 그 금융기관(전대은행)으로 하여금 이 자금을 자국 내 수입자들에게 대출(Relending)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수입결제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금융방식이다.

전대은행은 설정된 대출한도 범위에서 자기자금의 부담 없이 수입규모가 비교적 작은 기계류, 전기기기 등 중소기업 자본재 및 내구성 소비재 수입거래를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다. 외국 수입자는 자국 내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우리나라 상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은 수출이행과 동시에 수출대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 제도는 1978년 3월 정부의 대개도국 중장기 연불수출 지원 촉진조치에 따라 같은 해 4월과 6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전대차관 취급규정'과 '외국 금융기관 앞 전대차관 취급에 대한 기본운영 방침'이 마련되면서 본격 시행되었다.

현재의 수출기반자금(간접대출)은 1984년 11월 이전에는 '전대차관'으로 불렸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과의 수출입거래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됨으로써 양국의 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OECD 수출신용협약 적용이 점차 엄격해지면서 양허성 조건 지원이

제약을 받으며 지원요건이 다소 강화된 이후, 수출기반자금(간접대출)은 일반 상업금융에 가까운 조건으로 개도국에 대한 우리나라 상품의 시장개척 지원 역할을 맡았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수출기반자금(간접대출)은 단기와 중장기 수출기반자금(간접대출), 리파이낸스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단기 수출기반자금(간접대출)은 대출기간이 6개월 이상 2년 미만이며, 대출한도를 수출금액의 100%로 하고 있다. 중장기 수출기반자금(간접대출)은 대출기간이 2년 이상 10년 이하이며, 대출한도를 수출계약금액의 85%, 계약금액의 15% 이상의 선수금 수령을 조건으로 한다. 리파이낸스는 5,000만 달러 이하의 거래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수은이 수출신용장을 매입하고 동시에 이를 신용장 발행은행인 전대은행 앞 대출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2004년 4월 이후에는 전대자금 대출 시 외국환 업무도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전대은행에 대한 신용한도 공여 계약에 수출신용장확인 및 국외은행 지급보증 등 외국환 업무도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수은은 전대자금 대출 업무에 단기 전대자금, 중장기 전대자금, 신용장확인, 국외은행 지급보증 등을 포괄하는 은행 간 수출신용(Interbank Export Credit)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이와 함께 전대은행과 체결하는 신용한도 계약의 형태와 범위도 다양해졌다.



우즈베키스탄 NBU 은행과의 전대금융신용공여계약 서명식(2007. 12. 12.)

전대은행의 지원 요건 변화

1978년 4월과 6월에 제정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전대차관 취급규정'과 '외국 금융기관 앞 전대차관 취급에 대한 기본운용방침'에서 수출기반자금(간접대출) 지원적격 국가는 OECD 회원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 적격 차주는 신용 있는 금융기관으로 포괄 규정했다.

이후 1978년 12월에 OECD 회원국 중 개발도상국 수준에 있는 국가가 지원적격 국가에 포함되었으며, 1981년 11월에는 종전의 '대상국의 금융기관'으로 한정되던 차주의 범위를 '대상국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으로 변경해 선진국 금융기관의 지점 등도 포함됐다.

2015년 말 기준으로는 지원대상국(국가 신용등급 D2 이상) 정부, 중앙은행, 국영금융기관, 신용등급이 D- 이상인 금융기관 등이 차주가 되는 경우 전대금융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2015년 신용도가 취약하여 지원하기 어려운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대 적격차주에 '신용도가 우량한 국제개발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금융기관'을 추가했다.

지원 대상 품목은 1978년 업무취급 시작 당시에는 운영위원회가 선정하는 품목으로 지정되었으나, 1998년 9월 「수은법」 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품목제한이 폐지되었다.

대출기간은 제도 도입 초기 품목별 및 수출계약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였으나, 2000년 5월 품목별 대출기간을 정한 전대자금 대출취급지침이 폐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제도 도입 초기부터 1996년까지 수은이 전대은행에 제공하는 유리한 금리조건이 수입자에게 적용되도록 전대은행의 전대마진폭을 지정했으나, 자금 활용의 활성화 및 전대은행의 자율성 존중을 위하여 1996년 4월 전대마진폭의 제한을 폐지했다.

수출기반자금(간접대출)로 지원하는 수출거래에 대한 선수금 요건은 1980년 2월 신설 당시 수출계약금액의 10%였으나, 1981년 11월 직접대출의 기준 선수금률인 15%로 상향 조정했다. 1997년 2월에는 대출기간 2년 미만 거래는 선수금 요건을 폐지했다.

2015년 현재 여신세척 상 대출금액은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하는 한도까지 지원가능하며, 2년 미만의 경우(OECD 수출신용협약 비대상인 경우)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2007년 이전에는 국외은행 전대방식의 간접대출로 우리 기업의 수출거래를 지원하는 수출기반자금(간접대출)만 지원 가능했으나, 2007년 우리 기업의 해외자회사 및 손회사의 해외 현지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투스텝복합금융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현지법인 앞 사업자금(간접대출) 및 해외사업 활성화자금(간접대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우리 기업의 수출거래 및 해외투자, 현지판매를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3. 지원실적 및 사례

해외건설 및 플랜트 수입결제자금 성과

수은의 경우 1990년대까지 수출금융의 성격과 그 운영방식이 여러 측면에서 선진국 수출신용과 차이점을 보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수은은 공급자신용 방식 위주로 금융지원을 했다. 이는 금융의 법적 차주를 국내 수출자로 하고 있어, 수출자의 채무변제능력과 관계없이 해외수입자의 수출대금 미지급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선진국의 수출신용과 위험부담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들어 수출대금 회수위험을 수은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구매자신용 방식의 수출금융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

수출금융의 동기와 역할도 선진국과 사뭇 달랐다. 궁극적으로 자본재 수출의 증대라는 목적은 같지만, 수출금융을 공급자신용 위주로 운영한 결과 수출대금 회수위험 부담이라는 역할보다는 국내 수출자의 외화자금 가용성을 높여주는 역할이 컸다.

수은의 임무와 역할이 선진국 공적수출금융기관과 차이가 있음에도 1980년대 중반까지 국내 기업의 외화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이러한 역할만으로도 수출금융의 지원가치가 충분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이 성장하고 국내 기업의 신용도가 높아져 자체 외화자금 조달 능력이 향상되면서 수은이 초창기 담당했던 외화가용성 측면의 역할은

그 의미가 희석되었다. 이와 함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연불금융 차주인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이 거듭되면서 수출채권 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났고, 그 해결방안으로 구매자신용의 전환이 불가피했다. 때마침 국내 수출기업의 직접대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도 이를 부채질했다.

1979년부터 도입한 직접대출은 국내 수출자와 해외구매자 및 수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였다. 국내 수출자는 수출대금이 현금으로 결제되어 수출채권의 회수위험을 지지 않을 뿐 아니라 연불금융 차입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를 방지할 수 있었다. 여기에 목적물의 인도로 거래관계가 종료됨으로써 사후관리에 소요되던 비용도 절감하게 되었다.

해외 구매자의 실리도 컸다. 대부분 개도국에서 수은 직접대출은 공공차관 도입으로 간주돼 자국내 세제에 따라 이자지급 시 원천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목적물의 가속 감가상각이 허용되고, 수출대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므로 수출자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되어 가격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었다.

자금을 대출하는 수은도 수출입자 간의 수출계약과 별도로 수은이 구매자와 직접 대출계약을 체결하므로 수은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채권보전 등을 보다 철저히 하여 부실채권 발생비용이 낮아졌다.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직접대출은 초기 제도 운영과정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절차가 복잡하고, 대출계약서 체결까지 기간이 길어 수출거래가 차질을 빚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해외선주 내지 발주처의 필요에 맞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심사역량을 강화해 심사기간을 줄이면서 직접대출은 수은의 주력 여신제도로 자리 잡았다.

직접대출제도 도입 후 2005년까지 플랜트 직접대출 승인 건수는 모두 58건이며, 승인액은 총 35억 달러였다. 플랜트 연불금융 185건 43억 달러보다 적은 규모이지만 2000년 이후 수출금융 여신의 87%를 차지하며 플랜트 수출금융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투르크메니스탄 키안리(Kiyarly) 석유화학플랜트 조감도(2014. 4. 7.)

그러나 2014년 말 이후 지속된 저유가로 산유국 재정이 악화되면서 중동을 중심으로 발주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 실제로 카타르 알카라나(Al-Karanna) 석유화학 콤플렉스 프로젝트 85억 달러, 사우디 아람코(Aramco) CFP 프로젝트 30억 달러 등 유가하락에 따른 프로젝트 사업성 악화로 발주가 연이어 취소되어 2015년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건설·플랜트 수주실적이 50% 정도 급감한 상황이다.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수은은 2014년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가 발주한 키안리(Kiyarly) 지역 석유화학플랜트 건설 사업에 7억 달러의 금융을 지원했다. 또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동일한 발주자가 추진한 정유설비 현대화 사업에 4억 달러의 금융 지원을 하면서 우리 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을 적극 돕고 있다. 전통적 플랜트시장이던 중동지역에서 벗어나 신흥시장인 중앙아시아지역을 개척하는 국내 건설·플랜트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박금융에서의 수입결제자금의 성과

선박금융에서 수출기반자금 대출은 해외 선주가 국내 수출자로부터 선박을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금을 수은이 해외 선주에게 대출하는 제도이다. 연불수출 지원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1979년 도입되었으며, 국내 수출자, 해외 선주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수은의 선박금융 제도는 이후 각종 리스크 분석을 통해 개별 프로젝트마다 맞춤형 채권 보전장치를 구성하는 대출방식인 스트럭처드 파이

낸스로 발전했다. 이러한 방식의 수출기반자금 대출 제도가 정착되면서 선박 수출 거래에 대한 수은의 수출금융 지원실적은 획기적인 신장세를 기록하게 되었다.

최초 선박 스트럭처드 파이낸스 지원사례는 2002년 싱가포르 Star Tanker사의 VLCC 1척(계약액 7,100만 달러, 승인액 3,600만 달러)에 대한 거래였다. 이를 기점으로 수은이 선박금융 심사역의 관점을 국내에서 해외로, 그리고 지급보증서부 대출에서 본선담보 등 다양한 담보부 대출로 전환하는 분수령이 되었다. 아울러 상업금융기관과 협조대출을 통해 수은이 세계 선박금융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선박 스트럭처드 파이낸스는 2002년 4월 OECD 선박수출신용양해 개정에 따라 2002년 하반기부터 취급해, 2003년 23척 8억 달러, 2004년 79척 35억 달러 승인 등 단기간 내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0년까지 이어지며, 총 238척 약 124억 달러를 지원했다.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5년 사이 수출기반자금 대출 누적 지원규모가 108억 5,000만 달러(채무보증 포함 시 134억 달러)에 이르렀다.

지원규모의 괄목할 성장은 우리 조선업이 사상 최대의 호황으로 접어들던 시기, 신규 제도를 적기에 활용한 결과였다. 수은의 지원이 국내 조선업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스트럭처드 파이낸스를 통해 수은은 2015년 말까지 총 469척에 232억 8,300만 달러의 자금을 승인했다. 선종도 초대형 컨테이너선, 초대형 유조선, LNG선 등 고부가가치선을 중심으로 다양하다.

수출기반자금 대출(스트럭처드 파이낸스 포함) 승인실적					(단위 : 척, 백만 달러)
	2002~2005	2006~2010	2011~2015	합계	
승인척수(선박)	136	90	207	433	
승인척수(해양플랜트)	1	11	24	36	
합계	137	101	231	469	
승인금액(선박)	6,110	4,672	7,053	17,835	
승인금액(해양플랜트)	185	1,466	3,797	5,448	
합계	6,295	6,138	10,850	23,283	



미국 Pacific Drilling 앞 Drillship 4척 직접대출(2010. 6. 10.)

선박·해양플랜트 수출기반자금 대출(스트럭처드 파이낸스) 승인실적(2011~2015)						(단위 : 척, 백만 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승인척수	33	15	55	69	59	231
승인금액	3,061	1,960	2,536	1,749	1,544	10,850

또한 드릴쉽 등 해양플랜트 지원규모도 수주 증가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1~2015년까지의 수출기반자금 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고연비 사양의 에코쉽 발주 증가 및 고유가에 따른 해양플랜트 관련 투자 증가로 2011~2013년 사이 각각 480억 달러, 306억 달러, 464억 달러의 수주를 기록한 영향이 컸다. 이 과정에서 수은은 해외 발주 프로젝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출의향서를 제출해 지원의사를 표시하고, 금융주선(Financial Arranger) 역할을 강화하면서 국내 조선사 수주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또한 해양플랜트에 대한 수출기반자금 대출 지원규모도 2012년 14억 5,000만 달러, 2013년 12억 1,000만 달러, 2014년 6억 6,000만 달러로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그러나 2015년 유가 하락 및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 경제위기 등의 영향으로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여신지원 규모가 급감했고, 채무보증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자본시장을 활용한 채권보증 활성화 등으로 수출기반자금 대출은 다소 감소했다.

2011~2015년 수출기반자금 대출승인 가운데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선종은 현재 국내 조선사의 주력 선종인 컨테이너선, LNG선 및 탱커선으로, 각각 29.0%, 13.6%, 11.3%를 점유하고 있다. 해양플랜트에 대한 대출은 전체 수출기반자금 대출의 34.9%를 차지하며 수은의 선박금융이 종합 해양금융으로 발전하고 있다.

향후 지원분야는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분류되는 초대형 유조선(VLCC), LNG선, LPG선, 1만 4,000TEU 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 드릴쉽 등 해양플랜트에 대한 금융지원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해운산업이 가장 발달한 유럽지역이 66.8%로 단연 1위이며, 미주(17.1%), 아시아(16.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유럽은 전통적인 해운강국인 그리스와 영국이 각각 전체의 11.6%와 10.5%를 차지했으며, 미주는 캐나다(7.4%), 아시아는 싱가포르(4.3%)가 주요 지원대상국이었다.

특히, 수은은 2003년 9월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채무제조정 협상이 타결된 이후 2003년 국내 은행으로는 처음으로 러시아 선주가 발주한 유조선 3척의 수출을 위하여 1억 2,000만 달러를 지원한

선종별 수출기반자금 대출(스트럭처드 파이낸스) 승인실적(2011~2015)						(단위 : 척, 백만 달러)
	컨테이너선	LNG선	탱커	벌크선	해양플랜트 등 기타	합계
승인척수	58	28	90	20	35	231
승인금액	3,149	1,472	1,226	461	4,542	10,850
지원 비율(%)	29.0	13.6	11.3	4.2	41.9	100.0

지역별 수출기반자금 대출(스트럭처드 파이낸스) 승인실적(2011~2015)					(단위 : 척, 백만 달러)
	유럽	미주	아시아(중동 포함)	합계	
승인척수	132	77	22	231	
승인금액	7,249	1,856	1,745	10,850	
지원 비율(%)	66.8	17.1	16.1	100.0	

이후 거래가 늘고 있다. 한편, LNG선, 유조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활발한 중동 지역(이란, 카타르, UAE 등)은 해운산업 육성을 위해 자국 해운사 소유를 위한 발주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수은의 주요 지원대상 지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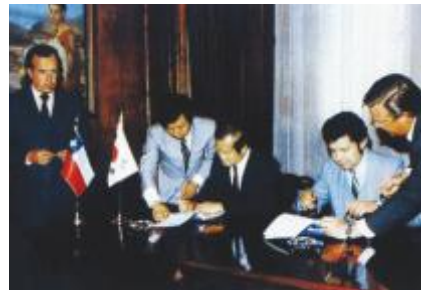
전대자금 방식 수입결제자금 지원

1978년의 제도 도입 후 최초로 체결된 전대자금 지원은 1979년 2월 6일 칠레의 Banco Israelita de Chile에 설정한 200만 달러였다. 이후 1979~1989년 13개 외국금융기관 4,800만 달러의 여신한도를 설정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전대자금업무가 활성화되면서 1995년 말 3억 5,000만 달러, 2000년 6억 달러, 2005년 11억 달러에 이르렀고, 이후 여신한도 공여가 비약적으로 늘어 2010년 30억 달러, 2015년 현재 17개국 37개 외국 금융기관에 74억 달러의 여신한도가 설정되었다.

자금집행은 1979~1990년 중에는 총 107억 원에 그쳤으나 1991년부터 점차 늘어나 1997년 1,215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후 IMF 외환위기 영향으로 1998년부터 감소했다가 2003년부터 연간 집행액이 1,000억 원을 상회해 2005년에 대출집행액 2,553억 원, 신용장확인으로 198억 원을 집행했다.

최초의 전대자금 지원거래는 1979년 칠레의 Banco Israelita de Chile 앞 자동차 수출거래 대출이었으며 1979~1990년에는 대만의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of China의 냉연관 등 철강재 수출 지원, 자메이카 중앙은행인 Bank of Jamaica의 전기 전자제품 수출지원, 이집트의 한·러·이집트 합작은행인 Cairo Far East Bank의 자동차 수출거래 지원, 아이티의 Banque de la République



칠레의 Banco Israelita de Chile와 최초의 전대자금 공여 계약 체결(1979. 2. 6.)



브라질 Banco Francês e Brasileiro와 전대자금 증액 공여 계약 체결(1993. 9. 24.)

d'Haiti 및 수리남의 중앙은행인 Centrale Bank van Suriname의 건설장비 수출 지원을 통해 대개도국 수출확대에 기여했다.

1991~2000년에는 중남미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브라질의 Banco Francês e Brasileiro, 칠레의 Banco de Chile, 페루의 Corporacion Financiera de Desarrollo S.A., 멕시코의 Bancomext, Banamex, Bancomer, 중미 5개국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CABEL, 아르헨티나의 Banco Almafuerce Coop. 등에 신규 여신한도를 설정하고, 자금지원을 발판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인쇄기, 섬유제품 및 관련 기계류, 일상생활용품, 컬러 TV 등 전자제품, 굴삭기, 전자레인지, VCR, 승용차, 트럭 등의 수출지원이 이루어졌다.

1991년에는 동구권 최초로 헝가리의 Hungarian Foreign Trade Bank를 통해 컬러 TV 수출을 지원했고, 이후 대우의 현지 합작은행인 MHB-Daewoo Bank에도 자금을 지원했다. 동남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Bank Bumi Daya, 태국의 Thai Farmers Bank에 주로 생산설비 수출을 지원했으며, 1995년 중국의 Bank of China, 베트남의 Vietcombank, Bank for Investment & Development of Vietnam 등에 전대자금을 지원하며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이들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활동에 기여했다.

2001~2005년에는 중남미의 유동성 호조로 전대자금 지원비중이 줄고, 이란(Bank Melli, Bank of Industry and Mine, Bank Saderat, Bank Sepah, Bank Tejarat), 러시아(Alfa Bank, Ros Bank, Promsvyaz Bank, Vneshtorg Bank, Sber Bank), 카자흐스탄(Kazkommerts Bank, Bank TuranAlem, Halyk Bank, Bank Centercredit, Bank Caspian, Bank Nur) 등에 신규 여신한도를



우즈베키스탄 NBU은행 및 ASAKA 은행과의 전대금융 서명식(2010. 5. 4.)

전대자금 여신한도 설정 실적(누계)

(단위 : 백만 달러)

	1979~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11
은행 수	11	6	32	40	39	47	37
여신한도(백만 달러)	40	25	351	604	1,187	3,080	7,403

수출기반자금대출 및 기타 전대금융상품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기반자금대출(간접대출)	577	691	395	449	476	606	441	517	396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간접대출)	-	57	43	1	37	136	136	340	388
해외사업활성화자금대출(간접대출)	-	0	0	403	543	592	1,095	1,230	908

설정했으며 대출도 활발했다.

2006년 이후 전대금융은 러시아·CIS(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지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2007년 ASAKA 은행에 크레딧라인이 최초 설정된 이후 자동차 품목 지원 위주로 2008년 1억 3,000만 달러, 2009년 2억 5,000만 달러, 2010년 3억 달러의 대출이 집행되는 등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수출기반자금 대출(간접금융) 최대 사용국의 지위를 지키고 있다.

대출 집행규모는 2008년 6억 9,000만 달러로 제

도 도입 후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전대은행에 설정되었던 전대라인이 종결되면서 2009년 감소했고, 이후 2012년까지 다시 증가 추세다. 한편 과거 주요 지원품목이었던 자동차, 전자제품, ICT기기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됨에 따라, 2013년 이후에는 대출 집행규모가 4~5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대신, 2008년 신규로 도입한 투스텝복합금융 상품을 통해 우리나라 현지법인의 판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구 소련의 붕괴, 소비재차관 회수 과정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는 세계를 뒤흔든 일대 사건이었지만 수은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그 이유는 우리 정부가 구 소련과 국교 수립 이후 양국의 협력 증진을 위해 1991년 1월 수은을 통해 소비재차관 15억 달러 및 연불 수출자금 5억 달러를 3년에 걸쳐 제공하고, 은행차관단은 현금차관 1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한·소 정부 합의에서 비롯되었다. 이 합의에 따라 수은은 소련대외경제은행(VEB)과 1991년 4월 16일 1차 연도 소비재차관 8억 달러 공여 차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소비에트 연방 해체로 1991년 12월 28일 승인이 중단될 때까지 전기·전자제품 등 국내 20여 개 기업, 41개 품목에 4억 6,600만 달러의 자금을 대출한 상태였다.

수은의 대출을 보증할 소련 정부가 사라지면서 차관 회수는 미국에 빠졌다. 실제 1992년 6월 이자상환기일 및 1993년 11월 원금상환기일이 도래했지만 1992년 11월에 1,300만 달러, 1993년 2월에 600만 달러 상환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대한 수차례 채무재조정(Rescheduling)후, 2003년 9월 한·러 양국 정부 협정으로 최종적인 채무재조정 조건에 합의하면서 실마리를 풀었

다. 내용을 보면 채무재조정 기준일 2002년 12월 1일 기준 미상환원리금 4억 2,200만 달러 중 연체이자 일부인 1억 2,300만 달러를 감면하고 2억 9,900만 달러를 원금 화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대출 회수를 보면 원금 중 9,800만 달러는 2006년까지 현물로 회수하고 2억 100만 달러는 2007년부터 2025년까지 LIBOR + 0.5%의 조건으로 분할상환하고 있다. 다행히 현재까지 채무재조정 조건에 따른 원리금 회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물 상환관련 러시아 VEB와 은행 간 협정체결(1995. 7. 10.)

대러 소비재차관 상환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2002년 12월 1일				2015년 12월		
회수대상액	회수액	감면액	원금화금액	원금화금액	회수금액	채권잔액
709 ^{*)}	287	123	299	299	193	106

주: 최초 차관원금 466백만 달러와 관련 이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임.

서비스산업 관련 수출기반자금 지원 사례

수은은 삼성전자가 인도 릴라이언스지오인포컴(Reliance Jio Infocomm Ltd)에서 주주한 인도 최초의 전국망 4G-LTE 통신네트워크 구축사업에 2014년 9월 수출 기반자금 7억 5,000만 달러를 제공했다.

릴라이언스지오인포컴은 원유 및 가스, 정유, 석유화학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인도 최대 민간 기업인 릴라이언스의 통신부문 자회사로 인도에서 유일하게 전국 4G-LTE 통신망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다. 인도 릴라이언스 4G-LTE 구축사업은 삼성전자가 이동통신 기지국 및 장비 공급, 구축 및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한다.

특히 이번 구축사업은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30여 중소·중견 부품 협력사가 참여해 대·중소 동반성장 및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ICT 산업 해외진출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한, 수은이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보증 및 우선상환제를 시행해 국내 금융기관 4개사(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NH투자증권)가 공동 참여하는 성과도 있었다. 우선상환제란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 프로젝트 참여 리스크를 완화해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다.

통신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서비스산업의 핵심 기반사업으로 수은의 대규모 금융지원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의 수출산업화를 견인하는데 일조했고, 향후 휴대폰 단말기, 소프트웨어 등 연관 분야에서의 국내 기업의 인도 통신시장 진출 공략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인도 릴라이언스 지오인포컴 통신네트워크 구축사업 금융지원 계약체결(2014. 6. 25.)

5절 수출금융보증

1. 개요

수출금융보증은 수은의 지원 대상 수출거래에 자금을 대출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앞으로 차주의 채무불이행 시 수은이 채무를 대신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수출금융보증은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반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 대상 채무로 한다. 주채무자는 수출관련 대출의 지원대상자이고, 보증수혜자는 주채무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자, 채무증권을 인수하는 자 또는 기타 계약상의 채권자이다.

수출금융보증은 2014년 4월 「수은법」 개정에 따라 여신제도를 개편하면서 종전의 대내·외 채무보증 및 대내·외 채권보증을 통합했다. 대출 분류체

제와 동일하게 수출, 수입 및 해외사업의 대외거래 유형을 기준으로 채무보증을 수출금융보증, 수입금융보증, 해외사업금융보증으로 분류했다.

2. 제도의 운용 및 변천

해외건설 및 플랜트 관련 대외채무보증 운용

1980년대 들어 우리나라 산업구조 고도화와 더불어 플랜트, 선박 등 자본재 수출거래 규모가 대형화하고, 거래액도 커짐에 따라 구매자 신용 즉, 직접대출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거액 여신에 따른 자금부담 및 리스크 분산을 위해 국제상업은행과의 협조금융 필요성 또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수은은 국제상업은행의 협조대출 유도를 위해 1981년 6월 11일 업무방법서를 개정해 대외채무보증을 부대업무로 취급할 근거를 마련하고, 2001년부터 차주가 수입자(외국인)인 거래에

대외채무보증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자본재 수출거래 규모의 대형화, 직접대출 수요 증가, 프로젝트 파이낸스나 스트럭처드 파이낸스와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으로 대외채무보증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수은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997년부터 「수은법」 개정을 추진했다. 결국 2002년 부대업무로 취급하여 온 대외채무보증 업무를 외국환업무에 근거해 본업무의 하나로 취급할 수 있도록 「수은법」을 개정했다.

수은의 대외채무보증과 수출보험의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은 수입자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수출신용 취급근거의 국제규범인 OECD 수출신용협약에는 별개의 상품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자를 동일한 제도로 보기는 어렵다. 즉 각국수출신용상품의 위험담보범위에 따른 기준요율을 정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인 OECD 수출신용협약 제27조 b)항에 의하면 대외채무보증은 “Above Standard Product”로, 중장기 수출보험은 “Below Standard Product”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두 상품이 리스크 부담범위에 차이가 있어 이를 명백히 구분한 것이다.

수출 지원전략 측면에서도, 대외채무보증 취급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수출보험 외에도 다른 리스크 관리수단을 선택하게 되었다.

선박 채무보증과 채권보증의 운용과 변천

선박거래의 채무보증은 선박금융 지원거래에 대하여 자금을 대출한 국내외 금융기관 앞으로 해외선주 또는 해당 차주의 채무불이행시 수은이 채무를 대신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부대업무인 대외채무보증 업무가 2002년 「수은법」이 개정되며 본 업무로 편입되었다. 이어 선박 스트럭처드 파이낸스 제도가 도입되면서 채무보증도 수은 선박금융의 주요 지원제도로 자리 잡았다. 수은의 채권보증과 채무보증은 기본적으로 OECD 선박수출신용양해에 따른 수출기반자금 대출과 선박 스트럭처드 파이낸스의 기본 지원조건을 준용하고 있다.

선박 채무보증은 수출기반대출과 달리 국내 조선사의 거래에 국내외 상업기관의 대출(Bank Loan)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 상업은행 앞으로 외국 수입자의 대출금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선박 채권보증은 자본시장에서 채권 투자자에게 외국 수입자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다. 통상, 채권보증과 채무보증에 대해 수은이 징구하는 보증료율은 유사한 수준이지만, 해외선주 입장에서 채권보증의 경우 Bank Loan 시장 위축으로 국제상업은행이 선박금융 참여를 기피할 때 자본시장에서 직접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면 금융조달 비용을 낮추는 장점이 있다.

채무보증 도입 초기에는 선박금융이 플랜트 금융과 달리 신용도가 양호한 선진국 및 산유국 선주와 채권회수가 용이한 선박에 집중했다. 이런 이유로 프로젝트 리스크가 비교적 적어 국제상업은행의 채무보증 없이 자체 리스크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0년대 말부터 수은의 채무보증 인지도가 높아지고, 금융상품의 안정성, 수은의 양호한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대규모 시리즈 선박수출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며 국제상업은행과 공동융자해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수출기반자금 대출과 채무보증을 연계하는 복합금융 방식도 활성화 됐다. 그 방편으로 2014년부터 수은 채무보증에 국내 시중은행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기 우선상환권을 부여했고, 선박금융 프로젝트에 대한 선박채권보증을 통해 해외연기금, 보험사의 재원 유치에 힘쓰고 있다.

단기 우선상환제도는 선박금융이 통상 10년 이상의 장기금융이라 국내 상업은행의 참여가 쉽지 않아 상업은행 대출을 우선 상환하고 수은 대출금을 나중에 상환하는 것으로 국내 상업은행의 대출참여를 유도했다.

선박채권보증은 국내 조선사가 제작하는 선박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외선주가 프로젝트 채권(Project Bond)을 발행하고 수은이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

이다. 채권보증의 주요 수혜자는 채무보증 Bank Loan 시장에서 활동하는 국제상업은행이 아닌 자본시장 투자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계 은행들이 선박금융을 대폭 축소하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생긴 금융 공백과 유동성 경색을 선진 금융기법으로 풀고자 내놓은 대안 금융상품이다.

3. 지원실적 및 사례

대내외채무보증 지원 성과

대내채무보증 지원실적은 2005년까지 2건에 승인금액은 5,08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9년 이후 조선사 등 부실기업 관련 손실분담 확약의 증가로 승인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5년까지 총 49건 원화 5,900억 원 및 미달러화 115백만 달러에 달한다.

선박 관련 수출금융보증의 성공적인 수행

선박거래 최초 채무보증 프로젝트는 2007년 프랑스 CMA CGM의 1만 1,400TEU 급 컨테이너선 4척에 대한 계약이었다. 협조융자 금융기관이 대출금 상환 리스크 분산 및 수은의 신용도를 반영한 차입금리 개선 목적으로 요청했으며, 수은의 선박거래에 대한 채무보증이 닻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12년부터 유럽계 은행의 선박금융 축소, 대규모 선박발주 프로젝트의 증가로 선박 및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수은의 채무보증 요청이 꾸준히 증가해, 2015년 채무보증 승인 규모는 9억 8,4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 Scorpio Tankers Inc. 앞 정유운반선 수출 관련 프로젝트 채권보증(2013. 9. 30.)

선박·해양플랜트 채무보증(채권보증 포함) 승인실적										(단위 : 척,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승인척수(선박)	6	14	-	-	-	-	25	52	46	143
승인척수(해양플랜트)	-	2	2	-	-	2	3	4	-	13
합계	6	16	2	0	0	2	28	56	46	156
승인금액(선박)	173	227	-	-	-	-	196	553	984	2,133
승인금액(해양플랜트)	-	100	135	-	-	292	230	305	-	1,062
합계	173	327	135	0	0	292	426	858	984	3,195

선박채권보증은 세계 최초로 2013년 9월 미국 스콜피오텍커사의 정유운반선 18척 계약에 1억 2,500만 달러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이후 중국 계 리스사를 활용한 채권보증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권보증 발행에 성공했다. 현재까지 미국 수출입은행(US EXIM), 영국 수출신용보증국(ECGD), 프랑스 수출보험공사(Coface)가 자국 항공기의 수출지원을 위해 채권보증을 발행한 사례는 있었지만 선박 수출거래를 기반으로 채권보증을 시장에 출시한 것은 수은이 세계 최초였다.

6절 수출이행성보증

1. 개요

이행성보증이란 수출자가 계약서에 언급된 계약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당사자인 수출자와 수입자 이외에 제3자(통상 금융기관)가 수출자를 대신해 채무변제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지급하는 채무부담행위로 여신의 일종이다.

수은의 수출이행성보증은 수출거래의 수주 등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유보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등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출이행성보증은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제반 거래를 대상으로, 국내 기업 또는 해외자회사의 보증의뢰를 통해 보증대상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을 보증수혜자로 하고 있다.

수출이행성보증은 2014년 4월 「수은법」 개정에 따라 여신제도를 정비하며 업무를 조정했으며, 대출의 분류체계와 동일하게 수출, 수입 및 해외사업의 대외거래 유형을 기준으로 수출이행성보증, 수입이행성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으로 분류했다.

2. 제도의 운용과 변천

개관

수은은 지원대상거래에 대한 대출지원뿐만 아니라 대외거래의 성사 및 수주 지원을 위해 1977년 9월 1일 이행성보증 업무를 취급했다. 도입 당시에는 수은의 금융지원을 받는 거래에 한정했으나, 이후 수은의 금융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거래에도 수은의 금융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취급했다.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이행성보증 시행

정부는 2013년 8월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신흥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기존 단순 도급사업에서 시공사 금융주선 및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해외건설·플랜트 시장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맞춤형 금융지원을 골자로 하는 이 방안은 단순 도급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이행성 보증 확대, 수수료 인하 및 보증심사 개선 등 수은의 수출이행성보증 제도와 밀접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수은은 2013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최대 중소 0.18%p, 중견 0.07%p, 대기업 0.05%p까지 보증수수료를 인하했으며, 2014년에는 상생형 수주 또는 사업성 평가가 우수한 경우 최대 0.15%p까지 인하하는 상생협력 보증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보증심사 기준을 기업 신용도 평가에서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로 전환하기 위해 2014년 8월부터 해외건설협회 사업성 평가를 제작능력 평가요소에 반영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이 외에도 특례로 취급하는 중소·중견기업 이행성보증 거래별 한도를 종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증액하고,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과 공동수주할 경우 선수금 관리요건을 완화했으며, 수은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과 공동수주한 중소·중견기업은 한 단계 상위 신용등급을 적용해 상생보증을 실시했다. 또한 취득 가능한 담보제공기관 인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는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2014년 1월 수은 본점에 설치됐다. 수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협회, 서울보증보험, 플랜트산업협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정보와 원스톱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 개소(2014. 1. 14.)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 개요

1. 사업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방안 제시
 - 단순 도급사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하되, 시공사 금융·투자개발형사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해외건설·플랜트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달성
2. 궁극적으로 민간금융 참여 활성화를 통한 수주 지원을 확대하되, 보완적으로 공적금융기관의 지원역량 확충
 - 해외건설·플랜트 사업에 민간금융기관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신개념 사모펀드(PeF) 모델 도입, 규제 완화 등 추진
 -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역량을 확충하여 지원규모·금리 경쟁력을 제고하되,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에 지원 집중
 - 수은에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정책금융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개도국 발주 프로젝트 등 위험이 크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 패키징형 지원 추진
3. 국내 입찰제도 글로벌화·인력양성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역량을 강화하고, 건전경쟁 유도·진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지원 확대

정범위 확대 및 기관별 한도제한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이행성보증 지원을 확대했다.

한편,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지원을 위해 2015년 3월 제1차 수주지원협의회 및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증보증제도'를 도입했다. 2015년 7월부터 적용한 이 제도는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 협약기관 및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사업성을 평가해 이행성보증을 제공한다.

해양 플랜트, 선박 수출이행성보증 운용

수은은 국내 조선업을 육성하기 위해 1976년 설립 이래 대출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선박 부문을 지원해왔으나,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주된 지원수단을 대출에서 수출이행성보증으로 전환했다. 선박 수출이행성보증이란 조선사의 선박 수

출에서 발생하는 제반 건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선박 발주사가 보증의 수혜자가 된다.

수출이행성보증은 '선수금환급보증'이 대표적이다. 선사는 선박 건조기간에 대금의 일부를 선수금 형태로 지급하는데, 조선사의 귀책으로 선박을 제때 인도받지 못한 경우 선사 앞으로 발급하는 환급 보증이다. 선수금환급보증은 수출이행성보증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선박을 발주할 때 필수적으로 선수금환급보증서 발급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조선사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 일정비율 만큼의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선박 수출 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하는 선사의 손실을 보상하는 '하자보수보증(Warranty Bond)'이 있다.

수은은 2000년대 중반까지 높은 대외 신용도를 바탕으로 선수금환급보증 등 수출이행성보증 시장에서 독점적 우위를 차지했다. 해외선사가 우리나라 조선사에 선박을 발주하는 경우, 선행조건으로 수은이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관례처럼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후, 산업은행 및 국내 시중은행에서 우리나라 조선사의 뛰어난 선박 제작이행능력을 감안해 선박 수출이행성보증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였다.

최근에는 국내 조선사의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대규모 손실, 해양플랜트 시장의 침체 및 이로 인한 선주의 발주 취소 및 인도 연기로 국내 조선사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어, 이에 맞게 수은도 수출이행성 보증지원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선해양사업정보센터 설립을 통한 사업성 평가, 해양플랜트 건조계약서 표준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계약 리스크 심사, 과도한 헤비테일 거래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그리고 심사에서 적정 가격, 합리적인 대금납입 스케줄 및 계약조건을 합의한 계약으로 판별이 되면 수출이행성보증을 적극 지원한다.

3. 지원실적 및 사례

i) 입찰보증(Bid-Bond)

입찰보증은 발주처에 제공하는 지급보증으로 입찰참가자(Bidder, Tenderer)로 하여금 낙찰 시 계약체결 의무를 포함해 입찰에 수반되는 모든 조건의 이행을 보장하고 있다.

수출거래관련 입찰유효기간은 통상 90일 또는 6개월로 입찰보증은 타 보증에 비해 보증기간이 짧고, 보증금액 또한 입찰금액의 3~5% 수준에 불과하다.

ii)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Refund 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은 발주처가 수출자의 착공비용(Mobilization Cost) 지원을 위해 계약금액의 일부를 선수금으로 지급하는데, 수출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조건(성능, 납기 등)대로 수출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처의 선수금 상환 및 환급을 보장하는 지급보증이다.

그러나 선박수출의 경우, 통상 품목이 계약금액의 10~20%를 선수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달리 선수금환급보증은 계약금액의 40~80%가 보증 대상으로 거래당 보증규모가 커 선박이 전체 선수금환급보증 지원실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입찰보증 승인실적 (단위 : 억 원)								
1997년 이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179	1,214	6,066	5,383	4,015	4,246	696	637

선수금환급보증 승인실적 (단위 : 억 원)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A)	3,961	73,265	152,963	145,741	134,595	92,783	115,226	111,441	78,490
선박(B)	2,685	72,228	136,701	120,715	89,117	41,421	72,630	82,707	57,974
비중(B/A)	67.8%	98.6%	89.4%	82.8%	66.2%	44.6%	63.0%	74.2%	73.9%

계약이행보증 지원실적(승인기준) (단위 : 억 원)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819	3,069	6,982	33,832	30,120	27,638	30,623	25,741	15,706	

하자보수보증 지원실적(승인기준) (단위 : 억 원)								
1997년 이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455	71	826	754	821	1,531	3,057	803

유보금보증 지원실적(승인기준) (단위 : 억 원)							
2000년 이전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715	1,395	2,810	3,083	3,145	2,510	107

2014년에는 이라크 석유부가 발주한 Karbala 지역의 60억 달러 규모의 정유설비 건설사업을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SK건설 등 우리 기업 조인트 벤처(JV)가 수주했는데 수은은 선수금환급보증에 8억 달러, 계약이행보증에 3억 달러의 수출이행성보증을 지원해 우리 기업의 수주 및 계약을 도왔다.

iii)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계약이행보증은 수출계약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발주처 또는 수입자 앞으로 제공되는 지급보증으로, 수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성능, 납기 등)대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출금액의 일정비율(통상 계약금액의 10~20%)을 보상할 것을 보증한다.

수은의 계약이행보증 지원실적은 IMF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까지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1997년 IMF 외환위기에 뒤이은 상업금융의 실패를 보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대두됨에 따라 1997년 이후 특히 해외 플랜트·건설부문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이 대폭 증가했다.

2005년 정부에서 해외플랜트 건설, 정보통신 인프라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한 이후 수은의 역할은 더욱 확대됐다. 최근엔 신흥국 부진과 유가하락 등으로 발주권이 감소함에 따라 지원실적도 감소했다.

해외건설·플랜트 계약이행보증 지원실적(승인기준) (단위 : 억 원)								
1995	1997	1999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1,654	3,048	9,207	14,990	22,289	45,140	72,333	97,585	53,125

iv) 하자보수보증

(Maintenance Bond, Warranty Bond)

하자보수보증은 시공자가 일정기간 완공된 공사의 하자를 보수할 것을 계약서에 약정한 경우 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주처에 제공하는 지급보증(통상 계약금액의 5~20%)이다.

v) 유보금보증(Retention Bond)

유보금보증은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유보해 놓은 대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로 유보금에 대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이행성보증 실적

IMF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까지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IMF 외환위기로 인한 상업금융의 실패를 보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대두됨에 따라 1997년 이후 특히 해외 플랜트·건설부문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이 증가했다.

해외건설·플랜트 부문 수출이행성보증(계약이행보증) 지원액은 2012년 9조 5,295억 원에서 2013년 9조 7,585억 원, 2014년 9조 8,570억 원으로 증가했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이행성 보증 지원액도 2012년 2,237억 원에서 2013년 2,559억 원, 2014년 2,911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5년 수주산업 침체의 영향으로 2015

년에는 총 5조 3,125억 원, 중소기업은 2,795억 원으로 감소했다.

한편, 2015년 10월에는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회의 석유화학제품 생산설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한 현대엔지니어링의 1차 협력사인 성장이엔씨에 최초로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 협약기관이 공동으로 970만 달러의 이행성보증서를 발급했다.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 평가 결과 양호 등급인 B+를 받아 수은, 무보, 산은 및 서울보증보험이 각각 25%씩 동일한 비율로 보증을 제공한 것이다. 재무상태 등 개별기업의 신용도보다 사업성을 기준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리스크를 분담해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지원한 첫 사례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외건설·플랜트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 체결식 (2015. 7. 9.)

해양플랜트, 선박 이행성보증 실적

우리나라 조선사 선박수출 거래는 수출이행성보증 가운데 선수금환급보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수출이행성보증은 선박거래 수주 시 필수요건으로, 수출입은행의 지원실적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국내 조선사와 성장과 부침을 함께 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해운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선박 발주량이 증가하고, 유가 상승으로 해양플랜트 시장도 성장하는 등 국내 조선업이 황금기를 맞아, 수은의 수출이행성보

해양플랜트·선박 수출이행성보증 승인실적					(단위 : 척, 백만 달러)	
	2001~2005	2006~2010	2011~2015	합계		
승인척수(선박)	1,375	1,351	795	3,521		
승인척수(해양플랜트)	98	101	82	281		
합계	1,473	1,452	877	3,802		
승인금액(선박)	48,822	67,999	31,486	148,307		
승인금액(해양플랜트)	2,555	14,384	8,151	25,090		
합계	51,377	82,383	39,637	173,397		

중소·중견기업 보증지원 비중								(단위 : 조 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출	17.4	19.0	19.0	20.9	23.4	24.4	22.2		
보증 (비중)	2.8 (13.8%)	2.6 (11.9%)	2.7 (12.4%)	2.1 (9.1%)	2.0 (8.0%)	2.0 (7.7%)	2.5 (10.3%)		
합계	20.1	21.5	21.7	23.0	25.4	26.4	24.7		

증 지원도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2008년 리먼사태 이후 전 세계적인 불황이 지속되고, 2014년 이후 유가 급락으로 해양플랜트 및 에코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국내 조선업 침체와 함께 수출이행성보증 지원 또한 감소했다.

중소·중견기업 관련 이행성보증

최근 선박, 플랜트, 해외건설 분야의 대기업 수주가 어려워짐에 따라 대기업에 소규모 단기 직수출품 또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제작자금 대출 수요가 보증수요에 비해 많은 상황이다.

2014년 4월에는 상생협력보증을 도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수주를 지원해 해외사업 수행역량을 높이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 혹은 합작법인 형태로 수행하는 수출 및 해외투자 등의 거래에 대해서 보증료를 우대 지원하고, 대기업에 우대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해 중소기업과 동반수주할 동기를 부여했다.

EDCF 지원사업 연계지원도 시행했다. 대외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One-stop 금융서비스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효

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EDCF 지원사업을 수주한 중소기업에 수출이행성 보증을 적극 지원한 것이다.

2013년 모잠비크 보건부에 EDCF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유일기기에 선수금환급보증 330만 달러, 2014년 문엔지니어링의 탄자니아 주민등록청과의 EDCF 컨설팅 사업 관련 선수금환급보중에 80만 6,500달러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

7절 수출 관련 외국환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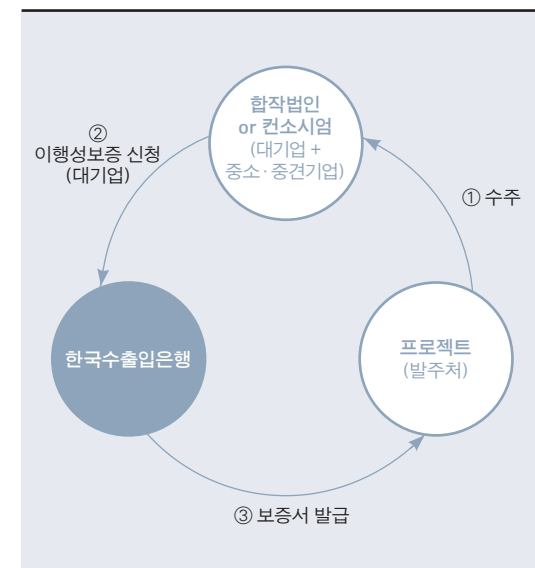
수은의 무역금융 지원은 IMF 외환위기 이후 수출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시중은행 수출지원자금 활성화를 위해 1998년 6월 무역어음재할인 제도를 도입하며 본격화되었다. 당시 시중은행의 외화유동성 부족 및 외화조달 곤란으로 국내 수출입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지고, 갈수록 복잡해지는 대외거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무역금융 지원수단이 절실했다.

이에 따라 수은은 부대업무로서 취급하던 외국환업무를 2002년 3월 「수은법」 및 5월 업무방법서 개정을 통해 본업무로 격상시켜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확대했다. 외국환업무의 여신 본업무화 이후 급격히 증가한 수요에 대응해 2002년 5월에는 외환업무실이 출범했다.

수은이 취급하는 수출관련 외국환업무에는 포페이팅(Forfaiting), 수출팩토링(Factoring), 수출환어음 매입, 수출신용장 통지 및 확인, 무역어음 재할인 등이 포함된다.

할인업무는 수출관련 대출 및 수입관련 대출을 수은이 직접 취급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경우, 대출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수은이 할인해 취급금융기관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거래를 간접 지원하는 제도이다. 1998년부터 국내 은행을 상대로 무역어음재할인 업무를 취

상생협력보증 지원구조



급하고 있는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기관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이 어려워져 수출기업에 대한 외화대출 규모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 국내 은행에 대한 무역어음재할인을 통해 외화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제도는 수은의 제한된 점포망과 인력으로 야기되는 수출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무역어음재할인 제도는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할 때 이를 보완하는 제도로 IMF 외환위기 때는 물론이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시중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신용장확인인은 국외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대하여 수은이 수출대금의 결제를 약속하는 제도로, 2002년 외국환 업무가 부대업무에서 본업무로 편입되면서 도입했다. 수출자는 수입국 은행의 상환 불이행 시에도 신용장에 대하여 수은이 결제를 약속함으로써 수출대금 회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개발도상국의 신용도가 취약한 개설은행이 발급한 신용장을 근거로 수출거래를 추진할 때 주로 이용되었다.

신용장확인인은 국외은행의 신용을 근거로 취급하는 외국환 상품으로, 대금 결제기간이 선적 후 또는 일람 후 2년 미만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국별 신용도 등급이 D2 이상인 국가일 경우에 가능하다. 수출자 요건은 수은이 제시하는 일정 신용등급 이상으로 수출계약이행능력을 갖추면 되는데, 신용등급이 미달하더라도 수출이행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예외취급이 가능하다. 은행별 여신한도는 정부 또는 중앙은행 지분이 50% 이상인 국영은행은 자기자본의 100%를 여신한도로 하되, 민간은행의 경우 신용등급별로 자기자본의 30~50%까지 지원하고 있다.

확인대상 신용장은 개설금액이 미화 5,000만 달러 이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은과 신용장확인 신용한도설정계약을 체결하거나 환거래 약정 또는 SWIFT KEY를 교환한 국외은행이 발행한 취소불능 신용장을 대상으로 한다.

2. 제도 운용과 변천

무역어음재할인의 도입과 운용

무역어음재할인제도는 IMF 외환위기 당시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 등 지원이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각 은행의 수출지원을 늘리기 위한 상업적 방식의 수출금융 지원제도이다. 수은은 당시 마비 상태에 빠진 국내 무역금융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하여, 수출입금융 전담지원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1998년 5월 재경부가 발표한 '수출입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1998년 6월 '수출입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수출환어음에 대한 재할인업무를 시작했다.

무역어음재할인제도를 통해 수은은 외화자금 수급상황, 각 은행별 차입여건 등 지속적인 시장정보 모니터링 및 국내 은행과의 접촉 강화 등을 통해 제도운용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해나가며, 외환위기 시 시중 단기 외화자금의 최종 조달수단(Credit Line)의 정점에 섰다. 또한 수은이 수출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의 한계를 전국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각 시중은행을 통해 간접지원 함으로써, '은행의 은행'이라는 한국은행의 무역금융관련 총액한도대출기능에 버금가는 역할을 수행했다.

무역어음재할인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었다. 대상은행 입장에서는 수출환어음매입에 소요되는 단기외화자금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조달해 단기의 화자금시장 변동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자금조달비용과 노력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수출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수출환어음 매입을 각 은행이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조달비용 절감에 따라 각 은행의 수출환어음매입 환가료가 인하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수출중소기업의 비용 절감 및 수출 증진에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대외신인도가 국가와 동일한 수은이 해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직접 차입해 국내 은행의 자금 공급역할을 해 국가차원에서 외화

자금 조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1998년 6월 제도 도입 후 초기에는 재할인 대상 품목 제한(HS code 72~90) 및 기간 제한 6개월 이상으로 성과가 미미했다. 당시 금융 구조조정의 여파로 시중은행이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6개월 이상 수출환어음매입을 기피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재할인료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무역어음재할인 취급지침' 및 각 은행과의 '무역어음재할인에 관한 기본협약서'를 수정했다. 재할인 한도는 각 은행의 단기 외화유동성 규모 및 재할인신청계획을 감안해 수시로 재배정했는데, 시중 외화유동성 규모가 풍부할 때는 재할인 신청금액이 감소했고, 외화유동성이 축소되면 재할인 신청금액이 대체로 증가했다. 따라서 국제 금융시장 동향 및 시중 외화유동성 상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1999년 5월에는 지방은행까지 제도가 확대되어 국내 은행들의 단기자금시장에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2000년 이후에도 시중 유동성이나 각 은행의 자금상황에 따라 무역어음재할인 이용실적은 증감을 반복했으며, 운영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우선 은행의 실무처리 편의를 위해 재할인 신청 관련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모든 수출환어음 매입 건에 대한 증빙자료 사본을 첨부하던 것을 거래 확인을 위한 제반 증빙을 전산출력물로 대체함으로써 간편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은행별 한도 배정방식도 선착순으로 배정하는 잔액한도 Pool제도로 전환해 재할인수요가 높은 은행에 지원규모를 늘리도록 조정한 것이다.

2004년에는 단기외화자금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국내 금융기관의 차입여건이 호전되면서 무역어음재할인자금의 조기상환 사례가 늘어나, 무역어음재할인 수요가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수은은 단기외화자금시장의 여건 변화에 관계없이 무역어음재할인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때 기존의 개별 수출환어음 매입건에 근거하여 취급하던 '건별 방식'을 수출환어음 매입실적에

근거해 은행마다 한도를 설정하는 '한도설정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재할인 기간도 3개월 범위 내(필요시 6개월)에서 각행의 실제수요에 따라 취급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만기 90일 이하의 재할인자금에 대해 일률적으로 3개월 가산율을 적용하는 대신 각 거래별 자금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가산율을 적용해 거래기간 별로 탄력적 금리적용이 가능토록 했다. 재할인대상 수출거래도 확대해 사후송금(Open Account: O/A) 방식에 의한 수출환어음매입도 무역어음재할인 대상거래로 허용함으로써 기한부 수출환어음매입 대상이 되는 모든 수출거래를 무역어음재할인 대상으로 인정했다. 무역어음재할인의 취급에 관한 사항은 수은과 대상은행이 체결한 '무역어음재할인에 관한 기본협약서'에 규정되어 있다.

무역어음 재할인에 관한 기본 협약서

•재할인한도

대상은행에 대한 무역어음재할인 한도는 각 은행의 직전 반기 무역금융 취급실적, 해당 반기 무역어음재할인 사용계획, 수은이 평가한 신용등급 변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 반기 초에 정함

•재할인료율

재원조달비용과 국내상업금리 수준 등을 감안해 결정

•매입대상

매입대상이 되는 수출환어음은 결제기간 30일 이상의 기한부 수출거래(Usance L/C, D/A, O/A방식을 포함)와 관련하여 발행된 수출환어음

•재할인기간

재할인기간은 무역거래의 기본 사이클을 감안하여 3개월로 규정하였으나, 상대방의 요청에 대하여 수은이 승낙하는 경우 총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재할인비율

재할인용무역어음 금액의 100% 이내

•재할인통화

미달러화 또는 원화 중 각 은행이 선택

포페이팅의 도입과 운용

2001년 세계경기 둔화로 수출이 부진하면서 수출 제작 능력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수출기업의 경우 개도국 수출거래 관련 수출환어음 매입을 국내 은행이 기피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 7월 수은은 ‘개도국 무역촉진 프로그램 전담작업반’을 구성하고, 9월 24개국 128개 우선지원 대상은행을 선정했다. 이어 삼성물산이 중국 HDPE와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28만 2,000달러의 수출환어음을 최초로 매입함으로써 본격적인 포페이팅 업무를 시작했다.

포페이팅이란 국외은행이 개설 또는 확인한 취소불능신용장에 근거하여 수출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수은이 국내수출자로부터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수출금융 제도다. 무소구조건이란 수입국 신용장 개설은행이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수출기업에 수출대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을 말한다.

포페이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래대상 국외은행의 신용평가 및 한도관리 등 대외위험 관리이다. 포페이팅 취급 절차는 수출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신용장방식의 수출환어음매입과 거의 동일하다.

포페이팅 이점은 수출자가 추가 담보 없이 초기에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우발채무 기재 의무가 없어 재무제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포페이팅 거래가 취급은행의 여신한도와 무관해 차입여력을 유지할 수 있다.

포페이팅 대상은 수출환어음, 약속어음 또는 수출채권의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선적 후 또는 일람 후 30일 이상 2년 미만, 건당 계약금액 또는 개설금액이 미화 1만 달러 이상 5,000만 달러 이하 거래가 해당된다. 수출자는 수은의 일정 신용등급 이상으로 수출계약 이행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신용등급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더라도 수출이행능력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예외 취급이 가능하다.

이로써 수은은 중장기 수출금융상품 외에도 단

기수출금융상품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개도국 국외은행의 지급불능 위험을 경감하고, 우리 기업의 개도국 수출증대 및 신시장 개척을 추진할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포페이팅 도입은 또 다른 개선효과도 이끌어 냈다. 기존 외국계은행의 과점체제 하에서 비교적 높게 형성된 수출환어음 매입 관련 할인수수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거두며 국내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도 높아졌다.

포페이팅 주요 지원조건

지원조건	
수출자	•수출품목 제작경험, 수출실적, 또는 동일 수입자와 1회 이상 경험 등 수출이행능력이 있는 기업
대상거래	•신용장방식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선적 후 또는 일람 후 2년 미만인 거래
대상국가	•국별신용도 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인 국가 •적격대상국가는 수입국이 아닌 개설 또는 확인은행 소속국가 기준
할인료율	•거래국가 위험도, 국외은행의 신용도,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결제기간	•30일 이상 2년 미만

2008년 3월에는 신한은행과 2차 포페이팅을 최초로 도입했다. 2차 포페이팅이란 시중은행이 고객기업으로부터 신용장 방식의 수출환어음을 1차 매입(소구조건)하고, 이를 수은이 포페이팅(무소구조건)을 통해 2차 매입해 수은은 국외은행의 국가위험 및 신용위험을 부담하고, 시중은행은 국외은행의 선적서류 인수까지 수출자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는 시중은행을 통한 재매입으로 ‘은행의 은행’ 역할 수행과 동시에 시중은행 점포망을 활용하는 네트워크 확대 효과가 있다. 이는 2차 팩토링으로 확대되었고, 현재 2차 포페이팅은 9개 은행, 2차 팩토링은 5개 은행과 협약체결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2015년말 기준 2차 포페이팅/팩토링은 1조 518억 원의 집행실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2009년 11월에는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금융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서 포페이팅 수출채



경남은행과 포페이팅 및 수출팩토링 업무협약 체결(2014. 1. 20.)

권을 유동화하는 2차 시장 진출방안도 마련했다.

이는 보유 포페이팅 채권자산을 유동화해 신규 재원을 조달하고, 자체 외화유동 수단을 확보하거나, 외화유동성이 풍부한 경우 외국계은행이 보유한 포페이팅 채권인수 등 업무다각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수출업체를 통한 수출채권 매입인 1차 시장을 넘어 국내외 금융기관을 통한 매입·매각 등 2차 시장으로의 업무범위 확대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2015년 4월에 ‘해외온렌딩 취급지침’을 제정하면서 해외온렌딩 제도를 도입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사업 등에 대한 자금소요 관련 중개금융기관을 활용한 간접대출상품으로서 중개금융기관의 영업망을 활용해 정책자금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우리은행, 부산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및 농협은행과 해외온렌딩 약정체결을 맺고 총 597억 원을 중소기업 앞으로 공급하였으며, 2016년에는 그 규모를 1조 원까지 늘려갈 계획이다.

지난 2016년 3월, 신한베트남은행과 아국계 현지은행으로는 최초로 해외온렌딩 약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 나가있는 중소기업의 현지법인 앞으로도 정책자금 공급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수출팩토링의 도입

수출구조가 고도화되고 무역환경 변화로 수출대

금 결제조건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과거 우리 기업은 신용장에 의한 거래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수출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수입자 구매협상력이 높아지면서 수입자가 금융비용 부담이 큰 신용장 대금결제방식을 기피하게 되었다. 또한 수출주력상품이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등 첨단제품으로 바뀌면서 주문 즉시 현지납품이 이뤄지는 소량 반복 수출에 지불방식도 빈번한 소액결제로 바뀐 것도 신용장거래가 줄어든 원인이었다.

이와 같은 무역환경 변화에 대처하고자 수은은 2005년 1월 무신용장 방식 수출거래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국내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수출팩토링을 도입했다. 당시 국내 상업은행은 수출자 소구조건의 수출환어음매입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위험이 높은 무소구 금융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은행이 독점하고 있었다. 특히 외국은행은 안정성, 수익성이 좋은 대기업의 우량 수출거래 위주로 무소구 금융을 지원하고 있어, 무신용장 거래로 수출채권 회수위험 관리 및 자금유통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소구 조건의 수출금융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수은의 수출팩토링 도입은 국내 시중은행의 무소구금융 취급 기피에 따른 수출시장 위축을 막고, 단기 무역금융시장의 외국은행 시장지배력 축소 및 수수료 인하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신용장, 추심, 송금방식 등 모든 결제수단에 대한 수출금융지원 체계를 갖추으로써 단기수출거래에 대한 금융종합서비스가 가능해졌다.

2005년 1월 수출팩토링제도가 도입되어 업무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2005년 10월 외환업무실을 국제팩토링팀과 무역금융팀으로 구성된 무역금융부로 확대 개편하고,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수출환어음매입, 수입신용장개설을 주요업무로 하는 단기수출금융 지원체제를 구축했다.

수출팩토링은 사후송금방식 또는 D/A방식 수출거래로 발생하는 외상수출채권을 금융기관이 수출자로부터 매입해 수출대금을 선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수입자의 신용위험을 담보하고, 채권의 추

심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금융서비스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매우 보편화된 금융기법이다.

수출팩토링은 수입자의 파산으로 수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출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출 이행능력만 있으면 담보 없이 100% 신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담보가 부족한 수출중소기업에 매우 유용한 제도다. 더욱이 해외수입자 신용에 기반해 국내 수출기업의 차입금으로 계상되지 않으며 금융기관의 신용공여한도와도 무관해 재무제표가 좋아지고 차입여력이 개선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수출팩토링은 지원방식에 따라 크게 제휴방식 수출팩토링(Two-factor System)과 직접방식 수출팩토링(One-factor System)으로 구분된다.

제휴방식은 수입국 소재 팩토링회사(수입팩터)와 국제팩토링 기본약정(Inter-factor Agreement)을 맺고 팩토링 업무를 분담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수출팩터(Export Factor)는 자국 수출자에 대한 선도금융 및 채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종적인 지급책임을 부담하며, 수입팩터(Import Factor)는 자국 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하고 수출대금채권의 추심업무를 맡는다. 제휴방식 수출팩토링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FCI(Factors Chain International), IFG(International Factor Group) 등 국제팩토링기구 가입이 필수적이며, 수은은 2005년 4월 세계 최대 국제팩토링기구인 FCI에 가입했다.

직접방식은 수입국 팩토링회사를 거치지 않고 수은이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직접 인수하고 수출대금을 추심하는 형태의 수출팩토링으로 해외 우량기업을 수입자로 하는 대규모의 수출거래에 적합한 지원방식이다.

무역어음재할인 집행 추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7,989	67,195	122,589	36,154	43,079	52,447	27,654	27,629	26,359	

수출팩토링 지원 수출거래는 통상 수출거래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법인을 경유하는 수출거래와 국내 기업의 현지법인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수출자 및 대상국 요건은 포페이팅과 조건이 동일하고, 직접방식의 경우 수입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수은의 국외기업 신용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상이면 취급이 가능하며, 제휴방식의 경우 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제휴팩토링 회사의 신용등급이 일정등급 이상이면 취급 가능하다.

수출팩토링 주요 지원조건	
지원조건	
수출자	•수출상품의 경쟁력, 기술력 등 수출이행능력이 있는 기업
대상거래	•사후송금방식(D/A방식 포함) 외상수출거래로서 해외수입자와 안정적 거래관계를 유지할 것 •해외 현지법인을 경유한 수출도 지원 가능
채권금액 및 만기조건	•직접방식 : 신용등급에 따라 결제기간 6개월 또는 1년 이내 •제휴방식 : 결제기간 6개월 이내
유보금	•수출이행능력, 하자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20%이내 운용
Credit Cover	•채권금액 100%

3. 지원실적 및 사례

무역어음재할인, 포페이팅, 수출팩토링의 실적
무역어음재할인 대상은행은 수은과 무역어음재할인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국내 금융기관(은행)으로 1998년 9개 기관에서 2014년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SC, 하나, 씨티, 농협,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산업, 수협, 제주은행 17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무역어음재할인 집행실적도 1998년 8,450억 원에서 2005년 1조 5,55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포페이팅 집행 추이								
2001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33	4,875	10,353	17,945	29,943	48,540	39,589	41,154	32,318

수출팩토링 집행 추이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9,898	15,911	16,013	4,776	7,868	52,093	39,790	37,438	29,557

한편, 2008년 9월 세계 금융위기 발생에 따라 시중은행은 무역금융을 대폭 축소했으며, 시중의 외화자금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수은도 일시적으로 무역금융을 전면 중단하였지만, 곧바로 무역금융 취급을 정상화했다. 그 결과 금융위기로 인해 자금줄이 막혔던 시중은행의 수요증가로 2008년과 2009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고, 2010년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지원규모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감소했다.

2001년 9월 포페이팅 업무를 시작한 이후 2001년 말 233억 원을 기록했던 지원액은 2005년 4,875억 원까지 증가했고, 2015년 말에는 3조 2,318억 원으로 괄목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팩토링 지원실적은 업무 도입 첫해인 2005년 9,898억 원으로 연간 업무목표 5,00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단기간에 시장의 폭발적 호응을 얻은 것은 변화된 무역환경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을 출시, 수출기업의 금융수요를 적기에 충족시켰다는 반증이다. 수은의 시장 선도에 자극 받아 시중은행도 비록 소구조건이기는 하나 수출팩토링 도입하면서 수출금융의 선도자로서의 지위도 확고히 했다.

2015년 수은의 수출팩토링 지원실적은 2조 9,557억 원으로 최근 10년 동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수은은 신규거래기업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수출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신용장확인 업무 성과

신용장확인 첫 거래는 SK네트웍스의 석유 화학설



수출팩토링 매경 금융대상 수상(2006. 3. 8.)

비 수출지원을 위해 2002년 6월 승인한 TURKIYE GARANTI BANKASI AS의 발행 신용장 26만 달러에 대한 확인이었다. 업무 개시연도인 2002년 신용장확인 거래실적은 1건, 2003년 1건에 불과했으나, 2004년 전대금융실(당시 은행전대실)에서 전대은행에 대한 신용장확인을 지원하면서 거래규모가 연간 6,000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했다.

실적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2003년 이전에는 전대자금 대출계약서(Relending Facility Agreement)에 따라 외국환은 개별 건별로 취급하다가, 2004년 전대금융 표준계약서에 외국환 업무를 더해 단기 은행 간 수출신용(Comprehensive Interbank Export Credit Agreement) 및 통합 은행 간 수출신용계약서(Master Intetbank Export Credit Agreement)를 도입하면서, 전대은행의 신용장확인이 간편해진 이유로 분석된다. 전대은행의 신용장확인은 개설은행의 신용도가 취약할 경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요청한 경우 추가되는 상품으로 수은의 수출신용장확인은 전체 승인규모의 91%가 러시아(58%), 우즈베키스탄(33%) 전대은행에 집중되어 있다.

연간 승인규모는 2006년 1억 4,000만 달러, 2007년 2억 3,000만 달러, 2008년 4억 1,000만 달러, 2009년 5억 7,000만 달러, 2010년 5억 1,000만 달러, 2011년 6억 8,000만 달러, 2012년 8억 2,000만 달러, 2013년 9억 1,000만 달러로 증가해왔으나, 2014년 서방의 대러 제재로 러시아 수출이 축소되면서 2014년 6억 달러로 감소한 상황이다.

한편 전대은행의 신용장 금액 상한은 도입 이후 2,000만 달러를 유지하다, 2011년 10월 5,000만 달러로 상향되었으며, 2014년 8월 해당 여신담당 본부장의 승인으로 5,00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2015년 9월 우즈베키스탄 ASAKA은행에 최초로 수출신용장확인 한도를 1억 달러로 설정한 것이 그 첫 적용이었다.

제2장 수입금융

1절 수입자금

1. 개요

수입자금은 국내 수입자가 국민경제에 필요한 중요 물자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국가경제에 필요한 광물자원을 해외에서 개발해 수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입자금은 통상적으로 원자재 및 자본재 등의 수입시점에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후, 이를 활용해 물품을 생산하고 판매대금을 회수할 시점까지 지원된다.

수입자금제도는 수은 설립 초기부터 취급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실제로는 1986년 말 ‘국민경제상 장기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고, 적기수입이 긴요한 주요 자원 및 상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은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었다. 이후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1988년 첫 수입자금이 지원되었으며, 도입 초기에는 핵연료, 농산자원, 광물자원 등 주요 자원 위주로 지원이 되었다. 이후 핵연료를 제외한 광물자원 비중이 대폭 늘어났고, 2003년에는 수입자금 지원대상 품목에 수출기여 효과가 큰 첨단제품이 포함되었으며, 청정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도 포함되었다.

IMF 외환위기 기간 중 국내 금융기관들은 해외 자본시장에서 차입을 할 수 없었으며 국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도 크게 축소하였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민간무역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은은 세계은행과 일본 국제협력은행 등 외국 수출신용기관으로부터 간접 차입한 자금을 바탕으로 특별수입신용을 제공해 주요 자원의 안정적 수입을 지원한 바 있다.

그리고, 2014년 4월 「수은법」 개정과 함께 수입자금 지원품목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지원폭을 확대했다.

2. 제도 운용과 변천

1986년 「수은법」 개정을 통해 수입자금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구체적 규정이 제정되었다. 1987년 3월 제정된 수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원대상 품목은 재무부장관 또는 수출입은행장이 지정하는 중요 물자 및 주요 자원으로 규정했다. 중요물자는 철광·동광·아연광 등 14개 기초원자재, 주요 자원은 동광석·원유 등 광물자원, 원목·원사·원당·생고무 등 임산자원이었다.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중요 물자와 주요 자원의 추가지정 절차는 1988년 12월 수은법 시행령 제3차 개정 시 재무부장관 지정에서 수출입은행장 지정으로 변경했다.

1989년 3월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해외자원 중 ‘금광을 포함한 33개 광물’이 주요 자원에 추가 지정되었다. 이어 1990년 7월에는 첨단기술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의 촉진 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첨단산업용 시설재’와 ‘연구용 시설재’가 중요 물자에 포함되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전력요금의 안정과 전

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핵연료’가 중요 물자에 추가되었다.

2001년 8월에는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해당품목과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해당품목이 지원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3년 3월에는 수출기여 효과가 큰 첨단제품(화물항공기 포함), 청정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액화석유 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도 포함되었다.

2006년 7월에는 기존 지원대상인 첨단제품 및 시설재의 본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했다.

2009년 6월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물품 등을 수입자금대출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첨단제품에 포함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원자재, 제품, 부속품, 부분품 및 기술을 수입자금대출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상의 신재생에너지인 ① 태양에너지, ②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③ 풍력, ④ 수력, ⑤ 연료전지, ⑥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⑦ 해양에너지, ⑧ 폐기물에너지, ⑨ 지열에너지, ⑩ 수소에너지, ⑪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를 포함한다.

2009년 12월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용 원료를 추가해 사료제조업체 등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지원하였다. 사료용 원료에는 사료제조용 대두박, 채종박, 소맥피, 야자박, 팜박, 주정박 등이다. 이와 더불어 공업용 소금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2012년 8월에는 IT, 녹색산업 등 신산업 분야의 주요 원료 광물인 희유금속을 수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동 금속의 안정적 확보 및 적기 수입을 지원하였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품목은 지식경제부의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10~2019년)에서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희유금속으로 희토류, 리튬, 게르마늄, 실리콘 등 총 35종

이다. 희유금속에 대한 지원시 소요자금의 100%까지 지원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0.5%p까지 추가 우대토록 했다.

2014년 4월에는 「수은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포지티브 방식으로 지원하던 수입자금 품목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지원품목을 확대했다.

한편 1987년 5월부터 수입자금은 주무부서 장관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 지원하도록 정부의 수입추천제도를 운용해왔으나, 1990년 7월에 폐지되었다.

수입자금 지원대상자는 1987년 5월 ‘당해 중요 물자 또는 주요 자원을 수입하는 국내업자로 하되, 주요자원개발자금을 대출받은 자는 수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했다. 1990년 7월에는 연구용 시설재 수입자인 연구기관을 포함하기 위해 ‘국내업자’를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국내수입자’로 변경했다.

수입자금의 대출금액 한도는 처음에는 수입 및 수입선급 금액의 70%였으나, 1989년 4월 수입금융 활성화와 외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지원조건을 감안 80%로 상향조정했으며, 중소기업은 90%까지 늘렸다. 2006년 7월에는 수입 LC 개설거래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비율을 80%에서 100%로 확대하였다.

수입자금의 대출이율은 1990년 7월까지 연 10% 고정금리를 적용했으나, 1990년 8월 이후 원화대출은 일정률의 고정금리를, 외화대출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두 가지로 적용했다. 고정금리는 CIRR를 변동금리는 LIBOR를 기준으로 해 중소기업여부, 담보유무, 대출기간 정도에 따라 가산금리에 차등을 두었다.

2000년 5월에는 원화대출이 다시 부활해 외화대출 및 원화대출로 운용되었다. 원화대출의 경우는 KORIBOR에 일정 가산율을 더하는 변동금리부 대출과 일정률의 고정금리부 대출로, 외화대출의 경우는 LIBOR에 일정 가산율을 더하는 변동금리부 대출로 운용되고 있다.

수입자금 대출기간은 업무방법서에서 2년 이내 이되 부득이한 경우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었으나, 2000년 1월 여신규정에서 2년 이내로 제한되었다.

한편 시설재에 대해서는 1990년 7월부터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를 준용했고, ‘개발수입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수입거래’란 주요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수입자가 해외수출자에게 사전에 대여하고 그 상환 방법으로 개발된 주요 자원을 수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2001년 8월에는 한도 방식에 의한 대출제도가 도입되면서 회전한도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였다.

3. 지원실적

수은 설립 이후 수입자금 지원은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주요 자원 위주였으며, 유동성위기로 IMF 외환위기를 전후해 2000년까지는 과도기를 거쳐, 2001년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회전한도방식 실시와 지원대상 품목 확대로 지원실적이 급증했다. 2000년도 중반부터 2013년까지는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수출기업육성을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발굴해 지원품목을 꾸준히 확대했다. 그리고, 2014년 4월 「수은법」 개정과 동시에 지원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되며 수입자금 지원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8~1993년 수입자금의 집행에서 중소기업지원은 10% 내외에 불과했다. 이는 지원대상인 농산 및 임산자원 대부분을 대기업이 수입한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1994년 이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부응해 수은도 수입자금 지원 시 중소기업에 대출비율, 대출이율, 담보 조건을 우대한 결과,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1994년에는 19.2%, 1995년에는 37.3%로 확대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중소

기업 비중이 20%를 밑돌았지만 절대금액은 크게 증가해 2003년 1,155억 원(12.4%), 2004년 2,200억 원(15.1%), 2005년 2,743억 원(17.8%)에 달했다.

수입자금제도 도입시기인 1988년부터 1995년 사이 지원액은 농산자원, 임산자원, 광물자원(핵연료 포함)등 주요 자원 및 시설재에 총 1조 2,582억 원을 지원했다. 농산자원은 2,574억 원(20.7%), 임산자원 1,293억 원(10.2%), 광물자원 8,649억 원(68.7%)이며 그 중 핵연료가 6,089억 원(49.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시설재는 66억 원(0.5%)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1996년 이후 2000년까지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수입자금 지원도 크게 위축되어 이 기간 지원실적은 총 6,554억 원에 그쳤다. 자금지원 유형은 도입기와 마찬가지로 농산자원 989억 원(15.1%), 임산자원 552억 원(8.4%), 광물자원 4,827억 원(73.6%, 핵연료 1,993억 원), 시설재 186억 원(2.8%)으로 핵연료 비중이 점차 줄고 시설재의 지원비중이 늘어났다.

2001년 이후 2006년까지는 도약기로서 회전한도방식에 의한 지원제도와 시설재 및 첨단제품에 대한 수입자금 지원이 포함되면서 승인실적이 급증했다. 2001년 1,832억 원, 2002년 4,894억 원의 승인실적을 기록한 후, 2003년 9,348억 원, 2004년 1조 4,674억 원, 2005년 1조 5,483억 원 등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 기간 지원품목은 광물자원 2조 4,972억 원으로 54%를 차지했으며, 시설재 7,355억 원, 첨단제품 5,303억 원, 임산자원 4,925억 원, 농산자원 3,621억 원 순이었다. 도입기 및 과도기의 주요 지원품목이었던 핵연료는 지원비중이 점차 감소하다 2003년 이후 지원이 중단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IT제품 수출증가로 항공화물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03년 국내 항공

수입자금 집행 추이										(단위 : 억 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4,886	28,077	35,025	36,234	42,118	42,355	49,106	55,455	70,455	72,413	

사의 화물항공기 도입에 수은의 수입자금이 지원되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3년까지는 주로 철강, 고철, 알루미늄을 위주로 지원되었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원유, LNG 등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했다.

2절 수입기반자금

1. 개요

수입기반자금은 수입자금 지원대상자의 수입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에 기여하는 거래, 예를 들어 국내에 주요 자원을 수입해 보관 관리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해 자원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품을 제작하는 외국수출자에게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여신제도이다.

2. 제도의 운용과 변천

수입기반자금은 2014년 4월 「수은법」 개정에 따라, 처음 도입되었다. 수입자금이 지원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을 대출대상자로 한정된 것과 달리, 수입기반자금은 자금의 지원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수입거래에 기여하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3. 지원실적 및 사례

시설자금의 지원

2014년 「수은법」 개정을 활용, 수은 최초로 해외자원 수입기반자금인 보령 LNG 수입터미널 사업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주요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물품 수입자금 지



수입자금을 지원받아 도입된 화물항공기(2003. 6. 5.)



보령 LNG 터미널(조감도) 금융지원(2014. 12. 23.)

원을 넘어 국내시장의 안정자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국내 민간금융기관의 참여 부족으로 지연된 자원수입 관련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자원수입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3절 수입금융보증

1. 개요

수입금융보증은 수은의 지원대상 수입거래에 대해 자금을 대출해주는 국내의 금융기관에 차주의 채무불이행시 수은이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2. 제도의 운용과 변천

2004년 미국 수출입은행과 FA(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해 협조금융 형태로 화물항공기에 대한 공동보증을 시작했다. 이후, 2007년 FA를 수정하여 여객기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지원하고 있다. 항공기 수입과 관련한 금융은 장기 거래여신인 점에서 상업은행이 취급하기 어려움에 따라 수은의 금융지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4년 4월 수입자금 제도 확대에 따라, 수입금융보증의 지원대상도 확대되었다.

3. 지원실적 및 사례

2006년 제도 시행 이후 수입금융보증은 주로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 도입보증에 집중되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가 보잉(Boeing)이나 에어버스(Airbus) 등 항공기 제작사로부터 항공기 도입을 위해 타 금융기관에서 장기 대출을 받는 경우 미국 수출입은행(U.S. EXIM Bank)이나 프랑스 무역보험공사(COFACE)가 해당 거래에 보증을 서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수은도 복보증을 제공했다. 2006~2015년까지 수은이 참



미국 수출입은행과 업무협약 체결(2004. 2. 10.)

여한 거래는 38건으로 연평균 3.8건을 기록했으며, 2015년 승인건수는 8건으로 가장 많았다.

4절 수입이행성보증

1. 개요

수입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이행성보증을 지칭하며, 주로 대규모 자본재의 수입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이행사항에 대한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국민경제의 중요한 수입 또는 해외사업 이행 등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으로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유보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으로 분류된다.

2. 제도의 운용과 변천

수입이행성보증은 2014년 4월 「수은법」 개정 시행에 따른 여신제도 개편으로 신설되었다. 이전에는 기타이행성 보증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었으나, 제도 개편으로 증가하는 항공기 정비 관련 수료를 수입이행성보증이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3. 지원실적 및 사례

국내 항공사가 항공기 및 엔진 등을 리스사로부터 임대 사용하는 경우, 리스계약에 따라 정비이행보

증(Maintenance Reserves)*, 입차보증(Security Deposit)** 등 이행성보증(Stand-by L/C)을 필요로 함에 따라 수은의 수입이생성보증은 주로 이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수입이행성 보증은 2014년 계약이행보증 48건 약 770만 달러, 2015년 73건 약 1,230만 달러를 승인했고, 기타이행성 보증으로 2014년 9건 약 900만 달러를 승인하였다.

* 정비이행보증(Maintenance Reserves): 항공기를 국내항공사에게 리스해주는 리스사가 리스 목적물인 항공기 및 엔진 등 주요부분을 정비토록 강제하기 위해 국내항공사에게 요구하는 보증

** 입차보증(Security Deposit): 항공기 및 엔진 임대차 계약상 임차료 지급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보증으로 통상적으로 3개월의 임차료를 보증

5절 수입 관련 외국환

1. 개요

종전에는 부대업무로 취급하던 외국환업무는 2002년 「수은법」 개정을 통해 본업무의 하나가 되었고 수입관련 외국환업무로 수입신용장 개설이 도입되었다. 수입신용장(Letter of Credit)은 수입자의 요청으로 수입자 거래은행이 수입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을 약속하는 조건부 지급보증서로서 거래 상대방을 은행으로 전환하는 결과가 된다. 신용장의 특징은 근거가 되는 매매계약으로부터 독립되어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독립성’ 및 거래의 판단 기준은 실제의 사실이 아닌 서류에 있다고 추상화하는 ‘추상성’이 대표적이다.

2. 제도의 운용 및 변천

수입신용장은 신용장통일규칙(UCC) 규약을 따르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제도이며, 수은은 시중은행의 역할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업무를 수행했으며, 「수은법」의 설립취지에 맞는 거래에 대해서만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제한된 수은 수입자금

취급대상 품목의 수입에 한정해서 지원했다.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입신용장을 취급해 주로 소맥, 옥수수 등 농산물과 고무, 목재 등 천연자원의 수입을 위해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방식의 거래에 대해서 수입자금대출과 같은 요건으로 지원되었다.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는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용 원자재 및 시설재’, ‘정부, 지자체 등이 시행하거나 주관하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왔다.

한편, 2014년 「수은법」 개정에 따라 수은 업무영역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되고, 수입자금 지원대상 품목이 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입신용장 대상 품목도 제한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수입팩토링은 사후송금방식(D/A 방식 포함)의 수입거래에 의하여 발생된 수입 팩토링채권을 수은과 국제 팩토링업무 기본약정(Inter-Fator Agreement)을 맺은 국외팩토링회사로부터 양도받아 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하고 수입자로부터 채권대금을 추심해 국외팩토링회사에 지급하는 업무이다.

수입신용장 주요 지원조건	
지원조건	
대상거래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과세 물품 등을 제외한 수입거래
건당금액	미화 5만 불 이상
개설수수료 인수수수료	개설신청인의 신용도 및 기간에 따라 0.01 ~ 0.32% (3월마다)로 차등 적용
운용방식	회전한도 또는 건별방식

수입팩토링은 제휴방식 수출팩토링 업무를 도입하면서 국외팩토링회사의 요청에 따라 2005년 5월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수입팩토링은 수출팩토링사가 우리나라 수입자의 신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수은 앞 팩토링을 요청해야 하고, 해당 거래가 수은의 수입자금

수입신용장 집행 추이								
2002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613	9,001	7,660	14,386	16,145	14,938	16,656	15,105	21,823

(단위 : 억 원)

수입팩토링 집행 추이								
2005-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2015
-	5	4	-	34	61	9	1	-

(단위 : 억 원)

요건에 부합하고 우리나라 수입자의 신용상태가 양호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하는 시기가 일정치 않았다.

3. 지원실적 및 사례

수입신용장, 수입팩토링 지원실적

수입신용장은 제도 도입 초기 2002년 12월말 기준 1,613억 원 지원 이후 2005년에는 9,001억 원까지 증가했고, 2015년 말에는 2조 1,823억 원으로 증가했다.

수입팩토링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되었으며, 2007~2008년 2년간 알루미늄과 수입 관련 팩토링이 주로 지원되었고, 2010~2013년까지는 일본으로부터 공장자동화 설비를 수입하는 데 지원되었다.

제3장 해외사업금융

1절 해외투자자금

1. 개요

해외투자자금은 국내 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 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필요한 대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업이 해외투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기관에서 해외투자금액이 당해 사업 영위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 이내 여부와 투자계획이 시설규모, 시장규모, 국내 동일업종의 수익률·자본비용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출대상자는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투자예정업종 사업경력이 3년 이상의 국내 기업이고, 지원대상 해외투자의 범위는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의된 해외직접투자 및 국내 모기업의 해외자회사의 대출이다.

2. 제도의 운용과 변천

해외투자자금 대출제도의 변천

수은의 해외투자자금 대출은 설립 초기부터 운용되었는데, 업무대행 시기인 1975년 2월까지의 수출용 원자재 또는 국내 필수 원자재 확보에 필요한 투자, 투자에 의한 추가 수출이윤 또는 투자 회수액이 투자일로부터 5년 이내에 투자총액에 달하고, 국제수지에 도움이 되는 투자로 제한했다.

1975년 3월부터 요건이 완화되어 중요물자 및 자원 확보에 기여하는 투자,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투자, 해외교민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투자, 시장개척과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투자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1989년 1월에는 포괄적인 개념을 더해 구체적 요건 대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증진에 기여하는 투자’로 정의했다. 그러나 업무방법서에서는 지원불가 대상을 명시했는데, 개인의 해외투자, 금융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 금융업, 보험업, 서비스업 등이었다.

1994년에는 정부가 해외투자 업종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한데 따라 수은도 정부가 ‘해외직접투자지침’에서 지정한 제한사업을 제외한 모든 투자사업에 자금지원을 시행했다. 그리고 1999년 4월 ‘해외직접투자지침’마저 정부가 폐지함에 따라, 2002년 5월 수은은 ‘해외투자관련 대출의 지원금 지업종 및 지원대상사업’을 폐지했다.



아태지역 해외투자 설명회(1989. 3. 14.)

2005년 5월에는 「수은법」 개정으로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참여 방식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사업금융기관보다 효율적인 해외사업 지원 제도를 구축했다. 또한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방안’에 호응해 첨단기술 획득을 위한 해외투자에 대출한도확대, 금리인하 등 우대지원 방침을 확정했으며, 대기업과 동반진출을 모색하는 중소·중견기업 신용대출 방안도 제시했다.

2006년 4월에는 해외투자관련 대출기간을 정부의 해외투자활성화 정책에 맞춰 우리 기업의 우회수출을 촉진하고자 당시 「수은법」이 허용하는 최장기간(25년)으로 연장하였다. 2007년 4월에는 해외투자관련 대출의 거치기간을 확대하여 글로벌 경영을 위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사업이 다양화됨에 따라 자본의 회임기간이 장기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거치기간 확대 요구가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했다.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거치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일반사업은 3년에서 5년으로 자원개발사업은 5년에서 7년으로 거치기간을 확대했다. 2007년 9월에는 해외투자자금 대출에 차주별 한도방식을 도입했다.

지원조건의 변천

설립 당시 70%이던 해외투자 대출비율은 1977년 1월 80%로 확대되었다가 1980년 다시 70%로 회귀했으나, 1983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은 개도국의 경우 80%로 조정되었으며, 1984년에는 모든 국가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1988년에는 대기업 80%, 중소기업 90%로 상향되었다.

1994년에는 대기업의 대규모 해외투자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도 90%로 상향되었다. 그러나 IMF 직후인 1999년 1월 대출비율은 대기업 70%, 중소기업 80%로 하향되었고, 그해 9월 자원개발사업에 한해 90%로 조정되었다. 2004년 11월 에너지 등 자원개발사업은 100%까지 대출비율이 상승했으며, 2005년에는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투자사업은 대기업도 90%까지 대출비율을 높였다.

2007년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

외투자자금 및 해외사업자금 대출을 한도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이 다양화되었다. 2009년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앞 여신에 대한 한도사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었다.

대출이율은 도입 초기 수출자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중요물자 및 주요 자원 확보사업은 우대이율을 적용했다. 1980년대 중반에는 중소기업 대출이율을 가장 우대했다. 기타 부문이 10%라면, 중소기업은 7%의 금리를 적용했다.

1993년부터는 고정금리부 대출과 함께 변동금리부 대출도 가능해졌다. 1994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율 이원화를 폐지하고 담보의 유무와 성격에 따라 금리수준을 결정했다. 아울러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역전현상을 피하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의 이율을 CIRR에 연동했다. 1999년에는 원화표시 대출 취급 근거를 마련했으며, 해외투자자금 대출 금리를 타 대출과 동일한 체계로 운용했다.

설립초기 해외투자자금의 대출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100만 달러 초과 금액은 10년, 그 이하 금액은 7년으로 차등을 두었으나, 1988년 업무방법서를 개정하며 10년 이내로 단일화 했다. 2005년 5월에는 여신규정을 개정하며 대출기간을 14년까지 연장했고, 그해 7월 재정경제부의 ‘해외투자 활성화방안’을 반영해 다시 20년으로 대출기간을 늘렸다.

2006년 4월에는 해외투자관련 대출기간을 정부의 해외투자활성화 정책에 맞춰 우리 기업의 우회수출을 촉진하고자 당시 「수은법」이 허용하는 최장기간(25년)으로 연장하였다.

2006년 11월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에 우대금리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시장조정을 차감적용한도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확대했다. 2009년 12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개발 공기업에 대한 대출이율을 기준금리와 기간가산율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해외투자자금 대출은 통상 일정기간 거치 후 원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2년 11월 여신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대출기간

이 3년 이하의 대출로서 차주 또는 보증인이 우량 기업이거나 승인권자가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만기일시 상환 방법을 인정했으며, 석유·가스 등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거치기간을 5년까지 인정했다.

2007년 4월에는 해외투자관련 대출의 거치기간을 확대해 글로벌 경영을 위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사업이 다양화됨에 따라 자본의 회임기간이 장기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거치기간 확대요구가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였다.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거치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일반사업은 3년에서 5년으로 자원개발사업은 5년에서 7년으로 거치기간을 확대했다. 2007년 9월에는 해외투자자금 대출에 차주별 한도방식을 도입했다.

2008년 해외투자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해외사업자금 등 해외투자관련 대출의 최장 대출기간은 30년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2005년 6월 발표된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방안’ 시책에 부응해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선진국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대출한도 확대, 금리인하 등의 우대지원 지침을 시행했으며, 대기업과 동반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했다. 지원 업종에도 변화가 많았다. 1980년대 초반까지는 자원개발사업 지원이 주를 이뤄 대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국내 고임금 추세와 ‘3D업종’ 취업기피에 따른 구인난의 가중,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수은의 중소기업 우선지원정책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며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급격히 증가했다.

2009년 2월 규정 개정 당시에는 해외투자자금 대출대상자는 주요 자원개발을 위해 해외투자나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추천서 또는 허가서를 취득한 기업이었으나, 2014년 4월 규정 개정을 통해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투자예정업종 사업경력 3년 이상의 국내 기업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대출금액 또한 소요자금 총액의 70% 이내로 제한되었으나, 2014년 4월 소요자금 총액의 80% 이내로 지원을 늘려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수은은 해외투자자금 지원 시 줄곧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펴왔는데, 2014년 4월 규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를 통한 우대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이를 재확인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투자자금 지원 시 중소기업은 약정수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중견기업은 우대 약정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대출액도 일반기업은 해외투자 소요자금의 80%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소요자금의 90%까지 지원받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 졸업(유예중소기업의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의 중견기업을 ‘우대중견기업’으로 규정해 금리 및 대출 가능금액 등을 추가 우대함으로써 중견기업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 관련 혜택이 일시에 중단되는 충격(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3. 지원실적 및 사례

해외투자자금 지원실적의 변화

1980년대 전반까지는 2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등 자원민족주의 영향을 받아 해외투자자금 대출은 주요 자원 및 중요 물자의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사업 지원비중이 가장 높았다. 1982년을 예로 보면



자동차 중국 현지 생산을 위한 해외투자(2006. 3. 17.)

자원개발사업에 지원된 금액은 6,337만 달러로 전체의 99.5%를 차지했다. 자원개발사업 초기에는 원목개발사업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1981년에는 유전공동개발사업이, 1982년과 1983년에는 유연탄광개발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후 원목개발사업은 산림보유국들의 자원민족주의 강화로, 석탄개발사업은 세계적인 석탄공급 과잉으로, 그리고 석유개발사업은 당시의 유가하락 추세로 신규개발 투자가 부진했다.

1980년대 중반에는 수은의 해외투자자금 지원이 제조업과 무역업에 집중되었으며,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M&A가 해외투자자로 등장했다. 그러나 1990년초에는 수은의 해외투자 지원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규모는 늘었지만, 국제금리가 하향안정화 추세를 이어가면서 기업 자체조달 또는 현지금융 조달이 늘어난 결과였다.

이에 따라 1994년 수은은 대출이율과 대출조건을 개선해 수요를 창출하는 노력을 폈다. 그 결과 1995년 5억 7,500만 달러로 최고 지원실적을 냈다. 1982년 35만 달러에 불과했던 제조업 비중은 1995년에는 5억 4,741만 달러로 전체의 95.3%를 기록하며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퇴조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감소했다가 2005년 이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증가하면서 2010~2011년 해외투자자금 지원은 정점을 기록했다. 또한, 팜농장 개발 등 해외 농업업 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식량자원 확보와 친환경 신사업 성장에 기여했다.

M&A 투자로 해외시장 진출 사례

수은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공략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기업의 M&A, 해외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은 신성장 수출 동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기업 및 해외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은의 해외투자자금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년 케이씨그린홀딩스의 미국 Nol-tec Systems Inc. M&A에 해외투자자금 792만 달러를 지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우량 중견기업인 영원무역이 2015년 스위스의 글로벌 자전거 아웃도어 브랜드 SCOTT를 인수할 당시 M&A 인수자금 7,500만 달러를 해외투자자금으로 지원했다. 수은의 금융지원으로 금융 강국인 스위스 소재의 글로벌 브랜드 인수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금융파트너의 이미지를 구축한 것은 물론, 우리 기업에 필요한 M&A 자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제고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해외기업이나 글로벌 브랜드를 인수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비교적 드문 사례였으나, 최근에는 국내의 우량한 중견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해외 M&A목적의 해외투자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에는 중소·중견기업의 재무적 부담 및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성공적인 M&A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은의 숨은 노력이 담겨 있다.

■ 해외투자자금 집행 추이

(단위 : 억 원)

2002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472	2,246	2,419	24,734	22,228	7,623	6,028	6,655	4,762

2절 해외사업자금

1. 개요

해외사업자금은 우리 국민이 해외 수출시장 개척 및 확보, 중요 물자 및 주요 자원 확보, 외국과 경제 교류 촉진을 위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설비를 신설 또는 확충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해외사업자금은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또는 비영업조직인 해외지사 등을 통해 국외에서 영위하는 해외사업에 대해 지원된다. 대출대상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 효과 또는 수출증대 효과가 큰 사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원천기술·지식재산권 등의 개발·습득사업 등이다.

종전에는 업무방법서에 따라 소요자재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품만 취급 가능했으나, 2014년 4월 「수은법」 개정 시행에 따른 여신제도 개편으로 제한이 폐지되어,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인 경우에는 소요자재의 생산국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2. 제도의 운용과 변천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의 변화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비롯한 주요 자원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자원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정적인 자원 공급원 확보가 절실하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일반 해외 직접투자와 달리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고, 고도의 탐사 및 개발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추어도 사업 실패위험이 높아 기업 단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법령을 제정해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책금융기관인 수은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별도의 우대지원제도를 실행하는 것도 국가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지원내용도 일반 해외투자관련 대출과 다소 차이를 두고 있다.

해외사업자금은 해외투자자금과 마찬가지로 그간 수차례의 지원조건 변경이 이루어졌다. 1999년 8월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해외사업자금의 대출비율을 소요금액의 70%에서 90%로 상향조정했고, 2002년 11월에는 대출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만기일시 상환방법을 인정했으며, 석유·가스 등 광물 자원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거치기간을 5년까지 인정했다.

2004년에는 여신규정 개정을 통해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해외사업자금 대출의 비율을 소요금액의 1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05년에는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까지 가능했던 대출기간을 14년까지 연장한 데 이어 불과 몇 개월 사이 대출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산업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사업자금 대출의 경우 신용위험가산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 차감토록 했다.

2006년에는 해외투자관련 대출의 대출기간을 「수은법」이 허용하는 최장기간인 25년으로 다시 연장했다. 2008년에는 해외투자자금 대출, 현지법인사업자금 대출 등 해외투자관련 대출의 최장 대출기간을 25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를 가능토록 했다.

지원 범위도 확대해 2007년 기존 개발·생산단계에서 탐사단계까지 지원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자원개발사업 전단계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같은 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투자자금 및 해외사업자금 대출을 한도방식으로 운용하도록 지원방식이 다양화되었다. 2009년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여신에 대한 한도사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었다.

2009년에는 기존의 탐사사업 재원이었던 정부의 에너지특별회계 지원축소를 보완하고 탐사·개발·생산단계를 망라한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직전 단계에 한정되던 탐사자금을 초기 탐사단계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원광종인 8대 전략광종 외에 산업소재용 희유금속을 포함시켰고, 건별 지원 외에 업체별 연간 자금한도 설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0년에는 투자규모가 미미하고 탐사사업의 사업주가 자원공기업 또는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임을 감안, 융자비용을 연도별 탐사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신용등급별로 차등하도록 조정했다. 또한, 희유금속 투자 확대를 위해 10대 핵심 희유금속의 탐사사업에 대한 대출금액을 연도별 탐사사업비의 100%로 확대했다.

2011년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복잡·다양한 사업 특성을 반영, 해외자원개발사업자를 사업주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외국정부나 외국인도 차주로 허용했다.

2013년에는 탐사자금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대출승인 통지절차를 신설하고, 해외투자관련 대출 자금별로 정한 대출기간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한도 이내 개별대출기간을 완화했다.

해양 플랜트, 선박 해외투자사업 제도 변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해운사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줄이기 위해 선박금융을 지원받은 자사 선박을 해외 선사에 대량 매각한 후 해외 재용선(Sale and Lease Back)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그 결과 국내 해운사의 높은 용선료 지출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했다.

당시 수은은 해외선주를 대상으로 국내 조선사 수주 선박의 선박 구매자금을 지원했으나, 국내 선주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 구매자금 지원제도가 없어 세계 해운시장에서 국내 선주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수은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2003년 1월 해외사업자금의 형태로 외항선박 구매자금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국내 해운사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저리의 선박금융 조달, 외화유출 방지 및 국내 조선소의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

수은의 해외사업자금 및 현지법인사업자금의 지원대상인 외항선박은 국내 해운사가 직·간접으로 투자해 외항-외항 또는 내항-외항 간의 운송사업에 투입하는 선박을 말한다. 해운사가 외항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화주로부터 수입을 획득하는 사업이 외항선박 운항사업이며,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중 외화 가득효과가 가장 큰 사업이다.

수은의 외항선박 구매자금 지원 시 해운사가 직접 차주가 되는 경우는 해외사업자금 대출, 해운사가 선박구매를 위하여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나 해외자회사가 차주인 경우 현지법인 사업자금의 지원 대상이 된다. 전자의 경우 선박등록국은 대한민국이 되며, 후자의 경우 국내 선주가 통상 해당 선박을 파나마, 마셜아일랜드 등에 편의지적을 하고 선박을 운항한다. 또한 금융지원 조건은 국내 선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선박 지원에 적용되는 선박 스트럭처드 파이낸스 지원제도를 준용하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수은의 외항선박 구매자금 지원대상은 국내 조선소 신규 건조 외항선박이며, 내항선박, 여객운송선박, 외국 조선소 건조 선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고선 구매자금이나 외항선박 리파이낸싱 지원의 경우 외국 건조선박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수은은 국내 해운사에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지원기준을 꾸준히 개선하면서, 2013년 이후 만기 일시상환(Balloon Payment) 조건을 허용하

■ 에특(에너지특별회계)자금 지원비중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
총투자	1,107	2,086	3,223	5,905	6,730
에특자금	203	230	365	365	307
(에특비중)	18.3%	11%	11.3%	6.2%	4.6%

고, 신조선 구매자금 지원 대출기간도 12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국내 해운사를 대상으로 외항구매자금 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해운업은 본래의 국제 경쟁력을 회복했고, 2015년에는 총선대 1,623척, 총중량 8,517만 톤으로 그리스, 일본,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5위의 해운강국으로 성장했다.

한편 선박투자회사는 2002년 12월 경제장관간 담회에서 해운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수출입은행의 외항선박 구매자금 대출과 함께 '선박투자회사법의 시행'을 결정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정부의 결정으로 국적선박 확대를 통한 조선·해운업 육성과 함께 일반투자자가 선박에 투자할 기회가 열린 것이다. 이는 시중의 부동산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유입시켜 국가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구상에서 비롯되었으며, 앞서 2002년 5월 아시아 최초로 선박투자회사제도를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선박투자회사제도란 개인 및 기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를 설립하고, 선박투자회사가 지분출자해 조달한 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하여 선박을 구매한 후, 해운사에 임대해 받는 용선료로 차입금을 상환, 잔여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제도다.

「선박투자회사법」은 독일의 KG펀드나 노르웨이의 KS펀드처럼 시중자금을 모집해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펀드 상품의 출현을 의미했다. 이에 따라 2003년 2월 한국선박운용(KOMARF)이 선박운영회사 1호로 설립되었고, 수은도 새로 출범한 선박투자회사에 외항선박 구매자금 지원을 시작했다.

수은은 2013년 이후 미국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경기 둔화, 선박량 과잉, 운임경쟁 등으로 해운업 불황이 지속되자, 주요 수출산업인 외항선박 운송사업의 성장잠재력을 유지·강화하고, 선대확충을 통한 국내 해운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내놓았다. 국내 중소·중견 해운사의 중고선박 구매자금 지원제도, 외항선박 운항자금 지원제도, 외항선박 리파이낸싱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국내 해운사에 대한 외항선박구매자금 지원(2004. 1. 12.)



동북아1호 선박투자회사 금융계약 서명식(2004. 3. 2.)

■ 해외사업자금 집행 추이 (단위 : 억 원)

2002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332	687	753	7,382	40	334	-	3,007	4,632

■ 해외자원개발 관련 해외사업자금 실적 (단위 : 억 원)

2002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	753	7,382	40	13	-	-	-

중고선박 구매자금 지원제도 도입 초기 지원한도는 구매계약 금액의 70% 이내였으나, 2014년 '국내 해운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정비하며 지원한도를 80%로 늘렸고, 대상 해운사의 범위를 중소중견 해운사에서 전체 해운사로 확대하는 등 국내 해운사의 핵심 자산인 선대의 적기 확보를 위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3. 지원실적

해외사업자금은 주로 자원개발 프로젝트, 해외건설 프로젝트, 외항선박 구매 프로젝트 등에 활용되어 각 산업별 관련 프로젝트 발주 여부 및 해당 산업의 경기사이클 등이 수은의 지원실적에 영향을 미친다.

2002년 332억 원이었던 해외사업자금은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2010년 자원개발사업이 성장하면서 지원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1~2013년 위축되었다가 2014~2015년 사이 해외건설과 외항선박 및 컨테이너선 구매 관련 프로젝트의 증가로 지원규모가 다시 증가했다.

해외자원개발 관련 해외사업자금 실적

통상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해외에 별도의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생산분배계약(Production Sharing Contract: PSC)에 의한 개발참여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은은 주로 해외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원유 및 비철금속 등 기초자원 가격의 급상승을 겪으면서 세계 각국이 앞다퉈 자원난에 대비한 자

원확보 경쟁을 가속화함에 따라, 수은의 해외투자 관련 대출도 자원개발사업을 위한 해외사업자금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해외사업자금 대출은 해외투자자금 대출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주로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창구로써 활용되고 있으며, 1989년 최초로 85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2002년부터는 주로 제조업 분야의 지원이 늘어나며 코크스, 석유정제품 제조 및 화학제품 제조업 분야에 지원되어 2002년 6,300만 달러, 2003년 1,000만 달러, 2004년 3,400만 달러, 2005년 9,200만 달러가 석유화학 분야에 지원되었다.

2006~2008년까지는 지원실적이 없다가, 2009~2010년 자원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지원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2013년 이후에는 지원실적이 없었다.

해양 플랜트, 선박 관련 해외사업자금 실적

수은은 2003년 최초로 외항선박 구매자금을 승인한 이후 2015년까지 총 144척, 38억 5,7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선박투자회사제도는 도입 초기 제도 이해부족으로 수요발굴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금융권의 외면 등으로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수은은 이 제도가 국내 해운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선박투자회사를 적극 발굴해 2004년 3월 제1호 선박투자회사인 '동북아1호 선박투자회사'에 금융지원을 실시하면서 활성화에 불을 지폈다. 이후 2004년 10월부터 KSF 선박금융(주)이 설립한 선박투자회사 아시아퍼시픽 5~8

외항선박구매자금 대출 승인실적 추이

(단위 : 천, 백만 달러)

	2003-2005	2006-2010	2011-2015	합계
승인척수	27	19	98	144
	(10)	-	(28)	(38)
승인금액	987	899	1,971	3,857
	(508)	-	(517)	(1,025)

주: 괄호안은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지원실적임

호에 연달아 지원하면서 선박투자회사제도는 시장
에 안착했다. 이와 함께 선박운용사들은 수은의 지
원을 발판 삼아 자체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업무
영역을 확대하면서 2011년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
고 있다.

수은은 선박투자회사 금융이 도입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외항선박구매자금제도를 이용해
총 38척, 10억 2,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3절 현지법인사업자금

1. 개요

현지법인사업자금은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현
지법인)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자금,
운영자금, 자회사에 대한 출자자금 및 대여금(직접
투자자금),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
출하는 제도이다. 차주는 국내모기업이 아닌 해외
자회사가 된다. 여기서 해외자회사는 국내모기업
이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외국기업으로 해
외손회사, 해외중손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 대출제도는 이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이 사업 확장 및 운전자금의 추가소요에
필요한 자금을 현지에서 직접 조달하는 데 어려움
을 겪을 때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지법인은 조달
비용 절감, 적기 자금조달의 효과를 얻는 동시에 이
자소득세 면제와 같은 세제상의 이익을 보게 된다.

아울러 해외 현지법인이 직접 차주가 되므로 국
내의 모기업도 직접적인 차입 없이 지급보증서 또

는 담보제공을 통해 현지법인의 원활한 운전자금
을 수혈하게 된다.

이 대출제도는 1986년 12월의 「수은법」 개정과
1987년 5월의 업무방법서 개정으로 그 취급근거
가 마련되었으나, 신규진출 지원에 중점을 둔 해외
투자자금 대출에 우선순위가 두어짐에 따라 시행
되지 못하다가 1994년 3월 기본운영규정의 제정과
함께 본격 취급되었고, 2000년 1월 위 규정의 폐지
이후 우리 기업의 수요증가에 따라 해외투자자금
대출보다 많은 지원실적을 보이고 있다.

2014년 4월 「수은법」 개정 시행에 따른 여신제
도 개편으로 과거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및 투
스텝복합금융을 현지법인사업자금으로 통합했다.
또한, 종전에는 「수은법」에 따라 현지법인사업자금
취급 시 1년 이상의 장기자금만 취급했으나, 여신
제도 개편과 함께 제한이 폐지되어 단기자금 대출
도 취급하게 되었다.

2. 제도의 운용과 변천

현지법인사업자금 대출은 1986년 12월 「수은법」
제3차 개정 당시 그 취급근거가 처음 마련되었으며,
1987년 5월 제41차 업무방법서 개정에서 수은 신
규 업무로 추가되었다. 당시는 수은의 해외투자자
금을 지원받아 설립된 외국법인만이 자금을 지원받
도록 명시했으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폭넓게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1993년 9월 업무방법서를
개정하며 해당 문구를 삭제해 해외투자자금 수혜
여부에 관계없이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1994년 자금 수요가 가시화되면서 3월 ‘외국법
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기본운영규정’을 제정,

대출 대상 및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한편
기본운영규정은 2000년 1월 업무방법서의 개정
으로 폐지되었으며 대출요건 등은 여신규정으로
이관되었다.

2001년 회전한도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
도록 여신규정을 개정했으며, 2001년 11월 ‘해외사
업금융 활성화방안’이 마련되면서 2002년 2월 외
국법인사업자금 대출 대상자를 확대해 전대방식
대출이 가능해졌다.

2002년 5월에는 외국법인 사업자금 대출의 소
요가 증가하고, 우리 기업의 요청으로 여신규정을
개정해 소요자금의 1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를 확대했으며, 대출기간 3년 이하로서 차
주 또는 보증인이 우량기업이거나 승인권자가 채
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출금의
만기일시상환을 허용했다.

한편 2003년 12월 금융감독원 감사결과 조치요
구사항을 반영해 자금 운용방법을 개정했는데, 소
요자금을 초과한 자금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
전한도 금액을 차주의 1회전 운전자본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운영자금 잔액을 차감한 금
액으로 변경했다.

현지법인사업자금은 2006년 현지법인사업자금
대출 중 시설자금의 대출기간을 해외투자자금 대
출 및 해외사업자금 대출과 동일한 수준으로 연장
하여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고, 같은 해 4월
대출기간을 25년으로 재차 연장했다.

2015년말 현재 현지법인사업자금의 대출기간은
2008년 8월 이후 운영자금의 경우 3년 이내로 운
영자금을 제외한 시설자금 등은 최대 30년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출금리는 해외투자
자금 대출과 동일한 금리체계로 지원되고 있다.

시설자금은 공장건물, 사무소, 점포, 종업원 합
숙소, 각종 후생시설 등 영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고정시설에 투자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
며, 상환재원은 기업의 유보이익, 감가상각비, 각종
충당금, 유상증자대전, 사채발행대전, 불요자산의
처분대전 등이다. 한편 운영자금은 시설자금에 해

당되지 않는 사업에 필요한 제반 소요자금(임금,
경비, 원자재구매, 매입채무결제, 차입금상환) 등
을 대상으로 하며 회전한도방식으로도 대출이 가
능하다.

2014년에는 「수은법」 개정을 반영해 자금의 용
도를 확대해 기존 시설자금, 직접투자자금, 운영자
금에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M&A 자금,
제작자금, 단기 Brigde Loan 등)을 추가했으며, 장
기자금 제약을 해소했다. 이를 통해 최근 시장에서
해외기업에 대한 M&A 수요가 증가하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필요
를 충족시키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자원사업 현지법인사업자금 제도 시행

2006년 11월에는 자원개발사업의 탐사단계에 대
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수은은 자원개발사업 탐
사단계의 리스크를 감안, 탐사단계를 거쳐 상업성
내지 경제성이 확인된 개발·생산단계를 대상으로
지원해 왔으나, 해외자원개발사업 활성화로 자원
개발기업의 탐사단계 자금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동 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자원개발사업 탐사단계의 특성을 감
안, 상업성 내지 경제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대출금 회수가 가능한 우량차주에 한하여 지원토
록 하여, 위험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주로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자원개발 공
기업 또는 세계 유수의 자원개발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해외자원
개발기본계획’상 자주개발을 목표설정 광종*에 대
한 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8년에는 차주별 한도설정 대상 자금이 해외
투자자금 및 해외사업자금에 한정되었으나, 해외
자원개발사업 및 주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 지원을

* 2004년 12월 수립된 “제2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상 석유, 천연
가스, 유연탄, 우라늄, 동광, 아연광, 철광 및 희토류 등 8개 광종

위해 현지법인사업자금도 차주별로 한도를 설정해 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한, 국내 기업의 자원 장기구매(off-take) 거래 지원을 위해 현지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대상자에 해외자원개발사업자를 추가했으며, 국내 기업의 장기구매 계약물량이 대상자원 생산량의 10% 이상인 경우에 한해 금융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2014년 여신제도 개편이전에는 외국법인 앞 사업자금과 주요자원개발자금 대출로 지원되었으며, 주요자원개발자금 대출은 2014년 여신제도 개편으로 폐지되었다.

간접대출 방식의 현지법인사업자금 대출 제도의 운용

2007년 이전에는 간접대출 방식으로는 전대은행 앞 수출지원용 전대금융(현 수출기반자금 대출)만 지원했으나, 우리 기업이 수출뿐만 아니라 해외 생산·판매 현지법인(자회사) 설립으로 해외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대금융을 활용한 아국 현지법인의 영업활동과 현지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새로운 상품(투스텝 복합금융)을 신설했다. 기존의 수출지원용 전대라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격 은행에 크레딧라인을 설정하되, 최종 수혜자를 한국산 물품의 수입자가 아닌, 현지 아국법인(자회사 및 손회사) 및 현지 아국법인으로부터 구매 또는 납품하는 해외 현지기업이 지원대상이다.

2007년 7월 5일, 여신규정에 따라 ‘투스텝 복합금융’ 용어를 신설하고, 투스텝 복합금융의 최종 수혜자가 아국법인의 현지법인(자회사, 손회사)인 경우 KRC(Korea Related Company) 대출로 전대은행을 통해 간접대출방식으로 운용자금, 시설자금, 기타 투자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2008년 8월 5일에는 80차 여신규정 개정을 통해 해외 자회사의 거래상대방을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의 전대차주로 추가하고,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대상으로 해외손회사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전대(간접대출)방식의 현지법인 앞 사업자금 대



브라질 투스텝복합금융계약 체결식(2007. 11. 12.)



수르길 가스전 개발 및 화학플랜트 건설 프로젝트(2012. 3. 26.)



두산중공업(주) 체코현지법인 M&A 자금 지원(2009. 10. 13.)

출 지원은 우리나라 수출거래에 연계되지 않는 비구속성 대출로 OECD 협약 준수 의무가 없어 금리,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이 탄력적이며, 아국법인이 본사의 별도 담보 없이 현지 은행의 신용도, 현지 공장을 담보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2014년 4월 21일에는 상품체계 개편에 따라 투스텝복합금융이라는 용어 대신 현지법인사업자금 대출(간접대출)로 상품명이 변경되었다.

3. 지원실적 및 사례

현지법인사업자금 지원실적

현지법인사업자금(과거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대출’) 제도는 1987년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도입 초기에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 현지법인사업자금 지원은 활발하지 못했다.

현지법인사업자금 대출이 급증한 것은 1994년부터이다. 1994~1995년 총 22건 4,923만 달러가 지원되었으며, 1996년과 1997년 각각 30건 약 1억 8,900만 달러와 40건 약 1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까지는 대출지원이 대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많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 및 아시아 지역에 저임금 노동력 확보를 통한 원가절감을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현지법인 사업자금의 지원도 함께 증가해 2002년 3,180억 원, 2005년 1조 558억 원, 2009년 3조 4,05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 이후 채무증권 인수, 간접대출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2013년 6조 5,061억 원, 2015년 10조 9,387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규모가 급증하였다.

자원개발 현지법인사업자금 지원사례

2012년 수은은 그리스 등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지원사업인 수르길 가스전 개발사업에 10억 달러를 승인했다. 해외 상업금융기관이 참여를 주저하는 가운데 수은이 대규모 여신을 제공하고 금융협상을 주도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성사되었다.

2013년에는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인 호주 로이힐 철광산 개발사업에 대해 프로젝트 파이낸스, 채무보증, 이행정보증 등 종합금융패키지를 제공함으로 국내 기업의 지분투자, 장기구매계약 참여와 EPC 수주 활성화를 촉진했다.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외에도 이에 대한 채무보증 활용을 통해 국내 은행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07년 예멘 LNG, 페루 LNG 사업부터 2015년 사빈패스 확장사업까지 국내 은행들은 채무보증을 통해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현지법인사업자금 간접대출 지원실적

해외 현지법인사업자금 간접대출은 2007년 7월 제도 도입 직후인 2007년 8월 21일 인도 몸바이에서 수은-ICICI은행 간 최초 크레딧라인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원기반을 갖추었다. 이어 2008년 ICICI은행을 통해 인도 현지기업인 ELECON에 화송의 시설자금을 시작으로 첫째 4건의 사업자금으로 3,5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후 2010년까지 지원규모가 미미했으나, 2011년 필리핀 BDO은행에 설정된 크레딧라인을 활용해 PSPC의 반도체 생산설비자금을 지원하는 등 연간 지원규모가 도입 후 처음 1억 달러를 돌파했다. 2012년부터는 현지법인사업자금 대출 극대화

현지법인사업자금 집행 추이									(단위 : 억 원)
	2002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현지법인사업자금	3,180	10,558	33,949	42,126	44,676	51,398	63,565	73,940	104,989
간접대출	-	-	103	12	416	1,535	1,496	3,589	4,398

를 위해 전대은행뿐만 아니라, 수은의 인니·베트남 현지법인에 크레딧 라인을 설정해 운용했다.

아국 현지법인이 현지 전대은행에서 신용 또는 공장 담보를 활용해 금융지원을 받을 만큼 현지 기반이 확고해야 한다는 난점과 금리수준을 고려했을 때 전대방식 보다는 모기업 보증을 통한 자금이용을 선호하는 추세로 인해 거래는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2014년 3,598억 원, 2015년 4,398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앞 현지법인사업자금 지원실적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현지법인 설립이 집중된 지역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섬유, 의류 OEM, 전자부품, 스마트폰 부품 제조 등 글로벌 바이어들의 원가절감 요구 및 상생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남미와 동유럽에도 현지법인 설립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지역의 현지법인사업자금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별·지역별로 다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5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이 타결되면서, 중국의 임금인상에 따른 원가경쟁력 저하로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저가의 노동력을 찾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있어, 수은의 현지법인사업자금 지원도 이 지역에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진출 대기업과 동반으로 해외에 진출해 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 상생발전 프로그램의 하나인 '해외 동반진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법인 설립자금, 시설자금, 운영자

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지법인의 사업기반 조기구축을 위해 수은 현지법인의 리스금융을 연계지원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시장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 건설·플랜트 관련 현지법인사업자금 실적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액은 2010년 UAE 원전 수주에 힘입어 716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매년 6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에는 누적 수주액 7,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2009년 9위에서 2014년에는 5위로 뛰어올랐다.(ENR 기준)

그러나 2014년 하반기부터 배럴당 50달러를 밑도는 저유가 지속, 유로화 하락에 따른 유럽계 건설사의 공격적 입찰, 저가수주를 앞세운 중국계·인도계 건설사의 약진, 이란·러시아 경제체제로 인한 사업기회 축소 등으로 2015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2014년 대비 약 30%가 줄어들었다.

실제로 2015년 저유가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85억 달러 규모의 카타르 Al-Karanna 석유화학플랜트 건설 사업, 12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가스액화사업 및 50억 달러 규모의 카자흐스탄 KLPE 석유화학플랜트 건설 사업이 취소되었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 수주실적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수은은 유가하락에 따른 급격한 수주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석유화학 플랜트 중심의 EPC 단순도급 수주구조에 있다고 판단, 아시아·CIS·아프리카 등 지원지역 다양화 및 발전·인프라 등 공종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해외건설·플랜트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단순도급형 사업 비중을 축소하고 투자개발형 사업 발

굴을 정책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투자개발형 사업은 현지법인사업자금을 활용할 경우 수출금융에 적용되는 OECD 가이드라인 제약요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유리한 금융조건 제공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2014년 「수은법」 개정을 통해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진 지분투자를 활용해 우리 기업이 사업 개발에서 건설 및 운용 단계까지 필요한 패키지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구축했다.

2002년 폴란드 PET 수지제조 해외투자사업 지원을 계기로 시작된 투자개발형 사업 지원은 2007년부터 정부의 정책적 자원개발 지원 의지와 함께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09년 필리핀 세부(Cebu) 석탄화력발전사업 지원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IPP 발전사업 중심으로 확장하고 있다. 특히 발전사업은 개도국의 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핵심 해외발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14년 한국남부발전과 삼성물산이 추진한 칠레 Kelar 가스복합화력발전사업의 경우 수은은 현지법인사업자금 대출 및 해외사업금융보증을 통해 운영 및 시설자금을 지원했고, 지분증권 및 주주대여금 대출도 지원해 사업추진에 힘을 불어넣었다.

한편, 중국과 미국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맞서 2015년부터 EDCF의 G2G 채널을 활용한 사업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베트남, 인니, 필리핀, 페루, 우즈베키스탄 등 총 15개 전략개도국을 선정해 기본대출약정(F/A) 등을 체결하고, 수은 금융과 EDCF를 활용한 복합금융을 통해 부족한 금융가용성을 최대한 높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2014년 12월 베트남과 120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고, 2015년 6월에는 인도와 100만 달러의 금융제공 약정을 체결했다. 한편 2015년 승인한 라오스 세피안 수력발전사업의 경우 라오스 정부의 출자금은 EDCF로, 건설비용은 PF 방식의 수은 금융으로 지원하는 최초의 복합금융 사례를 창출했다.

서비스산업 지원 사례

서비스산업 중 중장기 금융수요가 높은 정보통신 인프라(ICT),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단순도급사업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해 현지법인사업자금을 활용할 경우 수출금융에 적용되는 OECD 수출신용협약 제약요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금융조건 제공이 가능하다.

수은은 2012년 9월 '콜롬비아 보고타시 버스 교통카드 및 교통정보 시스템 사업'에 국내 시중은행인 신한, 우리은행과 함께 현지법인사업자금(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 1억 2,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는 국책은행인 수은과 국내 상업은행의 첫 공동 프로젝트 파이낸스 금융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 프로젝트는 인구 1,000만 명의 보고타시에 '서울시 신고통카드'와 '국내 교통정보 시스템 기술'을 구축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수출사업으로 국내 기업인 LG CNS가 지분투자, 프로젝트 시공 및 운영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주했다. 특히, 국내 시중은행에 채무보증 제공과 시중은행의 대출기간 축소를 통한 위험완화, 금융자문 등을 제공해 해외 중장기사업 참여를 이끌어냈다.



보고타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2012. 9. 6.)

중소·중견기업 앞 현지법인사업자금 집행 추이 (단위 : 억 원)									
	2002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현지법인사업자금	171	2002	8,014	11,398	10,138	23,296	25,482	29,201	35,955
간접대출	-	-	94	12	365	1,535	1,496	3,589	2,588

4절 해외사업활성화자금

1. 개요

해외사업활성화자금 대출은 국내 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또는 해외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내 기업,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사업 또는 해외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자금, 운영자금,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해외사업 또는 해외투자 활성화는 신규 해외사업 또는 해외투자 추진 및 해외사업 또는 해외투자 규모의 확대, 해외사업 또는 해외투자의 중단 또는 축소를 방지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해외사업활성화자금 대출은 2014년 4월 「수은법」 개정 시행에 따른 여신제도 개편으로 종전의 외국정부 출자자금 대출 및 투스텝복합금융을 통합해 신설한 제도이다.

2. 제도의 운용과 변천

외국법인 구매·납품거래 지원 자금(간접대출) 운용
2007년 이전에는 전대은행에 제공하는 수출지원용 전대금융(현 수출기반자금 대출)만 지원했으나, 우리 기업이 수출뿐만 아니라 해외 생산·판매 현지법인(자회사) 설립을 통한 해외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대금융을 활용해 아국 현지법인의 영업활동과 현지판로 개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품(투스텝 복합금융)을 도입했다. 기존의 수출지원용 전대라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격 은행앞 크레딧라인을 설정하되, 최종 수혜자를 한국산 물품의 수입자가 아닌, 현지 아국법인 및 현지 아국법인으로부터 구매 또는 납품하는 해외 현지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했다.

전대(간접대출)방식의 해외활성화 대출 지원의 장점은 첫째, 우리나라의 수출거래에 연계되지 않는 비구속성 대출로 OECD 협약 준수의무가 없어 금리,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둘째, 아국법인이 본사의 별도 담보 없이 현지은행의 신용도, 현지 공장 등을 담보로 취급할 수 있다. 셋째, 현지 아국법인과 거래하는 현지기업에도 자금이 지원되어 아국 진출법인과 현지기업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새로 도입된 투스텝 복합금융은 최종 수혜자가 아국법인의 현지법인(자회사, 손회사)으로부터 구매 또는 납품하는 해외 현지기업인 경우 TC(Transacting Company) 대출로 전대은행을 통해 간접대출방식으로 구매자금, 납품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2014년 4월 21일 상품체계 개편에 따라 투스텝 복합금융이라는 용어 대신 해외사업활성화자금(간접대출)으로 상품명을 변경했다.

해외자원개발 거래상대자사업자금 제도

2008년 6월 「수은법」 및 수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의 장기 구매권(Off-taker)을 확보하는 사업의 경우 지분참여가 없더라도 해외사업자에 대한 금융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수은의 금융지원대상이 우리 기업이 지분에 참여하는 거래로 한정되었으나, 외국법인 앞 장기구매개발사업 지원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주요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3. 지원실적 및 사례

해외사업활성화자금 간접대출의 실적

해외사업활성화자금 간접대출(투스텝 복합금융) 중 현지 아국법인과 거래하는 현지기업에 대한 대출은 2007년 7월 제도 도입, 2007년 8월 21일 인도 뭍바이에서 수은-ICICI은행 최초 크레딧라인 서명식을 열면서 문을 열었다. 2008년 ICICI은행을 통한 Dish TV의 셋톱박스 구입지원 1호건을 시작으로 첫째 8,500만 달러(7건)를 승인해 신규 도입 금융상품임에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후 크레딧라인을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등 CIS 지역 중심으로 확장하고, 한국

해외사업활성화자금(간접대출)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억 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해외사업활성화자금 대출(간접대출)	-	564	407	4,597	6,021	6,676	11,998	12,961	10,276



수은과 ICICI은행 간 최초 크레딧라인 계약 체결(2007. 8. 21.)



해외활성화자금 지원 사빈패스 사업(2013. 5. 24.)

전자·자동차 현지법인의 판매처(딜러)들 사이에 해당 상품이 널리 알려지면서 2010년 집행금액이 4,500억 원을 초과했다. 2011년에는 집행규모 6,021억 원을 기록해 수출기반자금 간접대출 지원 실적을 앞섰으며, 2013년에는 연간 1조 1,998억 원을 지원해 전대금융 단일상품 최초로 1조 원 기록을 달성했다. 해외사업활성화자금 간접대출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전대금융 여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해외자원개발 거래상대자사업자금 사례

수은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LNG 수입국인 우리나라가 동남아와 중동에 치우친 LNG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가스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해외사업활성화자금을 활용하여 해외로부터 청정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례로 한국가스공사가 2012년 1월 사업주인 미국 Sabine Pass Liquefaction, LLC와 우리나라 연간 LNG 수입의 약 10%에 해당하는 연간 350만 톤 규모의 LNG를 2017년부터 20년간 수입하는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한 사빈패스사업을 2013년 5월 4.3억 달러와 2015년 7월 6억 달러를 두차례에 걸쳐서 지원했다.

사빈패스사업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멕시코만에 트레인 5기를 포함한 LNG터미널을 세워 연간 2250만 톤의 LNG액화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5절 해외사업금융보증

1. 개요

해외사업금융보증은 수은의 지원대상 해외사업에 대해 자금을 대출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에 차주의 채무불이행 시 수은이 채무를 대신 이행하는 보증 제도이다. 해외사업금융보증은 해외투자 및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 대상 채무로 한다. 주 채무자는 해외사업 관련 대출의 지원대상자이고, 보증수혜자는 주 채무자와 거래관계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자, 채무증권을 인수하는 자 또는 기타 계약상의 채권자이다.

2. 제도의 운용과 변천

해외사업금융보증은 2014년 4월 「수은법」 개정 시행에 따른 여신제도 개편으로 종전의 대내·외 채무보증 및 대내·외 채권보증을 통합해 운용하고 있다. 대출의 분류체계와 동일하게 수출, 수입 및 해외사업의 대외거래 유형을 기준으로 해외사업에 대한 채무보증을 해외사업금융보증이라는 별도 상품으로 분류했다.

3. 지원실적 및 사례

설계에서 공사 완공까지 일괄도급계약 형태의 EPC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플랜트, 오일·가스 설비, IT 서비스, 발전·변전·송전설비 등의 사업 지원을 위해 수입기반자금 대출과 수출금융보증이 지원되었다면, 우리 기업이 사업주로 참여하는 거래를 지원할 때는 현지법인사업자금과 해외사업금융보증이 활용되었다.

■ 해외사업금융보증 승인 추이 (단위 : 억 원)										
	2003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외채무	2,694	3,100	3,705	5,898	2,109	14,259	7,825	9,937	4,491	7,332
대내채무	39	-	-	585	-	-	-	-	1,264	-
대외채권	-	-	-	468	-	-	-	-	3,160	3,661
대내채권	-	-	-	-	683	665	-	-	-	3,394

2003년부터 SK케미칼의 폴란드 PET수지 설비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지원되었으며, 이후 지원 규모도 증가하고 발전설비, 석유화학 플랜트, 천연가스 설비, IT 서비스 등 지원분야를 다양화하고 있다.

6절 해외사업이행성보증

1. 개요

해외사업이행성보증은 해외사업 이행에 필요한 제반 이행보증을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유보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등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외사업이행성보증은 해외투자 및 해외사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제반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주로 해외건설공사를 지원한다. 국내 기업 또는 해외자회사의 보증의뢰를 통해 보증대상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보증수혜자로 하고 있다.

2. 제도의 운용과 변천

해외사업이행성보증은 2014년 4월 「수은법」 개정 시행에 따른 여신제도 개편시 신설되었다. 대출의 분류체계와 동일하게 수출, 수입 및 해외사업의 대외거래 유형을 기준으로 해외사업 관련 이행보증을 해외사업이행성보증으로 분류했다.

3. 지원실적 및 사례

해외사업이행성보증은 2014~2015년 약 1조 6,434억 원 규모의 도로, 철도 등 건설사업에 대한 이행성 보증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4장

투자 업무

1절 투자업무의 도입 배경

1. 제도 도입 배경

세계 인프라·플랜트 시장은 프로젝트의 대형화 및 신흥개도국 인프라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해외건설·플랜트 분야 사업 형태가 과거 단순 도급형 사업에서 탈피해 시공자가 금융을 주선하고, 지분에 참여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금융경쟁력이 해외수주의 중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조달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투자개발형 사업이 대규모 및 중장기적 성격을 띠고 있어 민간금융 참여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인 수은의 직간접투자를 통한 지원 역할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수은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투자업무 도입을 위해 법적 참여 토대를 조성하고, 2014년 6월 투자금융실을 신설하며 본격적인 업무 준비에 들어갔다. 2015년 업무계획 중 자금공급 및 조달계획에 대출과 함께 투자 항목이 최초로 포함되었고, 법인에 대한 출자 연간 승인한도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

2. 「수은법」에 나타난 투자업무 변화

수은은 2005년 「수은법」 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대출 또는 보증 대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앞 해당 대출 또는 보증과 연계해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09년 「수은법」 개정에서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졌으나, 그 목적이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로 제한되어 있었다. 투자업무는 이미 10년 전부터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이런저런 제약으로 적극적인 투자업무 수행이 어려웠다.

「수은법」상 규제에 따라 시장의 요구에 대한 탄력적 업무수행과 투자업무 확대에 제약을 겪던 수은은 대외정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2014년 「수은법」 개정 당시 투자업무에 대한 제한 일부를 완화했다. 이로써 출자업무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건별 승인 폐지 및 연간 총량 승인 도입, 펀드투자업무에 대한 투자 대상 분야 확대 및 지분을 한도 상향 조정 등 투자업무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3. 투자업무 관련 내규 정비

「수은법」 개정 후 본격적인 투자업무 추진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여신내규상의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첫째, 여신규정 개정을 통해 대출, 보증 등과 함께 투자를 여신의 범위에 포함했으며, 지분투자와 연계한 주주대여금 취급 근거도 마련했다. 투자개발형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다수가 세금절감 및 투자금 조기회수 등의 목적으로 지분투자와 연계하여 후순위 성격의 대출인 주주대여금을 취급하는 점을 고려해, 수은도 다른 투자자와 함께 주주대여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둘째, 투자세칙을 제정해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 등 투자업무 취급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제정했다.

셋째, 투자심의 및 투자자산 사후관리를 위한 투자위원회를 설치했다. 투자위원회는 투자안전의 승인 또는 투자자산 매각 시 승인전결권자의 승인 전 사전심의, 투자자산 현황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후 투자 승인 및 매각 시 사전심의는 승인전결권자에 따라 이원화하여 투자실무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했다.

2절 직접투자

1. 제도 개요 및 운용

수은은 「수은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 직접투자는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 투자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분증권 투자는 수은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에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해 출자할 수 있다.

지분증권 투자대상은 국내 기업의 수주 가능성 제고, 투자개발형 사업 촉진, 해외 생산·판매거점 마련,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의 자금유입 촉진을 위한 투자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투자목적 제한은 수은의 투자 업무가 단순히 대출·보증을 통해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아국 기업 지원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편이었음을 보여준다.

투자대상법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전체 지분의 10% 이상 투자한 법인이다. 수은 투자금액은 피투자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또는 출자 지분)의 15% 이내에서 수은이 대한민국 국민 중 최대 출자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투자 형태는 우선주, 보통주 또는 주주대여금(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 사업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와의 연계 지원에 한함)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

채무증권 투자는 수은 대출 대상자가 차입을 대신해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분증권 투자와의 차이점은 수은 대출·보증과의 연계 요건이 없다는 점이다. 수은 대출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투자 대상이 될 수 있고, 투자금액은 해당 채무증권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대출 종류의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결정된다. 일반적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연계성이 있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의 인수 형태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국내 국적선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한 결과, 투자 및 대출의 복합금융 형태로 채무증권(영구채 등 신종자본증권) 투자 지원을 개시하게 되었다. 이후 영구사채 발행,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투자 등에 주축(anchor) 투자자로 참여해, 국내 해운업계의 재무구조 개선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장기 영업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투자와 대출을 접목하는 복합금융 솔루션은 수은에 안정성이 보장되는 고수익 투자자산을 확보해주는 한편, 금융수요자(해운사) 입장에서는 재무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어 상호 시너지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은은 기존 선박금융, 대출위주의 업무영역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해양금융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또한 투자금융활성화로 공동으로 투자에 참여한 연기금, 보험사 등과 공동투자자 그룹을 형성하고 자본시장 네트워크를 확대해 수은의 중장기 과제인 에코쉽 펀드 활성화 및 글로벌 해양펀드 설립을 위한 공동투자 기반도 탄탄히 했다.

2. 지원실적 및 사례

수은은 2014년 「수은법」 개정 후 발전사업, 신약개발사업, 해운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투자의 방법으로 2015년까지 723억 원의 직접투자를 승인했다.

직접투자,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 개시

「수은법」 개정 이후 최초의 직접투자 사업은 총 사업비 약 1억 9,040만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세망카 수력발전사업이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남부 람퐁주 인근 세망카강에 54MW 규모의 수로식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수은은 총 1억 3,29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 대출·보증과 연계해 2014년 10월 715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은은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이 발행한 우선주 인수 및 동 법인 앞 주주대여금 대출을 통해 피투자법인 지분의 15%를 확보했다.

인도네시아 수력발전사업을 수은 최초의 지분투자 사업으로 결정한 요인은 한국 기업이 지분투자에서 발전소 건설, 운영, 기술지원 등 전 부문에 참여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투자개발형 사업 촉진이라는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와 30년간 전력구매계약을 통해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 수익이 기대되는 고부가가치 사업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수은은 직접투자를 통해 전통적 지원수단인 대출·보증을 넘어선 업무영역 확대 기반을 구축했으며, 대출·보증과 연계된 지분출자로 국내 기업의 자기자본 조달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종합 금융 패키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2015년 12월에는 신약개발 중인 국내 기업의 미국 현지법인에 지분증권투자를 승인했다. 수은의 피투자법인은 미국에서 퇴행성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치료제는 통증완화, 퇴행억제 및 연골개선의 효과를 보이고 있어 우리 기업의 세계 제약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존의 치료제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던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지평을 열어주게 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보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도 수은 투자 결정에 힘을 실었다.

투자 규모는 미국 현지법인 앞 2,000만 달러의 현지법인사업자금 대출과 연계 출자로서, 해당 법

인이 발행하는 1,000만 달러 상당의 우선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투자법인은 당시 임상시험 추진을 위해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절실한 상황에서 공적수출신용기관인 수은의 투자는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 나아가 사업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고, 민간부문의 신규 투자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징검다리기가 되었다.

수은은 최초의 바이오 신약개발사업 지원이자, 최초의 기업금융방식 대출 연계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산업 및 투자유형으로의 업무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서의 선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채무증권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수은은 2014년 말 한진해운의 자본확충 및 항만사업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영구교환사채에 500억 원을 투자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채권발행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발행한 영구교환사채는 30년 만기 자산 담보부 채권형태를 띄고 있으며 모기업(대한항공)의 신용보강(신용파생상품)을 통해 구조화함으로써 투자금 상환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한진해운은 부채비율을 대폭 개선하고 2,000억 원의 신규 유동성을 확보해, 아시아, 미주 지역 물류거점을 확보, 유지하며 중장기적인 해양물류 영업기반을 마련했다.

수은은 2015년에도 현대상선의 벌크전용선, 미주항만 사업 분사 및 관련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구조개선 PEF를 설립하였고, PEF 앞으로 총 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현대상선은 컨테이너 선대 구조조정 자금을 확보하고, 부채비율을 줄이는 등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되었다. 또한 컨테이너 정기선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미주지역(LA, 시애틀) 물류거점을 해외에 매각하지 않고 유지하게 되었다.

3절 간접투자

1. 제도 개요 및 운용

간접투자 도입과 운용

간접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로,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 투자 방식으로 이뤄지며, 2009년과 2014년 두 번의 「수은법」 개정을 통해 투자대상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의 간접투자 대상은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 개발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으나, 2014년 「수은법」 개정에 따라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사업, 해외자원 개발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조성된 집합투자기구로 확대했다. 또한, 수은 투자금액은 건별 집합투자기구재산의 15% 이내였으나, 2014년 「수은법」 개정을 통해 25%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한도가 상향되었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건별로 기획재정부의 승인 하에 취급이 가능하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공동 투자하거나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타 공적수출신용기관이나 국제금융기구와 공동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지분증권의 투자목적에 의해 조성된 프로젝트펀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간접투자는 투자 의사결정, 사후관리 및 자산매각 업무를 위탁운용사가 전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로, 위탁운용사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수은은 운용사 선정의 공정성 확보 및 체계적인 펀드 출자업무 수행을 위해 펀드투자 및 운용사 선정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2009년 간접투자가 가능해진 이후 수은은 정책적 지원을 위하여 탄소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해외 자원개발펀드 2건에 투자자로 참여하며 경험을 축적했다. 그리고 2014년 「수은법」 개정 이후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 및 수은의 해외사업 지원역량을 활용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의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규 펀드를 조성하는 등 본격적인 투자 업무를 개시하였다.



탄소펀드 서명식(2009. 9. 29.)



에코쉽 서명식(2014. 7. 3.)

에코쉽 펀드의 운용

2014년 수은이 도입한 선박펀드인 에코쉽 펀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국내외 해운업 장기불황을 극복하고, 유동성 악화로 경쟁력이 상실되어 어려움을 겪는 국내 조선사의 일감확보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성했다.

에코쉽 펀드는 침체된 국내 대체투자시장에서 국내 투자자(연기금, 공제회, 생보사 등)의 장기투자 계획을 선박투자로 이끌만한 동력 및 정책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효 적절한 금융지원 수단이 있다. 에코쉽 펀드 지원으로 국가 기간산업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국내 해운선사가 주요 수혜자가 되며, 국내 조선사도 일감을 수주한다는 측면에서 간접적인 수혜를 받게 되었다.

수은은 에코쉽 펀드의 주축 투자자(Anchor Investor)로서 기관투자자를 모집하는 민관 합동펀드의 형태로 구성해 기관투자자의 대체자산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고, 협소한 국내 선박금융 투자 시장에서 정책적 목표와 상업적 목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에코쉽 펀드의 규모는 신조선박 발주수요와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초기 1조 원 규모 투자기간 3년으로 결정했지만, 향후 투자한도를 조기 소진할 경우 펀드의 투자기간 연장 및 투자규모 증액을 적극 고려할 예정이다.

에코쉽 펀드 도입 초기에는 주로 국내 해운사의 신조 발주에 대한 우량 화주와의 장기용선계약 기반의 후순위 대출을 중심으로 지원되었다. 이는 후순위 대출의 상환 위험성이 높아 용선계약 등을 통해 프로젝트 안정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에코쉽 펀드 자금은 수은 25%, 기관투자자 75%로 구성되어 선박운영 리스크가 높은 경우 기관투자자 모집에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커, 기관투자자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펀드의 운용 안전성을 강조해야 했다.

향후 에코쉽 펀드는 운영 노하우를 점진적으로 축적해 메자닌 투자 및 지분투자 등으로 투자상품을 다양화하고 장기용선계약이 없는 컨테이너

선 자사선대 등으로 투자대상을 확대(운용리스 금융방식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 8월 수은과 산은의 자회사로 출범한 한국해양보증보험의 후순위 채무보증보험을 활용한 신용보강을 통해 협조유자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2. 지원실적 및 사례

간접투자 실적

수은의 펀드 투자는 시기적으로 2014년 「수은법」 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2014년 이전의 경우, 2009년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한 「수은법」 개정 이후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었던 해외 온실가스감축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조성된 펀드에 투자가 이루어졌다. 2009년 국내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감축사업 진출 활성화 및 탄소배출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탄소펀드를 조성하면서 1,129억 원의 투자를 승인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2개 자원개발펀드에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총 600억 원의 투자를 승인했다.

2014년 「수은법」 개정 이후에는 투자 분야 및 한도 등 일부 요건이 완화되면서 펀드 투자 업무가 보다 확대되었다. 수은은 우리 기업의 해외 에너지·인프라 등 사업 지분인수, 건설·운영 수주 및 주요 자원의 국내 도입에 필요한 투자금융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글로벌에너지인프라펀드 조성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5년 4월 1,325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으며, 수은은 이중 300억 원의 투자를 약정했다. 수은이 주도적으로 펀드 투자자로 나서 한정된 정책자금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큰 레버리지 효과를 창출한 동시에 국내 민간자금의 해외동반진출 유도효과도 거두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조성되었는데, 2015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의료서비스산업, 에너지·인프라 사업, 중동지역 사업, 해운사의 선박운항사업 등 5개 분야

에 대한 펀드가 결성되었으며, 수은은 이들 5개 펀드에 총 1,864억 원의 투자를 승인했다.

에코쉽 펀드의 활약

수은은 2014년 말 국내의 해운사의 선박운항사업 지원을 위해 후순위 대출과 지분투자를 위한 수익증권에 대해 투자하는 1조 원 규모의 에코쉽 펀드 프로그램(수은 25% 참여)을 설립했다. 에코쉽 펀드는 프로젝트 펀드 형태로 특정 선박금융 프로젝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펀드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투자형태로 국내 자산운용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운용하는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수은은 자체적으로 에코쉽 펀드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펀드약정총액(LTV의 100%까지), 투자금액(펀드 약정금액의 25%), 표시통화(원화 또는 외화), 투자기간(5년), 존속기간(15년), 프로젝트 등급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프로젝트의 국내 신용평가사 프로젝트 등급 BBB- 이상, DSCR 1.1 이상, LLCR 1.15 이상, 선순위 대주단이 요구하는 모든 담보의 후순위 채권보전장치 취득 등을 최소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해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있다.

수은의 최초 에코쉽 프로젝트 펀드는 2015년 3월, 현대상선의 유연탄 수송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15만 톤급 벌크선 4척의 신조발주에 304억 원의 펀드자금을 투입하면서 본격적으로 후순위 채권 투자를 개시했다. 수은과 외국계 금융기관이 선순위 금융을 동시에 제공해 선·후순위 복합금융의



에코쉽 선박펀드 투자약정 서명식(2015. 3. 4.)

지평을 열게 된 투자였다.

특히, 수은의 전통적인 선박금융 상품인 외항선박 구매자금 대출과 후순위 대출 중심의 에코쉽 펀드를 결합해 맞춤형 복합금융을 제공한 것도 특징이다. 이를 통해 선사의 자기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선박 운용사와 딜소싱, 선박운영, 금융구조화 등의 노하우를 공유하게 되었으며, 선순위와 후순위를 결합해 선가의 100%를 금융대출로 충당토록 한 것이다. 이는 수은의 중장기 과제인 금융선주로서의 역할 강화에 한 발짝 다가가는 기념비적인 투자였다.

연도별 지원실적(승인기준)을 살펴보면, 2014년 2건, 2015년 2건으로 총 1,136억 원(수은 284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했으며, 그 대상이 모두 국내 해운사로 고연비 에코쉽 선박을 적기에 확보하는데 공헌했다.

수은 에코쉽 펀드 승인실적

프로젝트명	승인시기	지원금액	해운사	선종	지원목적
수은에코쉽1호	2014. 12.	304억 원 (수은 76억 원)	현대상선	벌크선 (4척)	신조발주 및 유연탄 수송사업 지원
수은에코쉽2호	2014. 12.	180억 원 (수은 45억 원)	대한해운	벌크선 (2척)	철광석, 석탄 수송사업 지원
수은에코쉽3호	2014. 8.	38,880천 달러 (수은 9,720천 달러)	장금마리타임	탱커 (4척)	신조발주 및 원유운반사업 지원
수은에코쉽4호	2015. 11.	17,868천 달러 (수은 4,467천 달러)	동아탱커	탱커 (2척)	신조발주 및 정유운반사업 지원

제5장
고객서비스

1절 해외경제정보 제공

1. 국별신용도 평가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개발도상국의 채무불이행이 국제적 이슈가 되면서 국별신용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수은은 1977년 국내 최초로 국별신용도 평가기법을 도입한 이후 수차례에 걸친 평가모델 개선을 통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다. 이를 기반으로 매년 40여 개국에 대한 독자적인 신용도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국별 여신편중 방지, 여신회원 효율성 제고 등 국별 여신훈도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수은의 국별신용도 평가업무는 설립 이듬해인 1977년에 경제조사 기능을 전담하는 독립부서로 해외투자조사부가 신설되면서 시작되었고, 현재는 해외경제연구소가 고유의 국별신용도 평가기법을 개발해 국별신용도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외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듬해인 1997년부터 수은 직원이 OECD 국가위험 평가전문가(Country Risk Experts: CRE) 회의에 우리 정부 대표단으로 참가하고 있다. OECD CRE 회의는 1997년 6월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들의 공적수출신용에 관한 프리미엄 적용지침(Knaepen Package) 합의에 따라 각 국가별 국가신용위험(Country Credit Risk)을 결정하기 위해 연 3회 프랑스 파리 소재 OECD 사무국에서 개최된다.

OECD 평가모델(Country Risk Assessment

Model: CRAM)은 1)공적수출신용기관의 거래경험, 2)외채상황, 3)경제상황, 4)체제전환경제 4개 분야에 대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국가별 위험점수를 산출해 CRAM 등급을 부여하며, CRE 회의에서 참가국 대표단이 CRAM 등급을 기준으로 경제상황, 정부정책, 소요위험 등에 관한 등급조정을 통해 0~7 등급의 8단계 등급을 최종 결정한다. 이 결과는 OECD 회원국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 수출 신용 공여시 최저 프리미엄(Minimum Premium Rates: MPR)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수은은 이와 별도로 국별신용도 평가 모델을 자체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데, 평가결과는 국가별 여신훈도 산정 및 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거래기업의 신용등급은 해당기업이 속한 국가의 신용등급보다 1단계 이상 초과할 수 없는 등 국별신용도 등급은 각 기업의 신용등급 상향선을 제시한다.

수은은 1998년 구축된 국별신용도 평가시스템과 2003년에 도입된 수시평가시스템을 이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 및 해외투자 주요 대상국에 대한 국별신용도 평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을 심도 있게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매년 초 수은 여신훈액이 있는 국가, 여신회원 가능성이 큰 국가, 외환위기 우려국가, 여신회원의 평가요청국가, 국별신용도 평가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 중 40여 개 국가를 평가대상국으로 선정해 국별신용도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해당년도 평가대상국 외

2015년 국별신용도 평가대상국 현황 (2015. 12. 31. 기준)

지역별	평가대상국(총 44개국)
아시아·대양주(12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뉴칼레도니아
중남미(9개국)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칠레, 파나마, 페루
중동·아프리카(11개국)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나이지리아, 모잠비크, 코트디부아르
유럽·CIS(12개국)	그리스, 루마니아, 터키, 폴란드, 헝가리,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에도 여신부점의 요청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국별신용도를 평가하며, 나머지 국가들은 OECD 등급을 원용한다.

1997년 이전의 국별신용도 평가모델은 정형적 서술기법(Structured Qualitative System)으로 평가분야를 1)국내경제, 2)대외거래, 3)개발정책, 4)정치사회, 5)기타(우리나라와의 관계)로 분류하고, 각 분야별 신용도를 9개 등급으로 분류해 등급에 따른 평점(a: 1점, b: 2점, c+: 3점, c: 4점, c-: 5점, d+: 6점, d: 8점, d-: 11점, e: 16점)에 의해 종합평점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신용도등급(A, B, C, D1, D2, D3, E)을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1998년 이후 도입한 모델은 질적 분석방법에 수량적 분석방법을 가미한 지수가중평균 평가기법(Check List System)을 사용했다. 평가대상국의 특성과 주요 문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수량화할 수 없는 요소를 충분히 감안해 분석자의 주관을 배제하며, 국가 간 신용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정량평가는 1)국내경제, 2)대외거래, 3)의 채상환능력으로 구성하고, 정성평가는 1)경제, 2)정치·사회, 3)국제신인도로 구성했다. 아울러 국별 신용도 등급은 종전의 7단계를 유지하되 A, B, C, D+, D0, D-, E등급으로 그 표기를 바꾸었다.

2002년 12월부터는 평가시기를 연간계획에 따

른 정기평가에 한정하지 않고, 여신담당 부점장의 요청이 있거나, 국별신용도 평가담당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평가가 이뤄지도록 체제를 개편했다.

2003년부터 이른바 체제전환국에 대해서는 OECD 평가모델의 체제전환 단계별 구분방식을 준용해 정량평점의 변환가중치를 적용하는 별도의 정량평가 방식을 취했다. 이후 2005년부터는 정성평가의 경제 및 정치·사회 분야를 다시 세분화하여 경제 분야는 국내 경제와 국제경제로, 정치·사회 분야는 정치체제·사회 안정성과 내전(내란)·주변국과의 분쟁 가능성으로 구분해 평가했다.

2005년 12월에는 2007년 Basel II 시행에 대비해 평가시스템을 정비했다. 우선 평가요소의 유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적인 평가기관의 국가위험도 평가요소 및 통계지표를 수은 평가방식에 적합하게 반영해 평가요소와 평점부여 가중치를 일부 조정하고, 평가등급의 표시방법도 변동 가능성 예고를 위해 종합평점 추이를 기준으로 Positive, Stable, Negative를 신용도 등급과 더불어 표기했다.

특히 정성평가 요소를 평가분야별로 보다 세분화했는데, 경제 분야는 구조적 취약성, 성장 잠재력, 정책성과 3개 요소로 구분하고, 정치·사회 분야는 정치안정, 사회안정, 소요·사태, 국제관계 4개

OECD CRAM 등급 원용 기준표

OECD 등급	0/1	2	3	4	5	5	6	6	7
당행 등급	A	B1	B2	C1	C2	C3	D1	D2	E
(평가점수)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5 이상	40 이상	35 이상	30 이상	30 미만

요소로 세분했으며, 국제신인도 분야는 외채상환 태도, 국제시장평가, 우리나라와의 관계 등 3개 요소로 구분했다.

2013년까지는 평가대상국을 주요국과 일반국으로 구분하는 한편 평가시기를 기준으로 정기평가 대상과 수시평가 대상으로 구분해 운영했으나, 2014년부터 이를 폐지하고 모든 평가대상국들에 대한 수시평가 체제를 구축해 개도국의 경제·정치상황 변화에 보다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아울러 국별신용도 등급을 종전의 7단계에서 9단계(A, B1, B2, C1, C2, C3, D1, D2, E 등급)로 세분화 해, 신흥국들 간의 신용도 등급 변별성을 높였다.

또한 수은은 1993년부터 주요 투자대상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절차 등 종합적인 투자 관련정보를 수록한 <국별 투자가이드>를 발간했다. 1993년 14개국이 대상이었으나 1994년 두 번째 가이드북은 16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이후 매년 15개국 내외를 대상으로 국별 투자가이드를 발간했으며, 1994년 7월 해외투자정보시스템(Overseas Investment Information System: OIIS)을 개발해 투자가이드의 수록내용(해외투자 종합정보)을 하이텔과 천리안 통신망을 통해 해외투자 관심기업 및 유관기관이 온라인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1997년 7월에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기존 OIIS를 홈페이지로 이관했고, 1998년 해외투자연구소가 해외경제연구소로 개편되면서 시스템의 명칭도 해외경제정보시스템(Overseas Economic Information System: OEIS)으로 변경했다. 현재 수은 홈페이지 OEIS 국가별 정치·경제동향 및 투자환경 부문에는 국가개황(세계국가편람), 최근 정치경제동향(국별 리포트 및 신용도 평가보고서), 국별 투자환경(투자 가이드, Country Report), 정보자료(지역정보) 등 종합적인 최신 자료가 게시되고 있다.

2. 해외 직접 투자 통계

해외직접투자 통계 서비스

해외직접투자 통계업무는 외국환거래법 제1장 3조

1항 18호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의한 해외직접투자 관련 내용과 자료를 분석해 정부의 해외투자 및 대외자산에 관한 정책수립,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수은은 외국환거래규정 제9-2조의2에 의거 1999년 7월부터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종합관리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통계 작성 및 처리절차를 보면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 거주자는 외국환거래규정과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의거, 외국환은행장,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투자 집행 이후에는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외화채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을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수리기관의 장은 신고수리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해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매월 수은 앞으로 해외직접투자 관리대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수은은 이렇게 받은 관리대장 및 신고서 사본을 바탕으로 투자실적을 해외직접투자 통계정보시스템(Overseas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ODISIS)에 입력해 매월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통계자료는 동향 분석보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되며 수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도별, 월별, 지역별, 국가별, 업종별 등 다양한 분류 형태로 일반 이용자들에게 제공된다.

수은은 그 밖에도 현지법인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을 발간하고, 전체 현지법인의 현황을 총망라한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 현황> CD를 제작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통계 분석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 보고서는 수은이 통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처음 시작한 서비스로 기간별, 기업규모별, 업종별, 지역별로 해외직접투자 추이를 분석해 분기별, 연도별로 제공하고 있다. 수은은 작성된 동향분석 보고서를 규정에 의거하여 정기적

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한편, 수은 해외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해 유관기관, 기업, 연구기관이 활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해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13년부터 UNCTAD에서 발표한 ‘World Investment Report’을 기초로 전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동향과 비교, 시사점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게시하고 있다.

또한, 현지법인의 재무현황, 차입금구조, 매출입구조 등 경영성과를 업종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도 매년 말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이라는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투자의 규모 확대보다는 내실화에 더 많은 비중을 두면서 해외투자의 성과를 수출입, 투자수입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경영현황은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수립, 기업 및 각 연구기관의 해외투자 전략 수립, 금융기관의 여신정책 수립에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수은의 경영현황 분석은 해외직접투자 통계업무를 인수한 1999년에 1998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시작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03 회계연도까지는 해당 연도 말 현재 지분 및 대부 투자잔액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지법인을 분석대상으로 300여 개 현지법인의 경영현황을 분석해왔으나, 2004 회계연도 기준 분석에서는 투자잔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지법인 총 1,023개 법인으로 경영현황 분석의 범위를 넓혔다. 최근 2014 회계연도 기준 분석대상은 5,666개 법인으로 그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전체 현지법인에 대한 분석 외에도 중국에 대한 투자급증 현상을 반영해 2000, 2002, 2003 회계연도에는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경영현황 분석이, 2004, 2006, 2007, 2008, 2009, 2010 회계연도에는 중국과 미국 현지법인 경영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이 실시되었다. 최근에는 주제를 다양화해 10년 이상 장기 존속 현지법인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매년 발간되는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 현황> CD

높은 제조업 현지법인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청산법인을 제외한 전체 현지법인을 지역별, 국가별(중국과 미국은 성·주별)로 정리한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 현황>은 개별 현지법인별로 지역, 국가, 상호(모기업), 현지법인명, 업종, 주요 취급품목, 신고일자, 투자비율, 신고금액, 투자금액, 투자잔액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현지법인 현황 발간을 위한 기초자료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수은이 작성하여 외교부 각 해외공관에 배포한다.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 현황>은 2004년까지는 책자로 발간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CD롬으로 제작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개발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등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며 대한민국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대하여 더욱 심층적인 분석은 물론,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수립을 위한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2절 해외진출 자문서비스

1.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 설립

설립 목적 및 근거

정부는 2013년 8월 맞춤형 금융지원을 중심으로 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진출 다변화와 수주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우리 기업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해외사업 진출 관련 정보제공 강화, 범정부적 수주지원 체계구축, 사업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해외건설·플랜트산업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수주 지원 및 금융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원스톱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 결과물로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설립되었다.

업무소개 및 실적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는 2014년 1월 수은 여의도 본점에 설치되었는데,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서울보증보험 등 7개 기관이 한 데 모여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정보와 원스톱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수출자금지원, 이행성보증 등을 지원하는 도급사업팀,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자본 투자 자문 업무를 맡은 투자개발사업팀, 사업구조지원과 해외수주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기획팀으로 구성되었다.

업무는 해외건설·플랜트 관련 정보제공과 금융컨설팅 업무로 크게 나뉜다. 먼저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는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 외교부, 중소기업청, KOTRA, EDCF, KOICA,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등 여러 정책금융기관에 산재된 해외발주정보를 취합해 자체 홈페이지(www.koccenter.or.kr)에 게재해, ‘해외발주정보의 포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해외수주정보 제공,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우리 기업의 수주 역량제고를 위한 세미나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컨설팅 부문은 기업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센터 참여 기관을 중심으로 최적의 금융지원 솔루션을 도출해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출범 이후 2015년 말까지 약 1,000여 건의 금융컨설팅을 제공했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프로젝트 69건에 약 3,300억 원의 금융을 지원했다.

최근에는 사업성은 있으나 낮은 신용도 및 열악한 재무여건 등으로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이 리스크를 공동으로 분담해 해외건설·플랜트 사업에 이행성보증을 제공하는 공동보증제도를 새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 국제계약 및 법률상담

수은은 소속 국제 변호사(In-house Lawyer)를

통해 중소·중견 고객기업에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수출입이나 해외투자 관련 영문계약서의 검토 및 작성은 물론, 수은 여신업무와 관련된 법률 자문, 기타 국제거래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문국제계약 작성기법 특강을 열기도 했다.

2004년 7월 국제계약자문 경험을 집약한 <영문국제계약 해설>자료집을 발간했는데, 이 책자에는 국제계약의 기본 이론에서부터 분쟁의 해결, 프로젝트 파이낸스(P/F), 해외건설공사, 해외투자계약서, 프랜차이즈 및 라이선스 계약까지 모든 종류의 계약형태를 망라해 국제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의 실용서로 사용되었다. 수은은 일찍부터 국제계약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여 년 전부터 국제계약에 특화된 내부 변호사를 육성했으며, 2015년 말 현재 3명의 미국 뉴욕주 변호사와 3명의 국내 변호사가 국제거래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거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컨설팅 기관이나 법무법인의 자문료가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에게 수은의 법률서비스는 유용한 대안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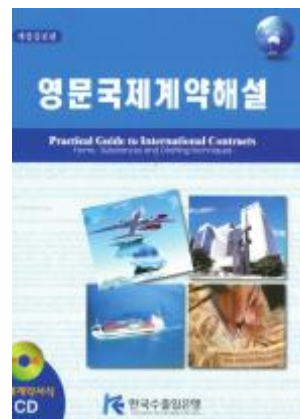
3. 수출중소기업 지원센터

수출중소기업 지원센터는 금융상담, 마케팅, 컨설팅 제공 등 고객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강남, 시흥, 천안 세 곳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강남센터의 경우, 1997년 9월 지점으로 출발했으나 2009년 중소기업지원단 내 중소기업2실로 관할업무가 이관되면서 현재까지 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흥센터와 천안센터의 경우 2013년 8월 개소했다.

수출중소기업 지원센터는 해당 지역 소재 대상기업 앞 수출입금융·해외투자금융 등 금융지원 관련 상담 및 마케팅을 비롯해 산업단지 입주업체 조사 등을 실시하며 수출중소기업의 수은 접근성을 개선하고, 더 많은 수출중소기업들이 수은의 금융·비금융지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해외건설 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 운영(2014. 1. 10.)



<영문국제계약해설> 발간(2004.)

4. 중소·중견기업 환위험 관리지원 서비스

수출기업에게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가능성은 거래의 또 하나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수은은 환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등이 부족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환위험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10년에는 기업 환위험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전문 외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기관을 통해 수출기업의 담당 실무진들에게 환위험관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하는 한편, 환율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지원기업에 대한 약식 환위험관리 진단 및 실행계획 수립, 기업의 실무진 대상 환위험 및 관리에 대한 개념 확립, 환위험 관리 실무 방법 지도 등이다. 환위험관리 종합 컨설팅의 경우 연간 최대 150개사까지 지원하며, 기업들의 꾸준한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수은은 앞으로도 기업이 안정적인 수출입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제2편

자금조달 업무

제1장

개관

1절 개요

수은의 자금조달은 「수은법」에 의거해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자본금 및 적립금, 차입금,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매 사업연도 조달 규모는 자금조달 계획에 의해 재원별로 정해진다.

수은의 법정자본금은 7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2014년 1월 15조 원으로 늘어났으며, 「수은법」 제4조에 의하면 수은에 대한 출자는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 상의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 및 국제금융기구가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15년 말 기준 납입자본금은 8조 8,781억 원으로, 정부, 한국은행 및 KDB산업은행 3개 기관에 의해서 납입되었다. KDB산업은행의 경우 1999년 한국투자신탁 및 대한투자신탁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보유 수은 출자지분 일부를 산업은행에 출자함에 따라 수은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적립금은 결산이익금의 최소 10%를 적립하는 법정적립금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립하는 임의적립금으로 구성되며, 2015년 말 적립금 총액은 2조 1,478억 원 수준이다. 수은은 자기자본의 확충 필요성에 의하여 설립 이후 1986년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이익금 전액을 적립해 왔으나, 1987년부터는 정부의 방침 및 수은의 경영 상황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기관에 배당했다.

수은은 「수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정부, 한국은행, 외국정부, 국제금융기구 또는 국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설립 이래 정부, 한국은행 및 외국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장단기 자금을 활발히 차입해 왔다. 2015년 말 현재 국내 외 차입금 잔액은 11조 9,576억 원이다.

「수은법」 제20조는 국내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2015년 말 현재 발행잔액은 9조 6,569억 원이다. 수은은 1984년 이후 각종 외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을 해외에서 기채해 왔으며, 2015년 말 현재 발행잔액은 43조 5,827억 원으로 전체 조달의 약 66.8%(전체 채권잔액 53조 2,396억 원의 81.9%)를 차지하고 있다.

원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은 금리 역마진 발생 문제로 인해 발행하지 않았으나, 1990년대 초 구 소련 소비재차관 공여 재원 조달을 위해 1991년과 1992년에 걸쳐 총 495억 원을 발행한 바 있다. 이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수은의 유동성 공급원 역할이 한층 중요해지면서 원화자금 수요의 충당을 위해 1999년에 2,500억 원, 2001년에 2,000억 원, 2005년에 5,000억 원을 발행한 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5년까지 9조 원 이상을 발행했다.

한편 「수은법」 제23조는 수은의 재무구조 건전성 유지를 위해 차입금과 수출입금융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한도를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30배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5년 말 기준으로 차입금과 수출입금융채권 발행잔액 합계액은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 10조 8,840억 원의 6.8배인 65조 1,972억 원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절 변천

지난 40년 수은의 자금조달 규모는 여신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급격히 증가했고, 재원구성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수은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금 증액을 통한 자기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 재정여건상 자본금 납입이 수은의 여신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수은의 차입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은은 국가 신용도와 동일한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외화조달 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외부차입이 여신재원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

국내 자금조달

수은은 설립 첫 해 출자금과 국민투자기금 차입 등 국내재원으로 자금조달을 했지만, 이듬해인 1977년부터는 한국은행 보유 외화수탁과 한국외환은행 차입으로 국내자금 조달창구가 새로 추가되었다. 외환은행 차입금 규모는 1977년과 1978년에 총 200억 원이 장기차입금 형태였다.

전체 자금조달에서 국내재원 비중은 설립 초기 3년 간 6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1979년 은행 차입(Bank Loan) 도입을 계기로 해외 자금조달이 본격화되면서 감소세로 돌아서 1980년대 중반에는 20%를 밑돌았다.

그러나 1987년부터 한국은행 보유 외화수탁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내자금 조달 비중은 다시 높아졌고, 1988년과 1989년에는 조달자금 전액이 국내에서 이뤄졌으며, 1990년대에도 자금조달은 대부분 국내 재원에 의존했다. 다만 출자금과 재정자금이 원활히 유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기

자금인 한국은행 수탁금에 의존하면서 국내재원 확충을 통한 장기·안정적 자금조달 기반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편 국민투자기금 차입은 1992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고, 대체 조달원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차입이 주요 원화 차입원으로 부상해 1998년까지 조달되었으나, 1998년 차입한 재정융자특별회계차입을 2004년 말 상환하면서 재정융자특별회계차입은 해소되었다.

해외 자금조달

1977년 보유 연불어음(Promissory Note) 매각으로 시작된 해외 자금조달은 1979년 2억 달러 규모의 은행차입이 처음 도입되면서 본격화되었다. 1977년 17.5%에 불과했던 해외조달 비중은 은행차관이 도입된 1979년에 53.6%로 크게 증가했으며, 1980년대 중반에는 80%를 상회했다.

이후 한국은행 보유외화 수탁규모 급증에 따라 해외차입 의존도는 크게 낮아졌으나, IMF 외환위기 체제인 1997년 12월 한국은행 보유외화 수탁금을 전액 상환하면서 다시 해외차입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후 해외 자금조달은 자금조달원 및 조달기법이 다양해졌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은행차관 도입 및 보유 연불어음 매각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에는 국제채시장에서 채권 발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제채발행이 자금조달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국제채발행의 증가와 함께 발행채권의 종류 및 발행시장도 다양해졌는데, 최근에는 차입비용 절감을 위해 스왑연계채권(Swap-related Bond) 발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제2장

국외 자금조달

1절 조달방식의 발전

1. 조달방식의 변화

국제금융시장 진출 초기 수은은 해외 자금조달을 은행 차입(Bank Loan)과 보유 연불어음(Promissory Note)의 매각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와 수은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제채시장에서 외화채권 발행이 가능해져 그 비중이 점차 감소했으며, 특히 1990년대 들어서는 외화채권이 수은 해외자금조달의 주된 수단이 되었다.

조달시장도 유로시장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주요 국제금융시장으로 다변화되어 조달기반이 안정되었다. 수은의 외화조달규모도 더욱 대형화하고 차입시장도 더욱 다양해지면서 2012년과 2015년의 글로벌본드 발행에는 1회 차입 규모가 22억 5,000만 달러까지 늘어났으며, 차입시장도 미달러화 시장을 비롯해 일본엔, 유로, 스위스프랑 등 전 세계 29개 자본시장으로 확대되었다.

2. 초기 재원조달 방식

연불어음 매각

보유 연불어음의 매각은 수은의 해외 자금조달에서 초기 10년 동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장기 연불금융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업무특성이 반영된 것으로서 수은 고유의 외화자금 조달방식이었다.

보유 연불어음 매각방식은, 우선 우리나라 수출자가 해외에 연불로 제품이나 용역을 수출할 경우 수출대금에 대한 지급약속으로 수입자로부터 약속어음을 수령하며, 공신력 높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는다. 수은은 수출자에게 금융을 제공하면서 수입자가 발행한 약속어음과 선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대출담보로 취득하며, 외화자금 필요시 보유 연불어음 중 일부를 국제금융시장에서 매각했다.

연불어음 매각은 순수한 해외차입과는 구분되나, 관련 대출금의 조기회수를 통해 수은 지원자금의 회전을 제고와 장기·저리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자금조달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수은의 금융지원을 받은 국내 수출업자는 수은 대출금을 조기상환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었다. 또한 연불어음 매각은 대외채무를 늘리지 않고 필요한 외화를 조달하므로 우리나라 국제수지 개선에도 기여했다.

최초의 보유 연불어음 매각은 1977년 6월로, 1억 4,900만 달러 규모의 연불어음을 Scandinavian Bank를 대리인으로 한 차관단에 매각했다. 매각조건은 금리가 LIBOR + 1.125~1.25%, 인출수수료는 0.125%이었다.

연불어음 매각은 1983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나 1983년 한해 7억 4,300만 달러의 매각실적을 기록했는데, 연불수출의 주축인 선박수출이 순조로워 보유 연불어음 규모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연불어음 매각은 우리나라 국제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일시 중단되었다

가 1991년 재개되었다. 그러나 1991년에 일시 재개되었던 연불어음 매각은 1992년 이후 다시 중단되었다. 우리나라 및 수은의 신용도 상승으로 해외차입여건이 개선되면서 연불어음 매각보다는 은행차관이나 외화채권 발행이 비용 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이다.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사무라이본드, 유로본드, 양키본드와 글로벌본드를 발행하면서 매각실적이 없었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1월과 4월에 각각 2억 2,870만 달러와 3,700만 달러의 연불어음 매각이 마지막으로 성사되었다.

전대차관 도입

1980년대 들어 수은은 외화조달원의 다변화와 함께 전대차관을 도입했다. 외국의 공적수출금융기관이 우리나라 자본재 수입자에게 공여하는 구매자신용을 주선, 도입해 이를 국내 수입자 앞으로 전대해 주는 제도였다.

1980년 처음으로 원자재 연불수입대진 결제용 전대차관을 도입한 이래, 1985년까지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독일의 공적수출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억 5,400만 달러에 달하는 차입 한도(Credit Line)를 확보해, 약 9,500만 달러를 활용했다.

최초 전대차관은 1980년 8월 스웨덴 수출신용기관인 Skandinaviska Enskilda Banken(SEB)과 Ostgotabanken Linkoping으로부터 차입한 1,810만 달러 규모였다. 이 차관은 수은이 1979년 말 승인한 대우조선의 대노르웨이 연불수출용 케미컬탱커 4척 건조에 소요되는 기자재의 수입결제자금 대출을 위해 도입되었다. 도입조건은 차입금리가 연 7.65%, 대출기간 5년(매 6개월 균등분할상환)으로서, 당시 17~18%인 LIBOR와 비교해 매우 좋은 조건이었다.

이후 덴마크의 Den Danske Bank(DDB), 노르웨이의 Eksportfinans(EKF), 영국의 National Westminster Bank(NATWEST), 프랑스의 Societe Generale 등으로부터 전대차관을 도입했다.

또한, 1985년 8월 외국인 기자재 수입선의 다변



1억 마르크 채권 발행계약 체결(1985. 6. 18.)

화를 위해 독일 부흥금융금고(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 KfW)와 2억 마르크의 차입 한도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독일에서 수입되는 선박건조용 자본재 및 용역의 수입결제용 자금이었다.

그러나, 1985년의 독일 부흥금융금고(KfW) 차관을 끝으로 전대차관 도입 계약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기업의 전대자금 수요가 크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실제로 1985년까지 전대차관 차입 한도는 총 2억 5,400만 달러였으나, 인출금액은 약 9,500만 달러에 그쳤고, 1984년 이후에는 인출실적이 전무했다.

중단되었던 전대차관 도입은 IMF 외환위기 당시 재도입했다. 1998년 5월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일본수출입은행과 1,300억 엔 규모의 차입 한도 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11월에는 노르웨이 수출신용기관인 GIEK(Norwegian Guarantee Institute for Export Credits)의 보증으로 EKF로부터 5,000만 달러 규모의 차입 한도를 도입했다. 이어 12월에는 영국의 수출신용보증국(ECGD) 보증으로 Midland Bank로부터 7,500만 파운드 규모의 차입 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해 전대차관 차입을 재개했지만, 우리 기업의 요청이 없어 인출실적을 기록하지 못하고 조기상환되었다.

3. 외화채권 발행 및 변천

1980년대 들어 국제자본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수은은 조달방법의 다양화 및 시장다변화 방안으로 외화채권 발행을 적극 추진했다. 첫 성과는 1984년 1월 일본 자본시장에서의 엔화표시 50억 엔 채권 발행이었다.

수은은 1984~1985년 달러화 채권, 독일마르크화 채권 및 스위스프랑화 채권을 중심으로 활발한 기채활동을 벌였다.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가 흑자기조로 돌아선 1980년대 후반에는 채권발행이 중단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 재개되며 해외 자

금조달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떠올랐다.

특히, 1991년 세계 최대 자본시장인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해 전환점을 찍은 뒤, 1996년 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Global Bond)를 미국과 유로시장에서 성공리에 발행하였고, 동시에 유로엔채, 중기채(Medium-Term Note: MTN) 및 ECU채(European Currency Unit) 등 채권종류 및 표시통화 다변화의 틀을 다졌다.

2절 외화채권 발행의 종류

1. 미달러화 채권

유로채권

1984년 11월 수은은 최초의 미달러화 공모채권을 발행했다. 유로채(Euro Bond) 시장에서 5,000만 달러 규모의 변동금리부채권(Floating Rate Note: FRN) 형태였다. 유로채란 표시통화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행되는 채권으로 특별한 규제가 없어 발행이 용이한 것이 장점으로 Dai-Ichi Kangyo Bank(DKB) 등 18개 금융기관이 주관사로 참여했다. 한편 변동금리부채권이 차입비용 측면에서 은행차관에 비해 유리해 초창기 미달러화 공모채권은 주로 변동금리부 채권 형태로 발행되었다.

이후 꾸준히 발행되는 유로채권은 2004년 4월 발행한 유로채권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행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을 포함한 해외 기관투자자들 사이에 수은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수은은 이후 글로벌본드 형태로 미달러화 공모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이다.

양키본드

1990년대 수은은 자금조달시장 다변화를 위해 세계 최대 자본시장인 미국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수은은 우선 미국 내 채권발행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미국의 무디스와 S&P에

신용평가를 의뢰해, 1990년 12월 한국계 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A1과 A+를 각각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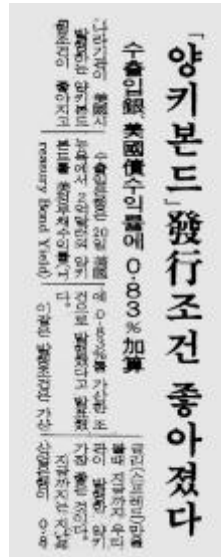
이후 주간사를 선정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SEC)에 채권 발행 신고를 마치고, 투자설명회 등 제반 절차를 거쳐 1991년 5월 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양키본드 발행에 성공했다. 2억 달러, 만기 7년으로 발행 수익률은 미 국채수익률에 0.83%를 가산해 표면금리 연 6.5%의 조건이었다.

글로벌본드

수은은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발한 기채활동으로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면서 1995년 글로벌본드의 발행을 추진했다. 글로벌본드란 유로시장에 발행되는 유로본드나 특정국 내에서 발행되는 양키본드, 사무라이본드와 달리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 등 전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유통시장에서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통상 5억 달러 이상 발행해야 한다.

수은은 우선 1991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일괄등록(SR)한 서류를 보완해 SEC로부터 등록유효 선언을 받았다. 주간사는 글로벌본드 주선실적이 좋고, 한국계 채권에 대한 주간사 경험이 많은 미국의 Lehman Brothers와 Salomon Brothers를 공동으로 선정했으며, 일본, 유럽, 미국 등 여러 지역의 금융기관들을 간사단에 포함시켜 지역별 안배를 했다.

이어 런던, 뉴욕, 보스턴 등 주요 지역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1996년 2월, 5억 달러 규모의 10년 만기, 미 국채수익률에 가산금리 0.77%를 적용한 글로벌본드를 최초로 발행했다.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 투자자가 몰려 발행규모의 3배 이상의 주문이 쇄도한 것이다. 수은의 글로벌본드 발행 성공은 고정금리채 시장에서 10년 만기 한국계 채권의 선도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다른 한국계 채권의 유통 가산금리를 낮추는 촉매가 되었으며,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재원조달방식이 되었다.



1993년 수은의 양키본드 발행 관련기사(1993. 5. 21.)



첫 글로벌본드 발행계약(1996. 2. 8.)



250억 엔 엔화 채권 발행(1990. 12. 7.)

2. 엔화 채권

일본 국제채 시장은 1970년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이 60억 엔을 발행한 이래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특히 1980년 이후 일본의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와 저금리를 등에 업고 성장에 가속도가 붙었다.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다양화를 모색하던 수은에게 일본은 채권발행의 적지였다. 이미 은행 차관 도입 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금융기관이 많고, 또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이 채권을 발행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수은은 1983년 하반기 중 50억 엔 규모의 엔화 채권 발행을 결정하고, 주간사로 일본의 4대 증권회사이자 채권발행 주선경험이 많고, 오랫동안 수은의 외화차입에 참여해 온 Yamaichi 증권을 선정했다. 발행방법은 최초의 채권발행인 점을 감안해 절차가 간단하고 조건이 신축적인 사모방법(Private Placement)을 선택했다. 이후 금리 및 가격 조건 결정을 거쳐, 1984년 1월 도쿄에서 채권발행 계약이 체결되었다. 만기 7년(4년 후 분할상환) 표면금리 연 8.4%, 발행가격 99.9%의 조건이었다. 수은 최초의 엔화 채권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차입통화의 다변화에도 기여하는 성과였다.

이후, 엔화 채권은 1997년까지 꾸준히 발행되었다가 IMF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본드가 활성화되면서 중단되었다가 2007년 6월 350억 엔 규모의 엔화 채권을 발행하면서 재개되었다. 그러나, 또다시 리먼 사태 등으로 인해 다시 중단되었다가, 2011년 7월 당시까지 한국계 기관 발행물 중에서는 사상 최대인 800억 엔 규모로 발행하였고, 현재까지 재원마련 방식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3. Euro화 채권 발행

1999년 Euro화 출범에 따라 역대 독일마르크화, 프랑스프랑 등 National Currency 표시 채권발행

은 사라지고 모두 유로화 표시로 발행되어 미국시장에 버금가는 단일 국제채 시장이 형성되었다.

수은은 2004년 10월 EMTN 프로그램을 통해 Deutsche Bank와 ABN Amro Bank를 공동 주간사로 3억 유로 규모의 유로화 채권을 성공리에 발행했다. 효율적인 발행전략과 투자자의 적극적인 매수세에 힘입어 공식 발행발표 30시간 만에 당초 발행예정금액인 3억 유로의 4배에 가까운 11억 유로 이상의 주문이 몰리며 증액요청이 있을 정도로 시장의 반응이 좋았다. 채권금리는 Euribor + 0.35%(달러화 스왑후 LIBOR + 0.35% 해당)로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가산금리 0.40% 벽을 깼다.

2008년 5월에는 만기 5년, 7억 5,000만 유로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표면금리 연 5.861%에 발행했다. 2008년 한국계 기관이 발행한 채권 중 가장 큰 규모로 국제금융전문지인 IFR로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아시아 차입자들의 채권 발행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수은의 유로화채권 발행은 5년 만에 재개되었다. 2013년 4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계 최초의 유로화채권을 발행했는데, 7억 5,000만 유로 규모의 7년 만기, Euribor + 0.95%의 변동금리 채였다. 이후 수은 채권에 대한 유럽 투자자의 투자문의가 이어면서 불과 보름 만에 2억 5,000만 유로를 증액발행 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아시아 기관 가운데 유로화 공모채권을 증액한 것은 처음이었으며, 높은 투자수요에 힘입어 앞서 발행한 채권보다 약 8bp 낮은 Euribor + 0.865% 금리수준으로 채권을 발행했다.

4. 스위스프랑화 채권

스위스프랑화 채권은 스위스프랑이 국제금융시장의 5대 주요 통화 중 가장 금리가 낮고 환율도 안정되어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독일 마르크화 채권과 함께 1985년 초부터 발행을 추진했다. 채권발행 추



2004년 3억 유로 유로화채권 발행 관련 IFR 기사

진과정에서 스위스 증권당국이 외국인 채권발행의 전제조건으로 스위스 중앙은행의 동의와 함께 발행국 정부의 보증을 요구해 어려움이 있었으나, 1985년 하반기 수은은 정부보증 없이 발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1986년 1월 스위스 3대 은행인 Swiss Bank Corporation(SBC)을 주간사로 5,000만 스위스프랑 규모의 스위스프랑화 채권을 만기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표면금리 연 6.1258%의 조건으로 발행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수은은 시장규모는 작지만, 국제금융시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틸새시장 공략을 위해 2008년과 2009년에 연이어 스위스프랑화 채권을 발행했다. 2008년 5월 ABN Amro를 주간사로 1억 스위스프랑 규모의 2년 만기 변동금리부채권을 CHF LIBOR + 0.71%로, 2억 5,000만 스위스프랑 규모의 3년 만기 채권은 3.875%에 발행했는데, 이는 미달러화나 유로화, 엔화 등 G3통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보다 0.1~0.2% 낮은 수준이었다.

한동안 뜸했던 스위스프랑화 채권을 수은은 2014년 2월 다시 발행했다. 3년 만기 1억 2,500만 스위스프랑과 5년 6개월 만기 1억 스위스프랑으로 이루어진 Dual Tranche 구조로 Credit Suisse와 UBS가 주간사로 참여하였다. 금리는 각각 CHF LIBOR + 0.45%와 연 1.125%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일만기 대비 최저 수준이었다.

5. 호주달러화 채권

2012년 7월 수은은 한국계 발행 사상 가장 큰 금액인 5억 호주달러 규모의 캐ง루본드를 발행하면서 호주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캐ง루본드란 호주 자본시장에서 외국기관이 발행하는 호주달러화 표시 채권이다.

수은은 2010년부터 호주 투자자들을 만나 IR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호주달러화 채권 발행을 검토하는 등 호주 자본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꾸준히 준비를 해왔으나 시장상황이나 발행조건 등이 맞지 않아 발행을 미뤘었다. 그러나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발발 이후 유럽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호주 투자자들이 한국 등 아시아 등지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움직임을 적시에 포착해 신속하게 채권을 발행하였다. 3년 만기 채권을 표면금리 5%(호주 스왑금리인 BBSW에 1.9%를 가산한 수준)에 발행하였다. 특히, 호주시장에서의 첫 번째 발행인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어 통상 하루에서 이를 정도 걸리는 프라이싱 과정(채권 발행발표부터 발행조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단 10시간 만에 끝났으며, 발행금액도 당초 목표보다 두 배로 늘어났다.

이후, 2013년 두차례에 걸쳐 총 2억 호주달러, 2014년 4월과 11월 각각 5억 호주달러를 발행하는 등 꾸준히 호주시장을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하였다.

2015년 8월에는 5.5년 만기, 6억 5,000만 호주달러 상당의 캐ง루본드를 발행했다. ANZ, National Australia Bank, Daiwa, TD Securities(TD)가 주간사로 참여했으며, 3억 5,000만 호주달러는 BBSW에 1.2%를 가산한 변동금리채권으로, 나머지 3억 호주달러는 표면금리 3.7%의 고정금리채권이었다. 한국계 캐ง루본드 중 최대 규모로 수은이 호주시장의 주요 발행기관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6. 뉴질랜드달러화 채권

캐ง루본드의 연이은 성공적 발행으로 호주시장에 안착한 수은은 2014년 6월, 역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뉴질랜드달러화 공모채권을 발행했다. 뉴질랜드달러화는 안전자산이면서도 G3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 역외투자자의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에 착안한 선택이었다. 3.5년 만기에 1억 뉴질랜드달러 규모인 이 채권은 ANZ와 Westpac을 주간사로 표면금리 4.875%의

조건이었다.

이어 8월과 10월에도 1억 뉴질랜드달러 상당의 역외 공모채권을 5년 만기로 발행했는데, 8월에는 HSBC와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를, 11월에는 ANZ를 주간사로 표면금리는 두 차례 모두 5.125%로 책정되었다.

7. 파운드화 채권

영국 파운드화시장은 미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G3통화 채권시장 다음으로 규모가 크며, 특히 여타 발행시장과는 투자자가 거의 중복되지 않아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기에 매우 유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에 수은은 2013년 3월 최초의 파운드화 공모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Deutsche와 RBS를 공동주간사로 3년 만기에 3억 파운드 규모였으며, 발행금리는 GBP LIBOR에 0.7%를 가산한 변동금리 형태였다.

영국과 유럽 투자자들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띠는데, 유럽 재정위기 이후 보수적 성향이 더욱 굳어졌다. 아시아 기관의 경우 일본 도요타자동차 등 인지도가 높은 몇몇 기관을 제외하고는 유럽시장 채권발행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수은은 2013년 2월 북유럽의 초우량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그린본드를 발행한 것을 발판삼아 손쉽게 파운드화 채권을 발행했다. 한국계로는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최초의 파운드화 공모채권이었다.

여세를 몰아 2014년 10월에는 ANZ와 HSBC를 주간사로 만기 3년 2개월, 표면금리 2%, 발행금액 3억 파운드의 두 번째 공모채권을 발행했다. 만기도 생소한 3년 2개월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수은이 수개월 전부터 파운드화 조달시장 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미달러화 스왑 후 가장 경쟁력 있는 금리 여건을 찾아낸 노력의 산물이었다.

8. 캐나다달러화 채권

영연방 국가 투자자들은 보수적인 성향으로 유명하다. 특히 캐나다는 아시아에서도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등 단 2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캐나다 자본시장에 진입한 전례가 없었다. 그러나 수은은 2014년 9월 한국과 캐나다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타결로 한국에 대한 현지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진 모멘텀을 적시에 살리기 위해 바로 다음 달인 10월 토론토와 몬트리올에서 현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2월 메이플본드를 발행하는 데에 성공했다.

메이플본드란 캐나다 자본시장에서 외국기관이 캐나다달러화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수은의 첫 메이플본드는 5년 만기, 표면금리 2.711%에 발행되었으며, 규모는 3억 2,500만 캐나다달러였다. 이로써 수은은 29번째 자본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했으며, 한국계 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G10 통화(미국, 일본, 유럽, 영국, 스위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모두를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9. 위안화 채권

수은은 2011년 8월 위안화표시로는 첫 번째 공모채권인 덤섬본드를 발행했다. 덤섬본드란 홍콩에서 발행되는 위안화 채권으로,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달러화는 약세로 전환되고 상대적으로 위안화가 강세를 띠는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를 적시에 포착해 발행을 추진했다. 한국계 금융기관 최초로 발행된 덤섬본드(위안화 채권)는 총 3억 9,200만 위안 규모로, 1년 만기는 2억 6,400만 위안(미달러 스왑시 LIBOR + 0.75%), 3년 만기는 1억 2,800만 위안(미달러 스왑시 LIBOR + 1.10%)이었다.

2014년 1월 세계 최초로 홍콩시장과 대만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위안화 자금 조달 전략을 구사했다. 주간사는 HSBC였으며, 홍콩시장에서 발행하

는 덤섬본드는 5억 위안 규모에 5년 만기, 표면금리 3.625%, 대만시장에서 발행하는 포모사본드는 5억 위안 규모에 10년 만기, 표면금리 4.5%로 발행에 성공했다. 수은의 독특한 접근전략이 빛난 이번 위안화 자금조달 사례는 국제금융정보 제공업체인 MTN-이에 의해 ‘올해의 Landmark Deal’로 선정되었다. 수은은 11월에도 RBS를 주간사로 10억 위안 규모의 덤섬본드를 발행했다.

2015년 수은은 총 32억 5,000만 위안 규모의 위안화 공모채권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발행했다. 3월과 8월에는 덤섬본드와 포모사본드를 동시에 발행하는 전략을 활용해 각각 10억 위안씩 조달했으며, 6월에는 HSBC와 Bank of China를 주간사로 12억 5,000만 위안을 덤섬본드 형태로 조달했다. 3년 만기, 표면금리 3.6%(스왑후 LIBOR + 0.51%)로 미달러화 공모발행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10. 타이바트화 채권

수은은 2008년 8월 한국계 기관 중 사상 최초로 타이바트화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신용위기 및 금융 불안 우려가 확산되면서 외화차입여건이 점차 악화되자 국내 기관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틈새시장을 발굴하기 위해 분주했다. 타이바트화의 경우에는 수은을 포함한 9개 국내 금융기관이 태국 정부에 바트화 채권 발행자격 승인을 신청했는데, 유일하게 수은만 승인을 받았다. 수은은 2008년 7월 태국 정부 승인 직후 현지에서 투자자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HSBC를 주간사로 총 35억 바트의 채권 발행을 성사시켰다. 20억 바트는 표면금리 5.39%, 3년 만기 채권으로 15억 바트는 표면금리 6.28%, 10년 만기 채권으로 발행했으며, 달러화 스왑 후 각각 LIBOR에 0.81%, 1.2% 가산금리로, 미달러화 등 G3 시장 조달보다 0.7~1.0% 낮게 책정됐다.

2015년 8월에는 스왑여건이 급격히 개선된 시점을 노려 3년 만기, 100억 바트 상당의 타이바트

화 채권을 표면금리 2.18%에 발행했다. 2013년 8월 이후 신규 한국물이 없었던 상황에서 발행됨으로써 정부 연기금, 대형 상업은행 등 태국 주요 기관투자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중국의 금융 불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투자수요가 냉각된 상황에서, 미달러화 3억 달러 상당의 대규모 자금을 스왑 후 LIBOR + 0.52%라는 매우 낮은 금리에 조달함으로써 국내 대표 외화차입기관으로서 틈새시장을 제대로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1. 인도루피화 채권 및 인니루피아화 채권

2010년 수은은 위안화, 인도루피화, 인도네시아루피화, 필리핀페소화, 페루솔화 등 총 5개 통화 채권시장을 신규 개척했는데, 모두 한국계 기관 최초였다. 이 가운데 인도루피화와 인니루피아화는 사모채권이나 우리다시본드 형태로 꾸준히 발행되다가 2014년 처음으로 역외 공모채권 형태로 조달을 시도했다.

이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금융시장도 비교적 안정됨에 따라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해당통화 표시채권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은은 2014년 6월 TD를 주간사로 만기 3년, 표면금리 7%의 조건으로 20억 인도루피화 상당의 공모채권을 발행한 데 이어 8월에는 역시 TD를 주간사로 만기 3.75년, 표면금리 8%의 조건으로 5,000억 인니루피아화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였으며, 10월에는 HSBC를 주간사로 6,000억 인니루피아화 규모의 채권을 만기 5년, 표면금리 8%에 발행했다. 8월에 발행한 채권은 2015년 2월 6,000억 인니루피아화 규모를 증액발행(Re-open)했다.

12. 홍콩달러화 채권 및 싱가포르달러화 채권

2015년 초 국제유가 급락과 그렉시트 문제를 시작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2015년을 뒤흔들었다.

이런 외부 환경 속에서도 수은은 신규 공모시장 개척 노력을 기울여 홍콩달러화와 싱가포르달러화 시장에서 공모채권을 발행했다. 아시아 통화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 통화로 분류되는 이들 통화에 대해 수은은 사모채권을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발행했지만, 특정시기에 대규모 투자수요를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아 공모채권 발행을 시도하지 못한 채 발행시기를 엿보고 있었다.

그리고 2015년 1월 수은은 드디어 공모채권 시장에 뛰어들었다. Barclays와 Bank of China를 공동주간사로 참여시키고, 투자자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홍콩달러화 자산에 투자하는 보험사와 자산운용사를 두루 공략했다. 그 결과 한국계 최초로 홍콩달러화 공모채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8억 5,000만 홍콩달러 규모로 만기 3년에 표면금리 1.57%였다.

이어 7월에는 수은 최초의 싱가포르달러화 공모채권 발행에도 성공했다. 2억 5,000만 싱가포르달러화 규모로 만기 3년에 표면금리 2.04%로 발행되었으며, ANZ가 주간사로 참여했다.

13. 멕시코페소화 채권

비주류 통화 시장은 주류시장과는 관할법률 및 채권발행제도가 달라 법제도 검토에 긴 시간이 필요하고, 수은에 대한 현지 투자자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아 자금조달에 실패할 위험이 높았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음에도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2007년 멕시코 기관투자자들이 아시아계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고려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수은은 곧바로 멕시코 자본시장 진출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겼다. 수은은 이미 1999년부터 멕시코 국영석유회사(PEMEX)가 발주한 대규모 정유사업에 직접대출 형태로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일정 부분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었다. 특히 국내 최고 신용등급인(무디스 Aa3)을 보유한 만큼 높은 신용등급의 장기채권을 선호하는 현지 투자자들

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은은 Merrill Lynch와 함께 시장수요 정밀조사를 거쳐 2007년 10월 아시아 최초로 멕시코페소화 표시 공모채권을 발행했다. 10억 페소 규모로 10년 만기에 표면금리 8.61%였으며, 미달러화 직접 조달과 비교해 약 0.2% 가량 낮은 금리로 발행함으로써 차입비용 절감 효과도 누렸다.

이어 2008년 1월에는 만기 5년, 12억 페소 규모의 두 번째 공모채권을 발행했으며, 4월과 5월에는 2007년 10월 발행했던 채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총 11억 페소 규모만큼 증액발행(Re-open)하며 멕시코 자본시장에 연착륙했다.

14. 말레이시아링깃화 채권

2007년 멕시코페소화에 이어 2008년에는 또 다른 신규통화를 개척했다. 수은은 이 해 3월 한국계 기관으로는 최초로 말레이시아링깃화 공모채권을 발행했다. 5억 링깃은 5년 만기, 표면금리 4.08%, 5억링깃은 10년 만기, 표면금리 4.5%, 채권으로 구성되었으며, 미달러화 채권발행 금리보다 0.3~0.4% 정도 낮은 금리였다. 말레이시아 3대 증권사인 RHB Investment Bank(RHB)가 주간사로 참여했다.

2009년 2월에도 RHB를 주간사로 3년 만기, 표면금리 4.75%의 조건으로 2억 2,000만 링깃 규모의 말레이시아링깃화 공모채권을 발행했는데, 이는 미달러 스왑 후 LIBOR + 3.95%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수은의 외화차입비용을 절감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수은은 2010년 7월과 2012년 2월에도 각각 4억 링깃과 5억 링깃 규모의 공모채권을 5년 만기 조건으로 발행한 바 있다.

15. 사우디리얄화 채권

2011년 수은은 아시아 기관 최초로 사우디리얄화 공모채권 발행에 성공하면서 유동성이 풍부한 중동 산유국을 새로운 외화 조달처로 확보하게 되었

다. 사우디 금융당국의 까다롭고 엄격한 발행자격 심사 때문에 외국계기관의 리얄화 채권 발행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JP Morgan과 같은 최상위 신용등급을 보유한 기관만이 가능했다.

그러나 수은은 우리 기업이 건설하는 사우디 플랜트 사업을 다년간 지원하며 사우디 인프라 건설에 기여한 실적을 현지 금융당국에 소개하며 채권 발행 당위성을 알렸다. 또한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결국 사우디 국가 기간산업 건설에 사용될 것임을 강조하며, 금융당국과 현지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6개월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결국 아시아 기관 최초로 발행자격을 따낸 수은은 2011년 12월 BNPP와 사우디 1위 증권사인 Samba Capital을 공동주간사로 7억 5,000만 리얄화 상당의 공모채권을 발행했다. 만기는 5년, 발행금리는 사우디 현지 변동금리부 기준금리인 Saibor에 1.7%를 가산한 수준이었다. 발행 이후 수은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오일머니 활용의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6. 우리다시본드

2011년 1월 수은은 한국계 기관 최초로 우리다시본드를 발행했다. 우리다시본드란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발행한 채권을 주간사가 인수해 최종적으로 일본 국내의 개인투자자들에게 소액분할 판매하는 채권을 지칭하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일본 개인투자자들의 특성상 주로 신용등급 AA 이상의 최우량기관과 IBRD 등 국제기구가 주로 발행했다. 그러나 일본 내 초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당시 강세를 보이던 한국 경제에 집중되는 점에 착안해 우리다시본드를 성사시켰다.

수은의 첫 번째 우리다시본드는 Daiwa를 주간사로 400억 엔, 4년 만기, 표면금리 1.05%로 발행되었다. 수은은 일본 개인투자자들의 기대수익률이 기관투자자에 비해 현저히 낮아, 현지 소매금융

마케팅에 강점을 가진 일본계 주간사를 최대한 활용했으며, 기관투자자 대상의 사무라이본드에 비해 0.4% 이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다. 이를 시작으로 2011년 수은은 총 12건, 13억 8,000만 달러 상당의 우리다시본드를 조달해 세계 2위의 개인투자자산을 보유한 일본시장에서 정기적인 발행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한편, 수은은 2013년 5월 사회적 책임투자에 관심이 높은 일본 투자자들의 투자수요에 부응해 민간 및 정책금융기관 최초로 2억 달러 규모의 우리다시 Water Bond를 발행했다. Water Bond란 채권발행대금을 수력발전, 수처리, 담수 등 수자원사업 지원에만 한정하는 특수목적채권으로 일본 금융시장에서는 그동안 ADB만 발행한 선례가 있었다. Water Bond 발행은 2013년 초 발행한 그린본드와 함께 국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수은은 친환경 금융기관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7. 그린본드

2013년 2월 수은은 민간기관 및 정책금융기관 중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그린본드를 발행하면서 외화조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린본드란 채권발행대금을 대체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등 저탄소·친환경산업 지원에 한정시키는 특수목적채권으로, 2008년에 World Bank가 최초로 발행한 후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이나 ADB 등 국제기구 위주로 발행되었다.

그린본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인기관으로부터 녹색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수은은 수개월에 걸쳐 수은의 친환경사업 지원제도, 환경·기술심사 체계 및 전문성, 녹색사업 지원성과 및 향후 지원계획 등을 소개해 2013년 초 노르웨이 국제기후·환경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Climate & Environmental Research Oslo)로부터 그린본드 공인을 받았다.

이후 수은은 2013년 1월 말 미국과 유럽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실시해 국제금융시장의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BAML과 SEB를 주간사로 5억 달러, 만기 5년의 채권을 미 국채금리에 0.95%를 더한 수준으로 발행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계 기관 최저 금리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이 채권을 통해 수은은 미국 및 유럽의 주요 연기금, 보험사와 국제적 사회책임투자펀드(Socially Responsibility Investing Fund) 등 한국계 발행물 투자경험이 전무한 초우량채권 투자자를 다수 유치해 투자자 저변을 확대한 것이 큰 수확이었다. 또한 국제금융시장 관계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국제금융 전문지인 The Asset과 IFR로부터 '한국 최우수 딜(The Best Deal in Korea in 2013/ South Korea Capital Market Deal in 2013)'로 연속 선정되었다.

3절 신디케이트론

1. 개요 및 초기 은행차관 도입

신디케이트론은 두 개 이상의 은행이 차관단을 구성해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중장기적으로 융자해주는 대출을 의미하며 은행차관으로도 불린다. 일반적으로는 유로 시장과 미국 금융시장에서 대규모의 금액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무담보 신용대출로 전통적인 은행대출 업무와 투자은행의 인수업무 기능이 혼합된 융자 형태이다.

차입자는 대규모 소요자금을 단일조건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차관단에 참여하는 은행은 특정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대출위험을 공동융자방식을 통해 분산하는 이점이 있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소은행들의 경우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함으로써 유로 도매 금융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어 거대 은행들의 신용정보나 거래 기법들도 이용할 수 있다.

수은은 1978년 12월 미국의 First Chicago Asia 등 6개 은행을 간사은행으로 2억 달러 규모의 은

행차관 도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처음 국제금융시장에 진출했다. 중동계 은행이 대거 참여했으며, 만기 10년에 금리는 최초 2년 간 LIBOR + 0.625%, 잔여기간은 LIBOR + 0.75%로, 당시까지 우리나라가 도입한 은행차관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이었다.

이어 1981년 6월에 행해진 2억 달러 규모의 제2차 은행차관 도입 당시에도 미국의 Chemical Asia 등 8개 은행이 주간사로 참여한 것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유수 은행이 조달에 참가해 성공리에 조달을 마쳤다.

2. 차입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

1982년 이후 중남미 국가의 대외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고, 일부 비산유 개도국의 외채 상환 연기가 속출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은 차입자시장(Borrower's Market)에서 대출자시장(Lender's Market)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차입조건이 전반적으로 크게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수은은 1982~1984년에 매년 3억 달러 규모의 은행차관을 도입했는데, 악화된 차입여건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차입시장의 다변화와 함께 차입방식 및 표시통화의 다양화를 시도했다.

1985년 1월에 수은은 처음으로 사모(Club Deal) 방식에 의한 1억 달러의 은행차관 도입계약을 Chase Manhattan Bank와 체결했으며, 이어 9월에는 40개 국제은행과 3억 달러 규모의 차관도입계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신종금융기법인 양도대출증서(Transferable Loan Certificate) 발행조건을 포함시킴으로써 자금공여자로 하여금 은행차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1986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가 호전됨에 따라 정부는 해외 자금조달을 축소시키고 기존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수은은 1985년 계약된 300억 엔의 은행차관을 인출하지 않은 채 계약을 종료시켰으며, 1986년 12월에는 1983년 도입한 은행차관의 미상환잔액 2억 7,300만 달러를 조기상환

한 데 이어, 1987년 1월에는 1983년 도입한 엔화차관 100억 엔 전액을, 1987년 5월에는 1984년에 도입한 3억 달러 전액을 각각 조기상환했다.

3. 은행차관 도입 재개

1987년 이후 중단되었던 수은의 은행차관은 1991년 4월 Bankers Trust Company를 주간사로 1억 2,000만 달러의 은행차관을 LIBOR + 0.35%에 도입한 것을 계기로 재개된 데 이어, 6월에는 일본 Norinchukin Bank를 주간사로 100억 엔의 엔화표시 고정금리 차관을 연 7.5% 조건으로 도입했으며, 7월에는 미국 Bankers Trust Company를 주간사로 1억 달러의 은행차관을 LIBOR + 0.3%의 양호한 조건으로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재원마련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2009년부터는 매년 중장기 외화자금의 4~5% 이상을 은행차관 형태로 조달했다. 일반적으로 은행차관이 사모채권에 비해 조달규모가 크고 공모채권에 비해서는 조달금리 측면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대주기관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Roll-over(재대출)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2009년 수은은 글로벌 신용경색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총 4건, 4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은행차관을 도입했다.

리먼 사태의 여파가 진정된 2010년부터는 외화대출비중이 다시 늘어남에 따라 수은은 자금수급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직접차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 결과 2010년 한 해 동안 총 6건, 7억 2,200만 달러 규모의 은행차관을 도입했다. 6월에는 아시아계 기관 최초로 포모사본드를 발행했는데, 당시 접촉했던 대만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한 끝에, 같은 해 10월에는 대만 소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포모사론을 발행하는데 성공했다.

수은의 외화차관 도입은 그 후로도 계속되어 2013년에는 총 6건, 12억 5,000만 달러, 2014년에는 총 3건, 10억 5,000만 달러, 2015년에는 총 3건,

7억 5,000만 달러의 외화자금을 Bank Loan이나 Syndicated Loan 형태로 조달했다.

이 기간 눈에 띄는 차관 도입은 2013년 8월 Mizuho와 Bank Loan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5억 달러, 만기 5년, 차입금리 LIBOR + 1.10%의 조건으로 체결한 건이었다. 역대 최장 만기, 최대 규모의 양자간 Bank Loan으로 기록되었다. 이어 2014년 6월에는 유동성이 풍부한 일본계 및 유럽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6억 달러, 만기 3년, LIBOR + 0.45%의 조건으로 Syndicated Loan을 도입했는데, BAML, BNPP, BTMU, Commerzbank, HSBC, RBS, Societe Generale 7개 대주가 참여해 수은 Syndicated Loan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4절 ABS채권 및 정부·한은 외화 유동성 도입

수은의 첫 외화재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수탁한 외화예탁금이었다. 이후 차관도입이나 연불어음 매각, 해외채권 발행으로 자체조달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한국은행 등 정부채원 의존도는 점차 감소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수은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IMF 외환위기, 리먼 사태 등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칠 때마다 정부는 수은을 통해 국내 시장에 긴급외화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유동성 경색 조기 타개를 위한 수은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1. 한국은행 보유외화 수탁

수은의 한국은행 보유외화 수탁은 설립 이듬해인 1977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은행의 외화자금 예탁은 대외지급준비자산의 일부를 국내 외국환은행에 예탁·운용하는 제도로써, 수은에 대한 예탁은 1977년 2월 한국은행이 보유외환의 증가를 배경으로 국내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화자금 특별예탁제도 도입을 계기로 실시되었다.

예탁 개시 이후 예탁금의 용도는 연불수출자금 대출과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전대자금 대출로 제한되어 왔으나, 1987년 한국은행 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상 총재가 특별히 인정하는 외화자금지원을 위하여 수은, 산업은행 및 장기신용은행 등 개발금융기관에 대한 일반 영업자금용 예탁이 신설되면서 예탁금 용도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해제되었다.

예탁금 규모는 첫 해인 1977년 167억 원(3,460만 달러)을 수탁해 전체 자금조달의 14.7%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이듬해부터 급격히 감소해 1980년대 중반까지 비중이 미약했다. 수탁실적 부진은 외환 사정의 악화로 한국은행이 연불수출자금 대출용 예탁을 억제한데다, 전대자금용 예탁도 수은의 전대자금 대출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점차 그 규모를 줄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후 외환사정이 개선되면서 1987년부터 외채 조기상환용 예탁이 시작되고 예탁금 용도에 대한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수은의 수탁실적은 크게 늘어나, 1987년 1,972억 원(2억 5,000만 달러)에서 1991년 6,908억 원(9억 2,000만 달러), 1995년 1조 7,911억 원(23억 1,000만 달러)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자금조달에서 차지하는 수탁금의 비중도 1995년에는 66.8%까지 높아졌고, 한국은행 보유외화 수탁에 대한 수은의 의존도도 심화되었다.

이와 같이 큰 비중을 차지하던 한은 수탁금은 1997년 IMF 관리체제에 접어들면서 한국은행의 강력한 외환보유정책에 따라 예탁이 종결되었다. 이를 계기로 수은의 외화차입원은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2.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차관 도입

IMF 외환위기 당시 수은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로부터 정부를 통해 경제재건차관과 구조조정차관을 전대차입했다. 정부는 1997년 12월 IBRD로부터 경제재건차관으로 30억 달러를 차입해 이를 산업은행에게 전대했으며 산업은행은 이

중 22억 7,000만 달러를 수은에게, 나머지는 타 기관에게 재전대했다.

수은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전대차입한 경제재건차관 22억 7,000만 달러로 한국은행에서 차입한 수탁금 22억 3,200만 달러를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 차입조건은 차입기간 10년 3개월, 차입금리 LIBOR + 1.2%,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방식이었다. 추후 수은은 산업은행과 오랜 협의과정을 통해 차관의 대출자를 산업은행에서 정부로 변경해 관리수수료를 절감했다. 한편 수은은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전액 조기상환했다.

이와 별도로 수은은 정부로부터 정부가 IBRD에서 차입한 구조조정차관 20억 달러 중 5억 달러를 중소기업지원용으로 전대차입했다. 도입조건은 만기 15년 2개월, 차입금리는 LIBOR + 0.75%로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었다.

3. ABS채권

우리나라는 1998년 9월 금융기관과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 제고와 주택저당채권(Mortgage-Backed Security: MBS)의 증권화를 위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으며, 수은은 1998년 12월 국내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Union Bank of Switzerland를 중간사로 보유 연불어음을 대상으로 외화 ABS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ABS채권은 법률적으로는 수은이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 SPV)인 Export Import Securitisation B.V에 연불어음을 매각하고 특수목적회사가 이를 담보로 ABS 채권을 발행하는 형식을 취했다.

수은이 보유한 6억 9,700만 달러 상당의 연불어음과 대출채권(이하 연불어음)을 특수목적회사에 매각하고 특수목적회사는 이를 담보로 2억 6,500만 달러의 선순위채권과 4억 3,200만 달러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했으며, 선순위채권은 전액 해외에 매각하고, 후순위채권은 수은이 인수했다.

수은의 ABS채권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



국내 최초의 자산담보부(ABS) 채권 발행계약(1998. 12. 30.)

국내 금융기관의 최대 규모 자금조달이었으며,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자산을 근거로 채권발행에 성공한 것은 아시아를 통틀어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최초였다.

특히 매각자산에는 태국, 중국, 베트남 등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대한 대출자산이 상당수 포함되었다. 아시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에서의 수출을 통해 발생한 대출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했다는 점에서 해외자금조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4. 정부 외평기금 수탁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외화조달시장은 급속도로 경색되었다. 미 정부의 7,000억 달러 긴급 구제금융 지원 결정, 미국, 영국, 유럽 등 주요국 정부의 공동 금리인하 등 고강도의 시장 안정화 조치가 이어졌지만, 금융시장 대란은 계속되었다.

글로벌 위기상황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전해져 정부, 수은, 산은을 비롯한 한국물 CDS 프리미엄은 리먼 사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300bp가량 폭등했으며, 한국물 미달러화 채권의 유통수익률 또한 CDS 추이와 유사한 양상으로 급등했다.

글로벌 신용경색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은행이나 기업들의 자체적인 외화재원 조달 통로가 막히자, 정부는 2008년 10월 '국제금융시장 불안 국

복 방안'과 2008년 11월 '수출입금융 지원을 위한 외화유동성 공급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수은을 통해 국내은행과 기업들에 외화유동성을 지원했다.

이는 국내 수출금융 지원을 주도하는 수은을 통해 기업과 같은 실물부문, 특히 외화자금 사정이 취약한 수출중소기업의 외화 실수요를 직접 충족 시킴으로써 시장의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고 달러화 가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함이었다.

수은은 2008년 하반기 정부로부터 총 250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을 수탁해 7개 시중은행, 6개 지방은행 및 3개 국책은행 등 총 16개 은행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외평기금은 무역어음재할인 방식의 무역금융(110억 달러)과 경쟁입찰방식의 외화유동성 공급(140억 달러)으로 구성되었다. 무역어음재할인은 개별은행이 수출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기초로 발행한 무역어음을 수은이 재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외화 자금난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시중은행들의 수출환어음매입 재개를 지원해 경색된 단기무역금융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금리인하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한편, 수은은 외화 실수요가 있는 은행에게 매주 입찰을 받아 경쟁시장가격으로 외화유동성을 긴급 공급했는데, 이는 단기외화자금시장을 안정시킨 것은 물론, 은행들이 수출기업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고도 기존 외화차입금을 상환하게 함으로써 수출기업이 상환부담을 겪지 않고 자연스럽게 외화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외평기금을 활용해 무역금융 108억 달러, 경쟁입찰방식 긴급자금 92억 달러 등 총 200억 달러를 공급했으며, 2009년 들어 국내 은행의 외화유동성 자금수급 상황이 점차 호전됨에 따라 2009년 말까지 전액 회수했다.

수은은 2014년에도 정부로부터 외평기금 150억 달러를 수탁해 국내 은행 및 기업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가 수십 개월 지속되면서 외환보유액 규모가 세계 7위 수준으로 확대된 가운데, 정부가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내수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외화대출제도이다.

당초 대출한도는 100억 달러가 예정되었으나 2014년 7월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의거해 150억 달러로 한도가 확대되었다. 수입재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되었으며, 참여하는 기관(16개 국내은행 및 9개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국내 기업 앞으로 해외 건설 및 플랜트, 해외자원개발사업 등 해외수주 지원용 대출이나 시설재 등을 수입하기 위한 수입자금 지원용 대출을 지원한 후에 사후적으로 차입을 신청하도록 했다.

5절 파생상품

1. 파생상품 업무 취급 이유

수은이 파생상품 거래를 시작한 것은 1991년으로 주로 외화채권 발행에 따른 환·금리 리스크 관리가 목적이었다. 예금 수신이 없는 수은은 금융지원 확대에 따라 매년 조달 규모가 급증해 파생거래 잔액도 증가했으나, 파생상품 관련 업무가 조달의 부수 업무로 취급되어 독립적인 투자 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대부분이 파생금융에 진입한 2000년대에는 수은의 파생상품 관련 전문성 및 기반이 국내외 금융기관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졌다.

이에 따라 수은은 파생금융에 있어서는 단순 소비자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수은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변화가 파생상품 업무에 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 능동적인 파생시장 참여자로의 역할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가장 큰 변화의 요인은 내부에 있었다. 첫째, 파

생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대외 규정 정합성 차원에서 프론트-미들-백 분리와 체결 가격 적정성 검증 시스템이 필요했다. 둘째, 파생상품 업무와 관련한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금융위기 이후 폭발적으로 확대된 여신 규모와 집중도(Concentration)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출자 외에도 자체 수익성 개선은 물론, 효율적 자산부채종합관리(ALM)와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이 긴요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외부적으로도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환경 변화는 수은의 파생시장 참여가 불가피했다. 금융위기는 글로벌 은행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도 보수적인 자산 운용에 집중하게되어 기업 고객 입장에서 파생상품을 필요한 만큼 거래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은행의 파생거래 한도 축소, 일부 외은의 파생데스크 철수로 기업 고객들은 신규 파생금융 공급자가 필요했다.

특히, 상업 금융기관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파생금융에 대해 생소한 고객 앞 폭리를 취하거나 위험관리 효과는 낮으면서 투기적인 KIKO와 같은 상품을 권유하는 등 시장 실패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은의 파생금융 공급은 시장 정상화를 위해 필수 조건이었다.

2. 파생상품 업무 본격 개시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수은의 파생상품 직접 운용은 당면한 현실이 되었다. 이에 2014년 중순부터 파생상품 평가를 담당하던 국제금융부 외화운용팀을 중심으로 파생상품 업무 확대 방안을 추진했다. 단기적으로는 파생상품을 활용해 이종통화 대출 및 선물환 등의 대고객 서비스 확대를 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통해 은행의 파생금융 전문성을 제고하고, 리스크관리 및 여신지원 역량을 높이는 것을 중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했다.

파생상품 취급 준비를 마친 수은은 2014년 11월, 기존의 파생상품 업무처리절차를 파생상품 취

급기준으로 정식 내규화하고 외국환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어 히든챔피언 기업인 태평양물산과 선물환 거래를 시작으로 대고객 파생상품 업무 취급을 개시했다. 아울러 동시에 외화운용팀을 중심으로 파생상품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긴축 경영에 따른 예산이 삭감되는 가운데에서도 10억 원 상당의 시스템 도입 예산을 확보해 파생상품 업무와 기반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다.

2015년부터는 파생상품 업무가 더욱 본격화되어 국내 대기업, 히든챔피언 기업,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물론,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관련된 SPC, 해외 선사에까지 영업을 확대해 총 40억 달러의 거래를 통해 1,500만 달러 상당의 순이익을 실현하며 업무는 연착륙했다.

파생상품 업무의 수익 시험은 수익성 개선을 추구하던 은행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거래 경험을 통해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축적되고, 거래 기반 시스템을 갖춘 것이었다. 또한 대고객 업무로 확대된 거래 플로우를 바탕으로 은행 간 시장에 능동적인 참여자로 활약하는 것은 물론, 자체 헤지를 더욱 효율화하게 된 것도 큰 소득이었다.

제3장
국내 자금조달

1절 자본금 및 적립금

1. 자본금

「수은법」 제4조에 의하면 자본금은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은행(「은행법」상), 수출업자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도록 되어 있다.

위의 출자가능기관 중 현재까지 수은에 출자한 기관은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4개 기관이며, 2015년 말 현재 수은의 주주는 한국외환은행을 제외한 3개 기관으로 정부가 73.9%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1976~1998년 수은의 주주였던 외환은행은 1989년 민영화되면서 수은이 1998년 2월 16일 출자지분 1,150억 원 전액을 반환하면서 주주에서 제외됐다.

설립 당시 1,500억 원이었던 법정자본금은 연 불수출 지원규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이듬해인 1977년 12월 5,000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1986년 12월에는 다시 1조 원으로, 1998년 1월에는 2조

원으로 증액되었다. 이와 같이 약 10년을 주기로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었다. 법정자본금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2014년 1월이었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해외 프로젝트의 대형화에 따라 정책금융 수요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8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대폭 증액한 것이다.

설립 첫 해 654억 원에 불과했던 자본금은 지속적인 자본금 납입으로 1993년 말에는 6,859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다만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자본금 출자가 없었는데, 대신 정부의 재정융자 특별회계차입이 이를 대신했다.

1997년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인해 IMF 관리체제로 들어가면서 설립 이후 최초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 현금출자 250억 원 외에 하반기 담배인삼공사의 주식 1,600억 원 어치의 현물출자가 추가로 진행됐다. 이는 수은의 자본건전성을 바탕으로 조달한 외화자금을 국내 기업 수출입금융에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수은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IMF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출자자별 자본금 구성 현황(2015년말 현재)

(단위 : 억 원)

	대한민국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합계
출자금액	65,595	11,650	11,536	88,781
비율	73.9%	13.1%	13.0%	100.0%

수은의 법정자본금 추이

(단위 : 억 원)

제·개정	제정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5차 개정	6차 개정	14차 개정	19차 개정
일자	1969. 7. 28.	1974.12. 26.	1977. 12. 19.	1986. 12. 31.	1998. 1. 13.	1998. 9. 16.	2009. 1. 30.	2014. 1. 21.
금액	300	1,500	5,000	10,000	20,000	40,000	80,000	150,000

2000년 이후 수은의 여신지원 규모는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본금 납입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1999년 말 2조 4,758억 원이었던 자본금은 2015년말 현재 8조 8,781억 원으로 증가했다.

2. 적립금

수은은 「수은법」 제36조에 의거해 결산이익금 중 2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정부 이외의 출자기관에 재정경제부장관 승인을 얻어 우선적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잔여 이익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임의적립금 등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1979년 운영위원회에서는 수은의 자기자본 충실화를 위한 조치로서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의 합계액이 납입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은은 설립 이후 1986년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이익금 전액을 내부 유보하여 왔다.

그러나 1987년부터 정부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거하여 정부출자금에 대한 배당금 수입정책을 확고히 추진하면서 수은도 매년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기관에 배당하게 되었다. 다만 1997년 IMF 외환위기 관리체제를 겪으면서 1997년 회계연도부터 2003년 회계연도까지는 배당을 하지 않았다가 2004년 회계연도 이익잉여금부터 다시 배당을 하게 되었다.

적립금 규모는 설립 이래 지속적인 이익시현에 힘입어 1976년 15억 원에서 1995년 말에는 2,954억 원, 2005년 말에는 4,625억 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 말에는 2조 59억 원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이 중 법정적립금은 1976년에 2억 7,600만 원이 적립된 이래 1995년 말까지 총 721억 원, 2005년 말까지 총 1,317억 원, 2015년 말까지는 총 3,267억 원이 적립되었으며, 임의적립금은 1976년 말의 12억 원에서 1995년 말에는 2,233억 원, 2005년 말에는 3,308억 원, 2015년 말에는 1조 6,79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수은 앞 자본금 출자 내역(2015년말 현재)			(단위 : 백만 원)		
	정부			한국은행	산업은행	출자계
	현금	현물	소계			
~1999	377,269	979,900	1,357,169	965,000	153,586	2,475,755
2000	-	-	-	200,000	-	200,000
2001	-	-	-	-	-	-
2002	50,000	-	50,000	-	-	50,000
2003	40,000	-	40,000	-	-	40,000
2004	10,000	-	10,000	-	-	10,000
2005	20,000	500,000	520,000	-	-	520,000
2006	10,000	-	10,000	-	-	10,000
2007	3,000	-	3,000	-	-	3,000
2008	-	650,000	650,000	-	-	650,000
2009	550,000	500,000	1,050,000	-	-	1,050,000
2010	150,000	-	150,000	-	-	150,000
2011	100,000	-	100,000	-	1,000,000	1,100,000
2012	-	879,300	879,300	-	-	879,300
2013	100,000	-	100,000	-	-	100,000
2014	130,000	380,000	510,000	-	-	510,000
2015	130,000	1,000,000	130,000	-	-	130,000
출자계	1,670,269	4,889,200	6,559,469	1,165,000	1,153,586	8,878,055
지분율	-	-	73.9%	13.1%	13.0%	100.0%

이 같은 적립금의 증대는 자기자본의 양적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나 급격한 차입금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한 결과 자기자본비율은 1975년 말의 82.8%에서 2015년 말에는 10.04%로 낮아졌다.

2절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1. 최초의 원화표시채권 발행

수은은 1984년 처음으로 외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한 이래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발한 기채활동을 벌여 왔으나, 원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은 당시 금리 역마진 발생우려로 인해 발행이 유보되었다.

그러나 1991년 구소련 소비재차관 제공이 결정된 후 이에 필요한 자금을 통상적인 재원으로부터 조달하기 어려워지면서, 소비재차관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원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을 최초로 발행했다.

당시 소비재차관을 통한 대소련 수출거래는 수출기업 입장에서 대금회수에 대한 위험부담이 적고, 거액의 매출실적과 수익이 기대되는 거래였다. 이에 1991년 3월 정부의 북방경제교류조정위원회는 수출대금의 일정 비율(대기업 15%, 중소기업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출입금융채권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수은은 1991년 11월 처음으로 264억 원 규모의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한 데 이어 1992년

11월까지 매월 채권을 발행해(총 231억 원) 2년간 총 495억 원을 조달했다. 이 채권은 차관 수혜업자에 대한 매출발행 방식으로 특수하게 발행되었기 때문에 발행금리가 시장금리 수준보다 훨씬 낮은 8%로 결정되었으며 이자지급은 3개월마다 복리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 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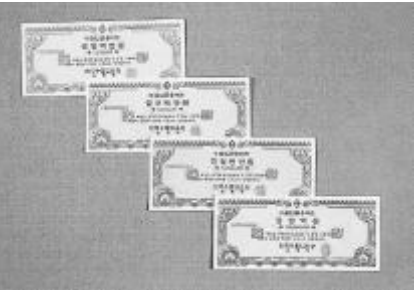
2. 발행 재개와 변천

1999년 초까지 원화표시채권 발행은 중단되었다가 1999년 재개되었다. 1998년 10월 정부의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수은의 수출환어들인 지원 등 수은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진 반면 당시의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외화채권 발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원화채권을 발행한 것이다. 1999년부터 원화의 시장금리가 하향추세를 그리면서 채권발행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점도 발행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999년에 2,500억 원을 발행한 이후에는 다시 잠정 중단되었다. 이는 정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주식과 수은이 직접 출자한 주식의 유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원화조달이 원활해진 것이 원인이었다. 2001년에 발행이 재개되어 2,000억 원을 발행한 후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다시 중단되었다가, 2005년 들어 5,000억 원의 원화채권을 발행하며 국내 원화채권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였다.

특히 2005년 발행한 원화표시채권 5,000억 원은, 국내 자금시장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흡수해 수은의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연기금과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 운용기관에 국제 수준의 안정적 투자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05년 이후 발행액은 급격히 증가해 2006년 6,800억 원, 2007년 1조 4,500억 원(1조 원 돌파), 2008년 3조 6,900억 원, 2009년 8조 1,500억 원, 2010년 8조 9,200억 원, 2011년 9조 4,600억 원으로 증가했고, 2012년 7조 8,500억 원 발행으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2013년 8조 800억 원, 2014년



1991년 최초 발행된 원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

9조 5,600억 원을 발행했고 2015년에는 10조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발행하면서 원화표시채권은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를 확고히 했다.

만기별로는 최초 1991~1992년에는 2년물로 발행하였고, 1999년부터 2005년까지는 만기 1년으로 발행했으나, 2006년 12월 최초로 3년물(800억 원)을 발행했고, 2007년에는 단기물중 6개월물을 최초로 300억 원, 3년물 1,900억 원을 발행해 만기 종류가 다양화 되었다. 2008년부터는 단기물이 더욱 다양해져 3개월, 6개월, 7개월 및 1년물이 등장했다. 2015년 말 현재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다양한 단기 고정금리 채권을 발행하고 있고, 중장기도 1.5년, 2년, 3~5년물이 있다.

종류도 다양해져 2009년 3월 수은 최초로 변동금리부채권(Floating Rate Note, FRN) 1,000억 원을 발행했다. 통상 FRN은 CD91물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금리가 변동되는 이표채이다. 2012년 초부터는 FRN 발행 후 금리스왑을 통해 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한편, 2011년부터는 구조화채권(Structured Note)을 발행해 조달 비용을 대폭 낮추고, 조달 수단을 다변화하는데 기여했다. 통상 15년 만기로 발행되는 구조화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1년에 1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수의상환부(callable)로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조화채권의 발행 규모는 2011년 2,500억 원, 2012년 1,000억 원, 2013년 4,400억 원 규모에서 2014년 8,000억 원, 2015년 10월 말 현재 6,600억 원으로 그 발행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다.

3절 기타 국내자금조달

1. 재정융자특별회계차입

재정융자특별회계는 재정자금으로 수행되는 출연·출자·융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정부가 별도로 설치한 특별회계의 하나로서 「재정융

자특별회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또한 재정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및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예탁 및 예수에 관한 규칙에 상세사항이 열거되어 있다.

당초 동 회계는 1987년 12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이 제정된 후 1988년 1월 1일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1)정부출자기관 및 각종 기금에 대한 출자·출연을 행하는 출자계정 2)국민 복지 향상과 주요 산업 지원을 위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유상으로 대출하는 대출계정 3)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도입되는 자금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차관계정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수은에 대한 출자 및 배당 수입은 출자 계정에서, 대출과 이에 따른 원리금수입은 융자계정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

한편 1996년에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 투자는 삭제되고 재정융자특별회계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은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차입은 1991년 구소련에 대한 소비재차관 제공 등 수출 자금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시작되었다. 수은은 1991년부터 1,000억 원을 차입해 구소련에 대한 소비재차관을 제공했으며, 이어 1992년 225억 원, 1994년과 1995년 각각 1,400억 원을 조달해 수출지원 자금으로 활용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차입에 개시된 이래 금리 연 7%, 만기 6년 일시상환조건이 적용되었으나, 1995년 4월 ‘재정자금융자조건 등의 결정 및 변경’(재정경제원 공고 제95-28호)에 따라 1996년 이후 신규 차입분에 대해서는 변동금리 조건이 적용되었다.

2. 국민투자기금 차입

국민투자기금은 중화학공업 등 주요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수출 증대에 필요한 투융자자금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자금으로, 1973년 12월 「국민투자기금법」이 제정된 이후 한국은행이 그 운용업무를 담당했다. 수은은 「국민투자기금법」 제1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1976년부터 이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대상 프로젝트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정부의 정책금융 축소 계획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해 1992년에는 전면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2년부터 기금의 신규승인이 중단되고 기증인분의 인출 및 차입잔액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만 남게 되었다.

국민투자기금은 폐지될 때까지 수은의 가장 안정된 원화자금 조달원으로서 연불수출금융 지원에 큰 몫을 담당해 왔다. 또한 이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리는 수은의 해당 대출금리보다 연 1% 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되어 수은의 수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다.

설립 이래 국민투자기금으로부터의 총 차입 누계액은 1조 122억 원으로 당시까지의 수은 출자금총액 6,859억 원을 크게 상회했으며, 국내 조달자금 중 한국은행 수탁금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국민투자기금 차입이 중단된 후에는 1991년도부터 시작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차입이 수은의 새로운 원화자금 조달원으로 자리 잡았으며, 2004년 말까지 주요 재정자금 중 하나로 큰 역할을 담당했다.



제3편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

제1장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설립

1절 기금 설립 배경

1. 추진 배경

1970년대 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1980년대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나라는 개도국과의 경제교류와 협력관계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는 개도국 교역량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해외투자 50% 이상, 해외건설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교역 대상이 되었다.

개도국과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다른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외경제협력기금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우리 경제가 성장했다는 방증이었다. 당시 대외경제협력기금 설립 당위성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세계경제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이에 걸맞은 공적개발원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고, 국내에서도 국제여론을 수용해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둘째, 당시 개도국들은 경제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했으나,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고, 선진국의 기술과 개발모델을 적용하면서 경제개발 성과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선발 개도국인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기술이전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응답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세계 경제구조 변화와 국내 산업구조 조정 필요성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증대 및 해외 진출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큰 개도국과 경제협력기반 구축이 절실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설립은 개도국에 필요한 자본을 적정 기술, 설비와 연계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로 제공함으로써 경제개발 지원은 물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장기적인 경제협력 토대를 구축·발전시키는 호혜적 선택이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경제규모에 맞는 국제공헌의 하나이기도 했다.

2. 설립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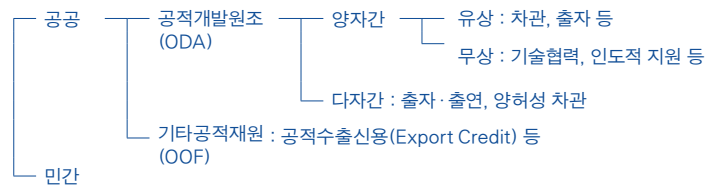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 도입 이전인 1983년 1월 대개도국 경제협력 확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해외협력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했다. 해외협력위원회는 1983년 9월과 1984년 12월에 각각 마련한 ‘개도국 협력확대방안’과 ‘대 개도국 경제협력방향’에서 자본협력 수단의 하나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후 해외협력위원회와 외무부를 중심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 설립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었고, 정부는 1986년부터 기금 설립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들어갔다.

해외협력위원회가 경제기획원의 대외경제조정실 조직으로 흡수된 후 경제기획원은 1986년 3월에

공적개발원조(ODA)의 정의

196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공공자금 흐름(Official Flows)을 ODA와 OOF(Other Official Flows) 등으로 분류하면서 ODA 개념을 최초로 정립했다.



- ODA : 중앙 또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그 집행기관이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양허적 자금흐름을 지칭한다.
- OOF : ODA에 속하지 않는 공적수출신용 등 기타 공공자금

충족조건	
공여주체	원조 공여국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공여대상	OECD DAC 지정 적격 개도국 및 국제기구(List 발표)
공여목적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
공여조건	상업자금보다 유리한 양허적 조건 (Grant Element 25% 이상)

TF(Task Force)를 구성해 같은 해 6월 ‘개도국 경제협력증진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그동안 논의된 다양한 대 개도국 협력방안을 총정리한 것으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서 ‘대외경제협력공사’의 설립안과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설립안을 동시에 제안했다.

1986년 7월 3일에는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열고 ‘대개도국 경제협력증진방안’의 구체적 추진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외경제협력공사의 설립은 다소 늦추더라도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우선 추진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설립에 대한 정부 부처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자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은 일주일 뒤인 1986년 7월 11일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안을 마련하고, 1986년 8월 27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기금 설립에 대하여 원칙적인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냈다. 아울러 기금의 운용·관리 주체는 재무부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경제기획원의 기금법 시안에 따라 대외경

제협력기금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수은은 1986년 9월 12일 업무연구반을 구성,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손질하고 이에 따른 제반 규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재무부는 경제기획원의 기금법 시안을 바탕으로 1986년 9월 재무부안을 마련했는데, 이는 1986년 10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2절 수탁기관 지정 및 법령 제정

1. 수은 수탁의 법적 근거

1986년 7월 정부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직후 경제기획원은 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주체 문제와 함께 심사, 집행 등 관리·운용 사무를 담당할 기관 선정문제가 쟁

점으로 떠올랐다.

기금 설치법 제정에 관해서는 「수은법」 제18조에 근거해 수은이 경제협력 업무를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수출입은행이 취급하는 공적수출신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공적개발원조(ODA)로서 정부간 개발협력자금이므로 별도 입법이 불가피하다는 경제기획원 주장이 우세해 기금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수탁기관 선정 문제는 수은이 이미 공적수출신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해외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인정해 정부 관계부처 간에 합의에서 수은을 위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은 기금법 시안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출입은행에 위탁하도록 명문화했다.

2. 기금법 및 시행령 제정

기초는 경제기획원이 잡았지만, 최종 법안은 주무부서인 재무부가 경제기획원 초안을 바탕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법안을 마련해 1986년 11월 국회에 상정됐다. 국회의 법안심의에서 정책질의는 두 가지 주요 쟁점의 벽에 부딪혔다. 하나는 국제수지 흑자전환 전망이 불투명하고 우리나라의 농어촌 개발이 낙후된 상황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설립이 이르다는 시기상조론이었고, 또 하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이러한 우려에도 기금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은 1986년 12월 2일 제131회 정기국회 제19차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12월 26일 법률 제3863호로 공포되었다.

수은은 기금법 제정에 앞서 1986년 9월 12일 기획부 내에 7명으로 구성된 업무연구반을 발족시켜 재무부 법령안 제정에 일조했다. 업무연구반은 1987년 3월에는 경제협력기금부 설립준비위원회(직원 21명)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기금법 시행령안 마련 등 본격적인 법령 제정 작업에 참여했다.

그 결과 1987년 4월 23일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141호)이 공포되었고, 같은 해 6월 25일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715호)이 공포되어 관련 법령의 제정이 마무리되었다. 아울러 관련 규정의 제정 작업도 추진해 1987년 5월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 운영세칙’, 1987년 6월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을 제정했다. 이어 1987년 7월에는 수출입은행의 내규로 기금 실무전반을 다루는 ‘기금지원업무 취급규정’을 제정하는 등 기금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비했다.

한편 재무부가 1987년 6월 1일자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은에 정식 위탁함에 따라, 경제협력기금부를 발족하며 본격적인 기금업무를 시작했다. 이어 1987년 7월 1일에는 최초의 정부출연금 150억 원이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납입되었다.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위탁 공문(1987. 6. 1.)

제2장 기금운용 체계 및 변천

1절 운용조직과 지원제도

1. 운용체계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업무의 주요 정책과 방향을 심의, 조정하는 최고의 정책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아래 기금운용의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금운영위원회, 기금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사무를 위탁해 실무를 처리하는 수출입은행, 이렇게 4개의 축이 맞물려 운용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개발도상국과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들 국가의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할 목적으로 ‘국제개발위원회 규정’에 따라 2006년 1월,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분야 최고의 정책기구로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연간 국제개발협력종합실행계획, 공적개발원조(ODA)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관련부처 장관급 15명, 한국수출입은행장과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소수의 민간위원을 포함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한편, 위원회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실무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실무위원회

는 국무조정실 국무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무조정실장이 간사위원이며, 역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을 미리 협의, 조정하며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기금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해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제협력 관련 8개 정부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국가정보원 제1차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이 간사를 맡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사항, 규정의 개정에 관한 중요사항 및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장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출석을 요청해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운영·관리하는 주관부처로 기금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개도국 정부의 지원요청사업에 대한 정부지원방침 결정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기금의 주요업무를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개최시 안건 작성 및 부의 등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한국수출입은행

수은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설립 이래 기금의 운용·사무에 관한 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 수은은 경협총괄본부 내 3개, 경협사업본부 내 2개의 부서를 두고 대외경제협력기금사업의 발굴(국별진출전략 수립 포함), 발굴사업의 심사, 정부의 지원결정에 근거한 차관공여계약 체결, 차관자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실무를 전담하고 있다.

2. 지원제도 운용 방법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설치된 정책기금이다. 특히, 개도국의 경제·사회 간접자본 건설을 지원하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정한 양허성 기준을 충족하는 원조성차관(Concessional Loan)의 성격을 띤다.

차관의 경우 사업의 주도권과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개도국 정부가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국가개발계획상 우선순위와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때문에 개발효과가 큰 사업을 추진하여 성공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리 정부도 회수된 원리금을 원조재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제사회에 개발재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현재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원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부대조건이 있다. 이를 통해 개도국의 개발을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도 확대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다만, 국제사회가 이러한 조건부여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합의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OECD 회원국으로서 공적수출신용 및 구축성 원조에 대한 OECD의 모든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함에 따라 중·고소득국가와 상업성이 있는(Commercially Viable) 프로젝트는 이러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사업규모의 55% 이상에 대해 부대조건을 부가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원제도의 종류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크게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차관과 국제개발금융기구 앞 차관, 민자사업법인 및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가 있다.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 차관은 개발사업차관, 기자재차관, 민자사업차관, 프로그램차관, 섹터개발차관, 민간협력차관이 있다.

개발사업차관은 EDCF 차관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으로, 상하수도, 병원, 환경, 농업·교통·통신·에너지시설 등 개도국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

개발사업차관이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공, 건설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데 비해, 기자재차관은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조달 자금만을 지원하므로 나머지 자금은 개도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달한다.

민자사업차관은 인프라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개도국정부 또는 민자사업자에게 지원하며, 프로그램차관은 개도국의 종합개발계획 또는 부문별 개발계획에 해당하는 정책수립,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섹터개발차관은 개도국의 특정분야 개발에 필요한 다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일괄 지원하며, 민간협력차관은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리증



베트남 국립병원 EDCF 지원(2014. 6. 9.)



밤콩교량 현장 실사(2006. 1. 6.)

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도국 법인(민간 부문)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다.

한편,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 이외의 지원제도로는 국제개발금융기구가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국제개발금융기구 앞 차관, 민자사업차관과 연계해 지원하는 민자사업법인에 대한 출자, 그리고 개도국의 산업발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설립되는 집합투자 기구에 대한 출자가 있다.

지원절차

개도국 개발사업에 차관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 발굴·선정 및 준비, 수원국의 지원 신청, 심사, 차관계약 체결, 사업 실시 및 완공·사후평가 절차를 거친다.

사업 발굴 및 준비 시에는 수원국의 개발계획과 전략이 반영된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를 수립하고, 프로그램미션을 통해 개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대외경제협력기금 우선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한다. 개별사업의 규모 및 사업내용은 사업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F/S)를 통해 구체화하며, 수원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차관 지원을 신청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원국의 차관신청서를 접수하고 수은에 심사를 의뢰하면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상업성 여부를 확인한 후 현지조사 등 상세한 심사를 통해 수원국과 토의록(Minutes of Discussion: MOD)을 작성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기획재정부는 제출받은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해 수원국 정부에 통보한다.

이후 정부간 협정 및 약정(공여협정(Agreement: A/G) 및 시행약정(Arrangement: A/R))이 체결되고, 수은과 차주(수원국 정부) 간의 차관공여계약(Loan Agreement: L/A)이 체결되어 발효되면 사업이 시행된다. 컨설턴트 및 구매 계약은 수원국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계약이 체결되면 차관 자금이 계약된 방식에 따라 지출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원국 정부는 L/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완공보고서(Project Completion Report: PCR)를 수은에 제출하고 수은은 이를 평가(완공평가)하며, 일정 기간 후 사업 실시 목적 달성 여부 및 지원효과 파악을 위한 사후 평가를 실시한다.

지원조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표준지원조건은 지원대상국가를 소득수준별로 5개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별로 금리 및 상환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의 소득그룹별 국가분류 변경에 따라 국별 소득그룹을 재조정하고 있다. 국가별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다.

소속그룹별 지원조건

소속 그룹	분류기준	지원조건	구매조건	이자율 (%)	상환기간 (년)	거치기간 (년)
I	UN분류 최빈국	일반	-	0.05	40	15
		우대	-	0.01	40	15
II	세계은행 분류 I 그룹 및 이에 준하는 국가 중 최빈국 제외	일반	구속성	0.1	35	10
			비구속성	1.0	30	10
		우대	구속성	0.05	40	10
			비구속성	0.5	35	10
III	세계은행 분류 II 그룹과 Historic IDA 및 이에 준하는 국가 중 최빈국 제외	일반	구속성	0.15	35	10
			비구속성	1.5	25	7
		우대	구속성	0.1	40	10
			비구속성	1.0	30	10
IV	세계은행 분류 III 그룹 중 Historic IDA를 제외한 하위중소득(LMI)국가 및 이에 준하는 국가 중 최빈국 제외	일반	구속성	0.2	30	10
			비구속성	2.0	25	7
		우대	구속성	0.15	40	10
			비구속성	1.5	30	10
V	세계은행 상위중소득(UMI)국가 및 이에 준하는 국가 중 최빈국 제외	일반	구속성	0.25	30	10
			비구속성	2.5	25	7
		우대	구속성	0.2	40	10
			비구속성	2.0	30	10

주) 선택적 지원조건: 표준조건과 동일한 양허성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리나 상환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조건

2절 변천 과정

1. 지원제도의 확대

최근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도국의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하고, 기금 지원사업의 개발효과를 제고하도록 새로운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2011년 6월에는 개도국의 종합 또는 부문별 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다수의 정책과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지원(budget support) 방법으로 일괄 지원하는 프로그램차관을 도입했다.

2012년 12월에는 개도국 대형 인프라 사업 지원을 위해 보증제도를 도입했다. 보증 대상 거래는 리스크 분담을 위해 수원국 정부의 복보증(Counter Guarantee)이 가능한 거래로 한정했으며, 보증대상 위험은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증(Political Risk Guarantee)으로 한정했다.

또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은 2014년 9월 민간협력차관, 민간협력전대차관, 섹터개발차관, 국제개발

금융기구 앞 차관을 신설했다.

민간협력차관 및 민간협력전대차관은 민간부문 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 지원을 강화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했다. 민간협력차관은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적격분야 사업을 수행하는 개도국 법인에 대한 차관이며, 민간협력전대차관은 개도국 금융기관을 통해 민간협력차관의 지원대상인 개도국 법인을 지원하는 전대차관이다.

섹터개발차관은 개도국정부가 특정 부문(Sector) 개발을 추진하는 다수 사업에 지원하는 차관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며, 국제개발금융기구 앞 차관은 분야별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제개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 개발수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다.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은 2014년 2월 취약국 지원 기준을 마련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의 준비, 심사 단계에서 OECD 취약국 원칙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취약국 지원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긍정적 역할을 최대화하고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2. 지원조건 변화와 개선

금리 및 상환기간 개선

대외경제협력기금 설립 초기 공적개발원조로 인정받는 최저 증여율(Grant Element) 25% 충족 원칙에 따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금리 연 4~5%, 상환기간 20년(거치 5년 포함) 이내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그러나 소득수준 등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탄력적 지원조건으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조건 차등 필요성을 인정하고, 1989년 12월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조건 등 운용지침’을 제정해 개도국을 소득수준에 따



EDCF 지원전략 설명회(2014. 2. 25.)

라 4개 그룹으로 구분, 금리 2.5~5.0%, 상환기간 20~25년(거치기간 5~7년)을 차등 적용했다. 1996년에는 소득그룹별 금리 차등 폭을 더욱 확대해 1.0~5.0% 수준으로 조정하고, 상환기간도 25~30년(거치기간 7~10년)으로 늘렸다.

2004년에도 지원조건에 변화를 주었다. 2001년 이후 지속된 저금리 기조에 따라 양허성 차관의 장점이 사라지면서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구축성 원조인 우리나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선진국 유상차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2004년 12월 금리를 다시 0.5~3.0%로 조정한 것이다.

경제협력기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8년 7월에는 금리를 0.01~2.5%까지 낮춰, 선진국 수준의 차관지원조건 체계를 갖추었다. 특히 DAC 권고에 따라 최빈국 지원조건을 증여율(Grant Element: G.E.) 90% 이상으로 변경하였다.

우대조건 및 선택적 지원조건 도입

1989년 12월 운영지침 제정 당시 사업준비차관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준비차관을 이용하는 경우 적용금리수준을 0.5% 인하하는 우대근거를 마련했으나, 사업준비차관 이용실적이 없었다. 이에 1995년 4월 사업준비차관 우대조건을 폐지하고, 전략국가에 대한 전략사업에 대해 금리를 0.5% 인하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1997년 1월 전략국가와 전략사업을 주요국가와 주요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리 우대 범위를

0.5%에서 1.0%로 확대했다. 또한 1996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해 OECD 수출신용협약 준수의 무가 발동함에 따라 구축성 원조가 제한되는 상업성사업을 지원할 경우 OECD 상업성 검증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

선택적 지원조건은 2004년 12월에 도입했다. 표준조건과 동일한 양허성 수준 범위 내에서 차주의 필요에 따라 금리와 상환기간을 탄력적으로 선택하는 제도로써 상환기간을 단축하고 지원금리를 낮추는 등의 운용을 가능하게 했다.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은 2007년 3월 소규모이지만 개발효과가 높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만 SDR(약 300만 달러) 미만의 소액 사업을 지원하는 소액차관제도를 도입하면서 구축성으로 운영하였다. 2013년 6월에는 제도 적용대상을 500만 달러 범위로 확대하고, 무이자 조건을 적용했다.

또한, 2014년 9월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이 EDCF 사업을 수주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중소기업 수주사업의 경우 무이자, 중견기업 수주사업은 현행 이자율의 50%를 적용했으며,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공동 수주도 특정 조건에 따라 현행 이자율의 50%를 적용했다.

3. 지원업무의 다양화

협조용자

다자개발은행(MDB)과 협조용자는 목적에 따라 시기별로 변화가 있었다. 초기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MDB와 함께 지원함으로써 효과가 검증된 우수사업을 확보하고, 국제개발기구가 보유한 풍부한 원조시장 정보를 수집하는 창구로 활용되었다.

이를 위해 1989년 12월 ‘기금운용관리규정’을 개정해 협조용자를 취급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1994년 7월, 필리핀 민다나오 송전설비 확충사업에 ADB와 공동으로 차관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협력기금 최초의 국제개발기구와 협조용자 사업이 성사되었다. 2005년 12월에는 터키 전동차 구매사업을 일본 JBIC와 협조용자로 지원해 협조금



터키 전동차 구매사업(2006. 12. 22.)



볼리비아 Pailas 교량건설 사업(2005. 2. 21.)

용기관을 국제개발기구에서 타 국가 수출신용기관으로 확대했다.

2007년부터 협조용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4건에 약 1억 7,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특히 2007년 3월에는 베트남 GMS 남부해안 연결도로 사업에 ADB와 함께 호주공적원조기관인 DFAT가 참여함으로써 다자 협조용자가 최초로 성사되었으며, 이후 다자 협조용자는 주요한 지원방법으로 자리를 잡았다.

지원 지역도 확대되어 초기에는 아시아에 집중되었지만, 2008년 12월 탄자니아를 시작으로 2009년 모잠비크와 말리, 2010년 우간다, 탄자니아, 2013년 에티오피아까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활발한 지원이 이뤄졌다. 남미 지역도 활발한 지원이 이뤄져 2000년 볼리비아, 2003년 온두라스에 협조용자 지원을 시작해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니카라과에 세 차례에 걸쳐 약 1억 달러를 지원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지금까지 총 33개 사업에 13억 2,877만 달러를 협조용자로 지원했다.

차관지원비 도입

대외경제협력기금은 2002년 사업개발지원비, 사업실시지원비, 사후관리지원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차관행정비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개도국의 사업개발 및 추진능력 미흡, 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자금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효율성·효과성·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이미 다른 원조기관들은 자국 원조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망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준비지원, 사업실시과정의 문제해결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사후관리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본 사업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었다.

차관행정비 도입 이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차관행정비는 2006년 차관지원비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지원중이다.

4. 효율적 사업발굴체제 구축

이국간 정책협의 활성화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도국 정부가 타 원조기관의 지원을 받아 사업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사업중에서 심사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돼 선진국 지원이 보류된 사업이나, 사업 준비가 미진한 사업이 EDCF 차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를 보완하고자 대외경제협력기금은 1999년부터 개도국과 정책협의(Policy Dialogue)를 열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책방향과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수요를 반영하는 사업발굴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은 2005년부터 시행한 국별 프로그래밍을 활용해 개도국의 개발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정책협의를 반영하고 사업준비를 직접 지원하는 등 내실을 기하게 되었다.

이국간 정책협의는 먼저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지원규모, 중점지원분야, 지원절차를 소개하고, 개도국은 자국의 개발계획, 개발사업의 우선순위, 경제협력기금 지원 희망사업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심도 있는 협의를 가능케 함으로써 양국의 이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한편, 정책협의 시행 초기에는 우리나라와의 경험잠재력이 높은 중점지원국가 위주로 정책협의를 실시했으나, 점차 일반지원국가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별프로그램 도입

우리나라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은 높은 성장잠재력과 경험잠재력으로 시장진출 및 경제교류를 확대하려는 선진국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특히 타국 원조기관들은 중기 재원 및 중점 지원분야 등을 포괄하는 중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들 국가에 대규모 원조자금을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중기 프로그램 운영은 지원규모와 예측가능성을 높여 개도국과 원조정책 협의에서 협상력을 향상시키고, 개도국 정부의 중기개발정책을 반영한 정

책협의를 이뤄져 사업발굴 단계부터 체계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도 2005년부터 개도국 경제상황, 개발계획, 국제개발기구와 타국 지원동향을 토대로 중기 프로그램인 국별프로그램(Country Program)을 도입해, 지원규모, 유망분야 및 유망후보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2013년에는 국별 프로그램팀을 신설해 국별지원전략(CPS)수립 및 모니터링을 통합 관리하는 한편, 국별 중기 지원배분 및 지원계획 수립, 국별 프로그램미션을 실시하는 등 포트폴리오 구성 업무를 전담케 했다. 이를 통해 중기 예산과 국가별 재원배분 연계성을 높인 것은 물론이고, 타 기관 연계사업 확대, 비구속성사업 확대, 중소기업 참여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되었다.

또한 사업 초기단계부터 지식공유사업 및 무상기술지원 사업과 연계해 복합금융, 다자개발기구와의 협조용자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가능해 효과적인 지원 수단을 도출하는 환경도 조성되었다.

협력대상국도 대외경제협력기금이 국가개발계획과 분야별 세부계획, 개발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다년간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함으로써 지원 예측이 손쉬워지고, 우리나라도 개발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국별 재원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게 되었다.

2006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우선 적용했던 프로그램은 현재는 동남아를 넘어 중남미·아프리카·CIS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점국가들로 범위를 넓혀 적용국가를 확대하여 운용하고 있다.

사업타당성조사(F/S) 지원확대

사업타당성조사는 사업의 기초설계 뿐만 아니라 완공 후 운영 유지 방안, 환경사회영향까지 충실하게 수록하기 때문에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절차가 되었다. 이를 감안하여 1997년 사업개발지원비 지원제도를 도입하면서 개도국의 개발계획상 우선순위가 높고,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에 효과가 높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유망사업에 사업타당성조사(F/S)를 지원하고 있다.



필리핀 남부마닐라 통근철도사업 현장 조사



보스니아 병원현대화사업 현장 실사

수은은 2005년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행정단지 건설사업에 컨설턴트를 파견해 개도국의 사업타당성조사 작성 지원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는 국내 업체를 직접 선정해 사업타당성조사를 작성하게 하고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2015년까지 교통 분야 41건, 수자원·위생 28건, 공공행정 16건, 교육 13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34건의 사업타당성조사를 지원했다.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한 국내 업체는 해외사업 실적이 축적되며 EDCF 사업 외에도 개도국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는 등 사업타당성조사는 EDCF 사업의 성공적 수행 뿐 아니라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업기본개념서(Project Concept Paper: PCP) 작성

2014년부터 사업개념이 불명확한 후보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조사에 앞서, 개도국과 협의를 거쳐 해당 사업의 개념을 확정하는 사업기본개념서를 작성하고 있다.

기본개념서는 2013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했으며, 2015년까지 30건의 기본개념서를 작성해 개도국과 협의하였다. 기본개념서는 기본 사업개념, 주요 기술사항, 개발효과, 정책적·전략적 타당성 등 사업타당성조사의 필수 요소를 포함했다. 이를 통해 사업타당성조사의 과업범위 및 구성요소가 명확해져 조사결과와 완성도를 높이고, 개도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5. 효율적 지원체제 구축

개도국 공무원연수

1995년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9개 국가 원조

담당 공무원을 초청하여 제1차 개도국 공무원 연수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거의 매년 총 19회에 걸쳐 진행했다.

개도국 공무원 연수는 개도국 원조담당자를 대상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 제도를 설명하는 한편,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우리나라 경제 및 사업현장 체험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수요를 확산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간 기본약정(Framework Arrangement)

대외경제협력기금 도입 초기에는 모든 개별 EDCF 사업은 대통령이 재가하는 교환각서(Exchange of Note)를 체결했으나, 1995년부터 수원국과 외교부장관이 재가하는 EDCF 공여협정(Agreement: A/G)을 체결하고, 개별사업은 기본약정(Arrangement: A/R)으로 정부 간 협정 체결방식을 변경했다.

2006년 1월에는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중점지원국은 다년간 지원한도와 지원조건을 규정한 정부 간 기본약정(Framework Arrangement: F/A)을 체결하고, 개별사업은 기본약정(A/R) 없이 수은의 차관계약(Loan Agreement: L/A)만으로 차관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기금사업 지원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6. 시스템 준비를 통한 효과 극대화

유·무상원조 연계 강화

수은은 유·무상 연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2012년부터 매년 6회 이상의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연 6회의 정례협의회 외에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련부처를 포함한 4자 협의체를 구성, 반기별 회



EDCF 개도국 공무원 초청 연수(2014. 6. 23.)



베트남 하노이 하이퐁 7공구 탄안교량 건설사업 현장

의를 개최하고 있다. 협의체 회의에서는 원조정책의 기획 및 집행 전 과정에서 연계를 구체화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접촉 점점도 늘려 모잠비크, 콜롬비아,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주요 수원국의 수은 현지사무소를 KOICA 현지사무소와 동일 건물에 입주해 사업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연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4가지 협력모델을 수립하는 한편, 사업사후관리 및 베트남 메트로 건설사업 공동 지원 등 양 기관의 사업 연계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2013년에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간 원조부서 인적교류에 이어 수은과 KOICA도 책임자급 인력교류를 추진해 상호 이해 증진 및 연계효과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각 분야 무상원조 부처와의 협력도 확대해 병원, 농촌개발, 하수처리장, 전자정부 등 분야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까지 승인기준 유·무상 연계사업은 1995년 베트남 18번 도로개량사업에 184억 원을 승인한 이후 62건, 29억 6,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총 승인사업은 2015년까지 339건, 108억 2,000만 달러였는데 이 중 유·무상 연계사업이 전수 기준 18.3%, 승인금액 기준 27.4%를 차지하고 있다.

기금운용평가 체제 구축

대외경제협력기금은 1999년 12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2000년 기금운용실적에 대해 최초로 기금운용평가를 받은 이래, 매년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으로부터 기금운용 평가를 받고 있다.

2002년 기금운용평가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교육·문화·외교분야 9개 기금 중 경영개선 부문 3위, 사업운영 부문 2위를 차지했으며, 2003년 평가에서는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에서 10개 기금 중 1위, 2005년도 평가에서는 11개 기금 중 2위를 차지하는 등 최상위권에 올랐다.

개도국 공무원 연수현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참가국수	16	20	17	20	8	10	5	13	13	7
참가자수	21	23	20	20	9	10	7	16	15	9

2007년 1월 1일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이 폐지되어, 기존 공공기금 평가 가운데 사업부문 평가는 재정사업자율평가와 통합되었으며, 자산운용부문은 별도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3년마다 기금 운용 실태 및 존치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기금존치평가를 받고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재정사업자율평가 시행에 앞서 2006년 외부 전문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 구조로 이루어진 성과관리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에 제출했다.

이후 2006년, 2009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대개도국차관사업이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2014년 자산운용부분 기금운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는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투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금존치평가 역시 모두 존치의견을 받으면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존치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에 대한 우수한 평가결과는 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의 인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협사업 평가제도 개선

최근 국제 원조동향은 원조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원조의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외경제협력기금도 기금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평가 내용과 절차를 강화했다. 2005년에는 국제기준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5가지 평가기준을 토대로 사후평가 기준을 제정했으며, 2008년에는 외부평가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 또한, 평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2010년 국별 평가, 2011년 분야별 평가, 2012년 주제별 평가를 도입했다.

2011년에는 수원국 사업관계자들과 처음으로 공동평가워크숍을 개최해 수원국의 사업 관심도를 높이고 주인의식 함양에도 힘썼다. 2012년에는 유·무상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KOICA와 교차평가를 실시했다. 2013년에는 OECD DAC와 공동으로



EDCF 국제 평가세미나(2013. 11. 7.)



4개국 원조기관 회의(2013. 8. 26.)

‘국제 평가세미나’를 개최해 선진 공여기관과의 협력도 증진했다. 2014년에는 매년 평가결과 반영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함으로써 평가 환류(Feedback)를 더욱 강화했다.

7. 국제사회와의 협력강화

1982년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직원을 파견해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물론 금융기법을 습득하기 시작한 수은은 1998년 유럽부흥개발(EBRD), 1999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도 직원을 파견하며 국제교류를 강화했다. 이후 선진 공적수출기관은 물론, 공적기관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OECD DAC 가입

2012년에는 DAC 가입 이래 최초로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 및 집행체제에 대한 개발협력 정책·집행 평가(이후 ‘동료검토’)를 받았다. 동료검토는 DAC 운영의 핵심 체계 가운데 하나로 매년 4~5개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과 집행체제에 대한 상호 검토를 통해 회원국 간의 개발협력 정책 및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동료검토는 우리 정부의 메모랜덤 제출을 시작으로 DAC 실사단의 방한 및 협력대상국(캄보디아) 방문과 방문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토대로 열리는 최종 회의로 이어졌다. 정부는 최종회의에 국내 개발협력 관련 부처와 수은을 포함한 집행기관 대표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했다.

DAC 회원국들은 한국이 보여준 ODA 체제 개선 노력과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도 국제사회에 약속한 ODA 규모 확대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과 한국 고유의 개발경험을 ODA 시스템에 반영해 협력대상국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후 우리나라는 2015년 11월 동료평가 권고문 이행에 대한 중간점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EDCF-JICA 정례협의

EDCF-JICA 정례협의는 대외경제협력기금과 일본 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가 참석하는 양자회의로, 국제개발협력 주요 이슈에 관한 서로의 정책, 제도 및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 지역의 대표 유상원조 기관으로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08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2014년까지 총 7회에 걸쳐 서울, 도쿄를 오가며 매년 정례협의회를 개최하며 유상원조 협력 채널을 공고히 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정례협의는 기후변화, 혁신적 개발금융수단, 민간부문과의 협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경험 공유와 의견 교환, 기관 동향 소개로 정보 교류 성격이 강했으나, 향후 인력 교류 및 협조용자 사업 발굴 등 실질적인 협력 채널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도 활발하다.

4개국 원조기관 회의

4개국 원조기관 회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중국수출입은행(The Export Import Bank of China: CEXIM),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태국 경제개발협력청(Neighbouring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NEDA)이 참석하는 4자회의로, 유상원조의 역할 및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아시아 공여국 간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아시아 지역의 결집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2010년 태국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회의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5회에 걸쳐, 태국, 한국, 중국, 일본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었으며, 환경사회 가이드라인, 아시아지역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2030 지속가능한 개발의제(SDGs)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전통 원조공여국인 일본, 한국의 원조경험과 신흥공여국인 중국, 태국의 개발경험을 활용해 아시아 지역 내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금융협력 플랫폼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기타 협력

수은은 2005년부터 우리 정부가 국제개발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Trust Fund)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 받아 국제개발기구와 협력관계를 꾸준히 강화했다. 신탁기금이란 국제개발기구가 실시하는 기술협력, 역량강화, 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F/S)를 위해 회원국이 출연하는 기금으로, 우리 정부는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5대 국제개발기구에 총 4억 4,550만 달러를 출연했다. 수은은 신탁기금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경험과 녹색성장경험을 국제개발기구에 전파하고 수원국에 이식함으로써 국격을 높이고 있다.

수은은 기후변화 선도국의 위상에 맞춰 국제개발기구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2008년 아시아개발은행 미래탄소펀드에 참여해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에서 약 670만 달러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유치한 국제금융기구인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에 이행기구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분야에서 GCF와의 협조용자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지원활동을 위해 채무구조화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파리클럽과 고채무저소득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채무구제 프로그램(Initiative)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아시아지역 외환위기 중 이루어진 1998년 인도네시아 파당시 우회도로사업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시작으로, 2004년 고채무저소득국 채무구제 프로그램에 따른 우간다 지방전화망 확충사업에 대한 채무재조정, 2005년 쓰나미 피해 복구를 위한 스리랑카 10개 사업 및 인도네시아 파당시 우회도로사업 등 6개 사업에 채무재조정에 참여한 바 있다. 2015년 10월 기준으로 채무재조정 실적은 총 6개국 24개 사업, 647억 원 수준이다.

8. 기금 지지기반 확대

대국민 홍보강화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기금 인지도 제고와 국민적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2012년 우리나라 최초로 올림픽 체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양학선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한데 이어 2014년에는 코리안특급 박찬호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특히 2015년 6월 박찬호 EDCF 홍보대사의 베트남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완공식 참석은 언론의 대대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성과와 효과를 알리는데 일조했다. 또한 'EDCF 대학생 서포터즈'를 선발해 홍보대사의 활동과 기금사업 관련 다양한 소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에 공유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고교생 ODA강좌', 'EDCF 대학생캠프'와 '국제개발경시대회(논문 공모)'를 개최하고,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발협력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다. 청년들이 대외경제협력기금 실무를 직접 경험하도록 국내 경험본부와 국외 사무소에서 번갈아 근무하는 청년인턴제를 도입해 국제개발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방송·신문 등 다양한 매체와 협력을 통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05년 1월 한국방송공사(KBS)의 신년특집 다큐멘터리 'Power Korea, 대한민국의 힘'을 통해 공중파 최초로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를 상세히 소개했으며, 2012년 KBS 스페셜 '수단의 슈바이처 故이태석 신부 울지 마 톤즈'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감동을 전한 바 있다. 2014년 SBS 일요특선다큐멘터리 '기적을 만드는 씨앗'과 SBS CNBC 'E한켓-EDCF'도 전파를 타면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다양한 활동을 전했다.

한편, SBS와 2013년, KBS와 2015년 업무협약을 맺고 방송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펼쳤다. 또한 주요 신문 지면에 EDCF 사업현장 기획보도 기사가



박찬호 EDCF 홍보대사 위촉식(2014. 7. 25.)



EDCF 해외인턴 발대식(2015. 3. 25.)



〈한국의 개발협력〉 2015년 4분기 보고서

게재되면서 대외경제협력기금 인지도 상승과 지원의 긍정적 효과를 널리 알렸다.

국제개발협력 정보 간행물 발간

2000년대 들어 국제사회는 공감대를 갖고 새천년개발목표(MDGs), 몬테레이합의,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파리선언, 부산파트너십으로 이어지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을 위한 국제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선진공여국은 국제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도 그 노력의 하나로 2005년 3월부터 선진공여국의 다양한 원조사례와 원조방식, 국제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 동향을 담은 월간 〈DAC 동향〉을 발간하고 있다. 정부와 학계 그리고 비정부기구(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의 국내 개발협력 이해당사자가 대상이며,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 싶은 목적이었다.

이와 함께 분기별로 〈한국의 개발협력〉 보고서도 발간하고 있다. 국내의 개발협력 동향을 조사·연구하고,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변화 방향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대외경제협력기금 및 ODA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정기적으로 〈EDCF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를 분석해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있다. 2015년에는 국제개발협력을 이끌어 가는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DFIs)과 주요 선진공여기관 운영현황 편람도 발간했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예·결산을 심의하고 국정감사로 기금 운용을 감사하고 있다. 사업 효과와 성과에 대한 국회의 이해와 지지는 EDCF 사업 지속과 확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회를 상대로 사업의 당위성을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국회의원을 초청해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책토론회 및 시민사회 설명회 개최

2002년 7월, 대외경제협력기금 설립 15주년을 기념해 수은, 재정경제부, 매일경제 신문사 공동으로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첫 정책토론회를 열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당위성을 환기한 바 있다.

2005년 8월에는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 설명회를 가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KCOC, 舊 해외원조단체협의회) 등 5개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개선방향과 발전방향을 설명했다.

2006년 2월에는 수은과 재정경제부가 후원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등 5개 관련협회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방향과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2차례의 정책토론회에서는 대외원조에 대한 정부, 학계, 업계, 비정부기구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발전방향도 논의했다.

2015년 3월에는 시민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FID), KCOC, 참여연대 소속 활동가 30여 명이 참석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정책과 사업에 대한 상호 이해의 자리를 가졌다. 나아가 2015년 12월, 수은 설립 이래 최초로 시민사회와 대외경제협력기금이 공동으로 ‘2030 SDGs 시대의 포용적 경제발전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제3장

지원실적과 발전방향 모색

1절 기금의 확충 및 지원실적

1. 기금 현황과 변화 추이

안정적 재원 마련으로 기반 구축

대외경제협력자금은 최초로 1987년 정부출연금 150억 원이 납입된 이후 사업이 확장되면서 기금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1997년 발생한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5년간 중단되었던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재정출연이 2003년 8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되었고, 2004년 700억 원, 2005년 1,000억 원, 2006년에는 1,50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정부의 재정출연에도 경험 재원은 1조 7,586억 원에 불과하여 개도국 정부에 차

관제공을 약속한 금액인 2조 3,738억 원에 턱없이 부족했다. 더욱이 정부의 원조계획이 확대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기금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2009년까지 총 1조 5,766억 원을 대외경제협력기금에 출연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외경제협력기금도 재정출연과 원리금 회수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1조 2,620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중장기 재원 확충방안이 마련되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개도국 차관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10년 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기조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2010년 이후 재정출연이 전체 출연금액의 48.1%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대외경제협력기금 조성현황 (단위 : 억 원)

	1987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정부출연금	7,799	1,500	1,700	1,600	1,200	1,500	3,500	2,990	3,100	4,590	7,664	37,142
차입금	1,773	△203	△203	△203	△203	△177	△410	1,430	1,551	△70	△70	3,215
당기순이익	8,014	355	434	495	642	412	△974 ^{주)}	△1,147	△2,088	△2,076	△2,188	1,880
기금조성액	17,586	1,652	1,930	1,892	1,639	1,736	1,577	3,273	2,563	2,444	5,406	41,697

주) 2011년부터 「용자회계준칙」을 적용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에 용자보조비용을 반영
* 용자보조비용은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을 계상하기 위한 상대계정으로, 「용자회계준칙」에 의거 용자보조원가총당금 중 당해 연도 차관지출 해당 분을 비용으로 인식함.

대외경제협력기금 자체수입 추이 (단위 : 억 원)

구분 ^{주1)}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자체수입 ^{주2)}	1,473	1,113	1,262	1,417	1,400	1,378	1,707	1,947	2,159

주1) 15년도부터는 추정치
주2) 용자금 원리금회수, 여유자금이자, 대출취급수수료, 보증수수료

2. 사업 승인 실적

설립연도인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은 8개국 15개 사업에서 약 1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차관 지원요청을 받았으며, 이중 최초로 인도네시아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과 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사업에 대해 같은 해 12월에 정부지원방침이 결정되었다.

초기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국가를 중점지원 대상 국가로 선정하고, 용자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수원국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수집 및 현지 실태조사(Fact-Finding Mission)를 병행하면서 수원국의 경제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발굴에 집중하면서 지원규모를 늘려나갔다.

1987년 이후 설립 당시 처음으로 179억 원을 승인한 이후 지원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지원대상도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중남미, CIS(독립국가연합) 등으로 넓혔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2010년 우리나라의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였다. 2010년을 전후로 승인실적이 기금누적 승인금액의 약 53%를 차지하는 등 지원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2015년 1조 4,442억 원의 사업을 신규로 승인하여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또한, DAC 가입 이후 수원국의 대규모 인프라 수요, 지원효과 등을 감안하여 대형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평균승인규모는 이전 2,300만 달러에서 4,900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파당 시 우회도로 건설사업(1987. 12. 4.)



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사업 차관공여계약 체결 (1989. 5.)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추이 (단위 : 억 원, %)									
	1987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2014	2015 ¹⁾
승인액(a)	179	238	1,060	2,428	2,872	12,191	12,335	14,138	14,442
집행액	-	71	345	1,012	1,643	4,107	5,779	6,308	7,343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b)	194	433	947	2,593	7,971	13,939	18,538	20,407	22,550
EDCF 지원비중(a/ b)	92.2	54.9	112.0	93.6	35.5	87.5	66.5	69.3	64.0
우리나라 ODA/GNI ²⁾	0.02	0.02	0.02	0.04	0.1	0.12	0.14	0.13	0.14

1) 2015년 ODA 수치는 잠정치 2) 순지출 기준

분야별 승인현황 (단위 : 억 원)						
	교통	수자원·위생	보건	에너지	기타	합계
금액	42,309	21,550	13,039	12,069	33,146	122,113
비중	35%	18%	11%	10%	26%	100%

지역별 승인현황 (단위 : 억 원)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기타	합계
금액	80,432	26,708	7,666	7,307	122,113
비중	66%	22%	6%	6%	100%

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ODA 지원규모 확대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3. 분야별 지역별 지원현황

대외경제협력기금은 1987년 처음 설치 후 2015년 10월 현재까지 분야별로는 교통 35%, 수자원·위생 18%, 보건 11%, 에너지 10% 기타 2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66%, 아프리카 22%, 중남미 6%, 기타 6%를 지원했다.

2절 향후 발전 방향 및 전망

1. 2030 지속가능개발 체제의 역할과 변화

2015년까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2000년 UN이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2015년 9월 만료되었다. 이에 따라 UN 총회 개발정상회의는 사회개발 뿐 아니라 경제발전, 환경지속성, 평화와 안보를 아우르는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를 채택했다.

MDGs를 후속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정해졌다. SDGs를 통해 국제사회는 사회개발이 아니라 경제개발을 새로운 목표로 정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민간 기업까지 끌어들여 민간 재원을 확보해 실질적

인 개발과 발전이 이뤄져야 함을 역설했다. SDGs는 2016년 1월부터 이행을 시작해 2030년까지 목표달성 기간을 설정했다.

이미 국제사회는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에서 부산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에 합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개발협력 패러다임이 '원조효과성'에서 '효과적 개발협력'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해 국제사회는 정부와 국제기구 외에도 시민사회, 민간기업, 자선단체, 학계, 국회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인프라 중심의 지원체제를 2030 시대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부합하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

우선, 2016년을 기점으로 SDGs와의 연계한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하고, 특히 경제발전과 불평등을 모두 고려하는 SDGs의 기초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에 편중된 예산 배분을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대해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세웠다.

또한 인프라 개발에 있어 부가까지 창출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부분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개도국 내 고용창출까지 연계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동시에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보건·교육 분야 인프라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나아가 단

일 인프라 지원을 지양하고, 농촌과 도시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해 농촌지역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양허성 차관 중심의 ODA 제공 관행에서 벗어나, ODA를 촉매제로 민간재원을 유인하는 개발금융을 도입하고, 민관파트너십(PPP)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발금융과 PPP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강조하는 대규모 인프라 차관사업을 위한 상업금융의 개도국 유입에 적합한 수단이며, 세계경제포럼, OECD DAC 그리고 UN 등에 의해 재조명 되는 혼합금융(Blended Finance)의 일부로써 향후 경제협력기금이 국제사회의 민간재원 동원에 필요한 요소다.

마지막으로 2030 지속가능개발 체제에서 효과적 개발협력 패러다임으로 강조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향후 국내 민간기업, 시민사회, 학계, 국회, 자선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는 MDG 등과 금융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2. 시장재원 유입할 개발금융 도입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정부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개도국 개발사업은 정부가 직접 출연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의존하고 있어 지원규모 확대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ODA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발금융 도입이 시급하다. 이미 독일, 프랑스 등은 정부 재정 외에 시장조달 재원을 활용한 개발금융을 통해 개도국의 다양한 개발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개발금융은 시장재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의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발수단이다. 100%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양허성 차관과 달리, 개발금융은 수은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수원국에 다양한 형태의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고, 정부는 시장재원 조달금리와 개도국 차관금리 간 이차율 차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개발금융은 기존의 고양허성 차관과 수출

금융 및 상업금융의 중간 공백을 메워주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다자개발은행(MDB) 협조유자에 개발금융을 적극 활용해 MDB 조달시장 진출 기반도 넓힐 수 있다.

3. 민간금융수단(Private Sector Instruments: PSI)의 도입

2014년 국제사회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를 중심으로 'ODA 현대화' 논의를 시작했다. ODA 현대화 논의는 첫째 양허성 차관의 '증여등가율(Grant Equivalent)'을 개도국의 소득수준별로 구분해 차등 인정하는 'ODA 재정의' 과정, 둘째 기후재원과 평화·안보에 관련된 개발재원 전체를 측정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범주를 확정하는 협의로 나누어 진행했다.

먼저 개도국 소득그룹별로 양허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공여국의 노력을 차등적으로 인정한 'ODA 재정의'가 2014년 12월 결실을 보았다. 1969년 최초로 정의되고, 1972년에 한차례 개정된 ODA 정의가 새롭게 재정의 되면서 40여 년 만에 큰 변화를 맞은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기금의 양허성 차관도 영향을 받아 2018년부터 증여등가율 방식에 의거해, 승인시점에 개도국 소득그룹별로 차등 적용한 증여율을 계산하고 이를 적용한 집행액을 ODA로 OECD DAC에 보고하게 된다.

한편, ODA 현대화는 SDGs 달성을 위해 강조된 민간재원 동원 필요성과 연계해 공적자금으로 개도국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DFIs)의 민간금융수단의 양허적 부분을 ODA로 계상하는 논의도 포함되었다. 이는 개도국 내 높은 금융 위험부담을 공여국 정부가 부담함으로써, 더 많은 민간 상업금융을 개도국에 유입되도록 노력한 공여기관 인센티브 성격을 띠고 있다. 지분투자 및 보증과 같은 금융수단을 활용한 공여기관의 민간재원 동원에 대한 ODA 인정부분과 통계계상을 위한 기



KSP 전파세미나(2013. 7. 10.)

술적 부분은 2016년 확정될 예정이다.

민간금융수단 도입은 개도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도국 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도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위험평가 및 관리 역량, 그리고 지원사업 발굴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신생기관이 접근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우리나라는 독립적 DFI가 없지만, OECD DAC는 수은과 대외경제협력기금이 개도국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제도를 DFI 유사기능으로 인정해 수은을 DFI 유사기관으로 분류한 바 있다.

따라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은 향후 30여 년의 개도국 지원 사업경험과 수은 정책금융의 해외투자 금융 노하우를 연계해 민간금융수단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다양한 국내 민간 상업금융과 연계해 개도국 개발금융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4. KSP의 금융 연계기능 강화

2015년은 한국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도입 12년이 되는 해였다. KSP는 빈곤국은 물론 중소득국, 자원부국과의 경험수단으로 활용되면서, 2014년까지 총 49개 수원국에 742개 사업에 정책자문을 했다. KSP의 성공적인 성과는 KSP의 질적 제고를 통한 한 단계 진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과제를 낳았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후속사업 연계 방안이 제기되었다.

수은은 KSP 사업의 후속사업 연계를 이행할 최적기관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과 수은이 보유한 금융

지원 제도를 십분 활용할 예정이다. 우선순위가 높은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KSP를 통해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투자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수출금융과 연계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해외 인프라 사업을 수주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실제로, 수은 KSP는 2015년 EDCF-수출금융과 패키지형 연계 모델을 통해 베트남의 '호치민 메트로 PPP 노선 지원 사업'에 최초로 지원을 했다. KSP로 시작된 수은의 사업 지원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타당성조사로 연계되었으며, 추후 금융지원(경제협력기금, 수출금융)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이와 같이 유사한 연계모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KSP, 대외경제협력기금, 수출금융이 통합적으로 참여한 전략사업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 수은은 향후 KSP 사업의 발굴 시점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 및 수출금융과 유기적 협업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제4편

남북협력기금 업무

제1장

남북협력기금의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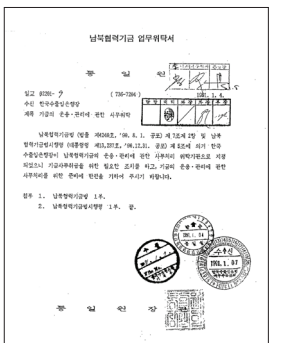
1절 기금 설립 배경

1. 설립 배경

탈냉전 시대의 도래와 함께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에도 봄이 찾아왔다. 1970년대부터 적십자회담, 체육회담, 경제회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어지면서 해빙무드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1987년 7월 7일 대북한 개방정책의 하나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인 '7·7 선언'을 발표했다. 7·7 선언은 남한과 북한 주민의 상호 교류·방문을 허용하고, 남북한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며, 국제사회에서 상호 협조하는 등의 정책방향이 제시됨으로써 남북한 관계를 종전의 대결구도에서 공존구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정부는 7·7선언 실천을 위해 1988년 7월 13일 남북적십자실무회담 제의, 7월 15일 남북교육당국자회담 제의, 7월 16일 전향적인 대북 관련 외교정책 시행방침 발표, 9월 3일 북한 및 공산권 자료개방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1988년 10월 7일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성명을 통하여 1) 민간상사의 북한물자 교역 허용, 2) 민간상사의 북한물자 중개 허용, 3) 북한물자의 원산지 표시 및 상표 부착 허용, 4) 직·간접 교역물자에 대한 관세 미부과, 5) 남북 경제인 상호 접촉 및 방문 허용, 6) 북한선적의 상용선박 입항 허용, 7) 남북한 경제교류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7가지 주요 항목을 담은 '대북 물자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대북 경제개방조치를 선언했다.



통일원의 남북협력기금 위탁 공문
(1991. 1. 4.)



남북협력기금 수탁 현판식(1991. 3. 22.)

후속조치로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 제4239호)이 제정되었다. 이와 함께 남북한 상호 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같은 날 「남북협력기금법」(법률 제4240호)도 공포되었다. 이 법을 근거로 남북협력기금의 설립이 추진되었다.

2. 설립 과정

남북협력기금의 제정이 본격화 되면서 이를 운용할 수탁기관 선정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미 1987년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수탁해 성공적으로 개도국 경제개발을 지원해 온 수은이 유력한 수탁기관으로 꼽히는 가운데, 정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은의 수탁이 잠정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수은은 1990년 9월 25일 「남북협력기금법」 제정에 따른 정부 위탁사무 준비기구로 ‘남북협력기금 수탁준비반’을 발족해 정부위탁에 대비했다.

1990년 12월 31일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1991년 1월 4일 통일부(당시 통일원)는 수은에 기금업무를 정식 위탁함에 따라 1991년 2월 1일 남북협력기금부를 정식 발족했다. 이어 3월 20일에는 정부로부터 출연금이 납입되었다.

출연금 납입과 함께 수은은 위탁업무를 위한 내부규정으로 ‘남북협력기금회계사무처리요강’과 ‘남북협력기금여유자금운용지침’을 마련했으며, 10월 2일에는 ‘남북협력기금업무취급요강’을 제정해 업무 절차를 확고히 정비했다.

3. 법적근거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제정 1990. 8. 1. 법률 제4240호)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어 1990년 12월 31일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237호)이 제정되면서 수은을 수탁자

로 지정했으며,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1991년 3월 27일에는 「남북협력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384호)이 제정되었다. 이어 1991년 4월 17일에는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통일원 고시 제1991-1호)이 제정되어 남북협력기금의 운용에 관한 근거로 작용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기금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방식도 다양화됨에 따라 기금지원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모두 규정하기가 어려워졌다. 1998년 이후 분야별 세부 지원 지침을 제정하여 이를 보완해 나가게 되었다.

세부지침으로는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제정 1999. 10. 27. 통일부 고시 제1999-4호),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제정 2001. 12. 31. 통일부 고시 제2001-4호),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제정 1999. 10. 27. 통일부 고시 제1999-5호), 교역손실보조약정 취급기준(제정 2004. 5. 14. 통일부 고시 제2004-3호),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취급기준(제정 2004. 9. 23. 통일부 고시 제2004-14호) 등이 있다.

2절 지원제도의 내용

1. 지원제도의 내용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공급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재정수단이며, 민간의 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실질적으로 유일한 남북경협 금융지원 창구이다.

주요 지원 분야는 첫째, 남북간 주민왕래 및 문화·학술·체육협력 등 사회문화교류사업에 대한 무상지원, 둘째,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등 경제적 교류사업에 대한 대출, 보험 및 채무보증, 셋째, 당국간 합의사업 등 민족공동체회복증진사업에 대한 유·무상 지원, 넷째,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대금결제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업무로 구분된다.

무상지원

무상지원은 첫째, 남북한 주민(법인, 단체 포함)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주민왕래 지원 자금, 둘째,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 자금이 있다.

이외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 증진 사업을 지원하는 민족공동체회복지원 자금이 있다. 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을 지원하는 이산가족교류지원, 비료와 식량 등 인도적 사업지원,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이나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 등 교류협력기반조성지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등이 해당된다.

용자사업

용자사업은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과 민족공동체회복지원 자금지원 대상이면서 북한당국(조선무역은행 등)에 양허성 차관 형태로 지원되는 차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용자사업은 첫째, 남한기업의 북한과 교역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반출·반입 자금 대출, 둘째, 남한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거나 북한과 경협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셋째, 당국간 차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대출 등 남북교류협력 및 남북공동체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하는 교류협력기반조성 용자가 있다.



대북 비료지원(2007.)



금강산 관광 지원

기타 지원

기타 지원으로는 교역·경협보험, 채무보증, 금융기관 지원이 있다.

교역·경협보험은 남북한 거래 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일정 부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보험은 크게 교역보험과 경제협력사업 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채무보증은 남북한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 주민을 위한 채무보증이다.

금융기관지원업무는 해당금융기관이 남북교류협력 촉진하기 위한 대출, 환전 및 대금결제 업무 시 이자 및 환손실을 보전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손실보전,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과 관련된 대출취급금액 범위 내에서의 자금 지원, 남북한 간에 설치된 대금결제계좌(청산계정)의 미결제채권을 인수하는 미결제채권인수,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인수하거나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이 있다.

2. 자금별 지원제도

주민왕래지원 자금(인적왕래지원)

주민왕래지원 자금은 남북한 주민(법인, 단체 포함)의 남북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민왕래지원 자금 지원대상은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남북한 왕래자 또는 주민왕래를 주선, 지원하는 자로서 자비에 의한 남북한 왕래가 어려운 경우, 남북한 왕래에 소요되는 경비로 개인 부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남북한 당국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 간의 합의에 의해 왕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기타 남북한 왕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상기 대상 중 자비에 의한 남북한 왕래가 어려운 경우 재원이 제한될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

라 우선 지원하고 있다. 첫째, 부모·친자 및 배우자 방문, 둘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방문, 셋째, 고향 방문, 넷째, 60세 이상인 자의 남북방문이다.

또한 주민왕래지원 자금은 숙식비·교통비 등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기본경비 범위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남북한 당국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의 합의가 따로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에 따른다.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 자금(사회문화협력사업지원)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 자금은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자는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 분야의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 자금 지원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협력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예상수익금 외에 1) 이미 구성된 조직의 인건비, 행정경비 등 협력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볼 수 없는 비용, 2) 접대비, 기밀비 등 협력사업 시행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3)협력사업 시행과 관련된 국내외 여비 중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여비를 초과하는 금액, 4) 찬조금, 후원금, 기탁금 등으로 조달한 금액, 5)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시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는 비용, 6) 협력사업을 위하여 북한에 제공한 물품 등의 해당 금액 등은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하되, 우선지원대상사업은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이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 단일팀 지원(1991. 6.)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지원(1991. 3.)

가능하다. 한편, 지원방침 결정 이후에 발생한 부족액(경비의 초과지출, 추가경비의 발생, 예상수익금의 감소로 인한 부족액을 포함)은 추가 지원이 불가하다.

민족공동체회복지원 자금

민족공동체회복지원 자금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 지원조건 등은 당국간 합의 또는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5억 원 미만의 지원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기금 지원 등을 결정한다.

민족공동체회복지원 무상지원은 이산가족교류지원, 인도적지원사업, 교류협력기반조성사업, 북한 비핵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i) 이산가족교류지원

이산가족의 고통화 등 이산가족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가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과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이산가족면회소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ii) 인도적지원사업

정부차원의 직접지원과 국제기구·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 정신을 구현한다는 당위적 측면과 남북화해협력의 실현이라는 실용적 측면에서 식량지원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료지원, 보건·의료 지원 등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iii) 교류협력기반조성사업

정부는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2015. 10. 20.)



북한 신종플루 관련 대북지원(2009. 12. 18.)

남북한 당국 합의사업 및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개선사업 등 경제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경제분야협력기반조성)과 민족문화보존 등 사회문화 분야에서 남북한 이질화 극복과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사회문화분야협력기반조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iv) 북한 비핵화사업

대북정책목표와 연계하여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대북 중유제공, 기존 경수로 건설 지원 등 한반도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은 다른 사업과 별도로 북한 비핵화 계정으로 분리되어 처리되고 있다.

교역 및 경험자금대출

i) 교역자금대출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게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반출은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물품이동이고, 반입은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물품이동을 말한다. 반출·반입은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의 이동을 말하며, 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도 포함한다.

교역자금대출은 세부적으로 일반 반출반입자금대출, 가공임 지급조건으로 원부자재 및 설비를 북한으로 반출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반입하는 위탁가공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 반출·반입자금대출에서 파생된 실적한도대출로 구분된다.

반출·반입자금대출의 대출금액은 반출계약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반입금액의 80%(우선지원대상 90%) 이내이다. 대출기간은 2년 이내이며, 대출원금 상환은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이 모두 가능하다.



교류협력 기반 조성사업(남북도로 연결)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의 대출금액은 개별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또는 설비 반출거래에 소요되는 자금의 80%(우선지원대상 90%) 이내이다. 대출기간은 원부자재의 경우 1년 내에서 개별 대출취급일로부터 위탁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 반입일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이며 설비의 경우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5년 이내이다. 대출원금 상환은 원부자재의 경우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이 가능하며, 설비의 경우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에 따라 1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둔다.

실적한도대출은 반출·반입자금 대출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액은 남북교역실적을 기초로 산정하되, 교역 시행기간이 최근 5년 동안 3년 이상인 경우 교역실적의 70%(중소기업은 80%) 이내에서, 최근 5년 동안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역실적의 50%(중소기업은 60%) 이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차주의 신용도가 양호하거나 채권보전이 확실할 경우 30억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6개월이며, 채권보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까지 가능하다. 대출금은 만기 일시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ii) 경제협력사업 대출

경제협력사업 대출은 경제협력사업 투자에 소요되는 투자자금 대출, 경제협력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대출, 시설착공 전 산업용지의 분양대금 또는 구입자금인 산업용지분양자금 대출,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 증설, 운영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 대출이 있다.

투자자금 대출은 경제협력사업 시행에 있어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80%(우선지원대상 90%) 이내이다. 소요자금은 법인설립(인수, 증자 포함), 시설투자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토지, 건물 및 기자재의 건설, 제작,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출자 또는 대부투자에 소요

되는 자금,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회전 운전자금, 기타 경제협력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금으로 산정한다.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이며 5년 이하의 거치기간이 적용된다.

운전자금 대출은 북한 내 현지법인(지사, 공장 포함)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수는 신용평가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기업이 연대보증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물적담보 등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기금이 기지원한 사업으로서 북한 내 현지법인의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된다. 대출금액은 기업신용등급별 한도금액 이내이며, 소액의 개보수투자 시에는 1억 원 이내에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산업용지분양자금 대출의 전제요건은 분양대상 산업용지가 남한주민이 북한당국의 허가를 받아 조성하는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분양자금으로써 단지 내 산업용지가 사전 분양되고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기업의 재산권(소유권, 저당권 등)이 관련 법령에 의해 보장되며, 신청자의 신용평가 등급이 일정등급 이상이고,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제협력사업승인 취득 및 공장건설 착공 등 사업추진이 가능해야 한다. 대출액은 산업용지 구입의 70%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 대출은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 증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제협력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남북교류협력 촉진 및 기반조성에 기여하거나 남북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시장의 일반 차입조건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시장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조달이 곤란하나 사업시행자 또는 차주의 신용도가 우량하고, 사업의 지속적 수행과 경영 및 기술능력을 갖춘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관련 주무부처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추천 또는 지정을 받거나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업지원 보장 또는 확약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사업추진방

식이 사회간접자본시설 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갖는 기간이 대출기간 만료 후에도 10년 이상 존속하는 계약방식 또는 기타 통일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계약방식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총사업 비용의 80%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사업규모, 미래현금흐름, 사업의 성격을 감안해 최장 20년 이내(거치기간 7년 이내)로 결정한다.

교역·경협보험

교역·경협보험은 남북한 거래 시 계약당사자 책임이 아닌 비상위험으로 인한 사유로 남한기업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보험제도이다.

이는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어려운 대북 거래 위험을 완충해 국내거래 또는 제3국 거래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실을 남한주민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사전 약정한 담보위험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경협보험은 남북관계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 해외투자보험보다 양호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2004년 도입 당시에는 손실보조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손실보조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2008년 10월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역·경협보험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i) 교역보험

교역보험은 북한기업과 교역(반출입 거래) 또는 위탁가공교역을 하는 남한기업이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이며, 반출보험, 반입보험, 위탁가공설비보험, 개성공단 교역보험이 있다.

반출보험은 남한에서 생산·가공된 물품 등의 반출계약 또는 남한주민이 제3국에서 위탁가공하거나 생산·가공한 물품 등의 반출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반입보험은 북한에서 생산·가공한 물품

등의 반입계약 또는 동 물품을 남한주민이 제3국 지사 등으로 수출하는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위탁가공설비보험은 북한에서 위탁가공을 목적으로 설비를 반출하는 계약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 교역보험은 2008년 12월 북한의 통행제한 조치에 따라 남한 투자기업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2009년 8월 도입된 제도로 원부자재 반출 후 연속하여 2주 이상 제품 반입이 중단되는 경우 입계되는 손실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성공단 교역보험은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납품이행 보장보험으로 구분된다. 원부자재 반출보험은 모기업의 개성 현지법인으로의 원부자재 반출 이후 비상위험으로 인해 제품 반입이 중단된 경우 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 합산액의 70% 범위 내에서 기업별 10억 원 한도로 보상한다. 납품이행 보장보험은 비상위험으로 인해 제품구매자에게 납품이 중단된 경우 납품중단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납품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기업별 5억 원 한도로 보상한다.

ii) 경제협력사업보험

경제협력사업보험은 국내 기업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후, 북한당국의 수용·송금제한·당국 간 합의파기 등 비상위험으로 인해 사업 불능 또는 중단, 권리침해의 피해로 발생하는 손실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며 지분 등 투자보험, 대부 등 투자보험, 권리 등 투자보험이 있다.

지분 등 투자보험은 북한법인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후, 투자원금 또는 실현된 배당금을 회수하지 못해서 입는 손실에 적용된다. 대부 등 투자보험은 지분 또는 주식의 소유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북한법인의 사채 또는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투자 후, 투자(대출)원금 또는 약정이자를 회수하지 못해 입는 손실을 대상으로 하고, 권리 등 투자보험은 북한지역 내 부동산, 광업권 등 권리의 취득 후, 취득원금을 회수하지 못해 입는 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기관지원

i) 금융기관 손실보전

금융기관 손실보전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 환전, 대출 및 대금결제 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손실보전 대상은 남북한 주민의 남북 왕래, 교역, 경제협력사업 환전업무로 발생한 손실이나,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대출 시 기금수탁관리자가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대금결제업무 취급 시 기금수탁관리자가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및 기타정비에 한하며, 보전 이자율 및 취급수수료율은 통일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별도로 정한다.

환전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 가격차에 의한 손실,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에 따른 자금의 이자손실,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취급 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취급수수료, 북한원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기타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가 있다.

ii) 금융기관 융자자금 지원

금융기관 융자자금 지원은 남북한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해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조건은 통일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별도로 정한다.

iii) 미결제채권 인수

미결제채권 인수는 남북한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의 미결제채권을 기금이 인수하는 제도이다. 남북한에 설치된 대금결제계좌에 발생한 미결제채권 해당금액(단, 남북한이 합의한 신용한도 이내)이 인수대상이 되며, 인수조건은 통일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별도로 정한다.

iv)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북한원화를 기금이 인수하거나 기금이 보유한 북한원화를 금융기관에 매각함으로써 금융기관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조건은 통일부장관이 기획경제부장관과 협의함으로써 별도로 결정되는바, 통일부장관이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조건, 기획재정부장관이 북한원화의 환전시기,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결정한다.

3절 제도의 개정과 변천

1. 기금대출제도 도입과 변천

기금대출 지원제도는 1999년 시행된 이래 9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교역·경협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기금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했으며, 실적한도대출을 도입해 교역실적이 많은 기업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

2000년 11월 21일 1차 개정의 주요내용은 1) 대출비율 상향 조정(50% → 80%), 2) 신용대출제도 도입으로 요약되며, 2001년 12월 31일 2차 개정의 주요 내용은 1) 대출금리체계(연 6% → 국고채 3년물 유통수익률) 개편, 2) 신용대출한도 확대(신용등급별로 순자산 한도 증액)이다.

2003년 2월 6일 3차 개정은 1) 실적한도대출 도입(기업 당 10억 원 한도), 2) 중소기업신용대출 특별대출 도입(재무등급 6등급 이상의 경우), 3) 대출이자율 결정체계 변경(기간별 기준금리 차등, 중소기업차감률 도입), 4) 대출승인 전결권 조정(모든 대출건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결→교역 30억 원, 경협 50억 원 이상 건만 협의회에서 의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03년 이후에는 교역·경협기업들의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건별 지원요청 금액도 커지는 추

세를 보였다. 남북교역기업의 급증하는 대출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2004년 1월 28일 4차 개정을 통해 1) 반출입 및 경협자금 대출금액을 소요자금의 최대 90% 이내로 확대(기존 80%), 2) 실적한도 대출금액을 최대 30억 원으로 확대(기존 10억 원), 3) 북한소재 자산제공기업에 대한 신용대출특례 도입, 4) 부분 보증서부 대출특례 도입 등 기금대출제도를 크게 개선했다.

2004년 하반기부터 우리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맞춘 효율적 지원을 위해 2005년 1월 남북경제협력사업 지원제도를 다양화하고, 투자자금 대출의 대출기간도 확대했다. 또한, 개성공단 소재 부동산을 정규담보로 인정하고, 기금재원의 부족에 대비해 타 금융기관과 협조대출제도를 도입했다.

2005년 1월 31일 5차 개정은 1) 개성공업지구 소재 부동산에 대한 정규담보 인정, 2) 경협사업 지원제도 다양화(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투자자금 대출, 운전자금 대출, 산업용지분양자금 대출로 세분화), 3) 투자자금 대출은 대출기간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 4) 협조대출제도 도입, 5)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지원제도 도입, 6) 후취담보에 의한 대출취급방식 신설이다.

2007년 7월 9일 6차 개정 내용은 1) 개성공단 투자자산 담보인정비율 상향 조정, 2) 개성공단 투자자산 후취담보 대출취급요건 개선, 3) 대출조건 예외취급 전결권의 하부위임, 4) 채권보전 방법에 따른 신용위험가산을 현실화, 5) 경협 투자자금 대출 소요자금 산정방법 현실화, 6) 부분보증 신용보증서부 신용대출 특례 개선, 교역자금 실적한도대출의 재대출 조건 탄력적 적용, 7) 개성공단 이외 북한소재자산 신용대출 특례 및 단기 반출입거래 신용대출 특례 요건 강화, 8) 부분보증 신용보증서부 대출 특례 도입 등이다. 개성공단 가동 이전과 이후 개성공단 생산이 궤도에 오른 가운데 이뤄진 5, 6차 개정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9년 5월 1일 7차 개정은 1) 반입·반출자금



개성공단 투자기업 착공식(2006. 2. 9.)

대출 범위를 확대해 대출 대상을 물품 이외에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 확대하였으며, 2) 대출이자율의 하한선(1%)을 도입했다.

이후 2009년 9월 16일 8차 개정 및 2011년 6월 22일 9차 개정을 통해 일부 문언조정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정의 명확화가 이루어졌고, 2012년 7월 27일 및 2015년 7월 27일에 규정 재검토기한에 따라 재검토기한 연장이 이루어졌다.

2. 기금보험제도 도입과 변천

기금보험제도는 손실보조제도로 시작되었으며,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3호에 근거하여 1991년 남북협력기금이 처음 조성되면서 함께 마련되었다. 그러나 세부기준의 미비, 남북관계 불확실성 등으로 1991년 천지무역에 대한 보험금 12억 6,800만 원 지급을 제외하고는 집행실적이 없었으며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관련업계에서 제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였고, 2003년 8월 남북간 4대 경협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거쳐 정식 발표되면서 남북간 교역 및 경협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에따라 통일부는 민간경협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2004년 1월 기금운용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였고 2004년 5월 교역보험, 동년 9월 경협보험을 각각 시행하게 된다. 최초 시행시 보상한도는 20억 원이었으나, 이후 남북 간 거래 확대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한도를 확대하여 2008년 12월 50억 원, 2009년 6월 70억 원으로 증액했다.

2005년 1월에는 수수료율을 개선하여 위험부담 정도에 따른 요율을 차등화 했으며, 지급사유 발생요건을 6개월 이상 사업정지에서 3개월 이상 사업정지로 완화했다. 또한 2007년 2월에는 약정불이행 위험의 범위에 남한 당국의 조치를 추가하는 한편 도입 당시 손실보조라는 용어가 주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10월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역·경협보험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2009년 7월에는 지급사유 발생요건을 3개월 이상 사업정지에서 1개월 이상 사업정지로 추가 완화하였고, 2009년 8월에는 개성공단 교역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2009년 9월에는 대북 경협기업의 투자위험을 경감하고 대북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협보험 가입 대상을 기존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수리 사업까지 확대했다.

2015년 1월에는 2013년 개성공단 일시 가동중단 후 보험금 지급시 발생했던 문제점 및 보험가입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보험금 지급전 사업재개 시 손실액 산정 기준을 최근 연도 결산자료로 구체화하고, 결산 이후 투자 및 회수 금액도 반영하였으며, 보험금 반납 절차 등 대위권 행사 방법을 구체화하고 연체금 부과 근거도 명시하는 등 경협보험 제도에 대한 큰 폭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제2장

지원실적과 발전방향 모색

1절 기금의 확충 및 지원실적

1. 조성실적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출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재원으로 하며, 일부 민간 부문의 출연금도 포함되어 있다. 남북협력기금 재원으로는 1991년 정부출연으로 250억 원을 조성한 이래 2015년 12월 말까지 정부출연금 4조 8,013억 원, 민간출연금 27억 원, 운용수익금 7,129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6조 7,943억 원, 기타 수입금 2,180억 원 등 총 12조 5,292억 원이 조성되었다.

정부출연은 IMF 외환위기 이후 2년(1998~1999) 동안 정부재정의 어려움으로 일시 중단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8년 6,500억 원에 이르렀으나, 이후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기금집행 부진으로 출연이 중지되었고,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에 대한 이자집행분에 한해 2012년부터 출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차입은 주로 경수로사업 지원을 위해 차입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것으로서 경수로사업이 시작된 1999년 1,498억 원

차입을 시작으로 2015년 말까지 총 6조 7,943억 원을 차입했다.

2015년 말까지 기금운용수익의 누계액은 7,129억 원이며, 기타수익금과 민간출연금은 각각 2015년 말까지 2,180억 원과 27억 원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

2. 지원실적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3월 제41회 세계 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남북한 단일팀 구성사업에 1억 6,400만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3건의 사업에 22억 원이 첫 해 지원되었다.

1993년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선언으로 촉발된 한반도 북핵위기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특히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특사교환 실무회담에서 나온 ‘서울 불바다’ 발언은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러한 북한의 반응으로 미국이 항공모함 5척을 동해로 보내는 명령을 내리는 등 한반도의 위기는 최고점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금 지원이 일시 중단되었다.

■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2015년 말 현재)				(단위 : 억 원)
조성		운용		
정부출연금	48,013	사업비	유상지원	29,847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67,943		무상지원	31,627
기금운용수익	7,129	기금관리비		343
기타 수입	2,207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상환		63,475
합계	125,292	합계		125,292

이런 급박한 상황이 완화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카터 전대통령이 1994년 6월 방북하여 김일성 주석과 면담을 하면서부터였다. 면담 이후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경수로발전소 2기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경수로사업은 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이 체결한 ‘제네바기본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시설 동결 및 해체에 대한 대가로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1,000MW급 경수로 발전소 2기를 건설·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에 차관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집행이사국들은 1998년 11월 9일 경수로 사업비의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재원 분담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예상 사업비 46억 달러 가운데 70%인 32억 2,000만 달러(약3조 5,420억 원 상당)를 원화로, 일본은 10억 달러 상당을 엔화(1,165억 엔)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중유제공비용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여타 소요재원을 조달하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집행이사국의 기여액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 조달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1999년 7월 2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차관공여협정을 체결하고 8월 12일 국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1999년 12월 15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본공사 사업비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방침 결정과 수은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체결한 차관계약에 따라 경수로차관을 제공했다.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의혹이 일면서 2002년 11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집행이사회는 공급중단을 결정했으며, 이어 2003년 12월 1일부터 경수로 사업 일시 중단을 발표하였다.

경수로사업 일시 중단 이후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종전의 강경입장을 그대로 고수함에 따라 결국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는 2006년 5월 31일 경수로사업의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다.



경수로 공사 현장(1998.)



남북정상회담(2000. 6. 15.)

차관 주요 조건

차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출금액	3조 5,420억 원 (예상 사업비 46억 달러의 70%인 32.2억 달러 상당 원화)
대출통화	대한민국 원화
상환기간	각호기 공사완공 후 20년(3년 거치 포함)
상환방법	연 2회 정기 균등분할 상환
이자율	없음
상환조건	현금 상환 (한국정부 동의 시 현금이외의 방법으로 상환가능)

1994년 북한 핵문제가 일단락되고, 남북한 긴장 관계가 완화되면서 1995년에는 북한 식량부족사태 해소를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쌀 15만 톤, 1,82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후 1999년까지 지원은 계속되었으나, 연간 지원거래수와 규모는 크지 않았다.

실적이 미미하던 기금지원이 대폭 증가한 것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였다.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됨에 따라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인적왕래가 활발해지면서 기금지원 분야도 다양화되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변화의 서곡이었다. 2000년 이전까지 비료·쌀 지원 등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대부분이었고 경수로 건설사업 등 일부 경제 분야에서 산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변화였다.

남북협력기금의 가장 큰 변화는 2000년 ‘6·15 공동선언’에 따라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면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다. 이후 2002년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하면서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비용으로 1,510억 원을 지원했으며, 2004년부터 우리 기업이 입주를 시작했다. 이후 남북협력기금은 생산 기반시설 확충과 기술교육센터, 지원센터 및 아파트형 공장 건설에 739억 원을 지원했다.

2008년부터는 북핵문제로 남북 대화가 단절되면서 식량 및 비료 지원은 중단되었으나, 수해복구 등 긴급구호 자금 지원은 계속되었으며, 2010년 연

평도 포격사건 이후에는 국제기구 추진사업에만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되었다.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보건, 의료, 어린이 영양개선, 산림병해충 방제 등 인도적 지원에 사용된 기금은 1,341억 원이었다.

2015년 말 현재 지원실적은 총 1,628건, 6조 1,474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중 무상지원은 865건, 3조 1,627억 원으로 전체의 약 52%를 차지했으며, 대북 비료지원과 식량지원 등 인도적지원 1조 6,387억 원,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지원과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비용 지원 등 교류협력기반조성사업지원 1조 1,515억 원, 금강산 관광 경비 지원과 부산아시아게임 참가지원 등 인적왕래지원 404억 원,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지원 및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지원 등 이산가족교류지원 967억 원, 그밖에 사회문화협력지원이 536억 원, 교역·경협보험 1,817억 원을 지원했다.

유상지원은 763건, 2조 9,847억 원으로 2015년 말 현재 총 지원누계금액의 약 48%를 차지했으며, 경수로사업지원 1조 3,744억 원, 식량차관과 자재·장비차관 등 민족공동체회복대출 1조 1,696억 원, 개성공단 입주기업대출, 금강산 관광사업 대출 및 교역기업 앞 교역자금 대출 등 교역경협사업 대출 4,408억 원을 지원했다.

2절 향후 발전 방향 및 전망

1.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발전 및 민족공동체회복을 위한 지렛대 역할로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교류 지원, 남북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 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남북관계가 활발하지 못했던 시기에는 인도적 지원 비중이 높으나, 남북관계가 우호적일 때에는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이는 기금지원이 단순한 원조성격이 아니라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고 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최근 집행실적이 부진한 편이지만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 기금지원이 양적으로 증가함은 물론이고 역할과 지원범위도 다양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므로 기금은 교통, 항만, 발전 등 인프라 개발협력 지원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민간자금과 국제자금 조달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위해 중장기 비전에 따라 기금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보다 체계화된 지원계획 수립도 요망된다.

2. 다양한 재원 마련과 지원 원칙의 확립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다

양한 재원확충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민간참여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프로젝트 파이낸스, 남북협력보증보험, 대북 인프라 투자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재원확충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정부재원이 가장 중요한 재원이지만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국내외 경제상황, 국민여론 등을 고려하면서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큰 숙제가 될 것이다.

재원조달과 함께 제기되는 중요한 과제는 원칙에 입각한 기금지원 시스템 마련이다. 남북협력기금은 1999년 첫 지원을 실시한 이래 남북한의 관계에 따라 지원의 부침이 심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는 기금이 정치적 요인을 비롯한 외부 환경에 따라 지원 중단과 지원 개시를 오간 상황과 무관치 않다.

남북협력기금이 활성화되고,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물꼬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지원 원칙과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외부적 요인

을 무시할 수 없지만, 남북협력기금 설립의 정신을 살리려면 지원의 틀을 깨지 않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 역시 국민의 지지와 공감의 바탕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의 투명한 집행과 함께 남북협력기금의 역할을 올바르게 알리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다.

■ 남북협력기금 지원실적(2015년 말 현재)													(단위 : 백만 원)	
		자금종류	1991~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경상사업	남북교류 협력지원	인적왕래지원	30,200	5,289	1,698	2,721	-	-	30	-	-	460	-	40,398
		사회문화협력지원	14,416	7,375	6,908	3,847	3,029	2,119	2,586	2,338	2,045	2,846	6,135	53,644
		교역경험보험	-	-	-	-	-	-	4,377	-	177,144	52	77	181,650
		소 계	44,616	12,664	8,606	6,568	3,029	2,119	6,993	2,338	179,189	3,358	6,212	275,692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이산가족교류지원	26,596	9,908	26,918	18,241	2,152	1,987	95	440	2,078	3,083	5,241	96,730
		인도적지원사업	1,038,064	212,536	227,193	59,682	29,367	19,197	10,174	2,385	13,251	14,765	12,128	1,638,742
		교류협력기반조성(경제분야)	504,192	152,091	172,540	110,074	41,461	17,675	12,442	42,109	26,622	44,083	28,220	1,151,509
		소 계	1,568,852	374,535	426,651	187,997	72,980	38,859	22,711	44,934	41,951	61,931	45,589	2,886,981
	합 계		1,613,468	387,199	435,257	194,565	76,009	40,978	29,704	47,272	221,140	65,289	51,801	3,162,673
용자사업	인도적사업(용자)		639,770	3,939	140,479	12	-	-	-	-	-	-	-	784,200
	남북교류 협력지원	교역경협사업자금대출	168,128	47,910	56,631	10,807	15,416	41,569	7,490	18,282	55,549	19,000	-	440,782
		교역자금대출	31,832	7,327	8,288	7,834	8,416	31,243	5,761	14,885	-	2,993	-	118,579
		경협사업자금대출	136,296	40,583	48,343	2,973	7,000	10,326	1,729	3,397	55,549	16,007	-	322,203
		민족공동체회복지원대출	205,564	23,065	83,369	25,820	8,596	3,703	5,489	3,822	19,094	3,289	3,556	385,367
	대북경수로 사업	경수로사업대출	1,365,510	8,883	-	-	-	-	-	-	-	-	-	1,374,393
	합 계		2,378,972	83,797	280,479	36,639	24,012	45,272	12,979	22,104	74,643	22,289	3,556	2,984,742
총 계		3,992,440	470,996	715,736	231,204	100,021	86,250	42,683	69,376	295,783	87,578	55,357	6,147,415	

한국수출입은행의
조직과 경영





제3부

제1편
조직 운용과 변천

제2편
경영관리



제1편

조직 운용과 변천

제1장

개요

1절 성장과 확장의 연대기

수은은 설립 당시 업무부, 기획조사부, 총무부와 감사실 등 3부 1실에 임직원 80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으로 출범했다. 정책결정기구로는 「수은법」과 수은법 시행령, 정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는 운영위원회를 두었다.

설립 1년 뒤 내부 경영진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설치해 업무 전반에 걸쳐 주요 사항을 결정토록 했으며, 대출심의 위원회, 업무심의 위원회, 국별신용도 평가 위원회를 설치해 은행장의 정책 결정에 자문하도록 했다. 이후 업무 영역과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1980년 말에는 8부 5실 1개 국내출장소 6개 국외사무소로 조직이 확대되었으며 임직원도 437명으로 늘어났다.

1980년대에는 선박, 플랜트 등 자본재 연불수출 및 해외투자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직접 대출, 전대 자금 대출, 수입자금 대출 등 다양한 업무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크고 작은 조직개편을 거듭했다. 1987년 정부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업무를 수탁하고, 금융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는 해외 현지법인을 1988년 홍콩에 최초로 설립하며 조직이 확대돼 1990년 말 15부 4실 2부속실에 1국내 지점, 1국내출장소, 9국 외사무소, 1해외현지법인을 둔 조직으로 성장했다.

1990년대에도 자금공급 규모 확대, 남북기금 업무 수탁, 업무전산화 추진 및 수출보험 업무 분리 등 업무환경이 크게 변하고, 플랜트를 포함한 첨단기술산업과 해외투자 지원 확대에 힘입어 1997년 조직은 16부 2실, 1연구소, 5부속실, 6국내지점, 15국



창립 당시 직원들(1976. 7. 1.)

외사무소, 4해외현지법인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1997년 말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1998년, 1999년 두 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본점 내 조직이 통폐합되었고, 국외네트워크는 대륙별 거점만 남겨두고 모두 폐쇄되었다. 1997년 46개에 달하던 국내외 부점을 2000년 말에는 12부 3실, 1연구소, 5국내 지점, 1국내출장소, 5국외사무소, 3현지법인으로 줄이는 대대적인 축소작업이었다.

2절 2000년 이후의 조직 변화

2001년 이후 수은은 다시 활기를 찾았다. 수출입 금융, 경험기금, 남북협력기금 업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를 뒷받침하고,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조직 재정비가 추진되면서 점차 조직을 확대했다. 2002년 본부제와 팀제가 도입되었고, 2003년 이후에는 국내외 네트워크가 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후에도 업무 전문화와 세분화가 진행되며 조직 규모도 늘어 2007년 말 7본부, 13부, 14실 1연구소, 9부서내 실, 11국내 지점, 13국외사무소, 4해외현지법인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2008년 유럽발 외환위기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2009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수은 조직은 다시 대대적인 재편작업에 돌입했다. 그 결과 본점부서 통폐합 및 강남지점, 프랑크푸르트 사무소를 폐쇄하며 2009년 말에는 7본부, 1단, 16부, 6실, 1연구소, 10국내 지점, 12국외사무소, 4해외현지법인으로 축소되었다.

2010년에 들어와서는 지식문화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해외프로젝트 수주, 해양 선박금융,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정부의 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 신설되고, 금융투자 업무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지속적인 조직 확대가 이뤄졌다. 그 결과 2015년 말 기준 9본부, 2단, 1연구소, 19부, 20실, 10국내 지점, 3국내출장소, 21국외사무소, 4 해외현지법인 체제를 갖추었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제2장 정책결정기구

수은은 정책결정기구로 유관 정부부처·유관기관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어 업무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상근 및 비상근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운영 위원회 소관사항 이외의 업무전반에 걸친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이 밖에 다수의 위원회를 설치해 은행장의 업무 관련 의사결정에 자문하고 있다.

1절 운영위원회

1. 운영과 구성

운영위원회는 이사회 상위 기구로 「수은법」과 그 시행령 및 업무방법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한다.

운영위원회는 수출입은행장,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인, 한국은행총재 및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그 집행간부 또는 이사 중에서 지명하는 각 1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산업통

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출업자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지명하는 1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그 임원중에서 지명하는 1인, 민간 운영위원 2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은 수출입은행장이 맡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역할 변화

1969년 「수은법」 제정 당시 이사회만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는 없었으나, 1974년 12월 1차 「수은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를 폐지하고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는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등 수은의 업무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방향과의 조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운영위원회는 업무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 시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1976년 수은 설립 이래 2015년 말까지 234회 개최되어, 69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1980년대 말까지의 연평균 30건의 안건이 부의·심의되었으나, 이후 처리 안건이 점차 감소하고 있

다. 이는 운영위원회 권한이던 여신승인 등 업무집행 사항이 이사회로 이관되면서, 정관 및 업무방법서 변경, 연도별 업무계획 수립 등 업무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만 의결하는 기구로 역할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2절 이사회 및 경영위원회

1. 운영과 구성

이사회는 은행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의사결정기구로 정관 및 업무방법서의 개정, 업무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 결산, 이익금 및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는 은행장, 전무이사 및 비상임(사외) 이사를 포함한 이사를 구성원으로 하며, 감사는 이사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의장은 은행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경영위원회는 2006년 8월 최초로 구성되었으며, 최초 구성시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인사·보수·

복지관련 규정, 직제관련 규정, 일반업무 관련 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기구, 조직, 직제 분과에 관한 사항’,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단, 정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제외)’ 등을 심의·의결했으며, 현재는 8차례의 개정을 거쳐 ‘중장기 경영 전략,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단,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제외)’ 등을 심의·의결한다.

경영위원회는 은행장, 전무이사, 본부장으로 구성되며, 은행장이 의장이 된다.

2. 변천과정

「수은법」 제정 당시 규정된 이사회는 1974년 12월 1차 「수은법」 개정으로 운영위원회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1976년 수은이 정식 설립되면서 수은 경영진으로 구성된 정책결정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77년 12월 2차 「수은법」 개정에서 이사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면서 부활됐다.

수은 조직이 안정된 1980년대에 들어서는 운영

■ 수은 설립 이래 운영위원회 업무처리 실적

	1976~1980	1981~1990	1991~2000	2001~2010	2011~2015	합계
회의소집	83회	100회	32회	12회	7회	234회
안건 ^{주)}	216건	266건	109건	65건	40건	696건

주: 서면결의 안건 포함



제1차 운영위원회(1976. 7. 2.)

위원회의 권한이 대거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이전 되면서 이사회가 수은 업무를 관장하는 의사결정 기구가 되었다.

업무확대로 이사회 의결 사항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2006년 8월에는 이사회 운영 효율성 및 업무 처리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처리하는 의결기구로 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당시 경영위원회로 이관한 업무는 기구조직직제분과, 예비비 사용, 주요계약 체결 변경 해약, 자산 감가상각 또는 가격변경 사항이었다. 2009년 7월에는 은행경영전반에 관한 중요사항 및 방침만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기타 일반사항은 경영위원회로 대폭 이관했다.

이후 이사회 의결사항과 경영위원회 의결사항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수차례 조정되었다. 2010년 7월에는 경영위원회에 위임한 직제분과규정, 취업규칙이 다시 이사회에 위임되었고, 2013년 3월에는 인사, 보수, 복지 관련 규정도 이사회로 이관되었다.

3절 주요 자문회의

리스크관리위원회

1998년 9월 설치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재무건전

성 및 안정적 수익기반 확보를 위해 경영전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의 종합적인 관리를 하며, 위험 분산을 위한 각종 한도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은행장 자문 역할을 한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비상임(사외) 이사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전무이사, 상임이사, 비상임 이사로 구성되며, 간사는 리스크관리담당 부서장이 맡는다. 위원장은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 이후 줄곧 전무이사가 수행했으나, 리스크관리의 독립성 및 역할 강화를 위해 2013년 12월부터 비상임(사외) 이사 중 1인이 맡도록 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기본정책, 환율 및 금리 등 경제전망에 따른 리스크관리 대책, 자산·부채 종합관리, BIS자기자본비율 관리 및 Total Exposure한도를 비롯한 각종 한도의 설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은행장에게 보고한다.

국별신용도평가위원회

1977년 9월 설치된 국별신용도평가위원회는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대상국가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은행장 자문기구이다. 국별신용도 평가는 대상국가의 정치·경제의 안정성, 외채상환능력, 경제성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수은 여신의 안정성과



자문위원회의(2003. 7. 2.)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별신용도평가위원회 구성원은 국별신용도평가담당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국별신용도평가담당 부서장, 여신기획담당 부서장, 리스크관리담당 부서장, 경험기획담당 부서장, 국별 신용도평가 요청 부서장이 위원이다.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수은 설립과 함께 설치된 은행장 자문기구로 인사제도, 주요직원 임면, 직원의 포상 및 징계, 직원의 연수계획 등 인사와 연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인사위원회는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해 상임이사, 본부장 및 인사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되며, 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 의견을 은행장에게 제출한다.

기타 자문위원회

이외에 출자회사경영평가위원회, 전산화추진위원회, 여신관리위원회, 제안심의위원회, 이미지통합관리위원회, 수은3.0추진위원회 등의 자문기구를 두고 있다.



제2차 「수은법」 개정으로 부활된 이사회 회의(1977. 12. 29.)

제3장 본점

1절 본점 조직 변천

수은은 1976년 7월 1일 설립 당시 업무부, 기획조사부, 총무부, 감사실로 구성된 3부 1실로 업무를 개시했다.

설립 이후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2015년 말까지 총 84차에 걸친 직제개편이 있었다. 시기별로 조직 변천의 배경을 살펴보면, 1980년까지 설립 초기는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연불수출지원 체제 구축과 정부대행 업무인 수출보험 업무를 인수함에 따라 조직이 8부 5실, 1국내출장소, 6국외사무소로 점차 조직이 확대되었다.

1981~1990년까지 10년 동안은 직접대출, 전대자금 대출, 수입자금 대출 업무가 도입되고 플랜트 수출, 자원개발사업 지원이 본격화되었으며, 자금조달을 위해 해외차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관련 조직이 정비되었고, 1987년에는 정부로부터 경협기금 업무를 수탁하면서 신규 부서 설치와 인력이 늘어났다.

또한 해외투자의 연구 및 정보 제공 업무 강화를 위해 1988년 해외투자연구소를 설치해 기존 해외투자 조사부를 산하에 두었다. 1988년 8월에는 국제금융 업무 및 해외 자금조달 업무의 전문화를 통한 금융의 국제화 및 개방화 추세에 대비해 처음으로 자회사인 홍콩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이에 따라 1990년 말 수은의 기구는 15부 4실 2부속실, 1국내지점, 1국내출장소, 9국외사무소, 1해외현지법인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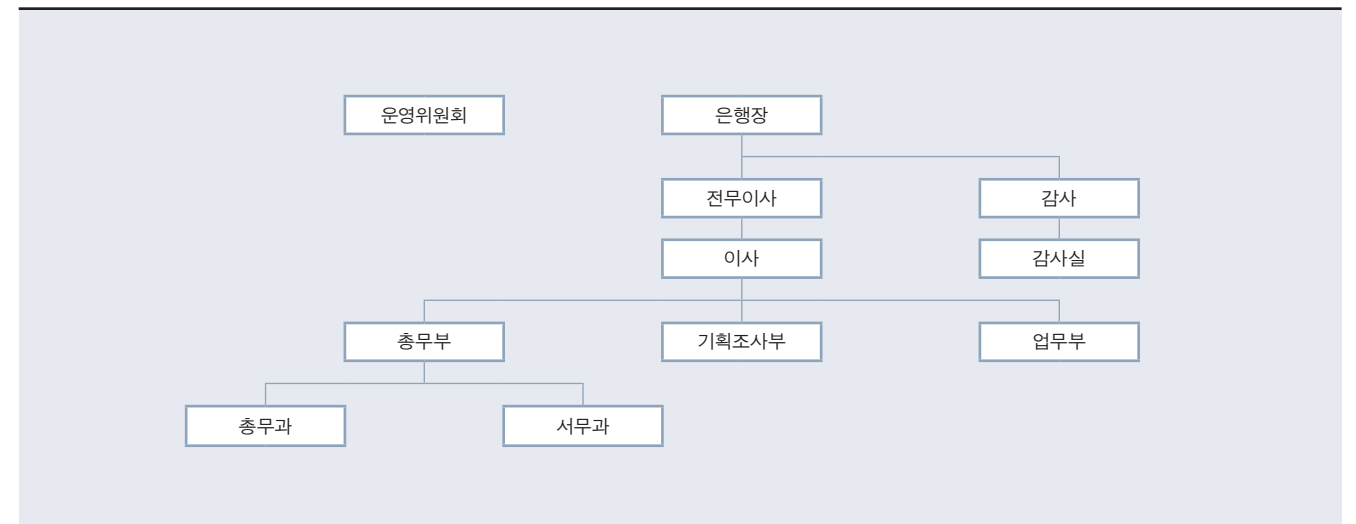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은 자금공급 규모

확대, 남북기금업무 수탁, 업무 전산화 등 업무 확대와 함께 내실을 다진 시기였지만, 설립 이후 최초로 조직이 축소되는 아픔도 겪었다. 1992년 수출보험 업무가 분리되면서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로 1998년 6월과 1999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조직 규모가 48% 감소했다. 그 결과 2000년 말 수은은 12부 3실, 1연구소, 5국내지점, 1개 국내출장소, 5국외사무소, 3해외현지법인으로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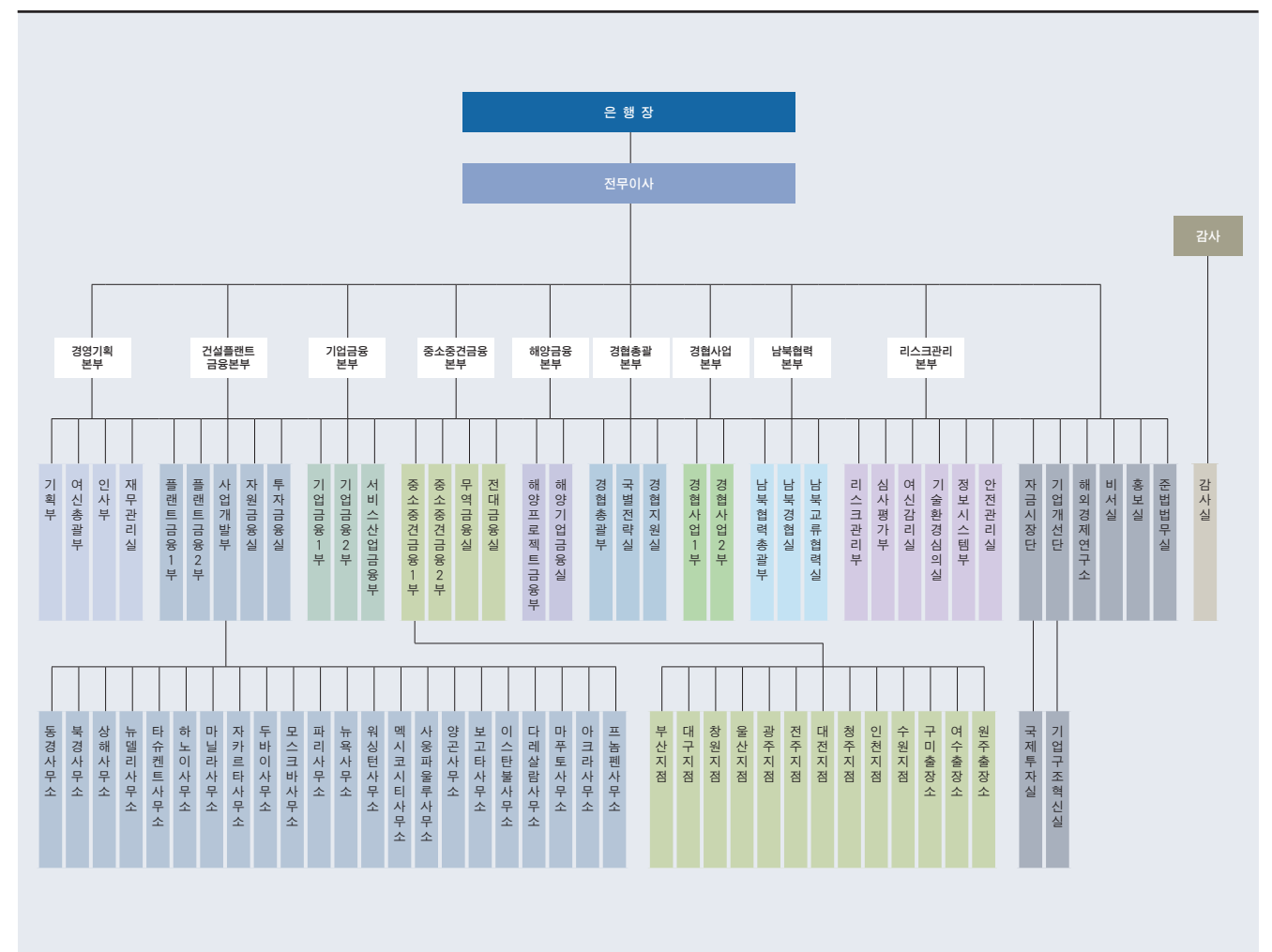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은 수출입금융, 경제협력기금, 남북기금 등 업무 전 부문에 걸쳐 대폭적인 성장을 구가하며 업무량이 폭증한 시기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이 재구축 되었다. 산업설비, 선박 등 해외프로젝트가 대형화되고 금융조달방식이 다양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스트럭처드 파이낸스(S/F) 등 맞춤형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으며, 선박 스트럭처드 파이낸스금융, 외항선박금융, 포페이팅, 수출팩토링 등 신규 업무를 대폭 도입했다. 특히 본부제와 팀제를 도입하면서 조직의 효율을 높이는 작업에 치중했다. 그 결과 2010년 말 7본부 12부 12실, 1연구소, 12부서내실, 10국내지점, 12국외사무소를 두었으며, 자회사로 4개의 해외 현지법인을 운영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정부정책을 실행하는 대외거래 핵심은행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진 시기였다. 해외건설·플랜트, 조선해양, 해외자원개발 등 국가전략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창조,

수은 설립 당시 조직도



조직도(2016)





해외투자연구소 현판식(1988. 12. 5.)



한국수출보험공사 창립으로 수출보험 업무 분리(1992. 7. 7.)

서비스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조직이 신설되는 등 정부정책에 부응해 조직의 체제 정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13년 정부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발표 및 2014년 「수은법」 개정 등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은의 중장기 전략 재정립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2014년 외부컨설팅 업체에 조직진단을 의뢰해 그 결과를 토대로 조직구조를 재설계했다.

2015년에는 고속성장에 따른 급격한 여신 확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리스크관리본부 등 내부통제 조직을 보완했다. 2015년말 수은 조직은 9본부, 2단, 1연구소, 19부 20실, 10국내지점, 3국내출장소, 21국의 사무소, 4해외현지법인에 이르고 있다.

2절 금융 부문 조직 변천

1. 여신 지원 조직의 통합과 분할

수은은 설립 당시 업무부가 연불수출금융 지원업무를 담당했으나, 1977년 1월 업무부를 심사부와 금융부로 분리하면서 업무량 분산과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심사부는 대출의 심사과 승인, 여신운용지침 등 여신에 관한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금융부는 대출승인에 따른 자금 집행과 대출금회수, 담보권 실행 등 여신의 사후관리 및 관련 외환업무를 담당했다. 한편 같은 해 8월 대출심사 업무가 증가하고 1979년부터 외국인에 대한 직접대출과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전대자금대출 업무의 취급에 대비해 심사부를 심사1부와 심사2부로 분리했다.

1985년 9월에는 금융부를 금융1부와 금융2부로 분리하고 업무량 증가에 대처하면서 사후관리 업무도 보강했다. 1989년 2월에는 지원대상 품목 확대, 수입자금 및 해외투자자금 대출수요 증가 등 업무여건 변화에 따라 여신부서의 업무를 자금별로 재조정했고, 1990년 2월에는 여신제도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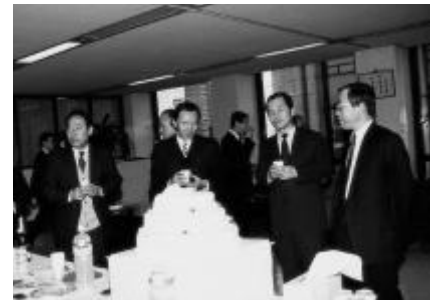
및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여신총괄부를 신설했다.

1991년 1월에는 여신의 승인과 집행기능을 통합하고 자금별 또는 품목별로 여신부서 업무를 전문화했다. 이를 위해 심사1, 2부와 금융1, 2부를 선박금융부, 산업설비금융부, 해외투자금융부, 수입금융부 4개부서로 재편했다. 선박금융부는 선박수출에 대한 대출 승인 및 집행 업무, 산업설비금융부는 선박 이외의 품목에 대한 수출자금 대출과 전대자금 대출 업무를 전담했다. 한편 해외투자금융부는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 관련 업무, 수입금융부는 수입자금 대출 승인과 집행 이외에 사후관리와 외국환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1991년 11월에는 여신총괄부가 여신기획 기능 강화에 따라 여신기획부로 바뀌었으며, 1992년 8월에는 여신기획부 산하에 기술실을 신설하고, 수입금융부가 일괄 담당하던 사후관리 업무를 각 여신부서로 이관시켰다.

1994년 2월에는 여신기획부를 폐지하고, 여신부서를 개편해 생산성 및 전문성 제고와 거래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에 주력했다. 이를 위해 산업설비금융부는 담당업무를 지역별로 분장해 아시아(중국, 일본 제외), 유럽, 아프리카는 산업설비금융1부, 기타 지역은 산업설비금융2부가 담당했으며, 해외투자금융부도 2개 부서로 분리해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해외투자금융1부, 기타 지역은 해외투자금융2부가 관장했다.

1995년 2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해외투자금융1, 2부를 해외투자금융부로 통합했다. 한편 여신관련 업무를 기획 및 통괄하는 여신개발실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지원팀을 설치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산업설비금융1, 2부를 지원품목에 따라 산업설비 수출지원, 기술제공자금 지원 및 직접대출을 담당하는 산업설비금융부와 일반기계류에 대한 수출자금 지원 및 새로 도입된 자본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일반기계금융부로 개편했다. 또한 역외금융은 여신업무이면서 역외자금 조달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제금융부에 역외금융팀을 신설했다. 한편 중소기업지



여신개발실 신설(1995. 2. 10.)

원팀은 6개월 만에 폐지하고, 자금 성격에 따라 업무를 각 여신부서 및 여신개발실로 이관했다. 그러나 1996년 2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부응해 여신개발부에 중소기업지원팀을 부활시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한편 해외투자정보팀의 폐지에 따라 해외투자금융부에 해외투자 관련정보의 제공, 거래선 알선 업무가 추가되었다.

1998년 1월에는 IMF 외환위기로 역외자금의 신규 조달 및 대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역외금융실을 폐지하고 역외금융 관련 업무를 국제금융부로 이관하고, 부실여신 급증에 대비해 여신총괄부에 특수여신관리팀을 신설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팀을 중소기업수출금융부로 확대 개편해 중소기업 수출금융을 전담토록 했다.

1998년 5월에는 자원금융부에 무역금융지원팀을 신설하고 IMF 외환위기로 인한 국내 시중은행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어음재할인 업무를 시행했다. 1998년 6월에는 구매자금금융을 전담하도록 구매자금금융부를 신설하고, 1999년 1월에는 해외사업금융부에 해외여신관리실을 신설해 현지법인에 대한 통할 및 인수자산 사후관리, 역외금융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2. 전문성 강화와 본부제 도입

2000년 1월에는 무역금융부의 수입전대자금 관련 대출업무, 국제금융부의 외국은행이 공여하는 전대차관(Line of Credit) 한도설정 업무, 구매자금금융부의 전대자금 대출업무(소비재차관 포함)를 무역금융부로 단일화했다. 2001년 2월에는 해외건설사업 보증수요 증가에 따라 산업설비수출금융부에 건설보증팀을 신설했으며, 해외여신관리실을 해외리스크전략팀으로 개편했다. 또한 구매자금금융부에 수출신용 관련 금융자문 용역업무(Export Credits Advisory Service: ECAS)를 추가해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를 위해 거래 초기단계부터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자문·주선 용역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그리고 선박 및 해양설비에 대한 직접대출업

무를 구매자금금융부에서 선박금융부로 이관했다.

2002년 1월에는 핵심역량 강화와 책임경영체제의 구축을 위해 구매자금금융부, 산업설비금융부, 중소기업수출금융부, 해외사업금융부, 무역금융부 5개 여신 부서를 연불수출금융본부, 무역금융본부, 중소기업금융본부 및 해외투자금융본부 4개 본부 체제로 개편했다. 이와 함께 여신 건전성을 높이고 신용분석 업무 전문화를 위해 신용평가실을 리스크관리부에 신설했다.

2003년 2월에는 수입금융팀을 수입금융실로 개편하고, 해외투자금융본부의 역외금융 및 현지법인 관련 업무와 자금부의 외화채권투자 업무를 통합해 자금부에 국제투자금융실을 신설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지원실도 신설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계열선정방식 변경을 반영해, 중소기업금융본부 지원대상을 60대 계열 이외의 기업에서 중견(30대 계열이외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조정했고, 신용도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수출특례신용대출을 도입했다.

2004년 1월에는 본부제 강화를 위해 연불금융본부(선박금융실), 무역금융본부(외환업무실, 수입금융실), 해외투자금융본부, 중소기업금융본부의 4본부 3실 체제에서 연불금융본부(연불금융부, 선박금융부, 전대금융실), 무역투자금융본부(무역금융부, 해외투자금융부, 외환업무실, 수입금융실), 중소기업금융본부인 3본부 4부 3실 체제로 변경했다.

2005년 5월에는 본부제 전면 실시에 따라 여신 부문을 수출입금융 1본부 및 수출입금융 2본부 체제로 전환해 프로젝트 특성과 구조에 맞는 맞춤형 금융 및 일괄서비스(One-Stop Service) 기능을 높였으며, 은행전대실의 명칭을 전대금융실로 변경해 취급업무(전대자금대출)에 대한 고객 이해도를 높였다. 2005년 10월에는 외환업무실을 무역금융부로 확대 개편해 포페이팅과 수출팩토링 업무 증가에 대비했으며, 국제팩토링팀 외에 무역금융팀을 신설해 포페이팅, 무역어음재할인, 기타 외



자원금융부 무역금융지원팀 개설(1998. 6. 4.)



대규모 인사 및 조직개편(2004. 1. 28.)



신성장금융실 회의(2011. 7. 26.)

환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무역금융부는 일반수출금융부, 무역금융팀은 일반수출금융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3. 신성장산업 지원 체제 정비

2006년 2월에는 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또는 자산 총액 5,000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소기업금융부에서 일반수출금융부로 이관했다.

2007년 1월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 증가 및 PF 방식 등 금융수요 증가에 맞춰 자원개발금융실을 신설하고 전담지원체제를 구축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국내 단기여신을 취급하는 일반수출금융부와 수입금융실을 기업금융부로 통합해 국내차주 대상 단기성 수출자금 및 수입자금을 일괄 취급했고, 중소기업 대출은 중소기업금융부에서 전담했다. 한편, 신성장산업금융실을 신설하고 지식문화컨텐츠, 방위산업, 환경산업 분야로 지원을 확대해 중장기여신 업무기반과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에 힘을 보탰다.

2009년 12월에는 자원개발금융부에서 자원개발 관련 설비수출 거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 관련 거래 전반을 취급하도록 명칭을 자원금융부로 변경했다. 한편, 선박금융부에서 해양설비 수출거래에 대한 직접대출을 취급하도록 하고, 녹색성장금융부에서 녹색사업 관련 수입거래를 담당했다.

2010년 12월에는 원전, 고속철도 건설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신성장금융본부를 신설하고 본부 내 신성장금융실을 신설하여 지식문화콘텐츠, 방산, 고속철도 등 신성장산업 부문을 담당했다.

2011년 6월에는 주요 사업 총괄, 조정 및 금융자문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여신총괄부를 총괄사업부로 전환하고 부내에 금융자문실을 신설했으며, 여신기획 기능의 일원화를 위해 중소기업금융기획업무를 총괄사업부로 이전하고 중소기업지원단을

중소기업금융부로 바꾸었다.

2012년 6월에는 금융자문 및 주선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자문실을 금융자문부로 확대했으며, 2012년 12월에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업무에 대한 컨트롤 타워 조직인 기업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산하에 상생금융실, 히든챔피언사업실, 중소중견금융부를 배치했다. 2013년 6월에는 히든챔피언사업실과 상생금융실을 통합해 기업성장지원부를 신설했으며, 구미, 여수, 원주 3개 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해 중소·중견기업 지원 역량을 높였다.

2014년 8월에는 정부의 해양·선박금융 강화 중합대책에 따라 해양·선박금융 관련 부서를 해양금융본부로 분리 신설했다.

2015년 6월에는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리스크관리단을 확대 개편한 리스크관리본부를 신설했고, 기업개선단을 신설해 기업 구조조정 업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3절 자문 및 투자 부문

1. 사업개발부 조직 변천

2011년 7월, 기업공개(IPO), 증자, 회사채 발행, 구조화금융(Structured Finance), 인수합병(M&A) 등을 주관하고 자문하는 IB(Investment Bank)업무를 신규로 취급하면서 금융자문과 금융주선 전담부서로 금융자문실을 신설했다. 금융자문·주선 계약 수입이 활발해지면서 금융자문실은 설립초기 2개 팀 10명에서 1년 후인 2012년 7월에는 4개 팀 18명으로 늘어났으며 명칭도 금융자문부로 바뀌었다.

이후 2014년 7월 전략사업부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면서 전략개도국에 대한 종합 진출전략 수립, 글로벌에너지인프라 펀드 등 펀드조성 업무를 새롭게 추가했으며, 국제협력업무도 부서 내 팀으로 편입했다.

2015년 초에는 사업개발부로 다시 부서 명칭을



금융자문부 미얀마 투자 세미나(2012. 12. 17.)



MDB 신탁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식(2005. 12. 16.)

변경해 본격적으로 사업개발업무를 취급하게 되었으며, 펀드 업무는 투자업무를 전담하는 투자금융부로 이관했다. 2015년 말 현재 사업개발부는 사업개발1팀과 2팀, 국제협력팀, 3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 발굴, 사업자문, 금융자문, 금융주선은 물론 국제협력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투자금융실의 신설

2014년 6월 투자업무 추진 전담조직인 투자금융실이 신설되었다. 투자금융실이 신설되며 직접투자 업무를 전담하고, 전략사업부가 간접투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단 해양산업 관련 투자 업무는 전문성을 살려 해양프로젝트금융부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후 2015년 7월에는 업무 조정을 통해 해양산업 관련 투자 업무를 제외한 직간접투자 업무를 투자금융실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4절 경험 및 남북 기금 조직

1. 대외경제협력기금 조직과 업무

OECD 환경에 대처하는 조직 개편

1986년 12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 제정되고 1987년 4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으면서, 수은은 1987년 6월 경제협력기금부를 신설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를 개시했다. 이후 개도국의 차관요청 사업이 증가하며 1991년 1월 경험기금부를 경험기금1, 2부로 확대 개편해 경험기금1부는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차관 및 해외투자 지원업무를, 경험기금2부는 그 밖의 지역 업무를 담당했다.

1997년 1월에는 우리나라의 OECD 가입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규모의 확대, 각종 기획, 조사기능의 확충 및 정보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져 중전의 경험기획팀을 경험기획실로 확대 개편했다.

경험기획실은 기획·조사, 기금운용계획, 지원사업의 사후평가 및 효과분석, OECD 관련 업무 중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1997년 말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1998년 6월 경험기획실을 경험지원부 소속으로 전환했으나, 2000년 12월 IMF 위기극복과 함께 사업이 확대되어 2002년 5월 경제협력기금부와 경험기획실을 경제협력기금1, 2부로 개편해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대비했다.

개발금융체제로 전환

2004년 1월에는 본부제를 도입해 기존 2부 체제를 1본부 2실(경제협력본부 예하 경험 1실 및 경험 2실)체제로 변경했으며, 본부 직속 기획팀을 설치해 기획기능을 강화했다. 2005년 5월에는 경제협력본부 기획팀을 경험기획실로 개편해 기획총괄, 기금평가, 대외업무, 예·결산, 사후평가 업무를 수행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체제 개편 추진 작업에 적극 대응해 경험기획실에 '공적개발원조 특별대책반'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개선방안을 위한 국무조정실 업무지원, OECD 및 주요 국가별 공적개발원조 정책 연구조사, 자료발간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일부 기획 업무는 각 부의 사정에 맞게 조정했다. 구매 및 집행 등 사업실행과 관련된 제도개선은 지속적 사례 축적이 필요해 사업실행(Operation) 부서가 직접 기획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매 및 사업실시, 관리 등의 제도개선 업무는 경험 1실이 담당하고, 세계은행(World Bank: WB),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을 통한 사업발굴 및 협조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경험 2실이 국제기구 관련 총괄업무를 수행했다.

2007년 1월에는 경험개발실을 신설해 경험사업개발 역량 강화와 함께 다자개발은행(MDB) 협력업무 전담을 통한 유망사업 선제발굴 및 MDB와의 협조용자 확대를 도모했다.

정부는 ODA 확대 및 2010년 OECD 개발원조



캄보디아 3번 국도 개보수사업(2002. 10.)



남북협력기금 현판식(1991. 3. 22.)

위원회(DAC) 가입을 앞두고, 원조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 인력 양성 등 원조기반 확대와 대외조직 역량강화에 힘을 기울였다. 2008년부터 제3자 평가를 통해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 및 중점 지원국 대상 해외사무소 확대도 결정했다.

이를 계기로 대외경제협력기금 조직과 업무가 비약적으로 성장해 2010년 12월 경험사업부를 경험사업 1부와 2부로 분리했고, 2011년 6월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책·실행 역량강화를 위해 경제협력본부를 경험기획본부와 경험사업본부로 분할해 2본부 체제로 개편했다.

이후 연간 대외경제협력기금 승인규모는 OECD DAC 가입전인 2009년 대비 약 20%(2014년 말 기준) 증가했다. 현재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은 경제·외교적 중요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중남미로 다변화되고, 개도국의 경제개발단계상 수요가 많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교통, 에너지 등 경제 인프라(비중 47%)를 중심으로, 수자원·위생, 보건, 교육 등 사회 인프라 지원도 꾸준히 늘고 있다.

2. 남북협력기금의 조직과 업무

1990년 8월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남북기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수은은 1991년 2월 남북기금부를 설치해 기금지원 사업에 대한 심사,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를 개시했다.

2004년 1월에 남북기금에 본부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1부 1부서내실(남북협력부 및 남북교류지원실)체제에서 1본부 2실(남북협력본부, 남북협력 1실 및 남북협력 2실)체제로 변경했으며, 본부 직속으로 기획팀을 설치해 기획기능을 강화했다.

업무는 기능별 편제 체제로 나누어 유상 및 무상 지원사업은 남북협력1실이 담당하였고, 남북협력2실은 청산결제는행 지정 등에 따른 신규 수탁업무 및 대북교류 업무지원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업무를 담당했다.



남북지원제도 설명회(2006. 5. 12.)



남북협력포럼(2009. 11. 3.)

2004년 7월에는 남북협력본부가 수행하던 남북기금 차관사업(민족공동체 회복지원 등)을 남북협력1실로 이관했으며, 남북협력2실 업무에 외부의 요청에 의한 연구사업 수행을 추가했다. 또한 남북기금 집행관련 사후관리조항에 지원사업 사후평가를 통합해 사업별 사후관리 업무와 사후평가의 중복 문제를 해소했다. 2005년 5월에는 정부 지원·협의 기능의 효율성 제고 및 기획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남북협력본부 기획팀을 협력기획실로 확대해 기획총괄, 기금평가, 대외업무, 예산산, 제도조사를 담당하게 했으며, 2005년 1월 31일 '남북경제교류협력 지원지침' 개정으로 협조대출제도가 도입되면서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채무보증 업무는 남북협력1실이 담당하게 되었다.

2006년 1월에는 협력기획실 업무 중 현업성격인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손실보조(남북기금법 제8조 제3호) 업무와 남북협력 1실 업무 중 기업에 대한 단기자금 대출인 교역자금의 대출과 채무보증(남북기금법 제8조 제3호) 및 민족공동체 회복지원(경수로 사업에 한함, 남북기금법 제8조 제5호) 사후관리 업무를 남북협력2실로 이관했다. 2006년 7월에는 협력기획실의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손실보조 업무와 남북협력실의 교역자금 대출과 채무보증, 대북 경수로 사업 대출 업무를 남북협력2실로 넘겼다.

2007년 1월에는 협력기획실을 남북협력기획실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남북협력2실에 대북투자과 관련된 통계관리 및 동향분석 업무가 추가되었다.

2009년 1월에는 남북협력1, 2실을 남북협력사업부로 통합하고, 남북협력2실에서 관장하던 '대북투자과 관련된 통계관리 및 동향분석 업무, 남북교류협력의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 조사,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조사, 관련 자료의 작성 및 발간, 외부의 요청에 의한 연구사업 수행, 남북교류협력 홍보업무의 기획 및 통할, 제도설명회, 세미나,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의 통할, 지원제도 안내책자, 팸플릿 등의 발간' 업무를 남북협력기획실로 이관했다. 2010년 12월에는 남북협력기금 업무에 '리스크 관리'가 추가되었다.

5절 자금관리 및 경영기획·지원 조직

1. 자금관리 조직과 변천

자금관리 전문성 강화

수은 설립 초기에는 자금 업무를 기획조사부에서 기획 및 조사 등의 업무와 함께 취급했으나, 1977년 1월 기획조사부를 업무부와 해외투자조사부로 분리하고, 업무부에 자금과를 두었다.

1978년 2월에는 선박, 산업설비 등 연불수출 증대로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금의 효율적 조달과 운용, 해외 자금조달 필요성이 높아져 자금과를 자금부로 분리 개편했다. 1991년 1월에는 수은의 외화자금 조달규모 증가와 전문적인 국제금융업무 수행을 위해 국제금융부를 신설했다.

1998년 6월에는 IMF 외환위기 이후 위험관리 역할을 절감해 자금부를 해체하고 Risk & ALM부를 신설했다. 이로써 체계적 통제시스템을 갖춘 선진형 위험 관리체제를 갖추었으며, 자금 기획 및 운용업무도 함께 취급했다.

1999년 1월에는 여신총괄부에 신용정보팀을 신설해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및 여신감리기능을 강화했으며, Risk & ALM부에 대기업신용분석과를 설치해 5대 계열 소속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수집·분석 및 신용도 평가 업무를 맡겼다.

1999년 7월에는 Risk & ALM부에 자금관리실을 신설해 자금·계리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나, 2000년 1월 국제금융부와 Risk & ALM부의 자금관리실로 이원화된 재무관리 업무를 일원화해 신설된 자금부가 맡았다. 아울러 Risk & ALM부의 대기업 신용분석과, 여신총괄부 신용정보팀이 폐지되고 업무는 Risk & ALM부가 전담했다.

국제금융시대의 조직 변화

2004년 1월에는 국제투자금융실을 국제금융부로 개편해 외화조달 및 운용 업무를 담당했으며, 국제투자금융실이 담당하던 역외금융업무 중 해외현

지법인에 대한 단독대출을 해외투자금융부로, 금고관리 통할 업무를 자금부에서 관리지원실로 이관했다. 2004년 7월에는 자금 거래 확인, 신용한도 초과 여부 및 평가 업무를 국제금융부에서 자금부로 이관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같은 해 12월 수은은 외화자금조달과 관련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파생금융, 구조화금융 등 자본시장과 연계한 금융기법을 연구·개발할 목적으로, 국제투자실의 전신인 금융공학팀을 국제금융부 내에 신설했다.

2014년 6월에는 국제금융부를 자금부와 통합해 10년 만에 원화조달과 외화조달업무를 다시 일원화했다. 또한, 여신규모 확대와 함께 외화조달 및 운용 규모도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국제금융부 내에 있던 외화운용팀을 확대해 국제투자실을 신설했다. 이로써 수은은 외화조달과 관련하여 Front-Middle-Back Office를 완전하게 분리하여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업무효율성을 제고했다. 2015년 7월 자금부는 자금시장단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2. 경영기획 및 지원 조직

설립 당시에는 수은 조직의 규모가 작아 기획과 조사 업무를 기획조사부가 수행했다. 그러나 기획, 자금 및 조사 등 성격이 다른 업무를 한 부서가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대처가 어렵고, 업무량 증가로 인한 적체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1977년 1월 기획조사부를 업무부와 해외투자조사부로 분리하고, 신설된 업무부 내에 기획과, 법규과 및 자금과를 두었다. 또한 조사 업무도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한 국별신용도 평가 및 각종 조사 분석이 이뤄져 전문성이 강화됐다.

1978년 2월에는 수출관련 계약서의 법적심사 업무가 늘어나 업무부 내 법규과를 법규실로 독립시켰다. 이후 1982년 3월 정부의 행정기구 축소 정책에 부응해 법규실을 임원부속실과 통합해 문서부로 개편했다. 그리고 1986년 4월에는 문서부를 다

시 법규실과 서무부 소속 임원부속실로 분리해 업무의 전문화를 꾀했다. 또한 임원의 서무업무, 의사업무 및 문서관리 업무는 기획부와 업무개선실이 각각 담당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1992년 3월에는 기획부를 종합기획부로, 종합기획과는 경영기획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대언론 및 대국민 홍보 업무를 위해 홍보실을 종합기획부 부속실로 신설했다.

1994년 2월에는 경영 전반에 관한 기획 업무를 통할하는 경영기획실을 은행장 직속으로 신설했으며, 종합기획부를 경영총괄부로 개편해 총괄과, 제도과, 예산과 및 국제과를 두었다. 한편 제도과의 신설에 따라 여신기획부를 폐지하고, 해외투자조사 기능 전문화 향상을 위해 해외조사부를 국별조사부에 흡수 통합시켰다.

1995년 2월에는 대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경영기획실과 해외투자정보센터를 폐지하는 대신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경영전략팀과 해외투자설명회, 세미나, 외빈면담을 위한 해외투자정보팀을 신설했다. 아울러 경영총괄부의 명칭을 부서기능을 감안해 종합기획부로 다시 변경하고 경영기획과를 신설해 중장기 경영계획, 직제, 총 정원, 위임전결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1988년 11월에는 해외투자조사부를 해외투자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연구소 내에 해외투자조사부 및 해외투자정보센터를 두었다. 해외투자 조사·연구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1989년 2월에는 해외투자연구소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투자조사부를 해외조사부와 국별조사부로 분리시켜 2부 1실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1992년 8월 21일에는 해외투자연구소의 해외투자정보센터를 해외투자정보부로 확대 개편했으며, 1996년 2월 해외투자정보팀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해외투자금융부 및 해외투자연구소로 이관했으며, 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과를 폐지하고 팀제를 도입했다.



해외투자 및 금융지원제도 설명회(1995. 10. 24.)

1998년 6월에는 해외투자연구소를 넓은 의미의 해외경제연구소로 개명하고, 부서내 실로 산업경제실을 신설해 일반경제 및 산업조사 업무를 담당했다. 1999년 7월 해외경제연구소에 개도국신용평가실을 신설해 개도국 국별신용도 평가, 국별투자환경 조사, 국별·지역별 조사자료 수집·분석 업무를 전담했다.

IMF 이후 업무 재편

1999년 1월에는 IMF 외환위기를 맞아 조직 통폐합 조치를 단행했다. 인력개발부 및 총무부를 인사서무부로 통합하고, 선박수출금융부는 구매자금음부 산하에 두었다. 1999년 7월에는 인사서무부내에 관재팀을 신설해 예산집행, 구매,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했고, 2000년 1월에는 관재팀을 관재실로 승격했으며, 2000년 9월에는 기획부에 국제협력실을 신설해 해외기관과의 교류업무 주관·협조 등 국제간 협조 및 연락체제 관리 업무를 부여했다.

2003년 2월에는 지식경제실에 산업조사, 공적수출신용기관(ECA) 연구 등 기존의 조사기능 외에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 신상품 아이디어 제시 등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연구조사 기능을 추가해 수은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부여했고, 기획부의 지식경영 업무 및 국별조사실에서 수행하던 대학(원)생 대상 강좌와 외부용역사업 업무를 지식경제실로 변경했다.

2004년 1월에는 국제화인력개발센터를 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리모델링 추진반을 구성해 연수원 성능개선 공사를 추진하였다. 여신업무에 대한 사항은 기획부에서 여신총괄부로 이관했다.

또한 부서별 정원관리 업무를 인사부에서 기획부로 이관해 정원관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였으며, 여신총괄부 업무에 지점의 고충처리업무를 추가해 지점의 업무 총괄 및 지원기능을 강화했다.

2004년 3월에는 공직기강 업무를 인사부에서 감사실로 이관했으며, 7월에는 플랜트, 선박 등 대규모 자본재 수출 및 경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OECD의 환경평가 기준에 따르기 위해 기술지원실을 신설해 기술·환경 관련 업무의 기획·

통할, 자문, 심사, 용역수행 및 외부기관과의 기술협력 등을 담당토록 했다. 아울러 프로젝트 파이낸스 및 스트럭처드 파이낸스 등 여신심사 관련 법률지원 및 거래기업의 법무 컨설팅 제공 업무가 중요해지면서 법무실을 독립실로 승격시켰다.

본부제 도입과 조직 변화

2005년 5월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본부제가 지원 부문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능별 통합관리 및 조정기능을 높이기 위해 기획, 관리, 자금을 기준으로 경영기획본부, 자금관리본부, 경영지원본부 체제로 분리했다. 2005년 7월에는 금융감독원이 ‘민원사무처리지침 표준안’에 따라 ‘민원전담부서’와 ‘민원사무통제부서’의 분리를 권고함에 따라 여신총괄부의 EXIM 컨설팅센터를 민원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시니어컨설턴트를 ‘민원상담역’에 배치했다. 또한 감사실을 민원사무통제부서로 지정했다.

2007년 1월에는 대내외 경영여건의 변화에 따라 효과적인 경영전략 수립과 경영혁신의 지속적 추진, 신규 도입된 외부경영평가 제도 대응을 위해 인사부 소속이던 경영혁신팀을 경영전략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부 소속으로 전환했다. 또한 법무실에 준법업무감시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부서별 정원관리를 기획부에서 인사부로 다시 이관했다. 업무성격 및 고객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식경제실 명칭을 산업투자조사실로 변경했다.

2007년 6월에는 급변하는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영업개발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여신총괄부내에 영업개발팀을 신설해, 국내외 금융기관의 업무동향분석, 신상품개발 및 국제금융기관과의 연계사업 발굴 업무를 수행했다.

2009년 1월에는 조직효율화를 위해 경영기획본부와 경영지원본부를 기획관리본부로 통합하고 여신본부는 2개 본부 체제에서 3개 본부 체제로 전환했다.

본부 통폐합에 따라 기획부의 국내외 네트워크의 설치, 이전, 폐쇄 및 통할업무를 업무연관 부점

으로 이관해 지점은 중소기업지원단, 국외사무소는 국제협력실, 현지법인인 국제금융부가 연계업무를 관할했다. 이와 함께 직제, 위임전결, 부서평가, 업무제안 업무도 경영전략실에 위임해 중장기경영전략, 경영혁신 업무 연계성을 높였다.

2009년 8월에는 기획부와 경영전략실 업무가 다시 조정되었다. 부서평가 및 중장기 경영계획 업무 연관성을 감안해 종합운영계획이 기획부에서 경영전략실로, 직제와 위임전결은 총 정원 관리 및 조직효율화 업무 연관성으로 경영전략실에서 기획부로 이관되었다. 또한, 여신총괄부에서 전담하던 민원업무는 기금업무와 관련된 경우 경험기획실과 남북협력기획실이 각각 담당하도록 했다.

2009년 12월에는 국외사무소 통할 업무와 사무소 예산관리 업무를 국제협력실에서 기획부로 다시 이관했다. 이 과정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국외에 파견된 주재원 업무 통할은 경험사업부가 담당했다. 또한, 공직기강 및 윤리강령 내부운영 업무를 감사실에서 인사부로 이관했으며, 경영정보공개, 업무제안 업무를 경영전략실에서 기획부로 다시 이관했다.

2010년 12월에는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제분과규정의 각 부점 업무분장 내용을 직제분과규정에서 분리해 업무분장세칙을 제정했다. 급변하는 금융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부점별 업무분장은 은행장 전결로 처리했다.

2012년 6월에는 해외프로젝트의 대형화, ECA역할 강화 등 해외수주 환경의 변화 및 제2의 중동붐에 대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총괄사업부의 금융자문실과 국제협력실을 금융자문부와 글로벌협력부로 이관 확대하고, 플랜트금융부의 기술심의실을 독립실인 기술환경심의실로 개편했다. 또한, 인사부에서 담당하던 사회공헌업무를 홍보실로 이관하고, 경영지원부 소속에서 독립실로 전환해 홍보역량을 강화했다.

2012년 12월에는 준법감시팀 신설 및 업무량 증가를 반영해 법무실, 경영전략실도 독립실로 확대 개편했다.



연수원 증축 및 리모델링 기공식(2004. 4. 8.)



EXIM 컨설팅센터 민원전담부서로 지정



경영전략회의(2014. 4. 11.)

2013년 6월에는 소규모 조직의 통합운영을 통한 경영 효율화 도모를 위해 경영전략실을 기획부로 통합하고, 중장기경영계획, 대내외평가, 경영자문회의 업무를 기획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아울러 경영지원부와 전산정보부의 명칭을 업무특성을 반영해 비서실과 정보시스템부로 변경했다.

국가정책 대응 및 조직재정비

2013년 12월에는 금융자문부 내에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를 신설했다.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는 2013년 8월 정부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설

치된 해외건설·플랜트 기업 앞 윈스톱 지원센터로서 주로 중소·중견 해외건설사 및 플랜트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 발주정보 제공, 금융지원 연계, 컨설팅 기능을 수행한다. 수은을 포함해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건설공제조합,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가 파견한 직원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여신상담 및 컨설팅 업무 등 유사업무를 수행하던 해외진출컨설팅센터는 폐쇄하고, 이 업무를 여신부서가 대신했다.

2014년 6월에는 비전 2020 재정립 및 조직재설계 컨설팅을 통해 책임경영, 컨트롤 타워 및 견제와 균형기능 강화, 고객과 상품 중심의 여신조직 개편

이라는 명제 아래 대대적인 조직재편을 시도했다.

인사부, 홍보실 소속인 사회공헌팀, 운영지원팀을 합쳐 인사경영지원단을 설치했고, 리스크관리부, 신용평가실, 법무실의 준법지원팀, 정보시스템부, 시스템개발실, 안전관리실을 합쳐 리스크관리단을 출범시켰다. '단(團)'은 Back Office 기능 강화를 위해 설치한 부, 실, 연구소와 같은 부서 단위 조직으로서 단 내에 부 또는 실을 두고, 단장이 위임전결상 본부장의 전결권을 행사한다. 경영전략과제 이행 모니터링, 본부장 및 부서 경영평가, 변화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미래경영실도 설치했다.

또한 해외경제연구소에 있던 국별조사실과 산업투자조사실을 폐지하고, 해외경제연구소를 지역연구1, 2팀, 경제연구팀, 산업연구팀, 총 4개의 대팀으로 전환했다. 부서 업무분장도 변화가 있었다. 법무실이 담당하던 정보공개 업무와 민원업무를 기획부와 기업성장지원부로 이관했고, 외국고객에 대한 홍보업무를 글로벌협력부에서 홍보실로 이관했다.

2014년 12월에는 부서별 업무량을 감안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부서별 직급별 정원관리를 기획부에서 인사경영지원단에 다시 이관했고, 경영자문위원회 업무를 기획부에서 미래경영실로 옮겼다. 또한 기술환경심의실에 수주가치심의 업무를 신설해 국내 기업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수주를 방지토록 했다. 안전행정부의 예규에 따라 재난예방 및 국가기반시설 보호업무를 처음 도입해 안전관리실이 수행했다.

2015년 6월에는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한 재무

건전성 개선 및 대외 신뢰도 회복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경영기획본부에 재무관리실을 설치해 종합적인 수지관리 체계 확립을 도모하고, 수지분석결과와 경영정책을 연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상품·고객·부서·프로젝트별 다면적 수지분석을 수행할 수지관리팀도 신설했다. 또한, 통합적 경영기획 업무수행 및 조직운영 합리화를 위해 미래경영실을 신설 1년 만에 폐지하고 기획부로 업무를 이관했다. 아울러 준법법무실을 재무관리본부 소속에서 전무이사 직할 부서로 변경해, 법규의 준수 및 내부 통제 업무의 실행력을 높였다.



해외건설 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 개소(2014. 1. 10.)

제4장 국내지점, 국외사무소, 현지법인

1절 국내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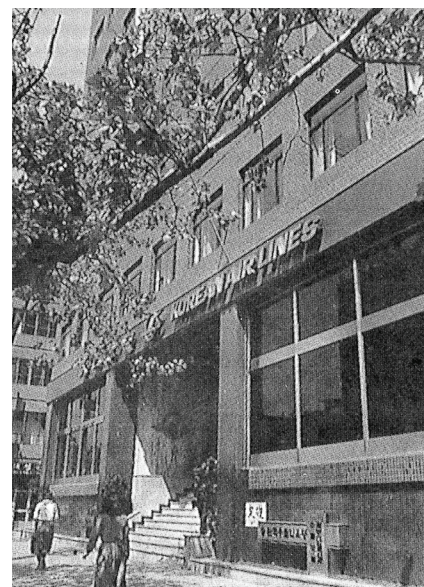
1. 지점 및 수출지원센터

수은은 1977년 1월 대한재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험 업무를 인계받으면서 대한재보험공사가 운영하던 부산사무소를 함께 인수하여 최초의 지방점포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수은은 업무 신장 및 지방소재 기업의 편의를 위해 전국의 주요 도시에 지점과 출장소를 설치했으며, 현재에는 부산, 대구, 창원, 광주 등 전국에 10개 지점 및 3개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강남, 시흥, 천안의 3개 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했으며, 수은 주도로 부산 해양금융센터, 본점 내 위치한 정책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 북한·동북아연구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부산지점

1977년 1월 대한재보험공사로부터 부산사무소를 인수한 후에도 그 명칭은 부산사무소였으나, 소장 에 대한 은행장 대리권 위임 및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6월에 부산출장소로 이름을 변경했다.

부산출장소는 1985년 5월부터 부산 지역에 있는 수은내국신용장 수혜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신용장 매입 중개 업무를 개시함으로써 금융부문 업무도 본격적으로 취급하게 되었다. 부산출장소는 수출보험 인수와 수은내국신용장 결제 업무가 크게 늘어나면서 고객서비스 확대와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1986년 3월 부산지점으로



부산사무소 전경(1977.)

명칭을 변경했다. 2016년 3월 해양금융종합센터가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로 이전하면서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대구지점

대구지점은 주변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1992년 6월 설립되었다. 다른 지점이 사무소 또는 출장소로 출범한 뒤 업무량 증가에 따라 지점으로 승격되는 과정을 거쳤으나, 대구지점은 설립 이전부터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요청이 많아 처음부터 지점으로 출발했다.

광주지점

광주지점은 호남지역의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 및 수출보험 업무 지원을 위해 1987년 12월 광주출장소로 개설되었다. 이후 광주 및 호남 지역에 위치한 유망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지원업무를 다양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1995년 6월 광주지점으로 승격되었다.

창원지점

창원지점은 지원기업 다양화를 위한 전국적인 영업망 구축의 일환으로 1994년 4월 출장소로 업무를 개시했다. 이후 창원지역 내 지원기업 수가 증가함에 따라 1995년 6월 광주지점과 함께 지점으로 승격되었다.

인천지점

인천지점은 경인지역에 밀집된 수출공단 등 각종 공단으로부터 지원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1995년 7월 대출상담소로 출발했다. 이후 지역 고객에 대한 대출업무가 증가하고,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1997년 1월 인천지점으로 승격되었다.

대전지점

대전지점은 충청도 등 중부지역에 소재한 수출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을 위해 2001년 5월 대전출장



광주 출장소 개소식(1987. 12. 17.)



창원지점 승격(1995. 6. 23.)

소로 개설되었다. 이후 금융지원의 다양화 및 업무량 확대에 따라 2003년 10월 대전지점으로 승격되었다.

수원지점

수원지점은 경기지역에 위치한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 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4년 3월 개설되었다. 수원지점은 대구지점과 마찬가지로 설립 이전부터 주변지역에 소재한 고객기업들의 금융지원 요청이 많아 처음부터 지점으로 출발했다.

울산·전주·청주 지점

울산·전주·청주지점은 각 지역의 증가하는 수출입금융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05년 3월 개설되었다. 설립 이전부터 해당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의 금융지원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울산·전주·청주지점은 처음부터 지점으로 출범했다.

구미·여수·원주 출장소

2013년 3월에는 구미·여수·원주출장소를 개설함으로써 해당 지역 소재 수출기업들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 등 대외거래 지원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현지 밀착지원체제를 구축했다. 이로써 수은은 전국적인 네트워크 체제를 완성했다.

강남·시흥·천안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

강남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는 당초 1997년 9월 강남지점으로 출발했다. 2009년 1월 강남지점은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폐쇄되었으나, 2013년 7월 중소기업의 금융상담, 마케팅, 컨설팅 제공 등 고객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강남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어 2013년 8월에는 시흥 및 천안 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설치됐다.



대전 출장소 개소(2001. 5. 22.)



수원지점 개점(2004. 3. 16.)



청주지점 개점(2005. 3. 9.)



강남지점 종합지원센터 개소(1997. 9. 12.)



해양금융종합센터 개소(2014. 11. 10.)

2. 기타

해양금융종합센터

2014년 9월 29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내에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이 공동으로 '해양금융종합센터(이하 해양센터)'를 출범했다.

2013년 8월 정부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중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 방안의 후속조치로 설치된 해양센터는 국회, 부산시, 조선·해운업계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식 발족했다.

초대 해양센터장(2년 임기)은 수은의 해양금융본부 본부장이 맡게 되었으며, 실효성 있는 협력방안 추진을 위해 '해양금융협의회'를 설치했다.

해양센터는 설립 시 수은, 무보, 산은 3개 기관의 해양금융관련 직원 총 7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15년 말에는 100여 명 이상 규모로 인원이 확대되었다. 해양센터의 주요업무는 조선 및 해운 등 전통적인 지원산업 뿐만 아니라 해양기자재, 해양자

원, 인프라, 항만·물류 등 전 방위적인 해양금융지원을 포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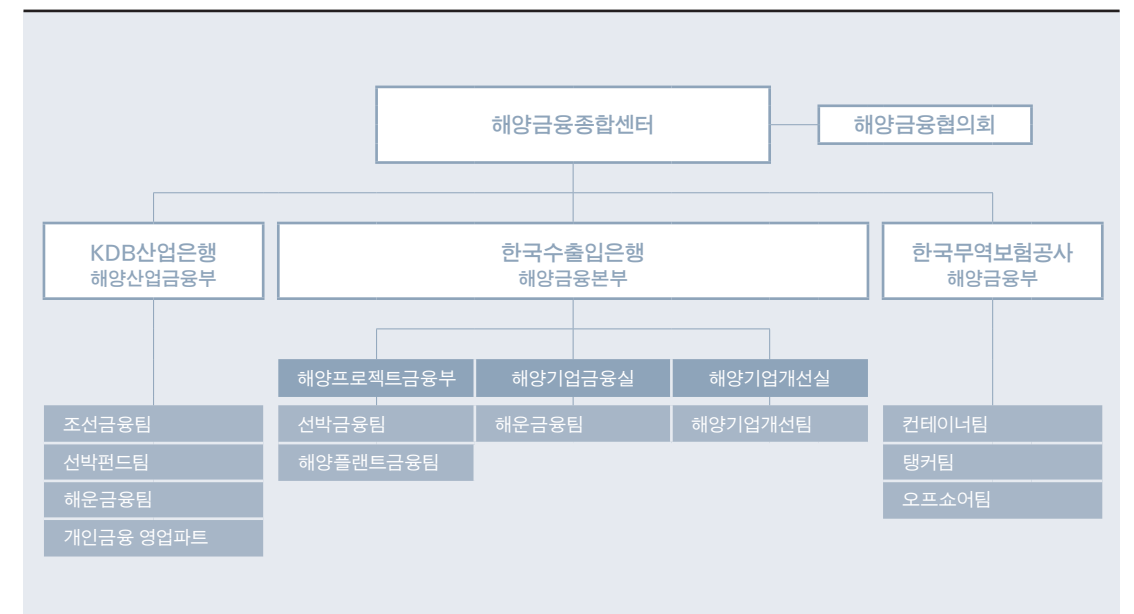
2014년 9월 설립 이후 2015년 11월까지 수은 21조 3,000억 원, 무보 5조 원, 산은 8,000억 원을 해양금융으로 지원했으며, 총 10건의 거래에 4조 원의 협조용자를 제공했다.

북한·동북아연구센터

북한·동북아연구센터는 2014년 4월 15일자로 개소하였다. 수은의 남북협력기금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와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지원, 남북한 경제통합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나진-하산 개발사업 등 통일기반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북한 및 동북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금융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강구하는 등 통일시대를 대비한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수행중이다.

해양금융종합센터 현재 조직도



2절 국외사무소

수은은 설립 2년 뒤인 1978년 뉴욕과 런던에 국외사무소를 처음 개설했다. 이후 권역별 시장규모, 우리나라 기업 진출규모 및 관련 업무에 따라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국외사무소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역할을 맡고 있다. 그 결과 수은은 2015년 말 기준 전 세계 20개국 22개 도시에 국외사무소를 열었다.

미국과 중남미

수은은 미주지역에 뉴욕사무소, 워싱턴사무소, 멕시코시티사무소, 사오파울루사무소, 보고타사무소 등 5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뉴욕사무소는 국제금융 및 국제무역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해외 자금조달과 관련된 국제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동향조사와 수은이 지원 가능한 거래의 알선을 위해 1978년 6월 설치했다.

미국 내 또 다른 사무소인 워싱턴사무소는 1994년 2월에 문을 열었으나, IMF 외환위기 당시 조직정비 차원에서 폐쇄된 후 1인 주재원으로 운영되었고, 2004년 10월 다시 개소했다. 워싱턴에는 미국수출입은행, 해외민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OPIC) 등 수은과 유사한 공적수출신용기관과 IMF, 세계은행 등 수은 업무와 밀접한 국제금융기구가 소재하고 있어 업무관련 정보수집 및 관계기관의 업무제휴를 위해 해외사무소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이다.

한편 수은은 1981년 9월 개설한 칠레 산티아고사무소를 1992년 3월 폐쇄하고, 대신 1992년 8월 멕시코시티사무소를 개소했다. 1991년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을 계기로 수은 자금수요증가가 예상되었으며, 미국 우회수출 거점으로서의 중요성, 카리브 지역 국가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기지로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멕시코시티사무소 또한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2월 폐쇄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1999년 이후 중남미 제1수출국으로 부상한 멕시코와의 경제교류 거점 확보를 위해 2003년 11월 재개소했다.

브라질과의 경제협력 증진과 남미지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993년 9월 사오파울루사무소가 개설되었고, 2014년 4월 보고타사무소를 개소하며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시아

수은은 아시아지역에 동경사무소, 북경사무소, 상해사무소, 뉴델리사무소, 하노이사무소, 마닐라사무소, 자카르타사무소, 양곤사무소, 프놈펜사무소까지 9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1979년 6월 개설된 동경사무소는 아시아 금융시장의 중심지인 동경에서 주로 외화자금 조달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의 금융지원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북경사무소는 1988년 이후 중국과 교역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양국 경제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현지의 해외투자정보, 수출관련 자료 수집, 수출거래알선, 경제협력 유망 프로젝트의 발굴·지원을 위해 1993년 2월 설립되었다. 이어 1997년에는 상해사무소가 문을 열고 중국 중남부 지역을 공략했으나, IMF 외환위기 당시 폐쇄되었다가 2004년 6월 다시 문을 열었다.

1994년 9월에는 국내 금융기관으로는 처음 인도 뉴델리에 사무소를 열었다. 이 또한 IMF 외환위기 때 폐쇄되었다가 신흥개발도상국(BRICS) 국가로서의 인도경제의 급신장과 실질구매력 세계 4위인 인도의 미래성장성을 감안해 2004년 8월 재개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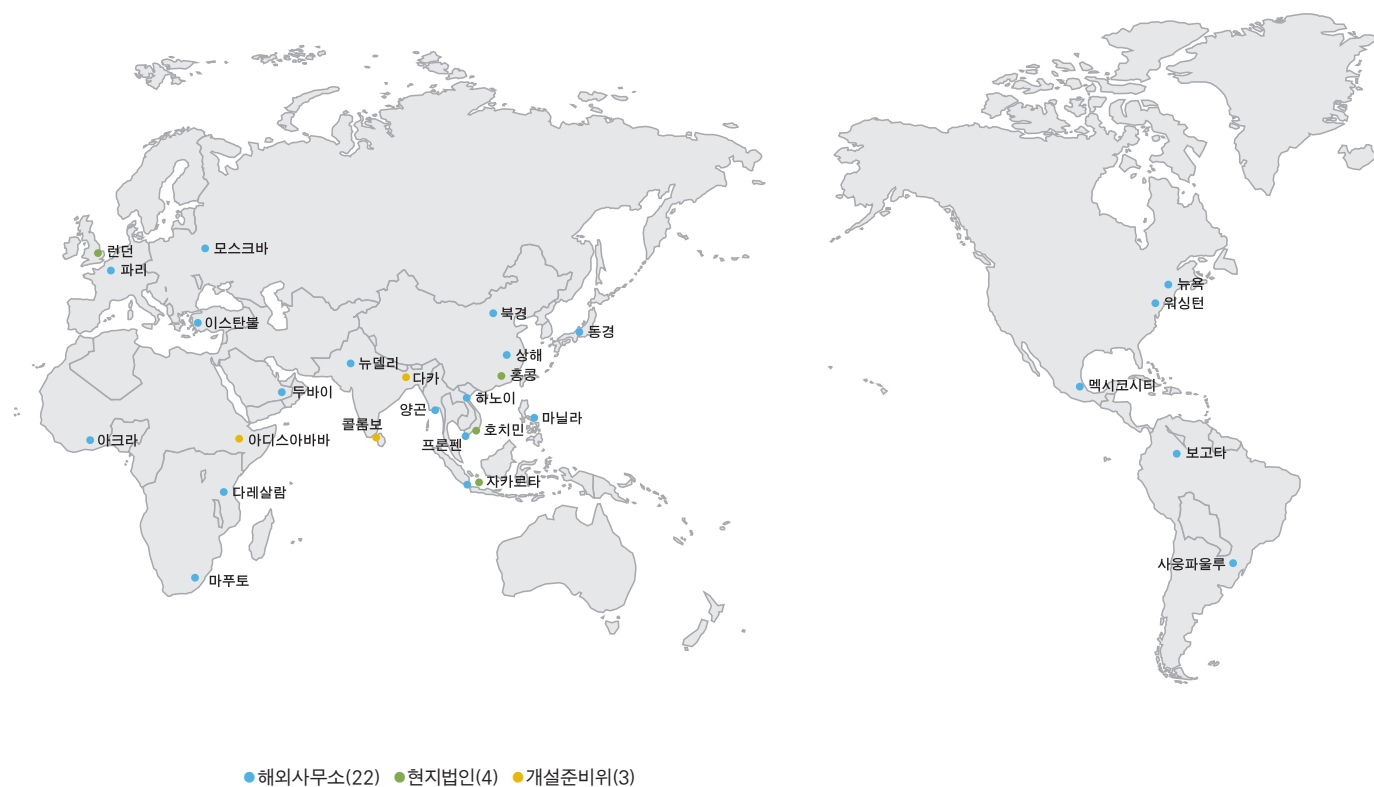
이밖에 아시아지역에서 제일 먼저 개설된 홍콩사무소와 아세안(ASEAN) 국가들에 대한 연불수출과 자원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설된 자카르타사무소,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지원거점 확보 및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현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설치된 호치민사무소는 IMF 외환



워싱턴사무소 재개소(2004. 10. 4.)



보고타 사무소 개소식(2014. 4. 15.)



상해사무소 재개소(2004. 6. 22.)

위기 시 조직정비 차원에서 폐쇄되면서 각각 홍콩, 자카르타, 호치민 현지법인에 흡수되었다.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금 업무 등을 위해 하노이, 자카르타, 마닐라, 양곤, 프놈펜, 콜롬보, 다카 사무소를 순차적으로 개소하였다.

유럽(CIS 포함)·중동·아프리카

유럽과 중동·아프리카 지역에는 파리, 모스크바, 두바이, 타슈켄트, 이스탄불, 아크라, 마푸토, 다레살렘에 국외사무소가 있다.

파리사무소는 우리나라의 OECD 가입에 대비해 OECD 협조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1989년 12월 개소했으며, 1998년 10월 폐쇄되어 주재원으로 운영되다가 OECD, 프랑스무역보험공사(Coface) 등 국제금융기구와 긴밀한 관계유지 및 활동 강화를 위해 2005년 3월 재개소했다.

1990년대 정부 북방정책의 하나로 러시아에 수은의 소비재차관이 제공되고, 우리 기업의 러시아 및 동구 지역 진출과 해외투자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1991년 4월 모스크바사무소를 개설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당시 조직정비 차원에서 폐쇄되었다가, 해외 공관으로부터 수은의 현지진출에 대한 계속된 요청으로 러시아와 CIS 국가와의 교역확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2년 11월 다시



파리사무소 개소(2005. 3. 16.)

문을 열었다. 이후 대러 소비재차관 업무와 관련해 현지 채무재조정 협상을 주도하기도 했다.

2005년 5월에는 중동의 금융허브로 부상하는 두바이에 사무소를 개설했다. 2004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수은 국외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나라 진출 기업의 수주지원 및 현지 프로젝트 개발을 강화하도록 결정한 것이 계기였다. 두바이사무소는 중동 국가들의 투자유치 확대에 따른 미래시장 선점과 대중동·북아프리카 교역신장에 따른 거점네트워크 역할을 맡고 있다.

2007년 12월에는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과 경제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타슈켄트사무소를 개설했고, 유럽진출의 교두보인 터키 이스탄불사무소를 2014년 4월 개소했다.

또한, 성장잠재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 진출과 경제협력을 위해 2014년부터 마푸토, 다레살렘, 아크라 사무소를 개소하였으며, 또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사무소 개설을 준비중이다.

이밖에 국제금융 및 자본시장의 중심지인 런던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이 소재했던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 사무소가 있었으나 IMF 외환위기 당시 국외사무소 조직정비 차원에서 폐쇄되었다.

프랑크푸르트사무소는 1996년에 개설된 베를린 사무소가 IMF 외환위기 당시 이전한 사무소로 주로 국제금융 및 자본시장 정보 수집 및 부흥금융금고(KfW), 신용보험회사(Hermes) 등 독일 소재 수출신용기관과의 업무제휴 및 유럽지역에 대한 관련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폐쇄되었다.

기타 주재원

수은은 사무소 운영에 따른 경비와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고 수은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일부 주요지역에 대해서는 KOTRA 등과 협약을 체결해, KOTRA 현지공관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주재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수은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독일에 1인

주재원을 두어 우리 기업의 현지수주를 돕고, 프로젝트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3절 현지법인

1. 사례

수은은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와 자금조달업무 지원을 위해 현지법인을 2015년 말 기준 런던, 홍콩, 자카르타, 호치민에 4개 해외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수은은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원활한 자금 조달, 현지 한국계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국산 기자재 수출 촉진, 본점·현지법인 간 연계지원 등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과 우리나라 경제발전 및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수은아주금융유한공사

(KEXIM Asia Limited)

수은아주금융유한공사(홍콩 현지법인)는 수은의 해외 자금조달 및 여신업무의 지원과 당시 미수교 국인 중국과 경제교류 확대 교두보로 1988년 8월 설립된 수은 최초의 해외현지법인이다.

홍콩은 1980년대 초반 수은의 외화자금 조달액의 약 50%가 집중된 곳으로 수은의 외화자금 조달을 위한 창구 역할과 향후 중국시장 진출의 거점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 대한 연불수출과 해외투자거래의 발굴 및 금융 주선, 본점이 직접 지원하기 곤란한 거래의 우회지원 최적지로 현지법인 설립이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 5월 재무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1988년 8월 납입자본금 1,000만 달러의 홍콩 현지법인이 설립되었다. 상업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를 중심으로 종합금융업을 취급한 홍콩 현지법인은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설립 원년부터 흑



수은 아주금융유한공사 개업식(1988. 8. 1.)



홍콩법인 재개설(2004. 6. 25.)

자를 기록하며 현지에 안착했으며, 1990년 8월과 1993년 3월 2회에 걸친 증자로 그 규모가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1990년 중반 아시아지역의 IMF 외환위기 이후 실시된 국외영업망에 대한 조직 정비 차원에서 1999년 말 홍콩 현지법인이 폐쇄되었고, 홍콩 사무소로 업무를 이관했다. 이후 현지법인의 재개설 필요성이 높아지자 2004년 6월 자본금 3,000만 달러 규모의 홍콩 현지법인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홍콩 현지법인은 본국에서 파견된 직원 5명과 현지 직원 4명이 근무하며 2015년 말 현재 총자산 3억 5,689만 달러 규모다.

수은영국은행

(KEXIM Bank(UK) Limited)

수은영국은행(런던 현지법인)은 홍콩 현지법인과 마찬가지로 본점의 외화자금 조달 업무를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유럽연합(EU) 및 동구권 진출을 돕기 위해 1992년 7월 납입자본금 1,000만 파운드 규모로 설립되었다.

1993년 12월 현지 금융당국의 자기자본 비율 규제로 1,000만 파운드를 증자했으며, 주요업무인 본점의 외화자금 조달 지원 및 대출·유가증권 투자 외에 팩토링 및 다양한 대리인(Agent) 역할수행 등 본점과의 연계지원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금융 중심지에서 안정적인 경영성과를 내고 있는 런던 현지법인은 2015년 12월 말 현재 총자산은 4억 5,88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국에서 파견된 직원 4명과 현지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다.

수은인니금융

(PT. KOEXIM MANDIRI FINANCE)

수은인니금융(자카르타 현지법인)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국산 기계류 및 자본재의 공급확대 지원 필요성에 따라 1992년 6

월 납입자본금 150억 루피 규모로 설립되었다.

수은인니금융은 리스를 주로 취급하고, 합작법인의 형태여서 홍콩 현지법인이나 런던 현지법인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인도네시아는 외국기업에 대해 인도네시아 법인과의 합작투자 형태만 허용하고 있어, 수은은 인도네시아 정부은행인 Bank Dagang Negara(BDN)와 합작(투자비율: 수은 70%, BDN 30%)으로 자카르타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출범 당시에는 리스, 팩토링, 신용카드, 소비자금융, 벤처캐피탈의 5종 영업이 가능한 종합금융으로 출발했으나, 1995년 10월 인도네시아 현지 관련 법령 개정으로 벤처캐피탈 업무는 취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1995년 10월 합작금융회사의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를 상향조정함에 따라 1996년 증자를 통해 납입자본금은 기존의 150억 루피에서 360억 루피(수은 282억 루피, BDN 78억 루피)로 증액되었으며, 합작비율도 수은 78.3%, BDN 21.7%로 조정되었다.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의 금융개혁조치의 일환으로 국영 상업은행이었던 BDN을 포함한 4개 은행이 PT. Bank Mandiri로 흡수합병되어 현재 합작파트너는 PT. Bank Mandiri의 자회사인 PT. Pengelola Investama Mandiri(PIM)로 바뀌었다.

한편 2004년 9월 경영건전성 강화를 위해 160

억 루피를 수은이 단독 출자함에 따라 2015년 말 현재 총자산은 1억 4,692만 달러로 증가했다. 수은 인니금융은 2015년 말 현재 본국에서 파견된 4명의 직원과 현지 직원 24명이 있다.

수은베트남리스금융회사

(KEXIM Vietnam Leasing Co., Ltd)

베트남은 1990년대 개방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양질,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으로 중국에 이어 국내 사양산업을 이전할 적지로 부각되었으며, 봉제, 섬유, 신발, 플라스틱 제조업 등이 경쟁력을 갖춘 유망 산업으로 부상해 관련된 국산 기계류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기계류 수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베트남현지법인의 설립 필요성이 높아졌다.

수은베트남리스금융회사(호치민 현지법인)은 이러한 필요에 따라 1996년 12월 납입자본금 1,000만 달러 규모로 설립되었다. 이후 리스금융을 중심으로 현지화전략을 성실히 수행한 수은베트남리스금융회사는 2015년 말 현재 본국직원 3명 및 현지 직원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설립 초기 동남아시아 전체로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2000년까지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호치민 현지법인은 2015년 말 총자산 1억 3,937만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자카르타 현지법인설립 기본합의서(MOU) 체결 서명식
(1992. 1. 28.)

제5장 임직원 및 직제

1절 임직원

1. 임직원의 분류

임원은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되며, 직원은 본국 직원과 현지 직원으로 구분된다. 은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면하며 감사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임면한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이 가능하다.

본국 직원은 국내에서 채용된 직원을 가리키며 일

반직원, 사무직원, 임금피크직원 및 별정직원으로 구분된다. 일반직원은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 직원, 사무직원은 다시 사무직과 서무직으로 구분되는데, 사무직은 은행 업무에 수반되는 일반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하고, 서무직은 전기, 전화, 기관,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금피크직원은 연령이 만 56세를 경과한 직원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보직에서 해임하고 은행장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별정직원은 법률, 의무, 세무 등 전문직에 종사한다. 수은은 2005년부터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만 56세부터 임금을 연차적으로 감소



고객과 전화상담 중인 수은 직원



사령식(2013. 12. 30.)

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피크직원을 정원과 별도로인력인 별정직원으로 관리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임금피크제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임금피크직원을 정원내 인력으로 전환하고, 직원의 종류를 임금피크직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현지 직원은 국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현지 채용 직원을 가리킨다.

2. 종사자 변천

설립 당시에는 임원 4명, 책임자급 직원 34명, 남녀 행원 22명, 서무직원 20명 등 총 80명의 임직원으로 업무를 개시했다. 그 후 조직이 확대되고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경력직원을 특별 채용했으며, 1977년 1월 수출보험업무를 인수하면서 대한재보험공사 직원 20명이 수은 직원으로 편입되었다.

한편 1992년 7월에는 수출보험업무가 한국수출보험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직원 130여 명이 수은으로부터 퇴직해 한국수출보험사로 이적했다. 2013년 8월 정부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른 통합 산은 출범에 따라 2014년 12월 정책금융공사의 대외정책금융관련 인력 29명이 수은에 편입되었다.

수은은 1977년부터 매년 1~2회씩 전문직행원의 공채를 실시해 왔으며, 임직원 수는 2015년 12월 말 현재 총 984명에 이르고 있다.

2절 직제의 변천

1. 팀제의 운용과 본부제 정착

수은은 설립 이래 본점의 각 부 또는 실에 1급 또는 2급 직원인 부장과 실장을 두어 해당부서의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했다. 그러나 1986년 이후 부속실 제도가 도입되고 1988년에는 해외투자연구소가 신설되어 부장, 실장, 연구소장이 부서장으로 불리고 있다. 국내의 지점과 사무소는 각각 지점장과 사무소장이 소관업무를 통할 및 소속직원의 지휘·감독을 맡고 있다.

한편 본점의 경우 기획, 인사 및 서무 관련 부서에는 부서 업무분장에 따라 과 제도를 두고 3급 직원으로 과장을 보임했으나, 1995년 3월 처음 도입된 팀제 활성화를 위해 1996년 2월 모든 과 제도를 폐지하고 부서 내 팀제로 전환했다.

1999년 1월에는 명목상 팀이지만 사실상 과 형태로 운영되던 기획부, 경영지원실, 인사서무부 및 Risk & ALM부의 팀을 과로 전환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였다.

2002년 1월에는 은행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5개 여신부서인 구매자금융부, 산업설비금융부, 중소기업수출금융부, 해외사업금융부, 무역금융부를 4개 본부 체제인 연불수출금융본부, 무역금융본부, 중소기업금융본부 및 해외투자금융본부로 개편했다. 그리고 팀제 적용 범위, 팀의 구성 및 의사결정 등 팀제 운용에 관한 기본 사항에 관한 팀제운용요강을 제정했다.

2004년 1월에는 경제협력기금과 남북기금에 본부제를 도입했다. 2005년 5월에는 본부제를 지원 부문까지 확대해 경영기획본부, 자금관리본부, 경영지원본부로 개편하고 책임경영체제 기반을 구축했으며, 기획, 관리, 자금 부문을 본부단위로 배치했다.

2. 경제환경과 정부정책에 따른 변화

2009년 1월에는 금융수요 변화 및 정부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 경영기획본부와 경영지원본부를 기획관리본부로 통합하고, 금융 부문의 수출입금융1본부, 수출입금융2본부를 전략금융본부, 수출금융본부, 무역투자금융본부로 확대했다.

2009년 8월에는 연공 위주의 다단계 향아리형 인력구조를 역량과 성과중심으로 개선하고, 상위직 비율 감축 등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부응해 행원·대리→과·차장→부부장→팀장→부장의 5단계 직급 체제를 3단계(G1, G2, G3)로 단순화했다. 개편 후 직급별 명칭은 G1 수석전문역, G2 선임전문역, G3 책임전문역/전문역이며, G1 직원은 부서장급 보임을 원칙으로 하고, G2 직원은 팀장, 부지점장, 선임전문역, G3 직원은 책임전문역, 전문역 등에 보임해 직급별 명칭과 직위별 명칭을 분리했다. 또한, 부장, 실장, 지점장, 팀장 등 조직 관리자 직위에 보임 받지 못한 직원은 직급별 호칭만

사용하게 했다. 이에 앞서 2009년 7월에는 상근 임원의 정원을 7명에서 4명으로 감축하고, 이사대우 제도를 폐지했다. 한편 수출입금융, 국제금융, 정부수탁업무 등 업무별 특성 및 전문성 및 7본부 체제 유지를 고려해 본부장제를 적극 운용하며 기존 이사 대우 수준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지급받는 집행간부 직위(정원은 G1 직원으로 관리)를 신설·운영했다.

2010년 12월에는 직제분과규정을 직제규정과 업무분장세칙으로 분리했으며, 업무분장세칙의 경우 급변하는 금융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은행장 전결로 운용했다. 또한, 미래성장동력인 원전, 고속철 등 신성장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금융본부를 신설하고 무역투자금융본부는 폐지했으며, 정책적 역량 집중을 위해 전략금융본부와 수출금융본부를 수출금융1본부, 수출금융2본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2011년 6월에는 제1수석 및 제2수석부행장 운용체제를 수석부행장(전무이사) 1인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경제협력본부를 경제기획본부와 경제사업

본부로 분리했다. 본부명칭의 경우 기획관리본부, 수출금융1본부, 수출금융2본부, 자금국제본부를 각각 총괄기획본부, 수출금융본부, 무역투자금융본부, 자금본부로 변경했고, 신성장금융본부는 존속함에 따라 총 8본부 체제로 운용됐다.

2012년 6월에는 전문역량과 업무경험을 갖춘 G2급 직원을 팀장 보임이 가능토록 '선임전문역(팀장급)' 직책을 신설해 전문역량 육성 및 활용이 필요한 연구소, 법무실 부서에 제한적으로 운용했다.

2012년 12월에는 경험기획본부가 경제협력기금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점을 반영해 경험총괄본부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자금본부로 편입된 글로벌협력부의 해외네트워크 관리업무를 반영해 명칭을 자금국제본부로 변경했다.

2013년 6월에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연계한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신성장금융본부는 미래산업금융본부로, 수출금융본부와 무역투자금융본부는 수출투자금융본부 및 기업성장금융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를 조정했다. 아울러 조직운영 합리화를 위해 G1 직급의 팀장 보임과 G2 직급의 부서장 보임 근거를 마련했으며, 은행장이 인재개발원, 해외진출컨설팅센터, 국외 주재원 등 직제 외 조직을 설치할 근거를 명문화하고, 주재원, 센터 등의 설치·운영세칙을 신설했다.

2014년 6월에는 비전 2020 재정립 및 조직재설계 컨설팅 결과에 따라 본부 기능을 기획관리부문, 수출입금융부문, 경제협력부문으로 구분하고 총괄기획본부, 자금국제본부는 경영기획본부, 재무관리본부로 명칭을 변경해 기획관리 부문으로 분류했고, 미래산업금융본부, 수출투자금융본부, 기업성장금융본부를 프로젝트금융본부, 기업금융본부, 미래성장금융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출금융부문으로 분류했다. 또한 경험총괄본부, 경험사업본부, 남북협력본부는 경제협력부문으로 분류했다.

2014년 8월에는 2013년 8월과 2014년 8월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각각 채택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해양·선박금융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해양금융본부를 신설했다.

2015년 6월에는 여신규모 확대,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리스크관리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며 리스크관리단을 리스크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여신본부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균형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경제팀 회의(2016. 5. 19.)

제6장

노동조합

1절 노동조합 출범과 구성

1. 노동조합 출범과 구성

수은 노동조합은 1982년 12월 22일 설립되었다. 당시 초대 위원장은 신유순 조합원이 선임되었으며 1982년 12월 24일에는 노동부로부터 조합설립 신고필증을 받아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노동조합의 전임간부 구성은 최초 3인(위원장, 부위원장, 여성부장)으로 시작된 이후 1987년부터 총무부장 1인이 추가되어 4인 전임간부 체제로 변경되었으며, 1988년에는 제5대 집행부

선출 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여성부장을 포함한 4인의 전임간부가 선임되었다.

IMF 외환위기 기간인 1998년부터 1999년까지는 일시적으로 부위원장 1인을 비상임으로 전환해 전임간부가 2인으로 축소되었고, 제11대 집행부 이후 다시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으로 구성된 3인 상근체제를 갖추었다. 한편 집행부의 임기는 제 10대 집행부까지 2년으로 유지되다가 제11대 집행부에 들어와서 조합규약 개정을 통해 3년 임기로 변경했다.

조합원은 2015년 말 기준 총 761명이며, 각 부서



수은 노동조합 결성(1982. 12. 22.)

별로 분회를 구성해 본점 분회 40개와 해양금융본부 분회 2개, 지점 분회 10개 등 52개 분회가 조직되어 있다. 각 부서별 인원예 따라 15인 미만의 조합원이 소속된 분회의 경우 대의원 1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초과 5인당 대의원 1인을 배정해 총 60인의 대의원이 대의원대회를 구성하고 있다.

2. 조직 편제

조직을 보면 상임근무자로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비상임 회계감사 2인 및 비상임 운영위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운영위원은 조합의 각 부서장을 겸임해 한정된 조직규모를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을 비롯한 상근간부 3인과 회계감사위원 2인은 전 조합원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한편 노조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와 관련해서는 2003년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공동임단협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이행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획득하는 유니언샵(Union Shop)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조합탈퇴 시 해고되지는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탈퇴 의사를 존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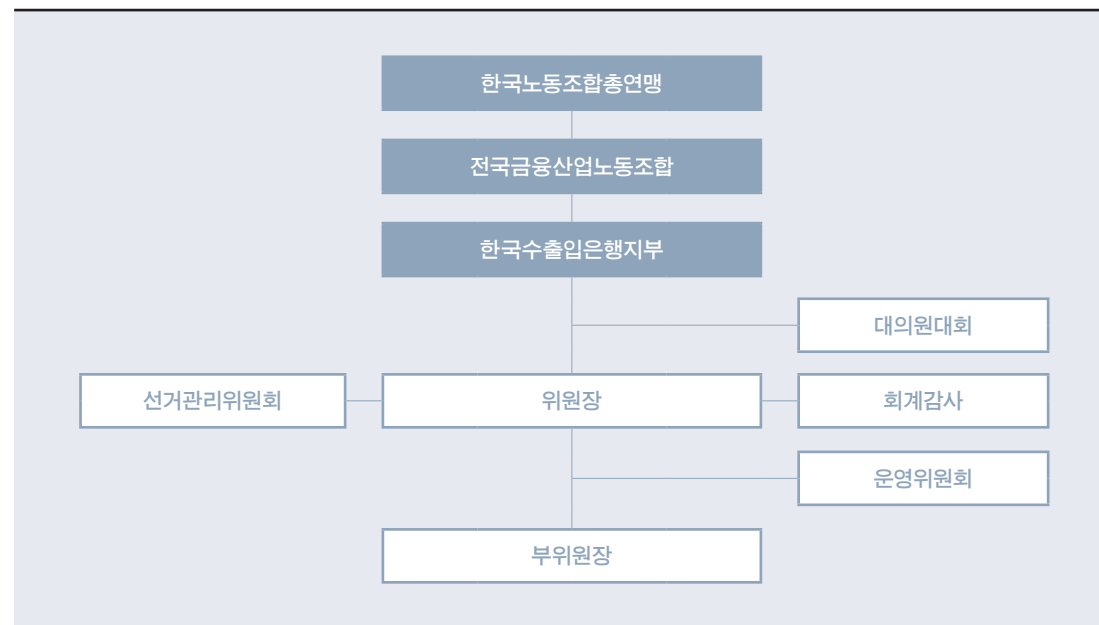
수은 노동조합은 처음 한국노총 산하 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금노)에 가입되어 있다가, 2003년 금융노련이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금융노조 한국수출입은행지부로 변경되었다.

의결기구로는 의결범위에 따라 순서대로 최고 의결기구인 조합원 총회, 각 분회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대의원대회, 상임간부 및 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집행간부 회의, 각 분회총회 그리고 전문위원회 등을 포함한 특별위원회가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합규약에 정해진 의결권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소집, 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 노사 양측의 현안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단체교섭위원회, 노사협의회, 근로복지기금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및 직장 내 성희롱예방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역대 수은노조 집행부

집행부	위원장	부위원장	재임기간
1대	신유순	김동균	1983. 1. ~ 1984. 1.
2대	최병호	장용중	1984. 2. ~ 1985. 1.
3대	정금석	윤정근, 정창호	1985. 2. ~ 1986. 2.
4대	김동균	구본익, 이진수	1986. 3. ~ 1988. 2.
5대	정재화	강성철, 조남용	1988. 3. ~ 1990. 2.
6대	안상술	김영수, 황우찬	1990. 3. ~ 1992. 2.
7대	김영수	조영조, 최주환	1992. 3. ~ 1994. 2.
8대	박환우	김경신, 유정선	1994. 3. ~ 1996. 2.
9대	박윤상	이재홍, 김성기	1996. 3. ~ 1998. 2.
10대	박윤상	김성기, 윤종원	1998. 3. ~ 2000. 1.
11대	서우택	이영희, 이종현(강순기)	2000. 2. ~ 2003. 1.
12대	이영희	이종현, 김관	2003. 2. ~ 2006. 1.
13대	이영희	이종현, 김관	2006. 2. ~ 2007. 1.
14대	김 관	이종현, 이지언	2007. 2. ~ 2010. 1.
15대	엄성용	강우석, 김태범	2010. 2. ~ 2013. 1.
16대	김용국	김평석, 최동건	2013. 1. ~ 2016. 1.
17대	김용진	채승철, 추진호	2016. 2. ~ 2019. 1.

수은노조 조직도



2절 노동조합의 활동

1. 노조 역할 확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과거 임금 및 복리후생 위주의 노동조합 활동에서 벗어나 경영활동 전반의 감시를 포함하면서 노조의 활동도 보다 광범위해졌다.

최근 노동조합 활동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직원 여론을 바탕으로 수은 조직의 미래를 준비하는 활동이다.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 교체 시 다양한 경로로 직원들의 의견을 정부 및 각계 요로에 전달하는 한편, 은행 이사회 참관 및 간부 회의에 참석해 은행 경영현황을 공유하고 여론을 전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의 조직이 산별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에서 대외활동의 영역도 점차 확대돼, 금융노조의 각종 활동에 대한 직접 참여와 타 지부와의 연대활동 및 정보수집활동을 펴고 있으며, 지부 차원에서 수행하기 힘든 노동조

합의 정치활동까지 영역이 확대되었다. 아울러 국책은행인 수은의 특성상 정부, 국회, 감독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대외활동도 활발하다.

2. 대내 활동

수은노조는 설립 이래 활발한 대내활동으로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노동조합의 위상 정립과 함께 조합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 향상에 힘써왔다.

수은노조의 대내활동으로는 노사협의회 활동 전개, 단체협약 체결, 근로복지기금협의회 개최, 조합원 고충처리 위원회 운영, 노사합동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마련, 노조 공동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본점 및 분회를 대상으로 조합원 대상의 노동교육을 실시해 조합원 조직 관리를 탄탄히 하고 있으며, 수은노보 발간과 매년 '활동보고'를 발행해 조합 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랑방과 동호회를 조직해 조합원 문화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노조 대의원 대회(2011. 3. 3.)



노사협의회(2008. 3. 26.)



임금협상(2003. 10. 29.)

i)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활동으로서, 경영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은 물론,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채용과 배치, 교육훈련,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개선, 고용조정의 일반원칙(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으로 규정된 14개 사항을 사측과 논의함으로써 수은의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노사 공동협의의 장이다. 구성은 은행장을 포함한 사측 위원 5인과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조합위원 5인 총 10인으로 구성되며, 매 분기마다 개최가 가능하다. 또한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은행의 경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며, 은행의 각종 인사 및 복리후생제도의 개선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다.

ii) 단체협약

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당해 연도 임금인상률을 정하고 조합원 권익의 향상 및 보호를 위해 단체협약을 매년 단위로 체결하고 있다. 단체협약 체결 방식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각 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산별 공동임금단체교섭에서 우선 단체교섭협약을 체결하고, 수은 노동조합 차원에서 보충협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수은노조의 단체교섭위원회는 사용자측 5인 및 노동조합측 5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된다.

iii) 근로복지기금협의회

수은 노조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을 위해 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설치했다. 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사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되며, 근로복지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지출을 결의하며, 예결산을 심의한다. 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노사 각 5인, 총 10인이며,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노사 양측이 따로 감사 1인을 선임한다.

iv) 고충처리

수은 노조는 직원의 개인적 고충처리를 위하여 노



제17대 집행부 취임(2016. 3. 10.)



2016년 임단투 결의대회(2016. 4. 27.)

사협의회 위원 중 사측 1인과 조합측 1인을 고충처리위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고충처리위원은 조합원의 고충 접수 시 상호 성실히 협의해 1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한다.

v) 성희롱예방

여성 근로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산업 특성을 감안, 금융노조는 2000년 공동임단협에서 각 사업장에 성희롱예방 전담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수은도 노사 각 3명의 성희롱 심의위원을 선임해 성희롱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전 직원 대상 정기 예방교육을 실시해 성희롱의 개념을 분명히 인지토록 함으로써 양성평등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vi) 통상임금 소송

2013년 12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노동조합은 수 차례의 직원설명회를 거쳐 2014년 6월 성과연봉의 통상임금 인정을 위해 직원 927명을 원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8차례에 이르는 변론절차를 거쳐 2016년 3월 성과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수은에서도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다.

3. 대외 활동

수은노조의 대외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상급단체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및 한국노총 관련 활동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대한 활동이다. 즉 수은 노조의 대외활동은 다른 금융기관 노동조합 및 노동 관련 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이를 내부 활동과 연계시키는 한편, 국책은행 노동조합으로서 인이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물론 국가경제 및 조직의 상황에 맞는 정책방향의 수립을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 상호 협의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i) 상급단체 연계활동

수은 노조는 금융노조 또는 한국노총의 각종 회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해 노동계 관심사에 대한 의견 개진 및 의결권을 행사하며, 공식적인 집회참가 등 합법적 쟁의행위에도 동참하고 있다. 또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지부의 쟁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통해 노조의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

노조는 조직 내부의 활동 외에도 금융권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금융권 최초의 항구적 고용안정 협약 체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청년연장을 통한 상생적 임금피크제 도입 등 금융노조와 공조 속에 역량을 높이고 있다.

ii) 정부 및 유관기관 관련 활동

수은은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으로 조직, 예산 및 임원인사 등 주요 현안에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으며, 매년 국회 국정감사를 수감하고, 감사원의 정기감사도 받고 있다. 또한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의 건전성감독대상에도 포함돼 유관기관과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 유관기관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노조는 수은 조직의 미래와 연관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필요한 경우 재경부, 국회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직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노조도 수은 경영의 한 축으로서 수은의 발전을 고민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금융공기업 합동대의원대회(2016. 5. 14.)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집회(2016. 6. 7.)



제2편 경영관리

제1장 경영전략

1절 경영혁신

1. 능동적 경영혁신

세계 각국은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공공부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공공부문에 경쟁과 성과 원리를 도입했다. 특히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정부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해 2005년부터 공기업 및 산하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해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경영혁신을 꾀했다.

수은도 IMF 외환위기 이후 자발적으로 경영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고객 기업의 연쇄도산으로 부실여신이 증가하고 주력 여신이 감소하는 등 위기가 도래하면서 조직을 축소하고 명예퇴직을 실시해 인력을 감축하는 등 뼈아픈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혁신을 단행한 것이다. 이런 노력은 1999년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경영혁신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인정을 받았다.

수은의 경영혁신은 2005년 정부의 ‘공공기관 대상 혁신수준진단’ 실시를 계기로 더욱 본격화되었다. 중기경영로드맵의 미션과 비전, 경영전략의 효과적 달성을 목표로 고객만족경영, 성과중심경영, 업무효율성 제고 등 3대 경영혁신 전략을 수립했으며, 자율경영혁신과제, 부서전략과제를 선정하고, 공공기관경영혁신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혁신전략의 실행력을 뒷받침했다.

한편 경영혁신활동에 임직원 참여를 독려하기



한국능률협회주관 경영혁신대상 최우수상 수상(1999. 11. 22.)



혁신간담회(2005. 7. 20.)

위해 임원진으로 구성된 혁신전략회의, 부서장으로 구성된 혁신추진위원회, 팀장급으로 구성된 혁신추진실무협의회 등이 결성되어 추진력을 높였다. 특히 각 부서의 혁신활동의 중심이 되는 혁신촉진자(Change Agent)로 구성된 혁신클러스터는 수은 경영혁신의 중심에서 혁신전도사 역할을 담당했다. 이와 함께 Task Force가 발굴한 과제를 직급별 토론회, 실행부서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임원회의에서 확정시키는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시스템 정착으로 과제 실행력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그 결과 임금상한제·임금피크제 등 성과중심 신 인사제도 도입, e-문서관리시스템 구축, 수출중소 기업 멘토제 실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보 시스템 등 수많은 경영혁신 우수사례가 탄생했다.

2. 정부정책과 경영혁신

수은의 경영혁신은 정부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2008년 12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발표에 따라 2009년에는 인력, 조직, 보수체계 등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효율화가 진행됐다. 세부적으로는 정원의 10%인 74명의 직원을 감축했고, 본점 조직의 10%에 해당하는 4개 부실과 강남지점, 프랑크푸르트사무소가 폐쇄되었다.

보수체계도 개편해 임원 기본연봉 포함, 전 직원 임금의 5%가 삭감되었으며, 직원 연봉제가 최초로 도입되면서 성과급 차등 폭을 150%로 확대했다. 또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임금 격차 축소를 위한 정부의 '공공기관 대졸 초임 조정 권고'에 따라 전문직 직원 초임이 20% 삭감되었다.

임원체계의 경우 종전 5명이던 상임이사의 수가 2명으로 줄었으며, 항아리 모양인 직급구조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5단계(1급~5급) 직급을 3단계(G1, G2, G3)로 단순화했다. 또한,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말, 2010년 말 두 차례 명예퇴직으로 총 52명이 수은을 떠났다.

2013년 12월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문제와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방만 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을 발표하고,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은 20개 기관을 중점관리대상에 선정했다. 수은도 20개 중점관리대상기관에 지정되어 2014년 10월 퇴직금, 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 등 복리후생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공공기관의 조직, 정원, 예산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수은에서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경영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직원들도 정책금융기관 종사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절 경영계획의 수립

1. 창립부터 IMF 외환위기까지 중장기 발전 계획

수은은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고, 제반 경영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금융정책기관으로 성장해 왔다.

수은 최초 장기경영계획은 1979년 2월부터 1986년까지 업무발전 및 효율적 경영관리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반확충단계(1979~1981년)와 선진화단계(1982~1986년)의 2단계로 나누어 예상되는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포괄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여신, 자금조달, 조직·기구, 인사·연수 등 부문별로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1987년 '중장기 업무발전계획(1988~1992년)'을 수립했다. 수은의 당면과제를 국제수지 흑자 기조 하에서의 기능 재정립, 지원조건의 신축적 운용 및 경협기금과의 연계지원 모색, 그리고 장기 안정적인 재원조달 등으로 정리했다. 구체적인 역할 중대 방안은 플랜트, 기계류를 비롯한 자본·기술 집약적 제품의 수출 지원강화, 해외투자지원 대상 사업의 확대 및 다변화, 중요 물자 및 주요 자원의 수입지원과 무역마찰 해소를 위한 긴급자원 수입 지원, 중소기업 지원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자원 확보 및 경영수지 안정화 대책도 수립해 국내 자금조달 확대, 수은 대출재원용 한은 외화수탁 제도의 정립, 연불어음 매각, 환차손 보전제도의 도입 등이 건의되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89년 '수은업무기능개선방안'을 제시했고, 은행경영의 전 반과 각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평가하는 '수은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했다.

1991년에는 제2차 중장기 업무발전계획인 '수은 장기발전방안(1991~2000년)'이 수립되어 사실상 수은의 장기경영계획의 근간이 되었다.

이 방안은 우리 경제의 선진화 내지 국제화 진전에 따라 수은이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업무와 조직을 재정비함은 물론



경영평가 연구반 중간보고서
(1991. 2. 13.)



경영평가 연구반 중간보고회(1991. 2. 13.)

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컸다.

1990년대에 예상되는 금융산업의 변화,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 수은의 역할 변화를 비롯한 주요 경영환경변화를 전망한 장기발전 방안이었다. 이를 배경으로 수은이 대외거래관련 부문의 비교우위를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업무영역을 확보해 기업국제화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경협기금의 확대를 예상하여 새로운 경제협력 업무 개척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1991년 12월에는 국제무역경영연구원의 용역결과인 '21세기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옴에 따라 이를 적극 수용해 경영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1993년 6월 대외거래정책금융 전달기관 특화를 위한 '수은 기능 전문화 방안', 1994년 '경영합리화방안'도 제시했다. 1995년 5월에는 중장기발전방안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21세기를 향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장기 발전계획', 1996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용역보고서 '2000년대를 향한 한국수출입은행의 발전방안'을 통해 장기 발전방안에 힘을 실어주었다.

1997년에는 IMF 외환위기라는 시대적 특수성을 감안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선진금융기관 도약기반 구축을 위해 1998~2000년을 대상으로 중기경영계획을 수립했다. 1999년에는 수출입은행 직원들이 IMF 극복 구상을 직접 기술한 'IMF 외환위기 이후 수은의 기능과 역할 및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새로운 경영전략 구상에 들어갔다.

2. 2000년대 중장기경영계획

장기발전방안이 시효를 다함에 따라 2000년에는 대외거래의 종합적·포괄적 지원, 전문성을 강화한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발전방향으로 중기경영계획(2001~2003년)을 수립했고, 2003년에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용역 결과인 '우리나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과 발전방향'

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으며, 2003년에는 새로운 중기경영계획인 ‘2004~2006 중기경영로드맵’을 확정했다. 중기경영로드맵은 각 직급별 대표가 참여한 Task Force팀이 총 13회의 열린 토론을 통해 시안을 마련하고, 직원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경영진 토론을 거쳐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고, 대외경제협력 및 남북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과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뒷받침한다’는 미션과 향후 3년 이내에 ‘대외무역 진흥을 선도하고 대외경제협력 및 남북협력을 증진하는 핵심은행으로 성장한다’는 비전이 제시되었으며, ‘국제거래 지원 핵심은행’(Core Bank for Global Business)과 ‘수출·해외투자 전문은행’(Creative Leader in Export Credit)의 슬로건을 채택했다.

중기경영로드맵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매년 연동방식(Rolling Plan)으로 조정된 것이 특징이다. 2003년 수립된 1차 중기경영로드맵 대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6년에는 그간 매년 일부 조정되던 로드맵을 총괄 점검해 제4차 중기경영로드맵(2007~2009년)을 수립했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영혁신팀에서 실무를 주관하되 2개의 TFT를 운영했다. 비상근 TF는 각 부서 실장과 팀장급 직원 19명이 참여했으며, TF실무반은 3~4급 실무자급 6명 내외의 직원이 상근과 비상근으로 번갈아 참여했다. 또한, 전 임직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비상근 TF는 물론 경영전략회의 및 임원 간담회 토의 등 초안에 대해 전 임직원에게 Bottom-up 방식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2007년 수립한 중기경영로드맵(2007~2009년)에서는 미션이 ‘우리 기업의 국제거래 지원을 위한 최상의 공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과 대외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한다’로 수정되었으며, ‘수출금융의 창조적 선도은행,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 전문은행, 대외경제협력 전담기관, 남북



중기경영로드맵(2006. 1.)

협력 전담창구, 국제정보 서비스 및 컨설팅전문은행을 통한 국제거래 지원 핵심은행’으로 비전을 제시했다.

핵심가치로는 동반자경영, 혁신경영, 인재경영, 신뢰경영이 제시되었으며, 비전 및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10대 진행 전략과제가 설정되었다. 이러한 중기경영로드맵 설정을 통해 2009년까지 대출규모 20조 8,000억 원, 총자산 27조 원, 중소기업 지원 5조 9,500억 원, 대외경제협력기금 승인액 6,000억 원, 남북협력기금 지원규모 8,000억 원 등 국민경제 기여와 관련한 목표가 설정되었고, 당기순이익 1,500억 원, 고정이자여신비율 0.4%, BIS비율 10.5% 등 재무적 목표가 세워졌다.

3. 비전 달성을 위한 경영계획 수립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중기경영목표를 수정해 온 수은은 2010년에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컨설팅 영역과 TF운영을 통해 ‘비전 2020 전략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수은의 미션을 ‘대외경제협력 증진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으로 설정했으며, 비전은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금융 파트너’로 정했다. 비전 2020의 핵심가치로는 ‘동반자’, ‘글로벌’, ‘신뢰’, ‘전문성’을 선정했으며, 5대 핵심전략목표와 10대 핵심전략과제도 도출했다.

전략목표는 첫째, 글로벌 프로젝트 전문은행으로의 도약 둘째, 미래 성장동력 산업 및 신성장 산업의 선도적 지원 셋째, 정부정책 수행을 통한 시장실패 보완 넷째, 국제협력 전문기관으로서의 성장 다섯째, 핵심 역량 강화 기반 구축으로 설정했다.

10대 전략과제는 첫째, 해외프로젝트 발굴 및 자문 서비스 역량 강화 둘째, 거액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직간접금융 활성화 셋째, 녹색수출 금융지원 강화(Green Pioneer Program) 넷째, 미래성장동력산업 상시지원체계 구축 다섯째,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체계 강화 여섯째, 대정부 및 타 금융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일곱째, 경제협력 기능 확대 및 선진화 여덟째, 대북거래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아홉째, 자금조달 포트폴리오 다변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심사 및 위험관리 역량 강화로 설정했다.

2012년에는 ‘비전 2020 전략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중기경영계획(2012~2014년)이 수립되었으나, 2013년 8월 27일에 정부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이 발표되면서, ‘비전 2020’ 체계 재정립이 필요했다.

세계 각국의 수출지원정책 강화 추세와 공적수출신용기관(ECA) 역할 확대에 대응한 「수은법」 개정이 불가피했는데, 추진 사항에 맞추어 수은의 미션과 비전은 물론 사업별 전략과제까지 재검점이 이뤄져야 했다. 아울러 2001년 이후 수은 인력 및 조직 관련 외부 진단 없이 업무 및 조직이 급격히 팽창한 점을 고려해 외부 기관의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2013년 발표된 정부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른 여신 포트폴리오 조정을 감안한 조직 구조 개선안 도출을 위해 2014년 ‘비전 2020 재정립 및 조직진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2014년 5월 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컨설팅 및 전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새롭게 수립된 비전 슬로건은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선정했으며, 핵심가치는 기존의 ‘동반자’, ‘글로벌’, ‘신뢰’, ‘전문성’을 유지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책임성’을 신규로 추가했다. 새로운 비전 2020에서는 수은의 미션을 ‘대외경제협력 증진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도모’로 정했으며, 4대 전략목표와 10대 전략과제도 새롭게 수립했다.

4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전략과제로는 첫째, 금융 주도로 정세 위기의 현 전략산업 수출 및 성장 부흥 둘째, 미래 전략산업의 발굴과 지원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셋째, 민간자본 연계 및 금융자문을 통해 수은 파급효과 최대화 및 국가경쟁력 확보 넷째, 수출입, 해외진출 및 판로 다각

화를 통한 중소기업 강화 다섯째, 관계금융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강화 여섯째, 내수 부흥을 촉진하는 서비스산업 성장 지원 일곱째, EDCF사업 고도화를 통한 국격 제고 및 개도국 성장 지원을 통한 동반 성장 여덟째, 북한 개발 로드맵 수립 및 국제협력 촉진을 통한 북한 개발협력 사업 선도와 통일시대 선도 아홉째, 수출입금융, EDCF, 남북협력기금 간 '융합'을 통한 전략적 사업 발굴 및 개발, 마지막으로 Control Tower 기능 강화를 통한 진행적 전략 실행 지원이다.

한편, 2014년 '비전 2020 재정립 컨설팅' 보고서 발간으로 2014년부터 중기경영계획 수립은 중단되었다. 2015년부터는 1년 단위 진행 중점업무 추진계획인 '사업계획' 체제가 도입되었으며, 종합운 영계획도 사업계획에 흡수되었다. 급변하는 대외 환경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 '비전 2020 재정립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보완 하고 필요시 중장기경영계획을 재수립함으로써 수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재정립해나가겠다는 결정한 것이다.



비전 2020 재정립 및 조직진단 프로젝트 보고서(2014. 7.)

제2장 리스크관리

1절 리스크 분석 및 관리

1. 조직의 변천과 체계

수은의 리스크관리는 1998년 6월 독립적인 리스크관리 조직인 Risk&ALM부를 신설 하고, 1998년 9월 리스크관리규정 제정 및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수은의 업무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취급업무도 다양해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러 차례 리스크관리 조직을 확대했다. 2015년 6월에는 리스크관리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리스크관리본부를 설치했다.

리스크관리본부는 리스크관리부, 여신감리실, 심사평가부, 기술환경심의실 등 리스크관리 및 심사조직이 있으며, 리스크관리부는 리스크기획팀, 신용리스크팀, 리스크평가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신용, 시장, 운영 등 부문별 리스크관리 업무를 분담해 관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이사회 내에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리스크관리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위원회는 1998년 심의기구로 출범했으나, 2000년 1월 의결기구로 격상되어 리스크관리 정책수립, 주요한도 설정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초기 위원회는 전무이사를 의장으로, 주요 본부장 및 부서장을 구성원으로 했으나, 위원회의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외부 인사인 비상임 이사를 포함해 이사와 리스크관리담당본부

장으로 구성원을 변경했다.

또한 위원회 산하에 실무 현안사항을 논의·심의하는 협의체로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설치했으며, 2009년 12월에는 한도관리 등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의결하는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리스크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후, 2013년 12월에는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비상임 이사를 위원장으로 보임했다.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은 수은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등 외부 감독규정과 리스크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주로 신용공여한도관리, BIS비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내부 리스크관리 규정에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리스크관리 조직의 역할과 책임, 신용, 시장, 유동성 리스크 등 부문별 리스크 관리정책 및 관리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수은은 체계적이고 정확한 리스크관리를 위해 신용리스크 한도관리시스템, 바젤Ⅲ시스템, 시장 리스크관리시스템, 운영리스크관리시스템, ALM 시스템 등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리스크측정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영업환경 변화, 규제사항 변경 등에 따라 시스템을 지속 보완하고 있다. 리스크관리 담당조직은 시스템에서 산출된 리스크정보를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경영진 및 위원회에 보고하고, 직원들과 공유함으로써 리스크관리 인식 제고 및 리스크 정보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2. 자본적정성 관리 체계화

은행의 자본적정성 확보는 건전경영 유지에 필수적 사항으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1988년 7월 '자기자본의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협약'을 제정해 국제 기준의 자기자본 규제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도 1992년 자기자본규제를 도입했다.

수은은 1999년부터 BIS자기자본규제를 적용받았다. 최초에는 신용리스크만 대상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을 산출했으나, 2008년부터는 트레이딩으로 분류된 자산규모 확대 등으로 시장리스크도 반영했으며, 같은 해 금융감독원이 바젤Ⅱ를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운영리스크까지 반영한 BIS자기자본비율을 적용했다.

바젤Ⅱ는 차주별 신용리스크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은행 간 리스크관리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바젤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모든 은행이 동일한 기준으로 리스크를 측정했던 바젤Ⅰ과 달리 은행의 내부 데이터 및 리스크측정시스템을 이용하는 내부등급법을 인정한 것이다.

수은의 경우, 거래기업의 수가 많지 않고 대외거래를 지원하는 기관특성상 해외익스포저(Exposure 외화대출금·외화유가증권·외화지급보증의 합계)가 많아 리스크 계량측정을 위한 부도율 등의 데이터가 부족해 내부등급법을 적용하지 않고, 차주의 외부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도를 차등 적용하는 표준방법을 사용해 BIS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바젤Ⅱ는 규제자본 관리에 더해 은행의 자체 리스크 특성, 규모, 내부통제환경에 적합한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은은 2007년 1월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2010년부터 주요 리스크 부문별 내부 자본한도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의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 뿐만 아니라 금리, 외환결제 등 은행의 주요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은행의 영업상 발생하는 리스크를 은행의 자기자본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은은 매년 초 이사회에서 BIS비율 관리목표와 내부 자본한도 관리기준 설정 등 자본적정성 관리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 조직은 이사회에서 정한 기본방향에 근거해 자본적정성 평가, 모니터링, 보고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수은은 리스크 증가 시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BIS비율 수준에 따른 관리방안을 문서화해 관리하고 있다.

3. 부문별 리스크관리 강화

여신전전성 높이는 신용리스크 관리

신용리스크는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대출금 등 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의미한다. 수은은 국내 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 여신지원 및 그에 따른 자금조달을 주 업무로 하고 있어 신용리스크 관리가 리스크관리의 핵심이다.

수은의 신용리스크는 일반 은행과 달리 리스크 집중도가 높고, 대외 리스크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은행이 기업, 개인 등에 대한 소액 다수의 대출로 구성되지만, 수은은 자본재를 수출하는 대기업에 여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자본재를 수입하는 국가에 수입결제 자금을 지원하기에 주요 수출시장인 개도국 등 대외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수은의 신용리스크관리는 기업 및 국가리스크 관리가 중심이 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은행 지급보증서 등 담보여신을 주로 취급했는데, 독자적인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기초해 제한적으로 신용여신을 취급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신용여신 취급의 활성화와 자체적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에 따라 내부 신용평가등급에 근거한 차주별 한도(Total Exposure 한도, 이하 TE한도)를 설정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해외 리스크관련 정보교환 채널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05. 2. 15.)



신용평가실 신용평가회의(2013. 10. 17.)

수은은 내부규정으로 정한 TE한도 관리와 함께 수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업 및 계열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관리하고 있다. 신용공여한도는 차주별 신용도에 관계없이 은행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여신규모를 제한하는 한도제도이다. 수은의 신용공여한도는 제도 도입 당시에는 동일인(개별기업)은 은행 자기자본의 20%, 동일차주(계열)는 은행 자기자본의 25%로 시중은행과 동일했으나, 정부는 특정 산업에 여신이 편중되는 수은의 업무특성을 감안해 두 차례 신용공여한도를 증액해 현재 동일인(개별기업) 한도는 은행자기자본의 60%, 동일차주(계열) 한도는 은행자기자본의 80%로 설정했다. 더불어 국가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별 신용평가등급체계를 갖추고 해당 등급과 GDP규모를 감안해 국가별로 한도를 차등 설정했다.

수은의 초기 신용리스크 관리는 TE한도, 신용공여한도 등 한도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여신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노출 집중도가 심화됨에 따라 거액 차주 집중 관리, 여신승인 전 사전 점검 기능을 도입했다. 2014년 4월 신용리스크의 집중 방지 및 익스포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익스포저가 일정 규모 이상인 차주에 대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신설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여신승인 전 점검을 강화해 여신합의체에 부의하기 전에 리스크관리 조직이 합의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2015년 6월에는 신용평가조직 기능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심사기능을 추가해 여신승인단계에서의 리스크 점검을 한층 강화했다.

신용리스크 관리 기능의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도 이뤄져, 2014년 리스크관리부 내 신용리스크팀을 신설하고, 여신감리팀을 여신감리실로 승격했으며, 2015년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독립적 심사를 위해 심사평가부를 신설했다.

자산부채종합관리체제 고도화

자산부채종합관리(ALM, 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는 금융기관이 미래에 발생할 금리·환율 변동과 유동성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금융시장에서 금융자유화, 국제화 및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면서 금융기관의 고수익·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지고, 1990년대에는 금리, 주가, 환율 등 기업의 금융자산 및 부채와 밀접한 위험요소의 변동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신용위험, 금리위험, 가격 및 환율변동위험, 유동성위험 등 금융위험이 커짐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자산 및 부채 구성을 최적화하는 ALM 업무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다.

수은도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1992년부터 자산부채종합관리 업무를 도입했으며, 1998년 리스크관리규정을 제정해 자산부채종합관리 업무를 포함한 제반 리스크관리를 보다 포괄적이며 심도 있게 수행할 조직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후 장기 고정금리대출 증가, 파생상품 거래 증가로 자산·부채구조가 복잡해지고 위험노출도 증가하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산부채종합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8년 수은은 시중은행과 다른 자산부채구조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다양한 재무영향 분석을 통해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규정, 조직, 업무프로세스, 리스크측정, 한도관리 등 자산부채종합관리 전 분야에 걸쳐 전면적인 재정비 작업을 벌였다. VaR, EaR 등 측정이 가능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지원하는 新ALM시스템을 구축했다. 은행의 자산부채구조가 은행의 손익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2014년에는 보다 전문적인 자산부채종합관리를 위하여 리스크관리 조직에서 수행하던 ALM기능을 재무기획담당 조직으로 이관하고 리스크관리 조직은 리스크지표 관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재무기획담당조직은 수지를 감안한 자산부채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1990년대 ALM 전산화면

시장·운영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i) 시장리스크

시장리스크는 환율, 금리, 주가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손실위험이다. 정부는 트레이딩 목적 거래의 규모나 비중이 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신용리스크에 더해 시장리스크까지 감안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수은은 2008년부터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했다.

그러나 수은은 주식, 채권, 외환 등 시장리스크에 노출된 금융자산에 대한 트레이딩 목적의 거래를 취급하지 않아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을 위한 시장리스크 측정 이외에는 별도의 시장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유 외화자금 증가에 따른 자산운용방식 다변화를 위해 채권 트레이딩 업무를 실시하면서, 2012년 시장리스크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트레이딩에 따른

손실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이에 따라 매년 초 위원회 의결을 통해 트레이딩 포지션한도, 손실한도 및 손절매한도를 설정하고,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시장리스크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2015년 6월에는 리스크관리부에 리스크수준 평가 및 한도 관리, 공정가액 및 거래가격 적정성 평가 등 미들(Middle) 기능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트레이딩 거래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ii) 운영리스크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 인력, 시스템, 또는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다. 운영리스크는 금융시스템의 발전, 금융상품의 복잡화,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바젤Ⅱ에서는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운영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자기자본 규제 대상에



리스크 분석 결과 논의

운영리스크를 추가했으며, 수은을 포함한 국내은행은 2008년부터 BIS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및 운영리스크를 반영했다.

정부는 운영리스크를 반영한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을 권고한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운영리스크를 인식·평가하고, 위험지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운영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수은은 상업은행 대비 금융거래 건수가 적고, 사고 빈도 높은 소매금융, 출납 업무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2008년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당시 10여 개의 주요위험지표를 관리하는 ‘기초지표법’을 적용한 낮은 수준의 운영리스크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금융거래 증가, 상품 다변화로 업무복잡성 증대, 조직과 인력 확대에 의한 운영리스크 발생요인이 높아짐에 따라 2014년 운영리스크 관리체계를 재수립하는 컨설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운영리스크 관리기준이 제정되었고, 운영리스크 관리 IT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효과적인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이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리스크자가진단, 주요 위험지표 모니터링, 영업연속성계획(BCP), 모의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2절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1. 신용등급평가시스템 도입

우리나라에 전문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제도가 공식 도입된 것은 1985년 9월로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기업의 어음 발행을 허용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담보부대출 관행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는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 결과 IMF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많은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중심의 신용등급평가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지시했고, 대부분의 국내 은행이

여신실행의 가부(可否) 결정에만 활용하던 종전의 신용평점시스템을 1999~2000년에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등급을 차등 부여하는 신용등급평가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수은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차주 분석 강화를 위해 1999년 1월 여신총괄부에 신용정보팀을 신설했다. 대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및 신용분석 업무는 리스크관리부 대기업신용분석과에서 수행하고, 신설된 신용정보팀은 차주의 은행 전반의 신용정보를 관리·분석하는 여신감리업무를 수행했다. 아울러 내부 신용등급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1999년 12월 하나은행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하나은행의 기업평가시스템을 도입했다.

2000년 1월에는 효율적인 기업신용분석을 위해 여신총괄부 신용정보팀과 리스크관리부의 대기업 신용분석과를 통합해 리스크관리부에 여신감리팀을 신설했다. 여신감리팀은 주요 관심사항, 여신 잔액이 큰 기업, 워크아웃에 대한 기업신용분석 및 여신감리 수행, 외부평가기관 등과의 자체 내부 신용등급평가시스템 개발 추진 업무를 수행했다.

2. 자체 신용등급평가시스템 개발

제1기 신용평가시스템 개발

2000년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의 수은 감사 결과, 하나은행에서 도입한 신용등급평가시스템은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하면서 시스템 보완을 권고했다. 수은은 감독당국의 권고 및 은행 내부의 수요를 감안해 새로운 기업신용등급평가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했다.

수은은 한국신용평가정보와 공동으로 새로운 신용등급평가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해, 2001년 4월에 개발을 완료하고 제1기 신용평가시스템을 가동했다. 제1기 신용평가시스템의 평가체계는 재무평가등급과 정성평가등급으로 구성되었으며, 재무평가등급은 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산정하고, 정성평가등급은 산업위험, 재무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및



신용정보팀 신설(1999. 1.)



신 기업신용평가시스템 가동(2004. 2. 27.)

미래위험(재무추정)으로 구성해 통계모형과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결합하여 최종등급을 평가하도록 했다.

제1기 신용평가시스템 개발로 여신총괄부는 무위험이자율(Risk-Free Rate)의 지표인 산업금융채권 금리와 회사채등급별 평균금리 차이를 이용한 종전의 금리산정방식에서 벗어나 등급별 예상부도를 수은 신용위험가산율 산정에 직접 적용했다.

2002년 2월에는 리스크관리부 여신감리팀의 신용등급평가시스템 운용 기능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신용등급평가 업무를 수행할 신용평가실을 신설했다. 신용평가실은 신용여신잔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 거래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등급평가업무 및 신용등급평가시스템 운용업무를 수행하고, 여신감리 업무는 여신감리팀에서 계속 담당했다.

제2기 신(新)기업신용평가시스템 개발

2003년 ‘여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신(新)기업 신용평가시스템의 개발을 확정해 한국신용평가정보와 공동으로 2003년 6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제2기 신(新)기업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했다.

2004년 1월 운용을 시작한 제2기 신(新)기업신용평가시스템은 재무평가등급의 안정성 및 예측력을 강화해 기존의 단일 재무평가모형대신 로짓모형, 인공신경망모형 및 평점모형을 결합한 다중모형 재무평가를 도입하고, 정성평가의 객관화 및 평가등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성평가를 기존의 서술식에서 객관식 선택형으로 개선해 신용등급평가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제3기 신용평가시스템 개발

수은은 신용등급평가 적합성 및 변별력 제고를 위해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제3기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2012년 3월부터 운용하기 시작했다. 개선된 신용등급평가 프로세스에서는 재무평가와 정성평가 결과를 결합해 결합등급을 산출하고, 등급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급제한을

반영해 시스템등급을 산출하며, 등급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 등급조정을 거쳐 최종등급을 산출했다.

제3기 신용평가시스템 개발과정에서 재무평가에 활용되는 재무비율 선정을 위해 2001~2010년까지 10년간 재무비율을 활용해 변별력과 신뢰성이 높은 재무비율을 선정했다. 10년간의 평균 재무비율 및 수은부도 정보를 활용해 재무등급을 설정했으며, 10년간의 평균 수은 거래 차주 부도정보를 활용해 재무등급별 부도율을 설정했다. 회계기준별(GAAP/IFRS) 재무평가체계도 마련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생산성의 4대 부분 내 7개 세부요소로 재무평가 등급을 산출했다.

정성평가는 산업·재무·영업·신뢰·경영위험 5개 항목 내 23개 세부 평가요소로 구성했다. 정성평가에 거래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누고, 업종별로는 제조, 조선, 건설, 도소매서비스로 구분해 정성평가 등급을 산정했다. 또한 거래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망, CEO 경영능력 등의 비재무적 정보를 신용등급평가에 반영해 재무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거래기업의 성장성 등 실질내용을 신용등급평가에 반영했다.

제3기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2014년 3월에는 2012년 3월 개발 완료된 제3기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적합성 검증결과와 2012년, 2013년 부실발생기업 74개사에 대한 정밀분석 결과를 토대로 3기 신용평가시스템의 변별력 제고를 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재무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사용제한 자산, 우발채무 등을 고려해 실질유동성을 반영한 재무등급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으며, 과목별, 금융기관별 은행연합회 신용공여정보를 시계열로 제공하는 기능을 추가해 동태적 재무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동종기업 분석을 추가해 신용등급평가 시 산업별·기업별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했다.

TCB 기술금융 신용등급평가 반영

기술금융(Innovation Financing)은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사업화 등 기술혁신 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이다. 2014년 1월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술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효과적으로 축소해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감소시키면서 기술금융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였다.

수은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2014년 6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정보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14년 7월 TCB(Tech Credit Bureau,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등급을 신용등급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평가 내규와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거래기업의 기술등급 및 보유기술이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신용등급평가에 적극 반영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신용 대출을 받고, 이자율과 대출한도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개선

2014년 12월 금융감독원은 전 은행에 분식회계 적출 로직의 정비를 통해 분식회계 적출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분식 징후가 적출된 경우 해당 차주에 대한 정밀 분석 실시 등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수은은 금감원 보유 분석사례와 기업 부실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무지표 분석을 통해 2015년 11월 새로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개발했다. 새로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 비해 재무제표와 회계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변별력과 유효성이 향상되었다.

수은은 차주의 재무제표 및 회계자료의 신뢰성을 분석하는데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분석 결과를 신용등급평가 과정의 정성평가 및 등급조정에 반영하고 있다.

의료기관 신용평가등급 모형 개선

수은은 2015년 11월 의료기관 해외 진출 지원 확대 추진을 위해 의료기관 신용등급평가 모형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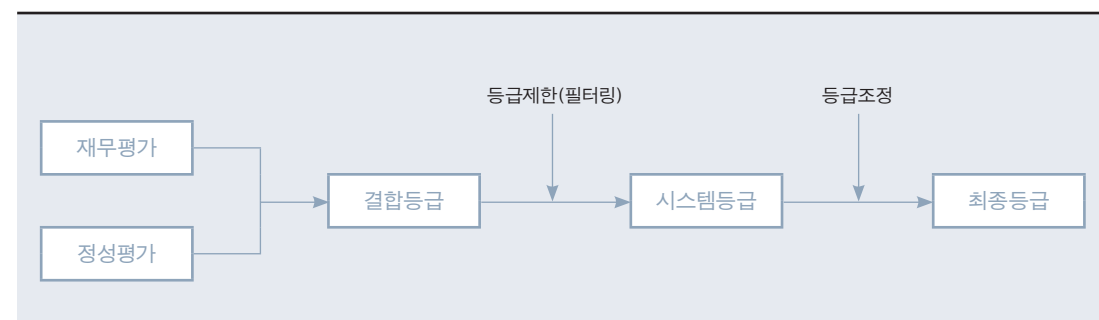
설했다. 기존 의료기관 신용등급평가모형은 국내 대형병원 신용등급평가에 적합한 모형이었으나, 2015년 11월 개발된 새로운 의료기관 신용등급평가모형은 대형병원 외의 병원도 효과적으로 신용등급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며, 병원과는 상이한 특성을 갖는 검진기관도 별도로 신용등급평가가 가능해졌다.

일반 기업과 산업위험, 사업위험, 재무위험, 경영위험에서 상이한 특성을 갖는 의료기관 신용등급평가 모형을 개선함에 따라 병원 및 검진기관에 대한 효과적이고 타당한 신용등급 산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3. 중소·중견기업 여신심사 업무 도입

2015년 6월 여신규모 확대, 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여신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균형 기반 마련을 위해 리스크관리단을 확대 개편해 리스크관리본부를 신설했다. 리스크관리본부는 여신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팀

신용등급평가 프로세스



리스크관리본부

을 확대 개편해 신용등급평가와 여신심사 기능을 수행하는 심사평가부를 두었다.

심사평가부는 기존 신용등급평가 업무에 추가해 산업담당자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여신심사(부의안 심사)를 맡도록 했다. 이는 여신 승인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해져 여신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4. 국외기업 신용등급평가

국외 신용평가 도입배경

수은은 수출기반자금 대출(수입결제자금), 대외채 무보증, 역외대출, 현지법인사업자금 대출에 대한 여신 지원을 위해 국외 차주 신용등급평가 제도 도입이 시급했다.

이를 위해 2000년 1월 '국외기업 신용평가지침'을 제정하고 국외기업 신용등급평가 업무를 시작했다. 국내 기업의 현지법인 등 국외기업이 모기업의 연대보증 없이 자체 신용만으로 필요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금융 수요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였다.

국외 의료기관 모형 신설

수은은 2015년 11월 의료기관 해외 진출 지원 확대를 위해 국외 의료기관 신용등급평가 모형을 새로 도입했다. 국외 의료기관을 산업위험, 사업위험, 재무위험, 경험위험 측면에서 살펴보고, 국가별 리스크를 반영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하게 된다. 국외 의료기관 신용등급평가 모형 역시 병원과 검진기관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별도 평가가 가능하다.

5. 국내·외 금융기관 신용등급평가

2003년 8월부터 수은과 거래관계에 있는 국내의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등급평가 업무를 시작했다. 수은은 국·내외 금융기관 신용등급평가모형을 구축해 수출기반자금대출(간접대출) 및 포페이팅 업무 취급을 위해 관련 국외은행 등 국·내외 금융기관을 신용등급평가하고 있다.

2015년 11월에는 국내 금융기관과 국외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등급평가 모형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거래금융기관의 성격(은행, 증권, 보험, 여신전문업, 기타 금융기관)에 따라 신용등급평가 모형을 세분화하고, 국내외 금융기관 신용등급평가의 변별력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신용등급평가모형을 개선했다.

3절 기술 및 환경심사

1. 기술심사 도입 및 배경

1992년 8월 선박 및 플랜트 기술심사 업무수행을 위해 기술지원실을 설치해 1995년 3월까지 운영했다. 이후 2004년 8월 환경부문에 대한 심사수요 증가로 기술환경심의실을 발족했으며, 기술심사 및 환경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술심사는 선박 기술심사와 기타 기술심사로 분류된다.

조선시장 호황과 함께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면서, 기존의 대형조선사 외에 중소형 조선사, 대형조선사의 하청 업체인 블록전문 제조업체가 선박 수출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은에 여신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 중소조선사의 선박수출이행능력 심사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선박 기술심사는 중소조선사를 대상으로 선수금환급보증을 지원할 때 실시한다. 선박제작이행능력 기술심사, 중소조선소의 전반적인 운영 상태를 조사하는 정기점검, 그리고 선수금 환급보증의 만기연장 시 선박의 건조현황을 확인하는 공정점검이 이뤄진다.

기술심사건수는 2004년 대한조선의 컨테이너선 6척을 비롯해 8건을 진행했으며, 2005년에는 신아조선 케미컬탱크선 2척을 비롯해 8건을 기록했다. 이후 기술심사 건수는 비약적으로 늘어나 2015년 말 기준으로 제작이행능력 기술심사 158회, 정기점검 25회 및 공정점검 129건을 실시했다.



조선소 방문 점검(2013. 8. 27.)



예멘 LNG 환경심사 장면(2006. 1.)

이 밖에 기타 기술심사는 선박 외 수출물의 제작능력평가와 유·가스전의 매장량평가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건을 심사했다.

2. 환경심사 도입 배경

경제발전으로 인해 환경의 파괴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모색했다.

국제연합은 1992년 7월에 브라질의 리우에서 기후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기후협약(리우환경협약)을 체결했으며,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를 발효시켰다. 또한 2013년 12월 OECD는 수출신용회의에서 회원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수출신용지원 시 환경보호를 위한 공동이행방안(Common Approaches)을 채택했다.

수은은 2004년 수출신용지원 시 환경심사 제도를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환경보호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2012년 공동이행방안(Common Approaches)의 개정으로 기존 환경영향 심사에 추가해 사회적 영향 심사, 고탄소 배출사업의 온실가스 발생량 보고 및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지원대상 사업의 환경·사회위험 수준에 따라 A, B 및 C등급으로 분류한 후 환경·사회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험에 대한 수입국기준 또는 국제환경기준 중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환경·사회위험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수입자가 환경·사회위험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권고하며,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 2월 이 제도를 도입한 후 2004년 3건, 2005년 3건을 시작으로 총 73건의 해외 수출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심사가 실시되었으며, 총 61건의 수출프로젝트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4절 여신감리

1. 여신감리제도 도입 배경

IMF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수지 및 건전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수은 내에 신용평가, 여신심사·승인, 자금집행, 사후관리 등 여신 행위와 관련한 의사결정 적정성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여신감리제도 도입 및 관련 전담조직 발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00년 5월 여신감리 제도를 본격 도입했으며, 독립적 감리수행 조직으로 리스크관리부에 여신감리팀을 신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견제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2. 여신감리 주요 기능

여신감리 업무는 신용등급 평가 여신심사 및 승인 업무, 여신실행 이후 상시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과정을 통해 각 조직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취하는 과정으로서 일종의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업무로 분류된다.

일련의 여신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상감리는, 심사·승인 결과에 대한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승인감리, 신용평가역 또는 일선영업담당자에 의해 수행된 신용등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신용등급감리, 기업의 정태적·동태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부실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동태점검을 실시하는 상시모니터링 체제(조기경보제도) 운영 등이 있다.

이는 여신승인에서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함으로써 신용보강 체계가 강력하게 작동하도록 한 것이다. 감리제도 도입 이후 실효성을 높이는 보완작업도 꾸준히 이뤄져 시장여건, 부실발생 현황 등을 반영한 감리대상 선정, 부실예측력이 높은 항목 반영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조기경보관리제도는 2012년을 기점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2011년까지는 요관찰기업 관리라는 이름으로 주로 특정시점의 정태적인 재무수치를 반영한 체크리스트 방식을 통해 시스템이 운영된 반면, 2012년부터는 부실예측성이 높은 재무적, 비재무적 요소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종합평점방식의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부실예측 및 동태점검이 가능해졌다.

일상감리와 함께 특정시점의 여신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수시감리도 실시하고 있는데, 수시테마감리와 국외기업감리로 구분된다. 수시테마감리는 산업, 여신종류, 여신관행 등 주요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적시성 감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정상적 여신취급, 한도축소, 채권보전 강화 등 여신운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출 등 수은이 타행대비 월등히 많이 취급하는 국외기업 여신감리도 정기적으로 진행해 부실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3. 감리조직 부서승격 및 감리효과 제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되는 세계 경기침체 영향으로 조선·건설 등 주요 산업의 불황이 지속되고, 제품주기가 단축된 전자와 IT 산업의 신용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여신건전성 관리는 더욱 중요해졌다. 수은은 기존 부서 내 팀으로 존재하던 감리조직을 2015년 1월 독립부서인 여신감리실로 승격하면서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했다.

감리조직의 독립부서 승격 후, 여신감리실은 감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감리, 조기경보감리 등 일상감리 대상을 확대했으며, 감리조치 사항의 사후관리 및 점검강화를 통해 감리업무의 내실을 다졌다. 아울러, 부실 사례에 대한 정밀한 분석으로 도출된 교훈을 바탕으로 여신제도, 관행 및 감리업무 개선 등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고 있

다. 특히, 2016년에는 부실발생시 은행수지 및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PF, SF 등 중장기 여신에 대한 감리를 최초로 도입해 리스크 요인의 사전 점검을 통해 장기적 안목의 은행건전성 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5절 여신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1. 개요

여신관리는 정리대상여신에 대한 담보권 실행, 강제집행 및 관련 소송 등 법적절차를 수행하고, 수은이 경락받은 담보물인 유입물건을 관리·매각하며, 회수 가망성이 없어 대손상각 처리한 특수채권을 관리하는 등 정리대상여신의 발생시점에서 소멸될 때까지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말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여신관리업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범위가 확대되어, 정리대상여신의 단순한 관리를 넘어 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기업구조조정절차를 통해 구조조정기업의 본원적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업무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이에 수은은 효율적인 여신관리를 통해 정리대상여신을 조기에 회수해 많은 수출 기업들에게 자금이 제공급되도록 하는 한편, 회생 가능 기업은 적극적 지원을 통해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부실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여신관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조직 및 제도

조직의 변천

수은은 수출·수입거래와 관련된 수출입금융을 중심으로 여신을 취급해 온 기관 특성상 거래 규모가 큰 대기업이 주요 대상이었다. 이런 이유로 시중은행에 비해 정리대상여신 발생빈도와 금액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대기업 및 리스사, 종합금융사 등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수은의 자산 건전성 및 수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수은은 경제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1998년 1월 여신총괄부에 정리대상여신 관리 전담조직인 특수여신관리팀을 발족하고 동년 6월 특수여신관리실로 승격하며 여신관리 조직을 꾸렸다.

이후 정리대상여신 관리 업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며 다시 큰 변화를 겪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시장 침체로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과 건설업에 대해 여신이 집중됐던 수은의 부실여신 규모가 증가한 때문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은은 2013년 1월 중소기업 금융부에 소속된 특수여신관리실을 독립실인 기업구조개선실로 확대 개편했다.

또한 2013년 6월 중소 조선사 및 해운사의 구조조정을 전담할 중소조선금융실을 신설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조선사 및 해운사에 과도하게 지원한 여신 부실화 대책에 부심했다. 중소조선금융실은 이후 2014년 2월 관계부처 합동의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을 통한 해양·선박금융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2014년 6월 해양기업개선실로 확대 개편되었다. 하지만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2015년 6월 구조조정업무의 시너지 효과 및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의 기업구조개선실 및 해양기업개선실을 통합해 기업개선단으로 개편하고, 기업개선단 산하에 기업구조혁신실을 신설해 대기업 및 중소 조선사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구조조정업무를 전담했다. 업무 방향도 기업구조조정의 패러다임이 부실발생 이후 금융지원에서 기업의 사전적 구조조정을 통한 부실화 방지 및 재도약 지원으로 전환했다.

제도 정비 및 개선

수은은 정리대상대출금의 관리를 위해 1989년 11월 여신정리규정을, 그리고 1998년 8월 여신정리요강을 제정했으며, 2014년 4월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여신정리기준을 제정했다. 그 후 업

무 효율성 제고와 여신부점 업무지원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여신정리규정 및 요강을 개정해 2015년 말 현재 정리대상여신의 관리와 관련해 여신정리 규정, 여신정리세칙 및 여신정리기준의 3단계 규정 체계를 갖추었다.

특수여신관리실 발족 이전에는 본점의 여신부점 및 지점이 보유한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여신을 지원받은 기업이 워크아웃, 회사정리절차, 화의 등 기업구조조정절차를 밟는 경우 소요시일 과다와 전문성 미흡으로 인해 여신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 그러나 특수여신관리실 발족 후 정리대상여신 및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특수여신관리실에서 집중관리하면서 업무노하우가 축적돼 효율적인 여신사후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금융감독원, 감사원 및 국정감사 등 정리대상여신에 대한 외부 감사를 특수여신관리실이 전담하면서 영업부점은 정리대상여신의 사후관리 및 수감 부담에서 벗어나 영업활동에 집중하게 되었다.

아울러, 2005년 10월에는 특별관리여신 관리기준을 제정해 부실징후가 있는 여신에 선제적 관리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수행했다. 이와 함께 워크아웃 실행기준도 제정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으나, 일시적인 재정난에 빠진 수은 거래기업에 워크아웃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부실채권을 조기에 관리하는 동시에 기업 경영을 정상화해 채권회수를 촉진했다. 이 기준은 2014년 4월 여신정리기준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초기에는 여신관리 전결권이 최고경영진에 집중되고, 하부위임 근거가 없어 의사결정이 길어지면서 채권회수 업무가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수은 대출금 출자 전환, 이자 및 지연배상금 감면 등 기업구조조정 계획안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특수채권의 시효관리 종결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 사회의 승인을 얻어 처리했다.

그러나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의사결정권의 적절한 하부위임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점차 개선되었다. 2008년 3월 특수채

권의 상각, 시효관리 종결 등에 관한 전결권을 정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부위임이 이루어지도록 여신정리세칙을 개정했으며, 2010년 12월 기업구조조정 전결권을 조정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2012년 8월 채권회수 관련 법적절차 중 소송에 관해 확일적으로 규정된 전결권을, 채권회수를 위한 지급청구소송과 타 채권금융기관이 수은에 제기하는 소송에 대한 응소여부 결정과 중요도가 낮은 기타소송으로 구분해 전결권을 조정했다. 2013년 8월에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 축소를 통해 자산건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권상각 및 특수채권 관리 종결에 대한 전결권을 하향 조정해 절차를 간소화 했다.

기업구조조정의 새로운 선택

2015년 6월 구조조정작업이 진행 중인 중소 조선사의 효율적 관리 및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사전적 구조조정을 위해 신설된 기업개선단도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우선 2015년 8월 수은, 성동조선 및 삼성중공업 간에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경영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수은은 삼성중공업과 성동조선을 최장 7년 동안 공동 경영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4년 동안 성동조선의 영업, 구매, 생산, 기술 부문에서 경영을 지원한다. 이로써 국가 전략산업인 조선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대형 조선사 간 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조선사별 맞춤형 구조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



성동조선해양

한 사례를 만들었다.

또한 취약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4대 회계법인과 기업 경영개선 컨설팅을 위한 MOU를 체결해 사전적 구조조정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은은 산업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2. 정리대상여신 비율 추이

IMF 외환위기 당시 수은의 고정이하 여신이 급증했다. 이와 같은 정리대상여신의 급증은 은행의 수지를 악화시켰다. 1999년 12월 말 기준 고정이하 여신은 총 여신의 9.83%인 1조 3,994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과감히 대손상각하고, 회생 가능한 기업은 회사정리, 화의 및 워크아웃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절차를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2006년 12월 말 기준 고정이하 여신은 총 여신의 0.13%인 489억 원, 무수익여신은 총 여신의 0.12%인 438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수은의 고정이하 여신은 다시 증가했지만, 2012년 말까지 0.53~0.77% 범위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2010년 이후 자율협약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던 성동조선, 대선조선, SPP조선 등 중소 조선사의 경영 정상화 지연에 따른 신규 자금지원 증가로 인해 2013년 말 수은의 고정이하 여신은 총 여신의 1.51%인 1조 3,766억 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2013년 말 워크아웃이 개시된 경남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1,000억 원 지원, 수출서류 및 가격 조작 등 허위수출거래서로 1,100억 원대의 여신을 지원받은 모뉴엘의 파산 등 대규모 여신의 부실화가 이어지면서 2014년 말 고정이하 여신은 총 여신의 2.02%인 2조 1,492억 원을 기록해 2004년 이후 다시 2%를 넘어섰으며, 2015년에는 STX조선의 법정관리 가능성 등으로 인해 고정이하 여신은 총 여신의 3.24%인 4조 374억 원을 기록하며 수은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고정이하 여신 및 무수익 여신 비율

(단위 : 억 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여신	366,527	510,294	784,650	804,338	834,768	881,731	841,006	900,789	1,061,878	1,247,525
고정이하 여신	489	737	1,979	4,272	6,408	5,797	5,550	13,766	21,492	40,374
무수익 여신	438	566	1,833	4,136	8,537	4,136	3,593	4,912	2,336	1,603
고정이하 여신비율	0.13%	0.14%	0.25%	0.53%	0.77%	0.65%	0.66%	1.51%	2.02%	3.24%
무수익 여신비율	0.12%	0.11%	0.23%	0.51%	1.02%	0.47%	0.43%	0.55%	0.22%	0.13%

제3장 인사관리

1절 인사관리

1. 인사관리 도입과 변화

수은 업무는 그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수은은 창립 이래 공적수출신용기관 고유의 중장기 수출금융지원 업무와 해외투자, 수입, 주요 자원개발, 그 밖의 국제거래 지원 업무, 그리고 여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조달, 조사, 법규 등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직원의 전문 인력 양성에 공을 들였다. 또한 경험기금 업무, 그리고 남북기금 업무 등 정부로부터 수탁 또는 대행한 고도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과학적인 정원관리와 직무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은행 전체 또는 일부 직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했으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력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1985년에는 총무부 총무과를 확대해 인사부를 정식 발족했다.

1976년 설립 당시 76명의 직원(임원 4명)으로 출발한 수은의 직원 수는 1986년에는 511명으로 늘어났으나, 이후 경험기금 업무와 남북기금 업무가 새로 도입되고 업무량이 크게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말 직원 수는 984명(임원 5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설립 첫 해 수은 자금 공급규모가 534억 원이었던 것이 2015년 경험기금과 남북기금을 제외한 수은 여신지원 목표 규모가 80조 원으로 약 1,500배 확대된 반면, 같은 기간 직원 수는 약 12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직원 전문

역량 강화, 업무전산화 추진 및 팀제 도입 등 인사 및 조직 효율을 극대화한 노력의 결과였다.

이밖에 채용, 승진, 이동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인적자원 활용성을 높이고, 인사관리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해 왔다. 특히 수은의 특성에 맞는 혁신적 인사관리 기법을 적극 도입해 대내외 경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2. 인사관리의 합리화

인력관리

1982년 2월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의 책정 등 제반 인사관리 사항이 자율화되면서 직무분석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자체 인력관리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수은은 매년 업무량 및 업무내용을 반영한 은행 전체의 직급별 정원을 책정·운영하고 있으며, 신축적인 인력조정을 통해 부서별 업무량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인력관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1981년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관리 체계를 정비한 데서 시작됐으며, 1986년, 1993년에도 은행 전반에 걸친 직무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소요인력 산출 이외에도 전산화 가능업무를 파악하고 사무직원의 고유 업무를 발굴하는 등 인사관리의 기본 자료를 확보했다.

수은의 인적 구성은 타 금융기관에 비해 중간관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국제금융, 대형 프로젝트 심사, 경제협력, 남북협력 등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상



직원 전문역량 강화연수(2006. 10. 12.)



신입행원 사령장 수여식(2013. 5. 27.)

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 수은도 다른 금융기관처럼 인력 구조조정을 피해가지 못했는데, 상위직급을 중심으로 한 강도 높은 인력 감축을 실시했다.

1999년 5월에는 주요 간부직원의 경영참여기능 확대를 통한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 대우제도를 도입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2009년 상임이사를 축소하고 기존 이사 대우를 폐지했으며, 타 국책은행과 함께 기존 이사대우제도를 대체하는 집행간부(일부 타기관은 집행부행장) 제도를 도입했다. 집행간부 제도는 다수의 부서를 통괄하는 본부장제의 실행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별도직급 신설이라는 우려와 지적에 따라 2015년 집행간부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직원의 급여체계를 따르는 '본부장 보임 제도'를 도입했다. 업무별 특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면서도 별도직급을 폐지해야 한다는 감독기관의 처분요구를 이행하는 합리적 선택이었다.

인력의 고령화와 인사적체, 과다한 인건비 지출을 해결하기 위해 2004년 12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2005년 5월 정기인사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임금피크제가 노사합의에 의해 도입된 것은 국책은행 최초의 일이었다. 당초 정년이 58세에서 현재 60세로 2년 연장되는 대신 만 56세가 되면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정년퇴직까지 직전 연도 대비 일정비율 감소한 보수를 받게 된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중소기업 자금관리역, 국내지점 마케팅 전문역, 수출중소기업 상담센터 시니어 컨설턴트 등 해당직원의 경륜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실시로 수은은 인건비를 절감하고, 신규채용 여력을 확대했으며, 직원은 고용안정과 안정적 노후설계가 가능해졌다. 만성적인 인사적체 해소로 사기진작 효과도 거두었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해 2015년 현재 313개 전체 공공기관이 이를 도입한 바 있다. 수은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이미 10년 이상 운

용해함에 따라 정원관리와 같은 일부 항목만 보완해 정부 권고안에 부합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은은 수십 년간 1급에서 5급까지 5단계 직급체계를 운영해 왔으나, 2009년 직급체계 개편으로 G1~G3 3단계로 바꾸었다. 직급단계가 단순화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연공 위주의 직급체계를 역량과 성과중심으로 개선되었으며, 실무인력도 확충되었다.

채용

수은은 연도별로 충원계획을 수립해 직종별로 소요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행원급은 학사학위 이상 학력 소지자로 전문직행원과 기타 사무직행원으로 구분해 채용하고 있다. 채용은 정기전형이 원칙이나, 특수기능 보유자, 법적 의무고용자, 기타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필기전형, 면접전형 및 신체검사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국제 업무 비중이 큰 업무 특성상 제2외국어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해 영어 구술 및 작문 시험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면접전형 시 영어 인터뷰도 병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채용방식을 채택해 분야별 주요 직무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을 직무설명서 형태로 채용공고에 게재하고 전형 단계별로 해당 역량을 측정해 적합한 지원자를 가려내고 있다.

직원 성비 구성을 보면 여성비율은 1990년대 중반부터 높아졌으며, 2000년 이후 연도에 따라 채용인원의 최고 60% 수준에 이르면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2015년 기준 일반직원 G3 책임전문역 직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36%이고, 일반직원 G3 전문역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에 달한다.

최근에는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을 위해 자격요건에서 학력, 전공 및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있다. 부문별로 적합한 인재 발굴을 위해 지역전문가 및 기

금업무 부문을 구분해 전형을 실시하는 한편, 청년실업 해소방안으로 도입한 청년인턴제도의 수료자를 대상으로 전체 채용 인원의 일부를 할당해 검증된 인력을 채용한 점은 최근 채용의 특징이다.

또한 급격히 확대되는 업무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시 경력직원을 일반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2014년 말에는 정부의 ‘정책금융역할재정립 방안’에 따라 정책금융공사의 대외정책금융 자산·부채 및 인력을 수은이 인수하면서 약 30명을 채용한 바 있다. 한편 연구원, 변호사, 홍보전문가 등 특수 전문직 수요에 따라 해당 인력을 수시 채용하고 있다.

승진

수은은 설립 초기부터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인사고과를 실시해 이를 승진인사에 반영했으나, 1977년 8월 이후에는 종합평정제도를 시행해 연공 위주의 인사관리에서 탈피해 근무성과와 경력이 조화된 효율적인 인사관리 체제를 갖추었다.

종합평정 구성은 직급별로 다소 차이를 두었는데,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으로 나뉘인다. 수은의 종합평정제도는 도입 이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과 업적에 기초한 승진인사가 가능하도록 수차례 수정·보완을 거쳤다.

제도 변경은 TF팀을 가동해 신중한 검토를 거쳤으며, 합리적인 경과규정을 두어 운영했다. 일례로 2009년 직급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평정제도를 손볼 때는 상근 TF를 운영해 합리적 개선안을 도출한 뒤 직원설명회를 거쳤다. 또한 경과규정 아래 개정작업에 신중을 기했다.

종합평정을 기반으로 한 직급 승진과 별도로 2011년에는 부서장 및 팀장급 신규 보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본부장 인사권 확대를 통한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조직관리자 보임 기준’을 제정했다. 2015년에는 ‘본부장 보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조직관리자 보임 기준’에 본부장 신규 보임 기준이 추가되었다.

설립 이래 고졸 이상 학력자를 대상으로 채용한

사무직원은 직급승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1995년 12월 직원임용규정을 개정해 사무직원 직급을 1~6급으로 나누었으며, 종합평정에 의거한 승진제도를 시행했다. 이로써 사무직원도 승진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겨 일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었다.

종합평정 외에 2003년부터 다면평가를 실시했다. 다면평가는 부서장, 팀장 등 주요 중간관리자에 대해 소속부서 또는 소속팀 전문직직원 전원이 평가하는 상향평가였다.

이후 다면평가는 상급직원에 의한 하향평가, 동료직원에 의한 수평평가, 하급직원에 의한 상향평가를 포괄하는 평가로 발전했다. 효과적인 다면평가를 위한 전산시스템도 개발해 활용했다. 다면평가 결과는 역량개발을 위하여 평가대상자 본인 앞으로 통보되고, 직책보임이나 이동·연수를 위한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동

수은은 직원의 적재적소 배치와 인재양성의 원칙하에 정기적으로 직원의 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 이동도 실시하고 있다. 직원의 이동은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성적, 연수와 인사상담 기록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995년 수은 전문인력 육성계획 및 동 계획 시행안을 마련했고, 이에 기초해 1996년에는 직군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에는 지점 및 국외 네트워크가 대폭 확충되면서 통섭형 인재가 필요해져, 직군제 실효성이 떨어졌다.

결국 2007년 직군제를 대체해 부문별 채용, 장기 및 순환근무 병행, 직무경력경로(CDP) 관리, 직무유관 연수 확대를 포함한 직원 전문역량 강화 방안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직원임용규정에 직원의 순환근무 이동주기를 3년으로 명시해 빈번한 부서 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했다.

한편 1995년에는 혁신적인 인사방안으로 관심을 모은 주요직위에 대한 공모제(Jop Posting)을 도입했다. 그해 5월 관재실장과 특수여신관리실장

을 대상으로 직위공모제를 실시한 이래, 수은의 대표적인 인사제도로 정착되었다.

이는 능력주의 인사원칙을 실현함과 아울러 직원들의 자기계발 노력을 촉진하고 인력배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는 대상 범위가 확대돼 사무소, 주재원, 현지법인, 국제기구 파견 등 국외근무 직원 선정뿐만 아니라 부서장, 팀장 등 본점 주요직위에 보임할 직원을 선정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밖에 1995년 1월, 인사관리정보시스템(Personne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MIS)이 완성되면서 인사관리업무 전산화 기틀을 마련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인사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2절 연수관리

수은의 연수제도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별 역량제고, 혁신주도형 창조적 관리자 육성, 개인과 은행 발전을 위한 자기계발이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전문성, 창의성, 서비스정신, 주인의식을 발휘하는 전문가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적수출신용기관인 수은 업무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기에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연수제도 필요성이 설립 초기부터 제기되었다. 이에 1977년 8월 총무부에 연수과를 신설하고 인사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연수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으며, 현재는 인사경영지원단 인력개발팀에서 연수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있다.

또한 1993년 6월 별도의 인재개발원을 설치했으며, 2004년 10월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연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은의 연수는 1976년 외국어 실력 배양을 위한 외국어연수를 시작으로 1977년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실시한 각종 전문직 과정 연수, 수출학교 연수 등 외부기관 파견연수를 시행했다. 1978년 이후에는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현행 종합업무연



한국수출입은행 인재개발원 증축 및 리모델링 준공식
(2004. 10. 23.)

수의 효시인 수은 내 업무연수와 해외사무소 근무 연수를 실시했고, 1979년부터는 국외학술연수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 들어 연수체계는 더욱 다양하고 체계적인 틀을 갖추었다. 1979년에 최초로 발행한 업무교본을 바탕으로 직원에 대한 실무연수를 실시했으며, 책임자급 직원의 업무수행 및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1984년 이후 신입대리급 관리자훈련과정, 차·과장급 실천관리자과정 통신연수, 고위간부 고급관리자과정 파견연수를 시행했다.

1987년에는 직원연수제도인 장학요강과 국외연수요강을 폐지하고 현행 연수체계의 근간이 된 연수규정을 마련했다. 연수제도는 국내연수와 국외연수로 분류하고, 국내연수는 다시 행내외연수로 나눠 업무연수, 외국어연수, 관리자연수, 전산연수, 부서단위 조직활성화연수를 실시했으며, 국외연수는 학술연수, 장·단기 업무연수, 외국어연수, 해외전학연수로 세분화 했다.

1989년 수은의 장기발전방안이 수립되면서 전문 인력의 양성은 더욱 힘을 받았다. 특히 1993년 정부의 금융산업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대외거래 전담은행으로서 수은 고유기능의 전문화가 한층 강조되면서 전문 인력 양성은 조직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 수은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국제금융 및 여신심사 부문을 중심으로 국내외 연수를 대폭 강화했다.

국제금융 분야는 1989년부터 해외현지법인에 현장교육(On the Job Training: OJT) 연수를 최초로 실시했으며, 기존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외에 국제금융공사(IFC), 미국국제개발처(USAID) 등 국제금융기관 장기연수를 확대했다. 아울러 한국금융연수원 전문과정 등 전문기관 위탁연수도 대폭 늘렸다. 1992년 하반기에는 업무교본을 전면 개정하고, 1993년 행내 전문강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내 실무연수 내실화를 도모했다. 1994년 12월에는 여신심사 및 자금·국제금융 분야에 대한 행내 전문업무연수를 실시했다.

외국어연수도 심도 있게 진행했다. 1989년 8월



신입행원 연수(1978. 1.)



행원 첫 해외연수(미국수출입은행)(1993. 10. 22.)

연수기간 1년의 대만국립사범대 중국어 연수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프랑스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특수 외국어 현지연수를 확대했다. 1995년부터는 국외 업무연수 예정자에게 업무연수 전 장기 외국어연수를 실시해 국외 업무연수 효과를 극대화했다.

국내 외국어연수도 1993년 9월 연수원 합숙영어 연수를 시작으로 1995년 2월 신입 증견행원 전원을 정식 부서배치 전 서강대학교 부설 영어교육원 구소에서 6개월 과정의 장기 영어연수를 금융기관 최초로 실시했다.

수은의 연수제도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2003년과 2005년이였다. 2003년 연수과정을 자발적으로 선택해 개인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는 '직무 맞춤형·자기선택형 학습체계'인 연수이수학점제가 도입되어 2004년에 시행되었다.

연수이수학점제는 인사부의 연수발령에서 벗어나 직원의 자발적 직무맞춤형·자기선택형 학습체계로서 해당직급에 필요한 '필수과정'과 임의로 연수과정을 선택하는 '선택과정'으로 구분해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제도였다. 제도 도입 이후 기존 연수에서 소외되었던 사무직원의 연수 강화, 근무시간 외 행내 연수과정 신규 개설 증가, 야간/행내연수와 통신/사이버연수의 학점비중 확대 및 자기계발 연수 증가 등 전체적으로 연수기회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결과 2004년, 2005년에 해당 직원 모두가 일정수준 학점을 취득한 성과도 거두었다.

2005년에는 경영혁신에 발맞춰 기존의 부서자체 업무연수, 부서활성화연수를 실무역량개발학습, 부서혁신역량강화학습으로 재편했다. 특히 실무역량 개발학습은 부서 내 직원 중 강사를 선정해 업무 관련 주제를 심화 연구·발표함으로써 핵심 업무지식을 공유하도록 했으며, 업무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지식을 학습하는 실행중심 혁신학습동아리를 구성해 경영혁신 추진에 기여했다. 이와 아울러 팀장 이하 책임자급의 혁신능력 함양을 위한 고 객만족 및 리더십 역량강화 연수, 간부급(팀장 이

상) 혁신토론회, 부서장 혁신교육 및 고객만족 및 리더십 역량강화 연수를 연중 수시로 실시했다.

2007년에는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무전문연수를 시행해, 효율적 업무수행과 전문 인력 양성을 도모했다. 맞춤형 직무전문연수의 시행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국제금융, 선박금융 등의 분야에 대한 행내강사 강의를 통해 관련 부서 소속직원은 물론 관심직원의 자율적인 참여로 업무관련 핵심 업무지식을 공유했다. 직원대상 행내 맞춤형 직무전문연수는 2013년 KEXIM Global Academy(이하, KGA) 프로그램의 토대가 되어 내부 전문가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2011년에는 대외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할 전문성을 길러주는 직무전문연수, 리더십 개발, 최신 경영정보 습득을 위한 온라인 연수과정을 개설해 고급관리자 비금융 분야 역량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온라인 연수는 기존 집합연수와 달리 연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 2013년 전 직원대상의 온라인 연수과정이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전 직원이 개인 상황에 맞게 리더십, 자기계발 등 직무외 분야 연수과정을 수강함으로써 직원 역량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연수과정은 지속적으로 발전돼 2015년에는 각 본부단위의 직무연수를 발굴하고, 시행하는 본부별 특화연수를 실시해 해당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역량을 강화했다. 각 본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실무역량제고에 도움이 되는 연수과정이 개설돼 연수예산의 효율적 사용은 물론 연수효과에서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혁신역량 강화연수(2006. 10. 12.)



직무전문연수(2007. 3. 2.)

제4장 국제협력

1절 업무 개요

수은의 국제협력 업무는 대외거래 지원 금융기관이라는 특성에 따른 해외기관 초청 세미나 등 행사 개최와 외빈면담 통할 조정 업무가 대부분으로 기획부 국제과가 전담했다. 그러나 대외거래 지원 역할 증대로 해외기관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2000년 9월 국제협력업무 전담 부서인 국제협력실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며 국제협력 업무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국제협력실 신설로 홍보를 통해 대외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우리나라 고객 기업의 수요에 맞는 금융을 적시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더 공고히 하고자 다양한 해외기관과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에 힘썼다. 또한 해외고객을 상대로 직접 마케팅 활동을 실시하고, 아시아 수출신용기관과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치는 등 업무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2012년 6월에는 MENA Conference 같은 수은 주도의 국제행사 개최와 주요 해외기관의 업무협약 확대로 국제협력실에서 글로벌협력부로 개편되었고, 2014년 6월 금융자문 및 주선 업무 정착에 따른 효율적인 해외네트워크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글로벌협력부와 금융자문부가 전략사업부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2015년 7월에는 전략사업부의 사업개발 기능이 강조되면서 다시 한 번 사업개발부로 조직 개편되면서 국제협력팀이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양 부서의 통합으로 국제협력 업무는 여신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사업개발부의 국제협력팀은 수은 대외협력업무 창구로서 해외기관 교류 및 협력업무를 주관하며 국제협력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국제협력 업무를 크게 구분하면 공적수출신용기관,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수출 진흥을 위한 대외통합마케팅 및 외국고객 홍보 활동 등이 있다.

2절 국제협력 업무

1.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수은이 최초로 체결한 업무협약은 1982년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과 체결한 업무협약(Cooperation Agreement)으로, 양 기관의 협조대출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후 1990년대 일본수출입은행(현 일본국제협력은행), 멕시코대외무역은행(Bancomext), 캐나다 수출개발공사(Export Development Canada: EDC) 등 해외수출신용기관은 물론 유럽 개발부흥은행(EBRD)을 포함한 국제개발기구와 업무협약도 활발했다. 이를 통해 관련국 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교환과 협조대출(금융협력강화) 및 상호 유망협력 분야에 대한 정보 교환(포괄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이뤄졌다.

2000년 국제협력실 신설 이후에는 플랜트, 선박 등 우리나라 기업의 수주 가능성 확대를 위해 중동, 중남미 등 대형 사업 발주 기업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체결 대상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



일본 수출입은행과 업무협약 체결(1992. 5. 4.)



유럽부흥은행과 협조융자 기본협정 체결(1993. 4. 26.)



미수은과 화물수송기 도입 지원을 위한 협조융자 기본협정 체결(2004. 10. 4.)

2000년 이전 총 8건에 불과하던 업무협약 체결 건수는 2000년 28건을 시작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2002년 8월 수은이 발의해 말레이시아, 인도, 일본 등 아시아 6개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은 수출입거래로 개설되는 신용장에 대한 상호 확인 및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IMF 외환위기 후 침체된 아시아지역의 수출입거래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에 기여했다.

2004년 10월 미국 수출입은행과 우리나라 항공사의 화물수송기 도입 지원을 위한 협조대출 기본협정 체결도 의미가 컸다. 국내 항공사가 미국 화물수송기 구매 시 해당 거래에 대해 양국의 수출입은행이 동시에 자금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외에 2005년 2월 미주개발은행(IDB)과 체결한 업무협약도 주목할 만하다. 이 협약은 미주개발은행 회원국 발주 사업 협조대출 확대, 중남미지역 경제·금융·사업 정보 교환 및 인적교류, 포괄적 협조체제 구축을 명시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2005년 3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미주개발은행 회원국이 되는 길을 열었다.

수은은 이처럼 설립시점부터 해외시장에서의 우리 기업의 영업 및 수출활동 지원을 위해 국제협력 체제를 구축한 결과 2015년 11월말 기준으로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미주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 등의 국제개발기구와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을 포함해 총 57개국 164개 기관과 총 20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 수출 진흥 지원활동 강화

통합마케팅과 맞춤형 마케팅

2003년 수은은 자금과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실시하던 대외마케팅 방식에서 벗어나 수출자금, 해투자금 및 전대자금 등 모든 여신상품을 포함한 통합마케팅 방식을 채택했다. 수은 위상 및 역할의 대외 인지도 제고, 해외시장 및 고객의 변화에 대응하는 마케팅 효과 극대화를 도모한 것이다. 이

를 위해 먼저 2003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UAE 중동 3개국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외통합마케팅을 시작으로 같은 해 중남미 3개국, 2004년에는 구소련 3개국 및 동남아 3개국, 2005년 중남미 4개국 및 중동 3개국을 대상으로 년 2회씩 대외통합마케팅을 실시했다.

3년간 실시한 적극적인 대외통합마케팅을 통해 중동, 동남아, 중남미 등 주요 전략지역에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따라, 2006년에는 활동성과 및 문제점을 점검해 마케팅 방식을 조정했다. 새로운 전략지역을 선정해 타깃 마케팅을 실시하고, 해외사무소와 해외 네트워크, 해외고객 초청 컨퍼런스를 적극 활용해 마케팅을 벌였다. 또한 매년 관련부서별로 수요조사를 벌여 마케팅 시행 필요성 여부 및 필요 지역을 확인해 중북 마케팅 등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우리 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새로운 전략지역을 발굴했다.

해외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우리 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사업발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2014년부터는 경제발전 단계별로 전략개도국 15개국을 선정해 사업발굴 중심의 마케팅을 실시했으며, 2015년에는 마케팅 대상을 세분화해 우리나라의 중점진출국 11개국, 핵심진출국 4개국을 추가하고 그룹별 지원전략을 수립해 차별화된 마케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성장잠재력은 높으나 취약한 경제구조 및 거버넌스 등 제약 요건으로 수출금융지원이 쉽지 않았던 전략개도국의 경우 EDCF와 연계해 케냐,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국가와 미얀마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발굴 마케팅을 실시했다. 또한 해외시장의 갑작스런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한 마케팅도 펴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5년 중 이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 조치 해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핵 협상 타결 이후 이란 시장 선점을 목적으로 2015년 10월 이란 대외통합마케팅을 실시했다.

해외고객 초청 컨퍼런스

대외통합마케팅과 더불어 2005년부터 해외수주



중동 통합 마케팅(2013. 4. 9.)



중남미 통합 마케팅(2013. 7. 1.)

촉진 프로그램인 해외고객 초청 컨퍼런스를 실시하고 있다. 해외고객 초청 컨퍼런스는 외국 주요 발주처와 장기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구매, 시행 등 해외 프로젝트 실시 및 금융조달, 제반 인허가 권한이 있는 발주처, 정부, 중앙은행의 고위 인사가 초청 대상이다.

행사는 한국경제 및 산업 현황 소개, 수은 금융제도 및 지원 사례 안내, 우리나라 플랜트산업 현황과 기술경쟁력 설명, 우리 기업과 해외발주처의 직접 교류 기회 제공, 우리나라 대표 산업 시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2005년 9월 열린 제1회 컨퍼런스는 브라질, 이집트, 인도, 이란, 오만, 터키 6개국 석유공사 및 전력청 대표, 중앙은행 임원 9명이 참석했으며, 2006년 7개국 11명, 2007년 11개국 15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효율성을 고려해 마케팅 집중 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매년 실시 방식에서 벗어나 발주가 증대되는 개도국 발주처를 타깃으로 한 타깃마케팅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으로 풍부한 오일머니를 비축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급증한 중동지역을 대상으로 2011년 대외통합마케팅을 실시하고, 이듬해 2012년 4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주요 발주처를 초청한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한·중동 협력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행사가 기획되었으며, 초청 발주처 외에 금융기관, 주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대사관, 국내 기업, IB, 로펌 등에서 총 17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제1회 MENA 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에 따라 2013년 제2회 컨퍼런스는 23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14년에는 우리 기업의 수주지역 다변화 추세를 반영, 초청 대상을 아시아 지역의 핵심 발주처까지 포함한 수은 아시아·중동 컨퍼런스로 범위를 넓혀 개최했다.

주한 외국상무관 대상 업무설명회

2001년부터 주한 외국 상무관을 대상으로 수은



국협실 해외고객초청 컨퍼런스(2005. 9. 20.)



MENA 컨퍼런스 1대 1 미팅을 통한 프로젝트 상담
(2012. 4. 25.)

금융지원 프로그램, 경험기금 지원제도 및 한국경제동향 설명회도 개최했다. 주한 외국 상무관 대상 업무설명회가 정착되면서, 2011년부터는 주한 외국 대사 초청설명회도 개최했다.

초청설명회는 주한 외국 대사를 포함해 국내 주재 외교관을 대상으로 수은 금융지원 정책 및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대외홍보를 증진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전대자금 등 여신상품과 EDCF 홍보를 통해 설명회에 참가한 개도국의 수은 금융 이용가능성을 높였으며, 경험기금사업을 위한 정부 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업무설명회에 참가한 개도국 외교관을 통해 개도국 현지 정치·경제상황 및 금융정책 정보를 수집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3. 공적수출신용기관 및 국제개발은행과 교류활동 강화

아시아수은포럼(Asian Exim Banks Forum)

아시아수은포럼은 1996년 2월 인도수출입은행의 제안으로 한국, 일본, 중국,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총 7개 나라의 공적수출신용기관 협의로 출범했다. 역내 공적수출신용기관 간 정보교환, 인사 교류, 상호관심 사항 공동 연구, 공적수출신용기관 신설지원 및 제3국 민간사업 공동지원 추진을 목적으로 199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발족 이후 베트남개발은행(VDB), 필리핀수출입은행, 인도네시아수출입은행이 추가로 정회원에 가입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영구옵서버 자격을 얻었으며, 2015년 제21차 아시아수은포럼 연례회의에 터키수은이 준회원 자격을 얻어, 2015년 말 아시아수은포럼의 회원은 정회원 10개 기관, 준회원 1개 기관, 영구옵서버 1개 기관이다.

수은은 발족 단계부터 OECD 수출신용협약, 회원기관 간 공동 협력 사업 발굴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의장국으로 2001년 10월 제6차 서울회의와 2010년 제16차 부산회의를 개최했다. 수은은 2001년 제6차 연례회의에서 각국 수출입은행이 협약을



제1회 주한 외국 상무관클럽 초청 연례 세미나 개최
(2001. 11. 28.)



주한 아시아대사 초청 세미나(2012. 3. 28.)

맺어 상대국 상업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장을 보증함으로써 역내 무역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참가국 관계자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2002년 8월 말레이시아, 인도, 일본 등 6개국 아시아 수출신용기관이 다자간 수출신용장확인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낳았다.

또한 2010년 제16차 연례회의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수은의 역할이라는 회의 주제로 아시아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역내 교역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2008년 호주수출보험공사(EFIC) 제안으로 논의된 '상호복보증을 통한 공동 금융지원협약(Reciprocal Risk Participation Agreement: RRPA)'의 기본문안의 합의를 도출했다.

이를 계기로 수은은 2012년 2월 EFIC과 RRPA를 체결하고, 2013년 6월에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방한 때는 양국 정상에 배석한 가운데 중국수은과 RRPA를 체결했다. RRPA 체결 직후에는 한·중 양국 수은은 한국 조선사의 중국기업 앞 선 박 수출 건에 대해 공동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공동지원 계약을 맺었다.

국제개발기구와의 교류활동 강화

국제개발기구와의 교류활동도 강화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주요 국제개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인력교류를 실시했으며, 수출금융 및 경험기금을 통한 협조대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지원했다.

2007년과 2011년에는 한·중남미 지역의 주요 기업 간 동반 관계 강화를 통한 양 지역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한·중남미 무역투자포럼을 미주개발은행(IDB) 및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2015년 부산에서 개최된 미주개발은행-미주투자공사(IDB-IIC) 연차총회의 부대행사로 진행된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포럼도 주관했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2010년 메콩강 유역 개발포럼을 서울에



제 7차 아시아 ECA 회의(2001. 10. 11.)



중국 수은과 RRPA 체결(2013. 6. 27.)

서 개최했다. 1992년 ADB 주도로 메콩강이 관통하는 6개국(중국,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의 역내 빈곤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착수된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Greater Mekong Subregion: GMS)의 일환으로 개최된 비정기적 포럼으로, 6개국이 아닌 곳에서 개최되기는 2010년이 처음이었다.

한편 2006년부터 격년으로 아프리카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한·아프리카 간 경제협력 협의체인 KOAFEC(Korea Africa Cooperation Conference) 장관급 회의도 개최하고 있다.



2015 IDB-IIC 연차총회(부산)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포럼 주관(2015. 3. 26.~28.)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2008. 10. 28.)

제5장 사회공헌활동

1절 사회공헌사업 개요 및 조직

1. 사회공헌사업의 발전

수은은 글로벌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상생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사회공헌을 실시하고 있다.

수은의 사회공헌은 수혜자에 대한 일회성 후원 및 단순 금전기부를 지양하고,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봉사와 기부, 재능 나눔(프로보노) 활동을 통해 국내외 소외계층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임직원들의 사회공헌 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수은의 사회공헌활동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임직원 개인정기후원으로 시작됐다. 수은이 설립된 197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280여 명이 정기후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30년 후원자 2명, 25년 21명, 10년 84명 등 장기적인 후원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급여결전 적립사업도 설립 초기부터 실시해 적립된 기금은 매년 연말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에 사용하고 있다. 2005년 기존의 ‘500원 + 100원 미만’에서 ‘1,000원 + 1,000원 미만’으로 적립액을 높였으며, 2013년 이후에는 급여결전 이외에도 ‘사랑의 모금함’을 설치해 거둬들인 후원금과 임직원 자율기부액을 더해 연간 약 4,000만 원가량을 희귀난치성질환 환우 치료비로 후원하고 있다.

2005년 4월 19일에는 임직원 봉사활동 기구인 ‘수은나눔봉사단’을 발족해 밀도 있는 봉사활동을



성수리마을 봉사활동(2013. 9. 26.)



희망씨앗 대학생봉사단 창단식(2013. 5. 24.)

벌이고 있다. 노숙자 무료급식, 무의탁 아동 돌보기, 취약계층 연탄배달, 글로벌 봉사활동 등 매년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특히, 2005년 홍천 성수리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매년 농촌 봉사활동(일손 돕기 및 의료봉사) 및 후원(경로당 및 게이트볼장 건립)을 실시했다. 이 밖에 신입행원 연수프로그램에 사회봉사활동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2. 사회공헌 체계와 조직

희망씨앗 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개설

수은은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2012년 사회공헌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후원 및 수은나눔봉사단을 통합한 ‘희망씨앗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희망씨앗 프로그램’은 수은의 업무특성에 맞게 후원대상을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다문화가정, 탈북민 등 신구성원의 사회적응 지원’, ‘글로벌 사회공헌’으로 분류해 각 분야별 후원한도 및 후원방식을 달리 운영함으로써 수은 사회공헌의 정체성 및 차별성을 획득하고 있다.

특히 2013년 7월 희망씨앗 홈페이지를 개설해 사회공헌활동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희망씨앗이라는 수은 사회공헌 브랜드를 일반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독립적이고 투명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연간 사회공헌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해 2010년 16억 8,000만 원에서 2015년 50억 원 규모로 크게 성장했으며, 프로그램도 다양화 되고 있다.

프로보노 봉사단 창단

‘프로보노’란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으로, 수은 임직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기업 등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0년 7월 창단했다. 매년 10~17명의 봉사단원이 사회적 기업을 위한 경영자문, 인사노무, 마케팅, 외국어 번역 활동을 벌이고

있다.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2015년 말 기준 총 74명에 이른다.

장기적 후원 활동 전개

수은의 대표적인 장기 봉사활동인 홍천군 성수리마을과의 1사1촌에 더해, 1사1병영(육군 5군단), 1사1홈(그룹홈 ‘가족’), 개도국1사1촌(감보디아 붓뱀마을), 1사1산(강화도 마니산) 등 각 분야별 대표후원대상 기관을 선정해 장기적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사1병영 기관인 육군5군단과는 후원 이외에도 군장비 전시 및 화력시범 초청, 임직원 부대 연수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개도국1사1촌 대상인 붓뱀마을도 2014년 하반기에 임직원이 글로벌 봉사활동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마을주민과 임직원의 직접적인 교류도 지속하고 있다.

2013년에는 아시아여성대학(방글라데시 소재)과 인턴십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교육 및 해외활동 기회가 부족한 저개발국가 여성에게 수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인턴 기회를 부여했다. 2015년까지 3년 동안 매년 3명(총 9명)의 학생이 약 2개월 동안 인턴 활동을 거쳤다. 수은 인턴쉽 프로그램은 아시아여성대학 내 인턴십 프로그램 중 학생 선호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될 예정이다.

희망씨앗 대학생봉사단 창단

2013년 5월 희망씨앗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해 ‘희망씨앗 대학생봉사단’을 창단했다. 수은 지점이 위치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매년 14개(팀당 10~12명의 대학생으로 구성) 내외의 팀을 구성해 1년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직접 봉사를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이슈에 대해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최우수팀은 해외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차별화된 산학연계봉사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절 주요 사회공헌활동

1. 국내 봉사활동

취약계층 자립지원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내 취약계층에 대한 수은의 사회공헌활동은 주로 금전적 후원과 나눔봉사단의 봉사활동이 결합되어 있다. 서울역 및 영등포 지역 노숙인을 위한 배식 봉사,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연탄배달 봉사, 조손가정 및 한부모 가정 아동을 위한 SOS어린이마을 후원 및 케익만들기 봉사 등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봉사로 기획되었다. 특히 장애인 고용 사회적기업의 운영자금 후원 이외에도 임직원이 직접 모은 재화용품을 기증해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복지확대에도 앞장서고 있다.

新구성원 자립지원

우리나라는 이주여성, 중도입국자녀, 탈북가정 등 새로운 구성원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수출금융,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남북협력기금 등 수은의 핵심 업무영역이 새로운 구성원들이 유입된 국가와 연관성이 높아 사회공헌활동 또한 다문화 및 탈북가정 등 우리사회 新구성원의 사회적응 및 자립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新구성원 고용 사회적 기업에 대한 후원은 新구성원 자립지원의 핵심이다. 수은은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 및 상해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 기업의 자립 및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최초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 연대공제기금'에 2억 원의 모태자금을 지원했다.

이후 2015년 11월 100개의 사회적 기업이 가입하는 등 기금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12월부터 '사회적기업연대공제회'로 독립 발전시켰다. 아울러 매년 20개 내외의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 운영자금 및 사업개발자금을 후원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이 상생의 기업모델로 우리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연탄배달봉사(2014. 10. 29.)



탈북청년 남한정착 교육사업 지원(2014. 12. 10.)



다문화어린이도서관 지원(2014. 12. 2.)

도록 돕고 있다.

다문화가정 및 탈북민 자녀가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올바른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짐으로써 글로벌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매년 다문화어린이도서관 6개, 다문화·탈북민 대안학교 10여개를 선정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교육사업 후원에도 정성을 다하고 있다. 또한, 2005년 이후 매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수은 임직원이 직접 청소년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소속감과 자존감 고취를 위해 매년 희망씨앗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탈북가정 대상 사회적응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후원해 탈북민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축제, 남북예술인 합동콘서트 후원 등 다문화가정, 남북한 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사회통합에 힘을 보태고 있다.

2.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수은은 수혜 대상자 교육 및 자립, 보건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선족어린이에 대한 한글교육 후원, 탄자니아 마을교량 보수사업, 개도국 백신개발 및 보급사업, 키르기스스탄 빈민 아동 교육지원사업, 몽골 초등교사 미술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사회공헌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발생한 네팔 대지진 당시에는 긴급구호자금을 활용해 네팔 대사관에 신속하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특히 2015년부터는 해외진출 고객기업과 임직원이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해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DCF 사업을 수주해 현지에 진출한 경남기업, 코오롱글로벌(스리랑카) 및 한국농어촌공사(인도네시아) 임직원과 취약지역 유치원 개선공사 및 화장실 건립공사를 공동으로 실시해 현지인으로부터



인도네시아 취약계층 지역 화장실 건립공사(2015.11.20.)

큰 호응을 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수은은 현지에 진출한 중소기업들과도 공동 사회공헌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의 현지 이미지 개선은 물론 후속사업 수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6장 정보기술(IT) 부문 발전 및 정보화

1절 정보기술 조직 및 시설 확충

1. 정보기술 조직과 인력

1977년 8월 업무개선실로 출발한 수은의 정보기술(IT)조직은 1979년 전산직원 9명을 보강하며 업무전산화의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금융산업의 국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정보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1990년 전산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독립부서로 확대했다.

이어 1990년대 중반 전산정보실로 다시 부서명을 변경하고 Client/Server기반의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도했다. 2007년 1월에는 전산정보부로 다시 부서명을 변경하며 IT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려갔다. 2012년 6월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IT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산개발실을 신설하고, 2013년 현재의 부서명인 정보시스템부로 면모를 일신했으며, 그 아래 시스템개발실을 두었다.

정보시스템부는 정보화전략의 수립·추진과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에 관한 기획·통합, IT인프라 운영, 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스템개발실은 여신·자금·경협자금·남북자금의 정보시스템 개발·운영과 정보분석시스템(Data Warehouse) 개발, 리스크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및 전자결제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전산화추진위원회는 수은의 정보화 정책 및 방침설정, 중장기 및 연도별 정보전산화계획의 수립, 중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최초의 전산시스템(1977. 8.)



컴퓨터 도입 설치 가동식(1984. 10. 24.)

운영 등 IT기능의 총괄기획 및 추진기구를 맡고 있다.

전산화추진위원회는 1991년 3월 은행장을 위원장, 기획담당이사 및 전산담당이사, 주요 부서장을 위원으로 출발했으며, 2007년 12월 전무이사를 위원장, 기획·여신기획·리스크·전산 담당 본부장, 주요 부서장을 위원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의 실무적인 검토 및 심의를 위해 예산·인사·여신기획·리스크관리 담당 부서의 팀장 및 정보화사업 소관 팀장 및 책임자로 구성된 전산화추진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한편 관련 인력 확충을 위해 1980년대부터 전산관련학과 전공자와 시스템 엔지니어 등 전산 인력을 채용했으며, 모든 직원의 IT활용능력 배양을 위해 정보활성화연수를 실시했다. 또한, 급증하는 정보보안 요구에 대응하고 임직원의 정보보호인식과 보안 강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2절 업무전산화

1. 업무전산화 도입기

수은은 최초로 전산을 업무에 접목시킨 1977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약 8년 동안 한국전자계산소(KCC) 등 외부용역기관의 시설을 이용해 기초적인 일괄처리(Batch)방식으로 일부 업무의 개발 및 업무 처리를 진행했다. 이 기간 주요 전산 업무는 대출 및 사후관리 등 여신 업무를 비롯한 급여 등 기본적인 관리 업무의 계수처리에 국한되었다. 1984년 4월 대출 및 사후관리, 외환통계 등 여신업무, 계리 및 결산 업무를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1985년 10월에는 자금조달, 원화자금 운용 및 환거래 등의 업무를 전산화했고, 이후 예산, 급여 및 자산 등 일반관리 부문에 대한 시스템 개발도 완료해 정보시스템의 활용체제가 구축됐다.

2. 온라인업무 개발기

본격적인 전산업무개발은 1990년대 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오라클(Oracle)을 도입해 여신종합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시초다. 수은은 1990년 들어 중전 일괄처리시스템(Batch system)으로 처리하던 전산업무를 On-line Real Time System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으며 주요 업무의 단위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다양한 정보제공의 요구에 부응해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고, 사용자 이용환경을 개선하던 중 다양한 GUI(Graphic User Interface)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 개발 및 유지·보수가 편리한 신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를 기반으로 1993년 2월 범부 정보시스템을 개발, 모든 직원이 여신 및 국제금융거래의 각종 계약서에 대한 법률심사 의견을 활용하도록 했으며, 외빈 면담자료 관리시스템도 개발해 주요 면담인사 및 기관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

1994년 5월에는 모든 여신을 대상으로 승인, 집행 및 사후관리, 통계 등 여신전반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가동했다. 1995년 8월에는 자금조달 및 운용, 외국환 평형자금, 역외금융, 현지법인관리, 자금수급계획, 자산부채종합관리 기초정보 등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자금종합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관리자 포함 전 직원으로 이용계층을 확대해 정보시스템 부문의 활용기반을 넓혔다.

이와 함께 1994~1995년에 걸쳐 예산, 자산, 급여 등 일반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1995년에는 사용자 편의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에 주력해 여신결산, 상시감사지원시스템도 개발했다. 아울러 1990년 초반부터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1994년 7월 국내기관 최초로 하이텔, 천리안 등 외부 통신망을 통해 국가별 투자환경, 투자절차 및 성공사례 등 해외투자정보를 제공했다. 1999년 5월에는 해외투자 통계업무 및 동향분석업무를 은행연합회에서 이관 받아 고객중심의 활용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해외투자 정보를 제공했다.

3. e-Business 기반 구축기

1990년대 후반 들어 국내외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개방화가 본격화되고 웹기반 기술의 발전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회전반에 정보화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수은은 대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영업력 증대 및 대 고객 서비스를 위해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서둘렀다.

이에 따라 2001년 6월 정보기술(IT)부문의 장기 발전계획인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2001년 11월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개발에 착수했다. 은행 전체 업무를 체계적으로 결합하고, 국내 금융권 최초로 모든 업무시스템을 웹방식의 기업정보포털(Enterprise Information Portal: EIP)로 통합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기업정보포털의 구축은 3단계로 진행했다. 선도단계(3개월)는 고객종합관리 및 국제협력관리 업무를 시범(Pilot) 대상시스템으로 선정해 효율적인 고객 마케팅지원체제를 갖추었으며, 1단계(8개월)는 여신, 자금 등 주요 계정계 업무를 개발했고, 2단계(5개월)는 여신통계, 리스크 관리, 수지분석 등 정보계 업무 개발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시스템을 구축했다.

수은은 2003년 4월 차세대 정보시스템 정상가동 이후에도 디지털 금융서비스체제 실현과 금융사고 예방, 무장애 정보시스템 운영을 목표로 정보기술(IT)인프라에 힘을 기울여 여신 업무의 전자결재 승인업무 확대에 이어졌다.

2004년에는 국제은행 간 자금결제시스템인 SWIFT 시스템을 도입해 외환거래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했고, 외환동시결제시스템 구축 통해 사용자 중심의 피드백체제를 확립했다. 아울러 남북청산결제시스템 구축, 무역자동화(외환EDI), 인사평정(다면평가)시스템 구축, 현지법인 전산화 지원도 이뤄졌다.

2005년에는 해외투자통계, 동향분석업무에 대한 통합 전산화 및 해외경제정보(OEIS) 정보검색을 위해 해외투자통계 분석업무 수행체계를



차세대 정보시스템 가동식(2003. 4. 18.)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완료(2004. 12. 22.)



ODA 모니터링 통계보고 시스템 설명회(2014. 2. 7.)

마련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해외투자통계 기초 자료 입력체제도 갖춰 외부고객의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신뢰성 있는 해외투자통계 활용기반 체제를 확립했다.

이 밖에 정보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002년 무정전(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시스템을 설치하고, 네트워크 통합관리체제(Network Management System: NMS)를 구축했다. 2004년에는 전산사고 및 장애·재해에 대비해 필수 정보인프라의 무장애 처리를 위한 재해복구시스템(Business Recovery System: BRS)을 구축하고, 주컴퓨터 등 각종 정보자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해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2007년 2월에는 리스크관리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바젤Ⅱ 신BIS산출시스템, ALM기반 듀레이션 측정, 신용등급감리 자동화 개발 과제를 성공리에 마쳤다. 2009년에는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체제 구축 및 고객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민간단체 기금신청, 남북협력기금 정보공유, 기금 통계 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남북종합정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오픈해 남북협력기금 수탁 업무가 한층 정교해졌다.

2010년에는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적용 회계를 기존 기업회계기준에서 국가회계기준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연결하는 기금회계시스템을 구축해 대정부보고체제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아울러 정부·학계의 ODA 통계수요에 발맞춰 OECD 기준에 부합하는 ODA 통계분석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2011년에는 수은의 주요 업무 및 홍보 자료를 고객 눈높이에 맞춰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또한, 수은의 중점 추진 사업인 히든챔피언 육성을 IT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제도의 성과측정·효과분석,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히든챔피언 성과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2010년대 들어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 DDoS 공

격 등 사이버 공격이 빈번해지자, 정부는 금융소비자의 정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금융권에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수은은 업무자료 유출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저장문서 암호화 체제를 도입하고, 전 직원에게 암호화된 보안USB를 지급해 문서의 생산·유통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보안 체계를 정착시켰다. 2012년에는 기획재정부 사이버안전센터 및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DDoS 공격 대응 장비를 설치하고, 사이버보안관제센터를 가동했다. 한편 임직원의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등 종합적인 보안체제 구축에도 힘을 쏟았다.

또한, 수은은 모바일,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활용한 소통·협업, 업무전문화 및 고도화된 정보 분석·활용 요구에 부응하고자 2012년에 중기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부터 여신, 경험, 남북, 자금, 회계, 인사, 예산, 통계, 리스크 등 전행 업무시스템을 재구축하는 新EXIM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2017년 4월 완료를 목표로 한 新EXIM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2015년 8월, 사업 1단계인 여신, 기금 등 계정업무 프로세스 재정립 및 설계를 마쳤으며,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스템개발 및 IT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제7장 자산관리

수은은 보유자산을 업무용 고정자산, 기타자산 및 해외자산으로 구분, ‘자산관리 요강’에 의해 취득, 보관, 유지, 사용,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본점은 자산관리 담당부서장(전산관련 기자재의 경우는 전산담당 부서장), 지점(출장소, 사무소, 개설준비위원회 포함)은 지점장(출장소장, 사무소장, 개설준비위원장 포함)을 자산관리자로 지정했으며, 본점의 자산관리 담당부서장은 수은 전체의 자산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고정자산은 업무용 토지, 업무용 건물, 공구기구 비품, 차량운반구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다. 자산관리자는 매년 예산이 성립되면 자산수급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의 주요 물품 및 업무용 고정자산에 대한 수급계획을 세우며, 연 1회의 정기 재물조사를 통하여 관리상태, 정수, 배치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업무용 부동산은 대부분 본점의 토지 및 건물과 지점의 공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물에 대한 구입 및 개보수 공사가 관리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물품수급계획 또는 공사계획에 의한 계약추진 절차는 시장조사와 함께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공고를 통해 일반경쟁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있다.

수은은 합리적인 물품구입과 재고관리, 보유자산의 수선 및 개·보수공사를 통한 자산의 최적상태 유지 및 불용자산의 처분 등을 통한 자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본점 신축 공사(1983.)



행사 본점건물 신축 준공식 테이프 컷팅(1985. 9. 17.)

1절 본점 건물 신축

1976년 설립 당시 수은은 대우센터 빌딩 내 사무공간 600여 평을 임차해 업무를 개시했으나, 업무량 및 인원 증가에 따라 매년 임차면적이 늘어났다. 따라서, 증가하는 보증금 부담, 국제금융기관으로서의 대외공신력 제고, 임직원의 복리 증진이라는 다양한 이유로 1981년 본점 건물 신축을 추진했다. 1981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여의도동 16-1 소재 시유지 2,756평을 구입하고, 1982년 1월 15일 총무부 내에 건축추진반을 구성했다. 또한 신축업무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무이사(위원장)로 하는 은행장 자문기구인 ‘건축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1982년 5월에는 본점 건물의 종합설계를 정립건축에 의뢰하고, 같은 해 11월 24일 건축허가를 취득했다. 12월 13일에는 시공자 입찰을 실시해 대림산업을 선정하고, 1982년 12월 17일 기공식을 거행했다. 본점 건설공사는 착공 2년 8개월 만인 1985년 8월 31일 시공검사에 통과해 1985년 9월 17일에 본점 건물을 완공했다.

1999년에는 건물 노후화로 인한 전면적인 보수를 결정하고 그해 2월 종합적인 시설보수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1999년 3월~2000년 11월에 건물 성능개선 종합진단을 현대건설에 의뢰했으며, 이를 근거로 2000년 12월 성능개선공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7월과 12월에 본점 성능개선공사 설계 및 감리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해 한국종합건축을 설계자로, 창조종합건축을 감리자로 선정했다. 2002년 2월에는 경쟁 입찰을 통해 LG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02년 4월 3일 기공식을 가졌다.

착공 이후 시공, 자재구매 등 공사 관리 강화를 위해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사무환경개선 컨설팅을 받아 최적의 사무공간으로 꾸미고, 2003년 6월 17일 준공했다. 2006년 6월에는 수은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정문 조경시설을 개선하고 건물 주변 바닥타일 및 본점 1층 로비 바닥도

화강석으로 교체했다.

이후 업무량의 증가와 인원의 증가에 따른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 10층 옥상을 일부 증축해 8층에 있던 체육실을 이전하고, 사무공간으로 배치했다. 2011년에는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본점 1층 업무공간을 활용해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한 이후 2012년 2월 인가를 받았다.

2절 본점 증축

1. 추진 경위

본점 건축 및 구조변경 후 지속적인 직원의 증가로 일부 부서가 중소기업중앙회관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는 등 사무공간 부족이 심화되었다. 이에 수은은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2011년 7월 본점 사무공간 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같은 해 9월 본점을 증축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 ‘본점 건물 증축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3월 ‘본점 건물 증축추진 실무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4월 본점 건물 증축공사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고, 5월에는 국토해양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 설계를 확정해 실시설계를 의뢰했다. 2012년 11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자마자 감리자를 선정한 후, 12월 28일 본점 증축공사에 착공했다.

착공 후 수은은 본점 후문에 펜스를 가설하는 등 증축으로 인한 직원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모든 법적조건을 준수하는 가운데 착공 1년 6개월 만인 2014년 7월 1일, 지상 10층, 지하 3층 규모의 본점 증축공사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수용인원 확대 요구가 높아 어린이집 증축공사에 착수해, 2014년 10월 17일 어린이집 증축공사도 완료했다. 또한 본점 건축 당시 로비에 설치했던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신·구관 안내데스크 통합 및 고객접점실 설치를 위한 본점 로

비 환경개선 공사도 진행해 2014년 12월 30일 새 단장을 마쳤다. 2015년 6월에는 공간이 협소해 이용에 불편을 겪던 본점 체육실 확장공사를 실시해 직원 복지도 증진했다.

2. 본점 건물 개요

본점은 대지면적 9,094㎡(약 2,756평)에 연면적 3만 4,217㎡(약 1만 369평)의 지하 3층, 지상 10층의 철골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지하층에는 주차장과 함께 각종 기계실이 배치되어 있고 1~3층은 영업장 성격의 사무실을 배치했으며, 다른 층에는 전산기기실, 원실, 강당, 복지시설 등 사무공간과 공용부분이 상호 연결되도록 배치되어 있다.

주차시설은 옥내 144대, 옥외 50대 등 총 194대의 주차공간이 있고, 기계설비로는 보일러 3.5톤급 2대, 1.5톤급 1대, 1톤급 2대, 0.5톤 1대, 냉동기 360R/T 2대, 100R/T 2대, 빙축열시스템, 지열시스템, 태양열시스템 등이 설치되었으며, 각층 공조방식으로 자동감지 및 원격조작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CCTV, 적외선 외곽감시 시설, 도난방지 시설 등 방범설비가 설치되어 경비본부에서 일괄감시가 가능한 구조다.



한국수출입은행 전경(2015. 11. 26.)

예술작품으로는 김형근 작가의 '한국의 환상', '영원의 장', 장이석 작가의 '바다의 역군', 박영선 작가의 '향토' 벽화가 걸려있으며, 조각가 김관직, 박영옥, 최기원, 정관모의 조각품이 설치돼 있다. 또한 지구본 모양의 만국시계를 로비에 설치하는 등 미적 조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편 본점 건물은 1985년 서울특별시 건축대상 '은상'을 수상했다.

3절 인재개발원

1. 추진 경위

수은은 행내 연수 증가로 본점 건물 내의 연수시설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1984년 12월 24일 동산토건으로부터 경기도 용인군(현 용인시) 구성면 중리 39번지의 6필지 14만 4,688㎡(약 4만 3,845평)를 매입해 지하 1층 지상 1층에 전체 면적 913.14㎡ 규모의 연수원을 건축했다. 이 중 비업무용 임야 일부를 1990년 1월 30일 자로 매각해 현재 연수원 용지 4만 7,797㎡(약 1만 4,484평)를 소유하고 있다.



증축관 준공식(2014. 7. 1.)



연수원 증축공사 준공 및 개원식(1993. 6. 1.)

한편 직급별 연수, 부서별 전문 업무연수의 확대, 부서단위 조직 활성화 연수, 외국어연수 및 합숙연수 등 다양한 교육이 시행되면서 애초의 인재개발원으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증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91년 2월 인재개발원 증축 및 보수계획안을 확정 후 인재개발원 건축반을 구성하고, 기존 인재개발원 건물에 2층을 증축하는 한편 운동장, 본부식 및 관람석도 설치해 1993년 8월 완공했다.

그러나 증축만으로는 수출입은행과 외부 관련기관의 연수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다. 이에 2003년 11월에 구조변경을 위한 안전진단을 하고, 2004년 1월 설계 및 감리자로 한국종합건축을 선정했다. 3월 6일에는 용인시청으로부터 본관동 1개 층 증축허가를 받아 삼성에버랜드를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2004년 4월 8일에는 기공식을 하고 인재개발원 증축 및 구조변경공사를 시작해 약 6개월 후인 2004년 10월 14일 준공식을 거행했다.

2. 인재개발원 개요

인재개발원은 총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에 주말농장 및 주차장, 2단에 축구장, 3단에 잔디광장 및 테니스 코트 2면과 전체면적 3,442㎡(약 1,043평)의 인재개발원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인재개발원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본관과 지상 4층의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수시설, 숙박시설,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본관 1층에는 수용인원 80명의 대강의실, 50명의 소강의실 그리고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있으며, 2층과 3층에는 숙소 31실과 휴게실, 인터넷 실이 있다. 별관은 1층 교수위원실, 2층 분임토의실과 세미나실, 3층 체육실과 분임토의실, 4층 스카이라운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비전



제4부

제1장 개관

제2장 비전 2020

제3장 전략목표와 전략과제



한국수출입은행의 비전

제1장 개관

한국 경제는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의 성공에 힘입어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다. 수은은 1976년 수출진흥과 중화학공업 육성이라는 기치 아래 설립된 대외거래지원전담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역사와 발자취를 같이하면서 수출구조의 고도화와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지원 기능을 담당하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대외거래지원전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은은 과거 수출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선박 및 기계류 수출로부터 최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플랜트, 정보기술(IT)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자본재 수출 진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해외투자, 주요 자원 및 중요 물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의 촉진에도 이바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대개도국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창설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수탁기관으로서, 그리고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대 북한 투자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수탁기관으로서 수은은 경제협력 면에서도 역할을 꾸준히 확대·발전시켜오고 있다.

오늘날 대내외 경제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위축된 세계경기는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유가하락으로 수은의 주력 지원분야인 해외건설·플랜트 및 자원개발 분야 발주량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대외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그간 우리 경제 성장의 주축이었던 수출 또한 부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외여건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는 신성장동력 확충을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 및 고용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은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 위해서 해외건설·플랜트 등 전통적인 수출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핵심적 역할을 유지해나가고, 나아가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신성장산업 수출지원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개도국 및 남북한 경제협력 전담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발전적 변화가 필요하다.

제2장 비전 2020

수은은 2004년 중기경영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고, 대외경제협력 및 남북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과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뒷받침한다’는 미션을 설정하였다. 또한 향후 3년 이내에 ‘대외무역 진흥을 선도하고 대외경제협력 및 남북협력을 증진하는 핵심은행으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비전 슬로건으로 ‘국제거래지원 핵심은행’과 ‘수출입·해외투자전문은행’을 선정하 바 있다.

이후 2008년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극복과정에서 국제 상업금융기관들의 자금지원이 위축되어 자금조달에 대한 리스크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사업주들이 금융을 먼저 확정짓고 나서 비로소 사업을 발주하는 선(先)금융 후(後)발주 형태의 사업이 일반화됨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우리 기업 수주 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복잡·다양한 형태의 거래들이 발생하였고, 이에 맞추어 금융지원 수단도 다양해졌으나 기존 대상거래, 상대방, 지원형태를 일일이 규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의 「수은법」으로는 금융여건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수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국회와 정부에 대한 오랜 설득 끝에 마침내 2014년 제19차 「수은법」 개정을 통해 중전 열거주의 업무규정에서 포괄주의로 전면 개편하여 보다 탄력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3년에는 시장마찰 영역인 단기금융을 축소하는 반면, 해외 중장기 금융 전문 정책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의 정책금

융 역할 재정립 방안이 발표되면서 그동안의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은의 중장기 전략 재정립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수립한 중기경영로드맵을 대체할 수은의 비전, 미션, 전략목표 재수립 즉 ‘비전 2020’을 재정립하게 되었다.

특별업무제안 및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금융파트너’에서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이라는 새로운 비전 슬로건을 정립하였으며, 핵심가치로는 기존의 ‘동반자, 글로벌, 신뢰, 전문성’을 유지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성’을 신규 가치로 추가하였다.

제3장 전략목표와 전략과제

비전 2020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경제와 수은의 발전을 위하여 ‘전략산업의 추가 성장’, ‘국내 산업간 불균형 해소’, ‘경제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통일시대 선도’를 4대 전략목표로 삼고 아래와 같이 10대 전략과제를 수립하였다.

첫째, 금융주도로 정채위기에 있는 현 전략산업의 추가 성장을 지원한다. 유가하락으로 우리 기업들이 주로 진출하는 중동지역과 플랜트 분야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그간 수은의 전통적 지원 분야였던 해외건설·플랜트 발주량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사업주들이 금융을 먼저 확정 짓고 사업을 발주하는 이른바 ‘선(先)금융 후(後)발주’ 형태의 사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은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분투자, 금융주선, 투자개발형 비즈니스 모델 등 선진형 금융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주요 발주처와 선제적으로 금융협력협약(Frame Agreement)을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수주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세 둔화, 과당경쟁 상황에 직면하여 성장성 정체위기에 있는 조선해양, 해외건설·플랜트산업 등 현 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해나갈 예정이다.

둘째, 미래 전략산업의 발굴과 지원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나간다. 우리경제는 그간 수출위주의 제조업 주도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고용과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제조업을 보완할 신성장산업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국내 고용의 6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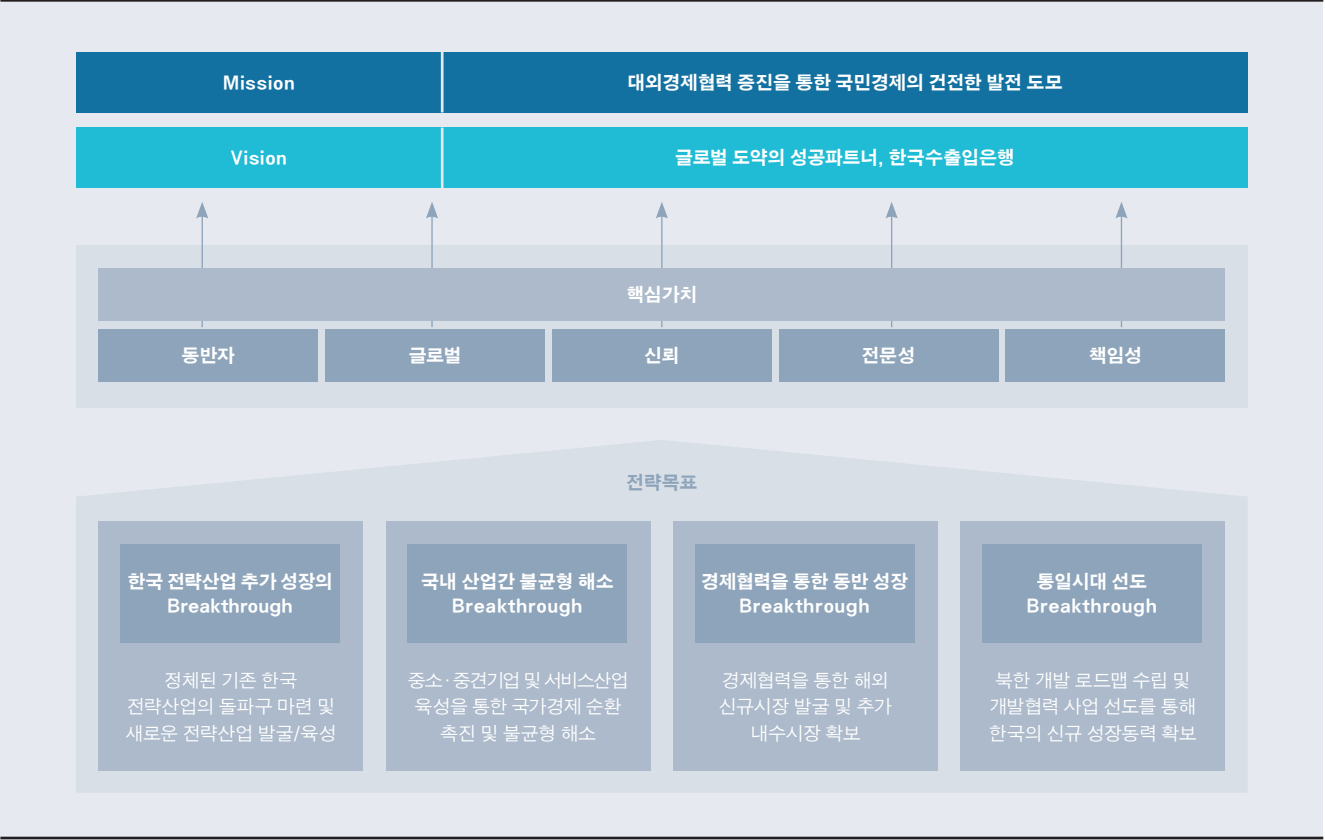
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광, 물류, 콘텐츠, 소프트웨어,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육성해나가고 있으며, 수은도 이러한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망산업을 지속 발굴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정책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셋째, 민간자본 연계 및 금융자문을 통해 수은 금융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해외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수주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금융여력 확충이 필요하나, 수은은 경쟁국 ECA와 달리 채원의 대부분을 외부차입에 의존하고 있어 양호한 BIS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자본금 출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본금 제약으로 인한 수은의 제한된 지원여력을 극복하고 수출지원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타 ECA, MDB, 상업은행, 투자은행 등의 공공/민간자본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고, 후순위채권 및 메자닌 금융방식 등을 확대나갈 계획이다.

넷째, 수출입, 해외진출 및 판로 다각화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9.9%, 고용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출비중은 18.7%에 불과하다. 이러한 대기업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초보기업 지원, 히든챔피언 프로그램, 상생프로그램 등 성장단계별 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유도하고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션, 비전 및 전략목표 체계



미션·비전 달성을 위한 10대 전략과제

한국 전략산업 추가 성장 Breakthrough	1	금융 주도로 정체 위기의 '현' 전략산업 수출 및 성장 부흥
	2	'미래' 전략산업의 발굴과 지원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3	민간자본 연계 및 금융자금을 통해 수은 파급효과 최대화 및 국가 경쟁력 확보
국내 산업간 불균형 해소 Breakthrough	4	수출입, 해외진출 및 판로 다각화를 통한 중소기업 강화
	5	관계금융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종합지원체계 구축
	6	내수 부흥을 촉진하는 서비스산업 성장 지원
경제협력을 통한 개도국 동반성장 Breakthrough	7	EDCF사업 고도화 통한 국제력 제고 및 개도국 성장 지원을 통한 동반 성장
통일시대 선도 Breakthrough	8	북한 개발 로드맵 수립 및 국제협력 추진을 통한 북한 개발협력 사업 선도와 통일시대 선도
4대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과제	9	수출입금융, EDCF, 남북협력기금 간 '융합'을 통한 전략적 사업 발굴 및 개발
	10	'Control tower' 기능 강화를 통한 전행적 전략 실행 지원

다섯째, 관계금융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성장초기 및 수출초보 단계의 중소기업인 경우 신용도가 취약하여 상업은행이 취급을 기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상당 수가 객관적인 재무정보가 부족하므로 수은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은 주거래은행 관계를 통해 장기간 축적된 정성적·정량적 신용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직·간접 금융 등 유연한 금융지원으로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성장에서 퇴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감시·지원하여 리스크관리를 해나가는 관계금융 기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 지방은행 및 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기업별 맞춤정보 제공 및 멘토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포착하게 하는 한편, 리스크관리, 위험관리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한 총체적 위험관리 역량을 전수함으로써 경영역량을 배양해나가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섯째, 내수 부흥을 촉진하는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수출위주의 제조업 주도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고용과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어 서비스산업과 같이 높은 부가가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망 서비스산업 중심의 투자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보건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SW 등 7개 분야 육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해나가고 있다.

수은도 서비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수은은 콘텐츠, 관광, MICE, 병원 및 부대 인프라(공항, 항만 등) 사업에 대한 직접 금융지원은 물론 수은이 펀드를 구성, 연기금, 생보사, 국부펀드 등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재원조달의 중추적 역할을 맡음으로써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직접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 활용을 위한 매개 역할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일곱째, EDCF사업 고도화를 통한 국제력 제고 및 개도국 성장 지원을 통한 동반 성장을 강화해나간다. 수출입은행은 경제협력기금(EDCF) 수탁관리자로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은금융과의 협업을 활성화하고, 해외네트워크 및 개도국 정부 접촉 조직 역할을 강화해나감으로써 사업발굴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단계별 절차 개선, 직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수원국의 개발수요에 부합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에 유망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여덟째, 북한 개발 로드맵 수립 및 국제협력 추진을 통한 북한개발협력 사업 주도 및 통일시대를 선도해나간다. 수은은 단순 남북협력기금 집행기관이 아닌, 통일시대 '북한·동북아 개발협력 선도기관'으로서 수은의 위상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한 개발협력전략 Think-tank 역할을 지속 확대해나가고 MDB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동북아 ECA협의체를 통해 북한 인접국 경제협력 사업 추진 및 북한 개발 연계를 위한 다자간 협력을 주도해나간다.

아홉째, 수출입금융, EDCF 남북협력기금간 '융합'을 통한 전략적 사업발굴 및 개발을 확대해나간다. 이를 위해 연계사업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사업개발 조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행적 전략 실행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지속 강화해나간다. 조직구조 정비를 통해 본부 간 업무협업의 및 조율 역할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각 부문별 사업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비전과 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부 록

I. 법규

1. 한국수출입은행법	366
2.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내용	373
3.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396
4. 한국수출입은행 정관	402
5. 한국수출입은행 업무방법서	406
6. 대외경제협력기금법	408
7. 남북협력기금법	410

II. 자료

8. 연표	412
9. 조직도	430
10. 국내영업점, 해외사무소 및 해외현지법인	432
11. 조직 변화 추이	434
12. 역대 임원	442
13. 역대 운영위원	444
14. 역대 자문위원	446

III. 통계

15. 자본금 구성 현황	448
16. 요약 대차대조표	450
17. 요약 손익계산서	454
18. 자금별 대출승인실적	458
19. 자금별 대출집행실적	467
20. 자금별 대출잔액	476
21. 지역별 대출승인실적	485
22. 지역별 대출집행실적	486
23. 지역별 대출잔액	487
24. 보증승인실적	488
25. 확정지급보증실적	494
26. 보증잔액	499
27. 투자실적	504
28. 금융자문 및 주선 실적	505
29. 수출기여도	506
30. 재원별 자금조달실적	508
31. 경험기금 요약 대차대조표	509
32. 경험기금 요약 손익계산서	510
33. 경험기금 조성실적	511
34. 경험기금 지원실적	512
35. 남북협력기금 요약 대차대조표	514
36. 남북협력기금 요약 손익계산서	515
37. 남북협력기금 조성실적	516
38. 남북협력기금 지원실적	517

1. 한국수출입은행법(법률 제12663호)

구 분	공 포 번 호	공 포 일
제 정	법률 제2122호	1969. 7. 28.
1차개정	법률 제2736호	1974. 12. 26.
2차개정	법률 제3022호	1977. 12. 19.
3차개정	법률 제3879호	1986. 12. 31.
4차개정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5차개정	법률 제5505호	1998. 1. 13.
6차개정	법률 제5560호	1998. 9. 16.
7차개정	법률 제5982호	1999. 5. 24.
8차개정	법률 제6680호	2002. 3. 30.
9차개정	법률 제6736호	2002. 12. 5.
10차개정	법률 제7527호	2005. 5. 31.
11차개정	법률 제8841호	2008. 1. 17.
12차개정	법률 제8852호	2008. 2. 29.
13차개정	법률 제8863호	2008. 2. 29.
14차개정	법률 제9355호	2009. 1. 30.
15차개정	법률 제9618호	2009. 4. 1.
16차개정	법률 제10228호	2010. 4. 5.
17차개정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18차개정	법률 제10902호	2011. 7. 25.
19차개정	법률 제12270호	2014. 1. 21.
		2014. 1. 21.
20차개정	법률 제12307호	2014. 1. 21.
21차개정	법률 제12663호	2014. 5. 21.
22차개정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23차개정	법률 제14100호	2016. 3.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 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격 등)

- ①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② 수출입은행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③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은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본점·지점·출장소·대리점)

-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15조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 ① 수출입은행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본점의 소재지
 -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 6.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9. 회계에 관한 사항
 - 10. 공고의 방법
 - 11.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등기)

-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 ② 수출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수출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제8조(임원)

수출입은행에 임원으로서 은행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9조(임원의 직무)

- ① 은행장은 수출입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전무이사는 은행장을 보좌하고 은행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

좌하고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분장한다.

- ④ 은행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은행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감사(監事)는 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그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9조의2(이사회)

- ① 수출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은행장·전무이사와 이사로 구성하고,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 ③ 이사회는 은행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 ① 수출입은행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수출입은행 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삭제 <1986. 12. 31.>

제10조의3 삭제 <1986. 12. 31.>

제10조의4 삭제 <1986. 12. 31.>

제10조의5 삭제 <1986. 12. 31.>

제10조의6(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 ① 은행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즉각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은행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면)

- ① 은행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 ③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겸직 제한)

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 ① 은행장·전무이사 또는 이사의 이익과 수출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은행장·전무이사 또는 이사는 수출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출입은행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으면 감사가 대표한다.

제15조(대리인의 선임)

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직원의 임면)

수출입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

제17조(임원의 책임)

수출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업무

제18조(업무)

- 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 1.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 2.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 4. 해외투자, 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
- 5.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수출입은행은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및 보증
- 3. 채무의 보증
- 4.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 5. 외국자본의 차입
- 6. 수출입금융채권과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 7. 외국환 업무
- 8.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 9.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업무

- ③ 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 투자 또는 보증 제한 사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법률 제12663호)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채무의 보증 중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수출입은행의 보증규모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대한 채무의 보증에 한정한다.

⑤ 수출입은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게 대출하는 업무 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⑥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계정구분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및 제5항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14. 1. 21.>

제19조의2(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① 수출입은행이 차입하는 외국자본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輸出入金融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수출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 제18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다.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①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에 대한 연간 승인 한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분기별 업무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1998. 9. 16.>

제23조(차입금 등의 한도액)

수출입은행이 제18조와 제20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로 한다.

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수출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그 기능을 보완·장려하여야 하며 경쟁할 수 없다.

제25조(업무의 제한)

①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할 때에는 그 상환, 지급 또는 이행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제5항에 따른 대출의 한도는 정부가 출자하거나 정부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6조(대출·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등)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대출이나 할인의 이율과 보증의 요율 등을 책정할 때에는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의 제고,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의 촉진 또는 대외경제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은행의 사무취급비, 업무대행 수수료, 차입금 이자, 그 밖의 여러 가지 비용과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할 수 있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제27조(재산 소유의 제한)

수출입은행은 영업에 필요하여 취득하거나 채무의 변제를 하기 위하여 인수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제28조(업무의 대행)

수출입은행은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업무방법서)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5항의 업무에 관한 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 삭제 <2002. 3. 30.>

제4장 재무 및 회계

제31조(사업연도)

수출입은행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추가경정예산)

수출입은행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예비비)

① 수출입은행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결산)

수출입은행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익금의 처리)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에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한다.
-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선적으로 이익금을 배당한다.
- 제1호의 적립금과 제2호의 배당금을 뺀 나머지 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37조(손실금의 보전)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제38조(여유금의 운용)

수출입은행은 제18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운용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9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임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의 임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직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은행장에게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의 직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적절한 문책처분을 은행장에게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퇴직한 수출입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은행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은행장은 이를 퇴직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해임 사유)

① 대통령은 은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때
- 파산선고를 받은 때
-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전무이사·이사 또는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41조(보고와 검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는 제39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에게 수출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검사를 수행한 때에

1. 한국수출입은행법(법률 제12663호)

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의2(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그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7조를 위반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제43조 삭제 (2008. 1. 17.)

부칙

〈1969. 7.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위원등)

① 재무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수출입은행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정부의 출자금의 제1회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전항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은행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수출입은행이 설립될 때까지의 업무대행)

① 수출입은행이 설립될 때까지는 한국외환은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한국외환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한 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권리·의무는 수출입은행의 설립과 동시에 수출입은행이 이를 승계한다.

③ 한국외환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대하받은 자금은 수출입은행의 설립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수출입은행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민투자기금으로부터 대하받은 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1974.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운영위원회)

① 한국외환은행이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간중 한국외환은행에 임시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임시운영위원회는 한국외환은행이 대행하는 수출입은행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③ 이 법중 수출입은행에 두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임시운영위원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0조의2제1항제5호·제10조의3제1항과 제10조의6제1항 및 제2항중 수출입은행장은 한국외환은행장으로 한다.

부칙

〈1977. 12. 1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12. 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2. 13.〉(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

이 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부칙

〈1998. 1. 13.〉(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

①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을 부칙(법률 제5379호)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 (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1998. 9.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5. 24.〉(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3〉생략

〈44〉한국수출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감독)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9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로, “소속 공무원”을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45〉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2. 3.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5.〉(국민투자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한국수출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중 “대하한 금액(국민투자기금으로부터 대하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대하(대하)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2005. 5. 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의6제1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 제36조제2호·제3호, 제38조 단서,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 2. 29.〉(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1. 한국수출입은행법(법률 제12663호)

〈7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78〉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개정규정 중 제18조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까지는 종전의 제18조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2270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⑩ 생략

제12조 생략

2.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내용

조문	제정·개정	제정·개정 내용	비 고
제1장 총칙	19차 개정 (2014. 1. 21.) 12270호		신설
제1조 (목적)	제정 (1969. 7. 28.) 2122호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중·장기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에 관한 금융을 공여하게 함으로써 무역을 주로 하는 외국과 경제교류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차 개정 (1974. 12. 26.) 2736호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중·장기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을 공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해외자원개발’ 추가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추가
	2차 개정 (1977. 12. 19.) 3022호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을 공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장기신용에 의한’ 삭제
제2조 (성격등)	제정 (1969. 7. 28.) 2122호	① 수출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한다. ③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의 규정은 수출입은행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2차 개정 (2015. 7. 31.) 13453호	①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③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은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추가
제3조 (사무소와 대리점)	제정 (1969. 7. 28.) 2122호	① 수출입은행은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제정 (1969. 7. 28.) 2122호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30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하되 그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차 개정 (1974. 12. 26.) 2736호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1,500억원으로 하고, 정부·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외환은행·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자본금 증액 (300억원→1,500억원) - 출자기관의 다양화
	2차 개정 (1977. 12. 19.) 3022호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하고, 정부·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외환은행·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자본금 증액 (1,500억원→5,000억원)
	3차 개정 (1986. 12. 31.) 3879호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정부·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외환은행·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자본금 증액 (5,000억원→1조원)
	5차 개정 (1998. 1. 13.) 5505호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하고, 정부·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은행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자본금 증액 (1조원→2조원) - 은행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6차 개정 (1998. 9. 16.) 5560호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4조원으로 하고, 정부·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은행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자본금 증액 (2조원→4조원)

2.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내용

조문	제정·개정	제정·개정 내용	비 고
제4조 (자본금)	14차 개정 (2009. 1. 30.) 9355호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8조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본금 증액 (4조원→8조원)
	19차 개정 (2014. 1. 21.) 12270호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15조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본금 증액 (8조원→15조원)
제5조 (정관)	제정 (1969. 7. 28.) 2122호	① 수출입은행은 정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분사무소와 대리점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차 개정 (1974. 12. 26.) 2736호	① 수출입은행은 정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지점·출장소와 대리점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채권발행에 관한 사항 11.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사무소의 명칭 변경 -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 채권발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사항 추가 - 정관 변경 절차 변경 (이사회 의결→운영위원회 의결)
	2차 개정 (1977. 12. 19.) 3022호	① 수출입은행은 정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지점·출장소와 대리점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의2. 이사회운영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채권발행에 관한 사항 11.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이사회에 관한 사항 신설

조문	제정·개정	제정·개정 내용	비 고
제6조 (등기)	제정 (1969. 7. 28.) 2122호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정 (1969. 7. 28.) 2122호	이 법에 의한 수출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하지 못한다.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19차 개정 (2014. 1. 21.) 12270호		신설
제8조 (임원)	제정 (1969. 7. 28.) 2122호	수출입은행에 임원으로서 은행장 1인, 전무이사 1인, 이사 5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직무)	제정 (1969. 7. 28.) 2122호	① 은행장은 수출입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 전무이사는 은행장을 보좌하고 은행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 은행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은행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에 의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수출입은행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9조의2 (이사회)	2차 개정 (1977. 12. 19.) 3022호	① 수출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은행장·전무이사과 이사로 구성하고,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은행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이사회에 관한 사항 신설 (제1차 개정시 이사회를 폐지하였으나 제2차 개정에서 본조 신설하여 이사회를 부활시킴)
제10조 (이사회)	제정 (1969. 7. 28.) 2122호	① 수출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은행장·전무이사과 이사로써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④ 이사회는 은행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1차 개정 (1974. 12. 26.) 2736호	① 수출입은행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수출입은행의 업무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제10조~제10조의6)
	3차 개정 (1986. 12. 31.) 3879호	① 수출입은행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수출입은행의 업무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2.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내용

조문	제정·개정	제정·개정 내용	비 고
제10조의2 (위원회의 구성)	1차 개정 (1974. 12. 26.) 2736호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경제기획원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2. 재무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상공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한국은행총재가 그 이사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5. 수출입은행장 6. 한국외환은행장이 그 이사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7. 재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출업자단체의 대표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② 제1항제7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운영위원회 설치에 따라 그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
	2차 개정 (1977. 12. 19.) 3022호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경제기획원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1의2. 외무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2. 재무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상공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한국은행총재가 그 이사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5. 수출입은행장 6. 한국외환은행장이 그 이사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7. 재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출업자단체의 대표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② 제1항제7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운영위원으로 외무부소속 공무원 1인 추가
	3차 개정 (1986. 12. 31.) 3879호	삭제	-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른 삭제
제10조의3 (의장)	1차 개정 (1974. 12. 26.) 2736호	① 위원회의 의장은 수출입은행장이 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운영위원회 설치에 따른 신설
	3차 개정 (1986. 12. 31.) 3879호	삭제	-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른 삭제
제10조의4 (회의)	1차 개정 (1974. 12. 26.) 2736호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감사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석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운영위원회 설치에 따른 신설
	3차 개정 (1986. 12. 31.) 3879호	삭제	-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른 삭제
제10조의5 (회의 참여의 제한)	1차 개정 (1974. 12. 26.) 2736호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운영위원회 설치에 따른 신설
	3차 개정 (1986. 12. 31.) 3879호	삭제	-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른 삭제

조문	제정·개정	제정·개정 내용	비 고
제10조의6 (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1차 개정 (1974. 12. 26.) 2736호	① 수출입은행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즉각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권한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수출입은행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 설치에 따른 신설
제11조 (임원의 임명)	제정 (1969. 7. 28.) 2122호	① 은행장은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제정 (1969. 7. 28.) 2122호	① 은행장·전무이사와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될 수 있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5차 개정 (1998. 1. 13.) 5505호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될 수 있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 표현정리 - 임원임기 재조정
제13조 (임원의 겸직제한)	제정 (1969. 7. 28.) 2122호	임원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4조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제정 (1969. 7. 28.) 2122호	① 은행장·전무이사 또는 이사의 이익과 수출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은행장·전무이사 또는 이사는 수출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수출입은행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을 때에는 감사가 이를 대표한다.	
제15조 (대리인의 선임)	제정 (1969. 7. 28.) 2122호	은행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 (직원의 임면)	제정 (1969. 7. 28.) 2122호	수출입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명한다.	
제17조 (임원의 책임)	제정 (1969. 7. 28.) 2122호	수출입은행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업무	19차 개정 (2014. 1. 21.) 12270호		신설
제18조 (업무)	제정 (1969. 7. 28.) 2122호	수출입은행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이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취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 기타 외화획득을 위한 해외수출입시장의 확보 또는 개척에 현저히 기여하는 상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수출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부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2. 외국에 대한 기술의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부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2.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내용

조문	제정·개정	제정·개정 내용	비고
	제정 (1969. 7. 28.) 2122호	3. 대한민국으로부터 제품의 수입 또는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의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부 4. 연불수출에 필요한 원료·재료·기재중 그 수입이 투기·매점 기타 불건전한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물자(이하 "중요물자"라 한다)의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 수입대금의 선급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부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5.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설비(선박과 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설 또는 확충함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부 6. 외국인에 대한 출자 또는 그 주식의 취득과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 대한 설비의 대여에 필요한 자금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투자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부 7.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그 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받을 경우 그 채무의 보증 8. 전각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제18조 (업무)	1차 개정 (1974. 12. 26.) 2736호	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이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취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74. 12.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 기타 외화획득을 위한 해외수출입시장의 확보 또는 개척에 현저히 기여하는 상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수출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부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2. 외국에 대한 기술의 제공(해외에서 행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부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3. 대한민국으로부터 제품의 수입 또는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의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부 4. 해외수출입시장의 확보 또는 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수출용 원료·재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물자(이하 "중요물자"라 한다)의 수입자금 또는 그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입대금의 선급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부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5.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설비(선박과 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설 또는 확충하거나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부 6.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투자자금 및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 대한 설비의 대여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부 7. 대한민국국민이 출자(주식의 취득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 대한 대부 8. 대한민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거나 기술을 도입한 자가 이로 인하여 발생한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채무를 이행함이 그 거주국의 국제수지상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그 채무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자금의 당해 외국정부 및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9.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그 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받을 경우 그 채무의 보증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수출입은행은 국민경제상 장기안정적인 확보를 요하는 자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원(이하 "주요자원"이라 한다)의 외국에서의 원활한 개발과 대외경제협력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신설 1974. 12. 26.>	- 업무범위 확대 - 기술제공자금대출의 대상 확대(해외건설공사 포함) - "중요물자"의 정의 내용 변경 - 해외사업자금 지원범위 확대 (운영자금 추가) - 표현정리 - 외국정부등에 대한 출자자금 대출 신설 - 외국정부등에 대한 對韓결제자금대출 신설 - 호순변경 - 호순변경 및 표현정리 - 주요자원개발지원자금대출과 대외경제협력자금대출 신설

[illegible]

2.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내용

조문	제정·개정	제정·개정 내용	비고
제18조 (업무)	3차 개정 (1986. 12. 31.) 3879호	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이 일반 적인 조건으로는 취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74. 12. 26., 1977. 12. 19., 1986. 12. 3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 기타 외화획득을 위한 해외수출입시장의 확보 또는 개척에 현저히 기여하는 상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수출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출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2. 외국에 대한 기술의 제공(해외에서 행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출 또는 이로 인하 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3. 대한민국으로부터 제품의 수입 또는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 한 자금의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출 4. 국민경제상 장기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수입을 요하는 물자 및 자원중 대통령 령이 정하는 중요물자(이하 "중요물자"라 한다)및 주요자원(이하 "주요자원"이라 한다)의 수입자금 또는 그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입대금의 선급자 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출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 에 대한 할인 5.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설비(선박과 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설 또는 확충하거나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출 6.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투자자금 및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 대한 설비의 대여 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출 7. 대한민국국민이 출자(주식의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외국정 부 또는 외국인이 직접 출자 또는 대여하기 위한 자금의 당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 인에 대한 대출 7의2. 대한민국국민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장기 자금의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대출 8. 대한민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거나 기술을 도입한 자가 이로 인하여 발생된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채무를 이행함이 그 거주국의 국제수지상 현저하게 곤란 한 경우에 그 채무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자금의 당해 외국정부 및 외국금융 기관에 대한 대출 9.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그 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의 보증 10. 삭제(1977. 12. 19.) ② 수출입은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주요자원의 외국에서의 원활한 개발과 대외 경제협력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신설 1974. 12. 26., 1977. 12. 19., 1986. 12. 31.) 1. 주요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전준비·조사 및 광업권 기타 권리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기타 해외투자지원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출 2. 해외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외국정부 및 외국인에 대한 대출 또는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무의 취득 ③ 수출입은행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77. 12. 19.)	- 수입자금지원대상 확대("주요자원"에 대해서도 수입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 표현정리 -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대출 신설 (현지법인의 사업자금을 당해법인에 직접 융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1항 제4호의 개념 정의에 따른 표현정리
	6차 개정 (1998. 9. 16.) 5560호	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 한다.(개정 1974. 12. 26., 1977. 12. 19., 1986. 12. 31., 1998. 9. 16.) 1. 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대한민국의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출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 "다른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취급할 수 없는" 삭제

조문	제정·개정	제정·개정 내용	비고
제18조 (업무)	6차 개정 (1998. 9. 16.) 5560호	2. 외국에 대한 기술의 제공(해외에서 행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출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3. 대한민국으로부터 상품의 수입 또는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의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출 4. 국민경제에 긴요한 주요자원(이하 "주요자원"이라 한다) 및 상품의 수입자금 또는 그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입대금의 선급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출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5.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설비(선박과 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설 또는 확충하거나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출 6.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투자자금 및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 대한 설비의 대여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출 7.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주식의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직접 출자 또는 대여하기 위한 자금의 당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 대한 대출 7의2.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장기 자금의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대출 8. 대한민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거나 기술을 도입한 자가 이로 인하여 발생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채무를 이행함이 그 거주국의 국제수지상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그 채무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자금의 당해 외국정부 및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9.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의 보증 10. 삭제 (1977. 12. 19.) ② 수출입은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주요자원의 외국에서의 원활한 개발과 대외 경제협력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신설 1974. 12. 26., 1977. 12. 19., 1986. 12. 31.) 1. 주요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전준비·조사 및 광업권 기타 권리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기타 해외투자지원자금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출 2. 해외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 국민·외국정부 및 외국인에 대한 대출 또는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무의 취득 ③ 수출입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77. 12. 19., 1997. 12. 13., 1998. 9. 16.)	- 수출입자금의 지원대상품목을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출입 자금 지원 대상 확대 - 부처명칭 변경 (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
	8차 개정 (2002. 3. 30.) 6680호	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74. 12. 26., 1977. 12. 19., 1986. 12. 31., 1998. 9. 16., 2002. 3. 30.> 1. 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출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2. 외국에 대한 기술의 제공(해외에서 행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출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3. 대한민국으로부터 상품의 수입 또는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의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출 4. 국민경제에 긴요한 주요자원(이하 "주요자원"이라 한다) 및 상품의 수입자금 또는 그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입대금의 선급자금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출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5.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설비(선박과 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설 또는 확충하거나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출	

2.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내용

조문	제정·개정	제정·개정 내용	비 고
제18조 (업무)	8차 개정 (2002. 3. 30.) 6680호	6.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투자자금 및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 대한 설비의 대여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출 7.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주식의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이 직접 출자 또는 대여하기 위한 자금의 당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 대한 대출 7의2.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장기 자금의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대출 8. 대한민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거나 기술을 도입한 자가 이로 인하여 발생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채무를 이행함이 그 거주국의 국제수지상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그 채무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자금의 당해 외국정부 및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9.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의 보증 10. 외국환업무 11.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 수출입은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주요자원의 외국에서의 원활한 개발과 대외 경제협력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신설 1974. 12. 26., 1977. 12. 19., 1986. 12. 31.> 1. 주요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전준비·조사 및 광업권 기타 권리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기타 해외투자지원자금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출 2. 해외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 국민·외국정부 및 외국인에 대한 대출 또는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무의 취득 ③ 수출입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77. 12. 9., 1997. 12. 13., 1998. 9. 16.>	- 업무범위에 외국환업무와 정부위탁업무 추가
	10차 개정 (2005. 5. 31.) 7527호	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74. 12. 26., 1977. 12. 19., 1986. 12. 31., 1998. 9. 16., 2002. 3. 30., 2005. 5. 31.> 1. 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출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2. 외국에 대한 기술의 제공(해외에서 행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출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3. 대한민국으로부터 상품의 수입 또는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의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출 4. 국민경제에 긴요한 주요자원(이하 "주요자원"이라 한다) 및 상품의 수입자금 또는 그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입대금의 선급자금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출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5.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설비(선박과 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설 또는 확충하거나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출 6.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투자자금 및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 대한 설비의 대여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출 7.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주식의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이 직접 출자 또는 대여하기 위한 자금의 당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 대한 대출 7의2.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장기 자금의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대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의 대출신설

조문	제정·개정	제정·개정 내용	비 고
제18조 (업무)	10차 개정 (2005. 5. 31.) 7527호	8. 대한민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거나 기술을 도입한 자가 이로 인하여 발생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채무를 이행함이 그 거주국의 국제수지상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그 채무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자금의 당해 외국정부 및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8의2. 그 밖에 수출입, 해외투자 또는 해외자원개발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의 대출 9.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그 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의 보증 10. 외국환업무 11.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 수출입은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주요자원의 외국에서의 원활한 개발과 대외 경제협력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신설 1974. 12. 26., 1977. 12. 19., 1986. 12. 31.> 1. 주요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전준비·조사 및 광업권 기타 권리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기타 해외투자지원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출 2. 해외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외국정부 및 외국인에 대한 대출 또는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무의 취득 ③ 수출입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77. 12. 19., 1997. 12. 13., 1998. 9. 16.>	
	11차 개정 (2008. 1. 17.) 8841호	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품, 용역(해외에서 행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출하거나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을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할인하는 업무 2. 대한민국으로부터 물품등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 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출하는 업무 3. 국민경제에 매우 중요한 주요자원(이하 "주요자원"이라 한다) 및 물품등의 수입자금이나 그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입대금의 선급자금을 대한 민국 국민에게 대출하거나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을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할인하는 업무 4.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설비(선박과 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설, 확충 또는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출 하는 업무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투자자금과 외국정부나 외국인에게 설비를 대여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출하는 업무 6.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주식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직접 출자하거나 대여하기 위한 자금을 그 외국 정부나 외국인에게 대출하는 업무 7.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그 외국법인에 대출하는 업무 8. 대한민국으로부터 물품등을 수입한 자가 이로 인하여 발생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그 거주국의 국제수지상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그 채무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외국정부나 외국 금융기관에 대출 하는 업무 9. 그 밖에 수출입, 해외투자 또는 해외자원개발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 10.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한 민국 국민이 그 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를 보증 하는 업무	- 표현정리 - 금융지원대상 확대 (상품 및 기술→물품·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호순변경 및 표현정리 - 대외 채무보증 근거 마련

2.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내용

조문	제정·개정	제정·개정 내용	비고
	11차 개정 (2008. 1. 17.) 8841호	11. 제2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외국 정부,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이 그 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하는 업무 12. 외국환(외국환) 업무 13.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채무의 보증은 수출입은행이 해당 외국정부,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하는 대출 및 보증의 금액, 그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수출입은행의 보증 규모 및 「수출보험법」에 따른 수출 보험의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대한 채무의 보증에 한한다. ③ 수출입은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요자원을 외국에서 원활하게 개발하고 대외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요자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전준비·조사 및 광업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그 밖의 해외투자 지원자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출하는 업무 2. 해외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에게 대출하는 업무 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는 업무 ④ 수출입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에 부대 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18조 (업무)	14차 개정 (2009. 1. 30.) 9355호	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1. 30.) 1. 물품, 용역(해외에서 행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출하거나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을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할인하는 업무 2. 대한민국으로부터 물품등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 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출하는 업무 3. 국민경제에 매우 중요한 주요자원(이하 “주요자원”이라 한다) 및 물품등의 수입 자금이나 그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입대금의 선급자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출하거나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을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할인하는 업무 4.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설비(선박과 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설, 확충 또는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출하는 업무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투자자금과 외국정부나 외국인에게 설비를 대여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출하는 업무 6.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주식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직접 출자하거나 대여하기 위한 자금을 그 외국 정부나 외국인에게 대출하는 업무 7.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그 외국법인에 대출하는 업무 8. 대한민국으로부터 물품등을 수입한 자가 이로 인하여 발생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그 거주국의 국제수지상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그 채무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외국정부나 외국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업무 9. 그 밖에 수출입, 해외투자 또는 해외자원개발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 10.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하는 업무	

조문	제정·개정	제정·개정 내용	비고
	14차 개정 (2009. 1. 30.) 9355호	11. 제2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외국 정부,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이 그 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하는 업무 12.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자금을 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할 경우 그 채권의 응모·인수 및 투자 또는 보증 13. 외국환(외국환) 업무 14.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채무의 보증은 수출입은행이 해당 외국정부,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하는 대출 및 보증의 금액, 그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수출입은행의 보증 규모 및 「수출보험법」에 따른 수출보험의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대한 채무의 보증에 한한다. ③ 수출입은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요자원을 외국에서 원활하게 개발하고 대외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요자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전준비·조사 및 광업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그 밖의 해외투자 지원자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출하는 업무 2. 해외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에게 대출하는 업무 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는 업무 ④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에 부대 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자금이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경우에도 해당 채권의 응모, 인수, 투자 또는 보증을 통해 지원 가능 - 표현정리
제18조 (업무)	19차 개정 (2014. 1. 21.) 12270호	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1.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2.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4. 해외투자, 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 5.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수출입은행은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및 보증 3. 채무의 보증 4.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5. 외국자본의 차입 6. 수출입금융채권과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7. 외국환 업무 8.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9.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업무 ③ 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 투자 또는 보증 제한 사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채무의 보증 중 외국정부(외국정부가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수출입은행의 보증규모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대한 채무의 보증에 한정한다.	-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 업무규정 체계의 간소화 (포괄주의 체계)

2.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내용

조문	제정·개정	제정·개정 내용	비 고
제18조 (업무)	19차 개정 (2014. 1. 21.) 12270호	⑤ 수출입은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게 대출하는 업무 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⑥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계정 구분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및 제5항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19조 (자금의 차입)	제정 (1969. 7. 28.) 2122호	수출입은행은 전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함에 필요한 자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외국의 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차 개정 (1974. 12. 26.) 2736호	수출입은행은 그 업무를 행함에 필요한 자금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외국정부, 외국의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자금의 차입기관 확대
	5차 개정 (1998. 1. 13.) 5505호	수출입은행은 그 업무를 행함에 필요한 자금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외국정부, 외국의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한국외환은행 삭제 - 은행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조문 정리
	8차 개정 (2002. 3. 30.) 6680호	수출입은행은 그 업무를 행함에 필요한 자금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 한국은행, 외국정부, 국제금융기구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외에 증권회사·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금 차입 근거 마련
	19차 개정 (2014. 1. 21.) 12270호	삭제	삭제
제19조의2 (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19차 개정 (2014. 1. 21.) 12270호	① 수출입은행이 차입하는 외국자본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국가재정법」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제20조 (수출입금융채권)	제정 (1969. 7. 28.) 2122호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수출입금융채권을 외국에서 발행할 수 있다.	
	1차 개정 (1974. 12. 26.) 2736호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수출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외환은행도 이를 보증할 수 있다.	- 국내에서도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함 - 수출입금융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신설
	6차 개정 (1998. 9. 16.) 5560호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수출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 수출입금융채권에 대한 한국외환은행 보증 삭제
	19차 개정 (2014. 1. 21.) 12270호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輸出入金融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수출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국가재정법」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정부가 보증 채무 부담시 국회 동의 신설

조문	제정·개정	제정·개정 내용	비 고
제20조의2 (법인에 대한 출자등)	3차 개정 (1986. 12. 31.) 3879호	수출입은행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등이나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조달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한민국법인 또는 외국법인(대한민국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주식의 취득을 포함한다)하거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 국내외 법인에 대하여 출자·자금 대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10차 개정 (2005. 5. 31.) 7527호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한민국법인 또는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주식의 취득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 또는 보증의 대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해당 대출 또는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하는 경우 2.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이나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조달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 업무에 필요한 경우 조사·연구 등의 목적 외에도 국내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4차 개정 (2009. 1. 30.) 9355호	①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이나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자금 조달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② 수출입은행은 해외투자자 및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다.	- 해외투자자 및 해외자원개발 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9차 개정 (2014. 1. 21.) 12270호	①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다.	- 출자업무에 대한 총량승인 도입 (건별 승인→연간 총량 승인) - 펀드투자 대상 분야 확대
제21조 (업무계획의 승인신청)	제정 (1969. 7. 28.) 2122호	①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업무계획에 있어서는 제18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공급계획과 제4조·제19조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분기별업무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19차 개정 (2014. 1. 21.) 12270호	①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에 대한 연간 승인 한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분기별 업무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 출자업무에 대한 총량승인 도입 (건별 승인→연간 총량 승인) - 업무계획의 국회 보고

2.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내용

조문	제정·개정	제정·개정 내용	비 고
제22조 (업무계획의 승인)	제정 (1969. 7. 28.) 2122호	재무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차 개정 (1974. 12. 26.) 2736호	재무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업무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문절차 삭제
	6차 개정 (1998. 9. 16.) 5560호	삭제	- 업무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절차 삭제
제23조 (차입금등의 한도액)	제정 (1969. 7. 28.) 2122호	수출입은행이 제19조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로 한다.	
	5차 개정 (1998. 1. 13.) 5505호	수출입은행이 제19조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30배로 한다.	- 한도액 증액
제24조 (타금융기관과의 경쟁금지)	제정 (1969. 7. 28.) 2122호	수출입은행은 제18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없다.	
	19차 개정 (2014. 1. 21.) 12270호	수출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그 기능을 보완·장려하여야 하며 경쟁할 수 없다.	-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 및 보완 추가
제25조 (업무의 제한)	제정 (1969. 7. 28.) 2122호	①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자금의 대부, 어음 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함에 있어서는 그 상황·지급 또는 이행이 확실하게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자금의 대부, 어음 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함에 있어서는 그 상황·지급 또는 이행의 기간이 6월이 상 5년이내인 것에 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출이 5년을 초과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선박·철도차량등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하여는 그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차 개정 (1974. 12. 26.) 2736호	①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자금의 대부,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함에 있어서는 그 상황·지급 또는 이행이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자금의 대부,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함에 있어서는 그 상황 또는 이행의 기간이 6월이상 10년이내인 것에 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그 기간을 20년까지 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부기간은 20년이내로 한다. ④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한도는 정부가 출자 또는 대하한 금액(국민투자 기금으로부터 대하받은 금액은 제외한다)과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제18조의 개정에 따른 표현정리 - 용자기간 연장 - 주요자원개발지원자금과 대외경제협력자금의 대출기간과 대출한도 신설
	6차 개정 (1998. 9. 16.) 5560호	①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함에 있어서는 그 상황·지급 또는 이행이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하여야 한다.	

조문	제정·개정	제정·개정 내용	비 고
제25조 (업무의 제한)	6차 개정 (1998. 9. 16.) 5560호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함에 있어서는 그 상황, 지급 또는 이행의 기간이 6월 이상 25년 이내 인 것에 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그 기간을 6월 미만 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출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④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의 한도는 정부가 출자 또는 대하한 금액(국민투자 기금으로부터 대하받은 금액은 제외한다)과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단기 수출입신용보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8차 개정 (2002. 3. 30.) 6680호	①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함에 있어서는 그 상황·지급 또는 이행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 를 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함에 있어서는 그 상황, 지급 또는 이행의 기간이 6월 이상 25년 이내 인 것에 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그 기간을 6월 미만 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출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④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의 한도는 정부가 출자 또는 대하한 금액(국민투자 기금으로부터 대하받은 금액은 제외한다)과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자금대출·어음할인·채무보증의 요건 완화
	9차 개정 (2002. 12. 5.) 6736호	①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함에 있어서는 그 상황·지급 또는 이행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 를 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함에 있어서는 그 상황, 지급 또는 이행의 기간이 6월 이상 25년 이내 인 것에 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그 기간을 6월 미만 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출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④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의 한도는 정부가 출자 또는 대하(貸下)한 금액과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국민투자기금법 폐지
	10차 개정 (2005. 5. 31.) 7527호	①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함에 있어서는 그 상황·지급 또는 이행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 를 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함에 있어서는 그 상황, 지급 또는 이행의 기간이 25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야 한다. ③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출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④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의 한도는 정부가 출자 또는 대하(貸下)한 금액과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최단 신용공여기간 제한 폐지
제25조 (업무의 제한)	11차 개정 (2008. 1. 17.) 8841호	①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할 때에는 그 상황, 지급 또는 이행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할 때에는 그 상황, 지급 또는 이행의 기간을 30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제18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대출기간은 30년 이내로 한다. ④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출의 한도는 정부가 출자하거나 정부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법 조항 변경 (제18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2항→제18조제3항) -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기간 연장 (25년→30년, 20년→30년)
	19차 개정 (2014. 1. 21.) 12270호	①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할 때에는 그 상황, 지급 또는 이행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제5항에 따른 대출의 한도는 정부가 출자하거나 정부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법 조항 변경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4항) - 최장 상환기간 폐지

2.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내용

조문	제정·개정	제정·개정 내용	비 고
제26조 (대부·할인의 이율 및 채무보증의 요율)	제정 (1969. 7. 28.) 2122호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대부 또는 할인의 이율과 채무보증의 요율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수출입은행의 사무취급비·업무대행 수수료·차입금이자 기타 제비용과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할 수 있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3차 개정 (1986. 12. 31.) 3879호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또는 할인의 이율과 채무보증의 요율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외경쟁력 유지나 해외투자 또는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은행의 사무취급비·업무대행수수료·차입금이자 기타 제비용과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할 수 있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 대출이율 등의 책정에 있어 신축성 부여
제27조 (재산소유의 제한)	제정 (1969. 7. 28.) 2122호	수출입은행은 영업에 필요하여 취득하거나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하거나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 이외에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제28조 (업무의 대행)	제정 (1969. 7. 28.) 2122호	수출입은행은 그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업무방법서)	제정 (1969. 7. 28.) 2122호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부,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보증의 방법, 용자·비율·이율·요율·기한과 원리금의 회수방법, 업무의 대행요령 기타 업무방법을 기재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차 개정 (1974. 12. 26.) 2736호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부,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보증의 방법, 용자·비율·이율·요율·기한과 원리금의 회수방법, 업무의 대행요령 기타 업무방법을 기재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8조 개정에 따른 표현정리 - 업무방법서 작성·변경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3차 개정 (1986. 12. 31.) 3879호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업무방법서 규정사항을 포괄적으로 표시
제30조 (타법령과의 관계)	제정 (1969. 7. 28.) 2122호	수출입은행은 외국환관리법과 무역거래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외국환은행으로 본다.	
	8차 개정 (2002. 3. 30.) 6680호	삭제	삭제
제4장 재무 및 회계	19차 개정 (2014. 1. 21.) 12270호		신설
제31조 (사업연도)	제정 (1969. 7. 28.) 2122호	수출입은행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2조 (예산)	제정 (1969. 7. 28.) 2122호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	제정·개정	제정·개정 내용	비 고
제33조 (추가경정예산)	제정 (1969. 7. 28.) 2122호	수출입은행은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예비비)	제정 (1969. 7. 28.) 2122호	① 수출입은행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결산)	제정 (1969. 7. 28.) 2122호	수출입은행은 매사업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차 개정 (1986. 12. 31.) 3879호	수출입은행은 매사업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결산보고절차 간소화 (대통령→재무부장관)
	19차 개정 (2014. 1. 21.) 12270호	수출입은행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결산보고 기한 조정 (2개월→3개월)
제36조 (이익금의 처리)	제정 (1969. 7. 28.) 2122호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에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순이익금의 100의 50은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2. 전호의 적립을 공제한 잔여이익금은 정부의 일반세입으로 납부한다.	
	1차 개정 (1974. 12. 26.) 2736호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에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적립한다. 2. 정부 이외의 출자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우선적으로 이익금을 배당한다. 3. 제1호의 적립금 및 제2호의 배당금을 제한 잔여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 이익금의 처리방법 변경
	18차 개정 (2011. 7. 25.) 10902호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에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한다. 2.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선적으로 이익금을 배당한다. 3. 제1호의 적립금과 제2호의 배당금을 뺀 나머지 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하향 조정 (20퍼센트→10퍼센트)
제37조 (손실금의 보전)	제정 (1969. 7. 28.) 2122호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제38조 (여유금의 운용)	제정 (1969. 7. 28.) 2122호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의 보유 2. 한국은행예의 예입	
	1차 개정 (1974. 12. 26.) 2736호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의 보유 2. 한국은행예의 예입 3. 기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 제3호의 기타방법 추가

2.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내용

조문	제정·개정	제정·개정 내용	비 고
제38조 (여유금의 운용)	3차 개정 (1986. 12. 31.) 3879호	수출입은행은 제18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재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운용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 여유금 운용에 대한 제한 완화
제5장 보칙	19차 개정 (2014. 1. 21.) 12270호		신설
제39조 (감독)	제정 (1969. 7. 28.) 2122호	재무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7차 개정 (1999. 5. 24.) 5982호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금융감독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
제40조 (임원의 해임사유)	제정 (1969. 7. 28.) 2122호	① 대통령은 은행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때 ② 재무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전무이사·이사 또는 감사가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41조 (보고와 검사)	제정 (1969. 7. 28.) 2122호	① 재무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② 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검사를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위촉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전항의 위촉에 의한 검사의 결과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5차 개정 (1998. 1. 13.) 5505호	① 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의한 검사의 결과를 재정경제원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1997. 12. 31.)에 의거 금융감독원 신설
	7차 개정 (1999. 5. 24.) 5982호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9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의한 검사의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금융감독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
제41조의2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19차 개정 (2014. 1. 21.) 12270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그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신설

조문	제정·개정	제정·개정 내용	비 고
제42조 (벌칙)	제정 (1969. 7. 28.) 2122호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차 개정 (1986. 12. 31.) 3879호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벌금 인상
(과태료)	14차 개정 (2009. 1. 30.) 9355호	① 제7조를 위반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19차 개정 (2014. 1. 21.) 12270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하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법 호(號) 신설 - 금융위원회 추가
제43조 (시행령)	제정 (1969. 7. 28.) 2122호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차 개정 (2008. 1. 17.) 8841호	삭제	삭제

2.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내용

조문(부칙)	제정·개정		내용
제정 (1969. 7. 28.) 21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등)	① 재무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수출입은행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정부의 출자금의 제1회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전항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은행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수출입은행이 설립될 때까지의 업무대행)	① 수출입은행이 설립될 때까지는 한국외환은행이 정부로부터 재정자금을 대하받아 이 법에 의해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에는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한 업무와는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외환은행이 대하받은 재정자금은 수출입은행이 설립될 때에는 지체없이 수출입은행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된 재정자금은 이관된 날에 정부로부터 수출입은행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1차 개정 1974. 12. 26. 2736호] ① 수출입은행이 설립될 때까지는 한국외환은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 한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한국외환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한 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권리·의무는 수출입은행의 설립과 동시에 수출입은행이 이를 승계한다. ③ 한국외환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대하받은 자금은 수출입은행의 설립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수출입은행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민투자자금으로부터 대하받은 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차 개정 (1974. 12. 26.) 27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시운영위원회)	① 한국외환은행이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간중 한국외환은행에 임시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임시운영위원회는 한국외환은행이 대행하는 수출입은행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③ 이 법중 수출입은행에 두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임시운영위원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0조의2제1항제5호·제10조의3제1항과 제10조의6제1항 및 제2항중 수출입 은행장은 한국외환은행장으로 한다.
5차 개정 (1998. 1. 13.) 5505호	부칙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 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		①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 관한법률 제39조제3호·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제18조제 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제23조, 장기신 용은행법 제18조·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法律 第5379 號)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 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 구 하고 2년으로 한다. ④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 (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조문(부칙)	제정·개정		내용
20차 개정 (2014. 1. 21.) 12307호	부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2270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 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6조	생략
22차 개정 (2015. 7. 31.) 13453호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까지 생략 <2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12호)

구 분	공 포 번 호	공 포 일
제 정	대통령령 제4099호	1969. 10. 6.
1차개정	대통령령 제7561호	1975. 2. 28.
2차개정	대통령령 제12091호	1987. 3. 9.
3차개정	대통령령 제12603호	1988. 12. 31.
4차개정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5차개정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6차개정	대통령령 제15904호	1998. 10. 2.
7차개정	대통령령 제15750호	1998. 4. 1.
8차개정	대통령령 제17020호	2000. 12. 27.
9차개정	대통령령 제16743호	2000. 3. 4.
10차개정	대통령령 제18824호	2005. 5. 13.
11차개정	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3. 29.
12차개정	대통령령 제19551호	2006. 6. 29.
13차개정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14차개정	대통령령 제20827호	2008. 6. 20.
15차개정	대통령령 제21449호	2009. 4. 30.
16차개정	대통령령 제22220호	2010. 6. 28.
17차개정	대통령령 제24088호	2012. 9. 7.
18차개정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19차개정	대통령령 제25312호	2014. 4. 21.

제1장 출자

제1조(출자)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출자 중 정부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제2장 등기

제2조(설립등기)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4. 자본금
5. 납입자본금의 총액
6. 출자방법
7. 임원의 성명과 주소

8. 공고의 방법

제3조(신설등기)

① 수출입은행이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사실
2. 해당 지점이나 출장소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
3. 제2호의 지점·출장소 외의 지점이나 출장소에서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사실

② 본점·지점이나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새로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사실을 등기하면 된다.

제4조(이전등기)

① 수출입은행이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은행이 지점이나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이전한 후의 소재지에서는 4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지점이나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점이나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본점·지점이나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본점·지점이나 출장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제7조 삭제 <1987. 3. 9.>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가서나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9조(등기소)

① 수출입은행의 등기는 그 본점·지점이나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이나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등기소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제10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따르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등기는 수출입은행장의 신청에 따라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정관인가서의 등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자금의 제1회 납입이 완료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및 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
2. 제3조에 따른 지점이나 출장소의 설치등기의 경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면
3. 제4조에 따른 본점·지점이나 출장소의 이전등기의 경우: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 그 선임이 법 제15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11조(등기에 관한 준용 규정)

수출입은행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설립등기의 공고)

수출입은행은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의2 운영위원회

제1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수출입은행장
2. 기획재정부장관·외교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3. 한국은행총재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이 그 집행간부나 이사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4. 기획재정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출업자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5.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장이 그 임원에서 지명하는 자 1명
6.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수출입은행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명 이내

② 위원회의 의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와관련되는 의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의3(의장)

① 위원회의 의장은 수출입은행장이 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4(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나 감사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에서 해당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장 업무

제13조(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종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 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②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 또는 보증 업무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채무증권: 투자 또는 보증
2. 제1항제2호의 지분증권과 같은 항 제3호의 수익증권: 투자

제14조 삭제 <1998. 10. 2.>

제14조의2 삭제 <1998. 10. 2.>

제15조 삭제 <2014. 4. 21.>

제15조의2 삭제 <2014. 4. 21.>

제16조(대외채무보증)

①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거래
2. 수출입은행이 보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요청하는 거래

3.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12호)

- 수출입은행이 보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수출입은행장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협의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이에 동의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은 법 제18조제4항의 대상 거래에 대하여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100분의 3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수출입은행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출자(제16조의3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출자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제16조의3(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사업, 해외자원개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
-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결산)

법 제35조에 따라 보고하는 결산서(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및 잉여금처리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실적 분석보고서
- 재무제표 부속서류
- 그 밖에 결산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7조의2(이익금의 배당)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36조제2호에 따라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 그 우선적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3장의2 건전경영의 기준 및 감독

제17조의3(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자기자본”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 “신용공여”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
-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제17조의4(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제17조의5, 제17조의7부터 제17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은행을 감독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가.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나.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다. 동일차주의 구성이 변동된 경우
라.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신용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이르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회수하기가 곤란한 경우
- 제1항제3호가목이나 나목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하면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 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출입은행의 거액신용공여(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6 삭제 <2008. 6. 20.>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① 수출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부의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 담보권의 실행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 수출입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 각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승인한 경우
- ② 수출입은행은 자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회사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 자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제17조의8(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식이나 상한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

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다. 정부의 출자로 취득하는 유가증권

라.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출자 및 투자로 취득하는 유가증권

-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 수출입은행의 임원이나 직원과 자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대출.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제17조의9(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수출입은행은 이 영에 따라 취득이나 보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게 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17조의10(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수출입은행은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과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7조의11(회계처리기준)

수출입은행의 회계처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며, 그 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제17조의12(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제17조의13(건전경영의 지도)

① 수출입은행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 보유자산의 건전성 분류와 적정 대손충당금의 적립·유지
 -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의 유지
 - 외화유동성 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 자산비율의 유지
 - 보유자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체제의 구축·운용
 - 자산 운용의 건전성에 관한 법규의 준수
- ②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이 이 장에서 정하는 건전경영기준

3.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12호)

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수출입금융채권

제18조 삭제 〈2006. 6. 29.〉

제19조(수출입금융채권의 형식)

수출입금융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① 수출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수출입금융채권의 권종별 수와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수출입은행의 명칭
2.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3. 수출입금융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수출입금융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가액이나 최저가액
8. 수출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
9. 수출입금융채권의 미상환분이 있으면 그 총액

③ 수출입금융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응모자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제21조(수출입금융채권의 총액인수)

제20조는 계약에 의하여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은 수출입금융채권 발행총액에 미달할 때에도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23조(수출입금융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각 수출입금융채권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제24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수출입금융채권은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수출입금융채권의 기재사항)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채권의 번호, 발행연월일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적고 수출입은행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①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수출입은행이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제2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다.

④ 수출입은행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려면 매출기간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수출입금융채권의 수와 번호
2.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 수출입금융채권이 기명식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수출입금융채권의 취득연월일

③ 수출입금융채권의 권리자는 수출입은행의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①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수출입은행은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수출입금융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출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제30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흠결된 이권(利券)이 있으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①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으면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제5장 삭제

〈2000. 3. 4.〉

제32조 삭제 〈2000. 3. 4.〉

제33조 삭제 〈2000. 3. 4.〉

제34조 삭제 〈2000. 3. 4.〉

제35조 삭제 〈2000. 3. 4.〉

부칙

〈2014. 4.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발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7월 21일까지는 제16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2”로 본다.

4. 한국수출입은행 정관

구 분	공 포 일
제 정	1976. 7. 1.
1차개정	1977. 1. 1.
2차개정	1977. 7. 1.
3차개정	1977. 12. 29.
4차개정	1986. 3. 7.
5차개정	1987. 5. 2.
6차개정	1987. 11. 17.
7차개정	1989. 3. 13.
8차개정	1989. 12. 16.
9차개정	1991. 2. 13.
10차개정	1992. 6. 30.
11차개정	1992. 12. 4.
12차개정	1994. 2. 28.
13차개정	1995. 6. 14.
14차개정	1998. 2. 18.
15차개정	1998. 11. 10.
16차개정	2000. 4. 17.
17차개정	2002. 4. 30.
18차개정	2006. 7. 31.
19차개정	2008. 7. 11.
20차개정	2009. 4. 27.
21차개정	2009. 12. 4.
22차개정	2011. 9. 8.
23차개정	2013. 5. 24.
24차개정	2014. 4. 21.
25차개정	2014. 8. 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의 제공업무를 영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이 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한국수출입은행”이라 칭한다.

② 이 은행의 영문명칭은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로 표기한다.

제3조(본점·지점·출장소와 대리점 등)

① 이 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은행은 국내외 필요한 곳에 지점·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③ 이 은행은 국외의 필요한 곳에 지점, 사무소 및 주재원을 둘 수 있다.

④ 이 은행은 해양금융 담당 조직을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4조(자본금)

① 이 은행의 자본금은 15조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 은행은 설립의 등기 또는 자본금의 증액에 따른 출자의 납입이 있는 후에 출자기관에게 출자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5조(정관의 변경)

이 은행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정관에 정하는 이외의 사항)

이 은행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2장 임원과 직원

제7조(임원)

① 이 은행의 임원으로서 은행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는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은행장은 이 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은행장을 보좌하고 은행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은행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하는 외에, 은행장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이 은행의 경영과 관련하여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할 수 있다.

⑤ 은행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은행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은행의 업무와 그 회계를 감사한다.

제9조(임원의 임면)

① 은행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제2항의 이사 중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면한다.

1.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대외경제협력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2. 은행의 경영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보수)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수당은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제12조(임원의 겸직 제한)

① 이 은행의 은행장·전무이사·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이 은행의 비상임이사는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은행장·전무이사 또는 상임이사의 이익과 이 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은행장·전무이사 또는 상임이사는 이 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 은행을 대표할 다른 상임이사가 없으면 감사가 대표한다.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은행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이 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5조(직원의 임면)

이 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6조(운영위원회)

① 이 은행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한국수출입은행장
2. 기획재정부장관·외교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3. 한국은행총재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이 그 집행간부나 이사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4. 기획재정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출업자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5.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장이 그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6.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수출입은행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명 이내

③ 위원회의 의장은 제2항 제2호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와 관련되는 의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이 은행 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은행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나 감사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방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결권 행사 제한)

위원회의 의결에서 해당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0조(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① 은행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즉각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은행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 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21조(회의 참여)

전무이사, 이사,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

① 이 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 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회의소집)

이사회는 은행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한국수출입은행 정관

제24조(의결방법)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감사의 회의 참여)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장 업무와 그 집행

제26조(업무의 범위)

이 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7조(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① 이 은행이 차입하는 외국자본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차입금 등의 한도)

이 은행이 법 제18조와 제20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로 한다.

제29조(법인에 대한 출자 등)

이 은행은 법 제18조와 제2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자 또는 투자할 수 있다.

제30조(업무계획)

① 이 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출자에 대한 연간 승인 한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고, 분기별 업무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업무방법서)

이 은행은 법 제18조제2항 및 제5항의 업무에 관한 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대출, 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등)

이 은행이 법 제18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대출이나 할인의 이율과 보증의 요율 등을 책정할 때에는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의 제고,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의 촉진 또는 대외경제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은행의 사무취급비, 업무대행 수수료, 차입금 이자, 그 밖의 여러 가지 비용과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할 수 있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제33조(업무의 제한)

① 이 은행이 법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할 때에는 그 상환, 지급 또는 이행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이 은행의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대출의 한도는 정부가 출자하거나 정부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적립금 및 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이 은행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그 기능을 보완·장려하여야 하며 경쟁할 수 없다.

제6장 수출입금융채권

제35조(수출입금융채권)

① 이 은행은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수출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36조(사업연도)

이 은행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

이 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추가경정예산)

이 은행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예비비)

① 이 은행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결산)

① 이 은행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완결하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리계산서 등의 결산서와 사업계획실적분석보고서·재무제표부속서류 및 그 밖의 결산내용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 은행이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본점·지점·출장소와 대리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1조(이익금의 처리)

이 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에 결산순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금에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한다.
2.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하여는 배당률이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선적으로 이익금을 배당한다.
3. 제1호의 적립금과 제2호의 배당금을 뺀 나머지 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42조(손실금의 보전)

이 은행의 결산 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제8장 기타

제43조(공고의 방법)

이 은행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1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재무제표의 공고는 인터넷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4조(업무의 대행)

이 은행은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여유금의 운용)

이 은행은 법 제18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운용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조사연구업무)

이 은행은 제26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업무를 위하여 해외경제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보칙

제47조(직제)

이 은행의 직제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고문·촉탁)

이 은행은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을 고문이나 촉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제49조(적용범위)

제26조에 따라 수행하는 법 제18조의 업무 중 정부위탁업무를 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정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그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이 은행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 은행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은행의 첫 사업연도는 이 은행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위원회의 기명날인)

설립위원 일동은 한국수출입은행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날인 한다.

1976. 5.

서울특별시중로구세종로 82번지

재무부차관 조충훈

서울특별시중로구관철동 10번지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송인상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3가 110번지

한국은행 부총재 하영기

서울특별시중로구세종로 82번지

재무부 재정차관보 고병우

서울특별시중로구세종로 77번지

상공부 상영차관보 박필수

서울특별시중로구세종로 82번지

재무부 이재국장 하동선

서울특별시중로구세종로 82번지

재무부 국제금융국장 정인용

서울특별시중로구관철동 10번지

한국외환은행 전무이사 홍완모

서울특별시중로구관철동 10번지

이태호

부칙 ⁽¹⁾ ~ 부칙 ⁽²⁴⁾

(기 재 생 략)

부칙 ⁽²⁵⁾

이 정관은 2014. 8. 8. 부터 시행한다.

5. 한국수출입은행 업무방법서

구 분	공 포 일	구 분	공 포 일
제 정	1969. 10. 27.	1 차 개 정	1971. 7. 22.
2 차 개 정	1971. 7. 22.	3 차 개 정	1971. 10. 1.
4 차 개 정	1972. 3. 23.	5 차 개 정	1972. 5. 24.
6 차 개 정	1973. 1. 13.	7 차 개 정	1973. 5. 31.
8 차 개 정	1974. 4. 10.	9 차 개 정	1974. 5. 15.
10차개정	1974. 12. 20.	11차개정	1975. 3. 19.
12차개정	1975. 4. 17.	13차개정	1976. 8. 2.
14차개정	1977. 1. 1.	15차개정	1977. 2. 9.
16차개정	1977. 3. 31.	17차개정	1977. 5. 9.
18차개정	1977. 5. 31.	19차개정	1977. 7. 1.
20차개정	1977. 9. 1.	21차개정	1977. 12. 29.
22차개정	1979. 1. 12.	23차개정	1979. 5. 15.
24차개정	1979. 8. 31.	25차개정	1979. 11. 10.
26차개정	1980. 1. 18.	27차개정	1980. 7. 10.
28차개정	1981. 2. 6.	29차개정	1981. 5. 19.
30차개정	1981. 11. 17.	31차개정	1982. 2. 18.
32차개정	1982. 12. 1.	33차개정	1983. 3. 9.
34차개정	1984. 3. 22.	35차개정	1984. 11. 5.
36차개정	1985. 6. 26.	37차개정	1985. 8. 31.
38차개정	1985. 12. 30.	39차개정	1986. 7. 15.
40차개정	1987. 1. 30.	41차개정	1987. 5. 28.
42차개정	1987. 11. 12.	43차개정	1988. 3. 5.
44차개정	1988. 9. 21.	45차개정	1989. 4. 3.
46차개정	1990. 7. 16.	47차개정	1991. 6. 10.
48차개정	1993. 9. 20.	49차개정	1994. 4. 4.
50차개정	1996. 8. 27.	51차개정	1998. 2. 25.
52차개정	1998. 10. 23.	53차개정	1999. 4. 29.
54차개정	2000. 1. 15.	55차개정	2000. 4. 17.
56차개정	2000. 7. 3.	57차개정	2001. 8. 8.
58차개정	2002. 4. 30.	59차개정	2006. 7. 31.
60차개정	2007. 3. 23.	61차개정	2008. 7. 11.
62차개정	2009. 4. 27.	63차개정	2011. 9. 8.
64차개정	2014. 4. 21.	65차개정	2015. 2. 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업무방법서(이하 “방법서”라 한다)는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이 법 제18조에 규정된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업무에 관

한 기본적인 처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

수출입은행의 대출, 어음의 할인, 증권의 투자 및 보증, 채무의 보증, 외국환업무 및 부대업무 등의 취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OECD 수출신용협약, WTO 협정 및 기타 국제규범 등을 감안하여 수출입은행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제2장 대출, 투자, 보증 등의 방법

제3조(대출방법 및 한도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대출은 증서대출 또는 어음대출로 취급한다.

② 대출한도 및 기간은 자금종류, 거래성격, 상대국의 국별신용도, 기업규모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③ 대출금의 회수는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의 방법으로 한다.

제4조(대출이율 등)

① 수출입은행의 대출이율·할인율·보증료율 및 제수수료율은 자금종류, 기업규모, 신용도, 국제협약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감안하여 수출입은행장(이하 “은행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채무자가 대출·할인·보증의 대출원금, 이자, 보증료 또는 수수료를 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받으며 지연배상금률은 은행장이 정한다.

제5조(대출원리금의 감면 등)

①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출 및 채권의 원금, 이자 또는 지연배상금(이하 이 조에서 “대출금등”이라 한다)을 감면하거나 출자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이자 또는 지연배상금의 감면에 한한다.

1. 국영기업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대출금등으로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는 경우
3. 채무자의 기업정상화 또는 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한 주요방안 등에 채권자인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동의하는 경우
4.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에 대한 대출금등으로서, 국제채무조정계획이나 우리나라 정부와 채무자국 정부간의 합의 결과에 따르거나 또는 채무자국에서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준하는 계획 또는 조건 등이 수립되어 이에 동의하는 경우
5. 대출금등의 회수가능성을 제고하거나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② 제1항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 및 채권의 원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할인 및 보증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조(증권의 투자 및 보증)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권에 대한 투자 및 보증(이하 “증권투자보증”이라 한다)은 발행시장 또는 유통시장에서의 증권 취득, 증권 발행에 필요한 보증 제공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증권투자보증의 한도 및 기간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채무의 보증)

①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채무의 보증(이하 “채무보증”이라 한다)은 제반 이행성보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보증약정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채무보증의 한도 및 기간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외국자본의 차입)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국자본의 차입은 대출약정, 채권발행, 단기금융시장 거래 등 국제금융시장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행한다.

제9조(대외경제협력 지원)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대외경제협력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거나 채권을 취득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취급한다.

1.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정부간의 협정, 기타 합의가 있는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외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대출조건 또는 채권 취득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정부간의 협정, 기타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입은행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결정한다.

제10조(채권보전)

① 수출입은행은 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담보를 취득하거나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채무자 등의 신용도 또는 지원대상사업의 사업성이 양호한 경우
2. 수입국의 정부, 중앙은행 등 공공기관이 차주가 되거나 지급보증하는 거래로서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하는 프리미엄을 징수하는 경우

제11조(국별 지원조건)

① 수출입은행은 지원하는 거래 상대국의 국별신용도를 평가하고, 그 국별신용도에 따라 국가별로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조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원을 추천한 거래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제1항에서 정한 지원제한 내용이나 지원조건 등과 달리 취급할 수 있다.

제12조(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업무)

수출입은행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3장 부대업무와 업무의 대행

제13조(부대업무)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2항 및 제5항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2항제1호와 관련된 업무를 보완하기 위한 국내외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율지지업무
2. 조사업구업무
3. 금융자문 및 주선업무
4.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 채권단 공동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법인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업무

제14조(업무의 대행)

①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기관 등에 대행시킬 수 있다.

1. 대출, 할인, 투자 또는 보증 신청의 접수업무
2. 대출, 할인, 투자 또는 보증에 관한 심사업무
3. 담보물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업무
4. 대출에 관련된 어음 또는 보증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에 따라 취득하는 채권의 관리와 회수에 관한 업무
5. 대출, 할인, 투자 및 보증 등의 업무수행에 따르는 신용조사 및 부대업무

② 제1항의 업무대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 (63)

(기재 생략)

부칙 (64)

이 업무방법서는 2014. 4.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 (65)

이 업무방법서는 2015. 2. 13. 부터 시행한다.

6. 대외경제협력기금법(법률 제13816호)

구 분	공 포 번 호	공 포 일
제 정	법률 제3863호	1986. 12. 26.
1차개정	법률 제3982호	1987. 12. 4.
2차개정	법률 제4675호	1993. 12. 31.
3차개정	법률 제5170호	1996. 12. 12.
4차개정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5차개정	법률 제5529호	1998. 2. 28.
6차개정	법률 제6075호	1999. 12. 31.
7차개정	법률 제6836호	2002. 12. 30.
8차개정	법률 제8135호	2006. 12. 30.
9차개정	법률 제8852호	2008. 2. 29.
10차개정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11차개정	법률 제10622호	2011. 5. 2.
12차개정	법률 제13816호	2016. 1. 27.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도국”(開途國)이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로서 그 나라의 국민소득수준·산업구조 등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2. “은행”이란「은행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4.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五受金)
6. 기금의 운용수익금

제5조(장기 차입)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은행 등이나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1993. 12. 31.>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개도국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실시 zu 필요한 자금의 대출(어음 할인, 채무 보증 또는 유가증권 인수를 포함 하며, 이하 “융자등”이라 한다) 또는 출자
2. 협력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협력사업의 시험적 실시 zu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3. 개도국의 경제 안정을 위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4. 그 밖에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zu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8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의 이율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 보전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8조(기금의 지원요건)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대한 기금의 지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일반적인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 ①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위원회)

-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일시 차입)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

으로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제·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3. 은행에의 예치 또는 단기 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할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를,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14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填)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및 명령)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부칙 <2016. 1. 27.>

이 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남북협력기금법(법률 제10303호)

구 분	공 포 번 호	공 포 일
제 정	법률 제4240호	1990. 8. 1.
1차개정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2차개정	법률 제4675호	1993. 12. 31.
3차개정	법률 제5170호	1996. 12. 12.
4차개정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5차개정	법률 제5982호	1999. 5. 24.
6차개정	법률 제6075호	1999. 12. 31.
7차개정	법률 제6836호	2002. 12. 30.
8차개정	법률 제8135호	2006. 12. 30.
9차개정	법률 제8852호	2008. 2. 29.
10차개정	법률 제9744호	2009. 5. 28.
11차개정	법률 제10187호	2010. 3. 26.
12차개정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5조(장기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1993. 12. 31.>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운용계획 중 경제 및 재정·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 사항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4.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5.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손실보전(損失補填)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非指定通貨)의 인수
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7.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맡을 기금수입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

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10조(일시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차입한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환수)

①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는 기금사용 계획을, 기금을 사용한 자는 기금사용 결과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제·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하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및 명령)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부칙

〈2010. 5. 17.〉 (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중 “은행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8. 연표

	국내외 연표
1976	4. 30. 정부, 가봉과의 경제협력 일원화를 위한 한·가봉 주식회사(SOGACCO) 설립 5. 18. 정부, 중화학공업 제품 장기 수출계획 확정 7. 28. 경제기획원, 현금차관 및 물자차관의 도입을 대폭 규제하기로 결정 8. 13. 한국은행, 외화대출금리를 최고금리 범위 내에서 각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조치 9. 20. EC 9개국 외무장관들, 유럽의회 직접선거 실시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 12. 7. 경제기획원,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확대 수정 12. 16. 금융통화위원회, 외화대출용자 범위확대와 대출금리 인하 등 외화대출취급규정 개정 12. 17. OPEC 각료회의, 원유가격 이원화 인상 결정
1977	2. 11. OECD 조선후회, 조선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조선업체 구조개편을 촉구하는 보고서 채택 3. 9. EC 9개국 각료이사회, 공통수출신용정책 실시에 합의 4. 4. 라틴아메리카 금융개발기구, 자본금 1억 달러 규모의 아랍·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 설립에 합의 4. 9. 상공부, 조선공업육성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조선공업진흥기본계획 발표 6. 30. 영국, 조선업 및 해운업의 불황 타개방안으로 이들 업종의 30개 회사를 국영화 7. 14. 재무부, 단기 연불수입기간 연장 일체 중지하 리파이낸스, 은행차관 도입의 단계적 축소 결정 8. 6. 선진 14개국 재무장관 회의, 86억 SDR 규모의 IMF 신용자제도에 관하여 협의 9. 14. 미국 OPIC, 개도국에 대한 정치위험도 부보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 11. 17. EC 위원회, EC의 경제 및 통화동맹 재출발을 위한 5개년 행동계획 발표 11. 24. 상공부, 자동차공업의 수출 산업화를 위한 수출전략 산업화방안 마련
1978	1. 21. 정부, GNP 성장률 10~11%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시책 운용기본방침 발표 1. 23. GATT, 도쿄라운드의 최종협상을 위한 회담 개최 2. 13. 재무부, 일반무역상사의 거주자 외화계정 개설 허용 2. 16. 일본·중국, 북경에서 1978~1985년간의 장기무역협정에 조인 3. 27. 재무부, 엔화·스위스 프랑하등 46개국 통화를 영수 통화로 지정하고 모든 통화를 지급통화로 확대 4. 27. OPEC, 대체에너지개발 촉진과 석유수입감소 보상책으로 유가인상에 합의 5. 9. 재무부, 연불수출업자발행 내국신용장에 대해서도 수출금융 지원방침 발표 5. 30. 상공부, 「플랜트수출촉진법」 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플랜트 및 연불수출 촉진대책 마련 6. 30. 정부, 대외경제협력개발기금 발족방침 발표 7. 7. EC 정상회담, 유럽통화제도 창설 및 주요경제 정책에 합의 7. 13. 미·일·EC 등 주요 선진국, 도쿄라운드 공동선언문 기초안에 합의 8. 23. 동력자원부, 해외자원의 개발수입 촉진을 위해 해외자원개발법안 확정 9. 23. 한·스웨덴상무장관, 무역장벽 제거에 합의 10. 25. 한·네덜란드 외무장관,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 11. 29. 한·덴마크 상공장관, 조선공업 분야의 협력강화 등의 공동성명 발표
1979	1. 12. 한국은행, 수출지원금융 및 주요원자재 수입금융의 재할인율을 70%→80%로 인상 1. 20. IEA, 이란의 석유공급 중단에 대처하기 위해 동경에서 국제회의 개최 2. 5. 금융통화위원회, 중·단기 연불자금 지원대상을 종합무역상사에서 모든 수출업체로 확대

수출입은행 연표
4. 8. 재무부, 한국수출입은행 설립 결정 4. 10. 한국수출입은행 설립위원회 구성 및 설립사무국 발족 5. 12. 초대 송인상 은행장 임명 6. 1. 초대 임원 임명(감사 박정재, 이사 이태호, 원유민) 6. 21. 한국수출입은행 설립등기 6. 21. 정부대여금 53억 5,500만 원 출자 전환 7. 1. 한국수출입은행 정식 발족 12. 30. 정부 현금출자(100억 원)
1. 1. 수출보험업무를 대한재보험공사에서 인수 6. 7. 국제수출보험기구인 Berne Union에 정식 가입 6. 15. 연불어음 매각계약 체결(1억 5,800만 달러) 6. 22. 부산사무소를 출장소로 변경 7. 21. 한국은행 출자 납입(200억 원) 9. 15. 구매자신용 공여에 국별 신용한도제 적용 10. 5. 정부 현금출자(100억 원) 11. 1. 농촌마을 자매결연(경기도 가평군 사기막마을) 12. 19. 제2차 「수출입은행법」 개정(부대업무 수행 근거조항 신설 등) 12. 29. 제21차 업무방법서 개정(이사회 신설에 따른 의결 사항 변경 등) 12. 31. 정부 현금출자(100억 원)
1. 7. 주간 (수은뉴스) 창간 5. 30. 벨기에 수출보험공사(OND)와 공동보험협정 체결 6. 1. 뉴욕 및 런던사무소 개소 6. 1. 수출어음포괄보험 실시 6. 2. Berne Union 투자보험위원회 가입 8. 28. 로스앤젤레스사무소 개소 9. 1. 홍콩사무소 개소 9. 12. 해외 건설공사의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방안 제정 10. 2. 한국외환은행 현금출자(100억 원) 10. 26. 폴란드 수출의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방안 제정 10. 30. 정부 현금출자(50억 원) 11. 2. 한국외환은행 현금출자(100억 원) 12. 1. 한국외환은행 현금출자(100억 원) 12. 5. 제4차 「수출보험법」 개정(수출보험사업 관장 기관을 재무부에서 상공부로 변경 등) 12. 7. 은행차관 도입계약 체결(2억 달러)
2. 6. 전자대금 신용한도 공여계약 체결(칠레 Banco Israelita de Chile) 2. 9. 자메이카 중앙은행 외 전자대금 신용한도 공여계약 체결 3. 21. 정부 현금출자(6억 5,000만 원)

	국내외 연표
1979	3. 4. OPEC 회장, 석유의 전략 무기화 선언 3. 7. 스페인, OECD 수출신용협정에서 탈퇴 3. 20. UNCTAD,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상품가격 안정화 공동기금 설치에 합의 3. 27. OPEC, 석유가격 9.05% 인상 4. 7. 경제기획원, 경제안정화 종합시책 발표 5. 28. 그리스·EC, 그리스의 EC 가입에 관한 협정 조인 11. 12. 이란정부, 대미국 원유수출 금지
1980	1. 12. 정부, 환율인상(달러당 484원→580원, 19.8%) 및 금리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경제대책 발표 1. 24. 미국 의회, 중국을 최혜국 대우 국가로 승인 2. 27. 한국은행, 복수통화 바스켓에 의한 환율유동제 실시 3. 11. 국무회의, GATT 제네바의정서 가입안 의결 4. 17. 중국, IMF에 가입(대만 탈퇴) 5. 1. 정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가입을 위한 2,400만 달러 출자 결정 6. 25. 상공부, 수출보증보험과 중장기 연불수출보험에 대한 포괄보험제 도입 8. 20. 국가보위비상대책 상임위원회, 자동차·발전설비·건설중장비 등의 생산일원화 방향으로 중화학투자 조정 결정 9. 22. 이란·이라크, 양국 간 전면전 발발 11. 14. 상공부, 1986년까지 건조능력을 650만 톤 규모로 확대하는 조선공업육성 발표
1981	1. 8. 상공부, 종합상사지정 요건 완화 1. 14. 재무부, 증권시장 자유화 추진계획 발표 1. 28. 동력자원부, 인도네시아의 마두라 해역 동자바광구 공동개발 합의 2. 16. EC 재무장관위원회, 석유신용(oil facility)증액 및 신용공여시 회원국의 만장일치제 채택 3. 27. 국무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의결 4. 6. 런던, 석유 및 가스선물 시장인 국제석유거래소(IPE) 개장 4. 22. 한국은행, 적격중소기업이 발행한 상업어음의 할인은 여신규제 대상에서 전액 제외하기로 결정 5. 27. 홍콩, 1979년 8월 이후 중지해온 외국은행에 대한 신규인가 재개 6. 9. 상공부, 자동차부품공장의 생산성 향상대책 발표 6. 19. ASEAN금융공사, 싱가포르에서 정식 발족 7. 4. 한국은행, 기업종합평가표 전면 개편 8. 18. 상공부, 외국인투자 우선 유치분야 45개 품목 선정 8. 21. 경제기획원,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82~1986) 발표 10. 13. 상공부, 조선부문 장기수출 계획 발표 11. 12. 상공부, 수출어음보험 상사별 임의포괄보험제 도입 실시 11. 17. 재무부, 수출입은행대출 기준금리 인상 및 제2금융권 금리 조정
1982	1. 7. 금융통화위원회, 민간신용 한도제 폐지 1. 11. 재무부, 연지급수입대상 품목을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2. 1. GCC, OPEC내에서의 공동행동 및 유가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석유 정책에 합의 3. 18. 한국은행, 차관원리금상환용 외화대출 확대

수출입은행 연표
5. 14. 양운세 제2대 은행장 취임 5. 19. 동경사무소 개소 5. 20. 아비잔사무소 개소 8. 29. 정부 현금출자(13억 5,000만 원) 9. 15. 연불수출 지원방식을 구매자 신용방식으로 점차 전환하기로 결정 12. 18. 정부 현금출자(25억 원)
1. 8. 이태호 제3대 은행장 취임 1. 28. 전자자금 신용한도 공여계약 체결(태국 Thai Farmers Bank) 2. 1. 협조용자 취급규정 제정 6. 2. 전자자금 신용한도 공여계약 체결(대만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of China) 8. 20. 전대차관 도입계약 체결(스웨덴 Skandinaviska Enskilda Banken, 1,800만 달러) 8. 25. 정부 현금출자(42억 5,000만 원) 9. 30. 전대차관 도입계약 체결(덴마크 Den Banske Bank, 300만 달러) 10. 16. 한국은행 현금출자(300억 원) 12. 15. 전대차관 도입계약 체결(노르웨이 Eksportfinans, 4,100만 달러)
1. 1. 중장기연불수출보험 포괄보험 실시 1. 16. 정부 현금출자(7억 5,000만 원) 1. 20. 연불수출 지원자금 규모 확대(3,580억 원→5,050억 원) 2. 6. 제28차 업무방법서 개정(대외 지급보증업무 취급근거 신설 등) 3. 21. 한국은행 현금출자(300억 원) 4. 24. 정부 현금출자(110억 원) 5. 23. 한국은행 현금출자(200억 원) 5. 30. 정부 현금출자(40억 원) 6. 1. UBAF등 40개 국제금융 기관과 은행차관 도입계약(2억 달러) 및 Wells Fargo 은행 등과 연불어음 매각계약 체결(2억 달러) 6. 9. 이태호 은행장, Berne Union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피선 7. 1. 〈한국수출입은행 5년사〉 발간 8. 1. 외국환 관리규정 개정(수은지원 연불수출거래에 대한 정상외결제 허가 업무의 수은 전담) 8. 29. 이차보전금 지급규정 제정 9. 1. 산티아고사무소 개소 9. 22. 전자자금 신용한도 공여계약 체결(칠레 Banco de Chile) 10. 21. 프랑스 Coface와 공동보험협정 체결 2. 12. 수출선박의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국산기자재 사용거래 우선지원지침 제정 3. 18. 전대차관 도입 계약 체결(프랑스 Societe Generale) 4. 22. 정부 현금출자(50억 원) 5. 7.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협조용자 등을 위한 기본협정 체결 5. 11. 전대차관 도입계약 체결(노르웨이 Eksportfinans, 2억 크로나 상당 미화)

8. 연표

	국내외 연표	수출입은행 연표
1982	3. 19. OPEC, 비엔나 임시총회에서 기준유가 동결에 합의 4. 14. 영국정부, 아르헨티나에 대한 금수조치 발표 5. 15. 상공부, 전자공업 구조 고도화를 통한 수출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핵심전략 육성품목 선정 5. 18. 경제기획원, 경제종합대책 발표 7. 23. OECD, 수출신용 가이드라인 개정 10. 19. 정부, 인도네시아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한국 참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인도네시아 공동성명 발표 11. 19. 한·나이지리아 합작은행 설립협정 체결 12. 4. EC, 코펜하겐에서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역내무역 장벽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 발표 12. 15. 한·EC 섬유협상 타결	5. 14. 전대차관 도입계약 체결(덴마크 Den Danske Bank, 1,000만 달러) 6. 3. 〈국외사무소 개설 편람〉발간 6. 7. 정부 현금출자(35억 원) 7. 26. 산업설비 수출 허가업무 개시 8. 6. 선수금환급보증 등의 업무 취급지침 제정 8. 7. 국별신용도 평가업무에 관한 지침 제정 9. 4. 국별 여신한도 관리 및 운용기준 제정 10. 19. 전대자금 신용한도 공여계약 체결(페루 Corporation Financiera de Desarrollo S.A.) 10. 28. 정부 현금출자(35억 원) 11. 1. 자카르타사무소 개소 11. 1. 〈수은 조사월보〉창간 12. 17. 본점 신축 기공식 12. 23. 노동조합 결성
1983	1. 11. 국제상업은행단, 차입국컨트리 리스크 정보제공을 위한 국제금융기구 설립에 합의 1. 12. 에콰도르정부, 해외 채권은행단과 채무조정에 합의 3. 3. OPEC 8개국, 런던에서 유가 및 산유량 쿼터 조정 문제 협의를 위한 회의 개최 3. 9. 영국 금융계, EC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 유로수표제도(Eurocheque Scheme)가 1983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 4. 10. 상공부, 수출기준가격제 전면 폐지 5. 2. 재무부, 해외건설업체의 국산장비 구입에 수출자금 지원하기로 결정 8. 1. 재무부, 외채구조 개선을 위해 단기외자 도입 억제책 발표 10. 13. OECD, 수출신용 가이드라인 개정 10. 17. 미국 수출입은행, 신규 OECD 수출신용가이드라인에 의거 중간 및 저소득국에 대한 수출신용금리 인하 11. 15. 재무부, 증시를 통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시가 발행제 실시 11. 23. 브라질정부, 파리클럽과 1984년 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38억 달러 규모의 공적차관 채무재조정에 합의 12. 21. 재무부, 총 9,000여억 원의 1984년도 연불수출금융 지원규모 확정 12. 22. 파리클럽, 세네갈·라이베리아 및 자이르의 공적채무 재조정에 합의	1. 17. 1983년도 선별지원지침 제정 1. 27. 박정상 제4대 은행장 취임 2. 18. 수출계약사상 결제통화 확대(4개국→20개국) 6. 1. 건설중장비 수출지원규정 제정 6. 25. 국별 여신한도의 상향 조정과 GNP 규모별 여신한도 세분화 7. 25. 연불어음 및 L/G 분할 취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10. 1. 수출신용정보센터 설립 10. 17. 정부 현금출자(30억 원) 11. 23. 중소기업에 대한 수은 자금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11. 30. 은행차관 도입(100억 엔) 12. 13. 농촌마을 자매결연(충남 공주군 북계1리) 12. 15. 스위스 Novinform사와 신용조사 제휴 12. 17. Word Processor System 도입
1984	1. 14. 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 서방채권은행에 채무부담 경감조치 요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키토선언 발표 3. 2. 미국상원, 수출인가제도를 더욱 강화시킨 새로운 수출규제법안 통과 4. 14. 일본 대장성, 단계별 금융 자유화지침 확정 4. 20. 재무부, 금융자유화 및 금융기관 영업환경 개선대책 발표 5. 19. 선진 10개국(G-10), 재무장관회의 개최 6. 7. G7, 제10차 경제정상회담 개최 7. 19. 건설부, 해외건설진흥 종합대책 발표 7. 20. 금융단, 금융단협정 일괄 폐지 9. 26. 중국정부, 홍콩반환 협정에 영국정부와 가조인 11. 23. EC, 수출선박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한을 1986년까지 연장 12. 1. IBRD 10억 달러 규모의 아프리카기금 설립계획 발표 12. 24. 일본정부, 자본시장 개방계획 발표	1. 4. 선별지원지침 제정 1. 30. 엔화채권 발행(50억 엔) 2. 14.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취급규정 제정 3. 9. 컨테이너에 대한 전대자금지원방침 결정 3. 22. 제34차 업무방법서 개정(중소기업 앞 협조대출지원 의결권한 하부위임 등) 3. 28. 전대자금 기준 전대이율 및 연불이율에 대한 방침 결정 4. 6. 수출계약 결제통화 확대 4. 18. 해외건설협화와 업무협약 체결 6. 26. 연불수출 및 해외투자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7. 13. 은행차관 도입계약 체결(3억 달러) 7. 25. 외국환업무와 관계된 대고객수수료 책정 7. 25. 수은내국신용장 취급 수수료 징수방법 제정 8. 24. 중앙 컴퓨터 시스템 도입

	국내외 연표	수출입은행 연표
1984		11. 5. 대출금리 체계를 기존 금리와 대출실행이율로 구분 11. 21. 변동금리채권(FRN) 발행(5,000만 달러)
1985	2. 7. 금융통화위원회, 외화여수신 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 2. 8. 한국 등 10개 개도국, 국제섬유기구(ITCB) 창설 3. 27. GATT, 보호무역주의 경향 완화를 위한 15개 항의 권고사항 발표 6. 28. 미국상·하원 합동위원회, 수출관리법안에 합의 7. 13. 금융통화위원회, 수출금융 대출금액 인상 및 대출대상 확대 8. 1. EC, 16개 품목의 철강제품 대미국 수출 쿼터 제한에 미국과 합의 8. 20. 상공부, 수출절차 간소화 방안 발표 9. 12. IBRD 상무이사회,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의 설립계획 승인 10. 10. 미국하원, 섬유류 규제법안(젠킨스법안) 통과 10. 11. IBRD/IMF, MIGA 설립을 위한 서울협약 채택 10. 17. 금융통화위원회, 포괄수출 금융제도의 도입 및 수출금융 관련 제반 규정의 정비 11. 13. 미국상원, 섬유류수입 규제법안(더몬드수정안) 통과 12. 7. 인도·파키스탄 등 7개국 정상, 남아시아지역협력의회(SAARC) 정식 창설 12. 13. 47개 개도국, 인도 뉴델리에서 신라운드 협상에 대한 대책회의 개최	1. 18. Chase Manhattan Asia Ltd.와 은행차관 도입계약 체결(1억 달러) 1. 22. 유희산업설비의 수출지원지침 제정 1. 22.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자금지원지침 제정 2. 18. 아이티 중앙은행 앞 전대자금 신용한도 공여계약 체결 5. 15.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 체결 6. 1. 대출표시통화의 운용에 관한 지침 제정 6. 18. DG Bank 외 7개 외국 금융기관과 마르코화 채권 발행계약 체결(1억 마르크) 7. 20. 정부 현금출자(100억 원) 8. 16. 서독 KfW로부터 전대차관 도입계약 체결(2억 마르크) 8. 31. 본점 신축 9. 16. 〈국별경제요람〉발간 11. 5. 전대자금 신용한도 공여계약 체결(멕시코 Banco Nacional de Mexico) 12. 30.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1986	1. 1. 스페인과 포르투갈, EC에 정식가입 3. 6. 금융통화위원회,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및 대출금리 자유화 3. 7. 한국은행, 수출산업설비금융 취급절차 제정 3. 18. 일본수출입은행, 달러표시 수출금융제도 도입 결정 4. 3. 재무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충방안 발표 5. 12. 정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 6. 21. 일본 운수성, 조선불황 타개책의 일환으로 조선업계 축소정비 방침 발표 7. 9. 일본 대장성, 예금금리 자유화 조치안 발표 7. 21. 정부, 미국통상법 301조와 관련된 한·미 통상협상 일괄 타결내용 발표 8. 1. GATT 회원국들, 다자간 섬유협정의 5년간 연장에 합의 8. 5. 상공부, 한·미 섬유협상 타결내용 발표 8. 8. 한·EC 섬유협정 타결 9. 16. 정부,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확정 발표 10. 13. 일본수출입은행, 해외합작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실시 결정 12. 30. 「대외무역법」 제정 12. 30. 미국 행정부, 농산물 교역협상 실패에 따른 對 EC 관세보복조치 발표 12. 31. 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 기록	1. 11. 이중통화대출취급 세부지침 제정 1. 13. 류돈우 제5대 은행장 취임 1. 20. 수은 최초 스위스프랑채권 발행(5,000만 스위스프랑) 2. 6. 전대자금 신용한도 공여계약 체결(수리남 중앙은행) 3. 14. 수은내국신용장 취급시행기준 제정 3. 18. 부산출장소 지점 승격 4. 1. 해외투자정보지원센터 설치 4. 18. 대이라크 수출어음보통 인수방침 수립 5. 29. 은행차관 도입계약 체결(100만 달러) 6. 9. 직무분석 실시 7. 1. 〈한국수출입은행 10년사〉발간 7. 28. 해외투자사업 사후관리지침 제정 9. 12.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 연구반 설치 11. 12. 선박수출계약서 및 어음 매각계약서의 국·영문본 발간 12. 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정 12. 26. 경험기금 설립준비위 발족
1987	1. 15. 정부, 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수정 2. 3. 재무부, 해외투자상담센터 설치 2. 20. 브라질정부, 외국 민간은행 채무 680억 달러에 대한 이자지급 연기 발표 3. 11. 일본 대장성, 미국 상업은행의 일본 국내 증권자회사 설립 허용 결정 3. 25. 경제기획원, 해외투자 촉진방안 발표 5. 11. 재무부,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방안 수립 6. 4. 일본 대장성, 일본 금융시장의 자유화·국제화방안 발표 8. 27. 재무부, 해외투자 허가절차의 완화 및 해외부동산 개발사업 지원 확대 10. 19. 뉴욕 증시 폭락으로 연쇄적인 주가파동 발생	1. 27. 해외투자자금 예외취급기준 거래대상 상향조정 1. 30. 여유자금운용요강 제정 3. 14. 경험기금부 신설준비위원회 설치 5. 20. 해외투자 활성화방안 심포지엄 개최 5. 27. 수은내국신용장 수혜자에 대한 직접대출 실시 결정 6. 1.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 개시 6. 8. Berne Union 연차총회 주최(~13.) 6. 26. 황장기 제6대 은행장 취임 7. 10.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 취급규정 제정

8. 연표

	국내외 연표	수출입은행 연표
1987	11. 4. 미국·유럽 주요국, 주가 폭락에 대응하여 주요 국제금리 인하 협조조치 단행 11. 23. 재무부, 외환관리 자유화 확대 및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12. 4. 정부, 자금관리특별회계를 재정투자특별회계로 개편	9. 19.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예상 4개국 6개 사업에 대한 정부 실무조사단 참여 10. 15. 〈국별투자환경〉발간 10. 16. 연수규정 제정 12. 1. 광주출장소 개소
1988	1. 27. 재무부, 서비스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개방안 수립 1. 29. 미국 무역대표부,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에 대한 GSP출입 확정 발표 2. 6. 재무부,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폐지 3. 19. 재무부, 외환관리 자유화 방안 수립·발표(3. 25. 시행) 3. 27. 미국 상원, 은행의 증권업 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근대화법안 의결 4. 13. 중국, 「회사법」 제정 6. 13. EC 재무장관 회의, 역내 자본이동 자유화에 합의 6. 27. 재무부, 관세징수 유예제도 완전 폐지(10. 1. 시행) 7. 1. 국제결제은행,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에 관한 국제 통일기준 합의 7. 5. 해외 부동산투자 전면 허용 8. 26. 일·중 투자보장협정 체결 9. 28. 미국정부, 캐나다와의 FTA법안에 서명 10. 8. 경제기획원, 대 북한 경제개방 조치 발표 10. 15. 재무부, 외국인 투자기업에 무역업 전면 개방 10. 24. 미국 재무부, 한국과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규정 11. 29. 한국, IMF 제8조국에 가입 12. 1. 재무부, 금리자유화 및 통화신용정책 운영방식 개편 계획 수립	1. 9. 홍콩 현지법인 설립준비위 설치 1. 30. 1984년에 도입 50억 엔 액화채권 조기 상환 3. 1. 수출보험조사부 신설 3. 22. 수입자금대출 승인절차 규정 및 지원지침 제정 4. 4. 〈주간수은뉴스〉를 〈주간해외투자정보〉로 개편 4. 11. 해외투자상담실 설치 4. 13. 기업체 신용평가기준 제정 5. 17. 해외현지법인의 업무 통할규정 제정 및 자금운용업무 통할지침 수립 6. 7. EIC(수출신용보험위원회) 워크숍 참가(-9.) 8. 1. 홍콩 현지법인(수은아주금융유한공사) 개점 8. 10. 대외경제협력기금, 최초의 정부 간 협정 체결(인도네시아 파당시 도로건설 프로젝트) 8. 15. 해외투자정보센터 발족 9. 16. 용자기간 예외취급규정 폐지 9. 16. 신용보증서담보부 대출취급처리지침 제정 11. 11. 해외투자 상담실적 1,000건 돌파 11. 15. 해외투자자연구소 설립
1989	1. 15. 브라질정부,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물가와 임금을 무기한 동결하고 크루제이도貨에 대해 17% 평가절하 단행 1. 30. 정부, 남북한 간 첫 구상무역 승인 2. 1. 한국은행, 금융기관 신설 허용방안 발표 2. 17. 알제리·리비아·모로코·튀니지·모리타니 등 북아프리카 5개국, 마그레브동맹(ArabMagreb Union)의 출범 공식 선언 3. 27. 대만중앙은행, 미국의 대만달러貨 질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시장 자유화 조치 발표 4. 8. GATT, 제네바 UR 회의에서 농업보호, 지적소유권보호, 섬유무역, 긴급수입 제한 조치 등 4대 현안사항 타결 4. 11. 재무부, 금융실명거래 실시준비단 발족 6. 8. 미국 조선업협회(SCA), 한국·서독·일본·노르웨이 4개국의 조선분야에 대해 USTR에 불공정무역 제소 7. 20. 한국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무역어음의 인수·할인 및 매출업무 취급 허용 7. 27. 한국은행, 은행단 금융실명제 준비위원회 발족 8. 22. 일본 정부, ODA를 종래의 프로젝트 차관 위주에서 프로그램 차관 위주로 전환 방침 발표 9. 1. 정부, 단계별 환율제도 개편계획 발표 11. 6. 아시아 태평양지역 12개국 대표들, 후주의 캔버라에서 제1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개최 및 정례화에 합의	2. 10. 해외투자자금 지원지침 제정 2. 28. 100만 달러 이하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운영위원회 의결절차 폐지 3. 7.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조약정 체결 3. 22. 해외투자 허가 및 신고수리업무 취급지침 제정 3. 23. 헝가리 Investcenter/Tradeinform과 투자정보 교환에 관한 합의각서 체결 4. 3. 해외투자자금 지원대상 사업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지원범위 확대 4. 28. 과도기 중소기업 앞 대출이율 적용기준 설정 5. 29.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 공여계약 체결(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사업 지원, 1,000만 달러) 6. 15. 북방 제국과의 경제교류촉진기관인 국제민간 경제협의회(IPECK)에 가입 6. 22.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대상 사업의 사전구매 및 소급금융지원지침 제정 7. 15. 해외투자자금 지원대상 사업의 선별심사에 관한 기준 제정 7. 31. 제작금융 채권보전을 위한 양도담보물건 공시방안 수립 8. 14. 여신관계약정서 운용지침 제정 8. 16.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제도 도입 9. 15. 해외투자 신고수리 업무취급 개시 9. 19. 경험차관 공여계약 체결(인도네시아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지원, 1,300만 달러) 10. 20. 수출입금융채권규정 제정 11. 9. 수출입금융채권규정 시행요강 제정 12. 1. 파리사무소 개소

	국내외 연표	수출입은행 연표
1990	1. 13. 한국은행, 대기업 여신관리제도 개편 2. 7. 소련공산당,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기능적으로 결합한 경제체제로의 이행과 정치민주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강령 채택 3. 2. 시장평균환율제도 시행 3. 23. 서독연방은행, EMS하의 유럽환율조정장치(ERM) 가입유보 발표 5. 4. 증권시장안정기금 발족 6. 14. EFTA, EC와의 경제적 통합체인 EES의 창설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 채택 7. 17. 미국상원, 섬유제품 수입규제법안 가결 9. 25. 통일원,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반출입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 10. 1. 한·소 국교수립 10. 3. 동·서독 통일 10. 17. 한국, OECD 조선부회 정회원국 가입 10. 26. 경제기획원,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수립지침 발표 11. 17. 한·헝가리, 쌍무관세인하 최종 합의 11. 23. 한·소련, 이종과세방지협정 체결 12. 3. GATT,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을 위한 최종 각료회의 개최	2. 2. 기계류 등에 대한 수출자금대출 취급지침 제정 2. 28. 신용대출 취급지침 제정 3. 21. 홍콩 현지법인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3. 28. 홍재형 제7대 은행장 취임 5. 30. 전국종합신용평가(주) 앞 출자(2억 원) 6. 7. 수입화를 선취보증서 발급 시 대출 취급 근거 신설 6. 12. 수출목적물 인도지연에 따른 대출기간 연장 승인 기준 제정 6. 19. 외국인 업무 관련 수수료 취급 요강 제정 8. 16.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따른 수출보험 인수 전면 중단 8. 16. 해외투자자금 대출심사 징구서류 간소화방안 수립 8. 30. 홍콩 현지법인 앞 자본금 증자(500만 달러) 10. 22. 업무전산화 중장기 계획 수립 11. 23. 해외투자자금 대출심사 기준 제정 12. 11. 런던 현지법인 설립내인가 취득 12. 14. 러시아대외경제은행과 기본협정 체결 12. 29. 한국은행과의 외화자금예치거래약정 체결 및 외화예치금 운용지침 수립 12. 31.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1991	1. 28. 대만, 중국 본토에 대한 투자계획을 최초로 공식 승인 2. 5. 미국, 은행산업 규제완화 및 예금보험제도 개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제도 개혁안 발표 3. 3. 정부,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제정 3. 13. 한국은행등 금융기관, SWIFT에 가입 4. 10. 정부, 남북분단 후 첫 남북 간 직교역 승인 6. 29. COMECON, 제 46차 부다페스트회의에서 해체 7. 1.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국제화 및 금융부문 계획 발표 7. 18. 콜롬비아·멕시코·베네수엘라, FTA 체결에 합의 8. 24.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 발표 9. 17. 남·북한, UN에 동시 가입 10. 8. ASEAN, 자유무역지대 창설, 동아시아경제협력협회의 결성 등 역내 경제협력 강화에 합의 10. 22. EC와 EFTA, 1992년 말까지 두 시장을 통합한 유럽경제지역(EEA) 창설에 합의 11. 12. 정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확정 발표 11. 21. 재무부, 제1단계 금리 자유화조치 시행 12. 3. 중남미 Rio Group 13개국, 제5차 정상회담에서 2000년까지 역내경제 통합 완료 등 을 골자로 하는 카르타헤나선언 채택 12. 8. 소비에트연방 해체 선언	3. 1. 수은장기발전방안 수립 4. 12. 유로시장에서 신디케이트론 도입(1억 2,000만 달러) 4. 16. 전대자금 신용한도 공여계약 체결(러시아대외경제은행, 8억 달러) 4. 22. 모스크바사무소 개소 5. 1. 최초 양키본드 발행(2억 달러) 5. 24. 대소련 원료 및 소비재차관 취급지침 제정 6. 5. 이광수 제8대 은행장 취임 6. 13. 부산지점의 수입신용장 취급업무 개시 7. 2. 수출자금대출 연불기간 설정기준 제정 7. 16. 유로시장에서 신디케이트론 도입(1억 달러) 7. 26.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채권 일괄 등록(10억 달러) 8. 7. U.S.MTN 발행 프로그램 설정(7억 달러 이내) 10. 28. 대소련 소비재차관 제공 관련 지급보증서에 대한 소련 총리의 보장각서 징구 및 소비재차관 개별승인 개시 11. 28. 최초의 원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12. 2. 대소련 소비재차관 자금집행 개시 12. 2. 연수원 증축공사 기공식 12. 5. 자카르타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합작계약 체결 1. 3. 특수지역 국가에 대한 수출보험 인수방침 수립 3. 12. 일본 자본시장에서 100억 엔 규모의 은행차관 도입 4. 21. 루마니아에 대한 최초 전대자금 공여 5. 4. 일본수출입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5. 22. 러시아연방 정부와 보증채무 승계 및 경험제개에 관한 원칙에 합의 6. 1. 자카르타 현지법인(수은인니금융) 개점 6. 17. ALM 위원회 구성
1992	1. 1. EU 공식 출범 2. 21. 영국, 1991년 중 GDP 성장률이 -2.5%로 1981년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 기록 4. 2. 재무부, 1단계 금융자유화 및 개방시행계획 발표 8. 12. 미국·캐나다·멕시코, 워싱턴에서 3국 통상대표 회담 개최, NAFTA 체결을 위한 기본 내용에 합의 8. 28. 재무부, 해외직접투자자침 마련 8. 28. 미국수출입은행, 러시아에 1억 200만 달러 규모의 차관보증 제공	

8. 연표

	국내외 연표	수출입은행 연표
1992	9. 21. 미국·멕시코, 이종과세 및 탈세방지 협정 체결 9. 21. 영국정부, 유럽 외환시장 혼란 가중으로 EMS내 유럽환율조정장치(ERM) 일시 이탈 발표 9. 21. 정부, 자본시장발전 5개년 계획 추진 발표 10. 14. 수출신용보증제도 도입 10. 21. 중국, GATT에 정식으로 가입신청서 제출 11. 22. 중국, 수입관세 인하와 각종 비관세장벽 제거를 골자로 하는 무역자유화 계획 발표 12. 11. ASEAN, 공동특혜관세 실시방안 확정 및 1993년 1월 시행 합의 12. 22. 중국, 대북한 무역거래시 경화결제요구 발표 12. 26. 재무부, 외국인투자절차를 인가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6. 30. 대구지점 개점 7. 1. 수출보험공사 독립 7. 7. 수출보험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7. 15. 런던 현지법인(수은영국은행) 개점 8. 22. 경영혁신추진본부 구성 9. 15. 멕시코시티사무소 개소 9. 15. 약정수수로 징수유예기간 설정 11. 9. 호치민시티사무소 개소 11. 9. 대소련 소비재차관 기승인분 4억 7,300만 달러 집행 완료 11. 24. 한국외환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11. 30. 대소련 소비재차관의 대출조건 변경 승인
1993	1. 27. 일본,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공동채권 매입회사 발족 3. 18. EC와 EFTA, 스위스를 제외한 유럽경제지역(EEA) 창설 수정 조약에 서명 3. 22. 정부, 신경제 100일 계획 수립 4. 8. 재무부, 수익률 즉시공시체제 구축 및 딜리제 도입 등 공채시장 발전방안 발표 5. 26. 재무부, 신경제 5개년 계획 금융부문개혁안 발표 7. 2. 정부, 신경제 5개년 계획 확정 발표 7. 9. G7 정상회담, 일본의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개선 촉구를 골자로 한 경제선언 발표 7. 24. 러시아중앙은행, 1993년 이전 발행루블貨幣 지폐의 통용을 전면 중단하는 화폐개혁 조치 전격 발표 8. 1. EU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 유럽환율조정장치(ERM)내 통화들의 환율 변동폭 확대에 합의 8. 12. 금융실명제 실시 9. 13. 이스라엘·PLO, 평화 협정에 서명 9. 24. 정부, 금융실명제 후속조치 발표 11. 1.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위한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표 11. 15. GATT, UR 협상의 분야별 합의문을 취합한 최종 의정서 승인 11. 22. EU 12개국 및 EFTA 6개국(스위스 제외), 역내 단일시장 형성을 위한 유럽경제지역(EEA) 협정 비준 12. 1. UR 협상 타결	1. 13. 해외투자자금 대출에 변동금리부 방식 도입 2. 1. 북경사무소 개소 2. 3. 한국외환은행·일본정기신용은행 등 국내외 4개 은행과 중국농업은행 앞 협조대출 계약 체결(1,900만 달러) 3. 5. 경험차관 공여계약 체결(폴란드 통신망 현대화사업 지원, 5,000만 달러) 3. 15. 법무정보시스템 개발 4. 1. 김영빈 제9대 은행장 취임 4. 1. 연불수출금융 여신한도 폐지 및 새로운 국별 여신관리제도 시행 4. 26.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협조대출 기본협정 체결 5. 19. 앙키본드 발행(2억 달러) 5. 25. 창원용자상담소 개소 6. 1. 연수원 증축공사 준공 및 개원식 6. 3.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심의 대상사업 조정(1,000만 달러 이상에서 2,000만 달러 이상으로) 6. 17. 수입자금 대출표시통화를 외화도 가능하도록 변경 9. 20. 역외금융업무 취급 개시 9. 24. 상파울루사무소 개소 10. 26. 중국은행(Bank of China)과 업무협약 체결
1994	1. 1.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공식 출범 1. 11. 유럽통화기구(EMI),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거 발족 1. 25. 외환·금융부분 무역업무 자동화(EDI)방식 개시 2. 3. WTO, 남북한 직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 3. 15. 정부, OECD 가입추진 일정 발표 3. 21.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 정식 발효 4. 13. 중국정부, 정책금융 전담기관으로 국가개발은행(The State Development Bank) 신설 4. 15. UR 무역협상위원회 각료회의, UR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담은 최종의정서에 서명 4. 25. 증권에탁원 개원 4. 27. 중국 정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중국수출입은행 신설 7. 19. OECD 조선험상, 피해가격제 도입 결정	2. 1. 워싱턴사무소 개소 2. 15. 중소기업 신용대출제도 도입 2. 18.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한 수출용 부품 제작자금 대출제도 신설 3. 29. 신용대출 취급규정 제정 4. 1.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직접대출제도 도입 4. 2. 창원용자상담소s의 출장소 승격 4. 4.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대출 기본운영규정 제정 5. 1. 여신종합시스템 가동 5. 10. 수출용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외화대출 취급 개시 5. 16. 아르헨티나 국영투자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6. 20. 북한경제·투자정보조사반 발족 7. 1. PC통신을 이용한 해외투자정보시스템(OIIS) 서비스 제공 개시

	국내외 연표
1994	8. 3. 러시아, 경험차관을 자국산 무기와 현물로 상환하기로 결정 8. 18. 은행감독원, 은행경영 공시요구제도 도입 8. 29. 일본 경제기획청, 개도국 경제원조지침 확정 9. 1. 정부, 대북투자보증금을 외국환은행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허용 9. 7. EU 위원회, 한국산 주요공산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공여를 1997년부터 중단하기로 확정 11. 15. APEC, 역내무역·투자 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고르선언' 채택 12. 15.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 금융결제망(BOKWIRE) 정식 가동 12. 18. OECD 조선험상 완전 타결 12. 21. 한·미·일·EU·북구 3국, 다자간 조선험정에 서명
1995	1. 1. 재무부, 외환제도개혁 시행계획 확정 1. 1. WTO체제 공식 출범 2. 2. 미국 FRB, 금리인상 단행 2. 7. EU, 터키의 EU관세동맹 가입에 합의 2. 20. 중앙은행 제도개편·금융감독기관통합안 발표 3. 3. IBRD 차관 졸업 3. 9. 재정경제원, 외자도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4. 1 시행) 3. 29. 정부, OECD가입 신청서 제출 5. 1. 재정경제원,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원화표시채권 발행 허용 5. 6.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연말까지 남아시아 특혜무역협정(SAPTA)의 정식 발족을 골자로한 '뉴델리선언'을 채택 6. 26. 재정경제원, 대북투자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제정(6. 28. 시행) 7. 20. 베트남, ASEAN에 정식 가입 10. 11. 재정경제원, 자본시장 자유화 방안 발표 10. 12. 재정경제원, 투자신탁업 및 투자자문업 개방계획 발표 11. 22. EU, 대서양무역공동체 방안 마련 12. 16. ASEAN, 2003년까지 공산품 수입관세 전면 철폐 결정
1996	1. 18. 한국은행, 은행대출 가산금리 자유화 1. 26. 중국, 홍콩인수를 위한 중국홍콩특별행정구 준비위원회 발족 2. 1. 한국은행·은행연합회, 중소기업 신용평가표 운용기준 및 여신업무 관련 면책기준 제정 2. 21.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청 개청 4. 3. 러시아·벨라루스, 재통합 조약 조인 4. 11. 중국, 최초로 공개시장 조작 실시 6. 19. 통상산업부, 수입선다변화품목 축소 및 향후 동제도의 운영방안 발표 7. 4. 은행감독원, 주거래은행 제도개편(적용기준을 대출금 2,500억 원 이상으로 변경 등) 7. 11. EU, '공동부가가치세제 도입방안' 발표 7. 11. OECD, 폴란드를 2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승인 8. 9. 프랑스, 중소기업개발은행 설립 결정 10. 1. 정부, 원/엔 외환시장 개설 10. 17. OECD, 다자간 조선험정의 발효시한을 늦추기로 결정 11. 21. 러시아,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처음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 발행 발표 11. 28. OECD, 「Ex Ante Guidance for Tied Aid」 발표

	수출입은행 연표
	8. 30. FRN 드래곤본드 발행(2억 달러) 8. 30. 근거리 통신망인 '헨디오피스 2.0' 도입(전자문서를 통한 부분전자결재 시행 등) 9. 1. 뉴델리사무소 개소 9. 1. 자금종합시스템 가동 10. 4. 문헌상 제10대 은행장 취임 10. 19.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승인 업무 개시 11. 12. 〈북한투자가이드〉 발간 작업반 발족 12. 31. 〈남북경제협력실무 안내〉 책자 발간
	3. 7. 중소기업에 대한 약정 수수료 면제 4. 27. 농업자원수입자금 지원 재개 6. 2. 광주 및 창원출장소의 지점 승격 7. 1. 중소기업 포괄수출금융제도 도입 7. 7. 인천용자상담소 개소 7. 10. 대러시아 소비재차관과 관련하여 소련대외경제은행과 은행 간 협정 체결 8. 4.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통한 신용대출제도 도입 8. 28. 수리남 중앙은행과 리스캐줄링 협정 체결 9. 1. 싱가포르 현지법인(수은싱가포르 종합금융회사) 개점 9. 4. 대북 쌀지원 관련 남북협력기금 1차 집행 9. 27. 국제은행 간 금융정보 통신망(SWIFT) 개통 10. 5. 캐나다수출개발공사(EDC)와 업무협정 체결 11. 1. 법규부내에 국제계약 상담실 설치 11. 3. 국제금융공사(IFC) 등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세미나 개최 11. 8.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차관구매사업 세미나 개최 12. 21. 대북 쌀지원 관련 남북협력기금 제2차 집행
	1. 18. 문서관리 규정 개정 및 전자장표 제정을 통한 전자결재 전면 시행 2. 1. 중소기업지원팀 신설(여신개발부 부속팀) 6. 28.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업무안내 등 11개 코너) 7. 1. 창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수출입은행 20년사〉 발간 7. 2.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WTO 체제하에서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의 기능과 역할) 7. 2. 베트남 리스법인 설립인가 취득(베트남 최초 100% 단독 출자형태의 현지법인 설립인가) 8. 21. 직원 전문화를 위한 직군제 도입 8. 27. 베를린사무소 개소 8. 29. 마닐라사무소 개소 10. 24. 〈수은소식〉 100호 발간 11. 5. OECD 수출신용보증그룹 및 협약참가국 회원가입(ECG 및 GOP)(~6.) 11. 22. 호치민 현지법인 개점(수은 베트남리스사) 12. 1. 영문 〈국제계약해설〉 발간

8. 연표

	국내외 연표	수출입은행 연표
1996	12. 1. 중국, WTO 가입을 위해 IMF 제8조국 의무이행 결정 12. 12. 정부, OECD 가입	
1997	1. 23. (주)한보철강 부도 1. 26. 중국, 최초의 중국·대만 합작은행인 '제일중화은행' 상해 설립계획 발표 6. 14. ASEAN, 역내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ASEAN 경제지역(AER) 창설 합의 6. 20. OECD, 'Kanepen Package' 합의(1999. 4. 1. 시행) 7. 8. 태국, IMF에 200억 달러 상당의 국제구제금융 요청 7. 11. 은행감독원, 여신관리제도 개편(여신한도관리제 폐지,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 도입 등) 7. 12. 필리핀, IMF와 일본 정부에 15억 달러의 금융지원 요청 8. 11. IMF·한국·일본등 아·태지역국가, 태국에 대해 16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결정 8. 22. 정부,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기업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8. 28. 정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정 10. 8. 인도네시아, IMF와 IBRD에 40억 달러 상당의 금융지원 요청 10. 24. 국가 신용등급 하향조정: S&P(10. 24., AA-→A+) 10. 30. 재정경제원,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채권시장 조기개방, 현금차관 도입 확대 등) 11. 19. 재정경제원, 금융시장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 11. 21. 재정경제원,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 발표 11. 25. 재정경제원, 예금자보호제도 강화 발표(2000년까지 3년간 원리금 전액 보장) 11. 25.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S&P(11. 25., A+→A-), Moody's(11. 28., A1→A3), Fitch(11. 27., A+→A) 12. 3. 정부 및 IMF, 총 57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안에 합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Moody's(11. 11., A3→Baa2, 11. 21., Baa2→Ba1(투자부적격)), S&P(11. 11., A→BBB-, 11. 22., BBB-→B+(투자부적격)), Fitch(11. 11., A→BBB-, 11. 23., BBB-→B-(투자부적격)) 12. 12. WTO, 금융서비스협정 최종 타결 12. 25. 재정경제원, IMF 및 주요 선진국 자금 조기지원 발표 12. 31. 정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금융감독원 통합)	2. 7. 주은부동 산신탁(주)와 담보신탁운용에 관한 협약 체결 4. 1. 정부 현금출자(250억 원) 4. 28.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 체결 5. 14. US 및 유로 CP 프로그램 설정(~16.) 5. 15. 상해사무소 개소 5. 23. 하노이사무소 개소 6. 11. 성업공사와의 비업무용 재산 매각 위임에 관한 협약 체결 7. 1. 해외투자정보시스템(OIIS)의 인터넷 서비스 개시(주요 56개국) 7. 29. 국제협력단(KOICA)과 업무협약 체결 7. 30. 수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8. 20. 사무라이 이종통화채권 발행(200억 엔) 9. 12. 강남지점 겸 종합지원센터 개점 11. 6. 대외경제협력기금 할인율(DDR) 산정을 위한 원화 표준상업금리(CIRR) 산정방안 수립 및 확정(OECD GOP회의) 11. 6. 유로 MTN 프로그램 설정 12. 16. OECD 가입에 따른 EDCF 지원제도 개선내용에 대한 관련기업 설명회 개최 12. 31. 정부 현물출자(1,600억 원)
1998	1. 15. 은행감독원, 제일은행·서울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1. 28. 정부, 채권단과 금융기관 단기외채 만기연장 기본원칙 합의 2. 1.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Fitch(2. 2., B-→BB+), S&P(2. 17., B+→BB+) 2. 11. G-7, IBRD와 아시아개발은행의 보증제도 확대, 위기국의 민간채무를 공적 보증하는 새로운 대책마련 발표 2. 19. 정부, IBRD 구조조정차관 도입에 따른 금융부문 제도개선대책 발표 3. 6. 일본, 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에 긴급 무상원조제공 결정 3. 16. 재정경제부, 단기외채 만기연장 협상결과 발표 3. 27. IBRD, 한국에 대한 1차 구조조정차관 20억 달러 승인 4. 1. 정부,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4. 14. 재정경제부, 금융·기업 구조개혁 추진방안 발표 5. 3. IMF, 인도네시아에 9억 8,940만 달러 즉각 지급 및 추가 20억 달러 지원승인 발표 6. 1. EU, 유럽중앙은행(ECB) 창설 6. 3. OECD, 프로젝트파이낸스 거래지원에 대한 새로운 공적수출신용규칙 마련	1. 1. 국별신용도 평가방식 변경(정성평가방식에 정량평가방식 혼합) 1. 9. GSM(General Sales Manager) 자금 도입(미국 농무부의 자국 농산물 수출 촉진프로그램) 2. 10. 성업공사와 부실채권 양도·양수에 관한 협정 체결 2. 16. 정부 현물출자(3,699억 원) 2. 16. 한국외환은행 출자금 반환(1,437억 원) 3. 27. IBRD 차관 도입(5억 달러) 4. 20. 양만기 제11대 은행장 취임 5. 27. 일본수출입은행 차관 도입(1,300억 엔) 5. 28. 기업은행·신한은행과 무역어음 재할인에 관한 기본협약 체결 5. 30. 조흥은행과 무역어음 재할인에 관한 기본협약 체결 6. 1. 무역어음 재할인제도 시행 6. 20. 1차 조직개편 단행(부서축소, 인원 감축) 6. 25.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 체결 6. 26. 국별신용도평가모델 전산화 완료

	국내외 연표	수출입은행 연표
1998	6. 3. 러시아, G-7과 서방 민간은행에 총 100억 달러 규모의 긴급지원 요청 6. 19. 금융감독위, 금융구조조정 추진방안 발표 7. 9. ADB, 인도네시아에 대해 3억 달러의 긴급대출 결정 7. 13. 일본수출입은행, 한국에 10억 달러 지원 7. 20. IMF, 러시아에 111억 2,000만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승인 7. 30. IBRD, 인도네시아에 79억 달러 추가지원 합의 8. 3. 재정경제부, 기업구조조정기금 설립 발표 8. 14. 러시아, 일부 외채에 대한 지불유예(Moratorium) 선언 9. 4. IMF, 우크라이나에 22억 달러 규모의 자금지원 승인 9. 29. 정부,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 발표(재정지원규모: 64조 원) 10. 3. 일본, 아시아국가들에 대해 300억 달러 지원계획 발표 10. 28. 금융감독위, 금융기관의 회사채보유한도제 실시 11. 4. 러시아, 대외 채무상환 연장요청 발표 11. 6. 태국, 일본 등으로부터 23억 달러 규모의 자금지원을 받기로 합의 11. 13. IMF, 브라질에 대한 415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 결정 11. 28. 금융감독위, 은행업무규제 완화(국내영업소 신설 완전자유화 등) 12. 7. 정부, 5대 그룹과 구조조정 추진 합의문 확정 발표(빅딜 등) 12. 29. 브라질, IBRD와 10억 달러 차관협정 체결	7. 1. 사법연수생 전문분야 실무수습 실시(최초) 7. 27. 지점 여신업무 통괄지점 제정 9. 17. 정부 현금출자(1,000억 원) 9. 18. 5대 계열 주요채권단협의회 운영협약 체결 10. 1. 회전한도방식 수출자금 대출제도 및 여신합의제 기구에 의한 집단심사제도 시행 10. 14. 프랑크푸르트사무소 개소 10. 22. 수출보험공사와의 수출보증보험 포괄보험특약 체결 10. 31. 파리, 워싱턴사무소 폐쇄 및 1인 주재원 운용 11. 2. 중소·중견기업지원 종합대책 시행(1조 원 규모 회전 한도방식 수출자금 신규대출 등) 11. 19. 리스크관리위원회 발족 12. 30.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3억 달러 규모의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 12. 31. 정부 현물출자(4,500억 원)
1999	1. 1. EU, EURO 도입 1. 2. 금융감독원 공식 출범(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통합) 1. 15. 재정경제부, 일본 대장성과 한국에 대한 단기자금지원 합의 1. 22.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Fitch(1. 19., BB+→BBB-), S&P(1. 25., BB+→BBB-) 2. 1. 한국은행, 수출입은행에 7,000억 원 출자 2. 4. 일본, 인도네시아에 24억 달러 규모의 자금지원 결정 2. 12. Moody's,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Ba1→Baa3) 2. 15. OECD, '뇌물과의 전쟁협정' 발효 3. 1. 재정경제부, 국책은행에 대한 건전성감독규정 제정 3. 28. IMF·ADB, 인도네시아에 대한 16억 7,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자금 지원 결정 3. 31. IMF, 브라질에 대한 49억 달러 추가지원 승인 4. 1. 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 4. 1. OECD, 'Kanepen Package' 발효 4. 28. IMF, 러시아에 대해 45억 달러의 자금지원 합의 4. 30. 캄보디아, ASEAN에 정식 가입 5. 4. EU, 범유럽 단일증권시장 창설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7. 29. IMF, 브라질에 대한 23억 달러의 신규차관 제공 승인 8. 9. 일본, ODA를 동아시아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익과 보다 긴밀히 연계시킴 방침 발표 8. 25. 정부·금융기관·재계, 기업구조조정 3대 보완과제 합의 9. 21. 금융감독원, 채권시장 안정기금 설치방안 발표 9. 21. 정부, 제2금융권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건전성 강화방안 확정 10. 1. 일본수출입은행과 해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합하여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발족	1. 29. 정부 현금출자(300억 원) 2. 1. 한국은행 현금출자(7,000억 원) 2. 25. 정부 현금출자(300억 원) 2. 25. 수은건전성감독규정(재정부) 제정 3. 19. 최초 대북 비료(5만 톤) 지원 결정(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3. 25.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부분보증 및 보증부여신 운용에 관한 기본 협약 체결 3. 26. 정부 현금출자(400억 원) 4. 1. OECD 프리미엄제도 도입 4. 13. ADB와 협조융자 의향서 교환 4. 22. 외환은행 앞 1차 출자(3,360억 원) 제7차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공포(금융감독 기능이 재경부에서 금감위로 이관 반영) 7. 1. 해외투자통계 분석업무 개시 8. 6. 해외투자통계 시스템 구축 8. 23. ADB와 협조융자 전략검토 세미나 개최 9. 1. 외환은행 앞 2차 출자(822억 원) 9. 8. 인도네시아 BNI와 구상무역 지원 위한 청산협정 체결 9. 22. 건설공제조합과의 지급보증운용 협약 체결 11. 15. 수출환어음 매입업무 개시 11. 22. 한국능률협회 선정, 99년도 경영혁신대상 금융부문 최우수상 수상 11. 29. <외환위기와 IMF> 발간 12. 15. 북한 경수로사업 지원을 위한 Loan Agreement 체결 12. 28. 정부의 현금출자 산업은행 앞 양도(1,539억 원) 12. 28. 중소기업신용평가시스템 도입

8. 연표

	국내외 연표	수출입은행 연표
1999	11. 11. S&P,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BBB-→BBB) 12. 16. Moody's,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Baa3→Baa2)	12. 28. 정부 현금출자(64억 원)
2000	1. 4. 미국, 그린스펀 FRB 의장 재지명 1. 14. 금융감독위,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제정 1. 16. 정부, 4대부문 2단계 구조조정 추진 발표 1. 31.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KEDO와 총 1,165억 엔의 대출계약 체결 2. 23. 정부, 증권거래소 활성화 방안 발표 2. 29. 정부, 기업구조조정회사(CRV) 활성화 방안 발표 3. 24. EU, 통신시장 자유화 및 금융시장 단일화 합의 3. 30. Fitch,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BBB→BBB+) 3. 31. WTO, 미국의 반덤핑법이 WTO 무역규범에 어긋난다고 판결 4. 25. 정부, 통신사 구조조정관련 공적자금 투입 결정 5. 7. 일본·중국·한국·ASEAN, 통화스왑협정 체결 5. 19. 중국, WTO 가입을 위한 EU와의 협상 타결 6. 8. 미국, 미국은행과 해외금융기관 간의 돈세탁 거래금지법안 의결 6. 13. 남북정상회담 7. 28. 정부, 워크아웃제도 개선 등 2단계 기업구조조정 방안 발표 8. 1. IMF, 필리핀에 대한 3억 1,400만 달러 융자 승인 8. 22. 금융감독위, 거액 외환거래에 대한 보고의무제 도입 10. 17.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최초로 정부보증 없이 1,000억 엔의 채권 발행 11. 3. 채권은행단, 정리대상기업 발표 11. 11. 중국, 10개 민간은행 개설계획 발표 12. 29. ASEAN, 10개국 중앙은행 10억 달러 규모의 스왑협정 체결	1. 10. Total Exposure 한도관리제도 시행 1. 14. 부실여신에 대한 부책규정 제정 1. 19. 유동성부족 위기관리지침 제정 1. 25. 현자법인 경영분석 시스템 구축(해외투자 기업) 1. 28. 기업은행 앞 2,000억 원 출자 및 기본업무협약 체결 3. 28. 해외투자 동향분석시스템 구축 4. 17. 이자율지지업무 도입 5. 24. 수은 임직원 남북협력기금 출연 6. 1. <해외직접투자 통계연보> 발간 6. 23. 기업은행 앞 2차 출자(1,667억) 8. 1. 해외경제정보시스템(OEIS) 출범 8. 22. <ECA, 국제기금 편람> 발간 9. 9. 경의선 철도 및 국도 1호선 연결사업 지원(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9. 18. 지역본부 신설(관할지역내 지점, 출장소의 영업활동을 총괄, 조정) 10. 4. 대북 식량차관(50만 톤) 제공을 위한 차관계약 체결 10. 18.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무역촉진 업무 협약 체결 10. 23. IBRD 협조대출 설명회 개최 11. 22. 신용도가 낮은 기업과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지원 방침 제정 12. 19. 홍콩현지법인 폐쇄 및 홍콩사무소 개소 12. 22. 외환은행 앞 3차 출자(4,000억 원) 12. 22. 한국은행의 현금출자(2,000억 원)
2001	1. 6. 정부, IMF차입금 상환계획 발표 1. 16. 중국, WTO 가입협상 결렬 1. 18. IBRD, 브라질에 7억 5,758만 달러 규모의 대출 승인 2. 22. 터키, 금융위기 재연으로 고정환율제 포기 3. 12. IMF, 페루에 대한 1억 2,800만 SDR규모의 대기성 차관 승인 3. 23. 금융감독위, 우리금융지주 주식회사 설립 인가 5. 15. IMF, 터키에 80억 달러의 긴급구제금융 지원 5. 26. 아프리카, 53개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구인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출범 6. 14. 정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 확정 7. 26. 미국, 이란과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2006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가결 8. 3. IMF, 브라질에 150억 달러 규모의 자금지원 계획 8. 14. 정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9. 15. 시행) 8. 16. 아르헨티나, IMF와 150억 달러 금융지원 합의 8. 23. 한국은행, IMF차입금 상환 완료 9. 11.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 국방부 건물에 동시다발 테러 발생 9. 14. 미국, 국가비상사태 선언 9. 14. 중국, WTO 가입협상 타결 9. 18. 대만, WTO 가입협상 타결 10. 8. 미국·영국, 아프가니스탄 공격 개시	1. 2. 인터넷뱅킹 서비스 시작 2. 21. 아시아 수출입은행 공동 웹사이트 개설(www.asia-eca.org), 10개국 11개 기관 참여 2. 28. 대외경제협력기금 발전 대토론회 개최 3. 5. 영국수출신용보증국(ECGD)과 제3국 프로젝트 공동지원 협약 체결 3. 19. 슬로바키아 수출입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3. 27. 중소기업 앞 포괄수출금융제도를 중견기업까지 대상 확대 4. 1. 전행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4. 2. 트레이딩정책지침 제정(시장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4. 4. 수출신용관련 자문 서비스(ECAS) 업무 개시 4. 6. 기업신용평가시스템(제1기) 가동 4. 20. 이영희 제12대 은행장 취임 5. 25. 수출보험공사와 공동으로 OECD 환경심사설명회 개최 5. 28.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 시행 6. 13. 고객센터현장 제정 6. 29. 금강산 관광사업 대출승인 7. 11. 개도국 무역촉진 프로그램 전담작업반 구성 7. 16. 뇌물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지침 제정 8. 21.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대학(원)생 대상 글로벌 비즈니스 열린 강좌' 개최(용인 인제개발원)(~24.)

	국내외 연표	수출입은행 연표
2001	10. 18. 한국은행, 외화대출 대상제한 폐지 11. 10. 중국, WTO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 11. 13.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S&P(BBB→BBB+) 11. 14. WTO, 도하라운드 출범 결정 12. 22. 정부, 한·일 투자협정 협상 타결 12. 23. 아르헨티나, 1,320억 달러(국제 900억 달러 포함)에 대해 채무상환 일시중단 선언	8. 25. IBRD와 협조대출 기본협약 체결 8. 28. 외국환 규정 제정 8. 29. 조흥은행과 포괄적 업무 제휴협약 체결(개도국 신용장확인 및 보증관련) 9. 1. 건설공제조합과의 지급보증운용 협약 체결 9. 3. 개도국 수출환어음 매입 업무(포페이팅 업무) 개시 9. 12. 최초의 혼합신용으로 스리랑카 Galle광역시 상수도개발사업 지원(2,600만 달러 경협차관, 600만 달러 직접대출) 9. 13.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제1차 연례협의회 개최 11. 19. 도미니카공화국 차량수출지원 관련 직접대출/대외채무보증 승인(3,500만 달러) - 최초 대외채무보증/이자율지지
2002	1. 1. 금융감독위, 시장리스크 기준 BIS 자기자본 보유제도 시행 1. 1. EU, 자국화와 유로화 병용하기로 하고 유로화 통용 개시 2. 28. EU, 12개국 통화가 법정통화로서의 효력이 종료되고 유로화만 법정통화로 인정 3. 28. Moody's,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Baa2→A3) 4. 15. OECD, 선박수출신용양해 발효 6. 6. EU, 한국과의 조선업체 보조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제소할 것임을 밝힘 6. 27. Fitch,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BBB+→A) 7. 1. 재정경제부, 「제조물 책임법」 시행 7. 11. 러시아, 제정 러시아 이후 최초로 농지매매를 허용하는 「농지사유화법안」 승인 7. 24. S&P,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BBB+→A-) 8. 6. 미국,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촉진권한, 일명 신속처리권한 부여 9. 11. 스위스, UN에 190번째 정회원으로 가입 11. 15. 아르헨티나, 사실상 Default 선언 11. 22. 금융감독위,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인가 12. 13. EU, 체코·폴란드 등 10개국의 EU 가입 승인	12. 14. 환경심사에 관한 지침 제정 1. 22. 정부 현금출자(250억 원) 1. 28. 여신부문 본부제 및 팀제 도입(본점 5개 여신부서를 4개 여신본부로 개편 등) 1. 28. 고객지원팀 및 신용평가실 신설 1. 30. 정부 현금출자(250억 원) 4. 1. 스트럭처드 파이낸스 방식 선박직접대출제도 도입 4. 3. 본점 성능개선공사 착공식 5. 6. 포괄수출금융의 외화표시대출 시행 6. 25. 스트럭처드 파이낸스 방식 선박 직접대출 최초 지원 7. 1. 주 5일 근무제 시행 7. 16. 통화전환 및 환율상한부 대출제도 도입 9. 16. 대북 식량차관 제공(40만 톤)을 위한 차관계약 체결 9. 17. 동해선 철도 및 국도 7호선 연결사업 지원 9. 30.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 지원을 위한 자재장비 차관계약 체결 10. 21. EU, 한국 조선산업지원 제도를 WTO에 제소 11. 28. 모스크바사무소 개소 12. 24. 국별신용도 수시평가제도 도입 및 시행
2003	1. 1. 독일, 수출금융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문이 KfW로부터 분리되어 KfW IPEX Bank 로 출범 2. 25. 정부, 북핵문제 논의를 위한 '베이징 2차 6자 회담' 개최 결정 4. 1. 한·칠레 FTA 발효 4. 13. 재정경제부,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상 사모기업인수 펀드에 대한 규제 해제 결정 4. 25. 미국, 이라크 재건사업 설명을 위해 서울 등 6개 지역에서의 설명회 개최 계획 발표 5. 6. 정부, '임금피크제'를 공기업과 산하단체에 도입하도록 권고 6. 24. 바젤위원회, 신BIS협약 확정 8. 30. 이라크, 4개국 영석유기업 통합하여 국영 석유회사 신설계획 발표 9. 23. 정부,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대북투자자산을 담보로 인정 11. 3. 미국, 부시 재선 확정 11. 25. 금융감독원, 예상손실률을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도입 12. 1.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아시아 최초의 온실가스삭감기금에 1,000만 달러 출자 12. 8.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한국중소기업발행 채권담보부증권에 대한 보증 제공	1. 2. 외항선박금융제도 도입 3. 1. 수입자금 지원대상 품목 확대(항공기 등 첨단제품, LNG, LPG 등) 3. 17. IBRD차관 10억 7,800만 달러 조기 상환 3. 18. Bank Mellat 서울지점과 포페이팅 업무협력 약정 체결 3. 27. 동북아 허브로서의 성공 전략과 남북협력 금강산 심포지엄 개최(~29.) 4. 1. 전사포탈기반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가동 4. 8. 국가별 Total Exposure 한도 집중관리대상국 제도 시행 5. 23.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제정 6. 12. 제1차 대외 통합 마케팅 실시(사우디,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 (~24.) 6. 17. 본점 성능개선 공사 준공식 6. 23. 수출지원상당센터 개소 6. 29. 정부 현금출자(200억 원) 8. 6. 국외은행평가시스템 가동 9. 4. 신동규 제13대 은행장 취임 9. 8. 통일부로부터 남북한 간 청산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

8. 연표

	국내외 연표	수출입은행 연표
2003		10. 24. 대전출장소 지점 승격 11. 13. 멕시코시티사무소 개소 11. 20. 무역자동화시스템(EDI) 가동 12. 31. 정부 현금출자(200억 원) 12. 31. 대외경제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6년만에 재개(800억 원 출연)
2004	1. 17. 재정경제부, 방카슈랑스 도입방안 발표 2. 17. 검찰, SK글로벌과 SK해운의 분식회계 수사 발표 2. 26.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취임 3. 20.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 1차 공습 개시 4. 3.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한국은행, 신용카드사 및 투신사 유동성 문제해소를 위한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6. 22. 아시아 18개국, 아세안협력대회에서 아시아 채권시장 설립을 골자로 하는 「치앙마이 선언」 채택 6. 24. 재정경제부, 대러시아 경협차관 채무재조정협상 잠정타결 발표 7. 5. ASEM, 아시아채권기금 출범 합의 8. 14. 호주, EFIC 단기수출보험 사업부문을 네덜란드 민간보험회사인 GERLINGNCM에 매각 8. 22. 독일, KfW와 Dta 합병법을 통과 8. 25. WTO, DDA의 마지막 쟁점사항이던 의약품부분 협상 사실상 타결 9. 18. 러시아·CIS, 2010년까지 무역장벽 제거에 합의 12. 11. 재정경제부,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발표	1. 1. 대외경제협력기금 무상 사후관리지원비 제도 도입 1. 1. 연수 이수학점제 도입 1. 2. 2004 ~2006 중기경영 로드맵 수립 2. 5. 사후송금방식(Open Account: OA) 거래수출 환어음 매입 및 국외은행의 기한부 신용장(Usance L/C) 업무 취급 2. 9. 임원의 지점멘토제 실시 3. 2. 신 기업신용평가시스템 가동 3. 2. 국내 최초 '동북아 1호 선박투자회사(펀드)'에 4,000만 달러 지원 3. 15. IBRD 차관 잔액 9억 달러 전액 조기상환 3. 16. 수원지점 개점 5. 1. 2004 중소기업 파워업 프로그램 시행 5. 4. 수은지원 P/F사업, Trade Finance지의 2003년 최우수 금융거래에 선정 5. 14.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 시행 6. 16. Marine Money지 선정 2003년 최우수거래상 수상 6. 22. 상해사무소 개소 및 홍콩 현지법인 개점(6. 25.) 6. 25. 남북 청산결제 은행 간 합의서 체결(가서명) 6. 25. 유로머니지로부터 최우수 차입자로 선정 6. 30. 북한경제연구 학술지 <수은북한경제> 창간 7. 16. 대북 식량차관 제공(40만 톤)을 위한 차관계약 체결 8. 5. 그리리스크 총량관리제도 시행 8. 11. 뉴델리사무소 개소 8. 26.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최초 출자 실시(KSF 선박금융주식회사 앞 12억 7,000만 원 출자) 8. 27. 정부 현금출자(100억 원) 9. 23. 대북 경협사업 손실보조제도 시행 10. 4. 워싱턴사무소 개소 10. 5. 미국 수출입은행과 화물수송기 협조융자 기본협정 체결 12. 17. 보수체계 개편 : 임금피크제 및 직무가치 중심형 임금상한제 도입 12. 19. 외국환업무 본점 집중처리 개시 12. 21. IFR, Finance Asia, The Asset 등 3대 세계 금융전문지로부터 2004년도 최우수 차입기관으로 선정
2005	1. 1.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1. 1. 종합부동산세 시행 2. 3. 한·아세안 FTA 제1차 협상 2. 28. OECD, 원조효율 제고를 위한 High Level Forum 개최(파리선언 채택) 4. 4. 일본 정부, 우편저축과 보험사업의 민영화법안 확정 4. 9. 금융감독위원회,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제일은행 주식취득 승인 7. 1. 한국투자공사(KIC: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출범	1. 3. 2005 경영혁신 추진계획(Exim Spirit 21) 수립 1. 21. 수출팩토링제도 도입 2. 1. 중소기업 수출거래 무담보소액대출 제도 도입 3. 8. 울산지점 개점 3. 9. 청주지점 개점 3. 9. 글로벌 본드 발행(10억 달러) 3. 10. 전주지점 개점

	국내외 연표	수출입은행 연표
2005	7. 21. S&P,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A- →A) 8. 29. 미국, 초강력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루이지애나주와 미시시피주를 강타, 최악의 자연 재해로 엄청난 규모의 피해 입음 10. 24. Fitch,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A-→A+) 10. 24. 미국, FRB 의장으로 벤 버냉키 지명 10. 31. 서부텍사스 중질유 가격 사상 첫 70달러 돌파 11. 29. 일본정부, 국제협력은행의 국제금융업무 부문을 4개의 공적금융기관과 통합하기로 결정 12. 15. 정부, EFTA와 FTA 체결 서명	3. 16. 파리사무소 개소 4. 4. 정부 현금출자(100억 원) 4. 11. 한국, EU의 한국 조선산업 지원에 대한 WTO보조금 소송에서 승소 4. 19. 수은 나눔봉사단 발족 4. 25. 정부 현물출자(5,000억 원) 5. 1. 제1회 한·중·일 수출입은행장 회의 개최 5. 9.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사무소 개소 6. 1. 성과중심 경영체제 강화(은행장과 본부장 간 '2005년도 경영성과계약' 체결, 본부장과 소관 부점장간 2005년도 업무목표 협약 체결)(6. 15.) 6. 15. Marine Money지 선정 2004년 최우수거래상 수상 7. 1. 신 CI 선포 및 수출입은행 경영이념(EXIM WAY) 정립 9. 26. 정부 현금출자(100억 원) 10. 25. 1사1촌 결연(홍천군 동면 성수리) 10. 28.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개소(개성) 11. 21. 해외직접투자통계 정보시스템(ODISIS) 가동 12. 27. 중소기업금융지원 최우수 기관으로 대통령 표창 12. 28. 사우디 슈아이바 담수설비 프로젝트, PFI지로부터 '올해의 거래'에 선정
2006	1. 2. 대중국 수출비중 첫 20% 돌파 4. 26. 이란 핵 실험 재개, 국제 유가 급등 4. 28.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5. 12.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타결 7. 13. 이스라엘-레바논 전쟁 9. 20. 태국, 군부 쿠데타 발생 10. 9. 북한 핵실험 단행 10. 1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헌장 7조 의거 대북 제재 결의 12. 5. 사상 처음으로 수출규모 3,000억 달러 돌파 12. 2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이란 제재 결의 12. 30. 이라크, 사담 후세인 처형	2. 8. 글로벌 본드 10억 달러 규모 발행 3. 30. 스페인 Banco Santander와 포괄적 업무협약(Cooperation Agreement) 체결 4. 3. 미주투자공사(IIIC)와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4. 18. 수출전망지수 개발 4. 24. 제1차 KOAFEC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 개최(~30.) 7. 1. 창립 30주년 기념식 개최 7. 3. 자본금 증자(정부 현금출자 100억 원) 8. 28. 경영위원회, 확대여성위원회 도입 8. 29. 수출중소기업 해외물류센터 앞 반출지원자금 제도 도입 9. 11. 양천식 제14대 은행장 취임 10. 31. Moody's, 수은신용평가등급을 A3에서 Aa3로 3단계 상향 조정 11. 15. 해외자원개발금융 활성화 방안 도입
2007	1. 16. 북한-미국 베를린 회동(16.~18.) 4. 2. 한·미 FTA 타결 4. 2. 미국 2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회사 뉴센추리 파이낸셜 파산 신청 5. 6. 한·EU FTA 협상 공식 선언 7. 4. 시가총액 1,000조 원 돌파 7. 25.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 돌파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제정 10. 2.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평양에서 개최(2.~4.) 12. 11. 서브프라임 쇼크에 따라 코스피 80.19포인트(4.20%) 폭락 12. 12. 전체 펀드 설정액 300조 원 돌파	1. 4. 사우디 석유화학 프로젝트 금융지원거래, PFI誌 2006년도 석유화학 부문 최우수거래에 선정 2. 7. 수은, 해외광물자원융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 3. 30. ALM 체제 선진화 7. 4. 프·독·일 개발원조기관과 새로운 차관원조 지원방법 모색을 위한 공동선언 채택 7. 5. 자본금 증자(정부 현금출자 30억 원) 7. 12. 수은 최초로 자원개발 사업(광물 분야)에 대해 PF승인 8. 21. 최초 투스텝복합금융 한도계약 체결(인도 ICICI, 2억 달러) 9. 16. 2007년 한·중남미 무역 투자 포럼 (~18.) 10. 18. 대북 투자통계업무 시행 11. 26. 남북협력기금 출연(5,000만 원) 11. 29. 신ALM 시스템 구축 12. 12. 우즈벡사무소 개소

8. 연표

	국내외 연표	수출입은행 연표
2007		12. 21. 수은 최초로 자원개발사업(LNG 분야)에 대해 PF승인
2008	1. 2. 서부 텍사스 중질유 사상 처음으로 배럴 당 100달러 돌파 3. 3. 금융위원회 출범 3. 16. 미국, 베어스턴스 FRB중재로 주당 2달러에 JP모건체이스에 인수 5. 2. 미얀마, 서남부 사이클론 나르기스 강타로 13만 명 이상 사망·실종 6. 27. 북한,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발 9. 15. 리먼 브라더스 파산 신청,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발생 9. 29. 미국 최대 대부업체인 워싱턴 뮤추얼 파산, 미정부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 부결로 다우존스 공업지수 777.68포인트 하락 10. 24. 종합주가지수, 약 10%포인트(110.96포인트) 폭락 10. 30. 미국과 통화스왑 계약 체결(300억 달러) 12. 9. 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발표 12. 15. 태국, 반정부 시위대 농성 끝에 7년 6개월 만에 정권 교체 12. 15. 국토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결정	1. 16. The Asset誌로부터 '2007년도 최우수 차입기관'으로 선정 3. 24. 드릴십 수출 지원, 선박금융·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개발사업 지원자금 개발금융, Trade Finance誌 '2007년 올해의 거래'에 동시 선정 6. 2. ADB와 협조용자 양해각서 체결(25억 달러) 7. 11. Offtake Financing 지원제도 도입 7. 24. 진동수 제15대 은행장 취임 9. 30. 러시아 VEB 앞 전대금융 협력을 위한 MOU(10억 달러) 체결 및 전대자금 신용한도 공여계약(2억 달러) 체결 10. 27. 2008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컨퍼런스(KOAFEC) (~31.) 11. 4. 정부 외평기금(250억 달러) 수탁업무 개시 12. 6. 본점 체육실 이전공사 12. 18. 자본금 증자(정부 현물출자 6,500억 원) 12. 21. IFR Asia誌로부터 2008년도 최우수 외화차입기관 선정
2009	1. 20. 오바마 미 대통령 취임 2. 4.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2. 26. 정부, 우리나라 국채의 씨티 글로벌 국제지수(WGBI) 편입 추진 3. 12.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FSB) 가입 5. 8. 정부,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 발표 6. 11. WHO,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최고수준 경보 발령 6. 23. 한국은행, 5만 원권 발행 7. 7. 대한민국 및 미국에서 DDoS공격 발생 9. 2. Fitch,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 상향 9. 21. FTSE 선진국 지수 편입 10. 28.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로 분할돼 각각 출범 12. 27. UAE와 400억 달러 규모 원전 수주 확정	1. 2. 자본금 증자(정부 현금출자 400억 원) 1. 30. 자본금 증자(정부 현금출자 2,600억 원) 2. 13. 김동수 제16대 은행장 취임 3. 24. '수출중소기업 육성 500 프로젝트' 업무협약체결(전무이사) 3. 25. 자본금 증자(정부 현물출자 5,000억 원) 4. 1. 무역금융 리파이낸스 최초 집행 5. 11. 우즈벡 수르길 가스전 개발사업 관련 MOU 체결 5. 15. 자본금 증자(정부 현금출자 2,500억 원) 5. 28. '중소기업 수출촉진을 위한 시설확장·증설용 수출자금 제도' 도입 6. 30. 무역금융 리파이낸스 시행약정 체결 7. 16. 단기 전대금융 통합계약서 표준안 마련 8. 10. 직급 체계 축소 개편 9. 29. 탄소펀드 공식 출범(13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투자) 10. 20. 남북협력기금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0. 31.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기록관리 직접관리대상기관' 지정 11. 1.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1차 선정(12개 수출기업) 11. 25. OECD DAC 가입 12. 7. 해외자원개발 1호 펀드 500억 원 출자 승인
2010	1. 12. 아이티, 7.0 대지진 발생 3. 26. 천안함 피격 사건 발생 4. 16. 미 증권거래소(SEC) 골드만삭스 사기 혐의로 기소 4. 23. 그리스, EU와 IMF에 구제금융 요청 5. 24.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PF대출 전수조사 착수 8. 1. 한·페루 FTA 체결 8. 17. 미국, 이란 제재 본격 실시 10. 6. 한·EU FTA 협정문 서명 11. 11. 11.11 읍전 쇼크 발생 11. 23. 연평도 포격 사건 발생	1. 7. 프랑크푸르트사무소 폐쇄 1. 20.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계획 발표 1. 25. 노타이 복장 근무 시행 1. 28. 자본금 증자(정부 현금출자 1,500억 원) 2. 17. 멕시코 만자니요 LNG 인수기지 건설 및 운영 금융지원, PFI誌 '2009년도 올해의 거래'에 선정 4. 8. 한국국제개발통계(KIDS) 시스템 개발 5. 10. 두산중공업의 스코다파워 인수 관련 금융지원건, 트레이드 파이낸스로부터 '우수 거래(Deal of the Year)'로 선정 7. 1. 프로보노 봉사단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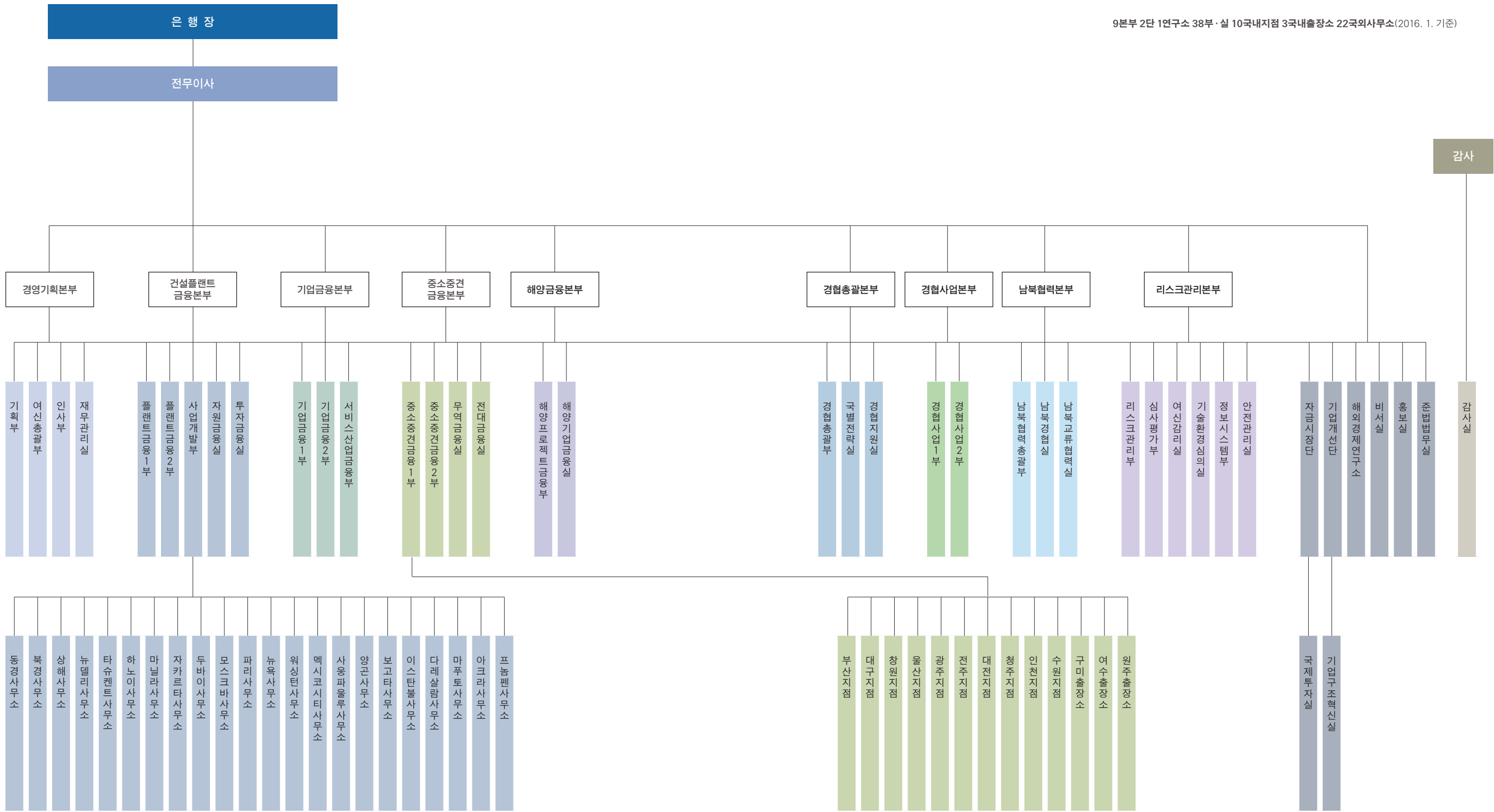
	국내외 연표	수출입은행 연표
2010	11. 24. 하나은행, 외환은행 인수 확정 12. 16. 정부, 은행부과금(은행세) 도입안 발표	7. 8. 수은, TFI誌 '최우수 아시아 수출신용기관', '중동지역 지원 최고 수출신용기관'에 선정 7. 15. <매장량기초금융 도입 TF 결과보고서> 발간 10. 25. 수은, ODA 통계전담기관 지정 11. 23. CGIF(역내신용보증투자기구)앞 출자 결정
2011	2. 7. 정부, 탄소배출권 거래 연기 2. 17. 금융위원회,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 단행 3. 11. 일본, 센다니 동북지역 9.0 강진 및 쓰나미 발생 4. 6. 포르투갈, EU에 구제금융 신청 8. 5. 미국 신용등급 강등(S&P, AAA→AA+) 및 그리스발 유럽 재정위기 심화 8. 21. 유로존, 그리스에 1,586억 유로 지원 합의 9. 7. 그리스 국가 부도 9. 8. 미국 오바마, 경기부양안 발표 10. 12. 미국, 유럽 은행들 신용등급 및 등급전망 무더기 강등 12. 5.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 돌파 12. 17. 김정일 사망, 증시 3.43% 하락	1. 24. 자본금 증자(정부 500억 원 현금출자) 1. 28. 우리다시본드 400억 엔 발행 2. 7. 김용환 제17대 은행장 취임 4. 25. K-IFRS 도입 실무추진반 개설 4. 29. 자본금 증자(한국정책금융공사 현물출자 1조 원) 5. 2. 우리 기업 최초의 투자개발형 해외 수력발전사업인 '파키스탄 파트린드(Patrind) 민자 수력발전사업'에 PF금융 1.1억 달러 지원 5. 4.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개소 6. 28. 한국계 기관 중 사상 최대 800억 엔 사무라이 본드 발행 6. 29. 마린머니로부터 Pacific Drilling社가 발주한 4척의 극심해용 시추선사업 금융지원 건으로 '올해의 거래(Deal of the Year)' 수상 7. 14. 금융자문실 신설 7. 14. 생방향 인사시스템 구축과 본부장 권한 확대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 10. 13. 마닐라사무소 개소 11. 7. 자본금 증자(정부 현금출자 500억 원) 12. 1. 수출중소기업의 상생 및 취약계층 위해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PaSS 프로그램 가동 12. 22. 자카르타사무소 개소 12. 29. 최초로 여성 직원(김경자)을 부사장(국제협력실장)에 임명
2012	1. 6. S&P, 프랑스 등 유로존 9개국 신용등급 강등 1. 31. 한국산업은행·기업은행 공공기관 지정 해제 2. 1. 한국 무역수지 24개월 만에 적자 2. 9.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타결 2. 14. Moody's, 스페인·이탈리아 등 6개국 신용등급 강등 6. 25. 스페인 1,000억 유로 규모 구제금융 공식 신청 6. 27. 영국 FAS 및 미국 SEC, Barclays에 LIBRO 조작 관련 벌금 부과 7. 1.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정부기관 이전 시작 7. 12.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3년 5개월 만에 금리 0.25% 인하 7. 25. 기재부, 30년물 국제발행방안 발표 9. 14. 국가신용도 사상 처음으로 S&P(9. 14., A+→A+), Moody's(8. 27., A1→Aa3), Fitch(9. 6., A+→AA-)로 3대 국제신용등급 기관에 의해 일제히 상승 11. 6. 미국 오바마 재선 성공, 재정절벽 협상 시작 12. 12. 북한, ICBM급 장거리 미사일 발사 12. 22. 싸이 '강남스타일' 유튜브 10억 뷰 돌파	1. 1. 사회공헌 희망씨앗 프로그램 마련 1. 5. 한국계 사상최대 규모인 22.5억 달러 글로벌본드 발행에 성공 1. 30. 한·남수단 공동 프로젝트 '올지마 톤즈' 본격 출범 3. 2. 본점 내 꿈누리 어린이집 개원 3. 14. 새터민청소년 그룹홈 '가족과 1사1가정 자매결연 3. 26. 우즈벡 수르길(Surgil) 가스전 개발사업에 10억 달러 제공 4. 9. 모로코 화력발전사업에 3억 5,000만 달러 제공(우리 금융회사가 아프리카에서 PF로 지원하는 최초의 발전 프로젝트) 5. 4. 자본금 증자(정부 현물출자 7,793억 원) 5. 15. GS건설 국내 최초 해외 물기업 스페인 이니마(Inima)社 인수 건에 1,800억 원 제공 5. 29. 한류수출 파급효과 분석 및 금융지원 방안 발표 7. 26. 퇴직연금제도 도입 7. 11. 이라크 비스마야(Bismayah) 신도시 건설사업에 11억 6,000만 달러 보증 9. 17. 자본금 증자(정부 현물출자 1,000억 원) 10. 30. 제1회 남북협력자문위원회 개최 11. 1. K-IFRS 시스템 가동 11. 14. LG CNS의 콜롬비아 보고타시 교통카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금융지원 (1.2억 달러)(국내 최초 ICT 분야 PF 금융지원) 12. 28. 본점 증축공사 기공식 12. 27. 준법지원팀 신설

8. 연표

	국내외 연표	수출입은행 연표
2013	1. 1. 中 베이징 최저임금 인상, 월 25만 200원 2. 12. 북한 3차 핵실험 단행 2. 21. 한국, 가계 빚 959조 사상 최고 3. 1. 미국, 오바마 대통령 자동긴축(시세스터) 명령 서명 3. 14.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 리커창 총리 5세대 지도부 공식 출범 3. 29. 국민행복기금 출범 4. 8. 개성공단 운영 잠정 중단 6. 3. 한·중 통화스와프 3년 연장 합의 6. 10. 스노든 미국 CIA와 NSA 도청 폭로 6. 20. 미국, 양적완화 연내 축소 발표, 미국·유럽·아시아 증시 동반 급락 7. 13. 프랑스, 신용등급 AAA 모두 상실 9. 30.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동양인터내셔널 법정관리 신청(~10. 1.) 10. 1.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16.) 10. 30. 5대 증권사, 한국형 투자은행 지칭 11. 9. 필리핀, 중부 타클로반에 태풍 하이옌에 따른 대규모 피해 12. 4. 비트코인 거래 가격 1,200달러로 급등 12. 12. 북한, 장성택 노동당 전 행정부장 처형 12. 17. 독일, 메르켈 차기 정부를 이끌 3선 총리로 선출 12. 18. 미국 FRB,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도입	1. 1. 기록관리 제도 도입 1. 4. PF誌, 당행 '2012년 최우수 ECA·국제기구'에 선정, 터키 유라시아 해저터널사업 등 4건 '올해의 프로젝트상'에 선정 1. 31. 자본금 증자(정부 현금출자 200억 원) 2. 28. 중소·중견기업 앞 상생협력대출 도입 2. 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간 20억 원 후원기로 약정 체결 3. 10. EDCF 해외인턴 22명 개발도상국 7곳에 파견 4. 5. 외항선박 운항자금 도입 4. 10.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긴급 금융지원 5. 24. 수은 최초 Offtake Financing인 사빈팩스 LNG PF 승인 7. 4. 트레이드 파이낸스 매거진(TFM)으로부터 '2013년 최우수 아시아-태평양 수출신용기관'으로 선정 7. 11. 자본금 증자(정부 현금출자 800억 원) 8. 20. 원주·구미·여수 출장소 개소 8. 8.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경협보험금 지급 개시 8. 9. 국내 최초로 IP수출자금 제도 도입 및 금융지원 개시 8. 13. 공적개발원조 통계집《숫자로 보는 ODA》발간 9. 10. 베트남 교통부와 ‘탄번-연짜 도로건설사업’ EDCF 지원 MOU 체결 9. 30. 선박채권보증 세계 최초 도입(국내 조선사의 선박을 발주한 美 선사에 선박채권보증 포함, 총 3억 달러 제공) 11. 12. 제1회 EDCF 자문위원회 개최 12. 31.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 설립
2014	3. 18.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 4. 1.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 4. 16. 세월호 참사 5. 22. 태국 쿠데타 발생 8. 8. 美, 오바마 IS에 대한 공습 승인 9. 19. 스코틀랜드 독립 찬반 투표, 반대 55%로 독립 부결 10. 29. 미국 양적완화 종료 선언 11. 10. 한·중 FTA 타결 11. 25. 삼성그룹-한화 그룹 빅딜, 삼성테크윈, 삼성토탈, 삼성정유화학, 삼성탈레스 매각 12. 16. 국제유가 급락(6월 배럴당 100달러→12월 56.5달러) 12. 18.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1. 13. The Asset誌로부터 '2013년 아태지역 최우수 조달기관', '2013년 아태지역 최우수 국제기관', '한국 최우수 채권 발행'으로 선정 1. 20. 양곤사무소 개소식 1. 21. 「수출입은행법」 개정 1. 29. 자본금 증자(정부 현금출자 1,300억 원) 3. 6. 이덕훈 제18대 은행장 취임 4. 14. 보고타사무소 개소 4. 15. 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개소 4. 17.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 설립 4. 30. 이스탄불사무소 개소 6. 1. 세계국가편람 '모바일 앱' 출시 6. 26. 투자금융실 신설 7. 1. 본점 층층공사 준공식 7. 15. 자본금 증자(정부 현금출자 3,800억 원) 9. 29. 해양금융종합센터 이전 10. 1. 수은 최초 직접투자 승인 12. 8. 수은 에코설펀드 출시(파일럿 프로젝트 승인 2015. 3. 4. - 현대상선, 대한해운 건) 12. 22. 해양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최초 지원 12. 23. 보령LNG 수입터미널 건설 PF 승인 12. 31. 정책금융공사 대외정책금융 인력 기관

	국내외 연표	수출입은행 연표
2015	4. 25. 네팔 대지진 발생	1. 2. 서비스산업금융부 신설
	5. 20. 매르스 최초 확진환자 발생	1. 30. 자본금 증자(정부 현금출자 400억 원)
	7. 14. 이란핵협상 타결	3. 17. 다레살람 사무소 개소
	7. 20.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3. 19. 마푸토 사무소 개소
	9. 18.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파문으로 독일 증시 급락	3. 20. 수은 최초로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임상자금 지원
	10. 5.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3. 20. 모잠비크,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에 첫 사무소 개소
	11. 8.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압승	3. 26. IDB 한국총회(~29)
	11. 13. 파리 테러 발생	3. 30. 종합수지관리시스템 가동
	11. 15. 소득이전을 통한 세율잠식(BEPS)에 대한 대응방안 G20 정상회의 최종 승인(~16.)	5. 15. 최초 PPP사업 지원
	12. 1. 중국 위안화 IMF 기록통화로 편입	5. 28. 가나 아크라 사무소 개소
	12. 12. 파리 기후변화협정 체결	6. 24. 수은 출자 한국해양보증(주) 설립
	12. 16. 미국 9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7. 2. 리스크관리단을 리스크관리본부로 확대·개편
		8. 5.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기금지원
		9. 1. 수은-삼성중공업 성동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경영협력협약 체결
		11. 3. 투르크메니스탄 정유설비 현대화 사업에 대출 2억 달러 및 보증 2억 달러 제공
		11. 10. 사업수익성 심사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지원센터 및 해양금융종합센터 확대·개편
		12. 24. 수은-코이카 '협업 강화'를 위한 이행계획'을 공동 발표, 유무상 통합 원조전략 시동
		12. 31. 자본금 증자(정부 현물출자 1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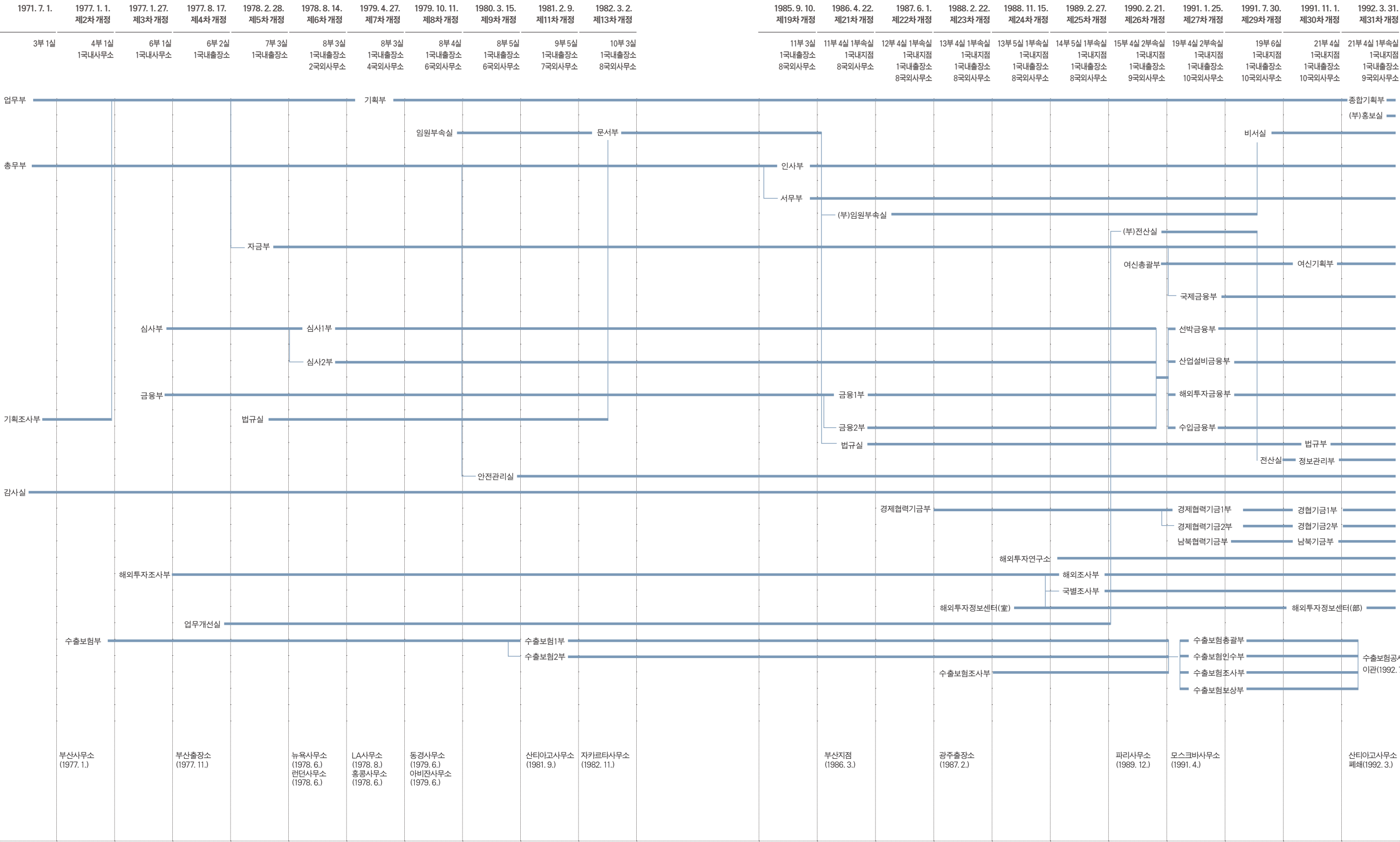
9.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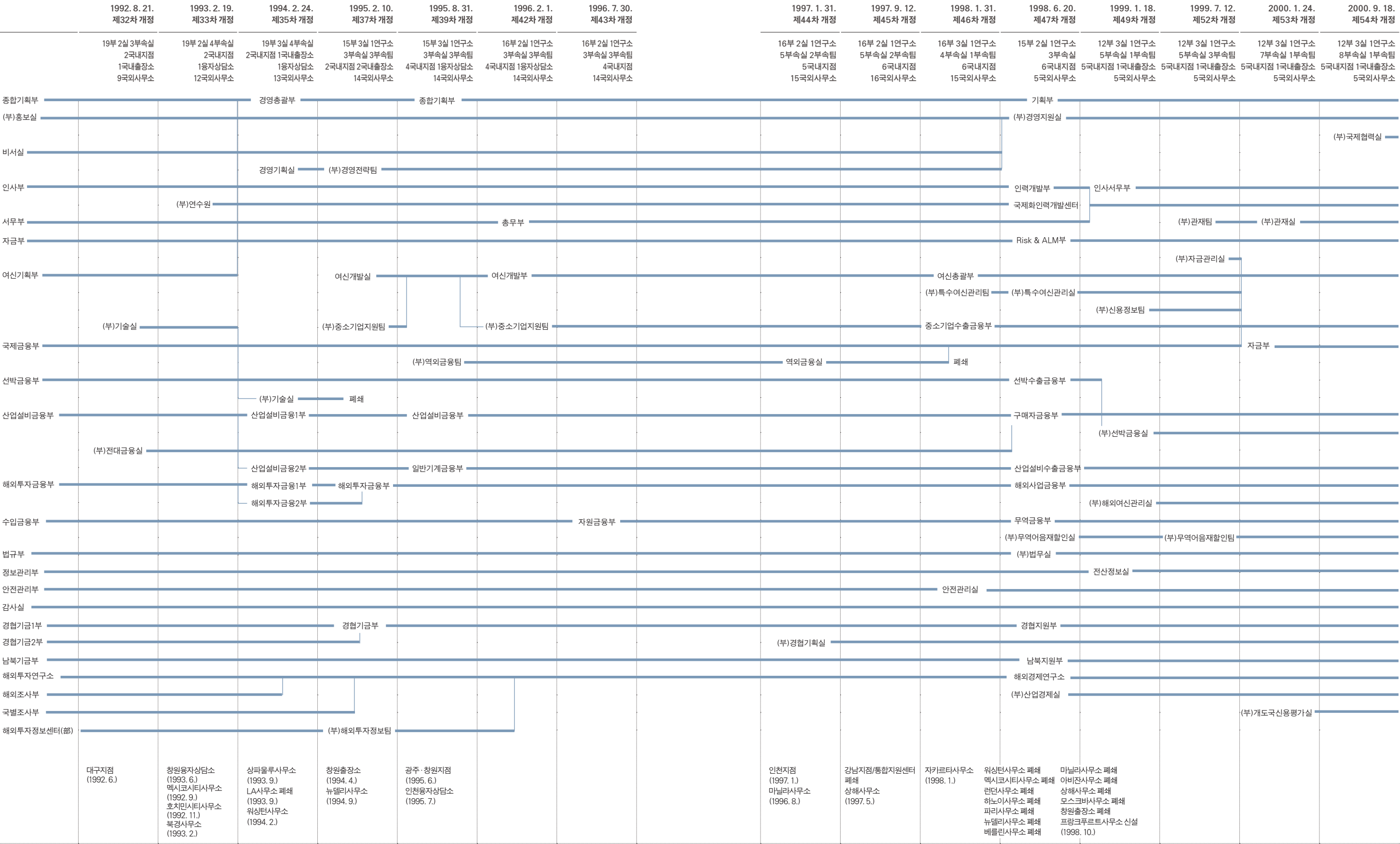
10. 국내영업점, 해외사무소 및 해외현지법인

본점	출장소	해외사무소	해외현지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Tel : 02-3779-6114 Fax : 02-784-1030	구미출장소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 센터 4층 Tel : 054-462-7103 Fax : 054-462-7105	동경사무소 Rm. 1904. 19F Hibiya Daibiru, 1-2-2 Uchisaiwaicho, Chiyoda- ku, Tokyo, 100-0011, Japan Tel : 070-7525-1051	자카르타사무소 Plaza Bapindo, Menara Mandiri Lt. 16, Jl. Jenderal Sudirman Kav. 54-55, Jakarta Selatan, Indonesia Tel : 62-(0)21-2995-0120	양곤사무소 17th Floor, Sakura Tower, 339 Bogyoke Aung San Road, Kyautada Township, Yangon, Myanmar Tel : 95-1-255-326	수은영국은행 3rd Floor Moorgate Hall 155 Moorgate London EC2M 6XB United Kingdom Tel : 070-7525-1066
지점		북경사무소 Office A2901, Beijing Posco center, 13 Hongtai East street, Wangjing,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Tel : 070-7525-0856	두바이사무소 P.O. Box 482038, 4th Fl., West Wing The Gate Building, DIFC, Dubai, UAE Tel : 070-7945-1792	보고타사무소 Torre Saungsung 14Fl., Carrera. 7, No. 113-43 office 1407, Bogota, Colombia Tel : 070-7525-1072	수은인니금융 Menara Mulia Tower Suite 2007 Jl, Jend Gatot Subroto Kav. 9-11, Jakarta 12930, Indonesia Tel : 62-21-525-7261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21 NH투자증권빌딩 6층 Tel : 051-817-5050 Fax : 051-817-6060	여수출장소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55 여수상공 회의소빌딩 4층 Tel : 061-643-7714 Fax : 061-643-7716	상해사무소 Room 1203 Aetna Tower, No.107, Zunyi Road, Shanghai, 200051, China Tel : 070-7525-1054	모스크바사무소 Office Building 1704A, World Trade Center Entr.3, 12 Krasnopresnenskaya Nab., 123610, Moscow, Russia Tel : 070-7001-0846	이스탄불사무소 Noramin IS Merkezi 3kat., D303, No.237 Buyukdere Cad., Maslak, Istanbul, Turkey Tel : 90-212-286-5224	수은 베트남리스금융회사 9th Floor, Diamond Plaza bldg., 34 Le Duat Street,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 070-7525-2182
창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 5층 Tel : 055-287-6830 Fax : 055-287-6831	원주출장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0 금정타워 5층 Tel : 033-748-0536 Fax : 033-748-0538	뉴델리사무소 901, 9th Floor, Eros Corporate Tower, Nehru Place, New Delhi-110019, India Tel : 070-7525-1056	파리사무소 36 Avenue Hoche, 75008 Paris, France Tel : 33-1-4421-8314	다레살람사무소 P.O. Box 13681, office no 602, 6th floor, IT Plaza, Ohio Street, City Center, Dar es Salaam, Tanzania Tel : 070-7945-1793	수은 아주금융유한공사 Unit 1805&07, 18/F, Central Plaza, 18 Harbour Road, Wanchai, Hong Kong Tel : 852-2810-0182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97 유안타증권빌딩 4층 Tel : 052-274-6157 Fax : 052-274-5278		타슈켄트사무소 14C-04,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107-B, Amir Temur Street, Tashkent 100084, Uzbekistan Tel : 998-71-238-9288 Fax : 998-71-238-9218	뉴욕사무소 460 Park Ave. 8th Fl., New York, NY 10022, U.S.A. Tel : 070-7525-1061	마푸토사무소 Av. Tomas Ndnda, 1214 Polana Cimento, Maputo, Mozambique Tel : 070-7525-1071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스탠다드차타드은행빌딩 7층 Tel : 062-232-6944 Fax : 062-232-6946		하노이사무소 8th Floor,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r., Ba Dinh Dist., Hanoi, Vietnam Tel : 070-7003-9000	워싱턴사무소 1300 L St, N.W. Suite 825, Washington D.C. 20005, U.S.A. Tel : 070-4725-5839	아크라사무소 P.O. Box CT11218, 1st Floor, Gulf House, Adamafio Crescent, Accra, Ghana Tel : 233-547-176-833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대한교원공제회관빌딩 10층 Tel : 063-271-6134~8 Fax : 063-271-6139			멕시코시티사무소 Hamburgo 213, Torre Summa, piso 12, Col. Juarez, Del. Cuauhtemoc, C.P. 06600, Mexico D.F., Mexico Tel : 070-4725-2699	프놈펜사무소 Phnom Penh Tower, 5F, #445, 232/93 (Monivong Blvd), Phnom Penh, Cambodia Tel : 855-23-999-561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16층 Tel : 042-489-9715 Fax : 042-489-9716		마닐라사무소 10/F Pacific Star Building, Sen. Gil Puyat Corner Makati Avenues 1200, Makati City, Philippines Tel : 070-7525-1057	사오파울루사무소 CJ 38, Horizonte office, Av. Presidente Juscelino Kubitschek, 1545, Vila Nova Conceicao/Itaim Bibi, Sao Paulo, SP, Brazil Tel : 070-7525-1063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 지방기업진흥원 6층 Tel : 043-237-0475 Fax : 043-237-0476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5 시티은행 인천본부빌딩 15층 Tel : 032-235-6114 Fax : 032-442-6121					
수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층 Tel : 031-259-6600 Fax : 031-259-6609					

11. 조직변화 추이



11. 조직변화 추이



11. 조직변화 추이

	2001. 2. 27. 제55차 개정	2001. 6. 27. 제56차 개정	2002. 1. 28. 제57차 개정	2002. 5. 22. 제58차 개정	2003. 2. 10. 제59차 개정	2004. 1. 26. 제60차 개정	2004. 7. 26. 제61차 개정		2005. 5. 20. 제63차 개정	2005. 10. 11. 제65차 개정	2006. 7. 6. 제66차 개정	2007. 1. 11. 제67차 개정	2007. 7. 6. 제68차 개정	2007. 12. 28. 제69차 개정	2009. 1. 6. 제70차 개정	2009. 8. 10. 제71차 개정
	12부 3실 1연구소 7부속실 3부속팀 5국내지점 2국내출장소 6국외사무소	12부 3실 1연구소 9부속 실 4부속팀 6국내지점 1국내출장소 6국외사무소	4본부 7부 3실 1연구소 6국내지점 1국내출장소 6국외사무소	4본부 8부 3실 1연구소 6국내지점 1국내출장소 6국외사무소	4본부 8부 3실 1연구소 6국내지점 1국내출장소 7국외사무소	5본부 10부 10실 1연구소 8국내지점 8국외사무소	5본부 10부 11실 1연구소 8국내지점 8국외사무소		7본부 11부 13실 1연구소 11국내지점 12국외사무소	7본부 12부 12실 1연구소 11국내지점 12국외사무소	7본부 12부 14실 1연구소 11국내지점 12국외사무소	7본부 13부 14실 1연구소 11국내지점 12국외사무소	7본부 13부 14실 1연구소 11국내지점 12국외사무소	7본부 13부 14실 1연구소 11국내지점 13국외사무소	7본부 16부 6실 1단 1연구소 10국내지점 12국외사무소	7본부 16부 6실 1단 1연구소 10국내지점 12국외사무소
기획부																
(부)경영지원실		(부)홍보실														
(부)국제협력실		비서실													경영지원부	
												(부)경영전략실				
인사서무부			인사부													
국제화인력개발센터						(부)연수원	인력개발원									
(부)관재실					(부)관리지원실											
Risk & ALM부			리스크관리부													
			(부)신용평가실									신용평가실			(부)신용평가실	
여신총괄부																
(부)특수여신관리실																
							(부)기술지원실			(부)기술심의실						
중소기업수출금융부			중소기업금융본부						중소기업금융부						중소기업지원단	
															(부)중소금융1실	
															(부)중소금융2실	
자금부					(부)국제투자금융실	국제금융부										
									(부)국제협력실	국제협력실					(부)국제협력실	
구매자금용부			연불수출금융부		연불금융부		프로젝트금융부									
														(부)신성장산업금융실	녹색성장금융부	
(부)선박금융실			(부)선박수출금융실		(부)선박금융실	선박금융부										
산업설비금융부						전대금융실	은행전대실		전대금융실							
해외사업금융부			해외투자금융본부			해외투자금융부										
(부)해외여신관리실	해외리스크전략팀											(부)자원개발금융실	자원개발금융실	자원개발금융부		
무역금융부			무역금융부			무역금융부				일반수출금융부				기업금융부		
				외환업무실		외환업무실				무역금융부					무역금융부	
					(부)수입금융실											
법무실															(부)법무실	
전산정보실													전산정보부			
안전관리실																
감사실																
													경협개발실			경협지원실
경협지원부			경제협력기금부	경제협력기금1부	경제협력1부	경협1실			경협기획실				경협사업1실		경협사업부	
(부)경협기획실				경제협력기금2부	경제협력2부	경협2실							경협사업2실			
남북지원부			남북협력기금부		남북협력부	남북협력1실			협력기획실			남북협력기획실				
					(부)남북교류지원실	남북협력2실									남북협력사업부	
해외경제연구소																
(부)산업경제실					(부)지식경제실								(부)산업투자조사실			
(부)개도국신용평가실			(부)국별조사실													
	대전출장소(2001. 5.) 홍콩사무소(2000. 12.)	창원지점(2001. 6.)			모스크바사무소 (2002. 11.)	대전지점(2003. 10.) 수원지점(2004. 3.) 멕시코시티사무소(2003. 11.)			울산지점(2005. 3.) 워싱턴사무소(2004. 10.) 청주지점(2005. 3.) 뉴델리사무소(2004. 8.) 전주지점(2005. 3.) 파리사무소(2005. 3.) 두바이사무소(2005. 5.)					타슈켄트사무소 (2007. 12.)	강남지점 폐쇄 프랑크푸르트사무소 폐쇄	

11. 조직변화 추이

[illegible]

12. 역대 임원

	직위	성명	취임연월일	퇴임연월일
은행장		송인상	1976. 5. 12.	1979. 5. 11.
		양윤세	1979. 5. 14.	1979. 12. 13.
		이태호	1980. 1. 7.	1983. 1. 6.
		박성상	1983. 1. 27.	1986. 1. 12.
		류돈우	1986. 1. 13.	1987. 6. 25.
		황창기	1987. 6. 26.	1990. 3. 27.
		홍재형	1990. 3. 28.	1991. 6. 4.
		이광수	1991. 6. 5.	1993. 3. 31.
		김영빈	1993. 4. 1.	1994. 10. 1.
		문현상	1994. 10. 2.	1998. 4. 19.
		양만기	1998. 4. 20.	2001. 4. 19.
		이영희	2001. 4. 20.	2003. 9. 3.
		신동규	2003. 9. 4.	2006. 9. 3.
		양천식	2006. 9. 11.	2008. 7. 17.
		진동수	2008. 7. 18.	2009. 1. 19.
		김동수	2009. 2. 13.	2011. 1. 2.
		김용환	2011. 2. 7.	2014. 2. 6.
		이덕훈	2014. 3. 6.	2017. 3. 5.
전무이사		이태호	1977. 5. 12.	1980. 1. 6.
		김 건	1980. 1. 8.	1980. 7. 30.
		하국환	1980. 8. 1.	1983. 7. 31.
			1983. 8. 1.	1985. 9. 18.
		성육기	1985. 9. 19.	1988. 9. 18.
			1988. 9. 19.	1991. 2. 25.
		이학성	1991. 2. 25.	1993. 5. 19.
		권승우	1993. 5. 20.	1996. 5. 19.
		이선희	1996. 5. 20.	1999. 5. 19.
		정문모	1999. 5. 20.	2002. 5. 19.
		이 규	2002. 5. 20.	2005. 3. 31.
		김진호	2005. 4. 1.	2007. 10. 2.
		김정준	2007. 10. 3.	2009. 7. 17.
		박동수	2009. 12. 29.	2012. 12. 28.
		남기섭	2013. 1. 9.	2015. 4. 6.
		홍영표	2015. 5. 15.	2018. 5. 14.
		박우규	2010. 2. 1.	2013. 1. 31.
		최승호	2010. 2. 1.	2013. 1. 31.
사외이사		오성익	2013. 11. 29.	2016. 11. 28.
		안영률	2013. 11. 29.	2016. 11. 28.

	직위	성명	취임연월일	퇴임연월일
감사		박정재	1976. 6. 1.	1978. 5. 1.
		김 건	1978. 5. 1.	1980. 1. 7.
		김종섭	1980. 1. 8.	1980. 7. 19.
		전석두	1980. 8. 20.	1982. 8. 19.
			1982. 8. 20.	1984. 8. 19.
		송무섭	1984. 10. 2.	1986. 10. 1.
			1986. 10. 2.	1988. 10. 1.
		박경동	1988. 10. 2.	1989. 4. 11.
		이학성	1989. 4. 11.	1990. 5. 12.
		장현규	1990. 5. 12.	1992. 5. 11.
		권승우	1992. 6. 20.	1993. 5. 19.
		박창래	1993. 5. 24.	1996. 5. 23.
			1996. 5. 24.	1997. 3. 5.
		지용기	1997. 3. 15.	1999. 3. 14.
			1999. 3. 15.	2002. 3. 14.
		신일성	2002. 3. 26.	2005. 3. 25.
		최정상	2005. 4. 13.	2008. 4. 12.
		이대우	2008. 4. 13.	2011. 4. 12.
이사		배선영	2011. 4. 13.	2014. 4. 12.
		공명재	2014. 8. 29.	2017. 8. 28.
		이태호	1976. 6. 1.	1977. 5. 11.
		원유민	1976. 6. 1.	1979. 5. 31.
		전석두	1977. 2. 3.	1980. 2. 2.
		이홍준	1977. 5. 12.	1980. 5. 11.
		최종악	1979. 5. 7.	1982. 5. 6.
		원유민	1979. 6. 1.	1980. 7. 19.
		전석두	1980. 2. 3.	1980. 8. 19.
		이홍준	1980. 5. 12.	1983. 5. 11.
		정훈목	1980. 7. 7.	1981. 6. 20.
		성육기	1980. 8. 20.	1983. 8. 19.
		박병식	1980. 8. 20.	1983. 8. 19.
		선우윤	1981. 8. 13.	1984. 8. 12.
		최종악	1982. 5. 8.	1985. 5. 7.
		박경동	1983. 6. 30.	1986. 6. 29.
		성육기	1983. 8. 20.	1985. 9. 18.
		박병식	1983. 8. 20.	1986. 8. 19.
		선우윤	1984. 8. 14.	1987. 8. 13.
		이종환	1985. 5. 8.	1988. 5. 7.

	직위	성명	취임연월일	퇴임연월일
		이정녕	1985. 10. 2.	1988. 10. 1.
		박경동	1986. 6. 30.	1988. 10. 1.
		이찬구	1986. 8. 20.	1989. 8. 19.
		김택	1987. 8. 14.	1990. 8. 13.
		이종환	1988. 5. 8.	1991. 5. 7.
		이정녕	1988. 10. 2.	1990. 5. 12.
		박춘의	1988. 10. 2.	1991. 10. 1.
		이찬구	1989. 8. 20.	1992. 8. 19.
		김택	1990. 8. 14.	1993. 5. 19.
		채홍식	1991. 2. 25.	1994. 2. 24.
		이선희	1991. 5. 8.	1994. 5. 7.
		박춘의	1991. 10. 2.	1993. 5. 19.
		정병무	1992. 8. 20.	1995. 8. 19.
		진중원	1993. 5. 20.	1996. 5. 19.
		전중배	1993. 5. 20.	1996. 5. 19.
		채홍식	1994. 2. 25.	1997. 2. 24.
		이선희	1994. 5. 8.	1996. 5. 19.
		김성용	1995. 8. 20.	1998. 8. 19.
이사		강말이	1996. 5. 20.	1998. 11. 2.
		최성룡	1996. 5. 20.	1999. 5. 19.
		정문모	1996. 5. 20.	1999. 5. 19.
		황창익	1997. 2. 25.	2000. 1. 8.
		신현철	1999. 4. 9.	2002. 4. 8.
		윤기학	1999. 5. 20.	2002. 5. 19.
		김성규	1999. 5. 20.	2002. 5. 19.
		이 규	2000. 1. 8.	2002. 5. 19.
		김진호	2002. 4. 9.	2005. 3. 31.
		김태희	2002. 5. 20.	2005. 5. 19.
		조상균	2002. 5. 20.	2005. 5. 19.
		김동관	2002. 5. 20.	2005. 5. 19.
		신중억	2003. 12. 22.	2006. 12. 21.
		김정준	2005. 4. 1.	2007. 10. 2.
		홍성육	2005. 5. 20.	2007. 11. 19.
		정태성	2005. 5. 20.	2008. 8. 26.
		최용안	2005. 5. 20.	2008. 8. 26.
		최정하	2006. 12. 29.	2009. 12. 28.
		권두환	2007. 10. 3.	2009. 7. 17.
		이평구	2007. 11. 20.	2009. 7. 17.

	직위	성명	취임연월일	퇴임연월일
이사		박동수	2008. 8. 27.	2009. 12. 28.
		김진경	2008. 8. 27.	2009. 12. 28.
			2008. 8. 27.	2011. 8. 26.
		남기섭	2011. 8. 27.	2013. 1. 8.
		심 섭	2012. 6. 29.	2015. 6. 28.
		설영환	2013. 1. 9.	2016. 1. 8.
		최성환	2015. 7. 1.	2018. 6. 30.
		김성택	2015. 7. 1.	2018. 6. 30.
		이평구	2009. 7. 18.	2010. 12. 31.
		이재민	2009. 7. 18.	2011. 7. 17.
본부장 (부행장)		남기섭	2009. 7. 18.	2011. 8. 26.
		최영환	2009. 7. 18.	2011. 7. 17.
		장정수	2009. 12. 29.	2012. 6. 28.
		노성관	2009. 12. 29.	2012. 6. 28.
		김윤영	2009. 12. 29.	2012. 9. 27.
		심 섭	2011. 1. 1.	2012. 6. 28.
		설영환	2011. 7. 18.	2013. 1. 8.
		박일동	2011. 7. 18.	2014. 6. 30.
		변상완	2011. 7. 18.	2012. 12. 31.
		홍영표	2012. 6. 29.	2015. 6. 28.
		장만익	2012. 6. 29.	2014. 12. 31.
		최성환	2012. 9. 28.	2015. 9. 27.
		임성혁	2013. 1. 9.	2015. 1. 8.
		민홍식	2013. 1. 9.	2015. 1. 8.
		김성택	2014. 6. 26.	2016. 6. 25.
		최성영	2014. 9. 29.	2016. 9. 28.
		문준식	2015. 1. 2.	2017. 1. 2.
		강승중	2015. 7. 3.	2017. 7. 2.
		신덕용	2015. 7. 3.	2017. 7. 2.
		김영수	2015. 7. 3.	2017. 7. 2.
		조규열	2016. 1. 11.	2018. 1. 10.
		장영훈	2016. 1. 11.	2018. 1. 10.

13. 역대 운영위원

소속	직위	성명	활동기간
경제기획원	기획차관보	서석준	1976~1978
	기획차관보	강경식	1978~1982
	기획차관보	하동선	1982~1983
	차관보	정영익	1983~1983
	차관보	진 념	1983~1988
	차관보	박유광	1988~1989
	차관보	김인호	1989~1990
	차관보	강봉균	1990~1995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	신명호	1995~1996
	제2차관보	엄낙용	1996~1997
	제2차관보	정덕구	1997~1998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윤진식	1998~1998
	기획관리실장	김호식	1998~1999
	기획관리실장	이영희	1999~2001
	국제업무정책관	김용덕	2001~2003
	국제업무정책관	권태신	2003~2004
	국제업무정책관	진동수	2004~2005
	국제업무정책관	김성진	2005~2007
	국제업무정책관	허경욱	2007~2008
외무부	경제차관보	최호중	1977~1978
	경제차관보	신동원	1978~1980
	제2차관보	이창수	1980~1982
	제2차관보	주병국	1982~1983
	제2차관보	신정섭	1983~1984
	제2차관보	윤억섭	1984~1985
	제2차관보	류종하	1985~1987
	제2차관보	홍순영	1987~1990
	제2차관보	이기주	1990~1992
	제2차관보	허 승	1992~1993
	제2차관보	선준영	1993~1996
	제2차관보	최대화	1996~1996
	제2차관보	홍정표	1996~1998
	차관보	최성홍	1998~1999
	통상교섭조정관	정의용	1999~2001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최 혁	2001~2002
	통상교섭조정관	김광동	2002~2003
	통상교섭조정관	김현중	2003~2004
	통상교섭조정관	정우성	2004~2004
	통상교섭조정관	홍종기	2004~2005
	통상교섭조정관	김종근	2005~2006
	통상교섭조정관	조태열	2007~2008
	통상교섭조정관	안호영	2008~2010
	통상교섭조정관	이시형	2011~2013
	통상교섭조정관	이시형	2011~2013
재무부	재정차관보	고병우	1976~1977
	재정차관보	이용만	1977~1978
	국제금융차관보	정인용	1978~1980
	국제금융차관보	주병국	1980~1982
	기획관리실장	주병국	1982~1982
	기획관리실장	권태원	1982~1984
	제1차관보	이형구	1984~1986
	제1차관보	이동호	1986~1987
	기획관리실장	홍재형	1987~1988
	제1차관보	홍재형	1988~1989
	제1차관보	홍재형	1988~1989
	제1차관보	홍재형	1988~1989
	제1차관보	홍재형	1988~1989

소속	직위	성명	활동기간
상공부	기획관리실장	이용성	1989~1991
	기획관리실장	이환균	1991~1992
	제2차관보	이환균	1992~1992
	제2차관보	박종석	1992~1993
	제2차관보	임창열	1993~1994
	제2차관보	신명호	1994~1995
	상역차관보	박필수	1976~1980
	상역차관보	김선길	1980~1980
	상역차관보	홍성좌	1980~1982
	제1차관보	차수명	1982~1984
	제1차관보	김철수	1984~1990
	제1차관보	신국환	1990~1991
	제1차관보	류득환	1991~1992
	제1차관보	채재익	1992~1993
	제1차관보	박운서	1993~1994
통상산업부	제1차관보	장석환	1994~1994
	통상무역실장	한덕수	1994~1997
	통상무역실장	노영욱	1997~1997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실장	오강현	1997~1998
	무역정책실장	오영교	1998~1999
	무역투자실장	조환익	1999~2000
	무역투자실장	정장섭	2000~2001
	무역투자실장	김철두	2001~2002
	무역투자실장	김재현	2002~2003
	무역투자실장	박봉규	2003~2004
	무역투자실장	이계형	2004~2005
	무역투자실장	이재훈	2005~2006
	무역투자실장	정준석	2006~2006
	무역투자정책본부장	이승훈	2006~2007
	무역투자정책본부장	홍석우	2007~2008
한국은행	이사	김 건	1976~1977
	이사	추인석	1977~1978
	이사	정영모	1978~1980
	이사	고광식	1980~1981
	이사	전영수	1981~1982
	이사	장현규	1982~1983
	이사	이영수	1983~1989
	이사	이상호	1984~1987
	이사	이영수	1987~1988
	이사	이창규	1988~1989
	이사	류시열	1989~1990
	이사	이창규	1990~1992
	이사	허한도	1992~1993
	이사	이경재	1993~1994
	이사	심 훈	1994~1997
한국무역협회	부총재보	이강남	1997~1998
	부총재보	윤귀섭	1998~1999
	부총재보	이강남	1999~2001
	부총재보	강형문	2001~2003
	부총재보	이상현	2003~2004
	부총재보	김수명	2004~2006
	부총재보	윤한근	2006~2009
	부총재보	이광준	2009~2012
	부총재보	이광준	2009~2012
	부총재보	이광준	2009~2012
	부총재보	이광준	2009~2012
	부총재보	이광준	2009~2012
	부총재보	이광준	2009~2012
	부총재보	이광준	2009~2012
	부총재보	이광준	2009~2012

소속	직위	성명	활동기간
한국외환은행	부총재보	강태수	2012~2014
	부총재보	허재성	2014~
	전무이사	홍완모	1976~1977
	전무이사	이필선	1977~1979
	전무이사	정현준	1979~1980
	이사	김원돈	1980~1981
	이사	전두표	1981~1982
	이사	조택영	1982~1984
	이사	홍희흠	1984~1987
	이사	이근호	1987~1988
	이사	오세주	1988~1989
	이사	김종일	1989~1991
	이사	이장우	1991~1993
	이사	조성진	1993~1995
	이사	유영설	1995~1996
	이사	이갑현	1996~1997
	상무이사	최남규	1997~1998
	상무이사	이갑현	1998~1999
	상무이사	장병규	1999~2000
	부행장	장병규	2000~2000
	상무	김성우	2000~2001
	상무	박진곤	2001~2002
	부행장	박진곤	2002~2003
	부행장	이달용	2003~2003
	상무	전용준	2003~2004
	본부장	서충석	2004~2005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	김공진	2005~2006
	부회장	김장수	2006~2008
	부회장	노태식	2009~2012
	부회장	김영대	2012~2015
	전무이사	민성기	2015~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오범식	1976~1978
	부회장	이치녕	1978~1979
	부회장	김우근	1979~1981
	부회장	계봉혁	1981~1984
	부회장	이선기	1984~1988
	부회장	노진식	1988~1991
	부회장	홍성좌	1991~1994
	부회장	김은상	1994~1996
	부회장	유득환	1996~1997
	부회장	황두연	1997~1999
	부회장	강만수	1999~2000
	부회장	조건호	2000~2003
	부회장	이석영	2003~2006
	부회장	유창무	2006~2008
	부회장	오영호	2009~2011
동력자원부 (참관위원)	부회장	안현호	2012~2015
	부회장	김정관	2015~
	기획관리실장	이봉서	1987~1981
	자원정책실장	허남훈	1981~1983
	자원정책실장	최진석	1983~1987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연원영	2000~2001
	상임위원	진동수	2001~2001

소속	직위	성명	활동기간
수출보험공사	상임위원	이종구	2001~2003
	상임위원	양천식	2003~2004
	상임위원	이우철	2004~2005
	상임위원	문재우	2005~2007
	상임위원	박대동	2007~2007
	상임위원	김용환	2008~2008
	부사장	임태진	2000~2001
	부사장	김송웅	2001~2004
기획재정부	부사장	박성범	2004~2007
	부사장	강원구	2007~2008
	부사장	권일수	2009~2009
	부사장	정태윤	2009~2010
외교부	국제업무관리관	신제윤	2008~2011
	국제업무관리관	최종구	2011~2013
	국제경제관리관	은성수	2013~2014
	국제경제관리관	최희남	2014~
지식경제부	경제외교조정관	안충기	2013~2015
	경제외교조정관	이태호	2015~
	무역투자실장	권태균	2008~2008
	무역투자실장	이동근	2009~2009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김경식	2010~2011
	무역투자실장	한진현	2011~2013
	무역투자실장	권평오	2013~2015
	무역투자실장	이인호	2015~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장	서종대	2006~2006
	건설선진화본부장	박상규	2007~2008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박상규	2008~2008
	건설정책관	박상우	2008~2009
	건설정책관	도태호	2010~2011
	건설정책관	박민우	2011~2013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안시권	2013~2014
	건설정책국장	송석준	2014~2015
	건설정책국장	이원재	2015~2015
	건설정책국장	김경욱	2015~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전기정	2013~2015
	해운물류국장	박경철	2015~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임승태	2008~2008
	사무처장	권혁세	2009~2009
	사무처장	김주현	2010~2012
	사무처장	정은보	2012~2013
	사무처장	고승범	2013~2015
	사무처장	김용범	2015~
	사무처장	김용범	2015~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조계룡	2010~2011
	이 사	김선기	2011~2011
	부사장	권문홍	2011~2014
	부사장	조남용	2014~
민간운영위원	한국문화방송 논설위원	홍은주	2008~2010
	한국개발전략연구소장	전승훈	2008~2012
	한남대학교 교수	김태규	2010~2012
	경희대학교 교수	김상국	2012~2014
	동국대학교 교수	이학노	2012~2014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김지홍	2015~
	한양대학교 교수	장형수	2015~

14. 역대 자문위원

성명	위촉연월일
김병주	1996. 2. 1.
정창영	1996. 2. 1.
어운대	1996. 2. 1.
민상기	1996. 2. 1.
표학길	1996. 2. 1.
이덕훈	1996. 2. 1.
조윤제	2003. 2. 24.
민상기	2003. 2. 24.
이필상	2003. 2. 24.
정구현	2003. 2. 24.
정해왕	2003. 2. 24.
좌승희	2003. 2. 24.
김광두	2003. 3. 3.
김광두	2004. 3. 26.
민상기	2004. 3. 26.
안충영	2004. 3. 26.
이계우	2004. 3. 26.
이인실	2004. 3. 26.
이필상	2004. 3. 26.
정갑영	2004. 3. 26.
정해왕	2004. 3. 26.
좌승희	2004. 3. 26.
홍은주	2004. 3. 26.
김광두	2005. 3. 1.
노성태	2005. 3. 1.
민상기	2005. 3. 1.
이경태	2005. 3. 1.
이계우	2005. 3. 1.
이인실	2005. 3. 1.
이필상	2005. 3. 1.
정갑영	2005. 3. 1.
최춘애	2005. 3. 1.
최흥식	2005. 3. 1.
김광두	2006. 3. 1.
노성태	2006. 3. 1.
민상기	2006. 3. 1.
이경태	2006. 3. 1.
이계우	2006. 3. 1.

성명	위촉연월일
이인실	2006. 3. 1.
이필상	2006. 3. 1.
정갑영	2006. 3. 1.
최흥식	2006. 3. 1.
홍은주	2006. 3. 1.
민상기	2007. 3. 19.
정갑영	2007. 3. 19.
이필상	2007. 3. 19.
김광두	2007. 3. 19.
윤석현	2007. 3. 19.
전선애	2007. 3. 19.
노성태	2007. 3. 19.
최흥식	2007. 3. 19.
이경태	2007. 3. 19.
홍은주	2007. 3. 19.
민상기	2008. 3. 19.
정갑영	2008. 3. 19.
유관희	2008. 3. 19.
김광두	2008. 3. 19.
윤석현	2008. 3. 19.
전선애	2008. 3. 19.
김종석	2008. 3. 19.
이동걸	2008. 3. 19.
홍은주	2008. 3. 19.
채 욱	2008. 5. 29.
민상기	2009. 4. 7.
정갑영	2009. 4. 7.
유관희	2009. 4. 7.
김광두	2009. 4. 7.
김종석	2009. 4. 7.
김태준	2009. 4. 7.
채 욱	2009. 4. 7.
전선애	2009. 4. 7.
윤석현	2009. 4. 7.
민상기	2010. 3. 8.
정갑영	2010. 3. 8.
유관희	2010. 3. 8.
김광두	2010. 3. 8.

성명	위촉연월일
김태준	2010. 3. 8.
채 욱	2010. 3. 8.
전선애	2010. 3. 8.
윤석현	2010. 3. 8.
이종욱	2010. 11. 25.
이영수	2010. 11. 25.
민상기	2011. 3. 18.
정갑영	2011. 3. 18.
유관희	2011. 3. 18.
김광두	2011. 3. 18.
김태준	2011. 3. 18.
채 욱	2011. 3. 18.
전선애	2011. 3. 18.
이종욱	2011. 3. 18.
이영수	2011. 3. 18.
김병주	2011. 3. 18.
이종원	2011. 3. 18.
최운열	2011. 3. 18.
박상용	2011. 3. 18.
김형태	2011. 3. 18.
민상기	2012. 3. 2.
정갑영	2012. 3. 2.
유관희	2012. 3. 2.
김광두	2012. 3. 2.
김태준	2012. 3. 2.
채 욱	2012. 3. 2.
전선애	2012. 3. 2.
이종욱	2012. 3. 2.
이영수	2012. 3. 2.
김병주	2012. 3. 2.
이종원	2012. 3. 2.
최운열	2012. 3. 2.
박상용	2012. 3. 2.
김형태	2012. 3. 2.
민상기	2013. 3. 4.
유관희	2013. 3. 4.
김광두	2013. 3. 4.
윤창현	2013. 3. 4.

성명	위촉연월일
채 욱	2013. 3. 4.
이인실	2013. 3. 4.
이종욱	2013. 3. 4.
김병주	2013. 3. 4.
이종원	2013. 3. 4.
최운열	2013. 3. 4.
박상용	2013. 3. 4.
김형태	2013. 3. 4.
신완선	2013. 3. 4.
김태준	2013. 3. 4.
이일형	2013. 9. 2.
민상기	2014. 4. 23.
유관희	2014. 4. 23.
김광두	2014. 4. 23.
윤창현	2014. 4. 23.
이일형	2014. 4. 23.
이인실	2014. 4. 23.
이종욱	2014. 4. 23.
김병주	2014. 4. 23.
최운열	2014. 4. 23.
박상용	2014. 4. 23.
신인석	2014. 4. 23.
박영주	2014. 4. 23.
장용성	2014. 4. 23.
민상기	2015. 5. 4.
유관희	2015. 5. 4.
김광두	2015. 5. 4.
신성환	2015. 5. 4.
이일형	2015. 5. 4.
이인실	2015. 5. 4.
이종욱	2015. 5. 4.
김병주	2015. 5. 4.
최운열	2015. 5. 4.
박상용	2015. 5. 4.
신인석	2015. 5. 4.
박영주	2015. 5. 4.
장용성	2015. 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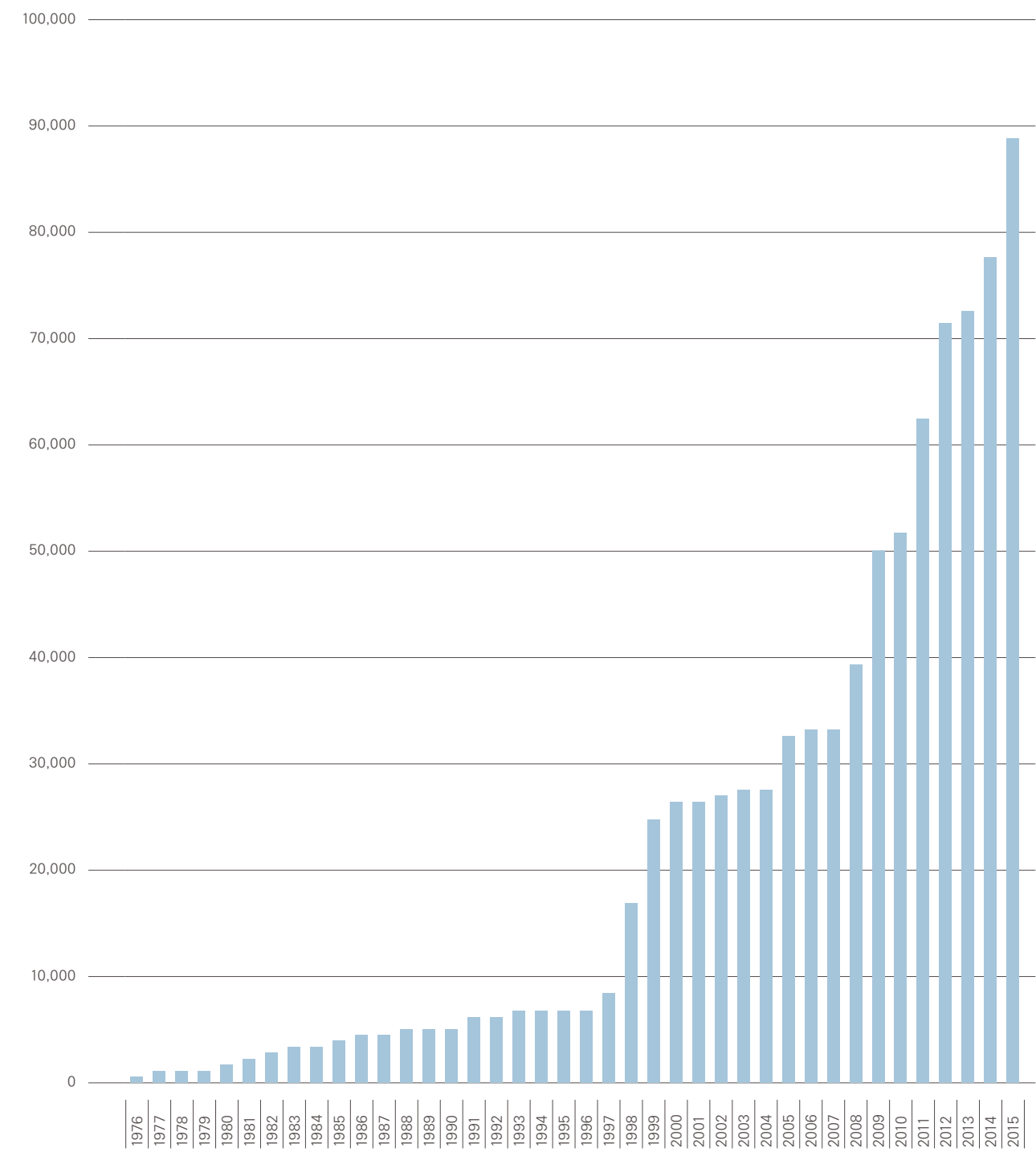
15. 자본금 구성 현황

자본금 구성 현황 : 1976~2015
(단위 : 억 원)

구분	대한민국 정부		한국은행		외환은행		산업은행*		연도별 소계	누계
	출자	누계	출자	누계	출자	누계	출자	누계		
1976	154	154	200	200	300	300			654	654
1977	200	354	200	400		300			400	1,054
1978	50	404		400	300	600			350	1,404
1979	45	449		400		600			45	1,449
1980	43	492	300	700		600			343	1,792
1981	157	649	500	1,200		600			657	2,449
1982	190	839		1,200	550	1,150			740	3,189
1983	190	1,029	200	1,400		1,150			390	3,579
1984	100	1,129		1,400		1,150			100	3,679
1985	300	1,429	300	1,700		1,150			600	4,279
1986	300	1,729		1,700		1,150			300	4,579
1987		1,729	300	2,000		1,150			300	4,879
1988		1,729	300	2,300		1,150			300	5,179
1989	50	1,779	150	2,450		1,150			200	5,379
1990	30	1,809		2,450		1,150			30	5,409
1991	550	2,359	200	2,650		1,150			750	6,159
1992	243	2,602		2,650		1,150			243	6,402
1993	457	3,059		2,650		1,150			457	6,859
1994		3,059		2,650		1,150			-	6,859
1995		3,059		2,650		1,150			-	6,859
1996		3,059		2,650		1,150			-	6,859
1997	1,850	4,909		2,650		1,150			1,850	8,709
1998	9,199	14,108		2,650	-1,150	-			8,049	16,758
1999	-536	13,572	7,000	9,650			1,536	1,536	8,000	24,758
2000		13,572	2,000	11,650				1,536	2,000	26,758
2001		13,572		11,650				1,536	-	26,758
2002	500	14,072		11,650				1,536	500	27,258
2003	400	14,472		11,650				1,536	400	27,658
2004	100	14,572		11,650				1,536	100	27,758
2005	5,200	19,772		11,650				1,536	5,200	32,958
2006	100	19,872		11,650				1,536	100	33,058
2007	30	19,902		11,650				1,536	30	33,088
2008	6,500	26,402		11,650				1,536	6,500	39,588
2009	10,500	36,902		11,650				1,536	10,500	50,088
2010	1,500	38,402		11,650				1,536	1,500	51,588
2011	1,000	39,402		11,650			10,000	11,536	11,000	62,588
2012	8,793	48,195		11,650				11,536	8,793	71,381
2013	1,000	49,195		11,650				11,536	1,000	72,381
2014	5,100	54,295		11,650				11,536	5,100	77,481
2015	11,300	65,595		11,650				11,536	11,300	88,781
합계	65,595		11,650		-		11,536		88,781	88,781

* 2011년 한국정책금융공사 자본금 포함

자본금 누계(단위 : 억 원)



16.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대차대조표 : 1976-1995 (단위 : 억 원)																				
구분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현금 및 예치금	9	255	235	181	59	83	820	119	1,219	11,149	8,847	2,516	1,449	1,011	1,098	2,057	3,079	2,775	2,072	1,863
유가증권	219	311	465	746	320	700	0	3,400	6,055	300	1,278	1,663	2,053	14	1,305	2,163	1,748	2,275	2,092	1,715
콜론	-	-	-	-	-	-	-	-	-	-	-	-	-	-	-	1,085	460	297	364	345
대출금	562	1,206	1,646	2,255	5,115	9,476	15,639	20,552	26,070	33,499	25,421	20,039	17,153	19,601	23,670	29,311	24,798	32,722	41,155	54,631
지급승낙대총	-	222	293	267	397	3,115	4,393	3,612	4,078	3,723	1,548	2,048	1,850	528	214	1,801	4,060	3,353	2,935	5,720
연불어음매도대총	-	-	-	-	-	-	-	1,326	2,718	2,531	1,803	754	490	350	186	101	52	7	2	-
기타자산	14	22	6	9	7	22	96	137	101	235	302	489	413	316	425	1,269	1,683	2,573	3,274	2,190
업무용고정자산	1	20	37	54	66	101	107	84	157	304	310	314	319	320	312	318	214	221	219	220
이연자산	2	1	-	-	-	-	-	-	7	33	28	10	2	-	30	83	22	8	7	17
자산합계	807	2,037	2,682	3,512	5,964	13,497	21,055	29,230	40,405	51,774	39,537	27,833	23,729	22,140	27,240	38,188	36,116	44,231	52,120	66,701
외국환	-	-	-	-	4	5	20	15	128	25	44	40	3	-	-	-	17	-	42	4
차입금	130	603	741	1,459	3,128	5,882	10,077	13,954	16,243	19,419	14,207	6,916	7,033	7,501	12,574	15,417	10,358	17,713	23,601	30,292
콜머니	-	-	-	-	-	-	-	-	-	-	-	-	-	-	-	-	-	-	710	1,456
발행금융채권	-	-	-	-	-	-	-	-	579	3,699	4,434	4,395	3,396	3,062	3,809	8,632	9,066	10,089	11,598	15,448
지급승낙	-	222	293	267	397	3,115	4,393	3,612	4,078	3,723	1,548	2,048	1,850	528	214	1,801	4,060	3,353	2,935	5,720
연불어음매도	-	-	-	-	-	-	-	1,326	2,718	2,531	1,803	754	490	350	186	101	52	7	2	-
연불어음매각대금	-	79	64	57	64	1,382	2,434	5,745	11,468	15,791	10,148	5,830	2,835	2,039	1,459	1,281	636	397	256	189
미지급 연불어음 매입대금	-	-	-	-	-	-	-	9	193	189	135	7	0	-	-	-	-	-	-	-
수입보증금	-	3	8	8	9	31	21	44	29	22	20	27	22	22	80	54	103	28	22	16
기타부채	8	13	37	58	100	162	373	360	630	791	791	653	763	757	683	1,153	1,213	1,130	982	1,028
충당금 및 준비금	0	25	35	49	108	104	170	201	262	709	945	1,121	1,093	1,172	1,291	1,629	1,613	1,896	2,113	2,430
자본금	654	1,054	1,404	1,449	1,791	2,449	3,189	3,579	3,679	4,279	4,579	4,879	5,179	5,379	5,409	6,159	6,402	6,859	6,859	6,859
적립금	1	15	37	100	166	362	367	378	385	398	596	883	1,011	1,034	1,175	1,470	1,897	2,521	2,718	2,953
당기순이익	14	23	63	65	197	5	11	7	13	198	287	280	54	296	360	492	698	236	282	306
부채 및 자본합계	807	2,037	2,682	3,512	5,964	13,497	21,055	29,230	40,405	51,774	39,537	27,833	23,729	22,140	27,240	38,189	36,115	44,229	52,120	66,701

16.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대차대조표 : 1996-2015
(단위 : 억 원)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현금 및 예치금	2,432	11,904	25,581	21,829	12,836	342	446	1,083	695	440	1,345	1,094	2,317	8,738	16,100	27,076	21,341	22,148	31,140	48,841
유가증권	1,944	3,172	1,379	23,172	18,630	19,442	15,004	16,412	20,060	32,149	25,579	25,348	23,965	32,780	32,053	39,489	44,933	54,035	65,914	77,363
대출증권	74,842	123,755	117,660	91,794	76,000	77,230	71,712	80,327	90,044	112,604	143,577	199,985	318,134	362,052	397,490	460,046	448,937	511,224	608,597	658,341
은행간대출금	61	28,708	8,349	2,691	9,408	10,533	16,306	12,600	6,863	3,509	411	1,008	716	1,413	1,590	1,133	9,655	475	2,988	8,000
지급승낙대충	7,223	34,091	55,380	-	-	-	-	-	-	-	-	-	-	-	-	-	-	-	-	-
연불어음매도대충	-	-	8,558	-	-	-	-	-	-	-	-	-	-	-	-	-	-	-	-	-
대출금매도대충	-	-	2,154	-	-	-	-	-	-	-	-	-	-	-	-	-	-	-	-	-
고정자산	219	210	191	179	176	195	339	442	471	453	434	407	380	382	372	398	518	2,539	2,917	3,000
기타자산	1,851	13,498	25,704	6,441	2,439	2,798	2,258	1,952	3,573	2,403	3,139	8,552	14,307	14,913	19,290	23,191	20,497	18,911	19,181	23,354
자산합계	88,572	215,338	244,956	146,106	119,489	110,540	106,065	112,816	121,706	151,558	174,485	236,394	359,819	420,278	466,895	551,333	545,881	609,332	730,737	818,899

차입금	37,867	55,932	87,466	60,251	40,457	44,493	46,542	34,613	6,920	3,475	12,677	17,267	44,586	28,947	34,990	52,842	27,570	54,885	100,183	119,576
콜머니	2,279	25,820	1,118	-	10,636	2,800	2,377	-	4,066	3,038	5,193	2,216	5,657	12	7,858	679	-	-	-	-
발행금융채권	25,270	70,283	56,339	48,982	37,960	31,347	26,638	42,796	67,440	85,705	100,118	154,640	227,466	304,059	329,321	392,036	400,203	427,098	472,917	532,396
지급승낙	7,223	34,091	55,380	-	-	-	-	-	-	-	-	-	-	-	-	-	-	-	-	-
연불어음매도	-	-	8,558	-	-	-	-	-	-	-	-	-	-	-	-	-	-	-	-	-
대출금매도	-	-	2,153	-	-	-	-	-	-	-	-	-	-	-	-	-	-	-	-	-
기타부채	5,498	16,753	13,517	7,034	3,626	3,823	2,411	3,622	7,839	10,556	8,897	12,915	31,206	22,626	29,497	30,682	32,452	34,847	58,835	56,668
자본금	6,859	8,709	16,758	24,758	26,758	26,758	27,258	27,658	27,758	32,958	33,058	33,088	39,588	50,088	51,588	62,588	71,381	72,381	77,481	88,781
잉여금	3,576	3,750	3,667	4,034	3,078	3,260	3,425	3,866	4,641	6,870	8,416	10,090	10,784	11,042	11,664	13,009	14,162	19,543	20,211	20,278
(당기순이익)	(340)	(238)	(203)	(96)	(137)	(184)	(543)	(441)	(775)	(2,245)	(1,683)	(1,842)	(940)	(258)	(667)	(1,468)	(1,489)	(597)	(668)	(220)
자본조정	-	-	-	1,047	-3,026	-1,941	-2,586	261	3,042	8,956	6,126	6,178	532	3,504	1,977	-503	113	578	1,110	1,200
부채 및 자본합계	88,572	215,338	244,956	146,106	119,489	110,540	106,065	112,816	121,706	151,558	174,485	236,394	359,819	420,278	466,895	551,333	545,881	609,332	730,737	818,899

*2013년부터 IFRS로 회계기준 변경

17. 요약 손익계산서

요약 손익계산서 : 1976-1995
(단위 : 억 원)

구분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대출금이자	28	65	88	150	263	554	943	1,206	1,861	2,472	2,698	1,902	1,496	1,413	1,718	2,154	2,024	1,863	2,475	3,408
예치금이자	-	1	34	17	19	21	11	7	20	575	979	465	148	98	60	262	538	262	297	311
유가증권이자	1	22	37	47	68	14	11	15	13	4	19	172	274	79	21	183	132	90	112	151
수입잡이자	-	2	29	45	48	44	44	35	132	314	444	625	420	346	273	846	10	4	2	1
수입수수료	0	2	3	1	2	9	24	32	46	48	48	35	32	22	28	48	50	76	106	118
보증료	-	0	0	0	0	4	12	9	7	7	4	2	2	1	1	1	2	3	3	7
외화환산액	0	17	36	17	224	97	110	197	421	787	372	6	0	202	309	155	170	109	100	73
선물거래익	-	-	-	-	-	-	-	-	-	-	-	-	-	-	-	-	331	458	409	292
정부이자보전금	-	-	-	-	-	45	177	162	150	188	-	-	-	-	-	-	-	-	-	-
유가증권매익	-	-	-	-	-	-	-	48	278	157	-	-	-	-	-	-	-	-	-	-
기타수익	-	-	24	33	45	7	0	1	2	10	162	111	62	10	8	28	108	34	22	51
수익합계	29	109	251	310	669	795	1,332	1,712	2,930	4,562	4,726	3,318	2,434	2,171	2,418	3,677	3,365	2,899	3,526	4,412

차입금이자	10	20	41	69	207	471	827	1,043	1,417	1,577	1,394	751	561	582	766	1,015	776	638	1,135	1,747
콜머니이자	-	-	-	-	-	-	-	-	-	-	-	-	-	-	-	-	-	-	45	78
발행금융채권이자	-	-	-	-	-	-	-	-	18	153	330	321	267	288	280	506	695	747	765	924
기타지급이자	-	5	57	77	105	241	339	502	1,228	1,632	1,619	1,135	732	552	526	789	47	20	16	13
지급수수료	0	7	10	5	2	32	33	59	63	57	44	7	7	1	4	5	3	10	15	8
외화환산손	-	18	25	16	-	-	-	-	50	357	411	318	639	125	24	-	26	4	65	99
선물거래손	-	-	-	-	-	-	-	-	-	-	-	-	-	-	-	-	299	454	443	274
관리업무비	2	9	15	23	31	41	51	63	71	86	98	111	121	138	163	207	248	281	338	393
총당금 및 준비금 전입액	0	24	33	48	105	3	66	33	62	449	399	286	32	83	122	345	189	307	247	406
이연자산상각	1	1	1	-	-	-	-	-	-	18	25	23	9	1	15	39	37	25	5	13
영업외비용	-	-	-	-	-	-	-	-	-	-	-	-	-	2	30	10	20	30	16	0
기타비용	1	0	0	0	0	1	3	2	4	2	3	2	4	4	3	11	9	12	25	7
법인세 등	1	2	5	7	22	1	2	3	4	33	116	84	8	99	125	258	318	135	129	144
비용합계	15	86	187	245	472	790	1,321	1,705	2,917	4,364	4,439	3,038	2,380	1,875	2,058	3,185	2,667	2,663	3,244	4,106
당기순이익	14	23	64	65	197	5	11	7	13	198	287	280	54	296	360	492	698	236	282	306

17. 요약 손익계산서

요약 손익계산서 : 1996-2015
(단위 : 억 원)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이자수익	5,140	8,045	13,210	9,953	8,137	5,980	4,476	3,707	4,112		4,927	7,416	10,370	14,074	14,359	12,885	14,039	17,709	16,983	16,888	18,874
수수료수익	131	225	385	595	532	636	716	1,027	1,494		1,456	1,343	1,465	1,856	2,470	2,698	2,836	3,007	3,426	3,574	3,771
기타영업수익	107	290	1,382	2,254	2,834	1,223	1,523	2,352	3,145		4,811	3,979	11,013	35,251	22,754	25,269	24,376	24,194	34,868	32,550	42,003
영업외수익	6	27	29	1,136	706	91	157	543	364		2,903	53	49	42	129	101	126	182	138	107	132
특별이익	0	0	33	-	-	-	-	-	-		-	-	-	-	-	-	-	-	-	-	-
수익합계	5,384	8,587	15,039	13,938	12,209	7,930	6,872	7,629	9,115		14,097	12,791	22,897	51,223	39,712	40,953	41,377	45,092	55,415	53,119	64,780
이자비용	3,318	6,040	10,278	7,884	6,464	4,763	2,991	2,600	3,193		3,923	4,886	8,169	11,069	12,239	9,465	10,744	14,287	13,357	12,944	12,010
수수료비용	608	663	876	715	474	539	607	745	862		1,012	18	42	31	40	29	81	60	31	49	77
기타영업비용	923	1,517	3,046	5,074	4,856	2,256	2,244	3,278	3,861		6,088	5,533	12,180	38,141	27,038	30,407	28,969	28,768	41,172	39,086	52,236
이연자산상각	29	40	121	-	-	-	-	-	-		-	-	-	-	-	-	-	-	-	-	-
영업외비용	10	21	321	125	227	154	321	391	136		11	37	21	27	55	69	42	107	122	108	102
특별손실	1	0	10	0	-	-	-	-	-		-	-	-	-	-	-	-	-	-	-	-
법인세비용 등	155	68	184	44	51	34	166	174	288		818	634	643	1,015	82	316	73	381	136	264	135
비용합계	5,044	8,349	14,836	13,842	12,072	7,746	6,329	7,188	8,340		11,852	11,108	21,055	50,283	39,454	40,286	39,909	43,603	54,817	52,451	64,560
당기순이익	340	238	203	96	137	184	543	441	775		2,245	1,683	1,842	940	258	667	1,468	1,489	597	668	220

*2013년부터 IFRS로 회계기준 변경

18. 자금별 대출승인실적

대출 승인실적 : 1976-2015
(단위 : 억 원)

수출자금																											
구분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기반자금대출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자금 대출	수출이행 자금대출	수출이행 자금대출 (상생제작)	수출이행 자금대출 (상생협력)	수출이행 자금대출 (기술신용)	수출이행 자금대출 (단기수출)	연불금융	연불어음 매입	기술제공 자금-제작	기술제공 자금-연불	중소규모 자본재	(구)중소기업 수출특례 신용대출	수출환 어음부 대출	수출자금 -원자재	수출기반 자금대출	수출기반 자금대출 (수입결제 자금)	수출기반 자금대출 (간접대출)	수출성장 자금대출	수출성장 자금대출 (단기)	수출성장 자금대출 (중기)	수출성장 자금대출 (장기)	수출성장 자금대출 (장기) (지식재산권)	수출성장 자금대출 (상생)	수출성장 자금대출 (기술신용)	포괄수출 금융	수출성장 자금대출 (온렌딩)	
1976	851	436	-	-	-	-	415	-	-	-	-	-	-	-	-	-	-	-	-	-	-	-	-	-	-	-	
1977	1,155	1,004	-	-	-	-	39	-	111	0.3	-	-	-	-	-	-	-	-	-	-	-	-	-	-	-	-	
1978	1,275	1,230	-	-	-	-	1	-	44	-	-	-	-	-	-	-	-	-	-	-	-	-	-	-	-	-	
1979	4,374	3,916	-	-	-	-	458	-	-	-	-	-	-	-	418	392	26	-	-	-	-	-	-	-	-	-	
1980	2,554	2,256	-	-	-	-	295	-	2	-	-	-	-	-	44	11	33	-	-	-	-	-	-	-	-	-	
1981	5,145	4,264	-	-	-	-	881	-	-	-	-	-	-	-	164	164	-	-	-	-	-	-	-	-	-	-	
1982	5,433	3,735	-	-	-	-	1,686	-	12	-	-	-	-	-	757	757	-	-	-	-	-	-	-	-	-	-	
1983	5,534	4,154	-	-	-	-	1,380	-	-	-	-	-	-	-	898	898	-	-	-	-	-	-	-	-	-	-	
1984	10,831	9,796	-	-	-	-	1,035	-	-	-	-	-	-	-	17	-	17	-	-	-	-	-	-	-	-	-	
1985	6,502	5,847	-	-	-	-	655	-	-	-	-	-	-	-	15	-	15	-	-	-	-	-	-	-	-	-	
1986	3,009	2,533	-	-	-	-	476	-	-	-	-	-	-	-	19	-	19	-	-	-	-	-	-	-	-	-	
1987	9,489	8,144	-	-	-	-	1,329	-	-	-	-	-	-	17	-	-	-	-	-	-	-	-	-	-	-	-	
1988	2,324	2,090	-	-	-	-	174	-	-	-	-	-	-	60	-	-	-	-	-	-	-	-	-	-	-	-	
1989	4,775	4,449	-	-	-	-	261	-	-	-	-	-	-	66	63	63	-	-	-	-	-	-	-	-	-	-	
1990	5,484	4,862	-	-	-	-	534	-	-	-	-	-	-	88	461	456	6	-	-	-	-	-	-	-	-	-	
1991	7,294	6,730	-	-	-	-	480	-	-	-	-	-	-	83	4,529	862	3,667	-	-	-	-	-	-	-	-	-	
1992	10,954	10,102	-	-	-	-	783	-	-	-	-	-	-	70	77	-	77	-	-	-	-	-	-	-	-	-	
1993	28,346	26,720	-	-	-	-	1,595	-	-	-	-	-	-	31	336	216	120	-	-	-	-	-	-	-	-	-	
1994	33,286	31,917	-	-	-	-	531	-	-	-	-	-	-	838	275	131	144	-	-	-	-	-	-	-	-	-	
1995	29,373	27,810	-	-	-	-	835	-	107	-	-	-	-	621	235	129	106	1,424	-	-	-	-	-	-	1,424	-	
1996	39,846	38,423	-	-	-	-	1,253	-	65	-	-	-	-	104	389	-	389	4,836	-	-	-	-	-	-	4,836	-	
1997	54,769	54,184	-	-	-	-	333	-	50	-	-	-	-	202	5,882	4,575	1,307	7,693	-	-	-	-	-	-	7,693	-	
1998	40,656	39,952	-	-	-	-	254	-	-	-	13	-	437	-	548	46	502	8,702	-	-	-	-	-	-	8,702	-	
1999	45,593	43,786	-	-	-	-	780	-	-	-	1,027	-	-	-	4,234	4,095	140	7,582	-	-	-	-	-	-	7,582	-	
2000	32,957	30,085	-	-	-	-	117	-	-	-	2,754	-	-	-	2,064	1,897	167	7,824	-	-	-	-	-	-	7,824	-	
2001	51,732	45,369	-	-	-	-	-	-	-	-	2,662	-	3,701	-	3,574	3,189	385	9,251	-	-	-	-	-	-	9,251	-	
2002	29,264	22,428	-	-	-	-	388	-	2,732	-	2,860	-	857	-	2,800	2,164	637	10,116	-	-	-	-	-	-	10,116	-	
2003	30,646	22,802	-	-	-	247	1,277	-	962	-	5,286	73	-	-	22,825	21,300	1,526	15,884	-	-	-	-	-	-	15,884	-	
2004	28,370	17,772	-	-	-	2,771	-	-	209	-	7,496	122	-	-	41,720	38,763	2,957	24,975	-	-	-	-	-	-	24,975	-	
2005	26,520	19,095	-	-	279	184	2,007	-	1,001	-	3,937	16	-	-	29,082	26,786	2,295	39,045	-	-	-	-	-	-	39,045	-	
2006	18,049	13,208	-	-	1,062	1,938	-	-	1,414	-	426	-	-	-	23,687	20,488	3,199	52,064	-	-	-	-	-	-	52,064	-	
2007	17,356	11,619	-	-	1,676	1,745	-	-	2,316	-	-	-	-	-	30,722	25,172	5,549	54,440	13,759	40,681	-	-	-	-	-	-	
2008	22,474	17,127	-	-	1,335	786	125	-	3,100	-	-	-	-	-	34,744	26,668	8,076	63,669	19,029	44,640	-	-	-	-	-	-	
2009	59,529	53,544	-	-	1,813	4,172	-	-	-	-	-	-	-	-	13,600	8,185	5,416	61,903	30,177	31,725	-	-	-	-	-	-	
2010	82,984	70,863	-	-	2,113	10,008	-	-	-	-	-	-	-	-	35,060	28,636	6,424	66,388	39,447	26,941	-	-	-	-	-	-	
2011	108,150	92,905	-	-	869	14,375	-	-	-	-	-	-	-	-	50,446	46,613	3,833	64,230	36,583	27,648	-	-	-	-	-	-	
2012	115,501	97,043	666	-	152	17,640	-	-	-	-	-	-	-	-	155,659	148,410	7,249	67,269	34,199	32,641	-	-	429	-	-	-	
2013	141,459	122,888	1,270	6,304	215	10,782	-	-	-	-	-	-	-	-	65,149	59,800	5,350	79,450	33,096	42,198	-	720	3,394	44	-	-	
2014	136,287	118,483	700	14,216	117	2,770	-	-	-	-	-	-	-	-	69,271	63,952	5,319	84,072	30,215	47,323	1,220	812	4,482	21	-	-	
2015	116,593	102,676	519	13,331	68	-	-	-	-	-	-	-	-	-	28,233	24,436	3,797	78,974	31,371	41,445	1,079	738	4,017	-	-	325	

18. 자금별 대출승인실적

대출 승인실적 : 1976-2015
(단위 : 억 원)

구분	수출자금											해투자금													
	수출촉진자금대출							무역어음재할인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해외사업활성화자금대출								
	수출촉진 자금대출	수출촉진 자금대출 (시설투자)	수출촉진 자금대출 (기술개발)	수출촉진 자금대출 (해외시장 개척활동)	수출촉진 자금대출 (기타)	수출촉진 자금대출 (수출기업 인수)	수출촉진 자금대출 (온렌딩)	현지법인 사업자금 대출 (간접대출)	수출 중소기업 네트워크 대출	해외사업 활성화 자금대출 (간접대출)	무역어음 재할인	무역어음 재할인 (외화)	무역어음 재할인 (원화)	수출자금 총계	해투자 자금대출	해외사업 자금대출	현지법인 사업자금 대출	현지법인 사업자금 대출 (주주대여금)	현지법인 사업자금 대출	해외사업 활성화 자금대출	해외사업 활성화 자금대출	해외사업 활성화 자금대출 (출자자금)	주요자원 개발자금	해투자금 총계	
1976	-	-	-	-	-	-	-	-	-	-	-	-	-	851	84	-	-	-	-	-	-	-	-	-	84
1977	-	-	-	-	-	-	-	-	-	-	-	-	-	1,155	190	-	-	-	-	-	-	-	-	-	190
1978	-	-	-	-	-	-	-	-	-	-	-	-	-	1,275	179	-	-	-	-	-	-	-	-	-	179
1979	-	-	-	-	-	-	-	-	-	-	-	-	-	4,792	282	-	-	-	-	-	-	-	-	-	282
1980	-	-	-	-	-	-	-	-	-	-	-	-	-	2,597	39	-	-	-	-	-	-	-	-	-	39
1981	-	-	-	-	-	-	-	-	-	-	-	-	-	5,308	96	-	-	-	-	-	-	-	-	-	96
1982	-	-	-	-	-	-	-	-	-	-	-	-	-	6,190	477	-	-	-	-	-	-	-	-	-	477
1983	-	-	-	-	-	-	-	-	-	-	-	-	-	6,432	143	-	-	-	-	-	-	-	-	-	143
1984	-	-	-	-	-	-	-	-	-	-	-	-	-	10,847	72	-	-	-	-	-	-	-	-	20	92
1985	-	-	-	-	-	-	-	-	-	-	-	-	-	6,517	23	-	-	-	-	-	-	-	-	51	74
1986	-	-	-	-	-	-	-	-	-	-	-	-	-	3,028	28	-	-	-	-	-	-	-	-	-	28
1987	-	-	-	-	-	-	-	-	-	-	-	-	-	9,489	41	-	-	-	-	-	-	-	-	-	41
1988	-	-	-	-	-	-	-	-	-	-	-	-	-	2,324	397	-	-	-	-	-	-	-	-	-	397
1989	-	-	-	-	-	-	-	-	-	-	-	-	-	4,838	1,284	6	-	-	-	-	-	-	-	-	1,290
1990	-	-	-	-	-	-	-	-	-	-	-	-	-	5,945	1,465	-	-	-	-	-	-	-	-	-	1,465
1991	-	-	-	-	-	-	-	-	-	-	-	-	-	11,822	931	-	-	-	-	-	-	-	-	-	931
1992	-	-	-	-	-	-	-	-	-	-	-	-	-	11,032	772	-	-	-	-	-	-	-	-	-	772
1993	-	-	-	-	-	-	-	-	-	-	-	-	-	28,682	781	-	-	-	-	-	-	-	-	-	781
1994	-	-	-	-	-	-	-	-	-	-	-	-	-	33,560	2,743	-	192	192	-	-	-	-	-	-	2,935
1995	-	-	-	-	-	-	-	-	-	-	-	-	-	31,032	4,259	-	192	192	-	-	-	-	-	-	4,451
1996	-	-	-	-	-	-	-	-	-	-	-	-	-	45,070	3,271	-	1,592	1,592	-	-	-	-	-	-	4,864
1997	-	-	-	-	-	-	-	-	-	-	-	-	-	68,344	4,874	-	1,844	1,844	-	-	-	-	-	-	6,718
1998	-	-	-	-	-	-	-	-	-	-	8,450	8,450	-	58,357	577	-	506	506	-	-	-	-	-	-	1,083
1999	-	-	-	-	-	-	-	-	-	-	36,548	36,548	-	93,957	-	-	109	109	-	-	-	-	-	-	109
2000	-	-	-	-	-	-	-	-	-	-	35,264	35,264	-	78,109	59	-	151	151	-	-	-	-	-	-	210
2001	-	-	-	-	-	-	-	-	-	-	13,050	13,050	-	77,607	120	-	1,359	1,359	-	-	-	-	-	-	1,478
2002	-	-	-	-	-	-	-	-	-	-	14,890	14,890	-	57,071	781	750	3,760	3,760	-	-	-	-	-	-	5,291
2003	-	-	-	-	-	-	-	-	-	-	15,855	15,855	-	85,211	825	621	6,617	6,617	-	-	-	-	-	-	8,064
2004	-	-	-	-	-	-	-	-	-	-	17,598	17,598	-	112,663	1,906	480	11,488	11,488	-	-	-	-	-	-	13,873
2005	-	-	-	-	-	-	-	-	-	-	18,441	18,441	-	113,088	4,429	1,295	13,655	13,655	-	-	-	-	-	-	19,378
2006	-	-	-	-	-	-	-	-	-	-	24,876	24,876	-	118,675	2,753	46	21,300	21,300	-	-	-	-	-	-	24,100
2007	-	-	-	-	-	-	-	-	-	-	30,064	30,064	-	132,582	5,691	1,023	29,551	29,551	-	1,407	-	1,407	-	-	37,672
2008	-	-	-	-	-	-	-	394	-	1,072	139,307	139,307	-	261,659	6,937	755	33,284	33,284	-	-	-	-	-	-	40,975
2009	4,264	4,264	-	-	-	-	-	-	34,093	746	238,162	231,147	7,015	412,298	2,589	729	33,277	33,277	-	4,203	-	4,203	-	-	40,799
2010	3,121	2,907	161	53	-	-	-	49	32,226	4,722	59,752	51,752	8,000	284,302	26,367	7,388	42,537	42,537	-	-	-	-	-	-	76,292
2011	933	707	130	96	-	-	-	1,285	19,308	6,398	59,430	52,630	6,800	310,181	22,458	5,855	67,515	67,515	-	-	-	-	-	-	95,829
2012	366	152	200	14	-	-	-	620	925	6,526	52,447	49,447	3,000	399,312	6,078	-	59,441	59,441	-	-	-	-	-	-	65,519
2013	360	325	-	35	-	-	-	1,490	-	12,045	27,654	24,354	3,300	327,607	6,041	-	61,420	61,420	-	-	-	-	-	-	67,461
2014	503	-	-	3	500	-	-	5,064	-	12,916	27,629	24,329	3,300	335,741	7,647	3,993	73,052	73,019	34	1,264	1,264	-	-	-	85,956
2015	8,322	1,250	-	-	-	7,000	72	3,859	-	10,276	26,359	19,869	6,490	272,616	4,802	5,065	99,426	99,355	71	6,789	6,789	-	-	-	116,081

18. 자금별 대출승인실적

대출 승인실적 : 1976-2015
(단위 : 억 원)

구분	수입자금				채권인수			대외경제협력자금		역외금융		특별수입금융				기타대출																																																																																																																																																																																																																																																																																																																																																																																																																																																																																																																																																																																																																																																																																																																																																																																																																																																																																																																																																																																																																																																																																																																																													
	수입자금대출				수입자금 총계	해외사업 자금대출 (채무증권 인수)	현지법인 사업자금 대출 (채무증권 인수)	채권인수 총계	대외경제 협력자금	대외경제 협력자금 총계	역외대출	역외금융 총계	IBRD	BOK	JEXIM	특별수입 금융 총계	기업구조조정자금대출																																																																																																																																																																																																																																																																																																																																																																																																																																																																																																																																																																																																																																																																																																																																																																																																																																																																																																																																																																																																																																																																																																																																												
	수입자금 대출	수입자금 대출	수입자금 대출 (온렌딩)	수입기반 자금대출													기업 구조조정 자금대출	기업 구조조정 운영자금 대출	기업 구조조정 기타대출	현지법인 인수	역외인수 자산	보증채무 분할변제	내국수입 유انس	기타대출 총계																																																																																																																																																																																																																																																																																																																																																																																																																																																																																																																																																																																																																																																																																																																																																																																																																																																																																																																																																																																																																																																																																																																																					
197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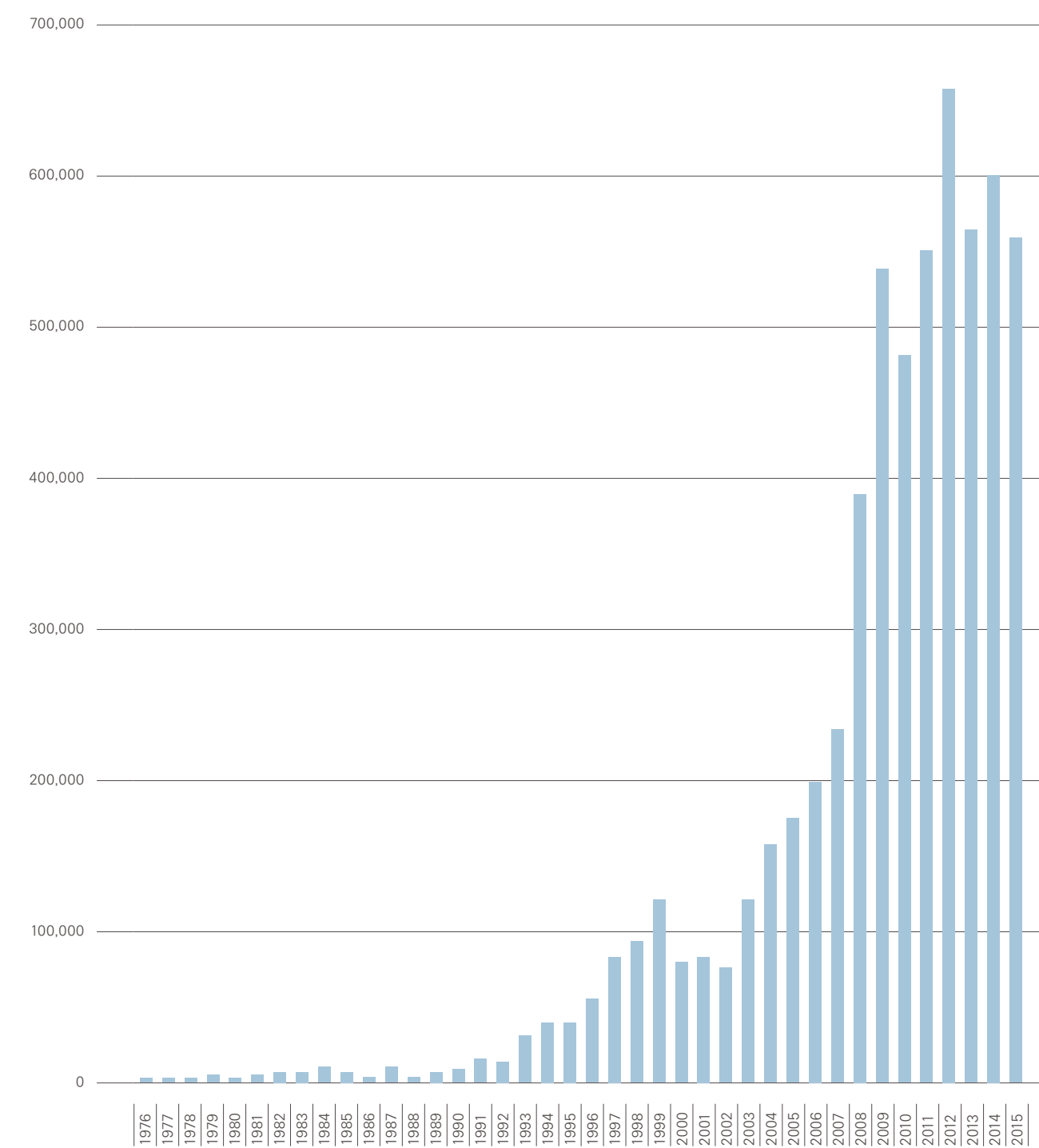
18. 자금별 대출승인실적

대출 승인실적 : 1976-2015
(단위 : 억 원)

사모사채		출자전환채권		지급보증대지급금										매입외환						대출총계	
구분	기업구조조정 운영자금대출 (사모사채 인수)	역외 사모사채	사모사채 총계	출자전환 채권	출자전환 채권 총계	대지급금															
						대지급금	대지급금 (선수금 환급보증)	대지급금 (계약이행 보증)	대지급금 (입찰보증)	대지급금 (하자보수 보증)	대지급금 (수입신용장 발행인수)	대지급금 (대외채무 보증)	지급보증 대지급금 총계	수출관련 외국환	포페이팅	수출환어음 매입	신용장 리파이낸스	수출팩토링	매입외환 총계		
1976	-	-	-	-	-	-	-	-	-	-	-	-	-	-	-	-	-	-	-	935	
1977	-	-	-	-	-	-	-	-	-	-	-	-	-	-	-	-	-	-	-	1,344	
1978	-	-	-	-	-	-	-	-	-	-	-	-	-	-	-	-	-	-	-	1,454	
1979	-	-	-	-	-	-	-	-	-	-	-	-	-	-	-	-	-	-	-	5,074	
1980	-	-	-	-	-	-	-	-	-	-	-	-	-	-	-	-	-	-	-	2,636	
1981	-	-	-	-	-	-	-	-	-	-	-	-	-	-	-	-	-	-	-	5,404	
1982	-	-	-	-	-	-	-	-	-	-	-	-	-	-	-	-	-	-	-	6,667	
1983	-	-	-	-	-	-	-	-	-	-	-	-	-	-	-	-	-	-	-	6,575	
1984	-	-	-	-	-	-	-	-	-	-	-	-	-	-	-	-	-	-	-	10,939	
1985	-	-	-	-	-	-	-	-	-	-	-	-	-	-	-	-	-	-	-	6,591	
1986	-	-	-	-	-	-	-	-	-	-	-	-	-	-	-	-	-	-	-	3,056	
1987	-	-	-	-	-	-	-	-	-	-	-	-	-	-	-	-	-	-	-	9,530	
1988	-	-	-	-	-	-	-	-	-	-	-	-	-	-	-	-	-	-	-	2,883	
1989	-	-	-	-	-	-	-	-	-	-	-	-	-	-	-	-	-	-	-	6,942	
1990	-	-	-	-	-	-	-	-	-	-	-	-	-	-	-	-	-	-	-	9,029	
1991	-	-	-	-	-	-	-	-	-	-	-	-	-	-	-	-	-	-	-	14,806	
1992	-	-	-	-	-	-	-	-	-	-	-	-	-	-	-	-	-	-	-	13,374	
1993	-	-	-	-	-	-	-	-	-	-	-	-	-	-	-	-	-	-	-	31,432	
1994	-	-	-	-	-	-	-	-	-	-	-	-	-	-	-	-	-	-	-	38,725	
1995	-	-	-	-	-	-	-	-	-	-	-	-	-	-	-	-	-	-	-	38,989	
1996	-	-	-	-	-	-	-	-	-	-	-	-	-	-	-	-	-	-	-	54,217	
1997	-	-	-	-	-	-	-	-	-	-	-	-	-	-	-	-	-	-	-	82,318	
1998	-	-	-	-	-	-	-	-	-	-	-	-	-	-	-	-	-	-	-	91,418	
1999	-	-	-	-	-	-	-	-	-	-	-	-	-	-	-	-	-	-	-	120,146	
2000	-	-	-	-	-	-	-	-	-	-	-	-	-	-	-	-	-	-	-	79,277	
2001	-	-	-	-	-	-	-	-	-	-	-	-	-	694	298	396	-	-	694	81,801	
2002	-	-	-	-	-	-	-	-	-	-	-	-	-	6,160	1,716	4,444	-	-	6,160	75,408	
2003	-	-	-	-	-	-	-	-	-	-	-	-	-	7,760	4,619	3,141	-	-	7,760	118,944	
2004	-	397	397	-	-	-	-	-	-	-	-	-	-	12,809	4,839	7,970	-	-	12,809	155,303	
2005	-	61	61	-	-	-	-	-	-	-	-	-	-	21,560	5,426	6,195	41	9,898	21,560	171,834	
2006	-	28	28	-	-	-	-	-	-	-	-	-	-	24,170	8,970	5,047	-	10,152	24,170	196,989	
2007	-	-	-	-	-	-	-	-	-	-	-	-	-	25,837	8,546	4,568	-	12,723	25,837	229,453	
2008	-	-	-	-	-	-	-	-	-	-	-	-	-	34,314	15,517	2,886	-	15,911	34,314	382,962	
2009	-	-	-	-	-	-	-	-	-	-	-	-	-	29,202	10,596	2,593	-	16,013	29,202	531,058	
2010	-	-	-	-	-	-	-	-	-	-	-	-	-	48,233	20,419	1,714	-	26,100	48,233	473,412	
2011	-	-	-	-	-	-	-	-	-	-	-	-	-	71,556	31,935	697	-	38,924	71,556	542,944	
2012	-	-	-	-	-	-	-	-	-	-	-	-	-	103,016	50,417	506	-	52,093	103,016	648,514	
2013	-	-	-	-	-	-	-	-	-	-	-	-	-	81,149	41,072	287	-	39,790	81,149	556,260	
2014	396	-	396	-	-	-	-	-	-	-	-	-	-	79,955	41,893	99	525	37,438	79,955	591,951	
2015	-	-	-	-	-	-	-	-	-	-	-	-	-	62,788	32,687	544	-	29,557	62,788	550,595	

18. 자금별 대출승인실적

대출총계 : 1976~2015(단위 : 억 원)



19. 자금별 대출집행실적

대출 집행실적 : 1976~2015
(단위 : 억 원)

수출자금														
수출이행자금대출														
구분	수출이행 자금대출	수출이행 자금대출	수출이행	수출이행	수출이행	수출이행	연불금융	연불어음 매입	기술제공 자금-제작	기술제공 자금-연불	중소규모 자본재	(구)	수출환 어음부 대출	수출자금 -원자재
			자금대출 (상생제작)	자금대출 (상생협력)	자금대출 (기술신용)	자금대출 (단기수출)						중소기업 수출특례 신용대출		
1976	866	388	-	-	-	-	478	-	-	-	-	-	-	-
1977	1,082	962	-	-	-	-	21	-	99	0.05	-	-	-	-
1978	1,217	1,179	-	-	-	-	1	-	38	0.04	-	-	-	-
1979	3,790	3,577	-	-	-	-	213	-	-	0.3	-	-	-	-
1980	2,507	2,097	-	-	-	-	408	-	2	-	-	-	-	-
1981	4,386	3,879	-	-	-	-	507	-	-	-	-	-	-	-
1982	3,248	2,039	-	-	-	-	1,208	-	-	-	-	-	-	-
1983	5,002	2,629	-	-	-	-	2,365	-	8	-	-	-	-	-
1984	8,188	7,134	-	-	-	-	1,054	-	-	-	-	-	-	-
1985	8,293	6,696	-	-	-	-	1,597	-	-	-	-	-	-	-
1986	6,059	4,555	-	-	-	-	1,504	-	-	-	-	-	-	-
1987	4,914	4,245	-	-	-	-	653	-	-	-	-	-	-	16
1988	4,873	3,981	-	-	-	-	829	-	-	-	-	-	-	63
1989	4,087	3,452	-	-	-	-	570	-	-	-	-	-	-	65
1990	4,593	4,019	-	-	-	-	486	-	-	-	-	-	-	88
1991	7,369	5,986	-	-	-	-	1,300	-	-	-	-	-	-	83
1992	7,437	7,297	-	-	-	-	71	-	-	-	-	-	-	70
1993	20,497	19,354	-	-	-	-	1,112	-	-	-	-	-	-	30
1994	25,459	23,922	-	-	-	-	825	-	-	-	-	-	-	713
1995	32,286	31,055	-	-	-	-	413	-	74	-	-	-	-	744
1996	36,194	35,774	-	-	-	-	223	-	93	-	-	-	-	104
1997	51,514	48,903	-	-	-	-	2,349	-	59	-	-	-	-	202
1998	45,914	44,518	-	-	-	-	955	-	-	-	5	-	437	-
1999	30,670	28,956	-	-	-	-	700	-	-	-	1,013	-	-	-
2000	35,969	32,559	-	-	-	-	653	-	-	-	2,757	-	-	-
2001	43,497	36,969	-	-	-	-	237	-	-	-	2,589	-	3,701	-
2002	40,237	36,440	-	-	-	-	377	-	-	-	2,563	-	857	-
2003	24,607	14,939	-	-	-	581	1,497	-	1,934	-	5,584	71	-	-
2004	23,776	13,879	-	-	-	1,105	48	-	1,126	-	7,496	122	-	-
2005	20,726	13,389	-	-	278	1,084	1,033	-	1,001	-	3,925	16	-	-
2006	17,362	11,968	-	-	1,072	2,481	-	-	1,414	-	426	-	-	-
2007	18,124	12,367	-	-	1,701	1,740	-	-	2,316	-	-	-	-	-
2008	22,673	17,331	-	-	1,353	853	36	-	3,100	-	-	-	-	-
2009	56,825	50,812	-	-	1,836	4,172	5	-	-	-	-	-	-	-
2010	77,751	65,733	-	-	2,123	9,895	-	-	-	-	-	-	-	-
2011	105,850	90,669	-	-	905	14,275	-	-	-	-	-	-	-	-
2012	102,313	84,056	630	-	152	17,475	-	-	-	-	-	-	-	-
2013	130,881	112,035	1,290	6,304	215	11,036	-	-	-	-	-	-	-	-
2014	134,658	116,855	700	14,216	117	2,770	-	-	-	-	-	-	-	-
2015	116,098	102,181	519	13,331	68	-	-	-	-	-	-	-	-	-

19. 자금별 대출집행실적

대출 집행실적 : 1976-2015
(단위 : 억 원)

수출자금																																		
구분	수출기반자금대출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촉진자금대출								무역어음재할인			
	수출기반 자금대출	수출기반 자금대출 (수입결제 자금)	수출기반 자금대출 (간접대출)	수출성장 자금대출	수출성장 자금대출 (단기)	수출성장 자금대출 (중기)	수출성장 자금대출 (장기)	수출성장 자금대출 (장기) (지식재산권)	수출성장 자금대출 (상생)	수출성장 자금대출 (기술신용)	포괄수출 금융	수출성장 자금대출 (온렌딩)	수출촉진 자금대출	수출촉진 자금대출 (시설투자)	수출촉진 자금대출 (기술개발)	수출촉진 자금대출 (해외시장 개척활동)	수출촉진 자금대출 (기타)	수출촉진 자금대출 (수출기업 인수)	수출촉진 자금대출 (온렌딩)	현지법인 사업자금 대출 (간접대출)	수출 중소기업 네트워크 대출	해외사업 활성화 자금대출 (간접대출)	무역어음 재할인	무역어음 재할인 (외화)	무역어음 재할인 (원화)	수출자금 총계								
1976	-	-	-	-	-	-	-	-	-	-	-	-	-	-	-	-	-	-	-	-	-	-	-	-	-	866								
1977	-	-	-	-	-	-	-	-	-	-	-	-	-	-	-	-	-	-	-	-	-	-	-	-	-	1,082								
1978	-	-	-	-	-	-	-	-	-	-	-	-	-	-	-	-	-	-	-	-	-	-	-	-	-	1,217								
1979	206	196	10	-	-	-	-	-	-	-	-	-	-	-	-	-	-	-	-	-	-	-	-	-	-	3,995								
1980	294	276	18	-	-	-	-	-	-	-	-	-	-	-	-	-	-	-	-	-	-	-	-	-	-	2,801								
1981	62	46	16	-	-	-	-	-	-	-	-	-	-	-	-	-	-	-	-	-	-	-	-	-	-	4,449								
1982	235	215	20	-	-	-	-	-	-	-	-	-	-	-	-	-	-	-	-	-	-	-	-	-	-	3,483								
1983	851	845	6	-	-	-	-	-	-	-	-	-	-	-	-	-	-	-	-	-	-	-	-	-	-	5,853								
1984	584	584	-	-	-	-	-	-	-	-	-	-	-	-	-	-	-	-	-	-	-	-	-	-	-	8,771								
1985	225	208	17	-	-	-	-	-	-	-	-	-	-	-	-	-	-	-	-	-	-	-	-	-	-	8,518								
1986	-	-	-	-	-	-	-	-	-	-	-	-	-	-	-	-	-	-	-	-	-	-	-	-	-	6,059								
1987	-	-	-	-	-	-	-	-	-	-	-	-	-	-	-	-	-	-	-	-	-	-	-	-	-	4,914								
1988	14	-	14	-	-	-	-	-	-	-	-	-	-	-	-	-	-	-	-	-	-	-	-	-	-	4,887								
1989	1	-	1	-	-	-	-	-	-	-	-	-	-	-	-	-	-	-	-	-	-	-	-	-	-	4,088								
1990	111	105	6	-	-	-	-	-	-	-	-	-	-	-	-	-	-	-	-	-	-	-	-	-	-	4,703								
1991	2,508	823	1,685	-	-	-	-	-	-	-	-	-	-	-	-	-	-	-	-	-	-	-	-	-	-	9,876								
1992	2,562	543	2,019	-	-	-	-	-	-	-	-	-	-	-	-	-	-	-	-	-	-	-	-	-	-	9,999								
1993	152	-	152	-	-	-	-	-	-	-	-	-	-	-	-	-	-	-	-	-	-	-	-	-	-	20,649								
1994	143	41	101	-	-	-	-	-	-	-	-	-	-	-	-	-	-	-	-	-	-	-	-	-	-	25,602								
1995	312	181	130	1,400	-	-	-	-	-	-	1,400	-	-	-	-	-	-	-	-	-	-	-	-	-	-	33,998								
1996	467	116	351	4,800	-	-	-	-	-	-	4,800	-	-	-	-	-	-	-	-	-	-	-	-	-	-	41,462								
1997	3,124	1,909	1,215	7,541	-	-	-	-	-	-	7,541	-	-	-	-	-	-	-	-	-	-	-	-	-	-	62,178								
1998	1,012	438	575	8,476	-	-	-	-	-	-	8,476	-	-	-	-	-	-	-	-	-	-	-	8,450	8,450	-	63,854								
1999	2,460	2,283	176	7,184	-	-	-	-	-	-	7,184	-	-	-	-	-	-	-	-	-	-	-	36,548	36,548	-	76,862								
2000	1,159	1,031	128	7,538	-	-	-	-	-	-	7,538	-	-	-	-	-	-	-	-	-	-	-	35,264	35,264	-	79,930								
2001	3,805	3,465	340	8,945	-	-	-	-	-	-	8,945	-	-	-	-	-	-	-	-	-	-	-	13,050	13,050	-	69,298								
2002	2,328	1,820	508	9,605	-	-	-	-	-	-	9,605	-	-	-	-	-	-	-	-	-	-	-	14,890	14,890	-	67,061								
2003	6,735	5,292	1,444	15,504	-	-	-	-	-	-	15,504	-	-	-	-	-	-	-	-	-	-	-	15,855	15,855	-	62,701								
2004	12,209	10,055	2,155	24,469	-	-	-	-	-	-	24,469	-	-	-	-	-	-	-	-	-	-	-	17,598	17,598	-	78,053								
2005	19,259	16,787	2,472	36,852	-	-	-	-	-	-	36,852	-	-	-	-	-	-	-	-	-	-	-	18,441	18,441	-	95,278								
2006	20,798	17,844	2,954	42,781	-	-	-	-	-	-	42,781	-	-	-	-	-	-	-	-	-	-	-	12,438	12,438	-	93,379								
2007	28,784	23,363	5,421	43,038	13,603	29,435	-	-	-	-	-	-	-	-	-	-	-	-	-	-	-	-	17,989	17,989	-	107,936								
2008	35,178	26,479	8,699	54,298	19,032	35,267	-	-	-	-	-	-	-	-	-	-	-	-	-	157	-	564	67,195	67,195	-	180,065								
2009	24,993	20,379	4,614	60,082	30,139	29,944	-	-	-	-	-	-	2,987	2,987	-	-	-	-	-	103	33,466	407	122,589	115,574	7,015	301,451								
2010	18,126	13,002	5,125	64,202	39,289	24,913	-	-	-	-	-	-	2,157	2,071	60	25	-	-	-	12	32,014	4,597	36,154	28,154	8,000	235,013								
2011	28,498	23,221	5,277	63,541	36,880	26,661	-	-	-	-	-	-	1,759	1,497	178	84	-	-	-	416	19,517	6,021	43,079	36,279	6,800	268,681								
2012	22,590	15,752	6,838	68,937	34,058	34,534	-	-	345	-	-	-	481	275	200	6	-	-	-	1,535	925	6,676	52,447	49,447	3,000	255,904								
2013	38,852	34,022	4,830	94,077	33,335	56,705	-	570	3,423	44	-	-	227	195	-	32	-	-	-	1,496	-	11,998	27,654	24,354	3,300	305,184								
2014	48,697	43,244	5,452	99,427	29,781	62,824	820	1,080	4,910	13	-	-	500	-	-	-	500	-	-	3,589	-	12,961	27,629	24,329	3,300	327,461								
2015	64,871	60,384	4,487	98,914	30,842	60,502	1,879	801	4,566	-	-	325	4,444	400	-	-	-	4,000	44	4,398	-	10,276	26,359	19,869	6,490	325,360								

19. 자금별 대출집행실적

대출 집행실적 : 1976~2015 (단위 : 억 원)																					
구분	해투자금										수입자금					채권인수		대외경제협력자금			
	해외투자 자금대출	해외사업 자금대출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해외사업활성화자금대출			주요자원 개발자금	해투자금 총계	수입자금 대출	수입자금대출			수입자금 총계	해외사업 자금대출 (채무증권 인수)	현지법인 사업자금 대출 (채무증권 인수)	채권인수 총계	대외경제 협력자금	대외경제 협력자금 총계	
			현지법인 사업자금 대출	현지법인 사업자금 대출	현지법인 사업자금 대출 (주주대여금)	해외사업 활성화 자금대출	해외사업 활성화 자금대출	해외사업 활성화 자금대출 (출자자금)				수입자금 대출 (온렌딩)	수입기반 자금대출								
1976	57	-	-	-	-	-	-	-	-	57	-	-	-	-	-	-	-	-	-	-	
1977	180	-	-	-	-	-	-	-	-	180	-	-	-	-	-	-	-	-	-	-	
1978	187	-	-	-	-	-	-	-	-	187	-	-	-	-	-	-	-	-	-	-	
1979	40	-	-	-	-	-	-	-	-	40	-	-	-	-	-	-	-	-	-	-	
1980	47	-	-	-	-	-	-	-	-	47	-	-	-	-	-	-	-	-	-	-	
1981	66	-	-	-	-	-	-	-	-	66	-	-	-	-	-	-	-	-	-	-	
1982	426	-	-	-	-	-	-	-	-	426	-	-	-	-	-	-	-	-	-	-	
1983	465	-	-	-	-	-	-	-	-	465	-	-	-	-	-	-	-	-	-	-	
1984	144	-	-	-	-	-	-	-	45	190	-	-	-	-	-	-	-	-	-	-	
1985	36	-	-	-	-	-	-	-	51	87	-	-	-	-	-	-	-	-	-	-	
1986	16	-	-	-	-	-	-	-	-	16	-	-	-	-	-	-	-	-	-	-	
1987	52	-	-	-	-	-	-	-	-	52	-	-	-	-	-	-	-	-	-	-	
1988	285	-	-	-	-	-	-	-	-	285	127	127	-	-	127	-	-	-	-	-	
1989	944	-	-	-	-	-	-	-	-	944	775	775	-	-	775	-	-	-	-	-	
1990	1,395	6	-	-	-	-	-	-	-	1,401	1,201	1,201	-	-	1,201	-	-	-	-	-	
1991	1,000	-	-	-	-	-	-	-	-	1,000	1,978	1,978	-	-	1,978	-	-	-	-	-	
1992	967	-	-	-	-	-	-	-	-	967	1,979	1,979	-	-	1,979	-	-	-	-	-	
1993	776	-	-	-	-	-	-	-	-	776	1,914	1,914	-	-	1,914	-	-	-	-	-	
1994	2,424	-	169	169	-	-	-	-	-	2,593	2,143	2,143	-	-	2,143	-	-	-	-	-	
1995	4,082	-	216	216	-	-	-	-	-	4,298	2,198	2,198	-	-	2,198	-	-	-	-	-	
1996	3,013	-	1,420	1,420	-	-	-	-	-	4,432	2,179	2,179	-	-	2,179	-	-	-	-	-	
1997	5,001	-	1,518	1,518	-	-	-	-	-	6,519	2,505	2,505	-	-	2,505	-	-	-	-	-	
1998	807	-	626	626	-	-	-	-	-	1,434	722	722	-	-	722	-	-	-	-	-	
1999	40	-	13	13	-	-	-	-	-	53	352	352	-	-	352	-	-	-	-	-	
2000	156	-	271	271	-	-	-	-	-	427	599	599	-	-	599	-	-	-	-	-	
2001	114	-	1,415	1,415	-	-	-	-	-	1,529	1,237	1,237	-	-	1,237	-	-	-	476	476	
2002	472	332	3,180	3,180	-	-	-	-	-	3,985	5,044	5,044	-	-	5,044	-	-	-	-	-	
2003	889	598	6,395	6,395	-	-	-	-	-	7,882	9,563	9,563	-	-	9,563	-	-	-	-	-	
2004	2,008	610	6,413	6,413	-	-	-	-	-	9,031	13,533	13,533	-	-	13,533	-	-	-	-	-	
2005	2,246	687	10,558	10,558	-	-	-	-	-	13,491	16,612	16,612	-	-	16,612	-	-	-	-	-	
2006	4,148	655	16,124	16,124	-	-	-	-	-	20,926	24,886	24,886	-	-	24,886	-	-	-	-	-	
2007	5,140	1,080	23,543	23,543	-	-	-	-	-	29,763	28,077	28,077	-	-	28,077	-	-	-	-	-	
2008	8,388	884	43,332	43,332	-	363	-	363	-	52,966	35,025	35,025	-	-	35,025	-	-	-	-	-	
2009	2,419	753	33,949	33,949	-	2,580	-	2,580	-	39,701	36,234	36,234	-	-	36,234	-	-	-	-	-	
2010	24,734	7,382	42,126	42,126	-	1,039	-	1,039	-	75,280	42,118	42,118	-	-	42,118	-	228	228	-	-	
2011	22,228	40	44,676	44,676	-	493	-	493	-	67,437	42,355	42,355	-	-	42,355	-	-	-	-	-	
2012	7,623	334	51,398	51,398	-	300	-	300	-	59,654	49,106	49,106	-	-	49,106	-	-	-	-	-	
2013	6,028	-	63,565	63,565	-	300	-	300	-	69,893	55,455	55,455	-	-	55,455	-	-	-	-	-	
2014	6,655	3,007	73,940	73,940	-	306	-	306	-	83,908	70,395	70,395	-	50	70,445	500	-	500	-	-	
2015	4,762	4,632	104,989	104,973	16	1,973	1,711	262	-	116,357	72,216	71,988	228	197	72,413	-	-	-	-	-	

19. 자금별 대출집행실적

대출 집행실적 : 1976-2015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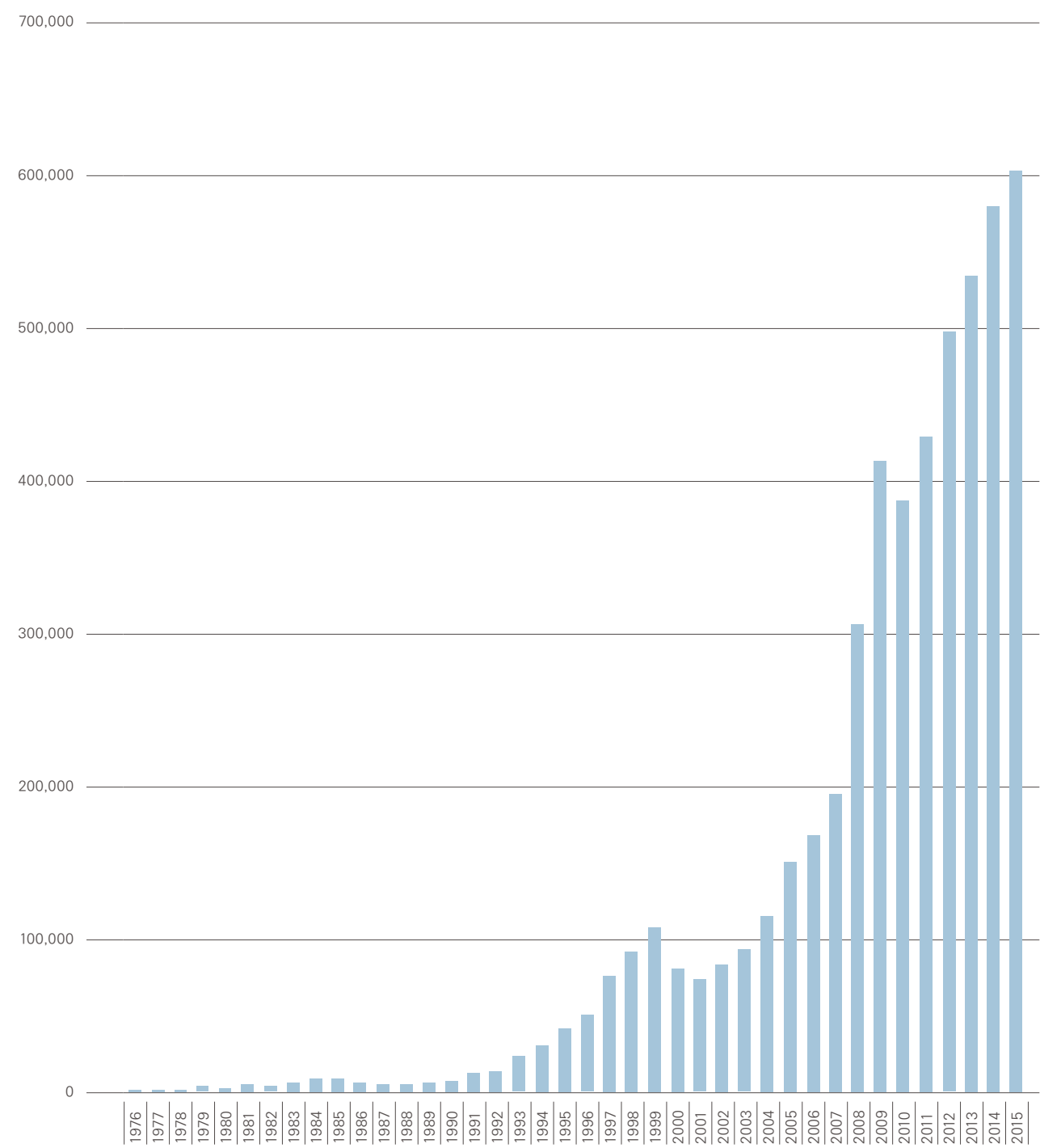
[illegible]

19. 자금별 대출집행실적

대출 집행실적 : 1976-2015
(단위 : 억 원)

구분	매입외환										대출총계
	대지급금										
	대지급금 (하자보수 보증)	대지급금 (수입신용장 발행인수)	대지급금 (대외채무 보증)	지급보증 대지급금 총계	수출관련 외국환	포페이팅	수출환어음 매입	신용장 리파이낸스	수출팩토링	매입외환 총계	
1976	-	-	-	-	-	-	-	-	-	-	923
1977	-	-	-	-	-	-	-	-	-	-	1,262
1978	-	-	-	-	-	-	-	-	-	-	1,404
1979	-	-	-	-	-	-	-	-	-	-	4,036
1980	-	-	-	-	-	-	-	-	-	-	2,848
1981	-	-	-	-	-	-	-	-	-	-	4,515
1982	-	-	-	-	-	-	-	-	-	-	3,908
1983	-	-	-	-	-	-	-	-	-	-	6,318
1984	-	-	-	-	-	-	-	-	-	-	8,961
1985	-	-	-	-	-	-	-	-	-	-	8,605
1986	-	-	-	-	-	-	-	-	-	-	6,074
1987	-	-	-	-	-	-	-	-	-	-	4,966
1988	-	-	-	-	-	-	-	-	-	-	5,300
1989	-	-	-	-	-	-	-	-	-	-	5,806
1990	-	-	-	-	-	-	-	-	-	-	7,305
1991	-	-	-	-	-	-	-	-	-	-	12,854
1992	-	-	-	-	-	-	-	-	-	-	12,945
1993	-	-	-	-	-	-	-	-	-	-	23,447
1994	-	-	-	-	-	-	-	-	-	-	30,338
1995	-	-	-	-	-	-	-	-	-	-	41,780
1996	-	-	-	-	-	-	-	-	-	-	50,227
1997	-	-	-	-	-	-	-	-	-	-	75,421
1998	-	-	-	-	-	-	-	-	-	-	91,782
1999	-	-	-	-	-	-	-	-	-	-	107,887
2000	-	-	-	-	-	-	-	-	-	-	81,134
2001	-	-	-	-	629	233	396	-	-	629	73,367
2002	-	-	-	-	6,160	1,716	4,444	-	-	6,160	83,754
2003	-	-	-	-	7,211	4,073	3,138	-	-	7,211	92,895
2004	-	-	-	-	12,590	4,661	7,929	-	-	12,590	115,403
2005	-	-	-	-	20,983	4,875	6,190	21	9,898	20,983	150,711
2006	-	-	-	-	23,683	8,444	5,087	0.1	10,152	23,683	168,116
2007	-	-	-	-	24,692	7,551	4,418	-	12,723	24,692	194,634
2008	-	-	-	-	31,945	13,044	2,990	-	15,911	31,945	306,251
2009	-	-	-	-	29,016	10,353	2,650	-	16,013	29,016	412,681
2010	-	-	-	-	23,814	17,945	1,093	-	4,776	23,814	387,669
2011	-	-	-	-	38,200	29,943	389	-	7,868	38,200	428,400
2012	-	-	-	-	101,100	48,540	468	-	52,093	101,100	497,282
2013	-	-	-	-	79,580	39,589	201	-	39,790	79,580	533,976
2014	-	-	-	-	79,264	41,154	158	514	37,438	79,264	579,208
2015	-	-	-	-	62,358	32,318	484	-	29,557	62,358	602,152

대출총계 : 1976-2015(단위 : 억 원)



20. 자금별 대출잔액

대출 잔액 : 1976~2015
(단위 : 억 원)

수출자금																										
구분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기반자금대출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 자금대출	수출이행 자금대출	수출이행 자금대출 (상생제작)	수출이행 자금대출 (상생협력)	수출이행 자금대출 (기술신용)	수출이행 자금대출 (단기수출)	연불금융	연불어음 매입	기술제공 자금-제작	기술제공 자금-연불	중소규모 자본재	(구) 중소기업 수출특례 신용대출	수출한 어음부 대출	수출자금 -원자재	수출기반 자금대출	수출기반 자금대출 (수입결제 자금)	수출기반 자금대출 (간접대출)	수출성장 자금대출	수출성장 자금대출 (단기)	수출성장 자금대출 (중기)	수출성장 자금대출 (장기)	수출성장 자금대출 (지식재산권)	수출성장 자금대출 (상생)	수출성장 자금대출 (기술신용)	포괄수출 금융	수출성장 자금대출 (온렌딩)
1976	1,194	712	-	-	-	-	482	-	-	-	-	-	-	-	-	-	-	-	-	-	-	-	-	-	-	-
1977	2,255	1,652	-	-	-	-	504	-	89	11	-	-	-	-	-	-	-	-	-	-	-	-	-	-	-	-
1978	3,441	2,656	-	-	-	-	652	-	97	37	-	-	-	-	-	-	-	-	-	-	-	-	-	-	-	-
1979	7,054	5,842	-	-	-	-	1,079	-	35	99	-	-	-	-	196	196	-	-	-	-	-	-	-	-	-	-
1980	10,519	7,423	-	-	-	-	2,922	-	39	135	-	-	-	-	561	543	18	-	-	-	-	-	-	-	-	-
1981	16,524	10,271	-	-	-	-	6,073	-	37	144	-	-	-	-	658	623	35	-	-	-	-	-	-	-	-	-
1982	19,991	9,189	-	-	-	-	10,611	-	37	154	-	-	-	-	938	881	57	-	-	-	-	-	-	-	-	-
1983	26,038	7,324	-	-	-	-	18,528	-	46	139	-	-	-	-	1,848	1,781	67	-	-	-	-	-	-	-	-	-
1984	22,459	5,698	-	-	-	-	16,716	-	5	40	-	-	-	-	2,011	1,994	17	-	-	-	-	-	-	-	-	-
1985	29,677	6,482	-	-	-	-	23,159	-	-	36	-	-	-	-	2,083	2,048	35	-	-	-	-	-	-	-	-	-
1986	23,110	4,910	-	-	-	-	18,176	-	-	24	-	-	-	-	738	707	31	-	-	-	-	-	-	-	-	-
1987	18,392	4,864	-	-	-	-	13,522	-	-	-	-	-	-	7	289	269	20	-	-	-	-	-	-	-	-	-
1988	15,822	3,890	-	-	-	-	11,923	-	-	-	-	-	-	9	95	68	27	-	-	-	-	-	-	-	-	-
1989	16,842	3,186	-	-	-	-	13,642	-	-	-	-	-	-	15	44	27	17	-	-	-	-	-	-	-	-	-
1990	18,787	3,561	-	-	-	-	15,213	-	-	-	-	-	-	14	379	366	14	-	-	-	-	-	-	-	-	-
1991	18,691	4,654	-	-	-	-	14,020	-	-	-	-	-	-	17	4,114	2,423	1,691	-	-	-	-	-	-	-	-	-
1992	11,370	5,771	-	-	-	-	5,591	-	-	-	-	-	-	8	5,175	1,414	3,761	-	-	-	-	-	-	-	-	-
1993	18,688	13,728	-	-	-	-	4,953	-	-	-	-	-	-	7	4,368	406	3,962	-	-	-	-	-	-	-	-	-
1994	24,084	13,566	-	-	-	-	10,076	-	-	-	-	-	-	441	4,600	679	3,922	-	-	-	-	-	-	-	-	-
1995	30,191	19,084	-	-	-	-	10,852	-	34	-	-	-	-	222	5,634	1,749	3,886	1,400	-	-	-	-	-	-	1,400	-
1996	41,750	31,736	-	-	-	-	9,964	-	39	-	-	-	-	11	6,353	2,317	4,037	2,832	-	-	-	-	-	-	2,832	-
1997	63,427	34,299	-	-	-	-	29,092	-	35	-	-	-	-	-	12,496	6,073	6,423	4,322	-	-	-	-	-	-	4,322	-
1998	42,448	25,230	-	-	-	-	16,040	737	-	-	5	-	437	-	10,197	5,266	4,932	4,025	-	-	-	-	-	-	4,025	-
1999	33,879	15,284	-	-	-	-	15,836	2,300	-	-	97	-	361	-	11,008	7,024	3,984	3,328	-	-	-	-	-	-	3,328	-
2000	34,222	17,691	-	-	-	-	9,236	6,654	-	-	499	-	141	-	13,674	9,788	3,886	3,729	-	-	-	-	-	-	3,729	-
2001	37,069	18,872	-	-	-	-	7,383	6,168	-	-	887	-	3,759	-	17,563	13,460	4,103	4,995	-	-	-	-	-	-	4,995	-
2002	30,506	15,950	-	-	-	-	7,964	5,140	-	-	553	-	900	-	16,113	12,972	3,141	5,437	-	-	-	-	-	-	5,437	-
2003	17,836	6,078	-	-	-	243	4,333	4,739	491	-	1,851	31	69	-	19,726	15,652	4,073	8,765	-	-	-	-	-	-	8,765	-
2004	10,105	3,695	-	-	-	739	1,159	3,004	209	-	1,248	26	24	-	26,344	20,312	6,031	12,860	-	-	-	-	-	-	12,860	-
2005	8,135	1,600	-	-	101	1,117	1,880	1,657	828	-	950	2	-	-	35,463	30,014	5,449	19,309	-	-	-	-	-	-	19,309	-
2006	8,082	3,540	-	-	358	571	1,345	1,136	1,130	-	1	-	-	-	47,449	42,422	5,027	21,837	-	-	-	-	-	-	21,837	-
2007	10,598	5,633	-	-	458	448	739	822	2,497	-	1	-	-	-	68,155	61,650	6,505	26,869	7,230	19,639	-	-	-	-	-	-
2008	17,525	11,136	-	-	280	391	973	743	4,000	-	2	-	-	-	108,397	100,123	8,275	40,324	10,312	30,012	-	-	-	-	-	-
2009	31,996	29,032	-	-	595	952	900	517	-	-	-	-	-	-	106,632	102,251	4,381	36,652	16,318	20,334	-	-	-	-	-	-
2010	32,392	28,653	-	-	317	2,159	840	422	-	-	-	-	-	-	104,031	98,711	5,320	38,623	20,551	18,072	-	-	-	-	-	-
2011	50,413	46,264	-	-	134	2,820	851	344	-	-	-	-	-	-	115,810	109,625	6,184	40,116	17,958	22,158	-	-	-	-	-	-
2012	54,138	49,451	325	-	52	4,310	-	-	-	-	-	-	-	-	107,112	100,210	6,903	39,452	16,912	22,197	-	-	343	-	-	-
2013	74,547	68,515	305	3,739	72	1,916	-	-	-	-	-	-	-	-	116,274	108,698	7,576	44,516	15,145	27,254	-	501	1,604	11	-	-
2014	75,152	66,288	135	8,097	35	596	-	-	-	-	-	-	-	-	150,269	143,976	6,292	49,670	15,492	31,488	240	594	1,856	-	-	-
2015	78,611	70,785	110	7,215	17	483	-	-	-	-	-	-	-	-	199,232	194,801	4,431	46,018	16,090	26,886	284	674	1,760	-	-	325

20. 자금별 대출잔액

대출 잔액 : 1976~2015
(단위 : 억 원)

구분	수출자금										해투자금												
	수출촉진자금대출										무역어음재할인												
	수출촉진 자금대출	수출촉진 자금대출 (시설투자)	수출촉진 자금대출 (기술개발)	수출촉진 자금대출 (해외시장 개척활동)	수출촉진 자금대출 (기타)	수출촉진 자금대출 (수출기업 인수)	수출촉진 자금대출 (온렌딩)	현지법인 사업자금 대출 (간접대출)	수출 중소기업 네트워크 대출	해외사업 활성화 자금대출 (간접대출)	무역어음 재할인	무역어음 재할인 (외화)	무역어음 재할인 (원화)	수출자금 총계	해외투자 자금대출	해외사업 자금대출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해외사업활성화자금대출			
																	현지법인 사업자금 대출	현지법인 사업자금 대출	현지법인 사업자금 대출 (주주대여금)	해외사업 활성화 자금대출	해외사업 활성화 자금대출	해외사업 활성화 자금대출 (출자자금)	
1976	-	-	-	-	-	-	-	-	-	-	-	-	-	1,194	3,214	-	-	-	-	-	-	-	-
1977	-	-	-	-	-	-	-	-	-	-	-	-	-	2,255	3,393	-	-	-	-	-	-	-	-
1978	-	-	-	-	-	-	-	-	-	-	-	-	-	3,441	3,580	-	-	-	-	-	-	-	-
1979	-	-	-	-	-	-	-	-	-	-	-	-	-	7,250	3,620	-	-	-	-	-	-	-	-
1980	-	-	-	-	-	-	-	-	-	-	-	-	-	11,080	4,981	-	-	-	-	-	-	-	-
1981	-	-	-	-	-	-	-	-	-	-	-	-	-	17,182	5,353	-	-	-	-	-	-	-	-
1982	-	-	-	-	-	-	-	-	-	-	-	-	-	20,929	6,148	-	-	-	-	-	-	-	-
1983	-	-	-	-	-	-	-	-	-	-	-	-	-	27,885	6,996	-	-	-	-	-	-	-	-
1984	-	-	-	-	-	-	-	-	-	-	-	-	-	24,469	1,193	-	-	-	-	-	-	-	-
1985	-	-	-	-	-	-	-	-	-	-	-	-	-	31,760	1,250	-	-	-	-	-	-	-	-
1986	-	-	-	-	-	-	-	-	-	-	-	-	-	23,848	1,100	-	-	-	-	-	-	-	-
1987	-	-	-	-	-	-	-	-	-	-	-	-	-	18,681	923	-	-	-	-	-	-	-	-
1988	-	-	-	-	-	-	-	-	-	-	-	-	-	15,917	733	-	-	-	-	-	-	-	-
1989	-	-	-	-	-	-	-	-	-	-	-	-	-	16,886	1,567	-	-	-	-	-	-	-	-
1990	-	-	-	-	-	-	-	-	-	-	-	-	-	19,167	2,905	6	-	-	-	-	-	-	-
1991	-	-	-	-	-	-	-	-	-	-	-	-	-	22,806	3,774	-	-	-	-	-	-	-	-
1992	-	-	-	-	-	-	-	-	-	-	-	-	-	16,545	4,313	-	-	-	-	-	-	-	-
1993	-	-	-	-	-	-	-	-	-	-	-	-	-	23,056	4,484	-	-	-	-	-	-	-	-
1994	-	-	-	-	-	-	-	-	-	-	-	-	-	28,684	5,652	-	169	169	-	-	-	-	-
1995	-	-	-	-	-	-	-	-	-	-	-	-	-	37,226	8,743	-	360	360	-	-	-	-	-
1996	-	-	-	-	-	-	-	-	-	-	-	-	-	50,936	11,317	-	1,739	1,739	-	-	-	-	-
1997	-	-	-	-	-	-	-	-	-	-	-	-	-	80,244	21,116	-	4,287	4,287	-	-	-	-	-
1998	-	-	-	-	-	-	-	-	-	-	8,151	8,151	-	64,822	15,646	-	3,883	3,883	-	-	-	-	-
1999	-	-	-	-	-	-	-	-	-	-	17,716	17,716	-	65,931	9,898	-	3,309	3,309	-	-	-	-	-
2000	-	-	-	-	-	-	-	-	-	-	7,223	7,223	-	58,847	8,415	-	3,184	3,184	-	-	-	-	-
2001	-	-	-	-	-	-	-	-	-	-	4,606	4,606	-	64,233	3,760	-	3,607	3,607	-	-	-	-	-
2002	-	-	-	-	-	-	-	-	-	-	4,037	4,037	-	56,093	2,259	332	4,796	4,796	-	-	-	-	-
2003	-	-	-	-	-	-	-	-	-	-	4,899	4,899	-	51,225	2,358	929	8,993	8,993	-	-	-	-	-
2004	-	-	-	-	-	-	-	-	-	-	6,326	6,326	-	55,635	3,433	1,415	10,050	10,050	-	-	-	-	-
2005	-	-	-	-	-	-	-	-	-	-	5,654	5,654	-	68,561	4,984	2,023	15,262	15,262	-	-	-	-	-
2006	-	-	-	-	-	-	-	-	-	-	7,768	7,768	-	85,136	7,820	2,377	21,922	21,922	-	-	-	-	-
2007	-	-	-	-	-	-	-	-	-	-	9,222	9,222	-	114,843	10,566	1,922	35,633	35,633	-	-	-	-	-
2008	-	-	-	-	-	-	-	157	-	546	100,236	100,236	-	267,185	20,803	3,207	74,290	74,290	-	363	-	363	-
2009	2,987	2,987	-	-	-	-	-	234	20,183	851	11,941	7,426	4,515	211,476	19,988	3,178	78,131	78,131	-	2,650	-	2,650	-
2010	5,086	5,000	60	25	-	-	-	202	11,489	3,867	19,012	15,512	3,500	214,702	36,394	9,811	87,217	87,217	-	3,623	-	3,623	-
2011	6,609	6,334	209	67	-	-	-	361	10,124	4,232	23,209	19,909	3,300	250,874	45,517	8,768	96,951	96,951	-	4,182	-	4,182	-
2012	6,435	6,062	363	10	-	-	-	1,401	4,685	4,290	9,265	7,765	1,500	226,780	42,423	8,344	106,978	106,978	-	4,169	-	4,169	-
2013	5,825	5,516	277	32	-	-	-	1,893	3,920	10,656	8,087	6,437	1,650	265,718	34,503	2,196	123,775	123,775	-	4,397	-	4,397	-
2014	5,055	4,337	213	5	500	-	-	1,458	2,469	18,873	6,047	4,397	1,650	308,993	29,685	2,798	152,466	152,466	-	4,899	-	4,899	-
2015	8,440	4,295	100	-	-	4,000	44	2,363	2,469	20,100	7,026	3,926	3,100	364,259	27,167	3,458	190,051	190,034	16	6,646	1,772	4,873	-

20. 자금별 대출잔액

대출 잔액 : 1976~2015
(단위 : 억 원)

구분	해투자금		수입자금		채권인수				대외경제협력자금			역외금융		특별수입금융				기타대출								
	주요자원 개발자금	해투자금 총계	수입자금 대출	수입자금대출				수입자금 총계	해외사업 자금대출 (채무증권 인수)	현지법인 사업자금 대출 (채무증권 인수)	채권인수 총계	대외경제 협력자금	대외경제 협력자금 총계	역외대출	역외금융 총계	IBRD	BOK	JEXIM	특별수입 금융 총계	기업 구조조정 자금대출	기업구조조정자금대출				보증채무 분할변제	
				수입자금 대출	수입자금 대출 (온렌딩)	수입기반 자금대출	기업 구조조정 운영자금 대출														기업 구조조정 기타대출	현지법인 인수	역외인수 자산			
1976	-	3,214	-	-	-	-	-	-	-	-	-	-	-	-	-	-	-	-	-	-	-	-	-	-	-	-
1977	-	3,393	-	-	-	-	-	-	-	-	-	-	-	-	-	-	-	-	-	-	-	-	-	-	-	-
1978	-	3,580	-	-	-	-	-	-	-	-	-	-	-	-	-	-	-	-	-	-	-	-	-	-	-	-
1979	-	3,620	-	-	-	-	-	-	-	-	-	-	-	-	-	-	-	-	-	-	-	-	-	-	-	-
1980	-	4,981	-	-	-	-	-	-	-	-	-	-	-	-	-	-	-	-	-	-	-	-	-	-	-	-
1981	-	5,353	-	-	-	-	-	-	-	-	-	-	-	-	-	-	-	-	-	-	-	-	-	-	-	-
1982	-	6,148	-	-	-	-	-	-	-	-	-	-	-	-	-	-	-	-	-	-	-	-	-	-	-	-
1983	-	6,996	-	-	-	-	-	-	-	-	-	-	-	-	-	-	-	-	-	-	-	-	-	-	-	-
1984	407	1,600	-	-	-	-	-	-	-	-	-	-	-	-	-	-	-	-	-	-	-	-	-	-	-	-
1985	488	1,738	-	-	-	-	-	-	-	-	-	-	-	-	-	-	-	-	-	-	-	-	-	-	-	-
1986	472	1,572	-	-	-	-	-	-	-	-	-	-	-	-	-	-	-	-	-	-	-	-	-	-	-	-
1987	435	1,358	-	-	-	-	-	-	-	-	-	-	-	-	-	-	-	-	-	-	-	-	-	-	-	-
1988	375	1,109	127	-	-	-	127	-	-	-	-	-	-	-	-	-	-	-	-	-	-	-	-	-	-	-
1989	373	1,940	775	-	-	-	775	-	-	-	-	-	-	-	-	-	-	-	-	-	-	-	-	-	-	-
1990	393	3,304	1,200	-	-	-	1,200	-	-	-	-	-	-	-	-	-	-	-	-	-	-	-	-	-	-	-
1991	417	4,191	2,314	-	-	-	2,314	-	-	-	-	-	-	-	-	-	-	-	-	-	-	-	-	-	-	-
1992	432	4,745	3,508	-	-	-	3,508	-	-	-	-	-	-	-	-	-	-	-	-	-	-	-	-	-	-	-
1993	443	4,927	4,629	-	-	-	4,629	-	-	-	-	-	-	109	109	-	-	-	-	-	-	-	-	-	-	-
1994	433	6,253	5,824	-	-	-	5,824	-	-	-	-	-	-	-	-	-	-	-	-	-	-	-	-	-	-	-
1995	425	9,528	6,393	-	-	-	6,393	-	-	-	-	-	-	1,485	1,485	-	-	-	-	-	-	-	-	-	-	-
1996	450	13,506	6,976	-	-	-	6,976	-	-	-	-	-	-	3,424	3,424	-	-	-	-	-	-	-	-	-	-	-
1997	755	26,158	9,922	-	-	-	9,922	-	-	-	-	-	-	7,432	7,432	-	-	-	-	-	-	-	-	-	-	-
1998	644	20,173	5,856	-	-	-	5,856	-	-	-	-	-	-	4,898	4,898	3,999	8,307	7,508	19,815	-	-	-	2,097	-	-	-
1999	611	13,818	3,889	-	-	-	3,889	-	-	-	-	-	-	3,116	3,116	2,021	2,085	4,080	8,186	-	-	-	1,609	-	-	-
2000	672	12,271	3,336	-	-	-	3,336	-	-	-	-	-	-	1,602	1,602	2	-	-	2	38	-	38	461	-	-	-
2001	546	7,913	3,301	-	-	-	3,301	-	-	-	-	476	476	919	919	-	-	-	-	40	-	40	126	-	-	-
2002	-	7,387	3,577	-	-	-	3,577	-	-	-	-	369	369	1,874	1,874	-	-	-	-	34	-	34	88	1	-	432
2003	-	12,280	6,879	-	-	-	6,879	-	-	-	-	307	307	6,583	6,583	-	-	-	-	20	-	20	2,352	56	-	247
2004	-	14,898	11,102	-	-	-	11,102	-	-	-	-	214	214	4,845	4,845	-	-	-	-	6	-	6	2,174	1	-	107
2005	-	22,269	11,945	-	-	-	11,945	-	-	-	-	156	156	5,384	5,384	-	-	-	-	-	-	-	2,172	1	-	-
2006	-	32,119	13,000	-	-	-	13,000	-	-	-	-	95	95	6,626	6,626	-	-	-	-	-	-	-	2,171	1	-	-
2007	-	48,122	15,502	-	-	-	15,502	-	-	-	-	48	48	6,317	6,317	-	-	-	-	218	-	218	2,170	1	-	-
2008	-	98,662	23,264	-	-	-	23,264	-	-	-	-	-	-	7,314	7,314	-	-	-	-	218	-	218	2,171	1	-	-
2009	-	103,946	24,638	-	-	-	24,638	-	-	-	-	-	-	7,031	7,031	-	-	-	-	100	-	100	51	1	-	-
2010	-	137,044	25,011	-	-	-	25,011	-	228	228	-	-	-	7,353	7,353	-	-	-	-	99	-	99	50	1	-	-
2011	-	155,418	22,345	-	-	-	22,345	-	231	231	-	-	-	7,777	7,777	-	-	-	-	2,665	2,551	114	50	1	-	-
2012	-	161,913	22,675	-	-	-	22,675	-	214	214	-	-	-	7,302	7,302	-	-	-	-	10,673	10,545	128	50	1	-	-
2013	-	164,871	20,076	-	-	-	20,076	-	-	-	-	-	-	6,511	6,511	-	-	-	-	13,687	13,657	30	-	-	-	8
2014	-	189,848	38,794	-	-	50	38,844	500	-	500	-	-	-	6,324	6,324	-	-	-	-	17,744	17,645	98	-	-	-	8
2015	-	227,322	32,949	32,721	228	197	33,146	500	-	500	-	-	-	6,120	6,120	-	-	-	-	26,378	26,287	91	-	-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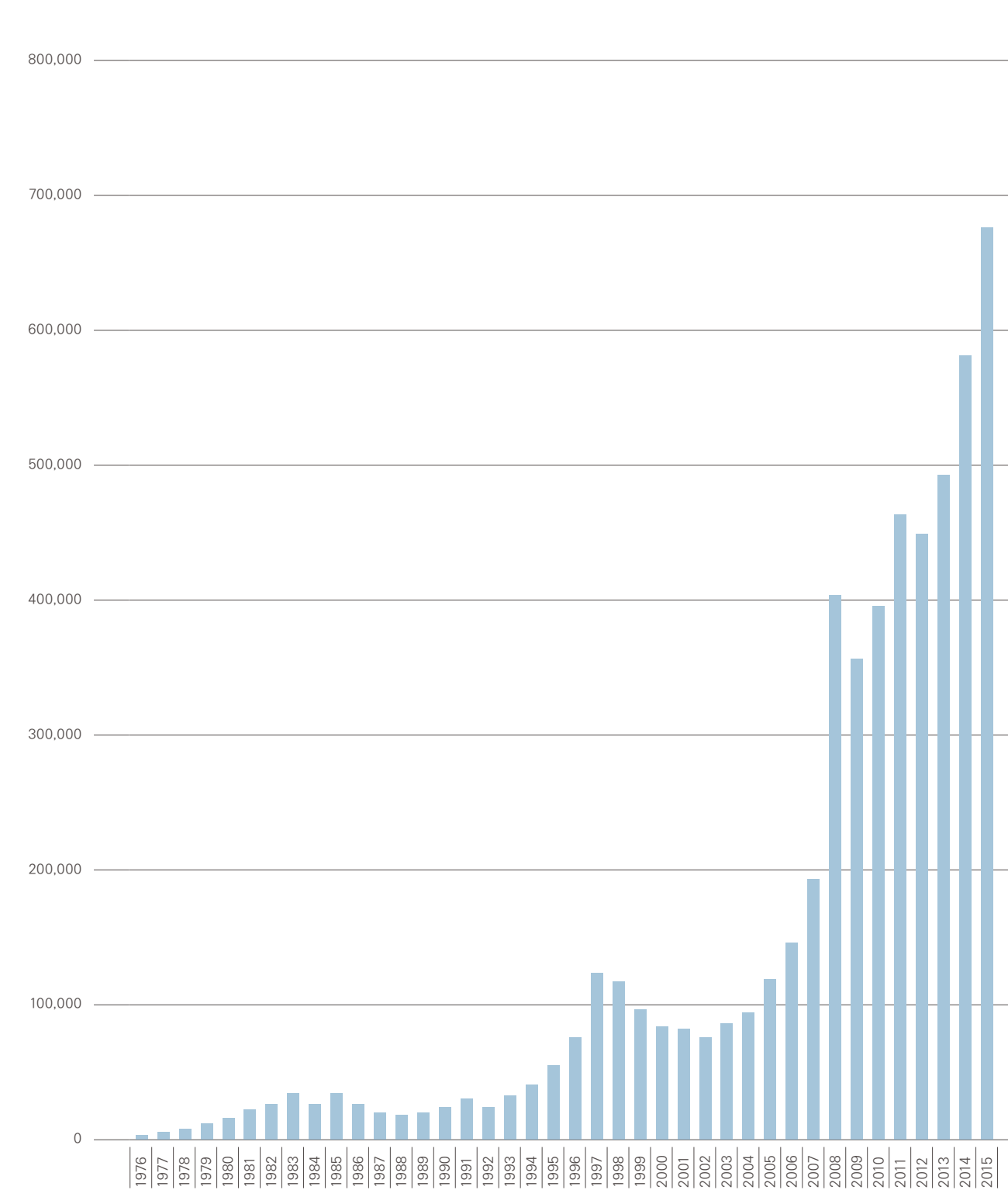
20. 자금별 대출잔액

대출 잔액 : 1976-2015
(단위 : 억 원)

구분	사모사채				출자전환채권		지급보증대지급금				대지급금					매입외환					대출총계	
	내국수입 유산스	기타대출 총계	기업구조조정 운영자금대출 (사모사채 인수)	역외 사모사채	사모사채 총계	출자전환 채권	출자전환 채권 총계	대지급금	대지급금 (선수금 환급보증)	대지급금 (계약이행 보증)	대지급금 (입찰보증)	대지급금 (하자보수 보증)	대지급금 (수입신용장 발행인수)	대지급금 (대외채무 보증)	지급보증 대지급금 총계	수출관련 외국환	포페이팅	수출환어음 매입	신용장 리파이낸스	수출팩토링		매입외환 총계
1976	-	-	-	-	-	-	-	-	-	-	-	-	-	-	-	-	-	-	-	-	-	4,408
1977	-	-	-	-	-	-	-	-	-	-	-	-	-	-	-	-	-	-	-	-	-	5,648
1978	-	-	-	-	-	-	-	-	-	-	-	-	-	-	-	-	-	-	-	-	-	7,021
1979	-	-	-	-	-	-	-	-	-	-	-	-	-	-	-	-	-	-	-	-	-	10,871
1980	-	-	-	-	-	-	-	-	-	-	-	-	-	-	-	-	-	-	-	-	-	16,061
1981	-	-	-	-	-	-	-	-	-	-	-	-	-	-	-	-	-	-	-	-	-	22,535
1982	-	-	-	-	-	-	-	-	-	-	-	-	-	-	-	-	-	-	-	-	-	27,077
1983	-	-	-	-	-	-	-	-	-	-	-	-	-	-	-	-	-	-	-	-	-	34,881
1984	-	-	-	-	-	-	-	-	-	-	-	-	-	-	-	-	-	-	-	-	-	26,069
1985	-	-	-	-	-	-	-	-	-	-	-	-	-	-	-	-	-	-	-	-	-	33,499
1986	-	-	-	-	-	-	-	-	-	-	-	-	-	-	-	-	-	-	-	-	-	25,421
1987	-	-	-	-	-	-	-	-	-	-	-	-	-	-	-	-	-	-	-	-	-	20,039
1988	-	-	-	-	-	-	-	-	-	-	-	-	-	-	-	-	-	-	-	-	-	17,153
1989	-	-	-	-	-	-	-	-	-	-	-	-	-	-	-	-	-	-	-	-	-	19,601
1990	-	-	-	-	-	-	-	-	-	-	-	-	-	-	-	-	-	-	-	-	-	23,671
1991	-	-	-	-	-	-	-	-	-	-	-	-	-	-	-	-	-	-	-	-	-	29,311
1992	-	-	-	-	-	-	-	-	-	-	-	-	-	-	-	-	-	-	-	-	-	24,798
1993	-	-	-	-	-	-	-	-	-	-	-	-	-	-	-	-	-	-	-	-	-	32,722
1994	-	-	-	-	-	-	-	-	-	-	-	-	-	-	-	-	-	-	-	-	-	40,761
1995	-	-	-	-	-	-	-	-	-	-	-	-	-	-	-	-	-	-	-	-	-	54,631
1996	-	-	-	-	-	-	-	-	-	-	-	-	-	-	-	-	-	-	-	-	-	74,842
1997	-	-	-	-	-	-	-	-	-	-	-	-	-	-	-	-	-	-	-	-	-	123,756
1998	-	2,097	-	-	-	-	-	21	-	-	-	-	21	-	21	-	-	-	-	-	-	117,682
1999	-	1,609	347	-	347	-	-	285	-	-	-	-	285	-	285	-	-	-	-	-	-	97,180
2000	-	498	6,057	-	6,057	-	-	312	-	-	-	-	312	-	312	-	-	-	-	-	-	82,926
2001	-	166	4,624	-	4,624	-	-	11	-	-	-	-	11	-	11	332	206	126	-	-	332	81,974
2002	-	555	1,603	-	1,603	31	31	163	-	-	-	-	163	-	163	4,858	418	4,440	-	-	4,858	76,510
2003	820	3,494	111	63	174	496	496	157	-	-	-	-	157	-	157	3,605	1,822	1,783	-	-	3,605	85,199
2004	958	3,247	106	389	495	120	120	9	-	-	-	-	9	-	9	3,844	1,751	2,093	-	-	3,844	94,409
2005	1,128	3,300	45	327	373	5	5	9	1	-	-	-	8	-	9	6,377	2,175	2,656	4	1,542	6,377	118,379
2006	1,087	3,259	35	254	289	-	-	35	-	-	-	-	35	-	35	6,160	2,648	2,172	-	1,340	6,160	146,719
2007	1,146	3,535	20	-	20	-	-	8	-	-	-	-	8	-	8	5,418	2,574	1,925	-	919	5,418	193,812
2008	671	3,060	27	-	27	-	-	25	-	-	-	-	25	-	25	4,730	2,536	368	-	1,827	4,730	404,269
2009	1,446	1,597	-	-	-	11	11	1,099	1,042	-	-	-	56	-	1,099	5,596	2,893	866	-	1,837	5,596	355,394
2010	2,247	2,396	-	-	-	72	72	422	422	-	-	-	-	-	422	8,671	5,142	199	-	3,330	8,671	395,900
2011	2,563	5,279	-	-	-	37	37	704	703	-	1	-	-	-	704	20,388	12,213	59	-	8,115	20,388	463,054
2012	2,070	12,794	998	-	998	48	48	850	850	-	0.4	-	-	-	850	15,709	11,844	140	-	3,724	15,709	449,282
2013	1,950	15,645	138	-	138	7,792	7,792	375	305	56	0.4	-	9	5	375	12,141	7,939	59	-	4,143	12,141	493,268
2014	5,034	22,786	482	-	482	122	122	320	99	216	0.2	-	-	5	320	13,629	7,787	10	97	5,735	13,629	581,849
2015	4,682	31,060	394	-	394	118	118	238	59	88	0.3	-	-	91	238	13,486	8,474	266	-	4,746	13,486	676,642

20. 자금별 대출잔액

대출총계 : 1976~2015(단위 : 억 원)



21. 지역별 대출승인실적

지역별 대출승인실적 : 1976~2015

(단위 : 억 원)

구분	아시아	중동	유럽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EU 또는 UN 기관	미상	합계
1976	33	-	718	153	-	31	-	-	-	935
1977	213	87	423	-	85	531	5	-	-	1,344
1978	1	1,027	192	-	40	194	-	-	-	1,454
1979	1,121	58	2,675	695	471	10	45	-	-	5,074
1980	464	612	25	1,107	370	21	37	-	-	2,636
1981	732	-	2,571	1,277	477	235	112	-	-	5,404
1982	970	1,157	2,393	1,201	759	-	188	-	-	6,667
1983	3,058	316	1,664	1,425	1	3	109	-	-	6,575
1984	3,323	1,285	3,937	1,971	277	14	132	-	-	10,939
1985	1,858	685	2,259	1,429	75	25	261	-	-	6,591
1986	639	663	929	680	23	114	8	-	-	3,056
1987	4,011	33	3,183	562	523	1,213	5	-	-	9,530
1988	424	-	1,805	554	76	14	11	-	-	2,883
1989	1,405	289	3,414	877	362	510	85	-	-	6,942
1990	1,278	68	5,384	1,496	358	-	444	-	-	9,029
1991	1,612	289	9,168	1,543	251	1,569	374	-	-	14,806
1992	3,036	1,211	2,650	2,973	917	2,535	51	-	-	13,374
1993	17,560	71	5,351	7,835	410	110	95	-	-	31,432
1994	14,057	5,507	5,657	9,871	927	2,141	564	-	-	38,725
1995	26,540	1,164	5,071	4,749	542	418	506	-	-	38,989
1996	30,957	1,730	5,091	9,858	4,683	1,444	453	-	-	54,217
1997	42,467	9,154	9,601	13,725	2,183	4,090	1,097	-	-	82,318
1998	22,362	5,430	11,169	9,543	10,506	1,910	214	-	-	61,132
1999	28,281	12,237	22,107	16,643	10,271	4,956	525	-	-	95,020
2000	28,961	5,039	21,320	15,725	5,106	2,194	933	-	-	79,277
2001	25,818	14,478	25,872	7,909	4,737	863	2,123	0.4	-	81,801
2002	30,687	7,383	21,578	8,078	4,077	2,573	1,032	-	-	75,408
2003	43,241	25,827	17,969	21,170	8,302	1,593	822	15	6	118,944
2004	69,834	12,048	42,645	25,640	3,079	1,161	847	19	29	155,303
2005	70,622	33,836	34,972	22,107	7,758	536	1,146	-	857	171,834
2006	90,456	32,865	38,170	20,718	5,651	1,430	4,276	-	3,423	196,989
2007	112,960	30,079	42,032	23,761	9,648	6,579	2,587	-	1,808	229,453
2008	148,942	33,247	48,692	28,665	8,344	1,655	2,604	-	0.4	272,150
2009	168,020	34,746	69,438	51,830	23,968	6,185	6,461	-	1,929	362,576
2010	182,822	75,222	85,206	75,535	35,086	4,069	15,372	-	99	473,412
2011	212,864	109,577	108,182	74,772	25,825	5,216	6,503	-	4	542,944
2012	240,659	201,459	90,014	78,701	15,311	4,409	17,936	-	25	648,514
2013	239,987	106,339	95,427	69,731	26,419	3,095	15,261	-	-	556,260
2014	251,326	93,534	111,567	71,493	36,409	5,274	22,349	-	-	591,951
2015	275,674	65,924	97,635	74,737	21,001	3,237	12,352	-	-	550,559

22. 지역별 대출집행실적

지역별 대출집행실적 : 1976~2015
(단위 : 억 원)

구분	아시아	중동	유럽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EU 또는 UN 기관	미상	합계
1976	33	-	678	153	-	4	55	-	-	923
1977	186	87	398	-	78	508	5	-	-	1,262
1978	1	956	185	-	37	225	-	-	-	1,404
1979	990	81	2,094	436	382	9	44	-	-	4,036
1980	672	584	294	884	328	52	34	-	-	2,848
1981	564	-	1,966	1,141	600	225	20	-	-	4,515
1982	687	451	967	1,099	647	-	58	-	-	3,908
1983	1,918	532	2,133	1,320	126	32	257	-	-	6,318
1984	2,762	705	3,193	1,945	212	3	142	-	-	8,961
1985	2,531	795	3,405	1,513	250	23	89	-	-	8,605
1986	1,771	736	2,016	1,147	98	129	176	-	-	6,074
1987	1,558	382	1,780	385	256	556	48	-	-	4,966
1988	1,744	147	1,813	848	278	460	11	-	-	5,300
1989	1,184	44	2,783	886	372	467	70	-	-	5,806
1990	1,669	104	3,773	937	327	57	438	-	-	7,305
1991	1,632	277	8,329	1,478	281	720	136	-	-	12,854
1992	2,587	553	4,417	2,348	579	2,263	198	-	-	12,945
1993	11,414	532	5,100	5,114	454	687	145	-	-	23,447
1994	11,928	2,291	5,719	8,071	385	1,365	579	-	-	30,338
1995	22,705	3,237	5,343	8,140	1,134	678	543	-	-	41,780
1996	29,232	2,738	4,470	8,753	3,182	1,403	449	-	-	50,227
1997	42,734	3,899	10,420	11,153	4,351	2,388	475	-	-	75,421
1998	26,527	8,357	11,436	12,315	5,919	2,026	668	-	-	67,247
1999	25,774	7,221	16,510	17,782	7,032	2,830	563	-	-	77,710
2000	28,428	7,348	18,762	16,118	5,840	3,544	917	-	-	80,957
2001	26,906	6,083	23,790	6,495	6,951	1,471	1,671	0.4	-	73,367
2002	30,579	10,745	26,466	8,028	3,934	2,615	1,387	-	-	83,754
2003	37,107	11,883	16,668	17,110	8,333	951	822	15	6	92,895
2004	55,987	13,342	20,058	21,260	3,071	790	847	19	29	115,403
2005	69,206	20,724	32,148	20,537	5,705	510	1,023	-	857	150,711
2006	81,198	23,263	33,164	18,597	5,458	1,268	3,255	-	1,914	168,116
2007	93,506	28,346	41,900	22,496	4,388	728	2,366	-	904	194,634
2008	129,127	42,408	40,676	26,515	7,012	4,606	2,346	-	0.2	252,690
2009	147,871	43,910	66,367	42,936	15,263	5,359	5,768	-	965	328,439
2010	154,954	53,691	74,661	53,438	32,080	5,183	13,638	-	25	387,669
2011	174,198	76,735	71,915	64,366	28,993	6,125	6,065	-	2	428,400
2012	229,050	86,509	73,323	77,253	15,589	4,723	10,811	-	25	497,282
2013	246,341	94,938	89,723	67,896	20,228	3,400	11,450	-	-	533,976
2014	253,002	96,434	110,757	73,732	20,240	4,364	20,679	-	-	579,208
2015	293,373	81,914	98,073	73,856	37,696	3,361	13,844	-	-	602,116

지역별 대출잔액 : 1976~2015
(단위 : 억 원)

구분	아시아	중동	유럽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EU 또는 UN 기관	미상	합계
1976	3,206	0.3	967	153	22	4	55	-	-	4,408
1977	3,375	87	1,365	153	101	508	60	-	-	5,648
1978	3,375	1,043	1,531	153	126	733	60	-	-	7,021
1979	4,368	1,036	3,537	589	495	742	104	-	-	10,871
1980	6,351	1,811	4,377	1,530	908	934	150	-	-	16,061
1981	7,587	1,875	7,494	2,696	1,528	1,182	175	-	-	22,535
1982	8,665	2,025	8,823	3,861	2,230	1,233	239	-	-	27,077
1983	11,100	2,612	11,936	4,930	2,494	1,318	491	-	-	34,881
1984	6,765	1,201	9,421	5,592	2,203	400	486	-	-	26,069
1985	9,133	2,020	12,414	6,883	2,124	350	575	-	-	33,499
1986	8,470	2,208	8,561	4,008	1,461	219	493	-	-	25,421
1987	7,530	1,547	5,466	3,344	1,029	702	421	-	-	20,039
1988	6,539	881	5,707	1,836	942	943	306	-	-	17,153
1989	6,541	637	6,847	2,612	1,274	1,396	294	-	-	19,601
1990	7,353	536	9,230	2,837	1,549	1,497	670	-	-	23,671
1991	6,816	615	14,939	3,434	1,295	1,511	701	-	-	29,311
1992	7,105	715	9,217	3,442	1,446	2,111	762	-	-	24,798
1993	14,566	750	10,505	4,335	1,232	574	760	-	-	32,722
1994	17,288	2,807	12,009	5,144	1,003	1,365	1,009	-	-	40,626
1995	31,313	4,660	11,120	4,629	1,339	752	819	-	-	54,631
1996	43,854	5,494	12,094	7,877	3,492	1,279	752	-	-	74,842
1997	73,771	8,198	19,526	13,482	5,739	1,830	1,210	-	-	123,756
1998	50,746	8,940	17,009	12,129	4,151	1,439	1,334	-	-	95,749
1999	42,567	8,025	16,448	11,237	5,719	1,513	1,244	-	-	86,753
2000	33,263	10,085	16,171	8,332	4,925	2,206	1,075	-	-	76,056
2001	30,933	9,726	19,587	6,157	7,193	1,677	1,901	-	-	77,174
2002	29,868	12,054	15,825	4,934	6,829	3,328	1,315	5	-	74,158
2003	31,210	9,515	13,174	12,781	10,978	2,086	1,118	16	0.4	80,879
2004	38,501	12,459	14,850	15,723	8,274	106	987	0.4	27	90,928
2005	50,733	17,081	24,662	13,732	7,454	102	937	-	317	115,019
2006	56,841	20,198	38,298	16,641	8,229	1,080	1,634	-	470	143,390
2007	72,286	30,988	59,161	19,319	5,966	324	1,570	-	636	190,250
2008	112,327	60,519	83,549	27,665	8,842	3,882	1,516	-	-	298,301
2009	125,129	67,813	97,841	35,864	13,781	7,716	4,541	-	2	352,687
2010	133,780	71,063	99,110	42,915	26,385	11,117	8,640	-	-	393,009
2011	153,455	88,456	89,684	60,591	40,161	15,700	8,985	-	1	457,034
2012	164,885	76,212	82,847	55,718	42,604	14,615	10,323	-	3	447,207
2013	195,409	95,476	89,367	41,664	38,004	11,552	13,452	-	-	484,924
2014	230,736	110,917	111,372	46,977	38,363	13,145	29,789	-	-	581,300
2015	277,500	115,270	130,073	54,969	56,721	11,453	30,656	-	-	676,642

24. 보증승인실적

보증승인실적 : 1976~2015
(단위 : 억 원)

이행성보증																			
구분	수출이행성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수입이행성보증				이행성 보증 총계
	수출이행성 보증	수출이행성 보증 (선수금환급)	수출이행성 보증 (계약이행)	수출이행성 보증 (입찰)	수출이행성 보증 (하자보수)	수출이행성 보증 (유보금)	수출이행성 보증 (기타이행성)	수출이행성 보증 (기술신용)	해외사업 이행성보증	해외사업 이행성보증 (선수금환급)	해외사업 이행성보증 (계약이행)	해외사업 이행성보증 (입찰)	해외사업 이행성보증 (하자보수)	해외사업 이행성보증 (유보금)	해외사업 이행성보증 (기타이행성)	수입이행성 보증	수입이행성 보증 (계약이행)	수입이행성 보증 (기타이행성)	
1976	-	-	-	-	-	-	-	-	-	-	-	-	-	-	-	-	-	-	-
1977	-	-	-	-	-	-	-	-	-	-	-	-	-	-	-	-	-	-	-
1978	-	-	-	-	-	-	-	-	-	-	-	-	-	-	-	-	-	-	-
1979	-	-	-	-	-	-	-	-	-	-	-	-	-	-	-	-	-	-	-
1980	-	-	-	-	-	-	-	-	-	-	-	-	-	-	-	-	-	-	-
1981	69	69	-	-	-	-	-	-	-	-	-	-	-	-	-	-	-	-	69
1982	167	167	-	-	-	-	-	-	-	-	-	-	-	-	-	-	-	-	167
1983	2,329	2,174	155	-	-	-	-	-	-	-	-	-	-	-	-	-	-	-	2,329
1984	2,055	1,843	212	-	-	-	-	-	-	-	-	-	-	-	-	-	-	-	2,055
1985	1,170	1,170	-	-	-	-	-	-	-	-	-	-	-	-	-	-	-	-	1,170
1986	522	522	-	-	-	-	-	-	-	-	-	-	-	-	-	-	-	-	522
1987	1,493	1,344	150	-	-	-	-	-	-	-	-	-	-	-	-	-	-	-	1,493
1988	446	446	-	-	-	-	-	-	-	-	-	-	-	-	-	-	-	-	446
1989	-	-	-	-	-	-	-	-	-	-	-	-	-	-	-	-	-	-	-
1990	-	-	-	-	-	-	-	-	-	-	-	-	-	-	-	-	-	-	-
1991	2,875	2,875	-	-	-	-	-	-	-	-	-	-	-	-	-	-	-	-	2,875
1992	2,212	2,212	-	-	-	-	-	-	-	-	-	-	-	-	-	-	-	-	2,212
1993	3,299	3,299	-	-	-	-	-	-	-	-	-	-	-	-	-	-	-	-	3,299
1994	2,703	2,148	555	-	-	-	-	-	-	-	-	-	-	-	-	-	-	-	2,703
1995	4,780	3,961	819	-	-	-	-	-	-	-	-	-	-	-	-	-	-	-	4,780
1996	6,066	5,831	236	-	-	-	-	-	-	-	-	-	-	-	-	-	-	-	6,066
1997	57,455	53,936	3,519	-	-	-	-	-	-	-	-	-	-	-	-	-	-	-	57,455
1998	33,075	29,050	3,429	487	90	19	-	-	-	-	-	-	-	-	-	-	-	-	33,075
1999	24,058	17,687	4,577	1,127	571	38	57	-	-	-	-	-	-	-	-	-	-	-	24,058
2000	77,115	73,265	3,069	179	455	-	148	-	-	-	-	-	-	-	-	-	-	-	77,115
2001	75,481	68,467	5,763	904	266	-	81	-	-	-	-	-	-	-	-	-	-	-	75,481
2002	88,267	78,399	6,283	757	509	1,771	549	-	-	-	-	-	-	-	-	-	-	-	88,267
2003	154,929	145,822	5,347	548	1,300	1,734	178	-	-	-	-	-	-	-	-	-	-	-	154,929
2004	147,002	138,387	5,822	730	304	1,576	183	-	-	-	-	-	-	-	-	-	-	-	147,002
2005	161,989	152,963	6,982	1,214	71	715	44	-	-	-	-	-	-	-	-	-	-	-	161,989
2006	213,020	203,872	6,229	886	256	1,202	573	4	-	-	-	-	-	-	-	-	-	-	213,020
2007	263,812	252,177	8,472	962	581	972	647	1	-	-	-	-	-	-	-	-	-	-	263,812
2008	298,126	269,566	20,938	3,450	1,250	1,916	1,002	3	-	-	-	-	-	-	-	-	-	-	298,126
2009	108,737	73,637	25,497	3,493	1,494	1,023	3,582	11	-	-	-	-	-	-	-	-	-	-	108,737
2010	196,631	145,741	33,832	6,066	826	1,395	8,745	25	-	-	-	-	-	-	-	-	-	-	196,631
2011	183,924	134,595	30,120	5,383	754	2,810	10,260	-	-	-	-	-	-	-	-	-	-	-	183,924
2012	140,904	92,783	27,638	4,015	821	3,083	12,564	-	-	-	-	-	-	-	-	-	-	-	140,904
2013	170,686	115,226	30,623	4,246	1,531	3,145	15,888	28	-	-	-	-	-	-	-	-	-	-	170,686
2014	154,097	111,441	25,741	696	3,057	2,510	10,648	4	5,348	791	607	242	34	9	3,664	899	806	92	160,344
2015	107,238	78,490	15,706	637	803	107	11,495	-	11,087	8,292	1,632	205	14	181	763	1,369	1,369	-	119,694

24. 보증승인실적

보증승인실적 : 1976~2015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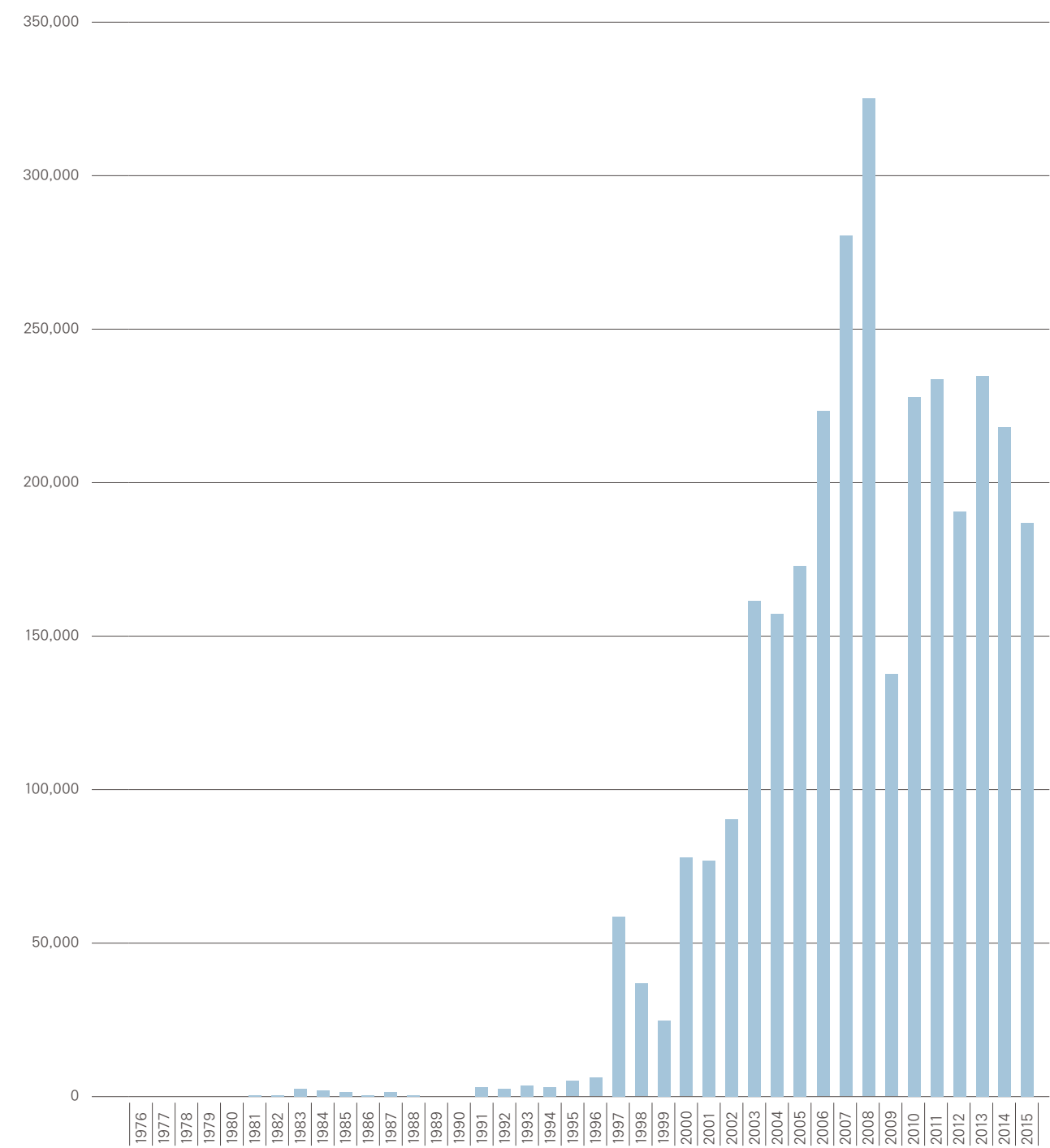
구분	채무보증										기타보증									
	수출금융보증			수입금융보증			해외사업금융보증				신용장 확인	내국 신용장	수입 신용장	수입팩토링	수입신용장 인수	수입화물 선취보증	당행현지 법인보증	국외은행	기타보증 총계	
	수출금융 보증	수출금융 보증 (대외채무)	수출금융 보증 (대내채무)	수입금융 보증	수입금융 보증 (대외채무)	수입금융 보증 (대내채무)	해외사업 금융보증	해외사업 금융보증 (대외채무)	해외사업 금융보증 (대내채무)	채무보증 총계										
1976	-	-	-	-	-	-	-	-	-	-	-	-	-	-	-	-	-	-	-	
1977	-	-	-	-	-	-	-	-	-	-	-	-	-	-	-	-	-	-	-	
1978	-	-	-	-	-	-	-	-	-	-	-	-	-	-	-	-	-	-	-	
1979	-	-	-	-	-	-	-	-	-	-	-	-	-	-	-	-	-	-	-	
1980	-	-	-	-	-	-	-	-	-	-	-	-	-	-	-	-	-	-	-	
1981	-	-	-	-	-	-	-	-	-	-	-	-	-	-	-	-	-	-	-	
1982	-	-	-	-	-	-	-	-	-	-	-	-	-	-	-	-	-	-	-	
1983	-	-	-	-	-	-	-	-	-	-	-	-	-	-	-	-	-	-	-	
1984	-	-	-	-	-	-	-	-	-	-	-	-	-	-	-	-	-	-	-	
1985	-	-	-	-	-	-	-	-	-	-	-	-	-	-	-	-	-	-	-	
1986	-	-	-	-	-	-	-	-	-	-	-	-	-	-	-	-	-	-	-	
1987	-	-	-	-	-	-	-	-	-	-	-	-	-	-	-	-	-	-	-	
1988	-	-	-	-	-	-	-	-	-	-	-	-	-	-	-	-	-	-	-	
1989	-	-	-	-	-	-	-	-	-	-	-	-	-	-	-	-	-	-	-	
1990	-	-	-	-	-	-	-	-	-	-	-	-	-	-	-	-	-	-	-	
1991	-	-	-	-	-	-	-	-	-	-	-	-	-	-	-	-	-	-	-	
1992	-	-	-	-	-	-	-	-	-	-	-	-	-	-	-	-	-	-	-	
1993	-	-	-	-	-	-	-	-	-	-	-	-	-	-	-	-	-	-	-	
1994	-	-	-	-	-	-	-	-	-	-	-	-	-	-	-	97	-	-	97	
1995	-	-	-	-	-	-	-	-	-	-	-	-	-	-	-	68	-	-	68	
1996	-	-	-	-	-	-	-	-	-	-	-	-	-	-	-	69	-	-	69	
1997	-	-	-	-	-	-	-	-	-	-	-	-	-	-	-	94	1,274	-	1,367	
1998	-	-	-	-	-	-	-	-	-	-	-	-	-	832	144	3,068	-	-	4,044	
1999	544	-	544	-	-	-	-	-	-	544	-	-	-	-	9	38	-	-	48	
2000	-	-	-	-	-	-	-	-	-	-	-	-	-	-	85	15	630	-	730	
2001	190	190	-	-	-	-	-	-	-	190	-	-	-	-	-	11	1,432	-	1,443	
2002	599	599	-	-	-	-	-	-	-	599	3	-	1,610	-	-	-	-	-	1,613	
2003	2,738	2,699	40	-	-	-	-	-	-	2,738	0	-	4,271	-	-	-	240	-	4,511	
2004	2,643	2,643	-	-	-	-	-	-	-	2,643	628	-	6,663	-	-	-	939	-	8,230	
2005	1,999	1,999	-	-	-	-	-	-	-	1,999	166	-	8,731	-	-	-	507	21	9,424	
2006	396	396	-	-	-	-	-	-	-	396	1,290	-	9,048	-	-	-	279	5	10,622	
2007	7,129	7,129	-	-	-	-	-	-	-	7,129	2,160	-	8,744	10	-	-	-	-	10,914	
2008	12,253	11,444	809	-	-	-	-	-	-	12,253	5,192	-	10,895	4	-	-	-	-	16,091	
2009	14,840	9,151	5,689	-	-	-	-	-	-	14,840	6,725	-	7,606	-	-	-	-	-	14,332	
2010	6,323	6,304	19	2,426	-	2,426	2,109	2,109	-	10,858	5,863	-	14,022	34	-	-	1,025	-	20,944	
2011	6,149	5,433	716	4,779	-	4,779	14,259	14,259	-	25,187	7,778	-	15,529	165	-	-	1,219	-	24,691	
2012	12,788	11,778	1,010	4,414	-	4,414	7,825	7,825	-	25,027	9,410	-	14,177	10	-	-	1,578	-	25,174	
2013	22,195	20,570	1,625	3,354	-	3,354	9,937	9,937	-	35,486	9,972	-	16,101	1	-	-	1,867	-	27,941	
2014	23,360	22,650	710	4,316	-	4,316	5,755	4,491	1,264	33,430	6,378	-	14,686	-	-	-	1,264	-	22,328	
2015	11,243	10,882	361	8,869	-	8,869	7,332	7,332	-	27,444	1,083	-	21,485	-	-	-	566	-	23,133	

24. 보증승인실적

보증승인실적 : 1976~2015
(단위 : 억 원)

구분	채권보증							보증총계
	수출금융보증				해외사업금융보증			
	수출금융 보증	수출금융 보증 (대외채권)	수출금융 보증 (대내채권)	수입금융 보증 (대내채권)	해외사업 금융보증	해외사업 금융보증 (대외채권)	해외사업 금융보증 (대내채권)	
1976	-	-	-	-	-	-	-	-
1977	-	-	-	-	-	-	-	-
1978	-	-	-	-	-	-	-	-
1979	-	-	-	-	-	-	-	-
1980	-	-	-	-	-	-	-	-
1981	-	-	-	-	-	-	-	69
1982	-	-	-	-	-	-	-	167
1983	-	-	-	-	-	-	-	2,329
1984	-	-	-	-	-	-	-	2,055
1985	-	-	-	-	-	-	-	1,170
1986	-	-	-	-	-	-	-	522
1987	-	-	-	-	-	-	-	1,493
1988	-	-	-	-	-	-	-	446
1989	-	-	-	-	-	-	-	-
1990	-	-	-	-	-	-	-	-
1991	-	-	-	-	-	-	-	2,875
1992	-	-	-	-	-	-	-	2,212
1993	-	-	-	-	-	-	-	3,299
1994	-	-	-	-	-	-	-	2,800
1995	-	-	-	-	-	-	-	4,848
1996	-	-	-	-	-	-	-	6,136
1997	-	-	-	-	-	-	-	58,822
1998	-	-	-	-	-	-	-	37,119
1999	-	-	-	-	-	-	-	24,649
2000	-	-	-	-	-	-	-	77,845
2001	-	-	-	-	-	-	-	77,113
2002	-	-	-	-	-	-	-	90,479
2003	-	-	-	-	-	-	-	162,178
2004	-	-	-	-	-	-	-	157,875
2005	-	-	-	-	-	-	-	173,412
2006	-	-	-	-	-	-	-	224,037
2007	-	-	-	-	-	-	-	281,856
2008	-	-	-	-	-	-	-	326,470
2009	467	467	-	-	-	-	-	467
2010	-	-	-	-	683	-	683	683
2011	-	-	-	-	665	-	665	665
2012	-	-	-	-	-	-	-	-
2013	1,372	1,372	-	-	-	-	-	1,372
2014	-	-	-	-	3,160	3,160	-	3,160
2015	8,659	2,942	5,718	1,697	7,056	3,661	3,394	17,412

보증총계 : 1976~2015(단위 : 억 원)



25. 확정지급보증실적

확정지급보증실적 : 1976~2015
(단위 : 억 원)

구분	이행성보증													채무보증									
	수출이행성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수입이행성보증			이행성 보증 총계	수출금융보증			수입금융보증		
	수출이행성 보증 (선수금환급)	수출이행성 보증 (계약이행)	수출이행성 보증 (입찰)	수출이행성 보증 (하자보수)	수출이행성 보증 (유보금)	수출이행성 보증 (기타이행성)	수출이행성 보증 (기술신용)	해외사업 이행성보증 (선수금환급)	해외사업 이행성보증 (계약이행)	해외사업 이행성보증 (입찰)	해외사업 이행성보증 (하자보수)	해외사업 이행성보증 (유보금)	해외사업 이행성보증 (기타이행성)	수입이행성 보증 (계약이행)	수입이행성 보증 (기타이행성)	수출금융 보증 (대외채무)		수출금융 보증 (대내채무)	수입금융 보증 (대외채무)	수입금융 보증 (대내채무)			
1976	-	-	-	-	-	-	-	-	-	-	-	-	-	-	-	-	-	-	-	-			
1977	-	-	-	-	-	-	-	-	-	-	-	-	-	-	-	-	-	-	-	-			
1978	-	-	-	-	-	-	-	-	-	-	-	-	-	-	-	-	-	-	-	-			
1979	-	-	-	-	-	-	-	-	-	-	-	-	-	-	-	-	-	-	-	-			
1980	-	-	-	-	-	-	-	-	-	-	-	-	-	-	-	-	-	-	-	-			
1981	24	24	-	-	-	-	-	-	-	-	-	-	-	-	-	-	24	-	-	-			
1982	126	126	-	-	-	-	-	-	-	-	-	-	-	-	-	-	126	-	-	-			
1983	1,189	1,127	62	-	-	-	-	-	-	-	-	-	-	-	-	-	1,189	-	-	-			
1984	2,375	2,066	309	-	-	-	-	-	-	-	-	-	-	-	-	-	2,375	-	-	-			
1985	2,196	2,196	-	-	-	-	-	-	-	-	-	-	-	-	-	-	2,196	-	-	-			
1986	1,064	1,064	-	-	-	-	-	-	-	-	-	-	-	-	-	-	1,064	-	-	-			
1987	1,427	1,277	150	-	-	-	-	-	-	-	-	-	-	-	-	-	1,427	-	-	-			
1988	901	901	-	-	-	-	-	-	-	-	-	-	-	-	-	-	901	-	-	-			
1989	339	339	-	-	-	-	-	-	-	-	-	-	-	-	-	-	339	-	-	-			
1990	67	67	-	-	-	-	-	-	-	-	-	-	-	-	-	-	67	-	-	-			
1991	1,638	1,638	-	-	-	-	-	-	-	-	-	-	-	-	-	-	1,638	-	-	-			
1992	2,545	2,545	-	-	-	-	-	-	-	-	-	-	-	-	-	-	2,545	-	-	-			
1993	3,948	3,948	-	-	-	-	-	-	-	-	-	-	-	-	-	-	3,948	-	-	-			
1994	2,330	1,780	550	-	-	-	-	-	-	-	-	-	-	-	-	-	2,330	-	-	-			
1995	4,410	3,589	821	-	-	-	-	-	-	-	-	-	-	-	-	-	4,410	-	-	-			
1996	4,161	3,890	271	-	-	-	-	-	-	-	-	-	-	-	-	-	4,161	-	-	-			
1997	32,072	29,641	2,431	-	-	-	-	-	-	-	-	-	-	-	-	-	32,072	-	-	-			
1998	37,541	32,620	4,358	487	57	19	-	-	-	-	-	-	-	-	-	-	37,541	-	-	-			
1999	28,603	22,122	4,683	1,127	608	6	57	-	-	-	-	-	-	-	-	-	28,603	544	-	544			
2000	48,270	44,195	3,257	179	456	35	148	-	-	-	-	-	-	-	-	-	48,270	-	-	-			
2001	57,790	51,143	5,394	901	271	-	81	-	-	-	-	-	-	-	-	-	57,790	-	-	-			
2002	66,351	57,380	5,857	758	485	1,323	549	-	-	-	-	-	-	-	-	-	66,351	172	172	-			
2003	124,311	113,909	6,150	550	1,300	2,219	184	-	-	-	-	-	-	-	-	-	124,311	2,781	2,781	-			
2004	109,305	99,270	7,209	718	393	1,511	204	-	-	-	-	-	-	-	-	-	109,305	360	325	34			
2005	116,830	106,659	7,573	1,264	71	1,206	56	-	-	-	-	-	-	-	-	-	116,830	1,220	1,220	-			
2006	126,651	117,504	6,508	885	248	929	573	4	-	-	-	-	-	-	-	-	126,651	1,905	1,905	-			
2007	192,155	180,788	7,720	972	581	1,081	1,013	0.3	-	-	-	-	-	-	-	-	192,155	2,029	2,029	-			
2008	288,236	256,391	21,407	3,468	1,123	2,107	3,733	7	-	-	-	-	-	-	-	-	288,236	5,284	4,475	809			
2009	206,109	174,726	22,269	3,527	1,556	1,639	2,381	11	-	-	-	-	-	-	-	-	206,109	9,790	6,061	3,728			
2010	223,547	177,359	36,553	5,549	886	1,270	1,905	25	-	-	-	-	-	-	-	-	223,547	1,628	1,609	19			
2011	208,385	158,280	30,443	5,405	754	932	12,570	-	-	-	-	-	-	-	-	-	208,385	5,594	4,658	936			
2012	174,079	123,924	29,545	4,016	839	2,302	13,452	-	-	-	-	-	-	-	-	-	174,079	5,622	4,612	1,010			
2013	173,875	119,764	32,242	4,246	1,575	3,491	12,529	28	-	-	-	-	-	-	-	-	173,875	7,604	6,744	860			
2014	159,096	109,402	29,500	702	3,037	4,133	12,319	2	4,826	269	607	242	-	34	9	3,664	863	770	92	164,785			
2015	124,404	94,315	15,750	638	777	981	11,942	-	10,742	8,080	1,588	205	-	14	181	675	1,407	1,407	-	136,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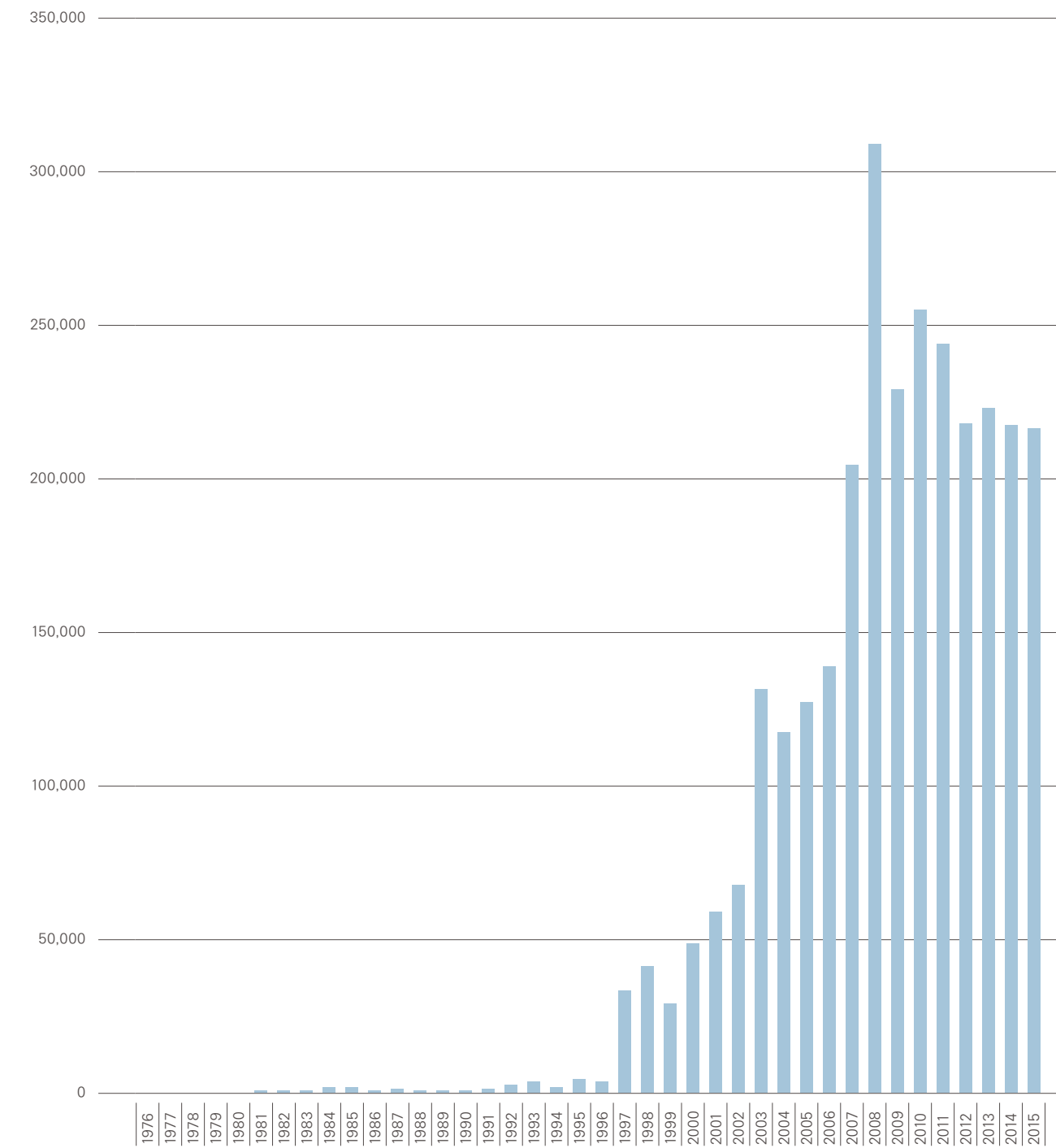
25. 확정지급보증실적

확정지급보증실적 : 1976~2015
(단위 : 억 원)

구분	채무보증			기타보증								채권보증										보증총계
	해외사업금융보증			채무보증 총계	신용장 확인	내국 신용장	수입 신용장	수입팩토링	수입신용장 인수	수입화물 선취보증	당행현지 법인보증	국외은행	기타보증 총계	수출금융보증				해외사업금융보증				
	해외사업 금융보증	해외사업 금융보증 (대외채무)	해외사업 금융보증 (대내채무)											수출금융 보증 (대외채권)	수출금융 보증 (대내채권)	수입금융 보증 (대내채권)	해외사업 금융보증	해외사업 금융보증 (대외채권)	해외사업 금융보증 (대내채권)	채권보증 총계		
1976	-	-	-	-	-	-	-	-	-	-	-	-	-	-	-	-	-	-	-	-	-	-
1977	-	-	-	-	-	-	-	-	-	-	-	-	-	-	-	-	-	-	-	-	-	-
1978	-	-	-	-	-	-	-	-	-	-	-	-	-	-	-	-	-	-	-	-	-	-
1979	-	-	-	-	-	-	-	-	-	-	-	-	-	-	-	-	-	-	-	-	-	-
1980	-	-	-	-	-	-	-	-	-	-	-	-	-	-	-	-	-	-	-	-	-	-
1981	-	-	-	-	-	-	-	-	-	-	-	-	-	-	-	-	-	-	-	-	-	24
1982	-	-	-	-	-	-	-	-	-	-	-	-	-	-	-	-	-	-	-	-	-	126
1983	-	-	-	-	-	-	-	-	-	-	-	-	-	-	-	-	-	-	-	-	-	1,189
1984	-	-	-	-	-	-	-	-	-	-	-	-	-	-	-	-	-	-	-	-	-	2,375
1985	-	-	-	-	-	-	-	-	-	-	-	-	-	-	-	-	-	-	-	-	-	2,196
1986	-	-	-	-	-	-	-	-	-	-	-	-	-	-	-	-	-	-	-	-	-	1,064
1987	-	-	-	-	-	-	-	-	-	-	-	-	-	-	-	-	-	-	-	-	-	1,427
1988	-	-	-	-	-	-	-	-	-	-	-	-	-	-	-	-	-	-	-	-	-	901
1989	-	-	-	-	-	-	-	-	-	-	-	-	-	-	-	-	-	-	-	-	-	339
1990	-	-	-	-	-	-	-	-	-	-	-	-	-	-	-	-	-	-	-	-	-	67
1991	-	-	-	-	-	-	-	-	-	-	-	-	-	-	-	-	-	-	-	-	-	1,638
1992	-	-	-	-	-	-	-	-	-	-	-	-	-	-	-	-	-	-	-	-	-	2,545
1993	-	-	-	-	-	-	-	-	-	-	-	-	-	-	-	-	-	-	-	-	-	3,948
1994	-	-	-	-	-	-	-	-	-	100	-	-	100	-	-	-	-	-	-	-	-	2,430
1995	-	-	-	-	-	-	-	-	-	65	-	-	65	-	-	-	-	-	-	-	-	4,475
1996	-	-	-	-	-	-	-	-	-	69	-	-	69	-	-	-	-	-	-	-	-	4,230
1997	-	-	-	-	-	-	-	-	-	94	1,274	-	1,367	-	-	-	-	-	-	-	-	33,440
1998	-	-	-	-	-	-	-	-	678	138	3,068	-	3,884	-	-	-	-	-	-	-	-	41,425
1999	-	-	-	544	-	-	-	-	9	39	-	-	48	-	-	-	-	-	-	-	-	29,195
2000	-	-	-	-	-	-	-	-	91	15	630	-	735	-	-	-	-	-	-	-	-	49,006
2001	-	-	-	-	-	-	-	-	-	11	1,326	-	1,337	-	-	-	-	-	-	-	-	59,127
2002	-	-	-	172	3	-	1,613	-	-	-	-	-	1,616	-	-	-	-	-	-	-	-	68,139
2003	-	-	-	2,781	0	-	4,752	-	-	-	240	-	4,992	-	-	-	-	-	-	-	-	132,084
2004	-	-	-	360	610	-	6,843	-	-	-	939	-	8,393	-	-	-	-	-	-	-	-	118,058
2005	-	-	-	1,220	176	-	9,001	-	-	-	507	21	9,705	-	-	-	-	-	-	-	-	127,755
2006	-	-	-	1,905	1,252	-	9,339	-	-	-	279	5	10,875	-	-	-	-	-	-	-	-	139,432
2007	-	-	-	2,029	2,072	-	8,942	5	-	-	-	-	11,018	-	-	-	-	-	-	-	-	205,202
2008	-	-	-	5,284	5,171	-	11,174	4	-	-	-	-	16,349	-	-	-	-	-	-	-	-	309,869
2009	-	-	-	9,790	6,045	-	7,660	-	-	-	-	-	13,706	-	-	-	-	-	-	-	-	229,604
2010	3,381	3,381	-	9,273	6,323	-	14,386	34	-	-	1,025	-	21,769	-	-	-	-	1,152	463	689	1,152	255,741
2011	1,958	1,958	-	10,184	7,781	-	16,145	61	-	-	1,219	-	25,206	-	-	-	-	679	2	676	679	244,453
2012	6,847	6,847	-	18,450	9,401	-	14,938	9	-	-	1,578	-	25,925	-	-	-	-	13	-	13	13	218,467
2013	10,151	10,151	-	21,551	9,972	-	16,656	1	-	-	1,648	-	28,278	-	-	-	-	8	-	8	8	223,711
2014	8,351	7,087	1,264	25,849	6,378	-	15,105	-	-	-	1,475	-	22,958	1,319	1,319	-	-	3,169	3,169	-	4,488	218,080
2015	8,498	8,498	-	42,072	1,083	-	21,823	-	-	-	792	-	23,698	5,718	-	5,718	1,708	7,181	3,701	3,479	14,607	216,930

25. 확정지급보증실적

보증총계 : 1976~2015 (단위 : 억 원)



26. 보증잔액

보증잔액 : 1976~2015
(단위 : 억 원)

이행성보증		수출이행성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구분	수출이행성 보증	수출이행성 보증	수출이행성 보증	수출이행성 보증	수출이행성 보증	수출이행성 보증	수출이행성 보증	해외사업 이행성보증	해외사업 이행성보증	해외사업 이행성보증	해외사업 이행성보증	
		(선수금환급)	(계약이행)	(입찰)	(하자보수)	(유보금)	(기타이행성)					(기술신용)
1976	-	-	-	-	-	-	-	-	-	-	-	
1977	-	-	-	-	-	-	-	-	-	-	-	
1978	-	-	-	-	-	-	-	-	-	-	-	
1979	-	-	-	-	-	-	-	-	-	-	-	
1980	-	-	-	-	-	-	-	-	-	-	-	
1981	24	24	-	-	-	-	-	-	-	-	-	
1982	152	152	-	-	-	-	-	-	-	-	-	
1983	1,344	1,282	62	-	-	-	-	-	-	-	-	
1984	3,385	3,098	287	-	-	-	-	-	-	-	-	
1985	3,234	2,965	270	-	-	-	-	-	-	-	-	
1986	1,470	1,470	-	-	-	-	-	-	-	-	-	
1987	2,044	1,894	150	-	-	-	-	-	-	-	-	
1988	1,849	1,726	123	-	-	-	-	-	-	-	-	
1989	527	405	122	-	-	-	-	-	-	-	-	
1990	156	156	-	-	-	-	-	-	-	-	-	
1991	1,777	1,777	-	-	-	-	-	-	-	-	-	
1992	3,973	3,973	-	-	-	-	-	-	-	-	-	
1993	3,335	3,335	-	-	-	-	-	-	-	-	-	
1994	2,929	2,379	550	-	-	-	-	-	-	-	-	
1995	5,716	4,452	1,264	-	-	-	-	-	-	-	-	
1996	7,223	5,589	1,634	-	-	-	-	-	-	-	-	
1997	32,817	28,062	4,755	-	-	-	-	-	-	-	-	
1998	52,839	45,441	6,851	471	57	19	-	-	-	-	-	
1999	44,605	33,202	10,567	135	620	23	57	-	-	-	-	
2000	61,340	47,472	12,891	162	564	41	210	-	-	-	-	
2001	84,753	67,283	16,493	314	366	-	298	-	-	-	-	
2002	104,573	82,656	19,198	508	652	1,323	236	-	-	-	-	
2003	171,625	147,203	20,469	353	1,358	1,896	346	-	-	-	-	
2004	181,358	155,716	20,791	538	1,162	2,801	350	-	-	-	-	
2005	195,881	169,212	22,323	574	361	3,265	147	-	-	-	-	
2006	217,255	189,977	22,037	585	344	3,699	610	4	-	-	-	
2007	312,585	280,331	26,270	469	719	3,810	985	0.4	-	-	-	
2008	473,233	414,596	47,796	1,342	1,849	5,848	1,799	3	-	-	-	
2009	429,356	364,393	51,769	2,436	2,714	5,124	2,918	2	-	-	-	
2010	412,856	325,561	74,818	2,933	2,907	3,564	3,056	16	-	-	-	
2011	388,055	267,361	99,508	3,341	2,565	3,248	12,031	-	-	-	-	
2012	345,669	207,806	108,071	2,782	2,112	4,740	20,158	-	-	-	-	
2013	352,519	192,947	126,762	3,227	2,948	6,608	20,027	-	-	-	-	
2014	384,799	205,436	139,814	1,014	5,004	10,479	23,054	-	4,751	278	621	
2015	411,921	217,876	146,936	418	5,130	11,503	30,058	-	11,778	8,556	2,226	

26. 보증잔액

보증잔액 : 1976~2015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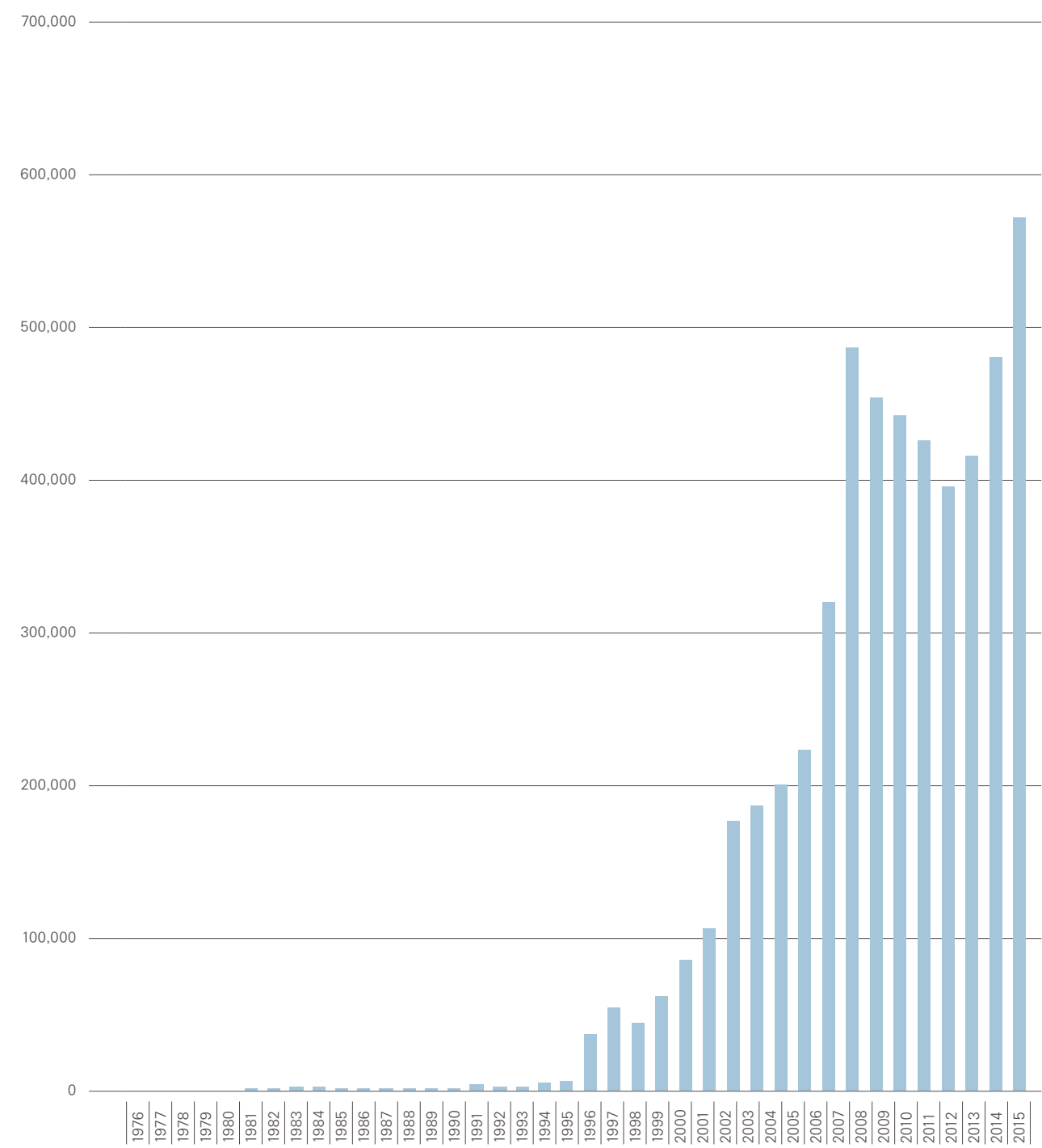
구분	이행성보증							채무보증						기타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수입이행성보증				이행성 보증 총계	수출금융 보증	수출금융보증		수입금융 보증	수입금융 보증	해외사업금융보증			채무보증 총계	신용장 확인	내국 신용장	수입 신용장	수입팩토링	수입신용장 인수	수입화물 선취보증	당행현지 법인보증	
	해외사업 이행성보증 (하자보수)	해외사업 이행성보증 (유보금)	해외사업 이행성보증 (기타이행성)	수입이행성 보증	수입이행성 보증 (계약이행)	수입이행성 보증 (기타이행성)	수출금융 보증 (대외채무)			수출금융 보증 (대내채무)	수입금융 보증 (대외채무)			수입금융 보증 (대내채무)	해외사업 금융보증	해외사업 금융보증 (대외채무)									해외사업 금융보증 (대내채무)
1976	-	-	-	-	-	-	-	-	-	-	-	-	-	-	-	-	-	-	-	-	-	-	-	-	
1977	-	-	-	-	-	-	-	-	-	-	-	-	-	-	-	-	-	-	-	-	-	-	-	-	
1978	-	-	-	-	-	-	-	-	-	-	-	-	-	-	-	-	-	-	-	-	-	-	-	-	
1979	-	-	-	-	-	-	-	-	-	-	-	-	-	-	-	-	-	-	-	-	-	-	-	-	
1980	-	-	-	-	-	-	-	-	-	-	-	-	-	-	-	-	-	-	-	-	-	-	-	-	
1981	-	-	-	-	-	-	24	-	-	-	-	-	-	-	-	-	-	-	-	-	-	-	-	-	
1982	-	-	-	-	-	-	152	-	-	-	-	-	-	-	-	-	-	-	-	-	-	-	-	-	
1983	-	-	-	-	-	-	1,344	-	-	-	-	-	-	-	-	-	-	-	-	-	-	-	-	-	
1984	-	-	-	-	-	-	3,385	-	-	-	-	-	-	-	-	-	-	-	-	-	-	-	-	-	
1985	-	-	-	-	-	-	3,234	-	-	-	-	-	-	-	-	-	-	-	-	-	-	-	-	-	
1986	-	-	-	-	-	-	1,470	-	-	-	-	-	-	-	-	-	-	-	-	-	-	-	-	-	
1987	-	-	-	-	-	-	2,044	-	-	-	-	-	-	-	-	-	-	-	-	-	-	-	-	-	
1988	-	-	-	-	-	-	1,849	-	-	-	-	-	-	-	-	-	-	-	-	-	-	-	-	-	
1989	-	-	-	-	-	-	527	-	-	-	-	-	-	-	-	-	-	-	-	-	-	-	-	-	
1990	-	-	-	-	-	-	156	-	-	-	-	-	-	-	-	-	-	-	-	-	-	-	-	-	
1991	-	-	-	-	-	-	1,777	-	-	-	-	-	-	-	-	-	-	-	-	-	-	-	-	-	
1992	-	-	-	-	-	-	3,973	-	-	-	-	-	-	-	-	-	-	-	-	-	-	-	-	-	
1993	-	-	-	-	-	-	3,335	-	-	-	-	-	-	-	-	-	-	-	-	-	-	-	-	-	
1994	-	-	-	-	-	-	2,929	-	-	-	-	-	-	-	-	-	-	-	0	-	-	6	-	-	
1995	-	-	-	-	-	-	5,716	-	-	-	-	-	-	-	-	-	-	-	22	-	-	4	-	-	
1996	-	-	-	-	-	-	7,223	-	-	-	-	-	-	-	-	-	-	-	1	-	-	-	-	-	
1997	-	-	-	-	-	-	32,817	-	-	-	-	-	-	-	-	-	-	-	3,575	68	-	-	-	1,274	
1998	-	-	-	-	-	-	52,839	-	-	-	-	-	-	-	-	-	-	-	4	16	-	678	24	1,839	
1999	-	-	-	-	-	-	44,605	410	-	410	-	-	-	-	-	-	-	410	-	23	10	-	219	-	-
2000	-	-	-	-	-	-	61,340	-	-	-	-	-	-	-	-	-	-	-	34	-	-	-	-	630	
2001	-	-	-	-	-	-	84,753	-	-	-	-	-	-	-	-	-	-	-	14	-	-	-	2	1,326	
2002	-	-	-	-	-	-	104,573	172	172	-	-	-	-	-	-	-	-	172	3	-	1,240	-	90	6	-
2003	-	-	-	-	-	-	171,625	2,918	2,918	-	-	-	-	-	-	-	-	2,918	1	-	1,921	-	452	45	240
2004	-	-	-	-	-	-	181,358	2,399	2,364	34	-	-	-	-	-	-	-	2,399	517	-	1,205	-	260	125	939
2005	-	-	-	-	-	-	195,881	3,030	2,997	33	-	-	-	-	-	-	-	3,030	18	-	657	-	1,052	57	1,114
2006	-	-	-	-	-	-	217,255	4,046	4,016	31	-	-	-	-	-	-	-	4,046	439	-	798	-	751	62	1,023
2007	-	-	-	-	-	-	312,585	5,188	5,188	-	-	-	-	-	-	-	-	5,188	385	-	1,156	1	876	81	1,313
2008	-	-	-	-	-	-	473,233	11,229	10,419	809	-	-	-	-	-	-	-	11,229	143	-	1,853	-	797	85	1,006
2009	-	-	-	-	-	-	429,356	19,918	15,280	4,638	-	-	-	-	-	-	-	19,918	1,679	-	2,153	-	1,666	10	701
2010	-	-	-	-	-	-	412,856	6,439	5,536	903	9,351	328	9,023	9,013	9,013	-	-	24,803	1,120	-	776	16	1,915	-	1,025
2011	-	-	-	-	-	-	388,055	10,625	9,795	830	11,110	-	11,110	10,887	10,887	-	-	32,622	1,355	-	1,653	5	1,359	0.1	1,269
2012	-	-	-	-	-	-	345,669	13,407	12,858	549	14,241	-	14,241	16,069	16,069	-	-	43,716	1,006	-	2,111	0.1	1,560	66	1,500
2013	-	-	-	-	-	-	352,519	18,472	18,065	407	15,463	-	15,463	25,002	25,002	-	-	58,937	361	-	1,199	-	1,777	36	1,601
2014	35	9	3,668	900	804	96	390,451	30,592	29,657	935	17,530	-	17,530	33,290	31,971	1,319	-	81,413	476	-	1,247	-	1,350	185	1,539
2015	44	187	699	1,316	1,312	3	425,015	54,538	52,194	2,344	25,268	-	25,268	42,734	41,328	1,406	-	122,540	-	-	2,488	-	1,974	124	1,055

26. 보증잔액

보증잔액 : 1976~2015
(단위 : 억 원)

구분	기타보증		채권보증								보증총계
	국외은행	기타보증 총계	수출금융 보증	수출금융보증			해외사업금융보증			채권보증 총계	
				수출금융 보증 (대외채권)	수출금융 보증 (대내채권)	수입금융 보증 (대내채권)	해외사업 금융보증	해외사업 금융보증 (대외채권)	해외사업 금융보증 (대내채권)		
1976	-	-	-	-	-	-	-	-	-	-	-
1977	-	-	-	-	-	-	-	-	-	-	-
1978	-	-	-	-	-	-	-	-	-	-	-
1979	-	-	-	-	-	-	-	-	-	-	-
1980	-	-	-	-	-	-	-	-	-	-	-
1981	-	-	-	-	-	-	-	-	-	-	24
1982	-	-	-	-	-	-	-	-	-	-	152
1983	-	-	-	-	-	-	-	-	-	-	1,344
1984	-	-	-	-	-	-	-	-	-	-	3,385
1985	-	-	-	-	-	-	-	-	-	-	3,234
1986	-	-	-	-	-	-	-	-	-	-	1,470
1987	-	-	-	-	-	-	-	-	-	-	2,044
1988	-	-	-	-	-	-	-	-	-	-	1,849
1989	-	-	-	-	-	-	-	-	-	-	527
1990	-	-	-	-	-	-	-	-	-	-	156
1991	-	-	-	-	-	-	-	-	-	-	1,777
1992	-	-	-	-	-	-	-	-	-	-	3,973
1993	-	-	-	-	-	-	-	-	-	-	3,335
1994	-	6	-	-	-	-	-	-	-	-	2,935
1995	-	26	-	-	-	-	-	-	-	-	5,742
1996	-	1	-	-	-	-	-	-	-	-	7,224
1997	-	4,917	-	-	-	-	-	-	-	-	37,734
1998	-	2,561	-	-	-	-	-	-	-	-	55,400
1999	-	252	-	-	-	-	-	-	-	-	45,267
2000	-	663	-	-	-	-	-	-	-	-	62,004
2001	-	1,342	-	-	-	-	-	-	-	-	86,095
2002	-	1,339	-	-	-	-	-	-	-	-	106,084
2003	-	2,659	-	-	-	-	-	-	-	-	177,202
2004	-	3,046	-	-	-	-	-	-	-	-	186,803
2005	21	2,919	-	-	-	-	-	-	-	-	201,831
2006	-	3,072	-	-	-	-	-	-	-	-	224,373
2007	-	3,813	-	-	-	-	-	-	-	-	321,585
2008	-	3,884	-	-	-	-	-	-	-	-	488,345
2009	-	6,208	-	-	-	-	-	-	-	-	455,483
2010	-	4,853	-	-	-	-	1,144	458	686	1,144	443,656
2011	-	5,641	-	-	-	-	1,387	-	1,387	1,387	427,705
2012	-	6,243	-	-	-	-	1,288	-	1,288	1,288	396,916
2013	-	4,975	-	-	-	-	633	-	633	633	417,064
2014	-	4,797	1,377	1,377	-	-	3,787	3,307	480	5,164	481,825
2015	-	5,640	7,097	1,174	5,922	1,720	11,435	7,319	4,116	20,251	573,447

보증총계 : 1976~2015(단위 : 억 원)



27. 투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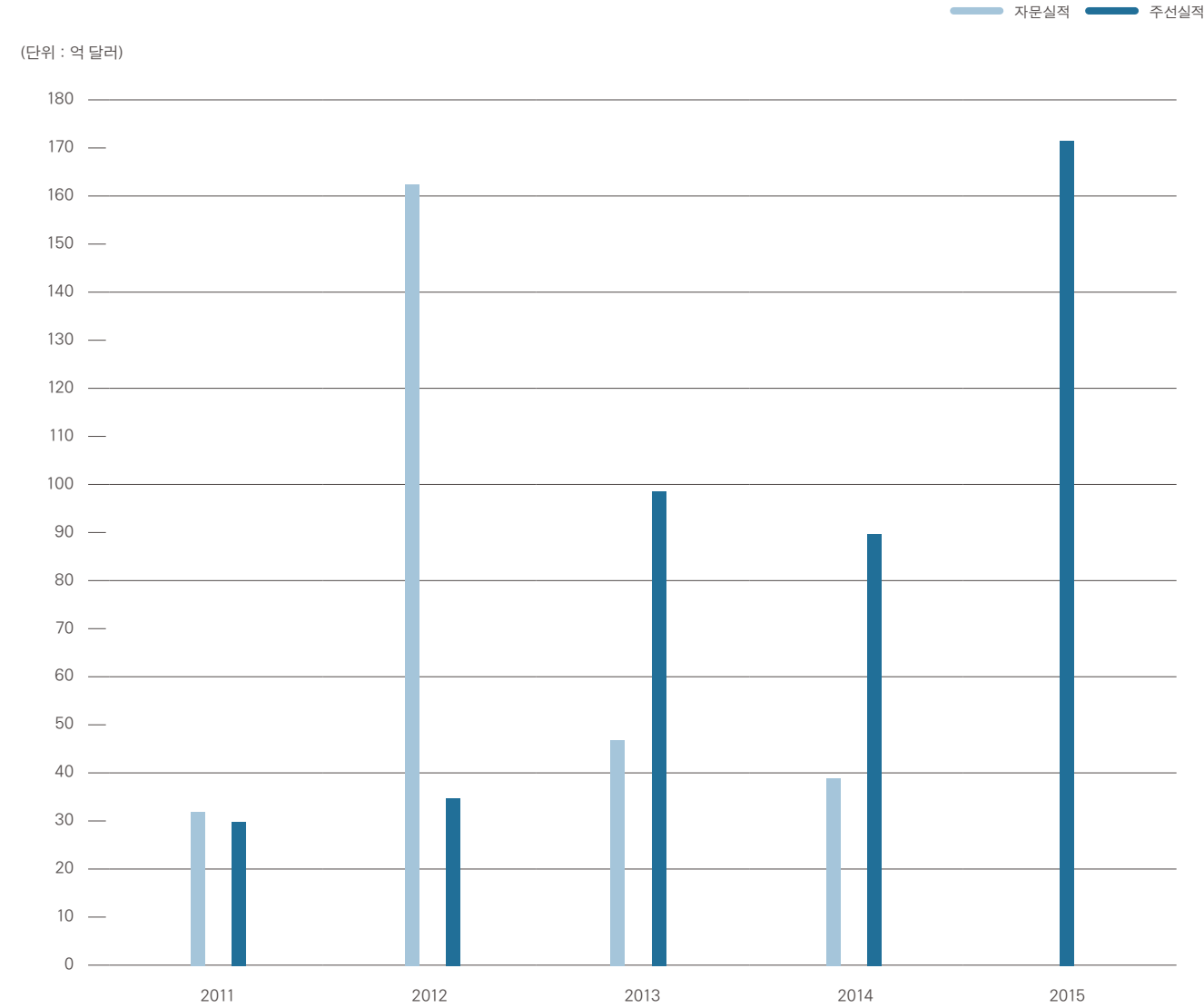
(단위 : 억 원)

종류	연도	프로젝트명	승인액	집행액	잔액
직접투자	2014	중부발전의 인도네시아 Semangka 수력발전사업을 위한 PT.Tanggamus Electric Power 앞 투자	75	60	63
		(주)한진해운의 해외사업 지원을 위한 <(주)대한항공 신용보강 자산담보부 채권> 투자	500	500	500
	2015	코오롱생명과학(주)의 미국 현지법인(TissueGene, Inc.) 앞 지분증권투자	113	-	-
		(주)이랜텍 베트남 현지법인 해외직접투자 지원 전환사채 투자	35	-	-
간접투자	2009	수은탄소펀드	169	57	15
		수은자원개발1호펀드(트로이카해외자원개발사모투자전문회사)	500	334	334
	2010	수은자원개발2호펀드(글로벌다이너스티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100	22	22
	2014	한국GCC경제협력펀드(한국GCC경제협력사모투자전문회사)	158	-	-
		2014 스틱 성장동력 엠앤에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	250	134	134
		유니슨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	150	25	21
		KTB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	100	-	-
		KTB뉴레이크 의료글로벌진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	125	-	-
		이큐피글로벌에너지인프라펀드(이큐피글로벌에너지인프라사모투자전문회사)	300	2	2
		하이수은 에코쉽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	76	76	76
		하이수은 에코쉽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2호	45	45	45
	2015	하이수은 에코쉽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3호	110	-	-
		현대상선(주) 재무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사모펀드(PEF) 투자	500	-	-
		한투코마프 에코쉽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4호 (가칭)	50	-	-

28. 금융자문 및 주선 실적

구분		2011 ¹⁾		2012	2013	2014	2015	계
자문실적	신규체결사업	금액	32억 달러	163억 달러	47억 달러	39억 달러	-	281억 달러
			건수 ²⁾	3건	4건	3건	2건	12건
주선실적	신규체결사업	금액	30억 달러	35억 달러	99억 달러	90억 달러	172억 달러	426억 달러
			건수 ²⁾	2건	11건	8건	4건	7건

1) 금융자문실 설립(2011. 7. 18.) 이후 집계된 실적 기준
2) 당해연도 신규체결 사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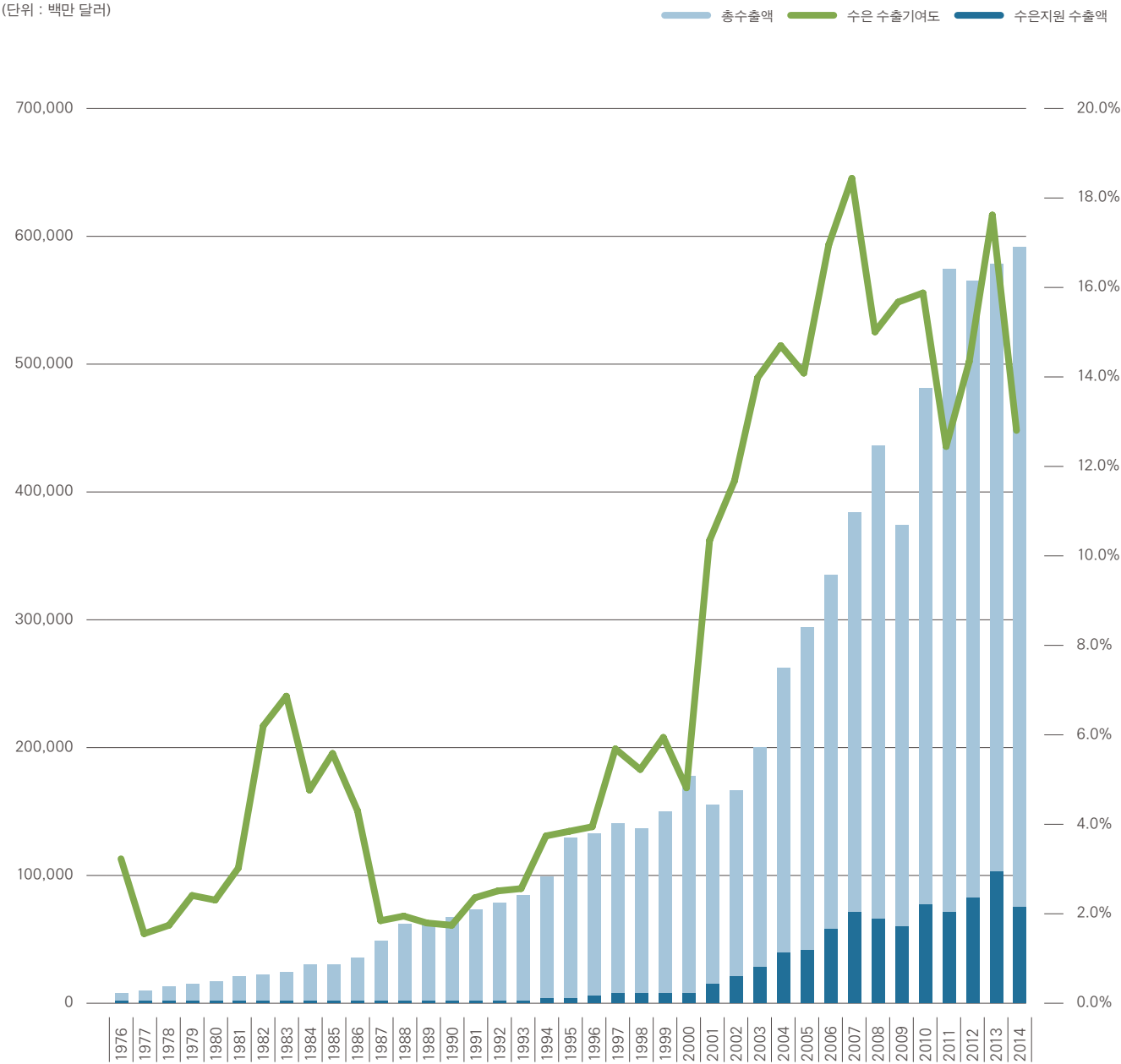
29. 수출기여도

수출기여도 : 1976~2015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총수출액	수은지원 수출액	수은 수출기여도
	총수출(백만 달러)	총수출	총수출
1976	7,715	250	3.2%
1977	10,046	154	1.5%
1978	12,711	216	1.7%
1979	15,055	362	2.4%
1980	17,505	397	2.3%
1981	21,254	643	3.0%
1982	21,853	1,356	6.2%
1983	24,445	1,686	6.9%
1984	29,245	1,390	4.8%
1985	30,283	1,696	5.6%
1986	34,714	1,499	4.3%
1987	47,281	855	1.8%
1988	60,696	1,161	1.9%
1989	62,377	1,120	1.8%
1990	65,016	1,128	1.7%
1991	71,870	1,689	2.4%
1992	76,632	1,897	2.5%
1993	82,236	2,114	2.6%
1994	96,013	3,587	3.7%
1995	125,058	4,802	3.8%

구분	총수출액	수은지원 수출액	수은 수출기여도
	총수출(백만 달러)	총수출	총수출
1996	129,715	5,150	4.0%
1997	136,164	7,797	5.7%
1998	133,233	6,984	5.2%
1999	144,685	8,658	6.0%
2000	172,268	8,353	4.8%
2001	150,439	15,642	10.4%
2002	162,471	19,090	11.7%
2003	193,817	27,340	14.1%
2004	253,845	37,623	14.8%
2005	284,419	40,437	14.2%
2006	325,465	55,703	17.1%
2007	371,489	69,150	18.6%
2008	422,007	63,919	15.1%
2009	363,770	57,420	15.8%
2010	466,384	74,592	16.0%
2011	556,514	69,744	12.5%
2012	548,076	79,242	14.5%
2013	559,732	99,622	17.8%
2014*	572,665	73,874	12.9%
2015			

*2014년 자료부터 산출 기준 변경



30. 재원별 자금조달

재원별 자금조달 : 1976-2015
(단위 : 억 원)

구분	자본금	적립금	재특회계 차입	국내조달					해외조달			합계	
				국투기금 차입	국내금융 기관차입	원화 수출입 금융채권	한은보유 외화수탁	은행단 차관	외화 수출입 금융채권	연불어음 매각	전대 차관		기타
1976	654	15	-	100	-	-	-	-	-	-	-	-	768
1977	400	23	-	300	50	-	167	-	-	199	-	-	1,139
1978	350	63	-	297	150	-	1	-	-	522	-	-	1,383
1979	45	65	-	300	-	-	10	484	-	-	-	-	904
1980	343	197	-	300	-	-	17	792	-	-	10	-	1,659
1981	658	5	-	750	-	-	16	1,422	-	1,408	224	-	4,482
1982	740	11	-	1,000	-	-	19	3,130	-	1,196	379	-	6,474
1983	390	7	-	1,750	-	-	7	231	-	4,296	82	-	6,763
1984	100	13	-	1,000	-	-	-	579	414	5,830	-	-	7,935
1985	600	198	-	800	-	-	17	154	2,671	4,877	-	-	9,317
1986	300	288	-	800	-	-	-	326	-	3,041	-	-	4,754
1987	300	142	-	900	-	-	1,972	1,585	-	1,740	-	-	6,639
1988	300	10	-	750	-	-	2,669	-	-	-	-	-	3,730
1989	200	139	-	563	-	-	3,090	-	-	-	-	-	3,992
1990	30	297	-	402	-	-	6,648	-	3,641	-	-	36	11,054
1991	750	423	1,000	86	-	264	6,908	2,227	4,494	1,078	-	-	17,230
1992	243	627	225	24	-	231	2,444	633	-	-	-	-	4,428
1993	457	196	-	-	-	-	9,888	-	1,616	-	-	-	12,158
1994	-	236	1,400	-	-	-	13,608	789	1,577	-	-	-	17,609
1995	-	282	1,400	-	-	-	17,911	-	7,239	-	-	-	26,833
1996	-	311	1,600	-	-	-	24,471	-	13,085	-	-	-	39,467
1997	250	203	1,100	-	-	-	-	2,830	29,681	-	-	27,908	61,971
1998	1,000	203	1,100	-	-	-	-	3,684	-	6,410	-	-	12,398
1999	4,640	367	-	-	-	2,500	-	1,145	-	-	-	-	8,652
2000	2,000	-	-	-	-	-	-	-	-	-	-	-	2,000
2001	-	182	-	-	-	2,000	-	-	-	-	-	-	2,182
2002	500	165	-	-	-	-	-	10,323	8,643	-	-	-	19,631
2003	400	441	-	-	-	-	-	9,343	19,026	-	-	-	29,210
2004	100	759	-	-	-	-	-	3,097	36,466	-	-	-	40,422
2005	5,200	2,107	-	-	-	5,000	-	-	22,575	-	-	-	34,882
2006	100	1,514	-	-	-	6,800	-	-	31,884	-	-	-	40,298
2007	30	1,597	-	-	-	14,500	-	938	69,455	-	-	-	86,520
2008	6,500	940	-	-	-	36,900	-	-	61,907	-	-	-	106,247
2009	10,500	213	-	-	-	81,500	-	4,787	95,358	-	-	-	192,358
2010	1,500	544	-	-	-	89,200	-	8,223	86,750	-	-	-	186,217
2011	11,000	1,132	-	-	-	94,600	-	16,181	99,207	-	-	-	222,120
2012	8,793	1,147	-	-	-	78,500	-	4,970	105,418	-	-	-	198,828
2013	1,000	577	-	-	-	80,800	-	13,191	93,246	-	-	-	188,815
2014	5,100	67	-	-	-	95,600	-	11,542	113,174	-	-	19,071	244,553
2015	11,300	1,121	-	-	-	112,800	-	8,790	133,432	-	-	10,712	278,155

31. 경협기금 요약 대차대조표

경협기금 요약 대차대조표 : 1987-2015
(단위 : 억 원)

구분	예치금	유가 증권	미수 수익 등	대출금	기타 자산	자산합계	미지급 비용 등	공자 예수금	정부 출연금	이익 잉여금	선수 수익	자본 조정	부채 및 자본 합계
1987	3	298	8	-	-	309	-	-	300	9	-	-	309
1988	28	510	18	-	-	556	-	-	500	56	-	-	556
1989	45	1,448	44	12	-	1,550	1	400	1,000	149	-	-	1,550
1990	43	1,726	55	83	-	1,907	1	400	1,100	406	-	-	1,907
1991	55	2,644	71	132	-	2,903	2	900	1,200	801	-	-	2,903
1992	1,459	1,784	147	254	-	3,644	2	1,000	1,200	1,442	-	-	3,644
1993	1,883	1,418	158	816	-	4,275	2	1,100	1,399	1,774	-	-	4,275
1994	2,235	741	67	1,118	1,500	5,661	2	1,300	2,249	2,111	-	-	5,661
1995	4,101	1,093	92	1,455	1,234	7,975	3	1,973	3,449	2,550	-	-	7,975
1996	5,326	1,498	145	2,095	1,500	10,564	4	2,633	4,749	3,177	-	-	10,564
1997	5,845	1,467	153	2,789	2,000	12,255	5	2,923	5,299	4,028	-	-	12,255
1998	5,270	1,597	230	3,690	2,500	13,286	6	2,857	5,299	5,125	-	-	13,286
1999	4,613	1,567	136	4,914	2,500	13,730	5	2,783	5,299	5,642	-	-	13,730
2000	4,556	1,142	154	5,856	2,500	14,209	5	2,697	5,299	6,209	-	-	14,209
2001	4,513	942	46	7,361	1,686	14,547	4	2,563	5,299	6,681	-	-	14,547
2002	2,927	661	39	9,230	1,876	14,733	4	2,383	5,299	7,048	-	-	14,733
2003	3,084	639	30	10,404	1,501	15,657	3	2,180	6,099	7,375	-	0.1	15,657
2004	2,736	1,011	31	11,761	1,000	16,538	3	1,977	6,799	7,729	30	1	16,538
2005	2,643	826	35	13,159	1,000	17,662	3	1,773	7,799	8,014	73	-	17,662
2006	3,409	599	48	14,251	1,000	19,307	2	1,570	9,299	8,370	66	1	19,307
2007	4,866	321	108	15,441	500	21,236	2	1,367	10,999	8,803	53	11	21,236
2008	4,577	578	153	17,322	500	23,131	5	1,163	12,599	9,298	41	25	23,131
2009	2,248	396	132	19,959	2,000	24,735	1	960	13,799	9,940	29	6	24,735
2010	516	705	101	23,641	1,561	26,524	2	783	15,299	10,353	53	35	26,524
2011	1,237	755	102	27,769	-1,776	28,088	18	373	18,799	8,840	53	5	28,088
2012	282	1,238	127	32,932	-3,269	31,309	7	1,803	21,788	7,693	-	18	31,309
2013	886	128	139	38,349	-5,619	33,884	18	3,355	24,888	5,605	-	18	33,884
2014	171	175	112	43,815	-7,953	36,320	34	3,285	29,478	3,529	-	-5	36,320
2015	1,614	52	97	50,308	-10,312	41,759	60	3,215	37,142	1,341	-	2	41,759

32. 경험기금 요약 손익계산서

경험기금 요약 손익계산서 : 1987~2015
(단위 : 억 원)

구분	예치금 이자	유가증권 이자	대출금 이자	공자예탁 이자	취급 수수료 등	수익합계	공자예수 이자	위탁 수수료	차관 행정비	유가증권 감액손실	융자 보조비	비용합계	당기 순이익
1987	0.1	10	-	-	-	10	-	2	-	-	-	2	9
1988	1	49	-	-	-	50	-	2	-	-	-	2	48
1989	4	99	-	-	-	103	4	6	-	-	-	11	93
1990	5	275	1	-	-	282	22	2	-	-	-	24	257
1991	3	435	5	-	-	443	35	13	-	-	-	48	395
1992	84	608	7	-	0.1	698	52	5	-	-	-	57	641
1993	187	201	17	-	0.4	406	58	16	-	-	-	74	332
1994	260	99	27	24	0.3	411	63	11	-	-	-	74	336
1995	324	94	38	74	0.4	530	78	13	-	-	-	91	439
1996	496	136	63	70	1	766	124	14	-	-	-	138	628
1997	665	183	80	80	1	1,009	144	14	-	-	-	158	851
1998	848	245	91	119	2	1,305	195	13	-	-	-	208	1,097
1999	339	125	108	123	1	696	168	10	-	-	-	178	517
2000	364	138	140	101	2	744	167	11	-	-	-	178	567
2001	258	65	183	120	2	628	143	12	0.5	-	-	156	472
2002	201	35	191	89	3	519	136	16	0.4	-	-	153	366
2003	136	21	227	81	1	467	113	19	1	5	-	139	328
2004	122	33	253	68	2	478	101	21	2	-	-	124	354
2005	99	33	229	38	2	400	87	24	4	-	-	115	285
2006	109	28	286	48	1	471	85	27	5	-	-	116	355
2007	199	6	313	41	2	559	76	30	20	-	-	125	434
2008	278	3	325	28	38	673	69	32	26	52	-	178	495
2009	205	74	416	57	153	905	49	37	39	138	-	263	642
2010	85	10	375	80	170	719	39	47	67	155	-	307	412
2011	60	44	386	26	83	599	17	59	66	56	1,374	1,573	-974
2012	77	42	395	-	223	736	16	85	87	111	1,583	1,883	-1,147
2013	45	35	432	-	283	795	66	96	69	111	2,541	2,883	-2,088
2014	55	32	421	-	398	906	104	115	58	157	2,547	2,982	-2,076
2015	10	5	420	-	562	996	102	129	88	290	2,575	3,184	-2,188

33. 경험기금 조성실적

경험기금 조성실적 : 1987~2015
(단위 : 억 원)

구분	정부출연금	공자 예수금	공자 예수상환	당기순이익	합계
1987	300	-	-	9	309
1988	200	-	-	48	248
1989	500	400	-	93	993
1990	100	-	-	257	357
1991	100	500	-	395	995
1992	-	100	-	641	741
1993	199	100	-	332	631
1994	850	200	-	336	1,386
1995	1,200	700	27	439	2,312
1996	1,300	700	40	628	2,588
1997	550	350	60	851	1,691
1998	-	-	67	1,097	1,030
1999	-	-	73	517	444
2000	-	-	87	567	480
2001	-	-	133	472	339
2002	-	-	180	366	186
2003	800	-	203	328	925
2004	700	-	203	354	851
2005	1,000	-	203	285	1,082
2006	1,500	-	203	355	1,652
2007	1,700	-	203	434	1,930
2008	1,600	-	203	495	1,892
2009	1,200	-	203	642	1,639
2010	1,500	-	177	412	1,736
2011*	3,500	-	410	-974	1,577
2012	2,990	1,500	70	-1,147	3,273
2013	3,100	1,621	70	-2,088	2,563
2014	4,590	-	70	-2,076	2,444
2015	7,664	-	70	-2,188	5,406

* 2011년부터 융자회계기준 적용
* 2011년 기초순자산(적립금 및 잉여금)에서 차감된 2010년 융자보조비 소급분 53,846백만 원 차감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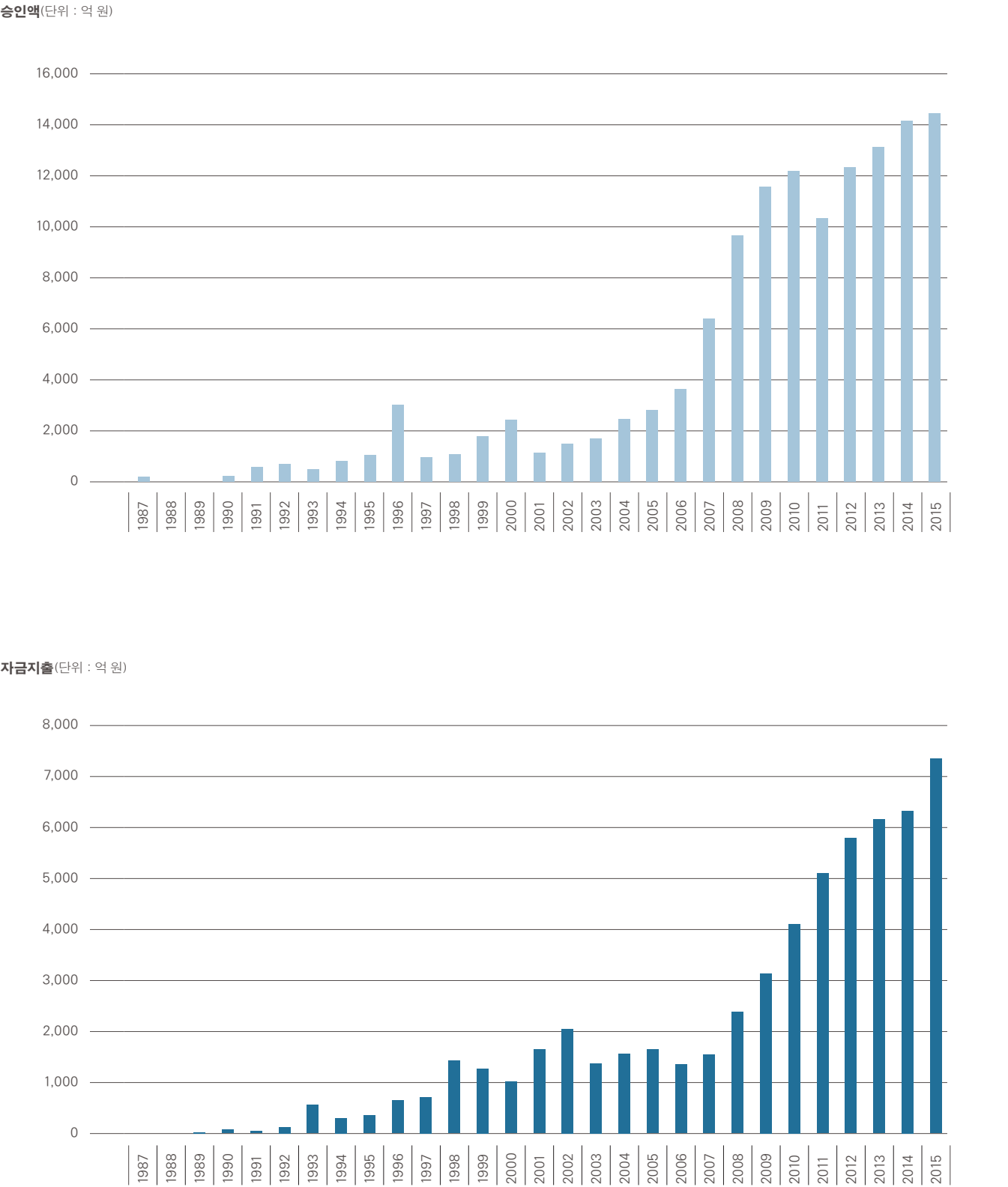
34. 경협기금 지원실적

경협기금 지원실적 : 1987-2015
(단위 : 억 원)

구분	승인건수	승인액 (억 원)	승인액 (백만 달러)	자금지출 (억 원)
1987	2	179	23	-
1988	-	-	-	-
1989	-	-	-	12
1990	4	238	34	71
1991	6	580	80	49
1992	6	716	94	122
1993	2	505	64	562
1994	9	807	103	302
1995	8	1,060	131	345
1996	21	3,027	349	654
1997	6	947	105	724
1998	6	1,078	88	1,426
1999	8	1,794	152	1,268
2000	11	2,428	204	1,012
2001	6	1,145	94	1,653
2002	6	1,499	125	2,050
2003	8	1,698	161	1,370
2004	13	2,449	242	1,555
2005	11	2,827	270	1,643
2006	15	3,636	336	1,361
2007	19	6,388	534	1,553
2008	25	9,653	803	2,371
2009	30	11,580	1,034	3,128
2010	23	12,191	1,088	4,107
2011*	25	10,336	938	5,097
2012	18	12,335	1,111	5,779
2013	21	13,144	1,185	6,148
2014	28	14,138	1,273	6,308
2015	19	14,442	1,222	7,343

* 2011년부터 융자회계기준 적용

* 2011년 기초순자산(적립금 및 잉여금)에서 차감된 2010년 융자보조비 소급분 53,846백만 원 차감반영



35. 남북협력기금 요약 대차대조표

남북협력기금 요약 대차대조표 : 1991~2015
(단위 : 억 원)

구분	예치금	유가증권	대출금	기타자산	자산합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부채및자본합계
1991	31	197	-	3	231	-	-	231	-	231
1992	217	104	-	353	674	-	-	674	-	674
1993	259	107	-	768	1,134	-	-	1,134	-	1,134
1994	357	93	-	1,170	1,621	-	-	1,621	-	1,621
1995	546	225	-	1,578	2,350	-	-	2,350	-	2,350
1996	1,472	380	-	1,577	3,428	-	-	3,428	-	3,428
1997	1,255	934	-	1,866	4,055	-	-	4,055	-	4,055
1998	1,144	572	532	1,828	4,076	-	-	4,076	-	4,076
1999	2,350	755	507	1,827	5,439	9	1,498	3,933	-	5,439
2000	1,877	-	4,178	1,925	7,980	41	4,047	3,892	-	7,980
2001	4,747	-	7,881	1,556	14,184	1,582	5,649	6,953	-	14,184
2002	6,105	-	12,395	2,002	20,502	2,673	8,150	9,679	-	20,502
2003	6,363	1,378	17,750	1,107	26,597	3,278	13,280	10,039	0.3	26,597
2004	3,395	1,357	19,704	711	25,168	3,033	13,560	8,573	2	25,168
2005	3,556	811	21,953	751	27,070	7,952	10,430	8,688	-	27,070
2006	5,736	1,548	22,196	847	30,327	5,537	14,500	10,287	3	30,327
2007	5,107	631	24,958	382	31,078	655	19,846	10,566	21	31,078
2008	9,318	1,266	28,105	669	39,358	263	21,221	17,825	48	39,358
2009	8,013	2,138	27,339	564	38,054	8,373	13,831	15,740	109	38,054
2010	5,197	4,340	27,267	658	37,462	188	22,581	14,493	201	37,462
2011	5,018	4,556	27,324	797	37,695	237	23,625	13,669	163	37,695
2012	5,484	4,070	26,533	882	36,969	5,503	18,325	12,954	187	36,969
2013	5,963	2,191	26,972	1,621	36,747	3,116	20,709	12,854	68	36,747
2014	2,398	4,847	27,351	1,574	36,170	1,132	22,090	12,896	52	36,170
2015	2,694	4,679	27,611	1,660	36,644	2,291	20,925	13,203	225	36,644

36. 남북협력기금 요약 손익계산서

남북협력기금 요약 손익계산서 : 1991~2010
(단위 : 억 원)

구분	출연금수익	예치금이자	유가증권이자	대출금이자	기타수익	수익합계	사업지원비	차입금이자	위탁수수료	기타비용	비용합계	당기순이익
1991	250	6	-	-	-	256	22	-	3	-	25	231
1992	400	51	-	-	-	451	6	-	3	-	8	443
1993	400	63	-	-	-	463	-	-	3	-	3	460
1994	400	89	-	-	-	489	-	-	3	-	3	487
1995	2,401	154	-	-	-	2,555	1,824	-	2	-	1,826	729
1996	1,001	182	-	-	1	1,184	104	-	2	-	106	1,078
1997	503	317	-	-	-	820	191	-	2	-	193	627
1998	-	288	78	-	0.1	365	199	-	2	143	344	21
1999	0.03	188	48	-	0.01	235	343	9	2	25	379	-144
2000	1,005	258	41	0.1	56	1,360	1,175	223	3	-	1,401	-41
2001	5,011	287	26	16	53	5,393	1,891	433	5	2	2,331	3,062
2002	4,901	436	20	18	0.1	5,375	1,851	666	6	126	2,649	2,726
2003	3,000	383	43	31	3	3,461	2,312	755	8	26	3,101	360
2004	1,714	267	46	45	42	2,115	2,060	831	12	679	3,581	-1,466
2005	5,000	199	45	71	38	5,354	4,156	847	16	220	5,239	115
2006	6,500	308	35	73	54	6,970	3,872	968	18	513	5,371	1,599
2007	5,001	360	15	110	112	5,598	4,353	954	18	3	5,328	269
2008	6,501	490	2	165	3,099	10,257	1,946	1,020	20	2	2,988	7,269
2009	1	447	8	153	57	666	760	1,069	38	884	2,751	-2,085
2010	-	307	12	149	153	621	410	1,120	28	308	1,866	-1,246

남북협력기금 요약 재정운영표 : 2011~2015
(단위 : 억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프로그램순원가					
남북사회문화교류	28	24	21	32	62
인도적문제해결	106	29	150	183	55
남북경제협력	60	169	91	171	60
개성공단 지원	57	104	69	173	167
평화통일기반조성	0	0	0	25	0
통일정책	0	0	0	0	47
대북인도적지원	0	0	0	0	127
프로그램순원가 합계	251	327	331	584	518
이자비용	1,135	1,127	1,085	993	926
기타비용	1	810	154	10	51
이자수익	340	317	257	241	81
기타수익	223	103	158	454	788
재정운영결과	823	1,843	1,155	891	626

* 국가회계 기준 적용에 따른 손익계산서의 재정운영표 대체(2011~)

37. 남북협력기금 조성실적

남북협력기금 조성실적 : 1991~2015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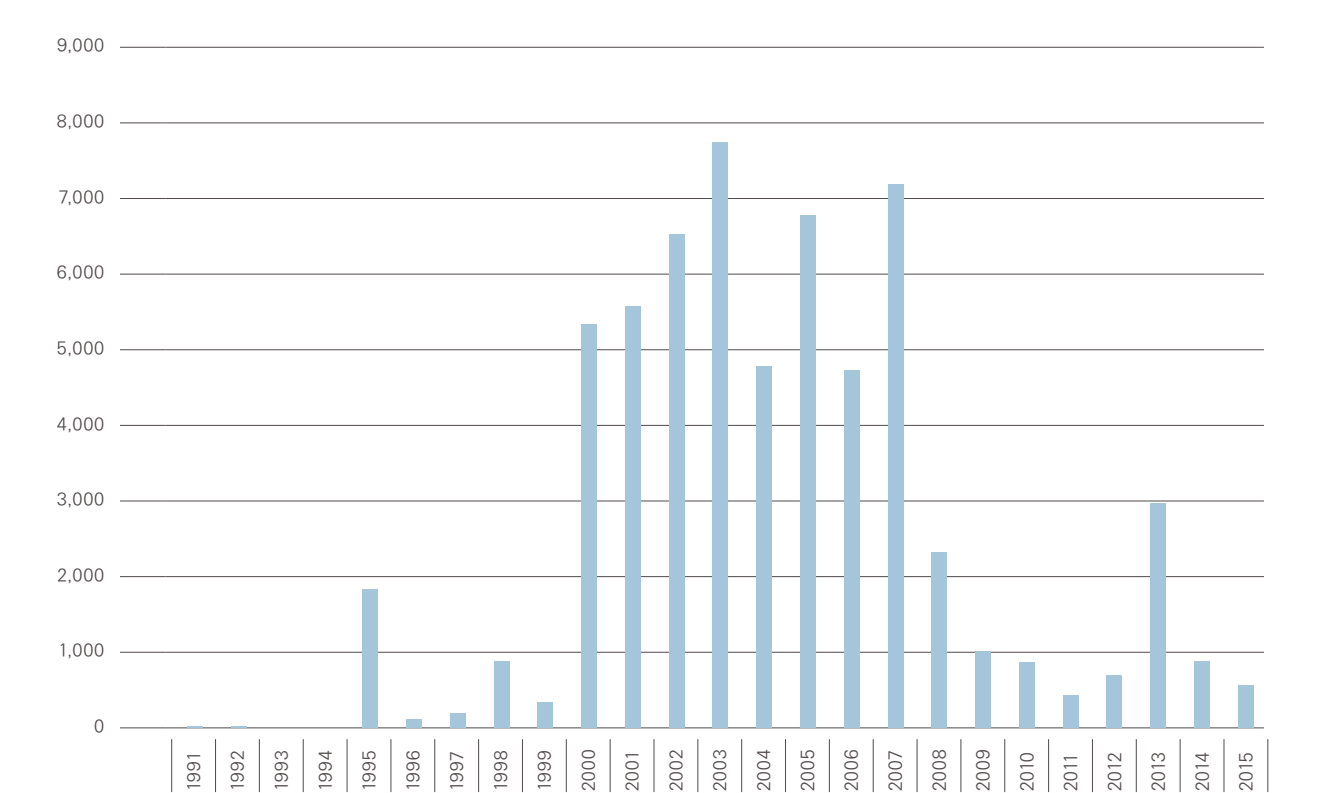
구분	정부출연금	정부외출연금	공자기금예수금	운용수익 등	총조성액
1991	250	-	-	2	252
1992	400	0.0	-	51	451
1993	400	0.0	-	48	448
1994	400	0.0	-	94	494
1995	2,400	1.2	-	146	2,547
1996	1,000	1.3	-	184	1,185
1997	500	2.9	-	279	782
1998	-	-	-	403	403
1999	-	0.0	1,498	230	1,728
2000	1,000	5.4	2,549	304	3,858
2001	5,000	10.8	3,100	294	8,405
2002	4,900	0.8	5,050	420	10,371
2003	3,000	0.0	8,230	465	11,695
2004	1,714	0.0	3,100	384	5,198
2005	5,000	0.3	4,600	312	9,912
2006	6,500	0.1	9,400	366	16,266
2007	5,000	0.8	5,846	389	11,235
2008	6,500	0.5	1,475	493	8,468
2009	-	0.6	810	744	1,554
2010	-	0.0	8,750	512	9,262
2011	-	0.0	1,044	383	1,427
2012	1,128	0.0	4,000	512	5,640
2013	1,055	0.0	5,300	1,623	7,978
2014	934	-	2,286	473	3,693
2015	932	2.4	905	199	2,038

38. 남북협력기금 지원실적

남북협력기금 지원실적 : 1991~2015
(단위 : 억 원)

구분	경상사업	웅자사업	합계	구분	경상사업	웅자사업	합계
1991	22	-	22	2004	2,060	2,703	4,763
1992	6	-	6	2005	4,156	2,588	6,744
1993	-	-	-	2006	3,872	838	4,710
1994	-	-	-	2007	4,353	2,805	7,157
1995	1,824	-	1,824	2008	1,946	366	2,312
1996	104	-	104	2009	760	240	1,000
1997	191	-	191	2010	410	453	863
1998	199	675	875	2011	297	130	427
1999	343	-	343	2012	473	221	694
2000	1,175	4,132	5,307	2013	2,211	746	2,958
2001	1,891	3,653	5,544	2014	653	223	876
2002	1,851	4,644	6,495	2015	518	36	554
2003	2,312	5,395	7,708				

합계(단위 : 억 원)



수은 4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권우석	소장
반 장	김정만	팀장
간 사	변광현	선임조사역
총 무	곽도현	조사역
편찬위원	손창우	선임심사역
	박춘규	팀장
	조윤경	선임조사역
	임현정	선임조사역
	이진경	책임조사역
	이형원	선임조사역
	안영은	선임조사역
	오재훈	선임조사역
	이철규	선임조사역
	이주홍	팀장
	김윤석	선임심사역
	이종민	선임심사역
	최정윤	책임조사역
	황상하	선임심사역
	장준원	선임검사역
	황병현	선임심사역
	이혜경	선임심사역
	김태섭	선임심사역
	김채호	팀장
	고희원	선임심사역
	최정훈	팀장
	정대영	책임심사역
	김경원	선임심사역
	정경빈	선임조사역
	하리준	선임관리역
	임재균	선임전문역
	김용운	선임조사역
	백철호	팀장
	김영석	소장
	이재우	팀장
	임동준	선임조사역
	최성규	팀장
	안두진	책임홍보역
감수위원	김정훈	팀장
	안상훈	팀장
	임경섭	팀장
	이현정	팀장
	서정화	팀장
	박유환	팀장
	신유근	팀장
도움주신 분들	임병갑	부장
	이윤관	부장
	민동희	조사역

편찬대행

(주)다니기획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5, 3층(삼성동 38-30)
TEL. 02-545-0623
www.dani.co.kr

총괄책임	추기숙
진행총괄	최미진
기획·진행	정은경, 신현경
윤필	장세진
교정·교열	배우희, 이효령, 최주희
디자인	윤경희
포터그래퍼	이강우(비인스튜디오), 장요셉(보다스튜디오)
제작진행	사재웅
인쇄	서진문화사

한국수출입은행 40년사

발행처 한국수출입은행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TEL. 02-3779-6114 | www.koreaexim.go.kr
발행인 이덕훈
발행일 2016년 7월 1일

